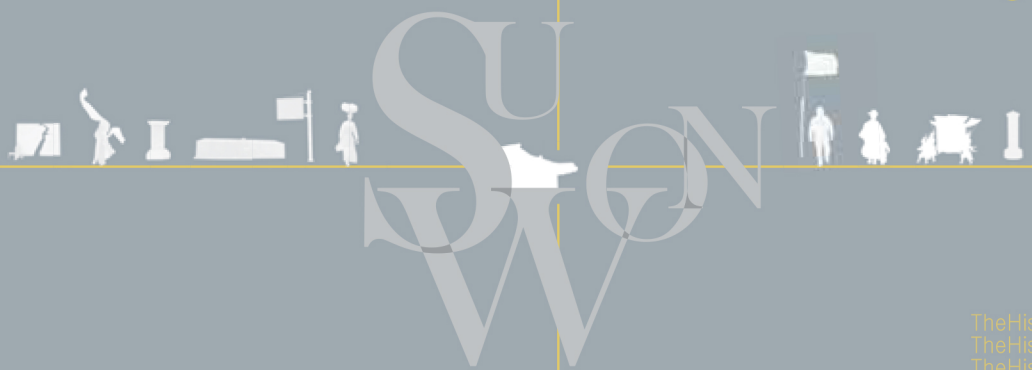
Land Ownership Structure and Agricultural Management in Suwon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수원시사 5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 · 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 ·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일러두기

제1부 조선시대 농업과 토지 소유

제1장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과 농법 정리 ——— 염정섭

1.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_13
2. 농법 정리의 특색 _23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토지 소유와 거래 관행의 변화 —— 김성갑

1. 조선시대의 거래 관행 _35
2. 수원 지역 토지 거래문서의 개관 _37
3.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의 기재사항과 거래 관행 _39
   1) 거래시기와 매득인 정보 기재 _39
   2) 방매이유와 권원(權原)의 기재 _44
   3) 거래 대상지역에 대한 표기 _46
   4) 토지의 표시 _48
   5) 거래가액과 지불수단 _52
   6) 본문기의 처리 _53
   7) 추탈담보문언 _54
   8) 거래참여자의 표시 _55
   9) 각종 서명 방식 _56
   10) 추기(追記) 및 배면 기재 _57
4. 문서를 통해 본 수원 지역의 토지 소유관계 변화 _59
   1) 토지의 상품화 _ 이용에서 교환으로 _59
   2) 소유권 분쟁에 대한 관(官)의 상징성 _62
   3) 입지(立旨) 청원을 통한 토지 소유권의 보호 _63

제3장 조선 후기 화성부의 둔전 설치와 운영 ——— 염정섭

1. 18세기 화성부의 둔전 설치와 경영 _69
2. 19세기 화성부 둔전의 변동 _90

제2부 근대적 토지제도와 토지 소유

제1장 한말 수원의 역둔토 규모와 국유화 ——— 박진태

1. 19세기 수원부의 공토 _103
   1) 19세기 전반기 수원부 둔전의 실태 _103
   2) 『화영중기』에 보이는 수원부의 둔토 _109
2. 을미사판 및 광무사검과 수원군의 역둔토 _114
   1) 갑오승총과 역둔토의 위상 _114
   2) 을미사판과 수원군의 역둔토 _118
   3) 광무사검과 수원군의 역둔토 _127
3. 통감부시기 수원군의 역둔토 _133

제2장 한말 수원의 광무양전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 왕현종

1. 광무양전의 실시 배경과 수원군 양전사업의 추진 _139
2. 양지아문 시기 수원군 양전의 시행과 기록 내용 _144
   1) 수원군 양전의 시행과 양안 작성 과정 _144
   2) 『수원군 양안』의 기록 내용과 특징 _153
3. 지계아문 시기 수원군 양전과 지계양안 작성 _160
4. 수원군 양지 · 지계 양안의 지주 · 농민층 분화 양상 _168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 조석곤

1. 대한제국의 역둔토 관리 _184
2. 수원 지역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_202

제4장 일제하 수원의 임야조사사업과 임야 소유권 — 최병택

1. 일제의 임야 소유권 정리 방향 _216
2. 수원군 임야조사사업의 결과 _224
3. 수원면 면유재산에 포함된 임야 _234

제5장 해방 후 수원의 농지개혁 — 조석곤

1. 농지개혁 연구 동향과 과제 _237
2. 「농지개혁법」의 제정과 분배농지의 확정 _241
3. 수배농가의 변화 _250
4.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와 영세 자작농체제의 성립 _259
5. 요약 및 정리 _263

제3부 일제하 농업정책과 농업 생산

제1장 권업모범장의 설립과 운영 — 김도형

1. 권업모범장의 설립 과정 _269
   1) 초기 농사시험장 설립계획 _271
   2) 통감부 주도의 농사시험장 설치계획 _274
   3) 권업모범장의 창설과 이양 _276

2. 권업모범장의 조직 변천 _279
1) 1910년대 권업모범장 조직 _279
2) 1920년대 권업모범장 조직 _283
3) 권업모범장 이후의 조직 변천 _285
3. 권업모범장의 인적 구성 _288
4. 권업모범장이 한국 농업에 끼친 영향 _292

제2장 일제하 수원의 농업 생산과 농가경제 ——— 이송순

1. 수원의 농업환경 _299
2. 수원의 농업 생산력과 식민농정 _307
3. 수원의 농가경제와 농민생활 _322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개량사업 추진 ——— 이송순

1. 일제의 토지개량사업 _337
2. 팔탄면 일대의 토지개량사업 _339
3. 장안면 석포리와 우정면 주곡리의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개량사업 _340
4. 우정면 이화리 일대의 간석지 개량사업 _342
5. 우정면 호곡리 토지개량사업과 방응모의 토지개량사업 _343
6. 안룡면 천수답 개량사업 _346

제4장 일제하 수원의 수리조합 설립과 운영 ——— 박수현

1. 수리조합정책과 제도의 변화 _349

1) 제1기 1910년대 수리조합정책 _350
2) 제2기 1920~1934년(산미증식계획기) 수리조합정책 _352
3) 제3기 1930년대 중·후반기 수리조합정책 _355
4) 제4기 1940년대(조선증미계획기) 수리조합정책 _357
2.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실태 _363
1) 수원의 농업환경과 수리조합 _363
2) 수원의 수리조합 설립 과정과 운영 _368

제4부 일제하 지주제와 농업 경영

제1장 일제하 수원 들목 조씨가의 경제생활과 사회활동

최원규

1. 양반지주경제와 들목 조씨가 _379
2. 들목 조씨가의 사회적 관계망 _384
1) 한말 격변기 들목 조씨가의 대응 _384
2) 지주회와 농회 참여 _389
3) 일제의 체제 편입작업과 조씨가의 대응 _395
3. 농업 경영과 수리시설 _401
1) 농업 경영과 회계 처리 _401
2) 수리시설과 금융 거래 _417
4. 조세 부담 _424
1) 주세와 지세 부담 _424
2) 개인소득세제의 실시와 기타 공과금 _429
5. 들목 조씨가 지주경제의 성격 _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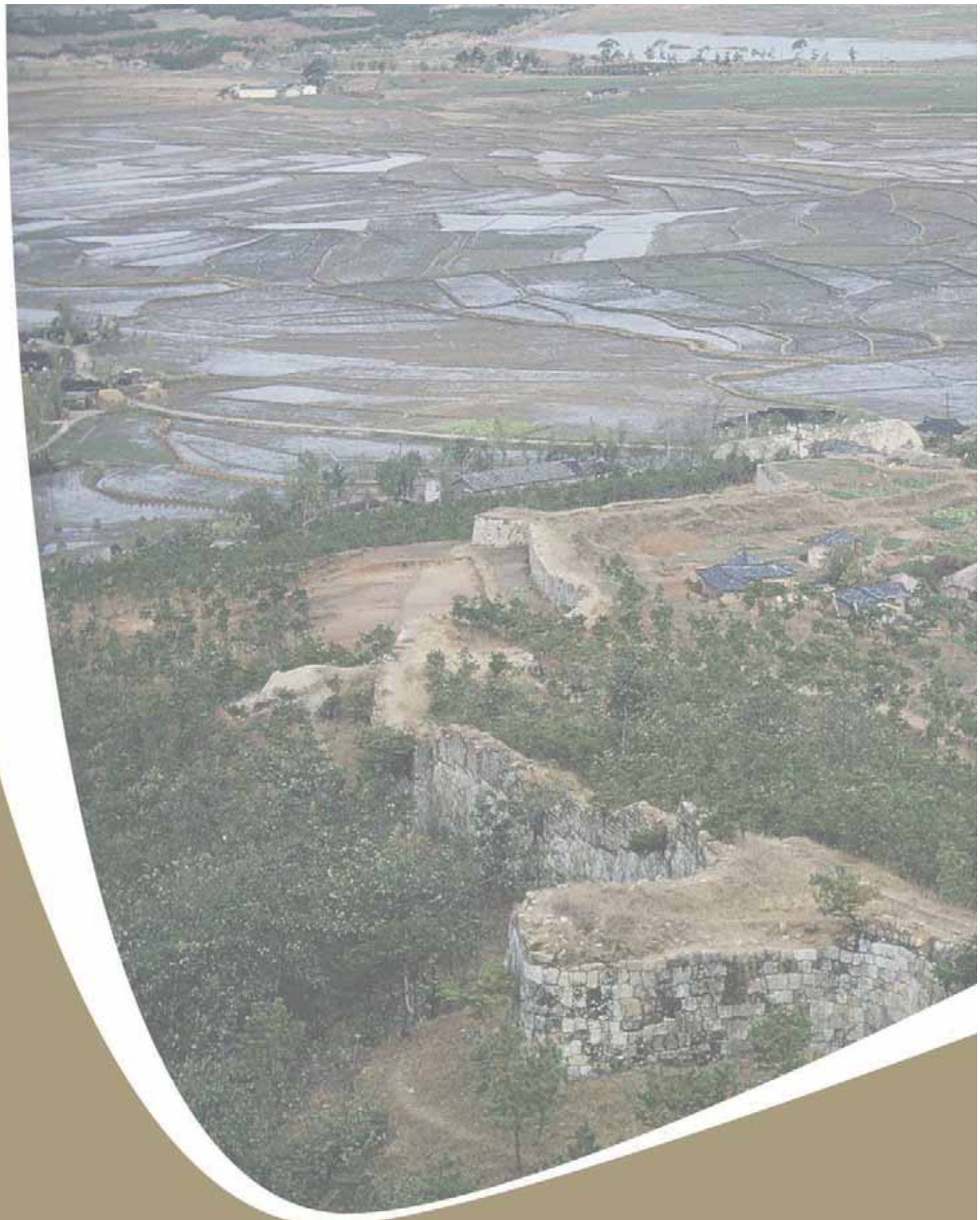
제2장 일제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활동 —— 이송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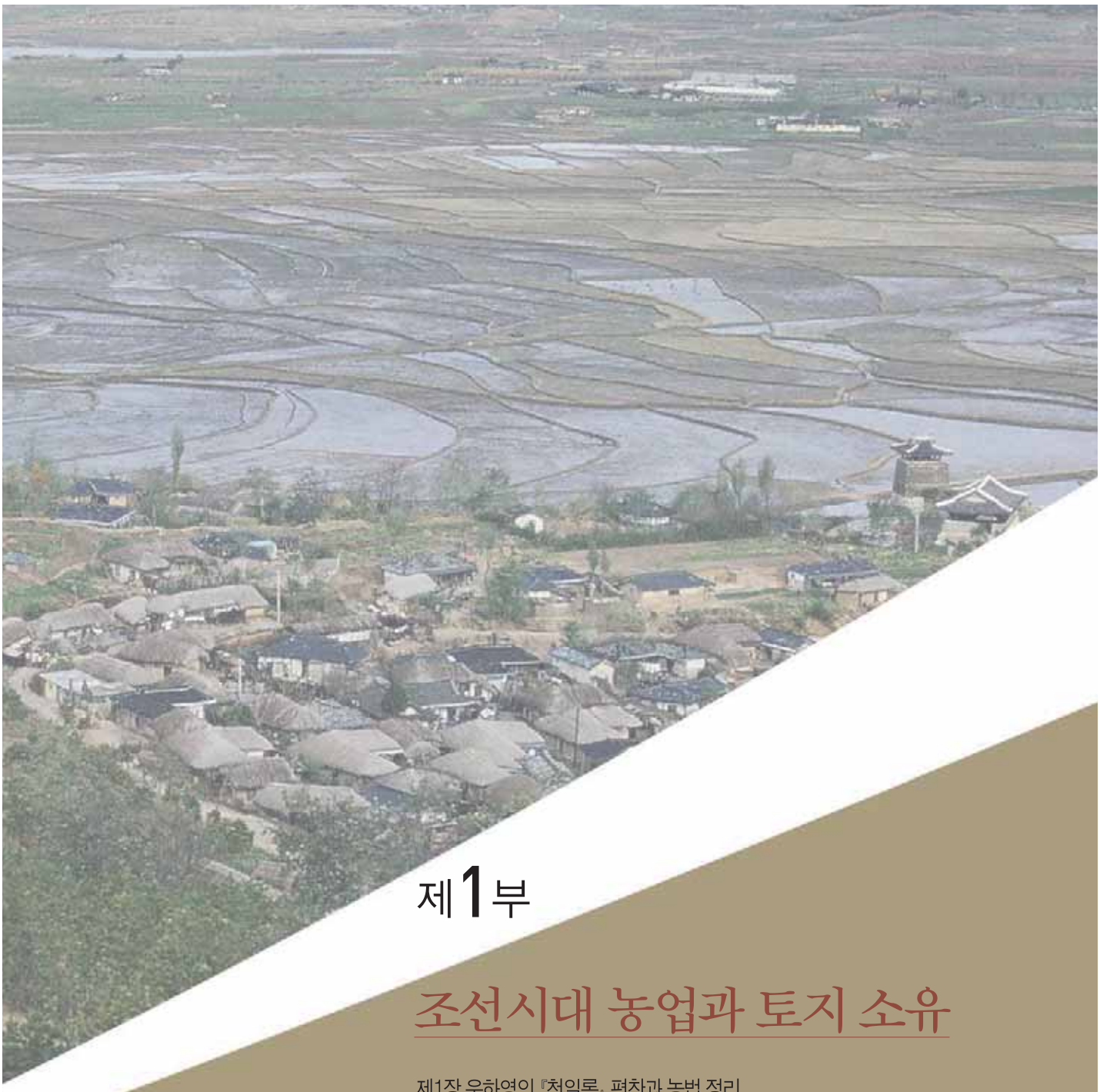
1. 한국인 지주의 존재양태와 역할 _439
2. 용수농계의 설립과 운영 _442
   1) 용수농계 _442
   2) 용수저축조합 _451
3.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_455
   1) 용수흥농조합 _455
   2) 용수흥농주식회사 _457
4. 용수농계와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활동 _460

제3장 일제하 재수원 일본인 회사지주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 하지연

1. 일본인 지주의 진출 배경 _473
2. 일본인 지주의 토지 소유 현황 _475
3.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 _479
4. 식민지 소작제 경영의 실태 _485

- 참고자료 _496
- 찾아보기 _499
- 집필위원





제1부

조선시대 농업과 토지 소유

제1장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과 농법 정리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토지 소유와 거래 관행의 변화

제3장 조선 후기 화성부의 둔전 설치와 운영



염정섭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2. 농법 정리의 특색

제1장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과 농법(農法) 정리[1]

1.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18세기 후반 수원 지역에서 활약한 우하영(禹夏永 : 1741~1812)은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조선의 농업현실을 분석하고, 또한 나름대로 자신의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우하영이 지은 『천일록(千一錄)』은 향촌 유생의 시각에서 당시 조선사회가 부딪히고 있던 현실의 문제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개혁론을 제시한 책이었다. 『천일록』의 내용은 농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광업 등 생산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과거제, 신분제, 군제(軍制), 전제(田制), 환곡(還穀) 등 정치 · 사회 · 경제 · 군사 제도에 대한 것 등을 망라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인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華城) 경영,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시무론(時務論) 등도 제시하고 있었다.

우하영이 『천일록』을 편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찾아보면 먼저 그 자신이 수행한 방대한

1 이 글은 필자가 2010년에 발표한 「18세기말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과 농법 정리」(『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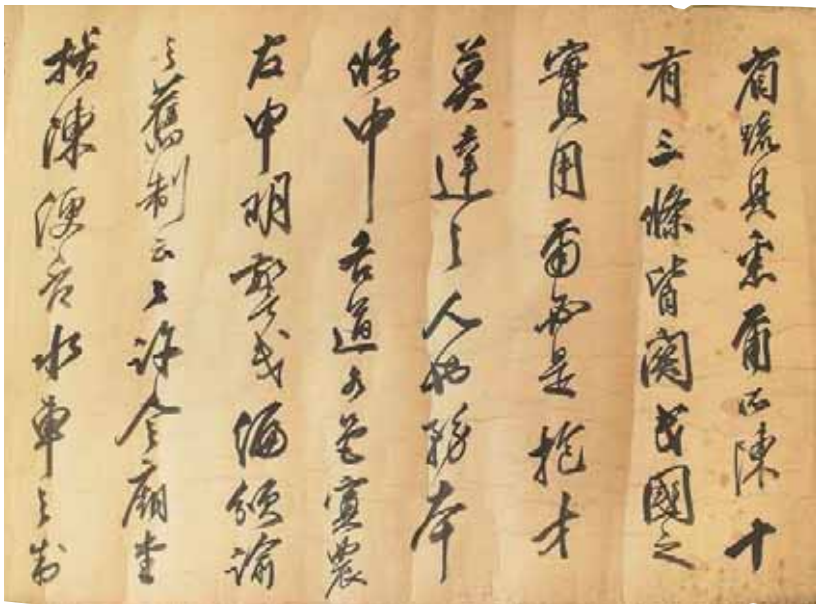
우하영이 저술한 『천일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하영의 직계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천일록』 필사본(http://cafe.daum.net/hane2614)

문헌자료 조사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면밀한 현지조사의 수행을 지적할 수 있다. 우하영은 자신이 수행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의 성과를 모아서 정리하여 『천일록』으로 펴냈다. 한편으로 우하영의 『천일록』은 다양한 성격의 글이 종합되어 있는 총서(叢書) 성격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농법(農法)을 정리한 농서(農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농정(農政)에 대한 새로운 논의 등 당대의 농업현실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개혁론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초기부터 정조 대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의 발달 흐름을 『천일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하영이 편찬한 『천일록』의 특색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농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우하영이 『천일록』을 편찬한 시기를 추정해 보면 대략 18세기 말로 비정할 수 있다. 우하영의 글 속에서 편찬시기에 대해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보인다. 우하영은 「전제(田制)」에 부록(附錄)으로 붙인 '부농정(附農政)' 에서 전제를 개혁하는 과제 가운데 가장 최선무로 개량(改量)을 제시하였다. 이때 우하영은 개량의 시급한 시행을 강조하면서 앞선 시기의 개량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전(畿甸)의 개량은 현묘(顯廟) 계묘(癸卯, 1663년, 현종 4)여서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이나 되었고, 삼남(三南)



우하영의 상소에 대한 정조의 비답(http://cafe.daum.net/hane2614) "네가 올린 소를 잘 보았다. 네가 아뢴 13조는 모두 백성과 나라의 실용에 관계된 것이니, 너는 필시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달하지 못한 사람이겠구나. ……"로 시작되는 편지에서 정조는 13조에 이르는 상소 조항에 일일이 답을 하였다.

의 개량은 숙묘(肅廟) 경자(庚子, 1720년, 숙종 46)여서 지금 거의 80년에 이르렀다."[2]고 설명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하영이 개량을 주장하던 시점이 1663년에서 130여 년 지난 때라는 점, 즉 1793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20년에서 80년에 약간 못 미치는 시간이 지난 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1800년에 이르지는 않은 시기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하영이 개량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한 시기는 1793년에서 180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하영이 『천일록』의 '부농정'을 작성한 시점은 18세기 최말기였고, 이와 더불어 『천일록』의 편찬 과정도 이 무렵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하영이 1796년 정조에게 올린 상소(上疏)에서 『천일록』 편찬시기에 관한 정보를 전해 주고 있다. 우하영은 자신의 문헌검토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천일록』을 작성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정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언급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우하영이 올린 상소가 실려 있다. 그는 상소 첫머리에서 "신(臣)은 미양한 존재로 초야(草野)에서 지내고 있지만, 임금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바를 올

2 우하영, 『천일록』 2집, 「전제(田制)」, 국조(國朝)전제(영인본 『천일록』 상, 242~243쪽).

리고자 한다."라고 자신이 상소를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겨를에 분별없는 생각을 모아서 갖추어 두고 이를 천일록으로 이름 지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조가 구언(求言)하는 왕명을 내리자 "평일에 집록(輯錄)해 두었던 것에서 대략 뽑아내고 간추려서 책자(冊子)를 만들어 올린다."라고 하였다.[3] 이에 따르면 1796년 무렵에 정조에게 자신의 의견으로 상소를 올릴 정도로 『천일록』의 내용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일록』의 전체적인 체제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하영이 『천일록』의 편찬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고생한 부분은 조선의 각 지역을 현지답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는 『천일록』에 수록된 각종 방책, 방안 등을 고안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각 지역을 돌아다녔다. 조선의 동서남북(東西南北) 각 방면으로 가장 먼 지역까지 남김없이 답사한 결과물이 『천일록』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4] 이러한 현지조사 · 답사를 통해서 우하영은 조선 각 지역의 농법의 특색을 파악하고, 또한 자신의 농사경험을 보태었다. 그리하여 우하영은 『천일록』에 자신 나름대로의 농법 정리를 제시하고, 또한 농업개혁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우하영이 검토한 문헌자료에 대한 부분은 뒤에 농법 정리를 다루면서 살펴볼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하영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료를 바탕으로 『천일록』을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우하영이 『천일록』을 편찬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농업현실을 정리하고 농업개혁론을 제기하는 『천일록』을 편찬하는 것이 우하영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는지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목적을 그가 쓴 『천일록』 속의 글에서 찾아보았다. 우하영이 말년에 자신의 학문과 생애를 정리하면서 쓴 글인 「취석실주인옹자서(醉石室主人翁自敍)」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그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하영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하영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하였다. 자신이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두루 살피고 심지어 병농(兵農)의 마땅함까지 상세히 궁구하였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고 있을 때 팔역(八

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4월 25일(경자) "幼學禹夏永疏曰 伏以臣一介螻蟻之微也 窮居草野 塡迫溝壑 而未暇魯緯之恤 妄懷杞天之憂 每想古人之獻芹 未嘗不撫躬自悼曰 一段忠愛 人所同得於彝性者 而吾何獨無所獻於吾君也 迺於食息之暇 略具狂瞽之見 名之曰千一錄 蓋謂千慮之或有一得也 抱篋彷徨 恒切耿結 今我殿下 遇災修省渙發詢蕘之聖敎 警惕之誠 求助之旨 藹然於十行絲綸 爰咨宰輔 至于末之黎庶 俾各條陳其素蘊 恩綸所頒 跛鼈咸聳 莫不欲效忱芒而贊日月 念臣一身 猶是聖朝陶甄中物 旣有平日之所輯錄 則終不敢泯默 略爲抄刪 裒成冊子 妄效應旨之具 惟聖明垂察焉."

4 정치영, 「『천일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농업의 지역적 특성」, 『한국지리역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3, 121쪽.

域)에서 우리의 곤궁함을 자신의 일과 같이 여겨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온통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포(同胞)를 아울러 구제하는 방도라고 제시하였다. 즉 그가 『천일록』에서 제시하는 갖가지 개선방안, 개혁론의 밑바탕에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동포를 남김없이 구제하려는 소망이 깔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입론의 기초는 바로 '겸제동포(兼濟同胞)'[5] 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하영이 동포라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하영은 시가(市街)에서 물건을 보면 반드시 빈민(貧民)을 자활시킬 방책을 생각하였고, 도로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향민(鄕民)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폐단을 질문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한 일인 빈민과 향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동포를 아울러 구제한다." 고 했을 때 동포는 빈민과 향민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우하영은 이들 빈민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고, 향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폐단을 없앨 단서를 구하기 위해 절치부심하였다. 빈민과 향민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소농(小農)과 빈농(貧農)에 해당되는 부류이고, 또한 향촌에서 여러 가지 폐해에 노출된 소민(小民), 향민(鄕民)이었다.

동포와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을 『천일록』의 다른 대목에서 뽑아 낼 수 있다. 우하영이 겸병(兼幷)과 광작(廣作)의 폐단을 설명하면서 경작(耕作)의 기회를 상실당한 궁민(窮民)을 지적한 대목[6]을 살펴보자. 우하영에 따르면 100호가 겸병을 하면 궁민 300호가 실업(失業)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는 광작(廣作)을 하면 논밭을 다스리는 일과 거름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없어 결국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흉년이 들게 되면 수확이 크게 떨어지고 이리하여 비옥한 전답이 척박한 땅으로 변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우하영은 겸병과 광작으로 경작할 땅을 잃어버린 궁민을 겸제(兼濟)해야 할 동포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겸병과 광작을 핑계로 작농(作農)에 나서지 않고 있는 나농(懶農)은 동포의 범주에서 배제하였을 것이다. 결국 우하영이 염두에 둔 동포는 농작을 통해 살길을 도모하면서 애써 정농(精農)을 수행하는 계층이었다.

우하영의 『천일록』 편찬 의도가 동포를 겸제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다른 측면에서 논증하려고 한다. 동포의 어의(語義)를 좀 더 깊이 따져 보면, 동포는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를

5 우하영, 『천일록』 10집, 「취석실주인옹자서(醉石室主人翁自敍)」(영인본 『천일록』 하, 654~655쪽). "耿然一念 惟在於兼濟同胞之地."
6 우하영, 『천일록』 10집, 「어초문답(漁樵問答)」(영인본 『천일록』 하, 619쪽).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본래 포태(胞胎), 즉 탯줄을 함께하는 동생(同生)으로서 형제 · 자매를 뜻하는 말이었다. 동포를 다른 말로 동산(同産)이라 하기도 하였다.[7] 이러한 어의는 동포를 형제 · 자매와 같이 혈연적으로 이어진 부류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용례를 보여 준다.

한편 중국 송나라 장재(張載)가 지은 『서명(西銘)』에 '민오동포(民吾同胞)' 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 구절에 들어 있는 동포는 나라의 백성들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백성들을 형제와 다름없이 여기고 남보기를 나의 형제처럼 여기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구절이었다.[8] 앞뒤 구절을 같이 살펴보면, "만 백성이 다 내 동포(백성)이고 만 들이 나와 같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서 어렵게 사는 허약한 백성, 병든 사람, 홀아비, 과부, 고독한 사람이 모두 나의 형제이면서 어디에다 그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천지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하영이 '겸제동포' 라고 표현하였을 때 등장하는 동포는 우하영 자신과 동질감을 공유할 수 있는 부류, 그리고 형제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궁민을 겸제의 대상인 동포로 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하영이 『천일록』을 편찬하면서 동포의 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하영이 수전 벼경작법 가운데 화루법(火耬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광작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광작에 대한 반대는 곧 소농과 빈농이 수행하는 농작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하영은 파종을 많이 하는 다영(多營 : 넓은 토지의 경영), 즉 광작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었다. 광작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서공(鋤功), 즉 김매는 노동력의 문제이다. 둘째는 분전(糞田), 즉 비료를 넣어 주는 문제였다. 김매는 작업과 비료를 만들어 논밭에 넣어 주는 작업에 소용되는 노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전에는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광작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하영은 전가(田家)에서 다영(多營)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었다.[9] 이런 점에서 볼 때 우하영이 소농, 궁민에 초점을 맞추어 농법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일록』 편찬의 목적이 소

---

7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 권2, 동포(同胞).

8 『국조보감(國朝寶鑑)』 제43권, 숙종조 3(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民吾同胞 物吾與也 大君者吾父母宗子 其大臣宗子家相也."

9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화루법(火耬法)' (『농서(農書)』 10, 아세아문화사영인본, 532쪽). 이하 『천일록』 8집, 「농가총람」은 이 책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리고 「농가총람」에 분명한 항목 제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에 뽑아 놓은 항목 제목을 ' ' 안에 옮겨 놓았다. "凡農家 所種或多則 鋤功 每患過時 糞壤亦難遍及 田家之不得多營者 良由此也 此意最妙(一說小灌水 焚之 無傷根之患)."

농과 궁민의 생존, 재생산에 놓여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천일록』이 농서로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색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천일록』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총람」 부분을 우하영이 편찬한 새로운 차원의 농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하영은 세종의 왕명으로 『농사직설(農事直說)』이 편찬된 것을 설명하면서 "고금(古今) 시후(時候)가 같지 않고 민공(民功)도 다르므로 그 가운데에서 참작(參酌)하고 손익(損益)할 것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이에 감히 참람하고 허망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고방(古方)을 수집하고 내 의견을 덧붙여 하나의 통일된 것을 만들었으니 혹시라도 향촌에 살면서 농사일에 힘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하였다.[10] 이러한 설명에서 우하영이 고방과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농서 편찬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하영은 농서를 편찬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농업기술을 중요한 서술 부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1] 그는 수전(水田) 13두락(斗落)에서 매년 경작하면서 엄경(掩耕), 번경(飜耕), 치숙(治熟), 서확(鋤穫), 저종(貯種), 파묘(播苗), 인개지방(引溉之方) 등 농사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측면을 직접 관장하였다. 그는 봄부터 가을까지 성실하게 농사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런 다음 실제 실행하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자부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농사짓는 방도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농작지방(農作之方)의 십목(十目)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근실함[勤], 예비[豫], 곡종 준비[備穀種], 곡물성질의 분별[辨穀性], 토질 파악[相土宜], 계절 예측[占時候], 분회 축적[聚糞灰], 전토 다스림[治熟田土], 물 관리[預貯水源], 적시 제초와 수확[鋤穫及時]이 10가지가 가장 중요한 농사일이었다.[12] 우하영은 이러한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집성(農家集成)』을 보충하고, 나아가 『농가집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서 편찬으로 한발 내딛을 수 있었다.

「농가총람」과 『농가집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농가집성』을 계승하여 편찬된 농서가 「농가총람」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농가총람」은 『농가집성』을 한 단계 발전시킨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인지 따지

10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서(序)'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32쪽). "然猶古今時候之不同 民功之或殊 自不無參酌損益於其中者 故自敢不顧僭妄 裒集古方 兼附己見 作爲一統 庶或爲鄕居務本之一助云爾."

11 박화진, 「『천일록』에 나타난 우하영의 농업기술론」, 『부대사학』 제5집, 부대사학회, 1981, 127쪽.

12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농작지방(農作之方)'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85~586쪽). "管見 凡天下萬事 苟非目見而躬驗之 則故未可以質言 惟此作農之方 實是家間已驗者也 家有水田 可種十三斗 每年耕作 而凡所以掩耕·飜耕·治熟·鋤穫之功 貯種·播苗·占候·引溉之方 自春至秋 自秋至春 無所不備其勤豫 …… 大凡農作之方 其目有十一曰勤 二曰豫 三曰備穀種 四曰辨穀性 五曰相土宜 六曰占時候 七曰聚糞灰 八曰治熟田土 九曰預貯水源 十曰鋤穫及時."

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가총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성격, 특히 『농가집성』에 보이지 않는 농업기술의 발전 양상을 수록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농가총람」의 목차 배열이 『농가집성』에 들어 있는 『농사직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농가집성』과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농서의 서술 내용에 「농가총람」의 독자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보다 강조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하영은 '부관(附管)'이라는 서두(書頭)를 앞세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면서 『농가집성』의 내용을 크게 확장하였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채록한 새로운 방법을 크게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농가총람」의 이앙법 관련 부분에 외양간 두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부분을 들 수 있다. 외양간 두엄을 만드는 방법은 실제로 『농가집성』과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었다.[13] 우하영은 외양간 두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를 '농가예방(農家例方)'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농가에서 의례적으로[例] 사용하는 방법[方]이라는 점에서 이는 특별히 이앙법과 관련된 기술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분전법(糞田法), 시비법(施肥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사직설』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술 내용을 소개하면서 『농사직설』과 다른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또한 우하영은 『농사직설』에 소개되어 있는 다음 해에 적당한 곡종(穀種)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추가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는 다음 해 경작하기에 적당한 곡종을 고르는 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우하영은 각종 곡종을 1승(升)씩 주머니에 넣는 것이 어렵다면서 1홉[合]씩 넣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토우(土宇), 즉 움집 대신에 북쪽 담장 아래 그늘진 곳에 묻는 방법이 좋다고 설명하였다.[14] 이 사례는 직접 농사를 수행하면서 농법의 묘리(妙理)를 터득하고 그것을 토대로 농서를 지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하영이 편찬한 「농가총람」은 『농가집성』과 별도로 편찬된 농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가총람」의 독립적인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우하영의 '농작지방십목(農作之方十目)'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하영이 농작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것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대목에서 「농가총람」의 고유한 특색이

13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조도앙기(早稻秧基)'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31쪽). "附管 凡物不朽 則不能成糞 若爛朽 則無物不成糞 故無論藁草柴雜草 幷皆入廐中 使牛馬踐踏之 過四五日 易之以他草 以其踐踏者 作坎積置 浸之以廐尿與雜水 久久蒸熟 則自然成糞(宜作坎於廐外以承廐尿 ○ 此是農家例方 而但有勤懶之殊 勤則多聚 多聚則收穀必多矣)."

14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비곡종(備穀種)'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16쪽). "附管 此法 曾於家中 已驗之矣 各種之各盛一升於布囊 亦難 宜取各種一合 而盛之各囊 不必土宇 宜於北墻陰處埋之 且於冬至埋置 立春出之爲妙 蓋各種 性理自有 逐年衰旺 故多息者旺 而小息者 衰也 埋之可驗其衰旺 冬至乃小春 故明年氣候 已屈於冬至 必宜於冬至埋置而立春出之矣(必埋於北墻陰處者 取子夜陽生之義 而外陰 故陽氣在內 易於透濕穀種而生芽也)."

드러나고 있다. 우하영은 먼저 근(勤)과 예(豫)에서 농작에 나서는 농민의 근원적인 자세, 태도,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곡종(備穀種)은 종자 준비, 종자 관리에 해당하고, 변곡성(辨穀性)은 곡물과 품종 선택을 가리킨다. 또한 상토의(相土宜)는 토질에 적합한 농법 파악이고, 점시후(占時候)는 농시(農時)를 가늠하는 것이며, 취분회(聚糞灰)는 시비재료의 마련과 시행을 지시하는 것이다. 치숙전토(治熟田土)는 기경(起耕)과 숙전(熟田)을 포함한 전토의 관리이고, 예저수원(預貯水源)은 수리시설을 포함한 수리 준비이며, 서확급시(鋤穫及時)는 제초와 수확을 제때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작지방십목'의 내용은 농사의 준비에서 실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우하영의 '농작지방십목'은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려고 할 때 목차로 활용하기 위한 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농가총람」은 『농가집성』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 이는 우하영이 『농사직설』을 조선 농가류(農家類)의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하영은 『농사직설』의 내용을 크게 바꾸어 독자적인 성격의 농서를 작성하면서도 『농사직설』을 준거해야 할 모본(母本)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사직설』의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몇몇 농서의 편찬자의 입장과 「농가총람」을 지은 우하영의 입장을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중반에 『농가집성』을 지은 신속(申涑)과 18세기 초반 무렵에 『산림경제』 치농(治農)을 편찬한 홍만선(洪萬選)은 모두 자신이 『농사직설』의 내용에 추가 보완한 부분을 '속방(俗方)'이라 밝히고 있었다. 홍만선은 『산림경제』 치농의 내용을 조선농서와 중국농서에서 인용한 부분으로 채운 것과 별도로 자신의 견문(見聞)이나 전문(傳聞)에 의거하여 수합한 속방을 추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속방이라 표기하는 것은 편찬자의 주관적인 의견의 피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하영이 자신의 주장을 '부관(附管)'이라 표기한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서 홍만선의 '속방' 표기는 견문과 전문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고, 우하영이 '부관'이라 한 것은 자신의 직접 경험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하영의 농법정리의 결과물인 「농가총람」은 보다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하영이 『천일록』을 편찬하면서 각 지역의 토성(土性)과 민속(民俗)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농서로서의 독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하영은 토성과 민속의 측면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각 지역 농업의 바탕을 이루는 토성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토성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구별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농법을 정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

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하영이 토성의 옥척(沃瘠)뿐만 아니라 인력(人力)의 근만(勤慢)을 감안하여 각 지역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력의 근만을 민속이라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역 구분에 감안하고 있었다.

우하영에 따르면 토성의 측면에서 각 지역은 호남 → 호서 → 영남 · 해서 → 서관(西關) → 기전(畿甸) → 관동 · 관북(영남 · 해서 · 서관은 堅으로 비슷, 그러나 沃에서 차이)의 순서로 늘어놓을 수 있다.[15] 그런데 우하영은 토성의 비옥도를 비옥함[沃]과 굳셈[堅]이라는 특색 있는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다. 영남과 해서의 경우 굳셈과 비옥함이 서로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실하게 인력을 동원해야 수확하는 것이 많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굳셈이라는 토성의 조건이 인력의 근면이라는 다른 조건과 결부될 때에만 훌륭한 농업생산을 이룩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지역의 농업 특색을 토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속, 즉 인력의 근만이라는 기준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구분에 나서고 있었다. 인력의 근만을 또 다른 기준으로 감안한 지역 구분은 토성의 옥척에 따른 팔도의 순서와 비교할 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토성의 옥척을 기준으로 세우면 호남 → 호서 → 영남 · 해서 → 서관 → 기전 → 관동 · 관북의 순서가 되는데, 인력의 근만을 추가하여 감안하면 양호(湖南 · 湖西) → 영남 → 서관 → 해서 → 관동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16] 순서가 뒤바뀐 것이 바로 해서와 서관이다. 서관은 토성의 옥척이라는 측면 가운데 옥(沃)이라는 요소가 해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지만, 인력의 근만을 감안할 때 역작(力作)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실하게 힘쓰는 것이 부족하여 빈호(貧戶)가 많은 해서에 비해서 부요(富饒)한 호(戶)가 많은 지역이 되어 해서보다 앞선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토성이라는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민속이라는 사회적인 조건을 같이 감안하여 적절하게 지역을 구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하영의 『천일록』은 당시의 농업현실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농정개선 방안으로 개량(改量) 실시와 농관(農官) 설치를 주장한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17] 그가 농관의 설치를 주장한 것은 단순하게 권농(勸農)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15 우하영,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무본(務本)」(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규-3202). "農家所收之多寡 專由土性之沃瘠 而亦係人力之勤慢 蓋以我國土性 而統論 則腴沃者 湖南也 其次 湖西也 嶺南與海西之土 堅沃相等 而堅者 堅硬之謂也 必待人力之勤 而所獲能多 西關之土 堅與海西等 而沃則不及 關東關北 皆是窮峽 故其間 雖有開野處 數三邑之稍沃 統以言之 則俱是瘠薄也 畿甸 則比諸關東北 差可謂稍勝 而不堅不腴 最居六路之下."

16 우하영,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무본(務本)」(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규-3202). "蓋兩湖 以其腴沃 故所收自多 而民物殷盛 嶺南 則堅沃 故力農之家 爲能多獲而殷富. 西關 則沃雖不及海西 而力作 故多富饒 海西 則沃雖勝於西關而勤力不足 故多貧戶 關東 則地本磽确 惟務山耕 宜其所獲之不多 此其土性與民俗之各自不同 而亦由乎勸課之能得其方 而後庶無艱食之患."

것이 아니라 농사의 장려에서 농사의 감독까지 도맡는 직임으로 농관을 파악하고 있었다. 농관은 동(洞) 단위에서 농형(農形)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책무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농관은 해당 지역의 사족(士族) 가운데 선발하여 임명하는 직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하영은 지방행정 단위에서 농업을 오로지 관장하는 직임으로 농관을 상정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농관에게 농법의 정리와 보급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하영은 농관을 농업기술 개발, 보급의 소임을 담당해야 마땅한 존재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하영의 『천일록』과 「농가총람」이 농법의 수집과 정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법의 개발과 보급에도 주목한 농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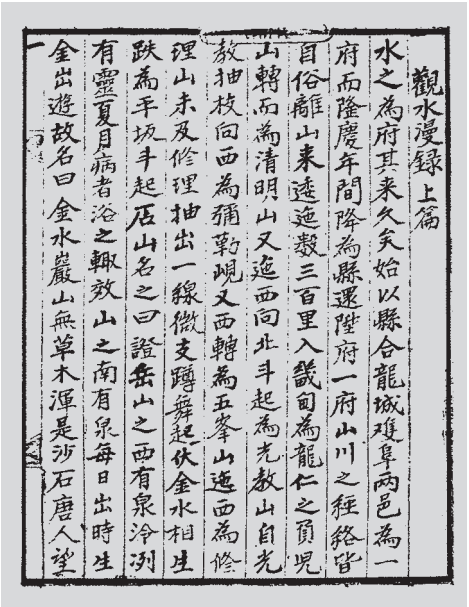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핀 바와 같이 우하영의 『천일록』은 방대한 문헌조사와 면밀한 현지조사의 종합적 결과물이고, 소농에 대한 동포의식에서 나온 개혁방안이며, 농법의 정리, 개량 실시와 농관 설치 주장 등의 측면에서 특색을 지닌 것이었다.

2. 농법 정리의 특색

우하영은 1741년 수원부(水原府) 어량천면(於良川面) 외촌(外村)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은 현재 화성시 매송면(梅松面) 어천리(漁川里)에 해당되는 곳이다.[18] 우하영이 태어난 어천리는 남양반도의 한쪽 구석에 자리한 해안가로서 상업과 어업도 번성하였지만 주된 산업은 농업, 특히 벼농사였다고 한다.

우하영은 『천일록』과 「농가총람」에서 팔도 각 지역의 농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던 농법의 정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하영은 촉서(蜀黍), 즉 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에 자신의 주장을 '부관'으로 기술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수와 조를 분회(糞灰)와 섞어서 파종하는 교종법(交種法 : 雜種法)이고, 다른 하나가 후치법(後庤法)이다. 이 후치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하영이 수원 인근 지역의 농업기술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7 우하영, 『천일록』 2집, 「전제(田制)」, '부농정(附農政)'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80쪽).
18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37~60쪽. 우하영의 생애는 몇몇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최홍규가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觀水漫錄上篇
水之為府其來久矣始以縣合龍城壤阜兩邑為一
府而隆慶年間陞為縣還陞府一府山川之經絡皆
自俗離山來逶迤數三百里入畿甸為龍仁之頂兒
山轉而為清明山又迤西向北斗起為光教山自光
教抽枝向西為彌勒峴又西轉為五峯山迤西為修
理山未及修理抽出一線微支蹲舞起伏金水相生
跌為平坂平起店山名之曰證岳山之西有泉泠冽
有靈夏月病者浴之輒效山之南有泉每日出時生
金出遊故名曰金水巖山無草木渾是沙石唐人望

우하영의 『관수만록』

후치법은 견종법(畎種法)으로 파종하여 고랑[畎]에서 자라고 있는 재배 작물(이 경우는 黍粟)의 뿌리를 북돋아 주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이랑의 흙을 무너뜨려서 고랑 속에서 자라는 작물 뿌리를 북돋아 주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후치법으로 중경(中耕)을 계속 진행하면 이랑의 흙이 점차 고랑으로 흘러들어 이랑의 형태가 사라지게 되었다. 우하영은 후치법을 농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임무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후치를 하게 되면 뿌리가 깊어져 가뭄을 만났을 때 말라 버리거나 큰 물을 만났을 때 스러져 버릴 근심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었다.[19]

우하영은 후치법이 요긴하여 당시 각 지역에서 이 방식을 행하고 있고, 경기의 우도(右道)에서도 많이 행하지만 오직 경기좌도에서만 이를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0] 이런 점에서 볼 때 우하영이 기전(畿甸) 지역의 농법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하영이 『관수만록(觀水漫錄)』이라는 저술을 통해 수원 지역의 지방행정을 비롯한 각 분야의 당면 과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21]을 감안한다면, 그가 농업기술을 정리한 『천일록』과 「농가총람」에서 경기 지역, 특히 수원 지역의 농법에 특별히 유의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경기좌도, 경기우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농서 서술 속에 담긴 농법 개선과 보급의 주요한 대상 지역이 거주지 인근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하영이 『천일록』에서 정리한 농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것

19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서속(黍粟)'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41~542쪽). "附管 用一牛 網口徐耕畝間者 俗名 後序也 經註曰 廻俗之甽田 以二耜爲耦 而播種甽中 苗生葉稍 耨隴草 因隕其土 以附苗根 故曰 或耘或耔 黍稷薿薿 耘者 除草也 耔者 附根也 言苗壯 每耨輒附根 比盛暑 隴盡而根深 能風與旱 故薿薿而盛 …… 大抵 後序之法 最爲田農之要務 以其隴土 厚附穀根 故遇風遇旱 少萎扑 而罕枯損 遇澇 畝深水洩 亦鮮消融之患."

20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서속(黍粟)'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41쪽). "以此考之 則西周之隕土附根 亦今之後序也 然而 見今各路 俱行此制 畿之右道 亦多行之 惟畿左 絶不倣行 盖因懶農 莫如畿左 而亦由習俗之難變也."

21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37~60쪽, 290~378쪽.

이다. 우하영이 농법의 지역적 특색을 정리한 부분은 『천일록』 1집 「건도부산천풍토관액(建都附山川風土關扼)」이다. 그리고 『천일록』 8집 「농가총람」에서는 구체적인 작물별 경작법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부산천풍토관액」에서 팔도 각 지역의 농업실정을 정리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농가총람」을 검토하면서 농법의 구체적인 기술을 정리할 것이다.


『천일록』, 「부산천풍토관액」(http://cafe.daum.net/hane2614)

먼저 우하영은 지역적인 농법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파종 시기, 논밭 구성비율, 수리 혜택의 유무 및 우경(牛耕)의 지역적 특색 등을 정리하였다.[22] 이와 같은 지역적인 농법의 특색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하영의 현지조사, 문헌분석, 자신의 농사 경험 등에 의거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하영은 「농가총람」에서 구체적인 현실 농법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곡종에 대해서 우하영은 곡품(穀品), 즉 품종의 소개에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화진은 곡품의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거론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23] 하지만 조선의 농서에서 품종을 처음으로 소개한 『금양잡록(衿陽雜錄)』이 같은 경기 지역의 품종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소개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하영은 지종법(漬種法 : 糞種法)을 소개하고 있는데, 눈물[雪水]에다 담그는 방법과 우마지뇨(牛馬池尿)에 적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4] 그런데 후자는 우마(牛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 조목을 놓고 『농사직설』 또는 「농가총람」의 편찬의도 속에 우마를 가진 농가, 즉 중농(中農)을 상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종법 자체가 중국농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조목만

22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406~416쪽.
23 박화진, 「『천일록』에 나타난 우하영의 농업기술론」, 『부대사학』 제5집, 부대사학회, 1981, 143쪽.
24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비곡종(備穀種)'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16~517쪽). "直說曰 冬月以瓮或槽 埋置地中 要合不凍 至臘月 多收雪汁 盛貯 苫蔫(鄕名 飛蓋) 厚蓋(古書曰 雪 五穀之精也) 至種時 漬種其中 漉出晒乾 如此三度 或用木槽 盛牛馬厩地尿 漬種其中 漉出晒乾 亦須三度(如此三度 則禾稼 耐旱而肥 所收倍多)."

으로 『농사직설』 또는 「농가총람」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다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곡물 종자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하영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하영은 곡종을 바르게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설즙(雪汁)이나 구뇨(廐尿)로 지종(漬種)하면 혹시라도 상해를 받을 수 있으니, 설즙이나 구뇨는 종자보다는 전답에 거름으로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25] 이러한 지종법, 즉 종자에 거름을 입혀 주는 방법 대신 우하영이 보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지목한 것은 견실한 이삭[穗]을 택하여 종자를 잘 마련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가라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 본지(本地)에 떨어져 있는 유종(遺種)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종하는 종자가 부정(不精)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 주의하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만약 병작(幷作)을 하여 땅주인이 종자를 주는 경우 충분히 정건(精乾)시켜 두었다가 부종(付種)할 때 키로 까불고 물에 담가 잡종(雜種)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종자가 완전해야만 제초할 때 힘이 훨씬 덜 들고, 이삭과 종실이 튼튼하고 수확도 많다고 강조하였다.[26]

다음으로 수도(水稻) 경작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하영은 일단 『농가집성』에 수록되어 있는 경작법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법전문가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전은 심경(深耕)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심경하여 득수(得水)하게 되면 더욱 좋다고 지적하였다.[27] 게다가 우하영은 기경의 천심(淺深)이 계절에 따라 달라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정도로 경법(耕法)의 원리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었다.[28] 이렇게 볼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수전의 경우 심경하는 것이 마땅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

25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비곡종(備穀種)'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17쪽). "附管 此法 應是古人已驗之方 而恐非萬全 蓋穀種 必貴精乾 故當秋 極擇其穀完·實充者 曝乾情儲 以爲嗣歲種子 此是農家萬全良方也 今若依右或臘雪汁 或廐地尿 漬種 漉出 旣晒且漬 限以三度 則漬晒之際 易致受傷 雪汁之漬 取雪之精也 廐尿之漬 取尿之沃也 而一或受傷 則精與沃 俱無以責效 無寧移其雪尿漬晒之工 以圖作糞 糞田之爲愈也."

26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비곡종(備穀種)'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17~518쪽). "附管 世人 全不致意於置種之方 殊非識農務者也 凡水田稂莠之多出 雖是本地遺種 亦多穀種不精之害 若於秋間 刈穫之時 極擇堅實之穗 精乾精儲 以爲種子 則上也 若無田土貧民 受人種子 爲其幷作 則擇穗精備 勢未由焉 宜以竹箭撤下 去其雜莠之種 十分精乾 及至付種之時 簸揚浸水 盡去雜種 及浮秕不完之粒(種不完 則穗不實) 非但鋤工之倍省 秋來穗實充完 所收必多 此是曾所已驗之方 可質無疑矣."

27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도(種稻)'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21쪽). "附管 水田 宜深耕 以其生地出 而得水則沃."

28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경지(耕地)'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37쪽). "附管 春耕欲淺者 以其不淺 則趁時立苗之難也 秋耕欲深者 以其不深 則經冬凍死之易也 春耕之隨耕隨治者 以其春陽下曝 土性易乾也 秋耕之待土色乾白乃治者 以其土未乾曝而下種 則易致凍濕故也."

우하영은 수전에서 벼를 재배하는 기술적인 측면 가운데 시비(施肥)를 가장 강조하였다.[29] 먼저 절초(折草)를 통해 확보한 생초(生草)를 시비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소가 밟고 다닌 부초(腐草)를 넣으면 볏모가 속효(速效)를 얻어서 무성하게 되지만 구원하게 이어지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낟알이 굳건해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원한 시비 효과를 갖고 있는 생초를 넣어 주는 방식을 추가로 활용하여 부초와 생초를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30] 결국 우하영은 생초와 부초 모두 수전 시비에 이용해야 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또한 앙기(秧基)에 시비하는 방법도 강조하면서, 앙기에서 자라는 앙묘(秧苗)에 가분(加糞), 즉 추가로 시비재료를 넣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31]



김홍도의 풍속화 「논갈이」에 표현된 우경 우경은 소의 힘을 이용하여 땅을 깊이 팔 수 있었다.

또한 우하영은 생초의 시비효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농사직설』 등에 소개된 녹두(菉豆)나 호마(胡麻)를 작물비(作物肥)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가 제기한 의문의 중점은 바로 곡물을 시비재료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녹두나 호마가 모두 곡물인데다가 녹두와 호마를 시비재료로 활용하여 시비하는 것이 과연 다른 시비재료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생초를 베어 분전(糞田)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녹두와 호마를 활용하는 것이 시비효과가 뛰어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두 작물을 시비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2] 이러한 지적은 땅을 기름지게 만

29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 249~260쪽.
30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도(種稻)'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22쪽). "附管 水田 入牛後腐草 則苗得速效 而茁茂 但無力於秋來成實之際 入山野新刈之生草 則結顆完實 此盖生草之效力 能久遠 而腐草之效力 但速不能久也."
31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부관(附管) 범앙기(凡秧基).

드는 방법으로 중국 후위(後魏) 고양태수(高陽太守) 가사협(賈思勰)이 편찬한 『제민요술(齊民要術)』「경전(耕田)」에 나오는 구절[33]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현실적인 효용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다.

우하영은 시비법과 관련해서 시비재료를 획득하여 시비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른바 매양법(埋陽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였다.[34] 『천일록』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박화진은 매양법을 시비법이 아닌 경지론(耕地論)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35] 하지만 우하영이 매양법의 효과로 시비를 하지 않아도 땅이 비옥해지고 일찍 숙성하며 수확이 많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건경(乾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한 번 갈고 말렸다가 다시 가는 매양법은 기경의 반복과정을 통한 시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하영의 주장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건경을 무수히 반복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로운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건경을 반복하는 만큼 노동력을 투하해야 하는데 노동력 수급이 불가능한 농가가 있고, 수확의 증대가 노동력의 증대량을 상쇄시킬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하영은 가뭄이 들었을 때, 그리고 노동력을 크게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처방안의 하나이자 시비의 효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매양법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전농법과 관련해서 우하영은 첫 번째 제초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첫 번째 제초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초 발생이 줄어들고 제초에 들어가는 공력이 절약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논에서 자라는 피를 이삭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뽑아내어, 명년에 가라지가 되는 것을 방비하는 것이 제초의 공력을 줄이는 묘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래밭에 가까운 새로 개간한 수전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수전에서의 벼 경작법에서 우하영이 특히 주의한 것은 시비였다고 할 수 있다.[36]

우하영은 한전작물의 경작법에도 주의를 기울였다.[37] 그가 「농가총람」에 소개하고 있는

32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대소맥(種大小麥). "附管 直說 木麥種法 以爲 或於其田先種菉豆 或胡麻 五六月間 掩耕 待草爛後 耕種之云 此法於變瘠爲沃之方 誠好 而第菉豆胡麻 與木麥 俱是穀也 豈可爲此 而先掩方長之苗而耕之乎 不如刈草用糞之爲宜矣."

33 가사협(賈思勰 : 後魏 高陽太守), 『제민요술(齊民要術)』 권1, 「경전(耕田)」 제1. "凡美田之法, 綠豆爲上, 小豆, 胡麻次之."

34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도(種稻)'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21쪽). "附管 凡水田之遇旱無水處 及其未雨日 而乾耕 一曝一鰓 無數反復 土解如灰粉 而徹底埋陽 則及其遇雨移秧 不糞而沃 旱成倍穫."

35 박화진, 「『천일록』에 나타난 우하영의 농업기술론」, 『부대사학』 제5집, 부대사학회, 1981, 132쪽.

36 박화진이 정리하여 소개한 『천일록』의 여러 가지 시비기술은 다음 논문에 자세하다. 박화진, 「『천일록』에 나타난 우하영의 농업기술론」, 『부대사학』 제5집, 부대사학회, 1981.

37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2002, 256~263쪽.

한전 경작법은 파종, 시비, 제초의 측면에서 세밀한 경작기술체계를 갖춘 것이었다. 먼저 한전작물 가운데 소두(小豆)와 수임(水荏) 또는 서(黍) 또는 속(粟)을 섞어서 경작하는 잡종법(雜種法)을 설명하였다. 잡종법은 한전 이모작(二毛作)에 해당하는 경작방식인데, 우하영은 잡종법을 양전(良田)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38] 양전일 경우 원칙적인 측면에서 교종(交種) 또는 잡종(雜種)을 실행하는 것이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잡종법을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양전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농사직설』에 나오는 분종법(糞種法)을 덧붙여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숙분(熟糞)이나 뇨회(尿灰)를 서속(黍粟)과 적당량의 비율로 섞어서 파종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교종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양전이 아닌 척박한 밭이기 때문에 종자의 발아와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미리 넣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우하영은 숙분과 뇨회를 서속의 종자와 배합하는 비율에 대하여 『농사직설』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보다 숙분과 뇨회를 더 많이 넣어 주어야 곡물 낟알이 제대로 영글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하영은 분회가 없을 때 생초를 베어 펴두고 불태우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분종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39] 이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하영이 제시하는 잡종법은 시비에 특히 유의하면서 밭의 비옥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우하영이 세밀하게 한전 농업기술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18세기 후반 1년 2작식 한전 작부체계의 고도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하영이 제시한 한전 농업기술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바로 간종법(間種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법(代耰法)이다. 그는 모맥전(牟麥田)에 두태(豆太)를 간종(間種)으로 경작하는 방식을 대우법이라고 칭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리와 밀을 수확한 다음에 다른 밭작물을 경작할 때 근경법으로 두태를 경작하는 것보다 대우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대우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호미로 쟁기와 고무래질[耰耕]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좀 더 우하영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맥(牟麥)의 이랑에 호미로 흙을 긁어서 두태를 파종하기 때문에 호미로 우경(耰耕)을 대신한다고 하여 부르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40] 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

38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서속(黍粟)'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40~541쪽). "附管 先用小豆 播撒而耕之 水荏黍粟交種者 卽平地 良田耕種之例規 而田無盡良之理 若在瘠薄之瑕田 則不可盡用是例."

39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서속(黍粟)'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41쪽). "故或出熟糞 及尿灰 而直說中 每黍粟二三升 熟糞 或尿灰石爲度云者 恐非實穀之道 當看糞灰之多寡 或每升一石 或每升二石 方可 糞灰若無 則刈草布乾而焚之 以尿灰和粟 種之 以純粟 只就畝之左右 種以豆太."

40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대소맥(種大小麥)'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50쪽). "附管 牟麥 根

면 우(耰)는 곰방메 또는 고무래에 해당되는데, 논밭의 흙덩이를 깨뜨리고 씨를 덮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기질을 한 연후에 활용되었다. 이런 까닭에 우경이라 하여 경(耕)과 붙여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하영은 호미가 바로 밭이랑을 일정 정도 깊이로 파고 씨를 심은 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 주는 작업까지 해낼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러한 두태 경작방식은 근경법의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간종법의 방식에 의거하는 것이었다. 즉 대우법은 간종법의 일종이었다.

대우법으로 모맥전에 두태를 간종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3월 내지 4월에 모맥이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에 이랑 사이에 분종한 두태 종자를 뿌려 둔다. 그리고 모맥을 수확한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후치법을 사용하여 보리뿌리를 갈아엎어 두태의 모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결국 모맥이 전토에서 자라고 있을 때 파종을 감행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전토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우법은 간종법의 일종으로 두태의 모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바람과 가뭄을 이겨 내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41]

우하영은 대우법의 이점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 이점은 앞서 설명한 모 뿌리를 튼튼하게 해 주어 바람과 가뭄을 견뎌 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경하는 노력을 덜어 주는 점이었다.[42] 근경하는 시기는 다른 작물의 제초작업을 병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근전(麥根田)을 기경하여 파종하는 근경법보다 모맥이 자라고 있을 때 호미로 파종처를 만들어 간종하는 것이 훨씬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우하영이 대우법의 이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하영은 대우법이 근경보다 우월한 경작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43]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단계에서 확인되는 한전 이모작 경작방식의 고도화는 보리 경작법을 중심으로 근경법과 간종법이 세밀한 결합체계를 일반화시켜 나가면서 이룩된 것이었다.[44]

그리고 대우법이 수원과 같은 경기 남부 지역의 농법의 특색을 갖고 있다는 점은 최근의 전승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경기 남부 지역에 전래되고 있던 재래농법을 정리한 안승택에 따르면 간종법을 '대우(代耰)' 또는 '대우치기'라고 부른다고 한다.[45] 일

耕之法 自是通行之農方 而不如代 耰之爲妙 所謂 代耰者 就牟麥之畝 而以鋤括土 種以豆太 故鋤以代耰耕之稱也."

41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대소맥(種大小麥)'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50쪽). "附管……宜於三四月之間 當其牟麥胚胎之際 以豆太之種 和之於尿灰 而盛于柶器 就畝間 括土下種 而每一科 各下三四箇 及其牟麥刈取之後 鋤去雜草 又用後庤之法 耕覆麥根 培其苗根 則根植自然堅固 可耐風旱."

42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대소맥(種大小麥)'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50~551쪽). "附管 …… 且於三農極忙(혹은 忙極)之時 除其根耕之功 又或値亢旱與長霖 耕種俱難之時 代耰立苗 則已至苗茂 此爲農家萬全之方矣."

43 우하영, 『천일록』 8집, 「농가총람(農家總攬)」, '종대소맥(種大小麥)' (『농서』 10,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550~551쪽). "附管 …… 然農俗各異 土性不同 或有宜於根耕 而不宜代耰之地 雖不得强令逐里行之 若論大體作農之方 則莫如此道之爲緊要 宜令漸次相宜 而通行之耳(若行此法 則雖旱霜之年 成熟無慮)."

44 김용섭,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 일조각, 1990;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

반적으로 간종법에서 쟁기를 이용하는 것과 대우법에서 호미를 이용하는 것이 다르지만 특정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명칭이 서로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우하영이 「농가총람」에 정리한 대우법은 경기 남부 일대의 특유한 간종법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5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신구문화사, 2009, 236쪽.



김성갑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1. 조선시대의 거래 관행
2. 수원 지역 토지 거래문서의 개관
3.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의 기재사항과 거래 관행
4. 문서를 통해 본 수원 지역 토지 소유관계 변화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토지 소유와 거래 관행의 변화

사회적 사실로서 '소유(所有)'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지만, '소유권(所有權)'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 혹은 단순히 물건을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법과 함께 발전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각 사회에서 소유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 소유권은 재화에 대한 사용(使用), 수익(受益), 처분(處分)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서 구성되며, 이 세 요소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발생, 변동, 소멸을 반복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상은 한층 복잡한 구도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 재화들 중에서 특히 토지는 인간의 육체적인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의 기본요소들을 제공한다는 점과 소유권자의 정신적 자존감 확보를 통한 삶의 의지를 부양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항시 개인적 · 사회적 집착과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선시대 전반에서 재화의 소유와 거래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거래문서, 즉 계약서를 '명문(明文)' 혹은 '문기(文記)'라 명명하였다. 거래생활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1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1996, 68쪽 참조.

관습과 법은 거래문서 작성과 그를 통한 거래행위의 공적 증명에 대해 규율하고 있었고, 복잡다단한 소유관계를 바람직하게 조율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범체계에서 '명문(明文)'이라는 문서는 조선시대 사회구성원들의 소유의식, 특히 그중에서도 사유의식(私有意識)이 수많은 거래행위로 현실화·구체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징표이다.[2] 수많은 거래행위와 그에 근거한 명문의 작성행위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문서양식으로 변천해 갔다.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에 간행된 공사문서(公私文書)의 규식서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 거래문서인 '답권(畓券)'의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토지 거래 시 거래문서의 작성이 매우 보편적인 일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일례라 하겠다. 이러한 토지 거래문서 중 매매계약 행위에서 작성된 문서를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토지 매매명문(賣買明文)'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에 작성되었던 토지 거래문서는 당시 토지 소유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사료 중의 하나이다.[3]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변화해 가는 토지 소유관계는 거래(去來)라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移轉)하면서 그 변화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일면 정적일 수 있는 토지 소유의 추상적 상황과 그동안에 해당 토지에 부속하여 구축되어 온 여러 정보가 거래행위를 통해 새로운 여건(소유자의 변동, 거래가액의 상승·하락 등)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토지 거래문서이다. 나아가 토지 매매명문은 토지 거래의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에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분쟁 발생 시에도 이를 조정하는 관청, 즉 국가에게까지 분쟁해결의 일차적 판단기준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토지 매매명문은 당사자들 간에 법적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력을 갖춘 문서로서, 토지 소유와 거래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대의 토지 거래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 관행을 파악하는 작업은 당시의 토지 소유관계를 좀 더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고 하겠다.

복잡한 양상으로 변개(變改)해 나가는 조선 후기 사회의 여러 모습 중에 토지 소유의 문

2 "문기의 제도는 토지의 사유(私有)에서 기인한다."(和田一郎, 「朝鮮の土地賣買の證書たる文記の沿革」, 『朝鮮及滿洲』 155號, 朝鮮及滿洲社, 1920,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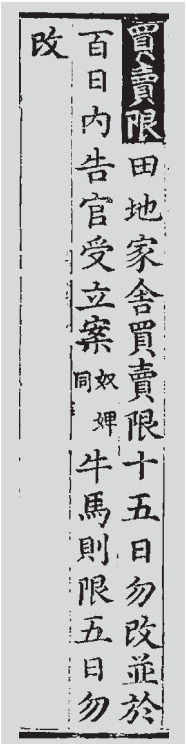
3 소유관계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재화의 종류는 물론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배정도 및 내용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 만큼 소유관계에 대한 연구에는 실증사료를 바탕으로 함이 기본이 된다(이종길, 「한국사회의 소유권 형성과정에 대한 일연구」, 『법사학연구』 제19호, 한국법사학회, 1998, 54~55쪽 참조).

제는 일제시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아울러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전존하는 거래 관련 고문서의 분석을 통해 거래 관행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4] 현재까지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문서에 근거한 거래 관행 조사와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수원 지역의 토지 소유 및 거래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산일, 부족 등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미진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 차원에서 토지주택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중 수원 지역의 토지 거래 내용이 기록된 토지 매매명문을 대상으로, 이들에 기재된 다양한 기재사항의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거래 관행의 실태 및 토지 소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토지 소유관계는 실제 토지 거래를 통해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전제에서 문서를 통해 토지 거래의 관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수원 지역의 토지 소유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의 거래 관행

조선시대의 거래생활은 구두(口頭)로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문(明文) 등의 계약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사용되었던 토지 거래문서를 '명문'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어의적으로 '밝히는 글'이라는 뜻의 차자표기(借字表記)로서 지금까지 단순하게 '계약서', '증서(證書)'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은 단순한 '증서' 로서의 범칭이 아니라 매매 등과 같이 일정한 거래의 내역을 문서작성의 관습적 투식에 따라 기록하여, 어느 한 일방(방매인 : 放賣人 등)이 상대방(매득인 : 買得人 등)에게 교부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특정하여 말한다. 조선시대의 주요 재산이었던 토지와 노비, 집은 물론 배, 염전, 미역밭, 어전(漁箭), 어장(漁場)과 소 · 말 등의 가축, 각종

4 조선시대 토지제도 및 소유, 거래문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연구가 있다. 平木勘太郎 著, 『韓國土地所有權ノ沿革ヲ論ス』, 內閣不動産法調査會, 1907; 『土地調査參考書』, 度支部 編, 1909; 和田一郎, 『朝鮮土地 · 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1920;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 改造社, 1937; 周藤吉之, 「朝鮮後期の田畓文記に關する研究」 1 · 2 · 3, 『歷史學研究』 第7卷-第7 · 8 · 9號, 1937; 麻生武龜,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 中樞院調査課, 1940; 朴時亨, 『조선토지제도사』, 1960; 朴秉濠, 『韓國法制史特殊研究 -李朝時代의 不動産賣買及擔保法-』, 韓國研究圖書館, 1960;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知識産業社, 2000; 姜晋哲, 『韓國土地制度史』 上,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5; 千寬宇, 『韓國土地制度史』 下,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5; 金玉根, 『韓國土地制度史研究』, 大旺社, 1980; 金泰永,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知識産業社, 1983; 李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 一潮閣, 1986;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李在洙, 『朝鮮中期 田畓賣買研究』, 集文堂, 2003; 朴魯昱, 『朝鮮時代 記上田畓의 所有主 研究』, 景仁文化社, 2005; 최윤오, 『조선후기 토지 소유권발달과 지주제』, 혜안, 2006; 이정수 · 김희호, 『조선후기 토지 소유계층과 지가변동』, 혜안, 2011. 이 외에도 수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다.


買賣限田地家舍買賣限十五日勿改並於
百日內告官受立案奴婢同
牛馬則限五日勿
改

입안제도를 규정한 『경국대전』, 「호전」, 매매한

집기 등이 모두 '명문'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사고팔고, 저당 잡히고, 교환하고, 빌려주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매매명문은 일정한 기재사항이 있어 먼저 매도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쓴 다음, 본문에는 매도인이 왜 파는지 그 이유를 쓰고,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이 되었는지 그 권리의 내력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가옥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그 소재와 동서남북의 표시(예컨대 매매할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동쪽은 무엇, 서쪽은 무엇 등)인 사지(四至) 또는 사표(四標)를 쓴 다음, 매매 대금과 매도한다는 뜻 등을 쓰고,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증인, 대서인이 각각 서명하였다.[5] 현대사회에서 집을 사고팔 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듯이 당시에도 거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두어 거래 당시는 물론 거래 이후의 문제 발생 시에도 바름을 확인하고 가릴 수 있는 증거로 삼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매매계약은 지금과는 달리 상호간에 명문을 한 장만 작성하였고, 작성한 명문과 기존 거래 목적물에 관련된 권리문서를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다.[6]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규정한 바대로 토지와 노비의 거래 후 15일(가축은 5일)이 지나게 되면 그 거래를 다시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생활의 문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래가 있은 후 100일 이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안(立案 : 거래 공증서)을 발급받도록 하여 거래내용의 관청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차후 예견되는 분쟁 시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였다.[7] 아울러 입안을 받으려면 수수료인 백지(白紙)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질지[作紙]'라고 했다. 질지는 와가(瓦家) 1칸[間]에 백지 1권, 초가 1칸에 10장, 전답 1부(負)에 1권씩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토지나 가옥의 부수(負數)나 칸수[間數]가 아무리 많더라도 20권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8] 그러나 입안의

5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183쪽 참조.

6 간혹 예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의 토지권리 증서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거래가 성립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일제의 조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170】「토지 소유권이전의 방식에 관한 건」(대정 4년〈1915년〉 12월 3일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조회, 동년 12월 25일 조추(朝樞) 발(發) 제209호 정무총감 회답)

○ 요지(要旨)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는 신문기(新文記 : 거래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구문기(舊文記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예전 거래계약서 일체)를 첨부하여 수수함을 통례로 하고, 구문기만을 수수함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임.

7 『경국대전』, 「호전(戶典)」, 매매한(買賣限) 참조. "田地家舍買賣限十五日勿改 並於百日內 告官受立案 奴婢同 牛馬則限五日勿改."

8 박병호,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43쪽 참조.

관행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입안 수수료의 부담, 행정력의 약화 등으로 점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입안의 부분적인 기능을 계승한 입지(立旨)라는 새로운 대안책이 마련되어 공사(公私)간에 행용되게 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사족(士族)들은 거래행위에 직접 나서는 것을 체면상의 이유로 꺼렸다. 이에 따라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와 능력이 뒷받침되었던 양반은 상전(上典)의 자격으로 가노(家奴)에게 일종의 위임장인 배자(牌子)를 주어 거래행위를 하게 하였다.[9] 노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거래행위의 실제적인 주체는 사족 자신들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청원서의 제출 및 소송의 진행에서도 가노에게 대신 행하게 하였다.[10]

2. 수원 지역 토지 거래문서의 개관

현재 토지주택박물관에는 총 144점의 수원 지역 토지 거래 관련 고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11] 그 가운데 토지 매매명문은 123점, 토지 거래 관련 위임장인 배자(牌子)가 14점, 결복기(結卜記) 1점, 다짐[侈音] 1점, 발괄[白活 : 立旨] 2점, 별급문기(別給文記) 1점, 소지(所志) 1점, 수기(手記) 1점 등이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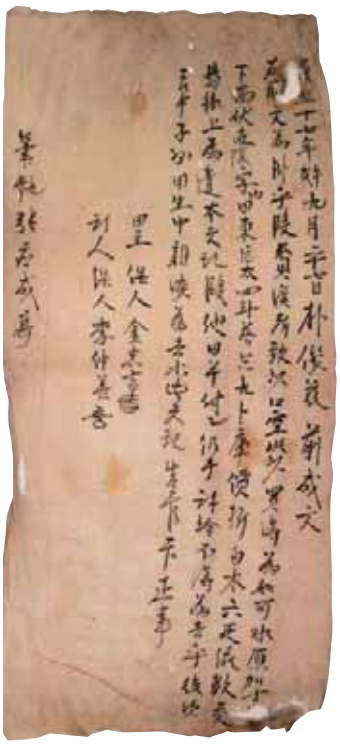
분석대상인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은 총 123점으로, 작성시기는 1678년 9월부터

9 조선시대 토지나 주택거래의 위임장인 '배자(牌子 : 牌字)'는 다른 말로 '배지(牌旨)'라고도 하였다. 특히 배자(牌子)의 독법(讀法)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인 『진람(震覽)』(가람古 903-J563)이라는 책의 조선시대 이두(吏讀) 용어편에 그 설명이 있다. 즉 "패자(牌子) 비ᄌᆞ ○ 존자(尊者) 작서우비자(作書于卑者) 위지패자(謂之牌子)"라고 하여 "'패자(牌子)'는 '배자'로 읽는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일컬어 배자라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자인 '패(牌)'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종이 문서일 경우에는 '배'라고 관습적으로 발음하였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성들이 노비에게 써 준 부동산 거래의 한글위임장에도 패지, 패자는 '배지, 배자'로 기재되고 있다.

10 참고로 노비에 거래를 위임하면서 교부하는 배자(牌子) 혹은 배지(牌旨)의 위임장 성격이나 집사격인 노비들의 수임인 성격을 부정하는 다음과 같은 일제시기 조사내용이 있다(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9~11쪽 참조).
【5】「양반이 노복에게 맡기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에 관한 건」(명치 42년〈1909년〉 6월 29일 구대심원조회, 동년 8월 5일 제5호 법전조사국 회답)
○ 요지 1. 종래 양반계급에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노명(奴名)으로써 문기(文記)를 작성하고 그것에 구문기를 첨부하여 대금과 맞바꾸면서 매수인에게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2. 부동산매매를 위해 노복에게 교부한 배지(牌旨)는 위임장이 아니다. 3. 배지의 교부를 받게 된 노복에게 특별한 수권행위(授權行爲)가 없는 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 한다.

11 현재까지 정리되어 목록화된 부분에서 발췌한 수원 관련 거래문서이다. 미정리분에 대한 지속적인 목록화 작업이 이뤄질 경우 보다 다양한 문서들이 발굴될 것으로 사료된다.

12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 지역 토지 거래관계 문서에 한하여는 토지주택박물관에 가장 많이 소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여타 시권(試券) 1점, 산소제수기(山所祭需記) 1점 등 소수의 문서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조선 후기 토지 거래와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언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운 이종학 선생의 수집자료 중 수원 지역 관련 토지 거래문서가 40여 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사정상 논지전개에서는 토지주택박물관 소장자료만을 대상으로 함을 밝힌다.



1678년 토지 매매명문



1910년 토지 매매명문

1910년 2월까지 230여 년간의 시차를 두고 분포되어 있는데, 17세기가 4점, 18세기가 26점, 19세기가 85점, 20세기가 7점, 간지(干支)로 연대가 기재되어 시기 미상인 것이 1점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원 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간혹 직산(稷山) 지역이지만 수원의 월경지(越境地)에 해당하는 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례들이 5건 발견된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 중 가장 이른 것은 1678년(강희 17) 9월 27일에 전주(田主) 보인(保人) 김충길(金忠吉)이 박준발(朴俊發)에게 밭을 파는 문서이다.[13] 보인은 군포(軍布) 납부관계 등에서 등장하는 명칭으로, 보인 김충길은 빈한(貧寒)한 까닭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사들였던 수원 가사하면(加士下面)에 소재한 음자(陰字) 밭 중 동편 콩밭 4마지기(결부수로는 8부)를 백목(白木) 6필(疋)을 받고 박준발에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늦은 1910년(융희 4) 2월 17일의 것은 정주사의 사내종인 일천이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수원 현암면(玄巖面) 인광리평(仁光里坪)에 소재한 면자(綿字) 논

13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98번.

20마지기(결부수 18부)를 엽전 1만 2,000냥을 받고 송주사댁 노 석쇠에게 매도하고 있는 문서이다.[14]

이 양자에서 보다시피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문서에 기록해야 할 기재사항인 연월일, 거래당사자, 대상물의 표시, 가격 등에 대한 기록은 물론 기재형식과 문서의 외형적인 전체 윤곽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시차가 230여 년이나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즉 토지 거래상 거래당사자의 직역, 신분이나 지불수단인 화폐의 종류, 거래가격 등등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 매매명문은 유물상의 외형적 현상(現像)은 물론 기재된 사항들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야만 당시 거래 관행의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관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의 기재사항과 거래 관행

1) 거래시기와 매득인 정보 기재

우선 명문의 가장 첫 부분인 문서의 우측 끝에는 명문을 작성한 연월일이 기재되는데, 그중 연도는 관행적으로 중국의 연호와 간지가 함께 기재되었다.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명문들을 살펴보면 연대표기에서 중국연호 및 연차(年次)와 함께 간지를 병기(倂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대표기의 다른 유형은 중국연호와 연차만을 기재하거나, 간지만을 기재하거나, 명문 작성시기에 재위하고 있는 조선 국왕의 즉위후 연차로서, 즉 '상지~년(上之~年)' 혹은 '당저~년(當宁~年)'으로 표기하기도 하고,[15] 갑오개혁기 이후에는 '개국~년(開國~年)' 또는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년(光武~年)', '융희~년(隆熙~年)'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연호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거래문서인 명문이 가지는 시간적 효력의 범위에서 간지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틈에 대한 보완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한정해 본다면 중국연호는 일종의 절대연도였다. 조선시대에서 하나의

14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67번.

15 저(宁)는 『이아주소(爾雅注疏)』, 석궁(釋宮)에 곽박(郭璞)의 주석에 "人君視朝所宁立處"라 하여 "임금이 조회를 볼 때 서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 곧 임금을 피휘(避諱)하여 명명한 단어로 당저(當宁)라고 하면 현재의 임금을 말한다.

중국연호는 최소 몇 개월에서부터 최대 6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16] 명문에 간지만 쓰지 않고 중국연호를 함께 쓰는 이유는 향후 60년, 즉 일주갑(一周甲)의 기간에 동일 간지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명문 작성시기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60년 이상이 지나더라도 중국의 연호를 통해 거래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월 · 일의 기재에서는 월일자(月日字)를 단순히 '一, 二, 三 ……'을 이용해 기재하거나, 이른바 '갖은자'라고 하는 '壹, 貳, 參……'을 이용하여 기재하였다.[17] 즉 갖은자는 획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 · 변조가 어렵고, 위 · 변조를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 판별하기 쉽다. 예를 들어 명문을 작성하여 거래하는 시점을 "12월 25일"로 표기할 경우, 그 기재 방식은 "十二月 二十五日"이라고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갖은자를 사용하여 기재하면, "拾貳月 貳拾伍日"이 되는 것이다.[18]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중국연호와 간지를 빠짐없이 병용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곧 간지만으로 거래연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한다.[19] 간지만으로 연도를 표기한 사례[20]와 중국연호만 기재한 사례[21]는 각각 한 건씩이다. 특히 중국연호와 간지를 병기하는 방식도 '중국연호+간지' 순으로 적고 있으며, 간지를 기재하는 방식은 중국연호를 써내려 오는 방식과 같이 세로로 적는 것도 있지만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주로 세주(細註) 혹은 할주(割註) 형식으로 가로로 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문서의 연대표기에서 간지가 중국연호보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16 조선시대에 중국황제의 집권기간은 최소가 홍희(洪熙) 연간(1425년) 1년 이내이고, 최대가 강희(康熙) 연간(1662~1723년)으로 62년이었다.

17 '갖은자'란 계약서나 공문서 영수증 등의 중요한 문서에서, 금액이나 숫자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쉽게 획을 더하여 고치기 쉬운 원래의 숫자(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등) 대신에 발음은 동일하되 획수가 많고 복잡한 다른 의미의 한자(壹, 貳, 參, 肆, 伍, 陸, 柒, 捌, 玖, 拾, 佰, 阡 등)를 빌려 쓰고 원래의 숫자처럼 읽기로 사회적으로 약속한 글자를 말한다.

18 이 외에도 간혹 별칭(別稱)을 사용하여, 음력 1월의 경우는 정월(正月) 혹은 원월(元月), 11월을 지월(至月)로 표기한다든가 초하룻날을 초일(初日) · 삭일(朔日)로, 보름을 망일(望日), 열엿샛날을 기망(旣望), 스무날을 염일(念日), 그달의 마지막 날인 그믐날을 회일(晦日)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자(日字)의 기재에서는 그달의 1일부터 10일까지는 거의 예외 없이 '초(初)' 자를 앞에 붙여서 '初一日', '初十日' 등으로 기재하였고, 11일째 되는 날부터는 '초(初)' 자를 빼고 기재하였다. 또한 예컨대 24일, 31일 등의 일자는 각각 20과 30을 나타내는 한자인 입(卄), 삽(卅)을 사용하여 24일(卄四日), 31일(卅一日)로 표기하기도 했다.

19 특히 연호가 바뀐 당해 연도의 경우에는 모두 '도광원년(道光元年)' 등으로 기재하여 원년(元年) 표기를 상용화하고 있다. 아울러 연도표기의 별도사례로서 현재 국왕의 재위 연차를 기록하는 방식인 '상지~년(上之~年)'이라든가 '당저~년(當宁~年)' 등과 같은 양식의 표기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427번 참조. 거래연도를 간지로만 기재하고 있는 유일한 토지 매매명문이기에 소개하지만, 간지만으로 거래연도를 적은 이유를 해당 명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문서상에 연도를 기재할 때 교지(敎旨)와 같은 임명장이나 외교문서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랭되었던 명청교체기나 병자호란 전후시기 등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만으로 연호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유지영, 「조선시대 임명 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103~107쪽; 손승철, 「명 · 청교체기 대일본외교문서의 연호와 간지」, 『대동문화연구』 제3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7, 152쪽 참고).

21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2389번 참조.

간지만 표기	연호만 표기	간지의 세로 표기	간지의 가로 표기 (우→좌) 午甲; 甲午	간지의 가로 표기 (좌→우) 庚辰
				
005427번	002389번	005428번	005466번	005517번

중국연호와 병기하는 간지의 표기 방식 사례

사실을 반영해 준다.[22]

거래연도뿐만이 아니라, 월일의 기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즉 일자(日字)를 비워 두는 관행이다. 위 그림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보다시피 일자를 기록할 곳에 해당 날짜의 수(數)를 표기하지 않고 비워 두는 경우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경우 토지 매매명문에는 월자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날짜, 곧 일자를 비워 두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24]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도 일자를 비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래일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자를 비우더라도 매수인 측의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비우지 않고 기재한다는 사실이 전매(轉賣)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득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상태로는 해당 명문으로 타인에게

22 이에 대해 일본학자들은 중국연호의 주도적 사용이 단순히 사대사상(事大思想)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今西 龍, 「朝鮮半島國の年號 – 附 事大主義一斑」, 『高麗及李朝史研究』(今西春秋 編, 國書刊行會, 1974, 159쪽 이하 참조).

23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71쪽 참조.

24 사실 문서에 일자를 관행적으로 비워 두는 것은 몇 가지 종류의 고문서가 지니는 공통된 특징인데, 이는 주로 소지(所志) 등의 청원서에서 동일한 기재양상이 발견된다. 민간의 청원인이 소지를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할 경우 그 연도의 간지와 해당 월까지는 기록을 하는데, 일자는 대개 비워 두고 '일(日)' 자만 기재하고 마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예를 들면 "임자 칠월 일(壬子 七月 日) 소지(所志)"와 같은 형식이다. 명문의 경우 그 전존수량 가운데에 일자를 비워 두는 사례는 조선의 말기적인 현상이며, 예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소지의 경우는 오히려 일자를 비워 두는 것이 원칙이고,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넘겨 전매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문기(新文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자만을 비워 둔 경우를 곧바로 전매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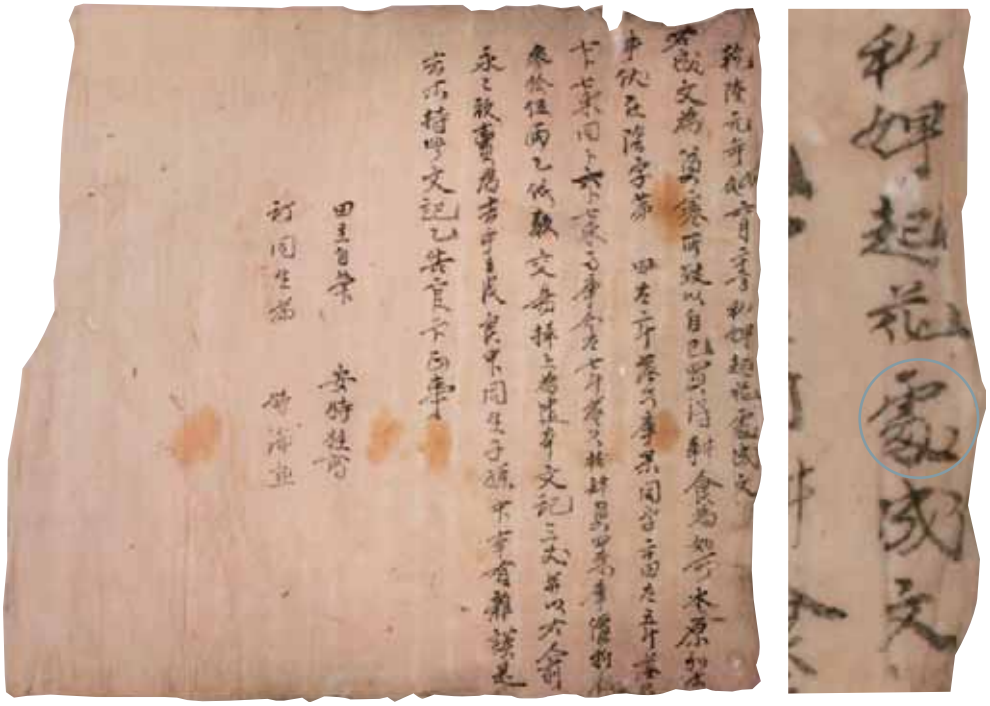
연월일 기재 다음에는 해당 명문을 수취하는 상대방 측 관련 정보가 기재되었는데, 그 거래가 매매일 경우에는 매득인(買得人 : 지금의 買受人)의 정보가 기재되었다.[25] 단순히 성명을 적거나, 친인척 간의 거래일 경우 촌수 및 친인척의 칭호, 매득인이 노비일 경우 노비명(奴婢名) 혹은 그에게 거래를 위임한 상전(上典)의 성명이나 택호(宅號) 등이 병기되었다. 매득인의 성명 등을 적는 부분은 매득인과 방매인 사이의 관계 및 기타 여러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다양한 기재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중 하나이다. 즉 매득인에 대한 표시는 성명, 신분+성명, 친인척 칭호(+성명), 택호, 택호+노비명 등의 양식을 기본 틀로 하여 복합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매득인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다. 특히 '김생원댁 노 돌쇠' 처럼 '택호+노비명' 의 기재방식은 토지 · 가옥 등을 매매할 때 사대부 내지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양반 등이 자기의 성명을 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기피(忌避)하는 풍조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명문에 표시되는 방매인, 매득인은 '모댁 노모(某宅 奴某)' 혹은 단순히 '노모(奴某)' 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의 계약당사자는 명문의 노비가 아니라 그 주인인 상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6]

그리고 명문의 수취인 다음에 붙는 '~에게'라는 의미의 전(前), 처(處), 여해[亦中], 상(上) 등의 부사격조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은 주로 방매인보다 높은 신분이나 지위의 사람에게 쓰는 존대(尊待) · 공손 혹은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는 그 반대의 경우로 하대(下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27] 조선 전기 명문에서도 '전'과 '처'는 용례에서 존비의 구분이 확연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 원칙이 무너지고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작성된 위임장인 배자를 분석해 보면, 상전이 소유재산의 거래행위를 노비에게 일임할 때 배자의 문두에 "노 아무개 처"라고 거의 예외 없이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처'는 문서의 발급자보다 수취자가 신분적으로 아랫사람인 경우에 하

25 현재는 일제시기 법률용어의 영향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에 '매매(賣買 : 팔고 사다)' 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매매(賣買)를 '매매(買賣 : 사고팔다)' 라고 표기하였다.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다 판다."는 뜻으로 '방매인(放賣人)' 이라고 불렀고, 매수하는 사람은 "사들인다."는 의미로 '매득인(買得人)' 이라고 불렀다. 매매(買賣), 방매(放賣), 매득(買得) 모두 우리나라에서 『경국대전』과 각종 공사(公私) 문서에 사용된 고유 한자어이다.

26 박병호, 『한국법제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19~20쪽 참조. 그러나 이를 단순히 양반 혹은 사대부 계층의 체면 때문에 노비를 이용하여 자신 대신에 전답을 매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신분이나 체면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노비를 소유할 수 있는 재산적 여유의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다(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02쪽 참조).

27 『광해군일기』 57권, 광해군 4년 9월 28일 기미. 김시헌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장관(將官)들은 우리나라와 대등한 아문이 아니면 감히 대등한 예로 이자(移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난을 겪은 이후로는 직급이 낮은 아문이 속속 이자하고 있으니 이미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 진강(鎭江) 중군(中軍)이 이자(移咨)한 것을 보니 첫머리에 '처(處)' 자가 있는바 말뜻이 불손하여 몹시 통분스럽습니다."



매득인 측에 '처(處)' 라고 쓴 토지 매매명문

대의 의미로 붙이게 되는 부사격조사로 관념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시작 부분에서 '~에게'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거의 모두 '전(前)'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단 한 장만 '처(處)'라고 표기하고 있다. 1736년(건륭 1) 6월에 작성된 이 명문은 전주(田主)인 안시주(安時柱)라는 사람이 수원 가사곶면에 소재한 음자(陰字) 콩밭[太田] 14부 4속인 곳을 전문(錢文) 35냥을 받고 사비(私婢) 기화(起花)에게 방매한 것이다.[28] 안시주는 전주자필(田主自筆), 즉 밭 주인이면서 자신이 직접 필집(筆執)으로 나서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정황상으로 그는 양인(良人)으로 보이며 양인이 천인(賤人)인 기화에게 밭을 방매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방매이유는 빈한소치(貧寒所致), 즉 춥고 배고파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지만, 신분적인 차이로 '전(前)'이라는 표현 대신에 '처(處)'를 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8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25번.

2) 방매이유와 권원(權原)의 기재

다음으로 해당 거래대상인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를 기재하게 되며, 방매인 측에서 이를 소유권을 가지게 된 연유, 즉 권원(權原)을 기재하게 된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방매이유와 권원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9건이 있을 뿐,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방매이유와 권원을 기재하고 있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도 방매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은 주로 "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는 취지의 요용소치(要用所致) 69건, 긴용소치(緊用所致) 11건, 별유용처(別有用處) 등 상세하지 아니한 대략적 표현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더욱이 방매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8건이나 있어서 조선 후기의 토지 거래 시 방매이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방매이유를 상세히 적고 있는 경우가 간혹 몇 가지 있기는 하다. 즉 과녀(寡女)인 최조이(崔召史)가 "자신이 70세로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年爲七十不勝飢寒勢 不得已)"라거나,[29] 동성육촌(同姓六寸)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친척끼리는 "부모님의 상사로 인해 얻은 빚을 갚을 길이 극히 어렵다(父母喪事喪債備納 極爲所難)."거나,[30]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을 변통할 방법이 없다(災年生道辨道無路 故不得已)."거나,[31] "빚을 갚아야 될 시점(適有報債事)"이라거나,[32] "상전댁에서 소유한 토지농장을 이매하려(上典宅田庄 移買次)" 한다는[33] 등이었다. 이러한 상세한 방매이유 기재의 사례들은, 곧 토지 소유나 거래의 배경과 상황을 비롯하여 방매인과 매득인의 관계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안시주가 작성한 토지 매매명문에서 자신의 콩밭을 사비(私婢)인 기화에게 방매하면서 빈한소치(貧寒所致), 즉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한 것도 당시의 토지 거래행위들이 이미 신분의 고하를 뛰어넘어 개인의 구체적인 재정적 · 경제적 문제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29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61번.
30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085번.
31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084번.
32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0317번.
33 이매차(移買次)' 란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목적에서 해당 토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지에 있는 소유토지를 매각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먼 곳의 "다른 토지를 팔아 가까이 있는 토지를 옮겨서 사들이기(移買)위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이매차' 라는 방매이유는 타 지역에서 근거리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여 집적함으로서 결국 대토지 소유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러나 수원 지역에서는 이매차라는 방매이유가 총 9건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들의 매득인 측이 정참판댁 혹은 정생원댁으로 나타나는 미미한 정도의 정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매차라는 방매이유를 기재한 방매인 측은 한 가문으로 집중되지 않고 있어서, 대토지를 집적하고 있는 정황은 소략한 해당 문서만로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매이유 다음으로 기록하는 사항은 바로 해당 토지의 권원(權原)이다. 명문에 기재되는 사항 가운데,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즉 재산의 소유권이 어디서부터 유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권원'이다. 권원은 거래목적물이 '지내온 내력'이라는 의미에서 소종래(所從來)라고 쓰거나 전래사유(傳來事由)라는 말을 차용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명문에 기재되는 권원에는 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가 있다.

첫째, 권원이 매득(買得)인 경우, 이는 해당 재산을 매매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매득인이 방매인에게 대가(代價)를 지불하고 해당 재산의 현물(現物) 및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매득의 표기는 단순히 '매득'이라고만 적는 경우는 드물며, 거의 모두 '매득경식(買得耕食)'이라는 표현으로 고정화되어 나타난다. 매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들였다."는 소유권 이전(移轉)의 개념이고, '경식(耕食)', 즉 "갈아먹는다."라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지배나 이용 범주에 속하여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해당 재산, 특히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현실적인 지배상태의 합법정당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조선시대에 사용된 것이 '매득경식'인 것이다. 이는 근대 민법에서 사용하는 '소유'나 '점유'라는 추상적인 용어 대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형태(利用形態)'로 표현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면이다. 토지재산이 관념적 가치로서 파악되지 않고 구체적 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소유의식(所有意識)도 토지의 사용가치에 중점을 둔 '이용(利用)'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34] 즉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35]이라고 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말처럼 전통사회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하여 그 소출을 자신이 섭취하고 소비하며 이용한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36]

둘째, 권원이 친인척 간 증여(贈與) 혹은 상속(相續)인 경우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용어로 전래(傳來)·화회(和會)·깃득[衿得]·별급(別給) 등으로 명명하는데, 주로 혈연관계 혹은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매개로 하여 혈연(血緣)상의 직·방계 존속에서 비속으로 재산

34 이처럼 재산이나 권리의 직접 지배형태를 표현한 주요 용례와 논의는 박병호, 『한국법제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200~201쪽 참조.

35 仁井田 陞, 『中國法制史硏究』 -土地法·取引法-, 東京大學出版會, 1960, 216쪽 이하 참조.

36 김남두 편, 『재산권 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1993, 23쪽. 경식(耕食)과 관련하여 서양에서는 J. Locke가 『시민정부론』의 제5장에서 재산권에 관하여 논하면서, "그의 신체의 노동과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바로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 공급해 준 대로의 상태로부터 끄집어 낸 것은 무엇이건 간에 그가 자신의 노동을 섞은 것이며, 또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것을 결합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하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부터 끄집어 낸 것이므로, 그의 이 같은 노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유 권리를 배제해 버리"는 것이라 하였다.

권이 무대가(無代價)로 이전된 경우이다.[37] 전득의 표현도 매득의 경우처럼 '경식(耕食)'과 붙어서 '깃득경식[衿得耕食]' 혹은 '전래경식(傳來耕食)' 등의 복합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 권원을 표기한 것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매득인데 매득, 자기매득(自己買得), 매득경식(買得耕食) 등으로 표현된 54건이며, 그 외 상속과 증여의 경우가 전래(傳來), 조상전래(祖上傳來), 조상전래 깃득경식[祖上傳來 衿得耕食], 깃득경식[衿得耕食], 부모매득경식(父母買得耕食), 부주생시 매득경식(父主生時 買得耕食), 시가전래(媤家傳來), 자기매득경식(自己買得耕食)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권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38건이다.

3) 거래 대상지역에 대한 표기

일반적으로 방매이유나 권원에 대한 기재 다음으로는 거래대상인 토지가 어느 부(府)·목(牧)·군(郡)·현(縣)에 위치하는지, 즉 소재지를 기재하게 된다. 조선시대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통상 소재지역에 대해 맨 처음 군현 단위를 쓰고, 면(面), 리(里)·동(洞)을 쓰고 그다음으로 곡(谷)·원(員)·평(坪) 등의 세부지명에 대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의 토지 매매 등의 거래가 원격지에 있는 사람 간에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동일한 군현 단위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거나 거래목적물인 대상 토지에 대한 군현 단위의 지역명이 거래의 쌍방 간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군현의 명칭을 명기(明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 나타나는 거래 대상지역은 수원이 118건으로 단연 많고, 그 외 5건이 직산군(稷山郡)의 군명(郡名)으로 나타난다. 이곳은 직산군의 소속이지만 수원 지역에 지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월경지(越境地)로서 『조선지도』의 수원부지도에는 '직산지(稷山地)'라고 표기되어 있다.[38] 당시 매매되고 있는 사례들인 것이다. '수원

37 참고로 친족 간 상호 증여나 상속을 통해 전해지는 가산(家産)을 나타내는 용어로 '조업(祖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재산의 총칭이다. 그중에서 토지·가옥·노비가 조업의 주요 구성부분이며, 이러한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자손에게 전(傳)하여야 하는 것이 당시 재산상속법의 기본사상이었다(鬼頭兵一, 『李朝の財産相續法』,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1935, 7쪽 참조).

38 월경지(越境地 : 飛地)는 군현 구역이 하나로 소속 고을 경내(境內)에 있거나 접경(接境)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개재하는 다른 고을의 영역을 넘어서 따로 위치하면서 소재읍의 지배를 받지 않고 떨어져 있는 소속 읍의 지배를 받는 지역을 말한다. 직산지(稷山地)가 수원에 소재해 있는 것은 어느 시기에 어염과 해산물, 조운(漕運) 등의 관계에서 월경지로 설정,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증보문헌비고』 등 참조). 월경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일조각, 1989, 146쪽 이하 참조.



『조선지도』에 기록된 가사면(佳士面) 가산면(加山面)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하천 하구와 해안가에 '직산지(稷山地)' 라는 표기가 발견된다.

(水原)' 이라고 지역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 중에는 '가사면(佳士面)' 이 가장 많은 77건을 차지하는데, 가사면(佳士面), 가사면(加士面), 가사곶면(加士串面), 가사곶면(佳士串面), 가살곶면(可乭串面), 가사을곶면(佳士乙鹿面), 가사면(可仕面)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타 지역의 거래 대상지역 명칭에 대한 표기는 1~2가지의 이칭(異稱) 혹은 이형표기(異形表記)가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수원 지역의 가사면은 5가지의 이형표기가 있어 흥미롭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감암면(甘巖面 : 甘岩面) 15건, 남곡면(南谷面) 4

건, 남면(南面) 5건, 포내면(浦內面) 2건, 광덕면(廣德面) 2건, 갈담면(葛潭面) 5건, 현암면(玄巖面) 1건, 갓등면(舡等面) 1건, 사정면(奢井面) 1건, 동면(東面) 1건 및 직산의 월경지는 안중면(安中面 : 安仲面) 5건이다.

면 단위의 기재 다음에는 리(里)·동(洞)을 쓰는데, 수원 지역에서는 면 단위를 기재하지 않고 계두리(鷄頭里), 사명리(士明里)라고 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며, 수원 가사면에서 관동(鸛洞), 직산 지역에서는 도대리(道岱里 : 導岱, 導代里, 道代里 등), 안중리(安中里)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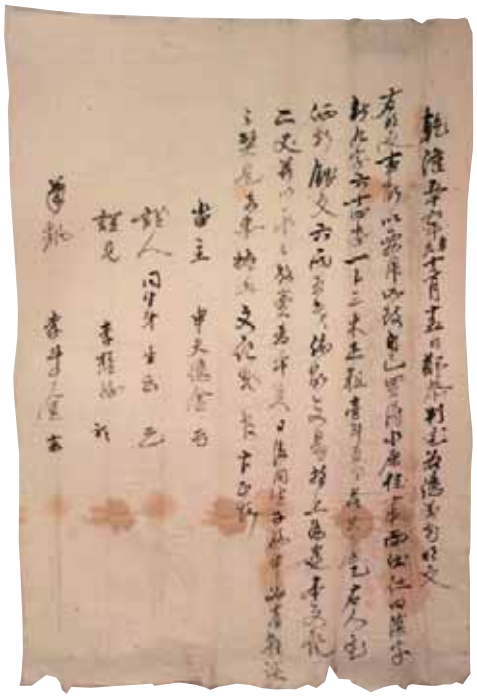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곡(谷)·원(員)·평(坪) 등을 적게 되는데, 수원 지역 명문에서는 우산(牛山) 문곡(文谷) 혹은 간략히 문곡(文谷), 마정평(馬井坪), 정기곡(正基谷)이라고 쓰고, 현암면에서 인광리평(仁光里坪) 혹은 인광전평(仁光前坪) 등으로 쓰고, 갈담면에서 세곡(細谷)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자주 쓰이는 평(坪)이라는 지명표기는 원(員)과 함께 지형상 들판을 가리킬 때 쓰인다. 그러나 지역명 표기에서는 주로 "~원(員) ~평(坪)"이라고 기재되어 원이 평보다 비교적 상위 혹은 광범한 표현으로 쓰였다.[39]

4) 토지의 표시

거래 대상이 토지일 경우 조선시대에는 그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 두락수(斗落數)·일경·결부수), 사표(四標) 등을 기재한다. 자호는 양전(量田 : 토지 측량) 시에 매긴 천자문 순번으로, 토지 측량의 결부가 5결(結 : 100짐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일 경우 한 자(字)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현 단위로 실시된 양전사업의 결과 산출된 천자문 자호는 해당 군현 또는 도(道), 전국의 총결수, 즉 결총(結總)을 가늠할 수 있는 용이한 방안이 되었고, 지번과 함께 특정 필지의 토지가 양안상 등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명문상의 필수 기재요소가 되었다. 지번 혹은 제차(第次)는 자호의 하위단위로 측량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금의 필지(筆地), 즉 구획의 순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지목은 토지의 종류로서 논(畓)과 밭(田) 등으로 구분되며, 지적은

39 "大野曰平 廣平曰原 高平曰陸 大陸曰阜 大阜曰陵 大陵曰阿"(『이아주소(爾雅注疏)』 참조). 이러한 의미라면 조선시대에서 쓰이던 원(員)이라는 지명은 아마도 광평(廣平)의 의미인 '원(原)'의 글자를 음차(音借)하여 간단하게 '원(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래 '평(坪)'이라는 한자는 '평(平)'의 속자(俗字)로 평원(平原), 즉 넓고 평평한 들판을 뜻한다. 명대(明代)의 『정자통(正字通)』에는 평(平)에 대한 풀이 중 주석에 "平地平處 …… 今讀若平 義同 本借平 俗作坪"이라고 하여 평(坪)이 평(平)의 속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員)은 들판의 의미에서 평(坪)보다는 한 단계 더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볼 수 있겠다(員〉坪). 실제 토지 매매명문에서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표현에서는 원을 평의 앞에 적어 원이 평보다 더 큰 지역명칭임을 알 수 있다.

주로 파종량 또는 일경(日耕)으로 하는데 전자를 두락지(斗落只 :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전답면적의 단위로서 한 말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 후자를 ~갈이(一日耕은 하루갈이, 五日耕은 닷새갈이 따위)라고 한다. 결부수(結負數 : 배미, 야미, 夜味)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확된 곡식 낱알의 부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줄기 전체를 단위로 하여 짚단처럼 묶거나 지게에 짊어지는 양으로 전답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줌[파, 把]'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 농부의 손으로 한 아귀에 곡식의 줄기를 쥘 수 있는 양이 수확되는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10줌이 되면 1뭇[속, 束], 즉 지금 말하는 볏짚 한 단이 되고 10속이 되면 1짐[부, 負], 즉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 된다. 이 '짐'은 사람이 지게를 지고 있는 모양을 가진 글자인 복(卜)자를 써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1부(負)나 1복(卜)은 같은 말이 된다. 그리고 100짐이 되면 1먹[결, 結]이 된다. 이와 같이 수확량을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는 것은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전세(田稅) 부과의 국가적 공식단위로도 사용되었다. 배미는 한 구획 내, 즉 지번 내에서 다시 구획이 나뉠 경우 이를 구분한 것이다. 사표는 '사지(四至)'라고도 하며, 해당 토지의 동서남북에 있는 지형과 토지의 소유주 등을 가리킨다. 대개 토지의 자호, 지번, 지적, 배미, 사표 등은 양전사업의 결과로 작성되는 양안(量案)에 근거하여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구 자호와 신자호가 병기된 토지 매매명문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 거래 대상 토지 표시에서는 자호와 지번을 거의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자호 기재에서는 토지의 매득 이후 토지 측량, 즉 양전이 다시 시행되어 자호가 개정(改定)됨에 따라 구 자호(字號)를 신자호와 병기해 주는 경우까지 발견된다. 즉 "旧 陰字 新 九字 六十四 畓"[40]이라고 표기하여 "예전의 자호로는 음

40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331번.

(陰)자였지만, 현재는 구(九)자인 곳의 64번 논" 이라는 명확한 토지정보를 매매명문에 기재하고 있다.

지목, 즉 토지의 종류는 논이 75건, 밭이 39건이며, 그 외에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지인 시장(柴場), 종전(宗田)이라고 하여 종중 소유의 밭, 진전(陳田)이라고 하여 거래 당해 연도에는 경작하지 않고 묵히고 있는 밭 등이 있다. 해당 전답 중에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표기도 하고 있는데, 대상 토지가 논인 경우에는 벼를 재배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정조(正租)라고 표기하였다. 밭인 경우에는 콩을 재배하고 있을 때에는 콩의 의미를 지닌 한자인 태(太) 혹은 종태(種太), 봄보리를 심고 있을 때에는 춘모(春牟)라고 표기하였다. 다른 지역 명문에서 가을보리는 추모(秋牟)라고 기재하기도 하는데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 가을보리 재배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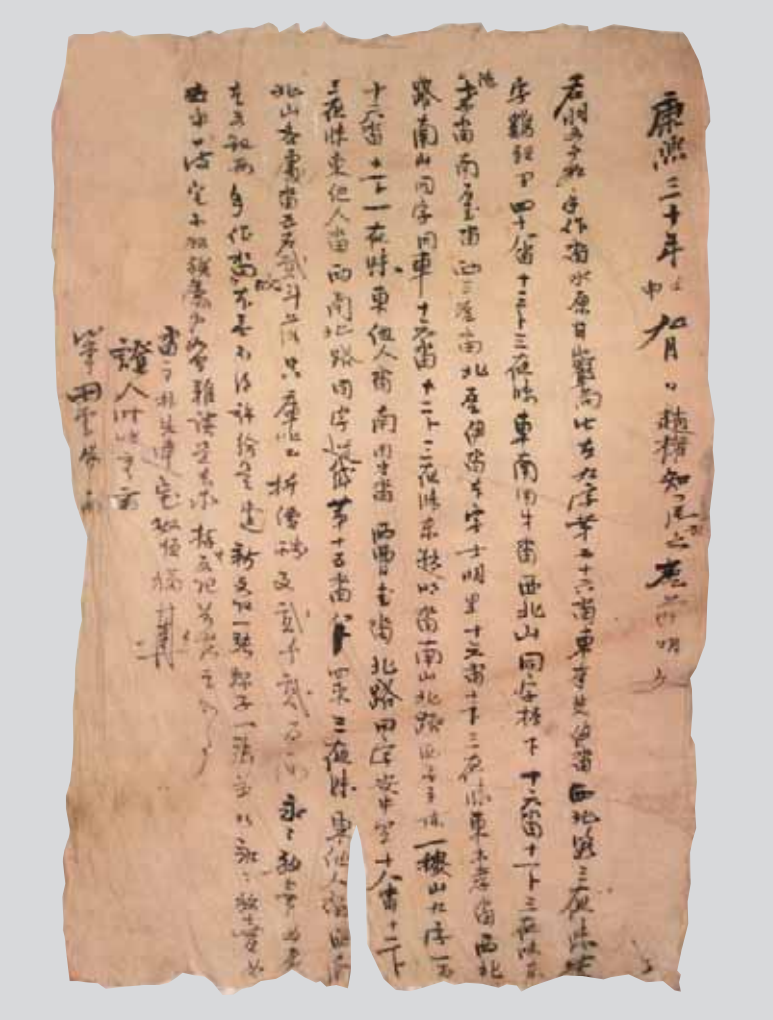
결부와 두락 등의 면적 표시에서 결부의 경우는 '~부(負 혹은 卜) ~속(束)' 으로 표기하고, 두락의 경우에는 '두락(斗落)' 혹은 '두락지(斗落只 : 마지기)' [41]라고 표기하였다. 결부 표기에서는 해당 지번의 면적이 3부 7속인 곳에서 그 지번을 모두 방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2부 7속을 방매할 경우에는 '~畓內 西邊 二負 七束' 이라고 표기하여 방매대상인 부분만 적시하여 기재하였다.[42] 아울러 야미(夜味), 즉 배미라는 토지구획의 단위 기재도 나타나는데, 방매대상인 전답이 하나의 지번 내에 있기는 하지만, 지형적으로 두 구획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2배미[二夜味]라고 기재하였다.

사표를 기재한 예도 간혹 존재한다.[43] 일례로 1691년(강희 30)에 박선달댁의 노 순복이가 조권지댁 노 지돌에게 수원 감암면과 직산 안중리 등에 소재한 총 91부 4속, 마지기로는 5섬 2마지기인 면적의 전답을 2,200냥에 방매하고 있는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해당 전답들에 대한 사표를 일일이 기재하고 있다. 즉 수원 감암면에 있는 구자(九字) 56번 논에 대해서는 "동남 선이 답(東南 先伊 畓) 서북 로(西北 路)" 라고 하여 "동쪽과 남쪽은 선이라는 사람 소유의 논이고, 서쪽과 북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표 기재는 조선 후기 명문에서는 그리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이 거

41 1말[斗]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으면 '한 마지기' , 1되[升]면 '한 되지기' , 1가마니[石]면 '한 섬지기' 라고 불렀다. '되지기' , '마지기' 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되나 말이라는 부피단위에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로 하강의 뜻을 지닌 옛 한글인 '디다' 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말+디다→말지다→말디기→마지기' 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기' 를 한자로 표기할 적에도 '떨어지다' 라는 의미[落]를 첨가하여 차자표기로 '두락지(斗落只)' 라고 쓰고 '마지기' 라고 읽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되지기' 는 '승락지(升落只)' 또는 '되' 라는 발음이 '도' 와 비슷하여 '도락지(刀落只)' 라고도 표기하였다.

42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034번.

43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6번,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5번,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4번,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3번,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2번,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1번,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0번 등 7점이 사표가 기재된 사례이다.



사표가 기재된 토지 매매명문

래대상인 해당 토지의 면적과 거래액수가 큰 경우에는 사표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거래 안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호 · 지번을 비롯하여 사표까지 적극적으로 표기함으로써 토지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기재로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여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의 경우 자호 혹은 지번에 대한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수원 지역, 특히 가사면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거래가액과 지불수단

조선시대 명문에서 거래 시 목적물의 대금을 치르는 지불수단으로는 면포(綿布), 저화(楮貨), 은자(銀子), 우마(牛馬) 등의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다. 우선 조선시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호전(戶典)」 국폐조(國幣條)에서는 포화(布貨)와 저화로 통용하게 하다가, 이후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저화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포화와 전문(錢文)이 혼용되는 시기를 거쳐, 결국에는 주로 전문으로 거래되었다.[44] 1746년(영조 22)에 시행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국폐(國幣)로 동전(銅錢)을 사용한다고 규정해 놓았다.[45]

'전문'은 동전과 같은 금속화폐에 '상평통보(常平通寶)' 등의 글자[文]를 새겨 넣었기 때문에 '글자가 새겨진 돈'이라는 의미에서 명명한 것이다.

가격을 정하는 표현은 '가절(價折)'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값을 치른다는 뜻이다. 예컨대 "가절전문삼냥(價折錢文三兩)"이라고 하여 "전문 3냥으로 (목적물의) 가격을 쳐서" 받는다는 식으로 기재된다. '가절'과 같은 말로 '절가(折價)' 혹은 '결가(決價)'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절'이 '전문 3냥' 등의 금액 다음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1냥은 엽전 100문(文 : 푼 [分])이며, 10문은 1전(戔)이다.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 가장 고액으로 거래된 사례는 1701년(강희 40) 2월에 조권지댁 노 지돌 측이 수원 감암면과 직산 지역의 일부 등 8군데에 소재한 논을 권참봉댁 노 순복 측에 방매하고 있는 것으로서 총 5섬 2마지기, 결부로는 91부 4속인 곳을 전문 3,300냥을 받고 넘기고 있다.[46] 가장 적은 액수를 받고 거래하는 사례는 1833년(도광 13) 수원 가사면 소재 춘모전(春牟田) 1부 1속(마지기로는 2마지기)을 2냥을 받고 방매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 지불수단은 거의 모두 전문이지만, 가장 이른 시기인 1678년(강희 17)의 명문에서는 백목(白木) 6필(疋)로 9부(마지기로는 4마지기) 면적의 콩밭을 거래하고 있는데, 전문 이외의 다른 화폐로 지불하는 것은 이것이

44 거래가액은 경주와 해남 지역에 한하여, 16세기부터 1681년경까지는 주로 목면(木棉)으로 거래되었으며, 그 단위는 동(同)·필(疋)로 표기하나 疋을 匹로 표기한 것도 있다. 가격이 '정조(正租) ~석(石) ~두(斗)'로 표현되는 것은 1682년에 처음 보이고, 1683~1684년에는 간혹 면필이 보이다가, 1685년부터는 전적으로 '정조 ~석 ~두'의 형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1697년에는 은자(銀子)로 기재된 해남 지역의 명문이 있으며, 전문(錢文)으로 기재된 것은 1701년 처음 보이다가, 1707년부터 모두 전문으로 기재되었다. 이는 경북 지방의 1694년 명문에 전문이 사용된 시점과는 10년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전문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 16세기서 17세기 초의 전답매매명문에는 매매가격을 목면(木棉)으로 결정하고, 그에 상당한 물건과 물품으로 거래된 것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그 경우 차액은 다시 목면으로 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이재수, 『조선 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75쪽 참조).

45 "國幣通用布楮貨"(『經國大典』, 「戶典」, 國幣條); "國幣用銅錢"(『續大典』, 「戶典」, 國幣條).

46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05번.

유일한 사례이다.[47]

6) 본문기의 처리

거래 시 새롭게 생성되는 계약문서인 해당 명문을 신문기(新文記), 목적물과 관련한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本文記)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거래 시에는 관행상 방매인 측에서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상대방인 매득인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이유는 방매인이 거래목적물과 관련한 권리문서를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향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이중매매(二重賣買) 혹은 실제 소유자가 된 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도매(盜賣)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목적에서였다. 만약 거래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답이나 재산이 본문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넘겨주게 되면 함께 기록된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증빙을 향후 방매인 측에서 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는 명문, 즉 신문기에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를 "본문기에는 다른 전답의 정보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하고(本文記段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遣) ……" 등으로 반드시 명시해야만 했다. 아울러 해당 거래의 대상물로서 넘겨주지 못하는 그 본문기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나 재산의 경우 기재된 곳에 '효주(爻周)'라고 하여 가위표나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를 하고, 해당 기재처의 뒷면에 효주를 한 이유인 거래사항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배탈(背頉 : 背脫)'이라고 한다.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 주로 '본문기' 혹은 '구문기'라는 표기가 들어있는 것이 123개의 명문 중에서 119건이 있었고, 본문기 처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4건에 불과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할 시에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기재하는 것이 조선시대 일반적인 관행임을 수원 지역 고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기를 넘겨줄 경우, 단순히 본문기의 장수(張數)를 1~4장 기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노(家奴)가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할 경우에는 "본문기와 배자 각 1장을 넘겨준다(本文記一丈 此牌字一丈)." 로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

47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98번. 백목(白木)은 목면(木綿 : 木)의 일종으로 흰 무명베이고, 동(同)은 피륙의 묶음을 세는 단위이며, 대개 50필(疋)을 1동으로 치고 1필의 길이는 35척(尺)에 해당한다. 참고로 정목(正木)이란 곧 정포(正布)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국폐조(國幣條)에 의하면, 5승목(피륙의 날수가 1승이 80가닥이므로 너비 7촌 안에 400가닥이 조성된 포목)의 국가정격 무명베를 말한다. 『대전속록(大典續錄)』, 「호전」, 잡령조(雜令條)에는 공사용면포(公私用綿布)인 정목의 정확한 규격을 승수(升數) 5승(升), 길이 35척(尺), 너비 7촌(寸) 이상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하는 이유로는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 병기되어 있다는 사유(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許給是遣 등)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러 장의 본문기 중 한 장을 특정하여 "강씨로부터 매득한 문서는 분실하였으므로 나머지 3장만 넘겨준다(本文記中 姜可處 買得文書闕失 故旧文記三丈)."라는 기록도 있었다.[48] 그 외 단순분실, 즉 서실(闕失)인 경우 4건, 화재 등으로 분실한 경우인 재서(灾闕)가 1건 있었다.

7) 추탈담보문언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면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기재가 있는데, 이를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거래대상의 권원이나 매매이유에 따라 관련인의 부류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관행적으로 '자손족속(子孫族屬)', '동생형제족속(同生兄弟族屬)' 등으로 범칭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 123건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련인에 대해 기재한 것은 99건이었다. 거기에는 '자손족속중(子孫族屬中)'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동생자손중(同生子孫中)', 단순히 '자손(子孫)', '동생(同生)', '족류(族類)'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가노(家奴)가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할 경우에는 '의상전댁자손족류중(矣上典宅子孫族類中)' 혹은 '댁자손족속중(宅子孫族屬中)'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기도 하였다. 분쟁의 유형을 표현하는 말로는 '잡담(雜談)'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잡담지폐(雜談之弊)', '시비지폐(是非之弊)', '시비지단(是非之端)' 등이 있었다. 분쟁을 해결할 증빙서류인 해당 명문을 지칭하는 말로는 '차문기(此文記)'가 가장 많았고, '차문(此文)', '차문권(此文券)', '차문서(此文書)' 등도 있었다.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관청에 고하여 바름을 변별하라."는 의미의 '고관변정자(告官卞正者)'가 가장 많았는데, 바를 정(正)자는 '正, 呈, 定' 등으로 소리 나는 대로 다양하게 썼으며, '고관(告官)'을 비워 두고 단순히 '증빙할 일'이라는 '빙고사(憑考事)' 혹은 '변정사(卞正事)'라고만 기재하기도 하였다. 특이하게 '빙고상약사(憑考相約事)'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49]

48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42번.

49 일반적으로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에서는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추탈담보문언이 간략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컨대 조선 전기에는 "차후에 자손 동생 중에서 (본 거래와 관련하여) 잡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는 문구가 조선 후기 혹은 말기에 들면서 단순히 "…… 방매하오니 잡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 정도의 수준으로 요약되어 기재된다. 한자로 표기한다면 "此後 子孫同生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辨正爲乎事"이 "雜談則以此文 憑考事"로 간략히 축약되는 것이다. 즉 관청이 판결로서 변별하는 것과 분쟁대상자, 즉 이해관계인 등등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게 되는 것이다.

8) 거래참여자의 표시

기재되고 나면 그로부터 통상 한 줄 정도 띈 뒤 중단 즈음에 거래대상 토지의 주인(主人), 즉 방매인(放賣人), 증인(證人), 필집(筆執) 등 거래참여자에 대한 기록과 그들의 서명을 기재한다.[50]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말고도 증견(證見), 증참(證參), 증보(證保) 등의 다양한 참여자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필집은 붓을 들고 해당 명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필집은 양반층부터 노비까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될 수 있었다.[51] 증인과 필집을 함께 겸하여 거래에 참여할 경우에는 '증필(證筆 : 訂筆)'이라는 명칭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 방매인에 대한 표기는 거래대상 토지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논일 경우 답주(畓主), 밭일 경우 전주(田主), 묵힌 밭일 경우 진전주(陳田主)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간혹 논만을 방매하면서 답주가 아닌 재주(財主)라고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통상 논과 밭을 모두 합쳐서 방매할 경우에는 토지 매매명문에 전답주(田畓主) 혹은 재주(財主)라고 쓰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논만을 방매하며 재주(財主)라고 쓰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필(自筆)의 경우가 있다. 이는 방매인인 주인이 직접 명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답주자필(畓主自筆) 혹은 전주자필(田主自筆) 등의 경우가 있으며, 자수필집(自手筆執), 전주자필집(田主自筆執), 자필전주(自筆田主)의 경우도 더러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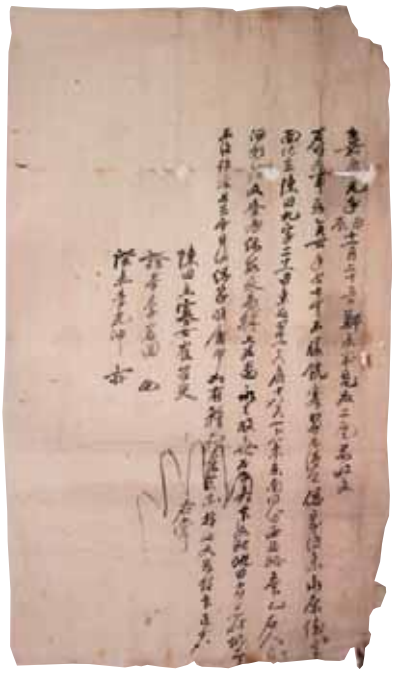
방매인으로서는 32건의 경우에서 '~댁노(宅奴)' 혹은 '~모노(某奴)' 등의 방식으로 '기생원댁 노 두쇠' 혹은 '김 노 천삼' 등 상전의 명의를 기재하여 상전의 위임을 받아 대상 토지를 방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 외 여성이 직접 토지를 방매하는 경우로 '과녀(寡女) 최조이(崔召史)'와 '과댁(寡宅) 이씨(李氏)'가 있다. 증인과 필집의 경우 방매인 혹은 매득인과 기존의 친분관계나 이해관계 혹은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좌랑댁 노 언득이 기생원댁 노 동이에게 논을 방매할 때에 기생원댁 노 시돌이 필집

50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면 그 사이에서 '붓을 잡은' 사람인 '필집(筆執)'이 대서인(代書人)격으로 참여하여 계약서인 명문을 작성하였고, 이 명문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필집인은 해당 거래의 중개인 자격이 되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고문서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지역에 따라 필집인 이외에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한다."는 뜻으로 '거간(居間 : 거간꾼)',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의미에서 '흥성인(興成人)' 등이 직업적인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고 있다. 일제시대의 『관습조사보고서』에는 이들 중개인들이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흥성채', '구전(口錢)' 등 수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거래액의 0.01~0.02% 혹은 다양함). 이러한 거간은 대한제국기에 들어오면서 '가쾌(家儈)'라는 이름을 가진 관청의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매매, 전당, 대차의 중개를 하였다(정긍식 역,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연구보고 92-10, 한국법제연구원, 1992, 415쪽 이하 참조).

51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78쪽 참조.



우장(右掌)을 한 과댁 이씨



우장(右掌)을 한 과녀 최조이

을 맡아 한 경우나,[52] 정생원댁 노 일원에게 답주인 김낙근이 논을 방매할 때 동생인 김낙무가 증인을 서는 경우[53] 등이 있다.

9) 각종 서명 방식

아울러 명문이 계약증서이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밝히는 서명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명문의 말미에 기명(記名)을 한 뒤 수촌(手寸 : 가운데 손가락의 본을 뜬 것)과 착명(着名 : 이름자의 변형을 가하여 서명화한 것)을 주로 하였는데, 오늘날의 사인(sign 또는 signature)과 같은 의미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그 신분과 지위의 고하에 따라 또는 문맹(文盲) 여부에 따라 서명방식을 달리하였던 것이다.[54] 또한 성별에 따라 남자는 좌촌(左寸), 여자는 우촌(右寸)을 하기도 하였다. 수촌 이외에도 손바닥의 본을 떠서 그리고, 그 안에 '우장(右掌)'이나 '좌장(左掌)'이라고 써 넣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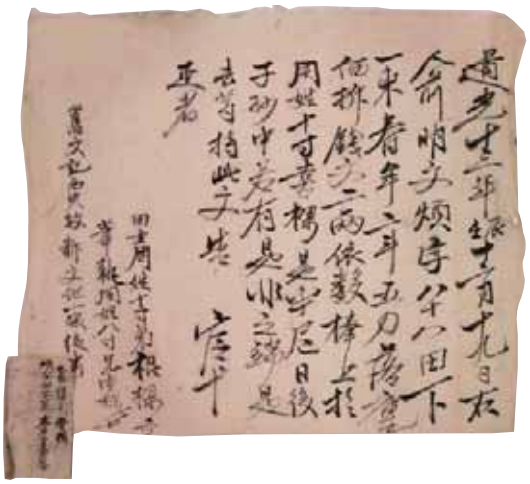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 나타나는 서명방식은 주로 착명이 많았다. 간혹 수촌이나 수장(手掌)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방매인, 즉 전답주가 수촌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댁노(宅奴)'로서 상전의 위임을 받고 토지를 방매하는 노비들인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과녀 최조이(崔召史)와 과댁 이씨 등 여성은 모두 수장을 사용하여 서명하였다. 때로는 한두 명에서부터 거래참

52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75번.
53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043번.
54 간혹 우리나라 서명방식의 시원을 붉은 인주에 동그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한말 개항 이후의 일본의 관행이 도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통적 서명방식은 수결, 즉 착명(着名), 서압(署押), 수장(手掌), 수촌(手寸) 등이었다. 도장을 찍는 경우도 분재기나 매매문서 등에서 사대부의 부인이 정사각형 형태의 도장을 검정색 먹을 발라 찍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도장의 가로 세로 크기는 남편의 품계별로 달리하여 『경국대전』, 「예전」, 용인조(用印條)에 규정해 두었다.

여자 전체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기도 하였다.

10) 추기(追記) 및 배면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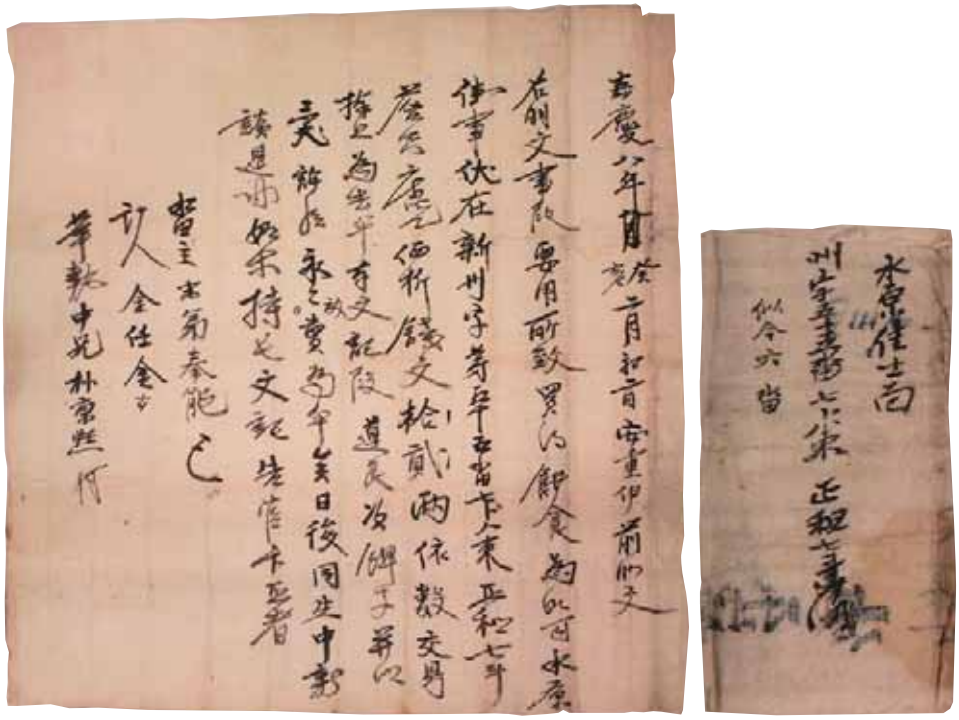

좌측 하단에 배자를 추기한 토지 매매명문


구문기 분실사항을 추기한 토지 매매명문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에 토지 거래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못했거나 토지 매매명문의 기재가 완료된 후에 결락한 내용이 있을 경우 문서의 말미에 추기를 하거나 배면에 별도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문서에 다수의 토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이 가운데 일부만 방매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앞에서 설명한 효주(爻周) 혹은 배탈(背脫)을 하는 것으로 추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문서에 본문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 위치에 기재하지 못하고 문서의 본문을 마쳤을 경우 "구문기는 분실하였으므로 신문기 한 장을 후에 교부함(舊文記 西〈闕〉失故新文記一張 後出)." 이라고 문서의 맨 말미에 별도의 행에다 기재하기도 한다.[55] 아울러 해당거래가 종료된 매매명문의 우측 하단 여백을 이용하여 배자의 내용을 기재하여 노비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추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명문이 본문기로 됨과 동시에 배자의 역할을 겸하게 하는 것이다.[56] 때로는 해당 거래 토지의 자호, 지번, 결부수, 두락수 등의 정보를 양안으

55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31번.
56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097번.



띠지가 있는 토지 매매명문과 해당 띠지(확대)

로부터 모두 베껴서 명문의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57]

간혹 띠지를 이용하여 해당 명문을 묶어 놓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두루 말아 놓거나 일정 크기로 접어서 명문을 보관하기 위함인 동시에 명문을 일일이 펼쳐서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띠지에 거래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의 정보를 간략히 기재해 둔 사례가 7건 있다.[58] '띠지'라는 것은 작은 종이를 원통 형태로 감아서 풀로 붙인 뒤 그것의 빈 공간에 작게 접은 명문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만든 띠지의 한 쪽 면에 "수원 가사면 주자 55답 7복 8속 정조 7두락(水原 佳士面 州字 五十五畓 七卜 八束 正租 七斗落)……"의 식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다.[59] 이러한 사례는 비교적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문서를 간편하게 관리 · 보관하기 위해 만든 방식이다.

57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81번.
58 배면 기재 양식 및 띠지 등 보관방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채현경, 「조선후기 토지 매매명문 배면의 기재유형」, 『古文化』 73집, 2009 참조.
59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041번.

4. 문서를 통해 본 수원 지역의 토지 소유관계 변화

1) 토지의 상품화 _ 이용에서 교환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 나타나는 방매이유로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요용소치', 즉 "긴히 쓸 곳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현전하는 고문서 중 조선 후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성된 거래문서에 기재되고 있는 방매이유였다. 토지 거래를 하고 계약서에 방매이유를 적는 관행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원래 조선 초기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는 토지 거래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다단히 발생하는 생계상의 불가피한 경우까지 토지 거래를 금지하자 부작용이 발생하여 1424년(세종 6)에 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매매를 허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한적으로나마 토지 거래를 허용하면서 대명률(大明律)에 정해진 '세계과할(稅契過割)'이라는 일련의 공증절차를 조선에 적용시켜 공증서인 입안(立案)을 발급받게 하고,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게 했다.[60]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가리키는데, 바로 "부모의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거나 많은 빚을 갚거나 생계를 이어나갈 길이 없는 경우"였다. 이렇게 해당 사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만 사적인 토지 방매, 즉 화매(和賣)를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란 이후 토지 거래에 대한 입안제도가 급격히 쇠퇴하고 입안 발급을 통한 공증 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토지 거래가 있어도 이를 관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공증절차를 받는 경우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관청의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백문매매(白文賣買)'라고 불렀다. 이러한 백문매매가 성행하면서 토지 매매명문에서도 조선 중후기로 오면 정확한 거래사유를 적기보다는 '요용소치(要用所致)', '간난소치(艱難所致)' 또는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대략적·형식적으로 밝히고 거래하는 관행이 증가하였던 것이다.[61]

수원 지역의 문서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권원의 용어는 바로 '매득(買得)'이었다.

60 대명률의 세계과할(稅契過割)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37~38쪽 참조. 토지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해 관청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는 이미 당령(唐令)에서도 성문규정으로 존재하는데, 전답을 매매할 때 관청에 첩(牒)을 제출하여 소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관청의 첩문(牒文) 없이 매매한 경우 거래 전답을 몰수 조치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仁井田 陞, 『唐令拾遺』,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刊, 1933; 『唐律疏議』, 「戶婚」, 妄認盜賣公私田條 등 참조). 그러나 중국에서도 거래사유, 즉 방매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성문규정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61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적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경우로 사료된다. 이는 현대사회의 토지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조선시대 계약서 내용에서의 큰 차이다. 현재는 자신의 재산을 매각할 때 상대방에게 팔아넘기는 이유를 구구절절이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일은 없다.

우선 상기해야 할 점은 토지 매매명문이 전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지점의 토지가 명문을 작성할 당시에 '매매'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토지가 매매되면서 작성된 명문에 재차 '매득(買得)'이라는 권원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의 거래가 그만큼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수원 지역, 특히 가사면(佳士面 : 佳士串面) 등에 소재되어 있던 전답의 소유권이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매매를 수단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移轉), 즉 소유관계의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득 → 방매 → 매득 → 방매 ……'의 일률적이고 순환적인 형태의 토지 소유권 변동이 점차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 중에서 초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1678년 명문에서 권원이 '매득'으로,[62] 1680년에 명문에서 권원이 '매득경식'으로[63] 기재되어 있는 2점을 위시하여 그 사이 공극을 두고 1736년 이후부터 1886년까지 골고루 '매득경식', '자기매득경식', '매득' 등으로 총 51점의 명문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수원 지역 토지 매매명문의 41%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중이다. 그중에서는 지역적으로 수원 가사면 지역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다음으로 감암면(甘巖面), 남곡면(南谷面), 남면(南面), 포내면(浦內面) 순으로 나타나 해안지역인 가사면에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150년간 토지 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매득'이라는 용어가 거래문서에서 빈번히 기재되는 것은 당시의 화폐경제와 시장경제가 사적 토지 거래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수원 서부 지역이었던 가사면 일대의 농경지들이 더 이상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 채, 토지 본연의 사용가치를 벗어난 교환가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64]

또한 이러한 상황은 본문기 처리방식에 대한 기재양상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전의 권리문서인 본문기 처리방식의 기재양상은 앞서 언급한 권원의 종류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권원이 매득일 경우, 상속 · 증여의 경우보다 본문기를 허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본문기의 수효도 많았다. 상속 · 증여의 경우는 본문기가 도문기(都文記 : 都文書), 즉 여러 구획이나 수효의 토지가 기록된 상속 · 증여문서인 까닭에 본문기를 허급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65]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 중에도 도문서를 언급한 문서가 있는데,[66] "본문기는 다른 전답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

62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98번 참조.
63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329번 참조.
64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 지역의 장시연구」, 『경기사학』 6, 2002, 222쪽 참조.

로 넘겨줄 수 없어 도문서의 뒷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라는 의미로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許給是遣 都文書中 背奪"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곧 본문기가 도문기인 경우 거기에 병기(倂記)된 다른 전답이나 재산의 정보 때문에 한 장뿐인 본문기를 넘겨주게 될 경우 거래할 토지 외에 잔존하는 토지나 재산은 다른 건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였다. 즉 상속 · 증여 문서가 도문기일 경우에는 이를 넘겨줄 수 없고, 따라서 본문기 허급 여부와 수량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기 처리방식에서 '타전답병부(他田畓幷付)'라 하여 여타의 전답이 함께 적힌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본문기의 수효가 2~3장 이상으로 많은 사실, 그리고 그 전답 중에 일부만을 해당의 거래에서 방매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눈에 봐도 토지를 소유한 방매인 측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중에 일부를 분리하여 방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통해 소산을 먹고 이용하는 차원을 벗어나 소유권자의 빈번한 변동은 물론 소유토지의 규모도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 법률규정으로 확립한 거래 공증절차인 입안제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입안 절차를 거치기 위한 세 가지(상례비용 충당, 채무변제, 생계유지)의 경우가 아닌 '요용소치'라는 대략적인 방매이유의 기재가 자유롭게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관청이 토지 거래에 개입하는 빈도와 장악력이 저조하였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매득' 권원의 기재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아울러 소유토지가 산산이 조각나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급속도로 분산 ·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후기 토지의 상품화 현상과 토지의 사적 소유를 더 이상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던 것이다. 관청, 즉 국가의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 조선 후기 자본주의의 태생적 징표를 거래문서의 기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65 매매명문에서 '도문서(都文書)' 또는 '도문기(都文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분재받은 내용을 적어 놓은 분재기류(分財記類)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분재기류의 문서에는 다른 전답이 여러 곳 또는 여러 명의 노비가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따로 분리하여 매득자에게 목적물의 전래를 증명하는 용도로 넘겨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매목적물인 토지가 도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들어 본문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문기를 다수 소유하는 대지주가 화재, 수해 또는 도난으로 문기를 망실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은 해당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 장은 앞으로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몇 장 또는 몇 십 장의 문기를 종합해서 한 개의 문기를 만들어 많은 전답을 병기(倂記) 또는 열기(列記)하였는데, 이것을 '도문기'라고 한다(조선총독부관방토목국 편, 『조선부동산용어약해(朝鮮不動産用語略解)』, 朝鮮總督府, 1920(정긍식 · 田中俊光 공역, 『조선부동산용어약해(朝鮮不動産用語略解)』, 한국법제연구원, 2006, 70쪽 참조).

66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275번.

2) 소유권 분쟁에 대한 관(官)의 상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문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기재되는 추탈담보문언으로는 "분쟁이 생기거든 관청에 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라는 의미의 "雜談有去等 告官卞正事"라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명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추후의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관청에 신고하라고 한 이유는 『경국대전』 등의 제반 거래법규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해당 명문만 존재한다면 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시대 거래에서 증빙문서의 여부에 따라 분쟁의 판가름이 나는 원칙을 법언(法諺)으로 "종문권 시행(從文券 施行)"이라고 하였다. 이는 "증거문서에 의거하여 판결한다."는 의미로 이 관행은 거의 절대적으로 준수되었다. 이러한 문언의 기재는 개인이 소유 토지의 거래에서 명문을 작성하고 방매인 자신의 담보책임의 범위설정을 비롯한 예상 분쟁의 해결을 관청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곧 입안제도가 무너지기는 했으나 당시 사유토지의 존재와 그에 부속된 거래활동 등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고관(告官)'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 기재 습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인 동시에 조운(漕運) 등의 여러 원인으로 관청의 민에 대한 장악력이 비교적 높았던 탓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작성된 영호남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에서는 '고관'이라는 용어가 생략되는 것이 대세적인 양상이다. 즉 조선 후기에는 담보문구가 형식화되면서 '관청에 고하여'라는 '고관'에 대한 언급조차 생략되어 단순히 '증빙할 일'이라고 하여 '빙고사(憑考事)' 정도로 표현이 축약된다. 그러나 이는 토지 거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官)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차원의 적극적 의미가 아니다. 즉 거래 관련 분쟁에서 해결주체로서 관의 개입이 관습적이고 당위적인 절차로 이미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소극적, 편의적 차원에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거래 후 위약 등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조선사회의 거래관련 법규가 그만큼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였다.[67] 그러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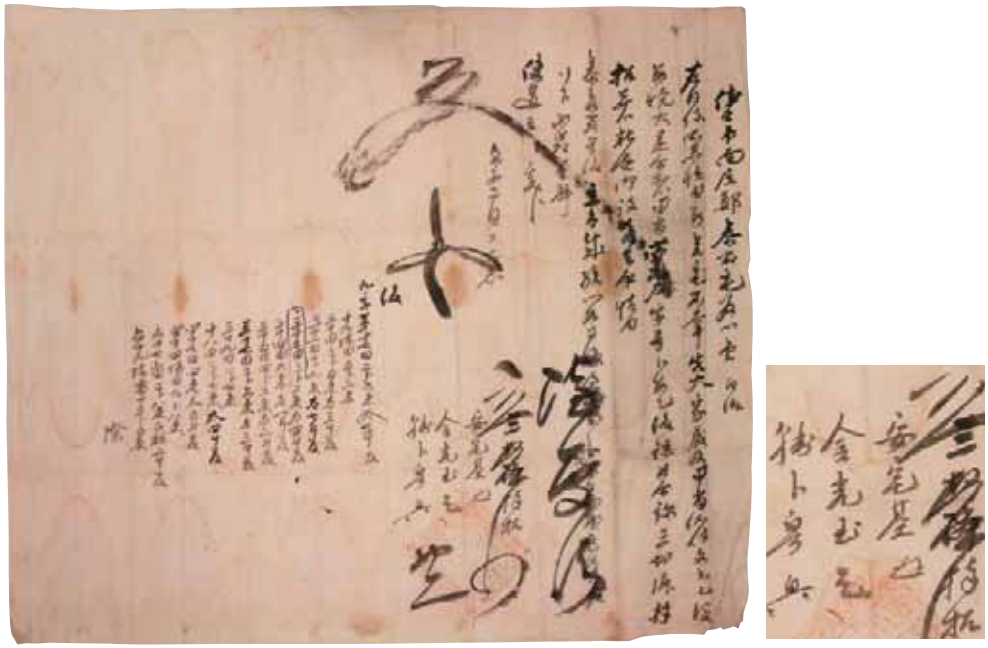
67 왕토사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124~131쪽 참조.

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는 단순한 토지 국유적(國有的) 관점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지 사유를 널리 인정하되 거래에서는 관청의 소정 절차를 경유하는 입안 등의 제도를 통해 국가가 토지 거래의 현황과 소유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즉 토지 국유가 아닌 국토 관리의 기조였던 것이다. 아울러 차후에 발생한 토지 분쟁 시에 불법적 침탈 등을 통해 점유[據執]를 하고 있던 일방을 처벌하고 합법 정당한 소유주에게 토지를 환수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판결이나 재결의 선언적인 근거가 된 사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왕토사상의 의미는 추탈담보문언에 관(官)이라는 명칭에 곧 국가이자 왕(王)을 흡수시킨 것으로 관념하고, 거래대상인 토지에 대한 분쟁 시 불법 부당한 침탈자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시키고, 이를 다시 합법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되돌려 주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입지(立旨) 청원을 통한 토지 소유권의 보호

상술한 바와 같이 토지 거래를 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성격이 상품화되어 수없이 거래되더라도 관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조선 후기의 토지 소유권 보호를 위한 관청의 조치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立旨) 관행이다. 수원 지역 토지 거래 관련 문서에서는 입지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 2건이 있다. '입지' 란 중요 문서, 특히 토지 거래문서나 노비문서가 화재로 소실(燒失)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습기로 썩어 버리거나, 해충, 쥐 등에 의해 훼손되어 원본문서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관청에서 그 사실을 공증해 준 문서를 말한다.[68] 거래문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인 소지(所志) 혹은 발괄[白活] 문서의 여백에 공증 관련 내용을 적어 주며 관인(官印)을 찍음으로써 청원서 자체가 공적 증명서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필요시에는 간혹 관할관청에서 청원인의 주변 이웃 3명[三切隣]을[69] 증인으로 소환하여 해당 사실을 진술받고 관련 문서의 내용에 대해 공증해 주기도 한다. 원래 입지는 조선시대의 성문법률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있는 '입안(立案)'이라는 새로운 증빙서를 작성해 주는 복잡한 정식 공증제도를 변용하여 청원인의 청원서에 간략하게 공증문구를 써 주는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문서 양식이다. 일제시기에도 입지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그 공증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관습조사된 적이 있다.[70]

68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54쪽 이하 참조.
69 內藤吉之助 編, 『朝鮮民政資料-牧民篇』, 朝鮮印刷株式會社, 1942(1977년 以文社 復刊), 10 · 260쪽 참조.



삼겨린이 기재된 노 이쇠의 발괄과 삼겨린 부분(확대)

가사곶면 거주 정참판댁 노 이쇠(以金)의 발괄

아래와 같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상전댁이 불행히도 화재를 만나 집안 물건들과 소유 전답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모두 소실(燒失)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전답의 지번과 자호, 결부수를 후록하고 삼겨린[三切隣]의 진술을 첨부하여 청원드리오니 검토하신 후에 입지를 발급해 주셔서 차후에 증빙할 수 있도록 천만 바라옵니다. 관련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도주(使道主) 처분

임자 2월 일 소지

(삼겨린) 안택기(서명), 김광옥(서명), 한복흥(서명)

(후록) 소실한 전답문서상의 자호, 지번, 결부수 기록함.

〈제사(題辭)〉 빙고하기 위하여 입지해 줄 일. (2월) 초2일

70 朝鮮總督府 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275】입지(立旨) 및 묘지(墓誌)에 관한 건(대정 10년〈1921년〉 5월 9일 식산국장(殖産局長) 조회. 동년 8월 29일 조추(朝樞) 제235호 중추원 서기관장 회답)
○ 요지 1. 한성부윤이 그 관할구역 외의 토지에 관하여 발급한 입지 또는 완문도 유효함.

첫 번째로 입지에 삼겨린[三切隣]이 기재된 중요 문서이다.[71] 이 내용을 보면 가사곶면에 거주하던 정참판댁의 노 이쇠는 자신의 상전인 정참판댁에서 실화(失火)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가옥의 집기를 태우고 그와 함께 상전댁이 소유한 전답과 관련한 권리문서, 즉 전답문권들을 소실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전답의 자호, 지번, 결부수를 모두 후록하여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해당 내용의 공증을 위하여 애초부터 삼겨린, 즉 주변의 지인들 3명을 대동해 가서 그들로 하여금 봉초(捧招), 즉 관련 진술을 받아 내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3명의 삼겨린, 즉 안택기(安宅基), 김광옥(金光玉), 한복흥(韓卜興)이 모두 기명(記名)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점이다. 통상 조선 후기 입지의 일반적인 청원 및 발급절차는 입지 청원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면 접수관청에서는 이에 대해 "삼겨린을 데리고 올 일[三切隣 率待向事]" 식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정참판댁 노 이쇠는 청원서 제출 시부터 삼겨린을 대동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간소하게 한 특이한 사례인 것이다.

두 번째로 수원 가사면에 거주하던 최신묵(崔信默)이라는 사람의 청원서이다.[72] 다음 문서에서 보다시피 최신묵이라는 사람이 사들인 토지와 관련하여 방매인 측으로부터 받은 구문기에는 토지를 표시한 자호와 결부수 등이 구양안(舊量案), 곧 오래 전의 양전사업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등재내용을 따르고 있었다. 즉 새로운 양전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자호, 지번 등이 변경되어 당시로서는 정확하지 못한 토지정보가 자칫 차후 거래 시 문제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묵은 자신이 매득한 토지의 정보를 모두 청원서인 발괄(白活)에 후록(後錄)으로 열거 · 기재하면서 이에 대한 공증, 즉 입지(立旨)의 시행을 관청에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수원부(水原府)에서는 제사(題辭), 즉 처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빙하고자 공증내용을 발급해 줌(憑考次 題給向事)"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고 신양안을 등서한 후록 내용 각처에 관인(官印)을 찍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지가 문서의 분실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주로 하지만, 수원 지역에서 작성된 이와 같은 입지 청원서는 조선 후기의 입지가 사전적으로 향후 있을 증빙상의 안전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도 발급받았던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입지는 그것이 성문법전에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안제도가 무너진

71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395번.
72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문서 005131번.



양안의 자호를 수정하는 증빙을 요청한 최신묵의 발괄

가사면 거주 최신묵(崔信默)의 발괄

아래와 같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1월에 한양 삼청동에 사는 김참판댁의 노 순득(順得)이로부터 논을 매득하였는데, 그 집에서 받은 매매문서 6장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표시의 자호와 결부수가 구양안(舊量案)의 그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양안(新量案)과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차후 증빙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양안에 기록된 자호와 제차 및 결부수를 후록하고, 구문기 6장과 신문기, 배자를 점련(粘連)하오니, 우러러 바라건대 검토하신 후에 관례대로 입지(立旨)를 발급해 주심으로써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천만 바라옵니다. 관련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案前主) 처분

정해 12월 일 소지

(후록) 신 양안의 새 자호와 지번, 결부수 등을 기록함.

〈제사 題辭〉 빙고하기 위하여 제급해 줄 일 (12월) 초8일 경(京)

조선 후기의 급변하는 토지 소유관계를 보완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거래 시 계약서를 1장만 작성하던 조선시대의 거래 관행에서 거래문서 분실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였고, 증빙문서의 부재나 토지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에 대해 관청이 개입하여 공증함으로써 증빙력을 확보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 · 보장하였던 고유한 관습과 제도의 중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수원 지역에서 작성되었던 토지 매매명문과 여타의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의 거래 관행과 소유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토지주택박물관에 소장된 수원 지역 토지 관련 고문서는 산일되었던 문서가 물리적으로 수합된 사례로 그것의 유기적인 연관성이나 맥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해당 문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거래 관련 기재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해 보면 당시의 거래 관행과 소유관계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중요한 단초들을 얻을 수 있었다.

수원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은 거래 연월일, 매득인, 방매이유와 권원, 거래 대상지역, 토지의 표시, 본문기 처리방식, 추탈담보문언, 거래참여자, 서명방식, 배면기재와 추기 등 일련의 기재사항들에서 조선 후기 영호남 지역의 토지 매매명문과 크고 작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그 속에서 조선 후기의 수원 지역 역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대세적인 흐름과 함께 토지도 상품화되고 교환가치화되면서 매우 빈번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民)들의 토지 거래나 소유상황에 대한 관청에 보호 · 보장 조치와 이념들이 거래문서를 비롯하여 입지(立旨) 등 여타 문서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좀 더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을 통하여 수원 지역의 수많은 고문서가 발굴되어 수원의 새로운 역사와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염정섭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18세기 화성부의 둔전 설치와 경영
2. 19세기 화성부 둔전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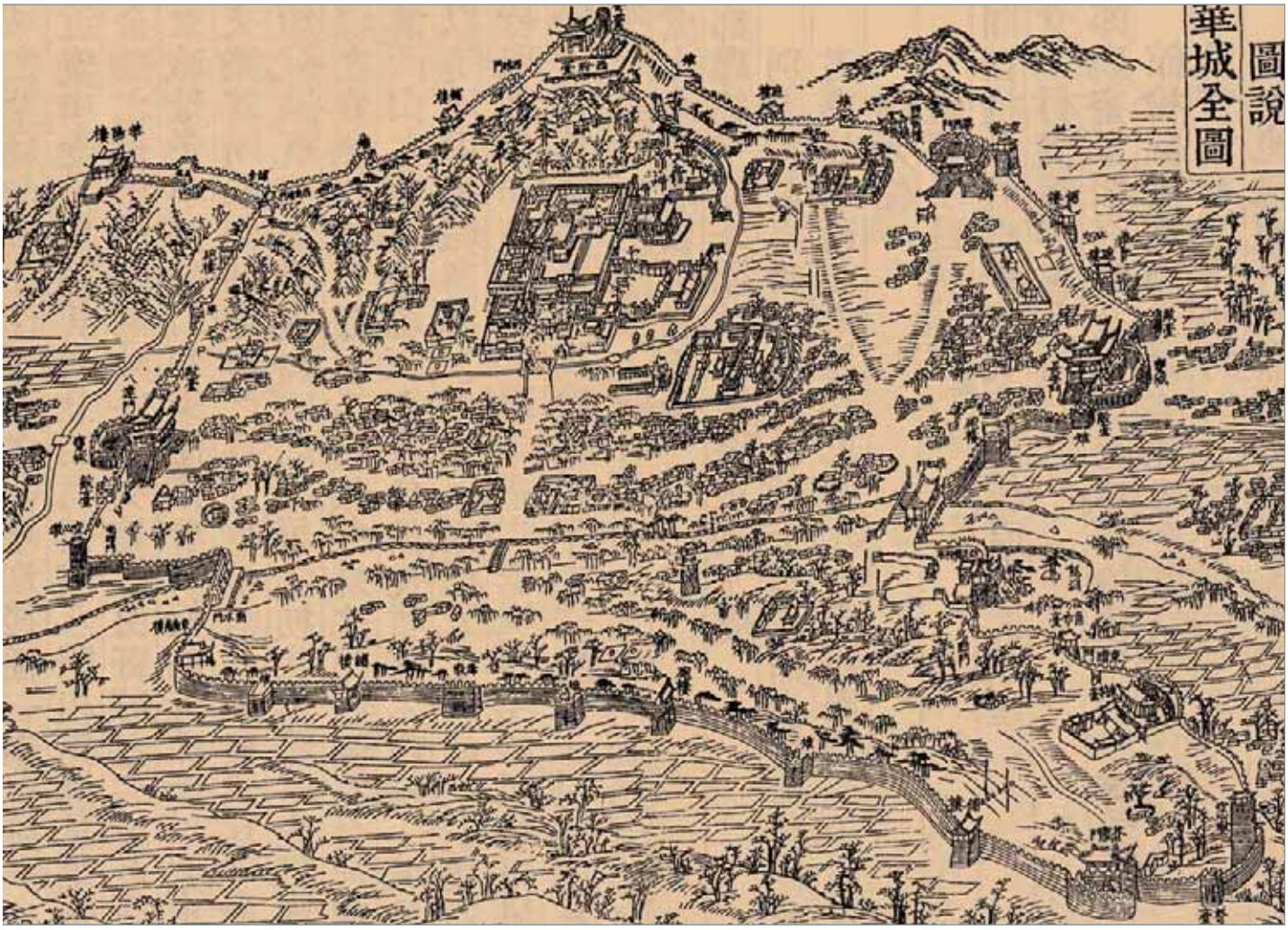
제3장

조선 후기 화성부의 둔전 설치와 운영

1. 18세기 화성부의 둔전 설치와 경영

18세기 말 정조가 화성부(華城府)를 설치하고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벌이면서 새로운 계획도시가 태어났다. 화성부는 1793년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는데, 장용내영(壯勇內營)과 짝이 되는 장용외영(壯勇外營)을 겸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789년(정조 13)에 정조는 수원부의 본래 읍치(邑治)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그곳에 사도세자의 묘역을 새로 조성하였다. 정조의 고모부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의 상소(上疏)가 1789년 7월에 올라오자, 정조는 아버지인 장헌세자(莊獻世子 : 사도세자)의 복권과 추존을 위해 왕릉에 버금가는 위의를 갖춘 현륭원(顯隆園)을 만든 것이었다. 그해 10월부터 정조는 매년 신료들을 거느리고 현륭원에서 제사를 올리며 장헌세자를 추모하였다.[1]

1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1, 48쪽.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

화성부는 1794년 화성 성역이 시작되어 1796년 가을 완료된[2] 이후 새로운 모습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화성 성역의 재원 마련은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화성 건설에 투입된 노동력, 물자 등을 정리하여 재정 조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3]

2 『화성성역의궤』 권수, 비문(碑文), 화성기적비(華城紀蹟碑), 1795년 정월 김종수(金鍾秀) 봉교찬(奉敎撰).
3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화성부를 총괄하는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유수(留守)는 장용외사(壯勇外使),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고 있었다.[4] 화성유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정조가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영으로 창설한 장용영(壯勇營)의 외영을 관할하였다. 애초에 장용영은 국왕의 경호를 위해 소규모의 부대로 출발하였는데,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도성(都城) 중심의 내영(內營)과 화성 중심의 외영(外營)으로 나뉘었다. 1785년(정조 9)에 만들어진 장용위(壯勇衛)가 1787년경에 장용영으로 확대 발전하였고, 1793년 유수부로 거듭 출발하게 된 화성부에 장용영 외영이 설치되었다.[5] 또한 장용영은 환곡 운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갔다.[6]

화성 성역이 진행되어 완료된 1796년 전후에 화성부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즉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 그리고 화성 성곽 등을 운영 · 유지 · 보수하기 위한 재원을 새롭게 확보해야만 했다. 조정에서는 화성부의 재원 수입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화성부의 체모를 유지하고 성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찾아 나섰다.

정조는 새로 건설한 화성에 인근 부호들을 이주해 살게 하면서 모자(帽子)와 인삼(人蔘)을 전매할 수 있는 특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성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7] 비변사는 정조의 윤음(綸音)에 따라 모자와 인삼을 매매하는 전권을 화성 주민에게 부여하도록 계언하기도 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또한 정조는 제언을 축조하는 것이 근래 민력의 형편으로 보아 어렵다고 하면서, 사창제(社倉制)를 통하여 제언을 소착(疏鑿)하는 방안을 화성에서 시험하려는 의도를 비치기도 하였다.[8] 이와 같이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것은 화성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업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라 화성부의 경제적 위치를 빠른 시일 안에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18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농업 생산이라는 점에서, 화성부 재원 마련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은 결국 농업 생산의 측면에서 강구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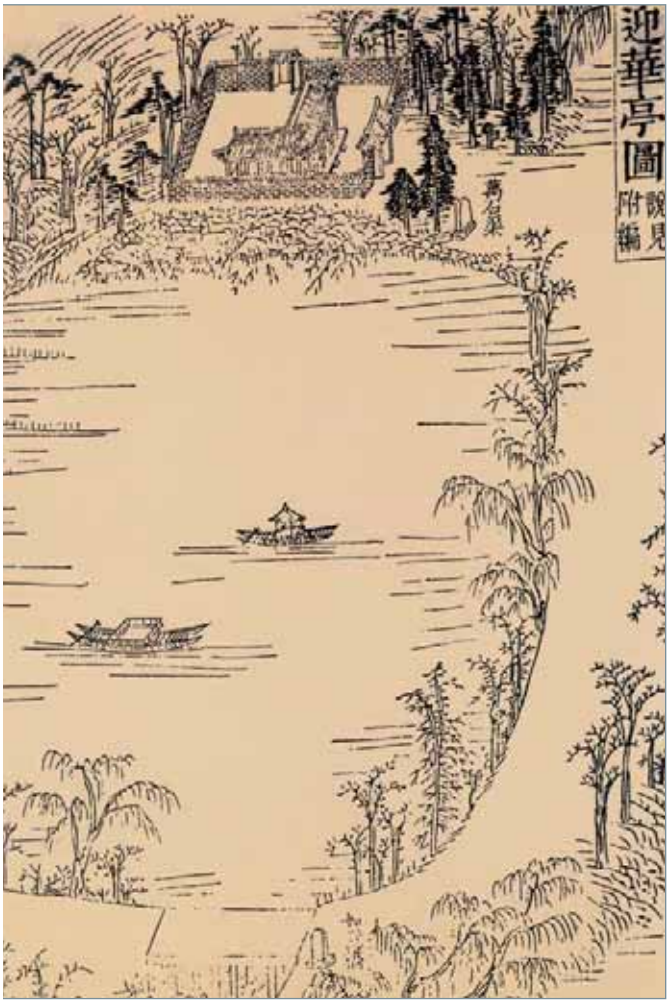
4 이존희, 「조선왕조의 유수부 경영」, 『한국사연구』 47집, 한국사연구회, 1984, 37쪽.

5 배우성, 「정조년간 무반 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 국사학과, 1991.

6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곡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24, 1999.

7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2월 22일 계사. "備邊司進華城富戶帽蔘節目 (一 募入之類 雖云富實 新移之際 自多費用 宜先制産 尾蔘貿易 姑無永屬處 抄擇富實二十人作契 以其人移居華城 使之築室奠業 一 官帽散賣之後 別無主管之人 今以華城移居富實戶 作爲主管 或貿燕布 或貿灣肆 靑布塵免稅一百隻 出給塵人 其餘物主主管 買賣各處 一 兩南家植蔘 近漸豊盛 交易買賣 作一生業 今此移居人 多是自前爲物主者 無論官帽家蔘 非華城物主與差人 毋得直買於本地 各處商賈 亦皆交易於華城……."

8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 6월 3일 을미. "上曰 …… 且近來災荒之頻仍 蓋由於水利之不講 湖南之碧骨堤 若加疏鑿 則如此旱災 不足爲慮 而今盡湮塞 舊時週遭 殆不可復識云 寧不可惜 此堤延橫橫跨十二邑, 湖西南之稱 卽以此也 堤堰是爲民興利之事 則役民爲之 事固當然 而近來民力 果爲甚難 若創社倉之制 使民間各儲財力 以需疏鑿之費 則似爲便利之政 常欲先自華城試之 而亦難保其經久無弊也 秉模曰 社倉之法 故相崔興源嘗行之嶺南云 臣之先祖 亦行於砥平 今已廢矣 其成其廢 惟在得人與否耳."



1795년에 축조된 만석거(『화성성역의궤』, 「영화정도」)

의 재원이 전결(田結)의 수세(收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부를 비롯한 지방관청의 재정 확보책도 전결의 확보와 수세, 지대 수취를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추진된 방안이 둔전(屯田)과 둔답(屯畓)의 개설이었다.

둔전의 설치는 본래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왕조에서 둔전은 변경이나 군사요충지 부근의 진황지(陳荒地)를 개간하고 경작하여 군자(軍資)에 충당하는 토지를 가리켰다. 군병(軍兵)이 곧 둔전의 경작자가 되어 농사(農事)를 지었고, 이로써 병농일치(兵農一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후 주부군현(州府郡縣) 및 영진(營鎭) 등 지방관아(地方官衙)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 칭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칭하였다.[9] 조선 후기 화성부에 설치된 둔전은 관둔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말 화성부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을 농업 생산과 관련된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화성부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재정의 일부를 투입하여 화성부의 재정 수입 기반을 구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여러 곳에 둔답, 둔전이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둔전이 화성 주변에 마련된 대유둔(大有屯)과 서둔(西屯)이었다. 1795년 화성 성역이 잠시 중단된 시기에 만석거(萬石渠)를 축조하였고, 이후 1797년 만년제(萬年堤)를 보수(補修) 소준(疏濬)하였으며, 1799년에 축만제(祝萬堤 : 西湖)를 축조하였다. 이러한 제언 축조와 보수작업은 정조 대 수리정책을

9 『경국대전』 권2, 호전(戶典), 제전(諸田).


『화영사례(華營事例)』 각고속둔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둔전

잘 보여 준다.[10] 만석거의 축조는 대유둔의 설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몇 년 뒤 축조된 축만제도 서둔의 개설과 깊게 관련되었다.

화성부는 화성 성역 과정에서 설치된 대유둔과 축만제둔 이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둔전을 확보하였다. 1793년(정조 17)부터 정조의 사후 13년 뒤인 1813년(순조 13)까지 20년간에 걸쳐 30개소의 둔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11] 1894년에 편찬된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12]에 수록되어 있는 『화영사례(華營事例)』에 둔소(屯所), 삼도둔(三島屯), 각고속둔(各庫屬屯)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전영지(畿甸營誌)』[13]에 들어 있는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에 둔전 항목이 들어 있는데, 27곳의 둔전의 이름과 위치, 설치 연도, 결부수(結負數) 또는 두락수(斗落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 하나 화성부의 둔전 현황을 참고할 읍지가 있는데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14]가 그것

10 조선시대 수리기술과 수리학에 대해서는 문중양, 『조선후기의 수리학(水利學)과 수리담론』, 집문당, 2000 참조.
11 최홍규, 「정조대의 대화성(對華城)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 발전—특히 수리정책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9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87~89쪽.
12 『기전영사례』(규 12200) 4책. 의정부에서 1894년(고종 31) 말경에 유수영이던 개성 · 강화 · 광주 · 수원의 신정사례(新定事例)를 엮은 책으로, 갑오승총(甲午陞摠)의 결과에 따른 (지방)재정의 내역이 밝혀져 있다(규장각 해제집).
13 『기전영지』(규 12187) 3책. 1895년(고종 32) 의정부에서 편한 수원 · 춘천 · 강화부의 읍지이다(규장각 해제집).
14 『수원군읍지』(古915.12-Su93g) 1책(63장). 1899년(광무 3)에 작성된 경기도 수원군의 읍지로, 표지서명은 "光武三年五月日 水原郡邑誌"로 되어 있다(규장각 해제집).

이다. 이 읍지에 수록된 수원 소속의 둔전은 대유둔(大有屯), 축만제둔(祝萬堤屯 : 서둔)을 비롯하여 29개 둔전의 명칭, 위치, 설치 간지(干支), 두락수(斗落數)가 기재되어 있다.

화성부에서 둔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유둔이나 축만제둔처럼 민전(民田) 매득(買得)과 진황지(陳荒地) 개간 등의 방식을 병행하면서, 그 이외에 다른 궁방(宮房)이나 아문(衙門)의 둔전답을 화성부로 이속받기도 하였다. 당시 궁방이나 세가(勢家), 그리고 영문(營門) 등에서 둔전답을 확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외(京外) 무뢰배(無賴輩)들이 주인 있는 토지를 침탈하여 확보하는 것이었다.[15] 이는 곧 소민(小民)들이 억울하게 토지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민들의 억울한 사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문이나 궁방에서 민인들의 토지, 즉 민답(民畓)을 매득하여 둔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16] 한편 백성들이 아문이나 궁방에 민전을 투탁(投托)하는 경우에도 궁방이나 아문이 강제로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물론 민답 전주(田主)의 입장이라면 본래 내야 할 토세(土稅)를 호조 등의 재정아문에 납부하느냐, 현실적인 권세(權勢)를 누리고 있는 궁방이나 아문에 납부하느냐 이 문제를 주로 고민하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궁방이나 아문의 위세를 활용하는 것은 또한 궁방이나 아문의 위세에 억눌려 토지 소유권을 강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화성부의 둔전 확보에서 민전의 침탈이나 민전의 투탁과 같은 양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화성부는 둔전을 마련하기 위해 민인의 전답을 매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기록에 따르면 5,000냥으로 황해도 신천(信川)의 가곶방(加串坊)에 전(田) 6석 14두락, 답(畓) 85석 14두 9승락의 둔전을 마련하였다. 이 둔전의 결부(結負)는 38결 65부에 해당하였다.[17] 또한 화성 근처에 자리한 광주(廣州), 시흥(始興), 과천(果川), 안산(安山), 용인(龍仁) 등 다섯 읍에도 둔전이 설치되었는데, 장용영 내영에서 마련한 2만 냥으로 전답을 매입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18] 한편 정조가 화성부에 행행(行幸)할 때 들어가는 물력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정리소(整理所)의 외별고(外別庫)에도 둔전이 설치되었다. 이는 곧 장용영 외영에 소속된 것이었다. 외별고 소속의 둔전은 내영에서 관

15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5월 2일 癸亥.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 大抵京外無賴之輩 奪納有主土地於宮房勢家及營門上司 使遐鄕小民 空失土地者 在在皆然 實爲痼弊 不可不隨現重繩 懲一礪百 然後方可令小民無冤 奸徒知戢."

16 강원감사의 교원전(校院田) 준결(準結) 요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조는 급가매득(給價買得)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심을 품고 있었다. "上曰 此等事之每每請劃 予常以爲非矣 無論宮房校院 輒稱有未準之結 或云空閑而圖出立案 或云陳荒而買得新墾 方今民齒日繁 田野皆闢 則豈有無主之土 尙有遺利乎 其所給價之說 亦豈盡信."(『승정원일기』, 정조 21년 7월 12일 己卯)

17 『화성성역의궤』 권6, 실입(實入) 3, 屯田買得(移付外別庫). "信川加串坊 田六石十四斗落 畓八十五石十四斗九升落(合三十八結六十五負) 以上價錢五千兩."

할하는 둔전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다.[19] 또한 외별고의 둔전도 급가(給價) 매득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었다.[20]

〈표 1〉 18~19세기 수원부의 둔전[21]

구분 / 명칭	위치	설치 연대	소속	관리	전답	세전	도고	비고
유천둔 (柳川屯)	부의 남쪽 5리 남부 상류천	정조20 (1796)	본래 장용영에 속했으나 봉상시(奉常寺)에 이속*	둔읍(屯邑) 1인(봉상시 書員 차출, 監考 1인)	전답 12결 58부 4속	100냥		*『수원군읍지』에는 '선희궁(宣禧宮)'으로 이속 변동
신천둔 (信川屯)	황해도 신천군 가곶방(加串坊), 부에서 550리	정조20 (1796)	본래 장용영에 속했으나 봉상시에 이속	둔감(屯監) 1원(봉상시 外監 및 色吏 번갈아 차출)	전답 38결 65부	700냥		
평산둔 (平山屯)	황해도 평산부 방동면(坊垌面), 부에서 330리	정조23 (1799)	본래 장용영에 속했으나 봉상시에 이속*	둔감 1원(봉상시 外監 및 色吏 번갈아 差出)	전답 12결 36부	130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京府) 소속 미상(未詳)으로 기재
송동둔 (松洞屯)	부의 서쪽 30리 송동면	순조 1 (1801)	건릉 향탄둔(香炭屯)*	해당 둔전의 도장(導掌)이 수납	전답 32석 12두 1승지기	180냥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宮內府)'로 이속 변동
시흥둔 (始興屯)	시흥현 설월리(雪月里), 부의 서쪽 50리	순조 1 (1801)	건릉 향탄둔*	해당 둔전의 도장이 수납	답 18석 11두 5승지기	100냥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안성둔 (安城屯)	안성군 죽촌등면(竹村等面), 부에서 90리	순조 1 (1801)	건릉 향탄둔*	해당 둔전의 도장이 수납	답 23석 11두 5승지기	500냥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진위둔 (振威屯)	진위현 병파등면(丙坡等面), 부에서 50리	순조 1 (1801)	건릉 향탄둔*	둔색 1인(봉상시 書員이 차송)	전답 113석 18마지기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18 『일성록』, 정조 19년(1795년) 11월 17일 을묘.
綱 : 命廣州減額馬兵二哨屬之華城府 始興等四邑良丁三哨 勿論某衙門所屬 一體換定於本府 令各地方官 團束課習 仍命自內營出錢二萬兩 買土設屯 以裕兵食
目 : …… (수원유수) 心泰曰 …… 自內營 拮据二萬兩錢 每哨各給四千緡 付之各其邑 買土設屯 以裕兵食 爲目下先務 故竝此仰達 從之.

19 『비변사등록』, 정조 20년(1796년) 1월 29일. "華城外營庫節目 …… 一 內營所管各處屯田 旣自內別庫句管 則外別庫宜無異同 此後外營所管屯田 隨其設置之多寡 竝自本庫句管擧行爲白齊."

20 『일성록』, 정조 20년 2월 11일 병진.
綱 : 整理所進節目.
目 : 外整理所節目 …… ○ 外別庫節目 …… 一 本庫各樣用下 極其浩汗 而每歲應捧 不過支供條而已 設置無弊 永久收效終 莫如屯田 價錢自外帑庫 從便區劃 已爲買得 今年爲始 自本庫收稅 以爲添補需用之地 一 每年屯穀作錢當捧 多則千餘兩 少不下七八百兩.

21 『화성성역의궤』(1801);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구분 / 명칭	위치	설치 연대	소속	관리	전답	세전	도고	비고
양성둔 (陽城屯)	양성현 반곡등면(盤谷等面), 부에서 70리	순조 1 (1801)	건릉 향탄둔*	둔색 1인 (봉상시 書員이 차송)	답 18석 16마지기	양성둔세(陽城屯稅) 합 720냥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연산둔 (連山屯)	충청도 연산현 수촌리(藪村里), 부에서 330리	정조 20 (1796)	관천고(筦千庫)*	둔색 1인 (書吏로 차송)	답 25결 21부 8속	700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오타둔 (五朶屯)	부의 남쪽 70리 오타면	정조 20 (1796)	본래 장용영에 속했다가 1802년(순조 2년) 수리소(修理所)에 이속*	차사(差使) 1명	전답 10결 64부 7속	80석 59승 (매석당 1냥 3전)		*『수원군읍지』에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동
용인둔 (龍仁屯)	용인현 지내등면(枝內等面), 부에서 20리	정조 20 (1796)	본래 장용영에 속했다가 1802년(순조 2년) 수리소에 이속*	둔감 1원, 차사 1명	전답 5결 38부 9속	58석 5승으로 74냥 4전 4푼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안산둔 (安山屯)	안산군 성두리(城頭里), 부에서 70리	정조 20 (1796)	본래 장용영에 속했다가 1802년(순조 2년) 수리소에 이속*	둔감 1원, 차사 1명	전답 4결 6부 9속	32석 12두 6승 (價錢42냥 6전 8푼)		*『수원군읍지』에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동
대유둔 (大有屯)	부의 북쪽 5리 일용면(日用面)	정조 19 (1795)	수성고(修城庫)*	감관 1원, 둔색 1인 (수성고색리 例兼)	답 109석 14마지기**	답 12석 12두 4승	764석 6두 5승	*『수원군읍지』에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동 **『화성지』에는 66석지기로 변동
축만제둔(祝滿堤屯)	부의 서쪽 5리	정조 23 (1799)	수성고*	도감관(都監官) 1인, 농감(農監) 2인, 동감(垌監) 2인, 색리(色吏) 1인, 사령 2인	답 83석 15두 4승지기		556석 14두 4승	*『수원군읍지』에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동
신천마정둔(信川馬井屯)	황해도 신천군 마정방(馬井坊), 부에서 550리	정조 21 (1797)	군기고(軍器庫)*	둔감 1원 (군기고외감 例兼)	답 4결 3부 7속	60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신천가곶방둔 (信川加串坊屯)	황해도 가곶방, 부에서 550리	정조 24 (1800)	군기고*	둔감 1원	답 7결 11부 8속	45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은율광암둔(殷栗廣巖屯)	황해도 은율현 광암방(廣巖坊), 부에서 620리	정조 20 (1796)	군기고*	해당 읍으로부터 수납	답 34결 42부 7속	50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백령대소청둔 (白翎大小靑屯)	황해도 백령진(白翎鎭), 부에서 770리	정조 17 (1793)	군기고*	둔감 1원		정철대전(正鐵代錢) 30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삼도둔 (三島屯)	부의 남쪽 100리 가사면(佳士面)	정조 20 (1796)	책응고(策應庫)*	둔감 1원, 색리 1인, 차사(差使) 1명	언답(堰畓) 24결 47부 7속	400냥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구분 / 명칭	위치	설치 연대	소속	관리	전답	세전	도고	비고
결성둔(結城屯)	충청도 결성현 은하면(銀河面), 부에서 260리	순조 13(1813)	팔색고(八色庫)*	둔색 1인	답 4결 38부 5속	40냥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포내둔(浦內屯)	부의 남쪽 80리 포내면	영(營) 승격 이전	고마고(雇馬庫)*	둔감 1원 (雇馬庫외감 例兼)	답 2결 32부 6속	8석 7두 2승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용인험천둔(龍仁險川屯)	용인현 험천면, 부에서 30리	정조 22(1798)	본래 수어청(守禦廳)에 속했다가 이속(戶房에서 減耗給代)*	둔감 1원	전답 17결 13부 3속	71냥 9전 4푼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용인부곡둔(龍仁釜谷屯)	용인현 부곡면, 부에서 40리	정조 22(1798)	본래 수어청에 속했다가 이속(戶房에서 減耗給代)*	둔감 1원, 차사 1명	전답 61결 11부	349냥		*『수원군읍지』에는 '화령전(華寧殿)' 소속으로 기재
용인도촌둔(龍仁道村屯)	용인현 도촌면, 부에서 50리	정조 22(1798)	본래 수어청에 속했다가 이속(戶房에서 減耗給代)*	둔감 1원, 차사 1명	전답 14결 62부 7속	91냥 6전 9푼		*『수원군읍지』에는 경부 소속 미상으로 기재
용인모현둔(龍仁慕賢屯)	용인현 모현면, 부에서 60리	정조 22(1798)	본래 수어청에 속했다가 이속(戶房에서 減耗給代)*	둔감 1원, 차사 1명	전답 20결	90냥 4전 9푼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과천안양둔(果川安養屯)	과천현 안양면, 부에서 40리	정조 22(1798)	본래 수어청에 속했다가 이속(戶房에서減耗給代)*	둔감 1원	전답 4결 42부 5속	39냥 7전 2푼		*『수원군읍지』에는 '궁내부'로 이속 변동
평신진둔(平薪鎭屯)	충청도 평신진, 부에서 280리	정조 18(1794)	본래의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두어 영고(營庫)에 이속	해당 진으로부터 수납	전답 388결 70부 9속	3,670냥중 3,000냥은 영고, 500냥은 광혜고(廣惠庫 : 170냥 5전은 馬貰 잡비로 제하고 해당 진에 지급)		
석장둔(石場屯)	안산과 인천 양읍, 부에서 70리	정조 17(1793)	본래 진휼청(賑恤廳)에 속했다가 영고에 이속*	둔색 1인	답 31결 7부	130냥		*『수원군읍지』에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동
숙성수포둔(宿城搜浦屯)*	부의 남쪽 80리 숙성면	정조 21(1797)	영고**	둔색 1인 (工房書吏 예겸)	언답(堰畓) 약 5결 33부	조세 약 16석(매결 60두)		*『수원군읍지』에는 '숙성면둔(宿城面屯)'으로 기재 **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경
양향둔(粮餉屯)	부의 남쪽 청호면(晴湖面)*	정조 17(1793)	본래 양향청(粮餉廳)**에 속했다가 이아(貳衙)에 이속	둔색 1인	전답 36결 45부 5속	80석		*『화성지』에는 '본부 각면'이라 했으나 『수원군읍지』에는 '청호면(晴湖面)'으로 기재 **는 '선희궁'으로 이속 변동

화성부 둔전의 전체적인 대략의 현황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2] 이에 따르면 1793년(정조 17)부터 정조의 사후 13년 뒤인 1813년(순조 13)까지 20년간에 걸쳐 30개소의 둔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총 30여 개에 달하는 화성부 둔전의 설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화성부 둔답 가운데 전라도 장흥 지역에 설치된 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성부 둔전의 설치 경위를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고, 특히 장흥 지역 둔전의 설치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부 둔전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주의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화성부를 비롯한 아문(衙門)의 둔전은 17세기 초반 이후 궁방전(宮房田)과 마찬가지로 절수(折受), 사여(賜與) 등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또한 절수와 사여 이외에 매득, 각 영(營)·아문 둔전의 이속(移屬), 몰입속공지(沒入屬公地)의 사여·절수, 민전의 절수와 투탁 등의 방식으로도 형성되었다. 화성부의 둔전도 절수, 사여, 다른 아문 둔전의 이속, 매득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그중에서 18세기 말 전라도에 소재한 화성부 둔답의 경우 거의 대부분 매득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화성부는 1796년 이후 1798년까지 전라도 장흥부에 민답을 매득하여 둔답을 설치하였다. 화성부는 전라도 장흥 이외의 지역에서도 둔전을 설치하였다. 1796년(정조 20)부터 1798년 사이에 화성부에서 각지의 토지를 매득하여 둔전과 둔토를 설치한 것은 화성 성역, 장용영 외영과 관련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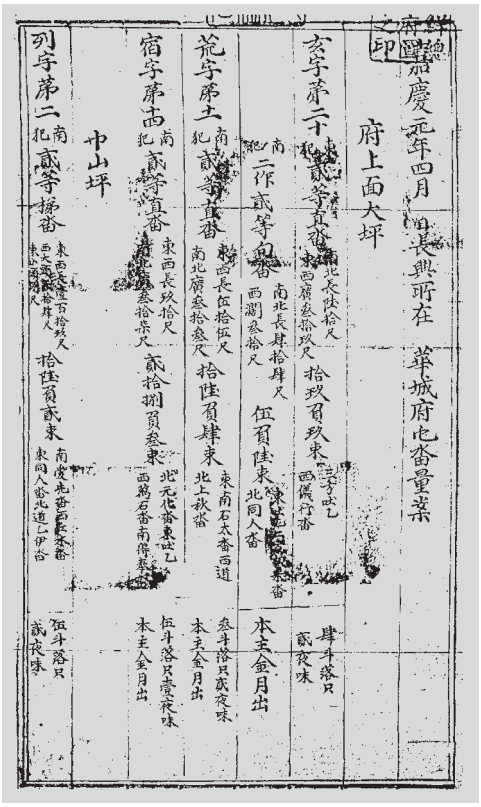
1796년 4월 최초에 매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정보와 매도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양안이 작성되었다.[23] 이에 따르면 전라도 장흥부 부상면(府上面), 부하면(府下面), 안량하도면(安良下道面), 안량상도면(安良上道面), 남면(南面), 부동면(府東面) 등 6개 면에 화성부 둔전답이 매득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그에 따라 매득한 필지의 토지 관련 정보, 토지소유 관련 정보를 수합하여 양안이 작성된 것이었다. 기재양식은 자호에 이어 각 필지마다 지번, 양전 방향, 전품, 지형, 지목, 장광척, 결부수, 사표, 두락수, 야미수(夜味數) 및 본주(本主)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주는 화성부에서 매도한 해당 필지의 이전 전주(田主)이다. 전체 둔답의 결부수는 40결 31부 4속이고 두락수로는 849두 7승락이다. 여기에 도감관(都監官) 1인과 사음(舍音) 3인의 사경(私耕) 16두락을 제외하면 도조(賭租)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833두 7승락이었다.[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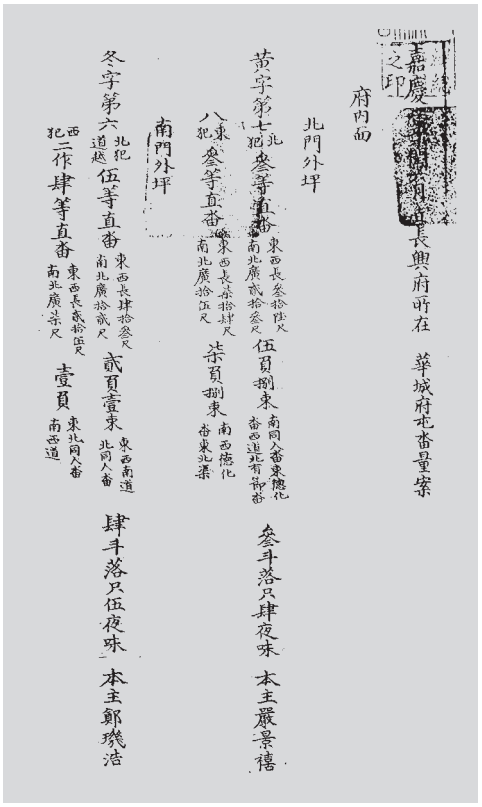
22 18~19세기 화성부 둔전 현황을 정리한 〈표 1〉은 다음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최홍규, 「정조대의 대화성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 발전—특히 水利政策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9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88쪽.

23 『장흥소재화성부둔답양안(長興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 18662, 규 18663).

24 『화성부매득장흥소재둔답도조봉상책(華城府買得長興所在屯畓賭租捧上册)』(규 19293).



『장흥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2)



『장흥부소재화성부둔전양안』(규 18661)

화성부의 장흥 지역 둔답 매득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듬해인 1797년에도 3월에 당시까지 매득한 전답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양안이 작성되었다.[25] 화성부 둔답은 장흥부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면명(面名)을 보면 부내면(府內面), 부상면, 부하면, 부서면(府西面), 부산면(夫山面), 안상면(安上面), 안하면(安下面), 남하면(南下面), 남상면(南上面), 고상면(古上面), 대흥면(大興面), 웅치면(熊峙面), 회령면(會寧面) 등 13곳이었다. 양안의 기재내용은 앞서 작성한 1796년에 작성한 『장흥소재화성부둔답양안(長興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 18662, 규 18663)과 동일하다. 본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화성부에 이 전답들을 방매(放賣)한 전주(前主)이다. 이때 화성부에서 매득하여 확보한 둔답의 총결부수는 54결 76부 9속이고, 두락수는 1,366두 1승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었다.

25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長興府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 18666).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부가 전라도 장흥 지역에서 매득하여 형성한 둔답을 정리한 양안이 1797년 윤6월과 1798년 5월에 각각 작성되었다. 1797년 윤6월에 작성된 양안의 경우 9개 면 지역에서 매득한 둔답의 총결부수는 5결 3부이고, 두락수는 133두락이다.[26] 그리고 1798년 5월에 작성된 양안의 경우 16개 면에 걸쳐 있었는데, 둔답의 총면적은 38결 96부 4속이고, 두락수는 3,408두 6승락이다.[27] 앞에서 살펴본 화성부에서 전라도 장흥 지역에 설정한 둔답의 시기별 내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총 139결 7부 7속, 3,408두 6승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둔답이었다.

〈표 2〉 18세기 말 전라도 장흥 소재 화성부 매득 둔답 내역(1796~1798년)

양안 작성 연월	둔답 소재 면명	둔답 결부수	둔답 두락수	비고	전거
1796년 4월	부상면, 부하면, 안량하도면, 안량상도면, 남면, 부동면	40결 31부 4속	849두 7승락	도감관 1인, 사음 3인, 사경(私耕) 16두락	『장흥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2, 규 18663)
1797년 3월	부내면, 부상면, 부하면, 부서면, 부산면, 안상면, 안하면, 남하면, 남상면, 고상면, 대흥면, 웅치면, 회령면	54결 76부 9속	1,366두 1승락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6)
1797년 윤6월	부내면, 부상면, 부하면, 부산면, 남상면, 남하면, 고상면, 대흥면, 웅치면	5결 3부	133두락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1, 규 18667)
1798년 5월	부내면, 부상면, 부하면, 부서면, 부산면, 안상면, 안하면, 남상면, 남하면, 고읍면, 대흥면, 웅치면, 천포면, 회령면, 장동면	38결 96부 4속	1,059두 8승락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0)
합계		139결 7부 7속	3,408두 6승락		

정조 대에 화성부에서 전라도 장흥 지역에 설치한 둔답의 경우 도조(賭租)의 수취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화성부에서 매득하여 장흥부에 설치한 둔전답에서 1796년 4월부터 도조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화성부에서 봉상(捧上)한 도조 내역을 정리한 장부가 전해지고 있다.[28] 『화성부매득장흥소재둔답도조봉상책(華城府買得長興所在屯畓賭租捧上册)』(규 19293)에 따르면 전체 두락수 849두 7승락에서 도조로 797석 4두를 봉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도조 액수 가운데 도감관 1인 및 사음 3인의 사경(私耕) 16두락

26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1, 규 18667).
27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규 18660).
28 『화성부매득장흥소재둔답도조봉상책』(규 19293).

에 해당하는 도조 16석을 빼면 실제로 거두게 되는 도조는 781석 4두였다. 이때 1석은 20두로 환산되었는데, 결국 797석 4두는 1만 5,944두이다. 총도조액수 1만 5,944두는 전체 두락수 849.7두락을 감안하면 1두락의 도조가 18.77두가 된다. 그런데 도감관과 사음에게 배정된 사경 두락수와 도조액을 보면, 도감관의 경우 사경 5두락에 도조 5석, 사음은 4두락일 경우 도조 4석, 3두락일 경우 도조 3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도감관과 사음의 경우 1두락에서 1석=20두를 도조액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따라서 화성부의 장흥부 둔답은 1두락에 도조가 1석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29]

화성부에 설치된 오둔(五屯)은 본래 수어청 소속이었던 둔전으로 1798년(정조 22)에 수원부로 이속된 것이었다. 화성부의 속읍이자 동쪽 경계에 연접한 용인현과 과천현 지역 내에 5곳의 둔전이 화성부로 이속되었다. 1795년과 1797년, 1798년에 기존의 군제인 5군영체제를 장용외영 중심의 5위체제로 일대 개편하면서 화성부에 이속된 것이다. 1795년(정조 19) 이후 화성의 장용외영이 협수군(協守軍)체제로 바뀔 때 군액의 부족액을 인근 속읍의 총융청, 수어청에 소속되어 있던 군액에서 이급한 결과였다.[30] 1795년 2월 용인(수어청 소속), 진위(수어청), 아산(총융청)을 화성에 이속시킬 때 기존에 편성된 속오군을 옮겨 화성의 타졸(垜卒)로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였다.[31]

1798년 화성부로 오둔을 이속하면서 장용영 외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798년 1월 4일 광주부윤 홍억(洪檍)이 친아병(親牙兵) 15초(哨) 가운데 과천 1초, 용인 4초 합해서 5초 410명 및 5초에 소속되어 있던 안양(安養), 부곡(釜谷), 모현(慕賢), 도촌(道村), 험천(險川) 등 오둔을 화성부로 이송(移送)하였음을 보고하였다.[32] 홍억이 올린 장계는 화성부로 친아병이 이속된 대신으로 병력의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홍억의 장계 내용에서 오둔은 본래 친아병에 소속된 것으로 과천 및 용인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둔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친아병은 아병(牙兵)을 달리 부르는 말인데, 아병은 조선 후기에 설치된 군병의 일종이

29 『화성부매득장흥소재둔답도조봉상책』(규 19293). 이 책에 대한 해제자는 장흥부 둔답의 도조(賭租)가 책정된 방법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이때 책정된 도조는 원칙적으로 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는 점, 실제로는 당초에 책정된 도조에 의해 추수한 것은 아니고 해마다 답험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조를 다시 책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 최홍규, 「정조대의 대화성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 발전-특히 수리정책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9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91쪽.

31 최홍규, 「정조대의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특히 읍민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창간호, 1997, 36~42쪽.

32 『일성록』, 정조 22년(1798) 1월 4일.
綱 : 廣州府尹 洪檍 以親牙兵八哨作爲左右列 龍仁 振威軍移送水原之代 以三田渡鎭軍官 牙兵除出 作哨 左右部別將 以附近邑守令 差定事 馳啓.
目 : 狀啓以爲 親牙兵 十五哨內 橫城一哨 洪川一哨 前已移屬於壯勇營 果川一哨 龍仁四哨 合五哨 四百十名 及所屬安養 釜谷 慕賢 道村 險川等五屯 竝爲移送水原府 以餘存八哨 作爲左右列 磨鍊.

다. 아병은 중앙의 오영(五營)뿐만 아니라 각 도의 감영·병영 등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초아병(哨牙兵), 별아병천총(別牙兵千摠), 친아병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광주부윤이 수어사(守禦使)를 겸임하고 있었고, 수어청의 병력 가운에 친아병이 본래 15초가 배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사료에 나오는 친아병은 수어청 소속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오둔이 본래 수어청에 소속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보다 확고하게 증명해 주는 기사를 18세기 초반 경종 대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22년 8월 28일 수어청에서 본청의 둔전을 정비하고 초관(哨官)을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어청이 올린 보고 내용 속에 오둔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수어청 둔전이 광주(廣州), 용인, 과천 등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광주의 험천둔(險川屯) 초관이 용인 도촌둔(道村屯)을 겸관(兼管)하고 있고, 과천 안양둔(安養屯) 초관이 광주 성곶둔(聲串屯)을 겸관하고 있다. 둔전의 거리가 자못 멀어 조적(糶糴) 세수(稅收) 등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초관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있는 힘을 다해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험천과 도촌을 두 개의 둔전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안양과 성곶을 두 개의 둔전으로 나누어 각각 초관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33]

수어청 둔전에 대한 기사 중에는 1779년 정조가 수어사 서명응(徐命膺)에게 수어청의 둔전에 대해서 질문하자 서명응이 직접 대답하지 못하고 교련관(敎鍊官)을 불러 대답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때 교련관은 광주, 과천을 비롯하여 창원 등 29곳에 둔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34] 이와 같은 기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둔에 포함되는 둔전 가운데 험천둔, 도촌둔, 안양둔 등 3곳의 둔전은 수어청에 소속되어 있던 둔전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두 개의 둔전인 부곡둔, 모현둔도 수어청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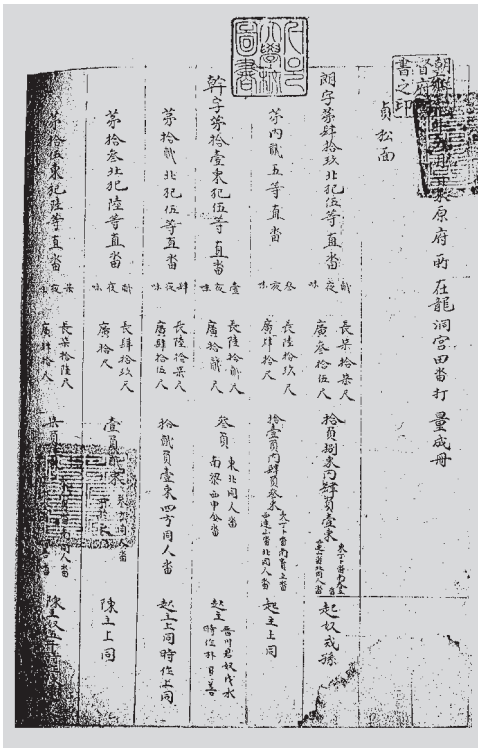
18세기에는 화성부에는 다른 궁방 또는 아문의 둔전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원부에 소재한 둔전답을 총망라하는 작업은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3 『승정원일기』 543책(원본, 탈초본29책), 경종 2년 8월 28일 신사. “ 朴熙晉 以守禦廳言啓曰 本廳屯田 散在於廣州·龍仁·果川等地 而所謂廣州險川屯哨官 兼管龍仁道村屯 果川安養屯哨官 兼管廣州聲串屯 而自此距彼道里頗遠 故糶糴稅收等事 爲哨官者 左右奔走 以致力分 不免有節晩未捧之弊. 至於屯兵作隊 亦倣古制 而卽今屯兵把下三司之中 或爲四哨 或爲五哨 軍制亦未免斑駁險川·道村 分作兩屯 安陽·聲串 亦分爲兩屯 加出哨官二人 自本廳給料 漸次完哨 以准軍制 似爲便當 依此擧行 何如? 傳曰 允.”

34 『승정원일기』, 정조 3년 8월 3일 갑인. “上曰 本營屯田爲幾何 命膺曰 二十九所矣 上曰 各在何處乎 命膺曰 臣則未及詳知 當問於敎鍊官以奏矣 上曰 敎鍊官旣在階下 卽於此處問之 可也 命膺招敎鍊官問之 敎鍊官奏曰 屯田之在廣州者六處 在果川者一處 在龍仁者三處 在陽智永平利川砥平原州洪川平澤忠州金海昌原扶安長興海州定州稷山振威永同載寧橫城者 各一處 而合爲二十九處矣.”

먼저 『수원부소재용동궁전답타량성책(水原府所在龍洞宮田畓打量成册)』을 통해 용동궁 둔전답으로 수원부에 소재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성책은 1731년(영조 7)에 작성된 것인데, 수원부 정송면(貞松面)과 모지면(茅旨面)에 소재한 용동궁 소속 전답을 타량하여 만든 양안이다.[35] 용동궁에 소속된 토지의 성격은 주명(主名) 기재란 부분에 드러나는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원부소재용동궁전답타량성책』(규 18295)

주명 기재양식을 크게 나누어 보면 '주(主)+성명(姓名)' 만 기재한 경우와 그와 더불어 '시(時)+성명(姓名)' 이 같이 기재된 경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주+성명' 의 경우는 '주상동(主上同)' 으로 간략하게 표기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간략한 표기방식은 주명에 기입할 성명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주명에 등장하는 성명이 용동궁 소속 토지와 별다른 커다란 영향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자일 경우 용동궁이 해당 토지를 확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일 경우 주명에 기입할 성명을 해당 토지의 전주(前主)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時)+성명(姓名)' 의 경우에도 상동(上同)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시+성명' 에 들어갈 인명이 작인의 성명이지만, 해당 토지를 관장하는 사음(舍音)이 이미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작인 성명을 반복해서 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명 기재란 표기양식의 특징에서 살펴볼 때 해당 토지들이 용동궁에 소속된 지 오래된 시점에서 전주 등에 관련된 정보가 부실하게 된 상황이고, 작인에 대한 통제가 마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용동궁의 소유지, 다른 표현으로 유토면세지로 생각된다.

35 『수원부소재용동궁전답타량성책(水原府所在龍洞宮田畓打量成册)』(규 18295).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규 18547)

다음으로 화성부에 장용외영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과 별개로 장용내영의 둔전답도 설치되어 있었다.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冊)』은 1827년(순조 27)에 작성된 양안이지만, 예전 장용영 내영 소속 둔전답을 다시 타량한 것이기 때문에 18세기 말 장용영 내영 둔전답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36] 이에 따르면 화성부 금물촌면(今勿村面), 북방면(北方面), 숙성면(宿城面), 오타면(吾朶面) 등지에 총 11결 53부 6속, 두락으로 35석 6두 6승락에 달하는 둔전답이 옛 내영 둔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성책의 기재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이 둔전답의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37] 타량성책 앞부분에 병오년 금물촌면에서 환포(換浦)하여 그 결과로 생겨난 이생처(泥生處)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남쪽 방향으로 4,000척이고 너비[廣]가 450척인 대지를 6등으로 전품(田品)을 매기고, 작결(作結)하여 45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간(起墾)하는 것을 기다려 수세할 것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성책의 작성연도인 1827년보다 앞선 병오년은 1786년(정조 10)밖에 없다. 1786년에서 1827년까지 40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개간되어 경작지로 활용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구절이 성책에 적혀 있다는 것은 1786년 장용영 내영이 확보하고 있던 이생처에 대한 기재 내용을 그대로 1827년에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성책의 내용은 18세기 중반 장용영 내영의 둔전답 현황을 기록한 양안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생처에 관한 기재 내용에서 45결로 환산한 것은 『전제상정소준수조획』에 나오는 1등

36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冊)』(규 18547). 한편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규 9919)을 보면 1791년(정조 15, 辛亥) 수원부에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영건한 수원부 내의 청사 및 그에 딸린 부속건물 그리고 관에서 건립한 각종 창고 · 누정 등 수원부 관아에 딸린 여러 건물에 대한 정보를 살필 수 있다.

37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冊)』(규 18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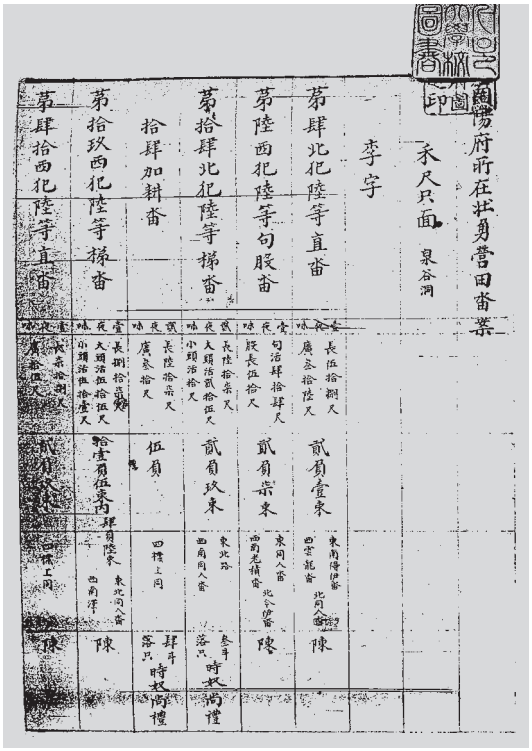
척으로 척량(尺量)하여 6등으로 환산하는 해부(解負) 방식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었다. 결국 이생처를 새로운 경작가능지로 파악하고 그 전체 규모를 측량해 두어 장차 수세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볼 수 있다. 특히 이생처는 곧장 경작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이지만, 새롭게 생겨난 경작가능지라는 점에서 수세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6등전 45결이면 50만 평을 넘는 방대한 면적이라는 점에서도 빠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방면, 숙성면, 오타면 등지의 둔전답을 양안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 내용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내수사(內需司)로 이속(移屬)' 이라고 수록된 필지가 상당수 등장한다는 점과 중간에 상지(裳紙)를 붙여 필지를 추가하거나, 타작(打作) 등의 수봉(收捧) 관련 내용을 기입한 것이 보인다는 점이다. 내수사로 이속된 전답은 진전(陳田) 29부 6속, 진답(陳畓) 11부 1속, 기답(起畓) 3결 43부 3속이었다. 성책에 수록된 전체 전답의 크기는 32결 71부 5속이었는데, 포락(浦落) 5결 4부 8속, 내수사 이속 전답 합 3결 84부, 진답 11결 85부 3속(浦泜은 8결 83부 7속, 新築 55부), 진전 43부 8속를 제외하면, 기전은 1결 15부(4석 5승락), 기답은 10결 38부 6속(31석 3두 1승락)이었다. 본 성책의 기재 내용은 앞에 경작가능지로 방대한 면적의 이생처를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수사로 상당한 전답의 이속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 기경하고 있어 수취가 가능한 전답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상지(裳紙)를 통해 타작 등 수봉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영에서 소유하고 있던 둔전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용영 전답(둔전답)이 남양부에 소재해 있기도 하였다. 『남양소재장용영전답안(南陽所在壯勇營田畓案)』은 작성연대가 미정이지만, 장용영이 1802년에 혁파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8] 표지에 이재국(理財局) 도서라는 도서(圖署)가 찍혀 있는데, 이는 20세기 초에 일제에 의해 황실재산이 정리될 때 생겨난 표식이다. 양안 뒷부분 이상(已上) 기재에서 전답의 총결수는 4결 73부 8속이고, 그 중에서 기전은 53부 8속으로 3석(1석=20두) 18두 3승락이며, 기답은 3결 61부 3속으로 15석 3두 6승락, 진전은 1부 2속, 진답은 57부 5속이다.

양안의 기재 내용을 보면 18세기 말 당시 남양부의 장용영 전답은 화척지면(禾尺只面), 쌍수리면(雙守里面), 며지곶면(旀知串面) 등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사자(師字), 신사자(新師字)처럼 하나의 자호를 신 · 구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새로운 자호를 부여하

38 『남양소재장용영전답안(南陽所在壯勇營田畓案)』(규 19347).



『남양소재장용영전답안』(규 19347)

는 것은 새로운 개간지, 가경지를 타량하여 양안에 등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장용영에서 남양부의 둔전답으로 확보하는 곳이 개간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지번 중에 신기언(新起堰)으로 기재된 필지들이 있다는 점, 지목에 양외답(量外畓), 신기구답(新起勾畓) 등과 같이 새로 생겨난 가경지(加耕地)로 규정할 필지들이 있다는 점 등이 그 가능성을 보다 확고하게 해 준다.

수원부에 소재한 궁방의 둔전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 내수사(內需司)의 둔전답이다. 1694년 내수사에서 수원부에 산재되어 있는 소속 전답을 타량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39] 즉, 수원부 오정면(吾井面), 숙성면(宿城面), 북둔면(北芚面)에 소재한 내수사 원장부 전답과 적몰(籍沒)전답을 타량한 것이었다. 전체 규모는 답 4결 11부 4속이고, 이 중에서 기전이 50부 9속, 기답이 3결 52부 5속, 진답이 8부이다. 본 양안에 수록된 적몰전답의 이속 시기나 원주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궁방양안 중에는 1680년 경술환국 이후 복창군(福昌君) 정(楨)과 복선군(福善君) 남(柟)에게서 적몰한 전답으로 명선공주방, 용동궁, 영빈방, 내수사 등에 이속된 토지의 양안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숙종 대 빈발하였던 환국이나 역모에 관련된 적몰전답 중 내수사로 이속된 수원부 소재 전답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양안은 내수사의 원전답과 적몰전답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고 있다. 역모에 관련된 적몰전답은 토지의 소유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사의 원전답도 마찬가지로 내수사의 소유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재 내용 속에 '시(時)+인명'

39 『경기수원부내수사원장부급적몰전답개타량병록성책(京畿水原府內需司元帳付及籍沒田畓改打量竝錄成冊)』(규 18417).

에 등장하는 인명을 작인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오정면의 경우 11개 자호에 속하는 52필지의 전답 3결 4부 1속의 '시+인명' 이 모두 임정립(任丁立) 1인으로 되어 있고, 숙성면 소재 전답의 경우 '시+인명' 이 모두 노명(奴名)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둔면의 경우 시+성명으로 노명 이외에 성명을 갖춘 사람도 보이고 있다. 내수사 원장부에 실려 있던 것들과 적몰전답을 아울러 타량하였다는 점에서 본 토지들은 내수사 소유전답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내수사 전답을 경작하여 지대를 내수사에 바치는 작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훈부(忠勳府)에서 1806년에 수원부에 소재한 둔전답을 정리한 양안을 살펴볼 수 있다.[40] 수원부 감암(甘巖)에 소재한 충훈부 둔전답을 정리한 양안은 일반적인 양안의 작성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주명, 시명 기재란에 여러 장의 첨지(添紙)가 붙어 있어 실제 수취 과정에서 활용된 장부임을 보여 주고 있다. 총결부수는 5결 88부 3속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부에 속한 지역에는 장용영, 용동궁, 내수사, 충훈부 등 여러 중앙관청, 궁방의 둔전답이 설치되어 있었다.

18세기 중반 화성부에 소재한 궁방의 둔전 경영 양상을 의열궁(義烈宮 : 1788년 이후 宣禧宮) 둔전의 사례로 검토할 수 있다. 주요하게 검토할 자료는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南陽府所在田畓陳起區別成冊)』이다.[41] 이 성책(成冊)은 기본적으로 양안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작성연대는 1783년(정조 7)으로 비정되는데 18세기 중반 궁방의 둔전 경영의 특색을 담고 있다. 또한 화성부에 설치된 여러 궁방 둔전의 농업 경영의 실례를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이 성책은 전답의 기진(起陳)을 구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42]

이 성책과 같이 검토해야 할 자료가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南陽府馬山洞所在義烈宮田畓打量成冊)』이다.[43] 본 타량성책의 기재 내용과 앞의 구별성책의 기재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즉 구별성책과 타량성책 모두 1783년(정조 7) 경기도 남양부 소재 의열궁(나중에 선희궁) 전답을 남양부에서 타량하여 완성한 양안이다. 자호 아래 각 필지마다 지번, 양전방향, 전품, 전형, 지목, 야미수, 장광척수, 결부수, 사표, 진기, 주명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2개의 성책의 다른 점은 구별성책의 작성시기가 2월

40 『수원전안(水原田案)』(규 16340).
41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南陽府所在田畓陳起區別成冊)』(규 20451).
42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규 20451). 1783년(정조 7) 경기도 남양부 소재 궁둔의 진기(陳起)를 구별하여 정리한 성책이다.
43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南陽府馬山洞所在義烈宮田畓打量成冊)』(규 18772). 1783년(정조 7) 경기도 남양부 소재 선희궁 전답을 남양부에서 타량성책한 것이다.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타량성책은 3월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진기(陳起)를 구별하여 작성한 성책을 바탕으로 타량성책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타량성책의 정본(定本)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된 초본(草本)을 구별성책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확실한 단언을 내리기 어렵다.

구별성책과 타량성책의 기재양식을 살펴보고 기재 내용을 검토하면, 특정 궁방인 의열궁에서 수세를 위해 어떻게 토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였는지 살필 수 있다. 특히 진전답(陳田畓)을 제외하고 기전답(起田畓)만 선택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진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개의 성책에 보이는 주명 기재방식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의미들을 밝히고자 한다.

2개의 성책의 기재양식은 세 가지 유형의 주명 기재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44] 첫 번째 방식은 맨 첫 필지에 주(主) 다음에 궁둔이라 기입한 것을 계속 이어받아 두 번째 필지부터 계속해서 '주(主) 동인(同人)'이라 기재한 방식이다. 성책에 기(起) 자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起) 주(主) 동인(同人)'과 같이 기입되어 있다. 주명에 보이는 동인은 맨 첫 필지에 보이는 궁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표에 등장하는 인명 속에 궁둔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표에 들어 있는 인명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일단 1783년에 완성된 성책의 작성 주체인 궁방으로 해당 전답이 옮겨지기 전에 작성된 양안의 사표에 기재된 인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성책을 작성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양안에서 전품, 결부수 등과 더불어 사표를 옮겨 기입하였지만, 그 양안에 적혀 있던 주명이 이제 궁둔이 되었으므로 옮겨 적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성책은 기전과 기답만 선별하여 수록하고 진전과 진답은 제외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전 양안에서 주명을 옮겨 적는 일이 번거로운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본 성책은 궁둔으로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경전만 조사한 것이고, 해당 필지의 경작인, 전세 납부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장부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식은 주명 기재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이다.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南陽府所在田畓陳起區別成冊)』의 중간 부분에 황(皇)자에 속하는 필지를 기술하는 곳부터 주명에 대한 기재가 아예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기(起)라는 글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황(皇)자의 지번 1부터 60까지 모두 기(起)와 주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

44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南陽府所在田畓陳起區別成冊)』(규 20451);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南陽府馬山洞所在義烈宮田畓打量成冊)』(규 18772).

런데 사표를 보면 대다수가 동인(同人)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문대(文大), 노미(老味) 등의 인명과 진황(陳荒), 구축(舊築) 등의 지형, 지목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 있다. 이러한 사표의 표기방식은 앞서 기재된 필지들에 보이는 '기(起) 주(主) 동인(同人)'을 생략한 경우로 보인다. 즉 같은 황(皇)이라는 자호(字號)로 묶인 60개의 필지이기 때문에, 굳이 '기(起) 주(主) 동인(同人)'을 다시 기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성책의 첫 부분에서 황(皇)자까지 각 필지의 결부수를 종합하면 3결 4부 3속으로 계산되는데,[45] 이는 성책 중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已上) 답(畓) 5결(結) 49복(卜) 3속(束) 내(內) 구진(舊陳) 2결 45복 실기(實起) 3결 4복 3속" 가운데 실기(實起), 즉 실결(實結)이면서 기경(起耕) 상태인 것의 수치와 일치된다. 결국 본 성책의 내용 가운데 이 부분까지는 진답을 제외한 기답만 기재한 것이었다.

세 번째 방식은 삼복(三卜)이라는 주명으로 통일된 경우이다. 며지곶면(旀知串面)에 소재한 전답을 기록한 부분이다. 자호(字號) 다음에 지번(地番), 전품(田品), 전형(田形), 지목, 장광(長廣) 척수(尺數), 결부수를 기록한 다음에 기진(起陳)을 기재하고 이어서 '주(主) 삼복(三卜)'이라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다. 삼복은 결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특정한 노명(奴名)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융(戎)자에 들어 있는 지번 1번에서 18번까지의 필지의 경우 1번에서 3번 필지는 외답(外畓)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어서 결부수가 기재되어 있고, 4번 이하의 필지는 외(外)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 전체 결부수는 1결 76복으로 기재되어 있다.[46]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남양부며지곶면소재선희궁전답양안(南陽府旀知串面所在宣禧宮田畓量案)』이다. 이 양안은 1870년(고종 7) 남양부에서 작성한 며지곶면에 소재한 선희궁 전답에 대한 양안이다. 작성형식은 자호 다음에 필지마다 지번, 양전방향, 전품, 전형, 지목, 야미수(夜味數), 장광척수, 결부수, 사표, 진기, 작인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양안에 수록된 필지 가운데 융(戎)자에 속한 필지의 경우 지번 표시 자리에 '외답(外畓)'이라는 기재 내용이 들어 있다.[47] 외답이라는 표현은 앞서 살펴본 성책에 등장하는 표현과 일치된다. 또한 이 양안의 기진(起陳)과 주명을 기재하는 부분에 '기(起) 삼복(三福)'으로 첫 필지가 적혀 있고, 다음 필지는 모두 '기(起) 동인(同人)'

45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규 20451)에서 앞에 수록된 '기(起) 주(主) 동인(同人)'이 기재된 필지의 종합이 1결 86부 3속이고, 이어서 나오는 황(皇)자 60필지의 종합이 1결 18부이어서 두 부분을 합하면 3결 4부 3속이다.

46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규 20451).

47 『남양부며지관면소재선희궁전답양안(南陽府旀知串面所在宣禧宮田畓量案)』(규 18742). 1870년(고종 7) 남양부에서 작성한 남양부 며지곶면에 소재한 선희궁 전답에 대한 양안이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살핀 성책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본 양안의 전체 결부수는 1결 44부 2속으로 기재되어 있어 본 성책의 1결 76복과 거의 일치된다. 따라서 1783년에 작성된 성책의 내용이 1870년에 작성된 선희궁 양안으로 분명하게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1783년의 성책에 등장하는 궁둔의 궁(宮) 또한 선희궁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희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사친(私親)인 영빈 이씨(暎嬪 李氏)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으로 1762년(영조 38)에 창설되었다.[48] 처음에는 의열묘(義烈廟)로 칭하였으나, 1788년(정조 12)에 묘호(廟號)를 선희(宣禧)로 개칭하면서 선희궁이라 칭하게 되었다. 선희궁에 소속된 장토 전체를 살필 수는 없지만, 의열궁이었던 시기의 장토 현황을 1787년 시점에 찾아볼 수 있다. 1787년(정조 11) 만들어진 『내수사급각궁방전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內需司及各宮房田畓總結與奴婢總口都案)』을 보면 의열궁의 장토 가운데 경기 남양 지역에 7결 25부 3속의 유토면세(有土免稅)가 설치되어 있었다.[49] 앞서 검토한 성책에 기재된 총결부수는 성책 중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5결 49복 3속' 과 며지곶면의 결부수로 기재된 1결 76복을 합한 것인데, 너무나 분명하게 7결 25부 3속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수치자료의 분명한 일치는 본 성책과 이 양안이 동일하게 선희궁에 소속된 둔전답을 다루고 있으며, 본 성책에 등장하는 궁둔은 곧 선희궁 둔전이라는 뜻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양부에 존재하던 선희궁 둔전은 엄밀한 여러 장부의 작성과 계승, 그리고 둔전에서의 기진(起陳) 구별과 기전답 수취 등의 과정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2. 19세기 화성부 둔전의 변동

화성부와 장용영 소속의 둔전은 매득, 다른 아문이나 궁방에서 이속 등의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수어청에서 장용영, 화성부로 이속된 오둔을 비롯하여 매득으로 확보한 장흥부 소재 둔전 등이 그것이었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면서 곧장 화성부, 장용영 둔답의 소속처가 바뀌는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이는 정조의 죽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1800년 6

48 심재우, 「조선후기 선희궁의 연혁과 소속 장토(庄土)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194쪽.
49 『내수사급각궁방전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內需司及各宮房田畓總結與奴婢總口都案)』(규 9823). 심재우, 「조선후기 선희궁의 연혁과 소속 장토(庄土)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202쪽.

월 28일 오전 혼수상태에 빠진 정조가 깨어나지 못하고 발병 20여 일 만에 그날 오후 늦게 창경궁 영춘헌에서 서거하였다.[50]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장용영의 재정을 축소하는 여러 조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정조가 죽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1802년 1월부터 장용영 혁파 논의가 시작되었다. 결국 그해 9월에 들어서면서 장용영의 전곡포목(錢穀布木)에 대한 구처(區處)방안이 마련되어 여러 아문으로 나뉘어 소속되었다.[51]

1802년 9월 장용영 소속 둔토에 대한 구처방안도 마련되어 시행되었다.[52] 장용영의 둔전 몇 곳은 그대로 화성부에 소속되었다. 수원둔(水原屯 : 稅租 380석 錢 48냥), 안산둔(安山屯 : 稅錢 180냥), 시흥둔(始興屯 : 세전 280냥), 용인둔(龍仁屯 : 세전 253냥) 등은 급가매득하여 수세하던 곳이어서 외영을 혁파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성부의 형세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속시킨 것이었다.

또한 외별고에 소속되어 있던 외영 소관의 둔전 등도 그대로 수원부에 남아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유천(柳川)·평산(平山)·신천둔(信川屯 : 세조 作錢 1,430냥), 장수사(長水寺 : 세전 200냥), 수성고 소관 대유둔(大有屯 : 賭地租 690석), 무오매답(戊午買畓 : 도지조 72석), 관천고 소관 화소내(火巢內 : 세조 작전 2,100냥), 연산둔(連山屯 : 세조 작전 2,000냥), 평신둔(平薪屯 : 세곡 900석, 牙兵收布 700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화성부에 매득하여 설치하였던 장흥 지역의 둔답은 내수사로 이속되었다. 장흥 지역 둔답 이외에 다른 21곳의 둔전은 본래 내수사, 양향청(糧餉廳), 수진궁(壽進宮), 명례궁(明禮宮), 육상궁(毓祥宮) 등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인데 대토(代土)를 지급하고 장용영으로 이속시킨 것이었다. 여기에 매득하여 설치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대가를 원 소속처에 지불하고 장용영이 확보하고 있던 둔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원래 소속처로 보내는 것은 중복하여 보상하는 일에 해당되었다. 그리하여 내수사에 모두 소속시켰다.

내수사에 소속처가 옮겨진 장흥부 둔답은 일부분이 다른 궁방으로 이속되기도 하였다. 1803년 장흥부 남토면(南上面)의 둔답 156두락 7승락 가운데 121두락 5승락이 전교(傳敎)에 따라 육상궁으로 이속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53] 또한 1804년 『일성록(日省錄)』 기사에

50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16쪽.
51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곡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24, 1999, 273~276쪽.
52 『비변사등록』, 순조 2년 9월 2일, 장용영 둔토 구처별단. 정조 대 장용영 둔전에 대해서는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논문집』 32, 2001 참고.
53 『전라도장토문적(全羅道庄土文績)』(규 19301) 제21책(장흥군 소재 장토 용동궁 소관) 100, 「乾隆十九年-甲戌-四月初九日金汗良處明文」(1754년, 영조 30). 이 토지 매매문기에 붙어 있는 첨지(籤紙)는 1803년 육상궁(毓祥宮)으로 이거(移去)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는 장용영을 철파한 뒤 화성의 속읍에 설치되어 있던 둔전에서 거둔 세금을 비변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 기사는 강화부에서 화성부 속읍의 둔세를 획득하기 위해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4] 이렇게 정처가 정해지지 않았던 화성부 소속 둔답 가운데 장흥부 소재 화성부 둔답은 1816년 숙선옹주방(淑善翁主房)으로 이속되기도 하였다. 1860년 이전에 다시 용동궁으로 이속되었다.[55]

19세기 말 화성부에 설치되어 있던 둔전의 대체적인 현황을 『화영중기(華營重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표지에는 『화성중기(華城重記)』로 제목이 적혀 있다.[56] 그런데 '화영(華營)' 은 화성유수영을 줄임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관청의 물목, 재정 등을 정리한 자료에 관청명인 화성유수부와 연관된 화영을 쓰는 것이 보다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유구(徐有榘)가 1836년 1월 1일부터 1837년 12월 12일까지 수원유수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기록물도 『화영일록(華營日錄)』[57]으로 제목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화영중기』로 칭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영중기』는 18세기 말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화성유수부의 각종 공해(公廨)와 재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이다. 본래 '중기(重記)' 란 호조에서 각 관청의 회계를 감독하거나 경외(京外)의 각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토록 규정한 회계장부 또는 물품조사서 및 해유(解由)할 때에 작성하는 이관(移管) 물품의 명세서를 말한다.[58]

"중기는 재정과 관련된 아문들의 출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또는 관리의 해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작성"[59]된 것이었다. 따라서 화성유수의 교체 시기에 수원부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화영중기』의 경우 당시 화성유수부 재무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기는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의 재무 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갖고 있는 장부

54 『일성록』, 순조 4년(1804) 8월 4일 갑자.
綱 : 命華城屬邑屯稅 留儲錢 及本屯 幷屬江華府
目 : …… 惟是華城屬邑屯稅 自壯營撤罷後 無他歸屬 姑自備局句管 其數每年爲二千兩零 前此留儲 亦過三千 以此見錢及本屯幷屬本府 一以爲目下工役之費 一以爲來後添餉之資 似好矣 從之.

55 『장흥부소재화성부둔답양안(長興府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 18660). 이 양안 끝에 첨부된 용동궁수본(龍洞宮手本 : 1861년)과 내수사감결(內需司甘結)에 의하면 이 둔답은 용동궁에서 수세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화성부둔답은 1861년 이전에 용동궁으로 이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6 수원시, 「화성중기(華城重記) 해제」, 『화영중기』(번역본), 2008. 수원시는 조선 후기 화성의 물목과 재정 현황을 알 수 있는 『화영중기(華營重記)』를 발굴해 국역하였다.

57 『화영일록』은 2004년 경기도박물관에서 번역 간행하였다.

58 김혁, 「고문서용어 풀이 : 중기(重記)」, 『고문서연구』 19, 한국고문서학회, 2001, 157쪽.

59 김혁, 「고문서용어 풀이 : 중기(重記)」, 『고문서연구』 19, 한국고문서학회, 2001, 163쪽.

라고 할 수 있다.

『화영중기』는 표지에 '신묘(辛卯) 시월(十月)' 이라는 연월(年月) 표기가 들어 있고, 형방색(刑房色) 항목 서술 내용 가운데 '『대전회통(大典會通)』 5권'[60]이 들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1891년 10월에 작성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형방색은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 이외에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을 모두 비치하고 있었다.


축만제비

『화영중기』는 화성유수부의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화성부 관련 둔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화영중기』의 목차 가운데 여러 화성부 둔전에 대한 서술방식에서 당시 화성부 둔전이 여러 갈래의 둔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여러 창고를 서술하는 부분 중 대유둔전(大有屯田)에 대해 서술한 '둔소(屯所)', 서둔(西屯) 또는 축만둔(祝萬屯)으로 불린 둔전에 대한 부분인 '축만제(祝萬堤)', 1796년에 신축한 언답(堰畓)인 '삼도둔(三島屯)' 등을 설명하는 부분과 뒤쪽에 '오둔(五屯)' 이라는 항목 아래 부곡둔, 모현둔, 안양둔, 험천둔, 도촌둔 등 5개 둔전을 따로 묶어서 서술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둔소, 축만제, 삼도둔을 하나로 묶어서 서술한 부분과 오둔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서술한 부분은 서술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술 내용의 차이는 곧 둔전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둔소의 서술 내용을 보면, 대유둔의 형성 시기와 매득한 답(畓)의 두락수, 도조 액수, 조(租)의 재고와 지출 내역, 전(錢)의 재고와 지출 내역 등이 들어 있다. 그리고 축만제의 경우 전답의 결부수, 두락수, 제내(堤內) 수침(水沈) 답(畓)의 크기만 기재되어 있다. 삼도둔의 경우는 신축(新築) 언답(堰畓)의 결부수, 두락수, 기간(起墾) 여부에 따른 결부수, 두락수 등을 기재하고 현재 실(實) 결부수와 두락수를 기재하고 있다.[61]

60 수원시, 「화성중기 해제」, 『화영중기』(번역본), 2008, 45쪽.
61 수원시, 『화영중기』(번역본), 2008, 84~86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둔소 등의 서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부수, 두락수 등 둔전의 전체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축만제에 대한 서술 내용 가운데, 답 가운데 일부를 유사(有司) 및 간사(幹事)에게 영구히 획급해 준다는 기재가 보이고, 삼도둔의 경우에도 유사와 간사, 사음에게 지급할 몫이 기재된 것이 보인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유사 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제외한 것이 바로 타작하여 도조로 둔소, 축만제, 삼도둔 등의 명목으로 봉상하는 액수가 된다. 결국 둔소 등의 기재 내용은 해마다 들어올 도조 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결부수, 두락수 파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수취(收取)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둔의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핀 둔소 등과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부곡둔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원장부 회부(會付) 전답의 결부수를 기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둔소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곡둔에 관한 기재 내용은 양안, 둔우(屯牛), 봉상(捧上) 청사(廳舍), 고사(庫舍), 양기(量器) 등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 세전의 액수를 기재하고 있다.[62] 양안 이하의 서술 내용은 둔전의 직접적인 농업 경영과 관련된 둔우의 마리수 기재, 그리고 도조의 수취뿐만 아니라 운반과 보관에 관한 창고와 양기 등에 대한 것이었다. 양안의 경우 화성부가 확보하고 있는 전체 둔전 등에 대한 양안은 호방색(戶房色) 항목에 서술되어 있었다.[63] 하지만 오둔의 경우에는 해당 둔전의 내역을 정리한 양안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둔의 경우는 둔전에서의 도조 수취뿐만 아니라 둔전의 농업 경영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둔소, 축만제, 삼도둔의 경우는 화성부에서 수취에만 유의하면 되는 성격의 둔전이었고, 오둔에 포함된 다섯 곳의 둔전은 수취 이외에 농업 경영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둔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의 시점에서 오둔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오둔은 수원부에서 재정 운영에 활용한 둔전 가운데 수원부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둔전이었다. 첫 번째로 부곡둔(釜谷屯)은 용인군(龍仁郡) 포곡면(蒲谷面)에 위치하고 있었다. 부곡둔의 전답 상황을 보면 원장부에 회부된 전답이 61결 20부나 되었다. 이 중에서 전은 49결 53부 8속으로 전체의 80.9% 정도를 차지하고, 답은 나머지 약 10% 정도인 11결 66부 2속이었다. 기경전(起耕田)과 진전(陳田)은 해마다 달라졌다. 부곡둔 경영을 위해 경우(耕牛)가 둔우(屯牛)라는

62 수원시, 『화영중기』(번역본), 2008, 117~119쪽.
63 수원시, 『화영중기』(번역본), 2008, 33~35쪽.

이름으로 배설되어 있었는데 총 17마리였다. 그리고 감관(監官)이 둔전 경영을 주관하는 봉상청사(捧上廳舍) 초가(草家) 3칸, 그리고 추수한 곡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고사(庫舍) 초가 8칸이 부속되어 있었다. 여기에 수확한 곡물을 봉상(捧上)하면서 되질할 때 사용하는 양기(量器)로 곡(斛), 두(斗), 승(升)도 갖추고 있었다. 부곡둔에서 당시 1891년에 거둔 세전은 349냥 4전 7푼이었다. 본래 이보다 100냥이 많았는데, 정장(呈狀)하려 제감(除減) 받은 것이 100냥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모현둔(慕賢屯)은 용인군 모현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화영중기』에는 모현둔(募賢屯)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모현둔(慕賢屯)이 올바른 표기일 것으로 보인다. 뒤에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현둔에 관련된 둔전민의 진정 내용을 기재한 소장(訴狀)에 모현둔(慕賢屯)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답 상황도 앞서 부곡둔과 비슷한 양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장부에 회부된 전답이 20결이어서 부곡둔에 비하여 3분의 1 정도의 규모였다. 이 중에서 전은 7결 51부, 답은 12결 49부였다. 또한 기경전과 진전은 해마다 달라졌다.

모현둔 경영을 위해서도 경우가 둔우라는 이름으로 배설되어 있었는데 총 17마리였다. 그리고 감관이 둔전 경영을 주관하는 봉상청사 초가 6칸, 그리고 추수한 곡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고사 초가 3칸이 부속되어 있었다. 둔전답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가의 크기도 크지 않았다. 대신 대청(大廳) 초가 3칸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확한 곡물을 봉상하면서 되질할 때 사용하는 양기로 곡, 두, 승도 갖추고 있었다. 모현둔에서 당시 1891년에 거둔 세전은 90냥 4전 9푼이었다.

오둔 가운데 세 번째는 안양둔(安養屯)이었다. 안양둔은 수원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과천현 안양면으로 이속(移屬)되었다. 안양둔의 전답 상황 기재 내역을 보면 원장부에 회부된 전답이 4결 42부 5속이고, 이 중에서 전은 1결 50부, 답은 2결 92부 5속이었다. 기경전과 진전은 해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안양둔 경영을 위해서도 둔우가 있었는데 총 7마리였다. 그리고 감관이 둔전 경영을 주관하는 봉상청사나 추수한 곡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고사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안 2건이 비치되어 있었다. 안양둔에서 당시 1891년에 거둔 세전은 39냥 7전 2푼이었다.

오둔 가운데 네 번째는 험천둔(險川屯)이었다. 용인군에 위치한 험천둔의 전답 상황을 보면 원장부에 회부된 전답이 17결 13부 3속이었다. 이 중에서 전은 11결 42부 3속, 답은 2결 92부 5속이었다. 기경전과 진전은 다른 둔전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달라졌다.

험천둔 경영을 위해서도 둔우가 총 3마리 배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감관이 둔전 경영을 주관하는 봉상청사 초가 9칸, 그리고 추수한 곡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고사 초가 3칸이 부

속되어 있었다. 한편 수확한 곡물을 봉상하면서 되질할 때 사용하는 양기로 곡, 두, 승을 갖추고 있었다. 험천둔에서 당시 1891년에 거둔 세전은 71냥 9전 5푼이었다.

오둔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촌둔(道村屯)이었다. 『화영중기』에는 '도촌(導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읍지 자료 등에는 '도촌(道村)'으로 나오고 있어 일단 '도촌둔'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촌둔도 용인군에 위치하고 있었다. 도촌둔의 전답 상황을 보면 원장부에 회부된 전답이 14결 62부 7속 가운데, 전은 5결 98부 1속, 답은 8결 64부 6속이었고, 다른 둔전과 마찬가지로 기경전과 진전은 해마다 달라졌다.

도촌둔 경영을 위해서 둔우가 총 10마리 배설되어 있었다. 감관이 둔전 경영을 주관하는 대청 초가 3칸, 그리고 추수한 곡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고사 초가 5칸이 부속되어 있었다. 한편 수확한 곡물을 봉상하면서 되질할 때 사용하는 양기로 곡(斛), 두, 승도 갖추고 있었다. 도촌둔에서 당시 1891년에 거둔 세전은 91냥 6전 9푼이었다. 이상 1891년 화성부 소속 오둔의 전답 현황과 세전 내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891년 화성부 소속 오둔의 전답 현황과 세전(稅錢) 내역[64]

둔전명	위치	전	답	세전	비고
부곡둔 (釜谷屯)	용인군 포곡면	49결 53부 8속	11결 66부 2속	349냥 4전 7푼	100냥 제감(除減)받음
모현둔 (慕賢屯)	용인군 모현면	7결 51부	12결 49부	90냥 4전 9푼	
안양둔 (安養屯)	과천현 안양면	1결 50부	2결 92부 5속	39냥 7전 2푼	
험천둔 (險川屯)	용인군 험천면	11결 42부 3속	2결 92부 5속	71냥 9전 5푼	
도촌둔 (道村屯)	용인군 도촌면	5결 98부 1속	8결 64부 6속	91냥 6전 9푼	

1890년대 화성부 둔전의 변동은 전체 궁방전, 아문둔전, 역전 등의 변동과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둔토(驛屯土), 궁장토(宮庄土) 등으로 불린 여러 궁방의 둔전답, 중앙아문, 지방관청의 둔전답은 면세지의 지위를 잃고 출세지로 변모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나타난 조선정부의 농업정책은 탁지부라는 단일 아문으로 재정기구를 일원화시키려는 것이었다.[65]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군사 재정과 지방 재정도 중앙

64 수원시, 『화영중기』(번역본), 2008.

정부 재정으로 흡수되어 탁지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재정기구의 일원화는 모든 재정 사무를 탁지부에서 관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원을 탁지부로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당시 주요한 재원 산출 부문이었던 농업에서의 국가 세입(稅入)을 일원화시키는 것이었다.

군국기무처는 먼저 1894년 8월 사궁장토(司宮庄土)와 역토, 둔토 등 과거의 면세지를 탁지아문으로 승총(陞摠)하여 민유지와 마찬가지로 지세(地稅)를 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66] 즉 면세지의 관장 아문을 탁지아문으로 바꾸는 조처가 바로 면세지 승총, 달리 말해서 '갑오승총(甲午陞摠)'으로 불리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종래 각 궁(宮) 혹은 아문에서 거두어들이던 궁장토와 둔토의 결세를 탁지아문에서 일괄적으로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역둔토는 그 관리권이 여러 기관으로 옮겨 다니다가 1895년 3월 공무아문이 농상아문과 통합되어 농상공부로 되자 자연히 농상공부에 귀속되었다.[67] 결국 갑오개혁기에 궁장토는 각 궁방에서, 둔토는 궁내부와 탁지부 혹은 지방관아에서, 역토는 농상공부에서 각각 관할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1895년에 실시한 농상공부의 을미사판(乙未査辦)은 역둔토의 실결(實結)을 파악하고, 진폐지(陳廢地)·신간지(新墾地)를 조사하고, 기경지 경작자를 조사·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894년 이후 화성부의 둔전의 경우도 궁내부와 탁지부 또는 지방관아로 이속되었다. 이와 직접 관련된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京畿各郡牧場量案抄錄)』,[68] 『경기목장양안(京畿牧場量案)』,[69]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査成册)』[70] 등의 자료에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은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내장원에서 경기도 각 군 소재 목장토(牧場土)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군 목장양안을 초록해 작성한 책이고,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은 수원지방대에서 1897년(광무 1) 10월 경기도 진위·양성 등 75군의 각 둔토를 조사하여 만든 책으로 각군에 있는 각 기관의 둔전를 기록하고 그 둔전답의 도조, 두락수 등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은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내장원에서 경기도 각 군 소재 목장 양안을 초록하여 작성한 책이다. 각 목장마다 자호와 전체 전답 결부수만 기재

65 이하 재정기구 일원화와 갑오승총, 지세 수입 등에 대한 서술은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에 의거하였다.
66 『의정존안(議政存案)』(규 17236)(『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 도서관, 1991, 59쪽); 「의안(議案) 궁토·역토·둔토의 출세(出稅)에 관한 건」, 1894년 8월 26일,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Ⅰ, 96쪽.
67 김양식, 「대한제국·일제하 역둔토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68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京畿各郡牧場量案抄錄)』(규 19615).
69 『경기목장양안(京畿牧場量案)』(규 19124).
70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査成册)』(규 19550).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규 19615)

되어 있는데, 이는 세밀한 각 목장의 필지 확인에 앞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려는 초록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1895년 당시 궁내부 내장원에서 경기 지역 목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었음을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목장양안』은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내장원에서 경기도의 전곶장(箭串場), 영종장봉장(永宗長峯場), 영종진목장(永宗鎭牧場), 강화주문도목장(江華注文島牧場), 수원괴태곶목장(水原槐台串牧場) 등 5개 목장을 타량하여 각각 1책으로 정리한 양안이다. 제5책은 수원 지역 목장토를 정리한 양안인데, 경기수원괴태곶목장양안(京畿水原槐台串牧場量案), 경기수원목장양안(京畿水原牧場量案 : 洪原串), 수원목장양안(水原牧場量案 : 水流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양안의 작성 목적도 소유지 확인보다는 전체 면적 확인에 있었기 때문에 지번이나 일경 표시가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양안 끝부분에 총 전답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괴태곶목장이 22결 23부 4속이고, 수원목장(洪原串)이 77결 54부이며, 수원목장(水流里)이 66결 68부 6속이다.[71] 이상과 같은 방대한 목장토를 내장원에서 관할하게 되면서 새롭게 양안을 작성한 것이다. 목장토가 명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답 총결부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은 경작지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을 보면 1897년 당시 인천에 수원부 석장둔답 94석 19두 6승락, 도미(賭米) 97석 3두 2승 8합이 궁내부 소관이라고 실려 있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수원부 소속 둔전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용인 지역의 경우 모현둔전, 부곡둔

71 『경기목장양안』(규 19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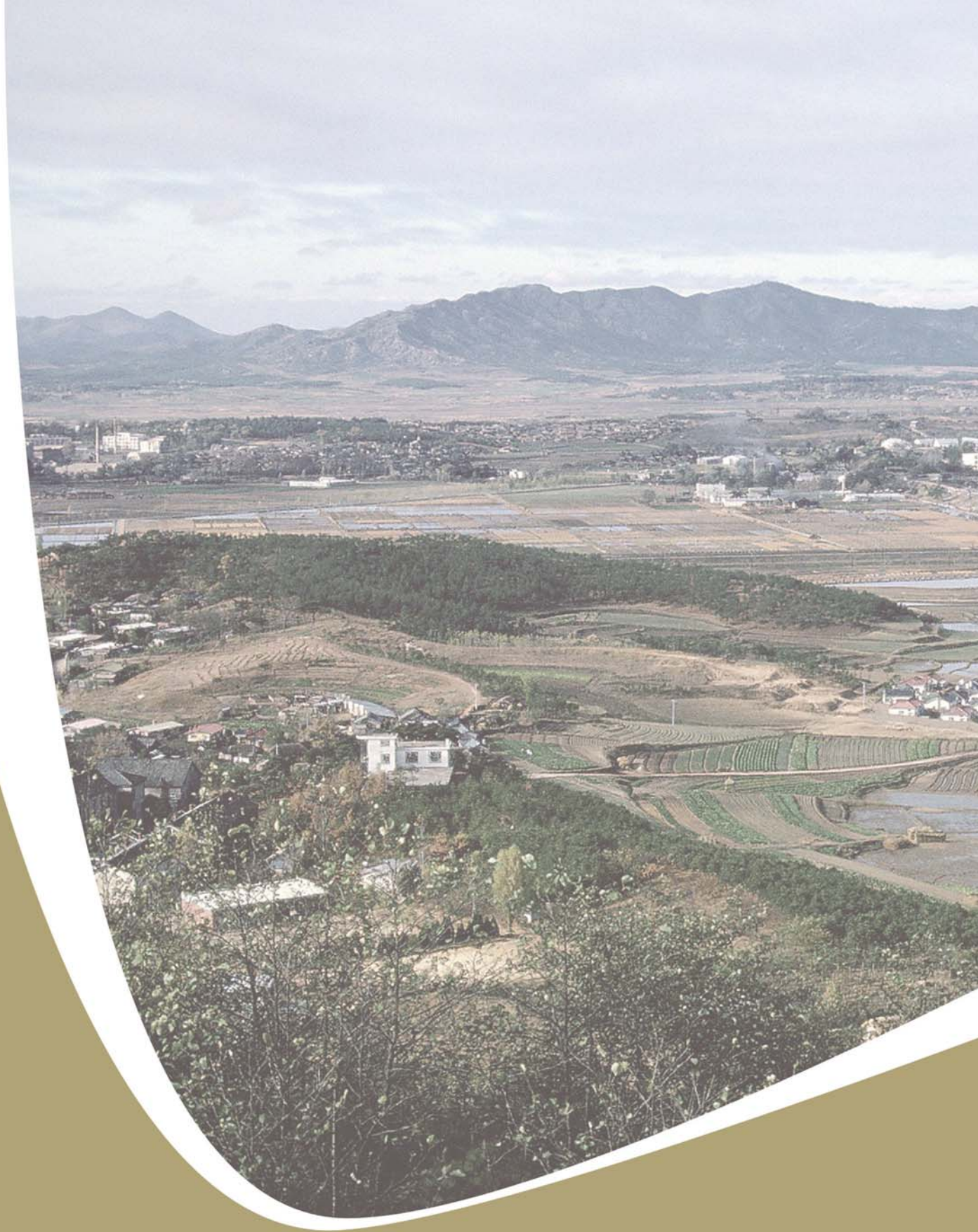
전, 험천둔전, 도촌둔전 등이 모두 궁내부 소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갑오개혁기 갑오승총을 거치면서 궁장토의 관할기관이 궁내부 등으로 변화한 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용인에 소재한 수원부 둔전답의 현황과 도전(賭錢) 내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1897년 용인 소재 수원부 둔전답 현황과 도전 내역[72]

둔전명	전	답	도전	비고
모현둔	152일 1식경	20석 8두 2승락	1,242냥 2전	궁내부 소관
부곡둔	243일 반식경	45석 8두 1승락	2,496냥 9전 6푼	궁내부 소관
험천둔	17일 반경	7석 7두락	43냥	궁내부 소관
도촌둔	13일 2식경	17석 9두 5승락	736냥 4전 5푼	궁내부 소관

앞서 1891년 상황을 정리한 〈표 3〉과 비교하면 모현둔과 부곡둔, 도촌둔은 전답의 면적과 도전의 액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갑오승총에 따라 출세(出稅)하게 된 사정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둔토의 규모 자체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험천둔은 1891년에 비해 전답 규모와 도전 액수가 크게 감축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히 둔토의 전체 규모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891년 이후 1897년 사이에 화성부 둔전의 각 개별 둔토의 경우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라는 변동 과정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도전의 수취는 지방관아인 수원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궁내부에서 관장하는 것이었다.

72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규 19550).





제2부

근대적 토지제도와 토지 소유

제1장 한말 수원의 역둔토 규모와 국유화

제2장 한말 수원의 광무양전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제4장 일제하 수원의 임야조사사업과 임야 소유권

제5장 해방 후 수원의 농지개혁



박진태 대진대학교 사학과 교수

1. 19세기 수원부의 공토
2. 을미사판 및 광무사검과 수원군의 역둔토
3. 통감부시기 수원군의 역둔토

제1장

한말 수원의 역둔토 규모와 국유화

1. 19세기 수원부의 공토

1) 19세기 전반기 수원부 둔전의 실태

18세기 말에 국왕 정조의 계획에 따라 화성이 자립적인 신도시로 건설될 때 수원 지역에는 많은 둔전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정조는 1793년 1월에 수원을 '화성'으로 개호하고 유수부로 승격시킨 다음, 자신의 개혁정치와 더불어 신설한 중앙군영으로서의 장용영을 내·외영으로 확대·개편하여 장용외영을 화성에 두도록 편제하였다.[1] 이때 중앙의 영·아문에 소속된 수원 및 인근 경기 지역 소재 둔토의 관할권이 수원부로 이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 단위를 넘어 다른 군에 위치한 둔토마저도 수원부에 소속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승영(陞營)


柳川屯 在府南五里南部上柳川本屬壯勇營 正宗丙辰移屬○屯色一人 監考一名○田畓十二結五十八負四束 信川屯 在黃海道信川郡加串坊自府距五百稅錢一百兩 五十里丙辰置○屯監一員 平山屯 在黃海道平山府方洞面八結六十五負稅錢七百兩 自府距三百三十里 正宗己未置○屯監一員○田畓十二結三十六負稅錢一百三十兩○以上三屯屬分奉常寺 松洞屯 在府西三十里 松洞面 當宇辛酉置○該屯導掌收納○田畓三十二石十二斗一升落稅錢一百八十兩 始興屯 在始興縣雪月里等面自府距五十里○畓十八石十一斗五升落稅錢一百兩 安城屯 在安城郡竹村等面自府

『화성지』 둔전

되어 40년 가까이 지난 시기에 화성유수 박기수(朴綺壽)의 주관으로 편찬된 수원의 읍지인 『화성지(華城誌)』에 잘 나타나 있다.[2] 19세기 전반기에 수원부가 관할하고 있는 둔토의 규모와 실태를 확인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화성지』(1831년)에 나타난 수원부 관할 둔전의 실태[3]

지역		둔명	위치	결부 (結負 : 束)	두락 (斗落)	세조 (稅租 : 斗)	세전 (稅錢 : 兩)	도조 (賭租 : 斗)	소속
경기도	수원부	유천둔 (柳川屯)	남부면	12,584			100.00		(장용영) 수리소 (修理所)
		오타둔 (五朶屯)	오타면	10,644			104.50		
		포내둔 (浦內屯)	포내면	2,326		167.2			고마고 (雇馬庫)
		숙성수둔 (宿城搜屯)	숙성면	5,320		520.0			책응고 (策應庫)
		삼도둔 (三島屯)	가사면	24,477			400.00		
		대유둔 (大有屯)	일용면		2,252.4			15,286.5	수성고 (修城庫)
		축만제둔 (祝萬堤屯)	서쪽 5리		1,675.4			11,124.4	
		송동둔 (松洞屯)	송동면		652.1		180.00		향탄둔 (香炭屯)
		소계		55,351	4,579.9	687.2	784.50	26,410.9	
	용인현	용인둔 (龍仁屯)	지내면	5,389			75.44		수리소
		험천둔 (險川屯)	험천면	17,133			71.94		(수어청) 호방(戶房)
		부곡둔 (釜谷屯)	부곡면	61,120			349.00		
		도촌둔 (道村屯)	도촌면	14,627			91.69		
		모현둔 (慕賢屯)	모현면	20,000			90.49		
		소계		118,269			678.56		

1 장용외영이 1795년에 용인, 진위, 안산의 수어청 및 총융청 속오군을 이속받고, 1797년에 총융청 남양방영(南陽防營)에 소속되어 있던 시흥현과 과천현을 수원부에 이속받아 협수군(協守軍)체제를 중심으로 편제 운영되는 사실은 수원부 관할 타군 소재 둔토의 성격을 이해하게 한다(이태진, 「정조대의 왕권강화와 장용영 경영」,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변천』, 한국연구원, 1985;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257~272쪽). 한편 이 시기 둔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장용영이 지닌 정치, 군사적 성격 외에 재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장용영곡의 전국적 설치와 운영을 분석한 글도 장용영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송찬섭, 「정조대 장용영곡(壯勇營穀)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2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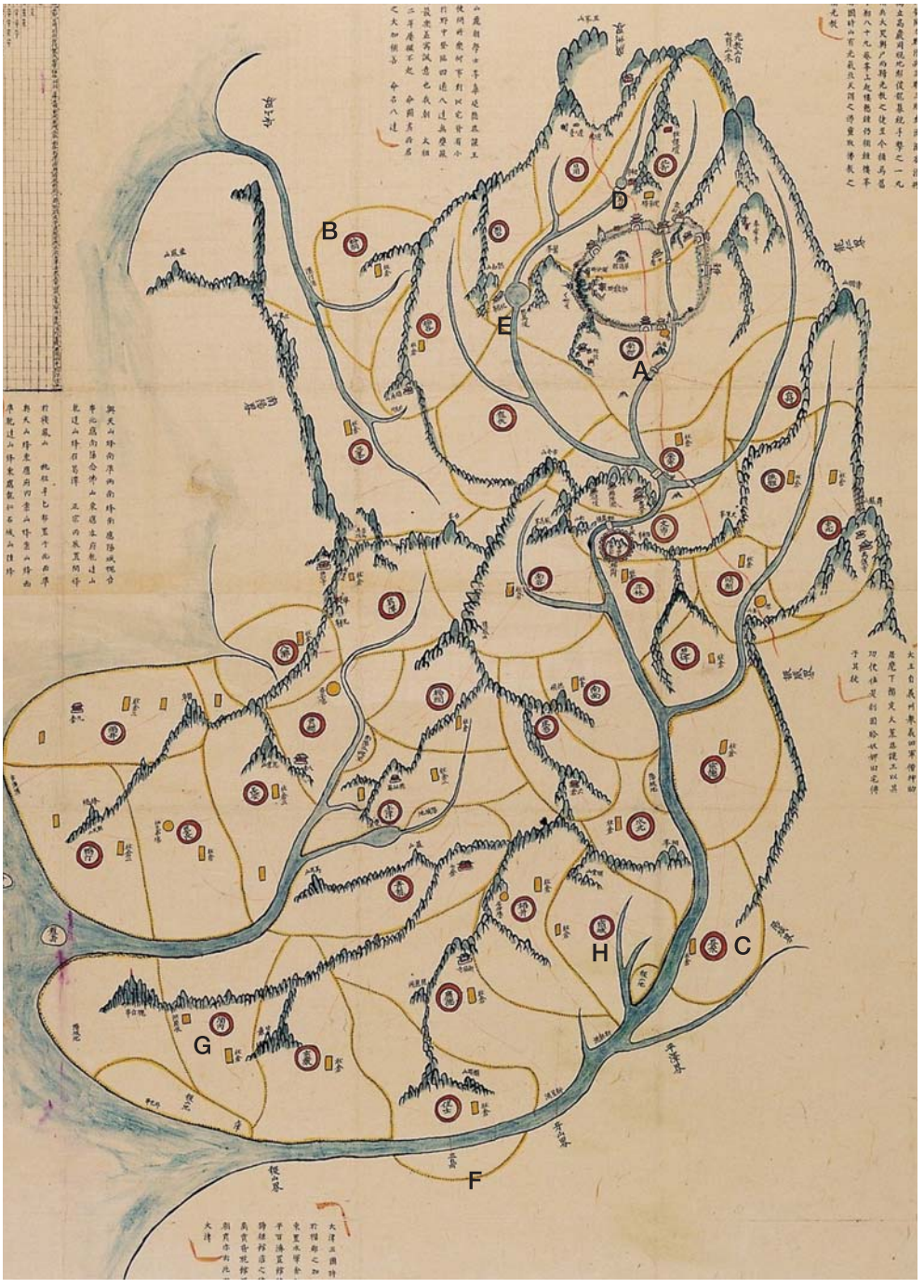
2 『화성지(華城誌)』, 1831.

3 1석(石)=20두(斗), 조(租) 1석=1.3냥(조 1두=0.065냥)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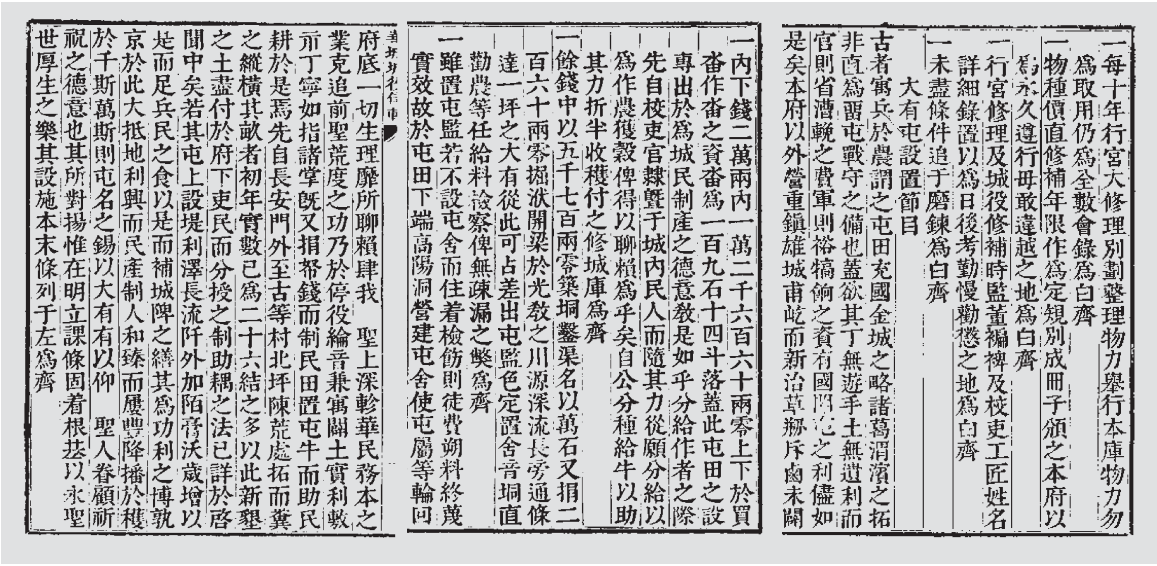
지역		둔명	위치	결부 (結負 : 束)	두락 (斗落)	세조 (稅租 : 斗)	세전 (稅錢 : 兩)	도조 (賭租 : 斗)	소속
경기도	경기 6둔	안양둔 (安養屯)	과천현	4,425			39.72		호방
		시흥둔 (始興屯)	시흥현		371.5		100.00		향탄둔
		안산둔 (安山屯)	안산군	4,069			42.68		수리소
		석장둔 (石場屯)	안산 · 인천	31,070			130.00		(진휼청)
		양성둔 (陽城屯)	양성군		376.0		720.00		향탄둔
		안성둔 (安城屯)	안성군		443.5				
		소계		39,564	1,191.0		1,032.40		
	합계			213,184	5,770.9	687.2	2,495.46	26,410.9	
충청도		결성둔 (結城屯)	결성현	4,385			40.00		팔색고 (八色庫)
		평신진둔 (平薪鎭屯)	평신진	388,709			3,670.50		영고 (營庫)
		연산둔 (連山屯)	연산현	25,218			700.00		관천고 (筦千庫)
		합계		418,312			4,410.50		
황해도		평산둔 (平山屯)	평산부	12,360			130.00		
		신천둔 (信川屯)	신천군	38,650			700.00		
		마정둔 (馬井屯)		4,037			60.00		군기고 (軍器庫)
		가관방둔 (加串坊屯)		7,118			45.00		
		광암둔 (廣巖屯)	은율현	34,427			50.00		
		대소청둔 (大小靑屯)	백령진				30.00		
		합계		96,592			1,015.00		
총계				728,088	5,770.9	687.2	7,920.96	26,410.9	

우선 당시 수원부 관할 둔전은 수원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서 유천둔을 비롯한 8개 둔토가 확인되며, 이웃 현인 용인현에 5개, 과천현의 안양둔과 시흥현, 안산군, 인천부, 양성군, 안성군 등지의 6개 둔토가 수원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충청도의 3개 둔과 황해도의 6개 둔을 포괄하고 있다.

수원부의 남쪽 지역인 포내면 소재 포내둔은 수원이 유수영으로 승격되기 전부터 설치



19세기 화성 관내 둔전 위치(「수원부지도」, 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 : 유천둔, B : 송동둔, C : 오타둔, D : 대유둔, E : 축만제둔, F : 삼도둔, G : 포내둔, H : 숙성환포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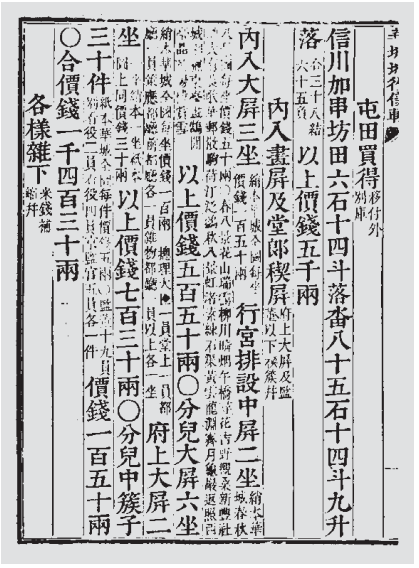


『화성성역의궤』, 부편 2, 대유둔설치절목

되어 고마고에 소속되었던 것이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화성 신도시의 건설과 관련하여 신설되거나 이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부 남쪽 5리 남부면에 위치한 유천둔과 오타면의 둔전은 수원에 장용외영의 설치와 관련하여 본래 중앙의 영문인 장용영 소속 둔전을 수원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1796년과 1802년에 각각 이속한 것이다. 부 북쪽 5리 정도의 일용면에 위치한 대유둔은 화성 축조와 신도시 건설을 위해 1795년에 100석락이 넘는 대규모로 새롭게 마련된 대표적인 둔전으로 확인된다. 이어서 1799년에 부 서쪽 5리에 축만제둔이 83석락 규모로 신설되어 대유둔전과 함께 수성고에 소속되고 있다.[4] 이 외에 수원부 남쪽의 숙성면과 가사면에 위치하고 언답(堰畓)으로 이루어진 숙성수둔과 삼도둔 역시 1796~1797년에 설치되어 책응고 소속으로 군사도시적 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충청도에 소재한 대규모의 평신진둔과 황해도 신천군의 여

4 『화성성역의궤』, 부편 2, 대유둔설치절목 등에 의하면, 1795년에 만석거 축조와 더불어 조성된 대유둔전은 민전 매득과 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원행을 위해 마련된 재원 중에 정리소(整理所)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과 관동곡(關東穀)을 여러 옵에서 작전(作錢)한 것을 구획하여 총 2만 냥의 자본으로 109석 14두락을 마련하였고, 그해 가을 지주제 경영을 통해 타작한 결과 766석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염정섭, 「정조 후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경영-화성성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82, 1996, 187~188쪽). 아울러 1799년에 균역청에서 빌린 1만 냥의 재원으로 조성된 축만제와 서둔으로서의 축만제둔전은 답 83석 15두 4승락에 도조로 556석 14두 4승이 확인되고 있다(염정섭, 「18세기말 화성부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1910, 72 · 84 · 88쪽).


屯田買得移付外
別庫
信川加串坊田六石十四斗落畓八十五石十四斗九升
落(六十五石)
以上價錢五千兩
內入畫屛及堂郎稧屛
以上價錢五百五十兩○分兒大屛六坐
以上價錢七百三十兩○分兒中簇子
三十件
○合價錢一千四百三十兩
各樣雜下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財用) 하, 둔전매득

러 둔전[5]도 수원부로 이속되어 영고 및 군기고에 소속되어 있다. 특히 평신진둔토는 388결 70부 9속의 규모이면서 세전이 3,670냥 5전으로 세전 합계 7,920.96냥의 46.3%에 이르고 있다. 본래 중앙의 진휼청 소속으로서 안산 및 인천 양 읍에 소재했던 석장둔이 1793년에 수원부로 이속되고, 전 수어청 소속이었던 용인현의 4개 둔과 과천현의 안양둔 등이 1798년에 수원부의 호방으로 이속되었으며, 1802년에 오타둔과 함께 경기도의 용인둔과 안산둔이 수원부의 수리소로 이속된 사실도 신행정도시의 경영과 연관된 조처이다. 한편 충청도 연산둔이 1796년에 수원부로 이속되어 관천고에 소속된 것과 함께 1801년에 신설된 송동둔, 시흥둔, 안성둔, 양성둔은 향탄둔으로서 건릉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정조 생존 시 부친인 장헌세자의 묘 현륭원 설치와[6] 정조 사후 건릉 운영을 위한 조처로 확인된다.

19세기 전반기 수원부에 소속되어 관리되던 둔전의 규모는 총 728결 8부 8속과 288석 10두 9승락(5,770.9두락)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원부에 소재한 전답은 55결 35부 1속과 228석 19두 9승락(4,579.9두락)으로써 약 18.5%에 해당한다.[7] 즉 이전에 중앙 각 아문에 소속되었던 둔토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 지역의 각 군 둔전과 충청도 및 황해도 지역의 둔전답까지 수원부 관할로 이속된 규모가 전체의 8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 신도시로서 수원부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또한 신도시 경영과 더불어 신설된 대규모의 대유둔과 축만제둔의 전답은 모민경작(募民耕作)의 형태로 주민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후 지대로서 도조(賭租)를 수취하는 국유지였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둔전은 둔세(屯稅)가 전(錢)이나 조(租)로 부과되는 토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대율로서의 두락당 도조를 통해서 둔전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대유둔은

5 황해도 신천군 가곶방에 전(田) 6석 4두락과 답(畓) 85석 14두 9승락을 합하여 38결 65부의 토지를 5,000냥으로 매득하여 둔전을 설치하고 화성 수성(修城)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財用) 하, 둔전매득).

6 현륭원 소속의 향탄둔은 이전 영우원 시기와 같이 강원도 원주목 수주면, 우변면, 좌변면, 가리파 등지 산전의 대소를 측량하고 300냥의 세를 정하였으며, 1790년대에는 600냥으로 증액되어 민막(民瘼)이 되기도 하였다(정해득,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2009, 90~96쪽).

7 조선 후기 삼남 지역의 평답 1결은 약 40두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산했을 경우이다.

6.8두, 축만제둔은 6.6두로서 민전 지주지에서의 도조율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급가매토에 의해 소유권이 확실한 제1종 유토임이 드러나고, 둔세로서 결당 세조(稅租)는 포내둔이 71.9두, 숙성둔이 97.7두여서 조 100두형의 제2종 유토에 해당하는 토지로 확인된다. 두락당 도전으로 파악되고 있는 향탄둔 전답을 제외한 전체 결당 도전은 약 9.6냥으로 계산되어 이를 조(租)로 환산하면 147.7두로 이 역시 조 100~200두형 사이의 제2종 유토 정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도조로 수납되는 대유둔과 축만제둔의 1,320석 10두 9승(2만 6,410.9두) 외에 당시 둔세는 대체로 도전으로 수납되고 있는데, 세조(稅租)로 수납된 2개 둔(포내둔 · 숙성수둔)의 34석 7두 2승(687.2두)까지 전으로 환산한 44.67냥을 합하면 총세전은 7,965냥 6전 3푼에 이르고 있다. 수원부 지역의 둔세 829냥 1전 7푼과 도조의 환전 1,716냥 7전을 합한 수원부 지역의 도세전 2,545냥 8전 7푼은 수원부 관할 전체 도세전 9,682냥 3전 3푼의 26.3%에 해당한다. 수원부 지역에 소재한 둔토에서의 수입은 수원부 관할 전체 둔토 수입의 4분의 1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신설된 대유둔과 축만제둔에서의 도조 수입 합 1,320석 10두 9승(2만 6,410.9두, 환전 1,716.7냥)은 수원부 관할 전체 도세전의 17.7%에 해당하고, 수원 지역 소재 둔토 도세전의 67.4%에 이르고 있으니 수원 신도시 경영과 관련하여 이 두 개의 국둔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화영중기』에 보이는 수원부의 둔토

1891년(고종 28)에 수원부에서는 『화영중기(華營重記)』를 간행하였다.[8] 그것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사무를 인계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 '중기(重記)'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서 갑오개혁 직전 수원부의 상황을 일정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곧 수원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해와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기물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인계할 재정적인 내용도 매우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화성유수부의 창고 현황과 그에 소속된 제언 및 둔전의 내용도 중요한 인계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고 정리하면 〈표 2〉를 만들 수 있다.

읍지류인 『화성지』와 중기류인 『화영중기』는 그 성격이 달라 기재의 형식과 내용에도

8 『화영중기(華營重記)』(奎 古大4259-73).

〈표 2〉『화영중기』(1891년)에 보이는 둔토[9]

둔명(소속)	위치(面)	결부(束)		두락		비고
		전	답	전	답	
향교(鄕校)	삼봉(三峰), 고등(古等)	203	1,786			35두락, 83두락
					17.0	1870년 매득
고마고(雇馬庫)	포내(浦內 : 起)	43	2,313			
	포내(浦內 : 陳)	1,929	3,490			(陳전답)
	장주(章洲)	47				속공(屬公)
	문시(文市)		102			8두락
	태촌(台村)		635			41두락
	남곡(南谷)		247			16두락
	용복(龍伏)		90			9두락
	남부(南部)		342			22두락
	북부(北部)		96			5두락
지고(紙庫)		874	1,320			1811년 전 매득
군기고(軍器庫)	용복(龍伏)		118			
	신천(信川) 마정둔(馬井屯)	3,536	501			
	은율(殷栗) 광암둔(廣巖屯)	33,811	616			187일경, 45.8두락
둔소(屯所)	대유둔(大有屯)				2,258.8	25.184결, 수성고(修城庫)
	매향동(梅香洞)				51.0	56.3부(51두락), 성역소(城役所)에서 매득
	남창동(南昌洞)				5.0	
축만제(祝萬堤)	제하(堤下)			240.0	1,935.8	전답 34.941결
	제내(堤內)		13,133			수침답(水沈畓)
삼도둔(三島屯) 신축언답(新築堰畓)	미기간(未起墾)		22,627			1,571.4두락(陳)
	이기간(已起墾)		26,989			1,910.8두락
삼도둔(三島屯) 민언답(民堰畓)			3,886			이해일진폐(以海溢陳廢) 임신위시허민경식(壬申爲始許民耕食)
관천고(筦千庫)	연산둔(連山屯)			325.1	315.5	합 25.018결
	화소(火巢) 가방평(加坊坪)			41.0	258.7	신작전답(新作田畓)
	남둔(南屯)	1,595	154			신기전답(新起田畓)
	장주(章洲)	565				신작로환기(新作路還起)
				113.0		춘모(春麰)
		1,940				면세환출세(免稅還出稅)
분봉상시(分奉常寺)	신천(信川) 가곶방둔(加串防屯)			134.6	1,714.9	합 38.65결
	평산(平山) 방동둔(方垌屯)			709.9	457.4	합 12.36결
	유천둔(柳川屯)			65.5	528.7	합 12.584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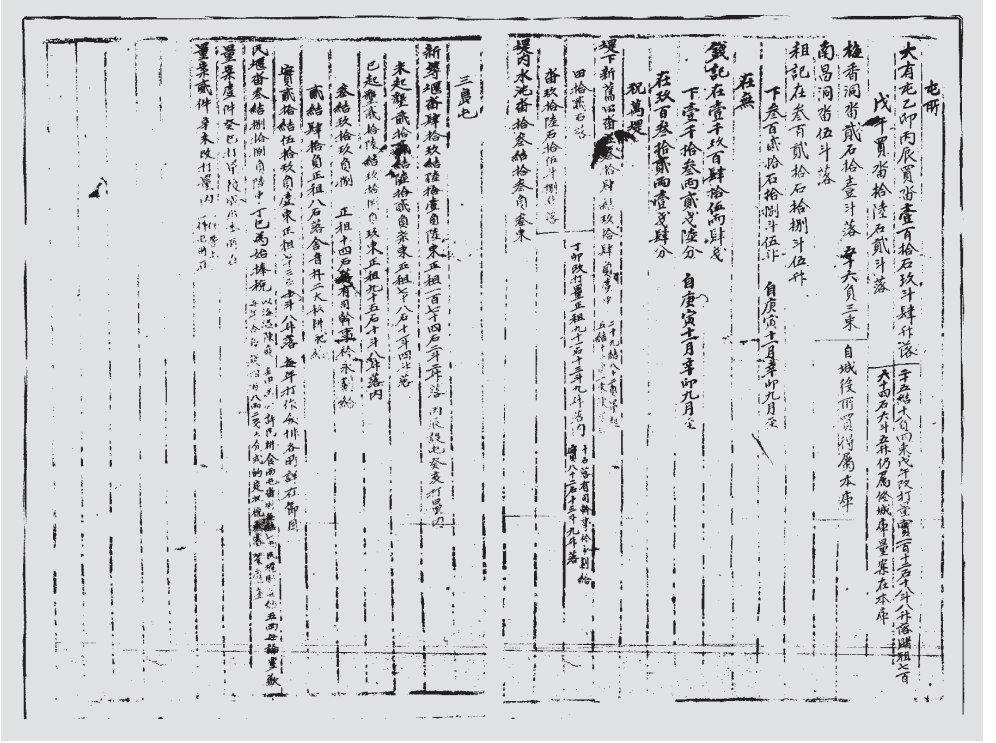
둔명(소속)	위치(面)	결부(束)		두락		비고
		전	답	전	답	
오둔(五屯)	부곡둔(釜谷屯)	49,538	11,662			진기년각불동 (陳起年各不同)
	모현둔(募賢屯)	7,510	12,490			
	안양둔(安養屯)	1,500	2,925			
	험천둔(險川屯)	11,423	5,710			
	도촌둔(導村屯)	5,981	8,646			
녹명소(鹿鳴所)	매곡(梅谷), 삼봉(三峰)			201.7	234.8	합 6,871결
합계		120,495	119,878	1,830.8	7,777.6	

차이가 있으나 1831년 이후 꼭 60년 만의 수원부 둔토 상황을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화영중기』에는 각 공해별로 소속된 둔토가 대체로 전과 답을 구분하여 그 면적이 기재되고 있으나 읍지에서와는 달리 둔세 혹은 도조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큰 규모의 충청도 평신진 둔토 388결 70부 9속과 인천 및 안산군의 석장둔토 31결 7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수원부 수리소에 소속되었던 용인군 지내면의 용인둔 5결 38부 9속, 안산군 성두리 소재 안산둔 4결 6부 9속, 수원부 내의 오타둔 10결 64부 4속 및 영둔으로 확인되는 숙성둔 5결 32부, 그리고 향탄둔으로 파악되고 있던 경기 지역 시흥둔 · 양성둔 · 안성둔의 총면적 1,191두락과 수원부 송동둔 652.1두락도 『화영중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원부 소속 둔토의 전면적인 변화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화영중기』 이후 3년 만인 1894년에 작성되는 수원부 읍지류에는 대체로 이들 토지들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이다.[10] 관리들의 이동 시에 인계하는 내용을 기록한 장부가 지닌 특성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원이 지닌 봉건적 행정 · 군사 도시로서의 특성과 자립적인 신도시 경영과 관련한 둔전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우선 국가에서 매득하여 신설된 국둔전으로서의 대유둔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매향동과 남창동 지역에서 답 56두락이 매득으로 증대되었고, 같은 시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된 축만제둔도 제하(提下)의 토지가 전답 합 500.4두락 늘어나고 있으며, 제내(提內)의 침수답 13결 13부 3속까지도 파

9 결부와 두락이 함께 기재된 것은 결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둘 중 두락에만 전과 답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두락을 택하여 전답별로 파악하였다. 1석은 20두로 계산되고 있다.

10 『기전영사례(수원)』(규 12200)에는 수리소 소속의 3개소 둔토가 그대로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타둔의 경우 '신환둔(新換屯)' 명목으로 답 32결 90부가 새로 조사되고 있으며, 영고(營庫) 소속의 안산(석장)둔 31결 7속이 그대로 다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작성된 『기전영지(수원)』(규 12187)에는 평신진둔의 토지도 다시 기재되고 있다.



『**화영중기**』, **둔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악하여 기재하고 있다. 책응고에 속한 삼도둔도 신축 언답(堰畓) 중 이미 기간(起墾)되어 응세하고 있는 토지가 2결 51부 2속이 더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기간된 답까지도 무려 22결 62부 7속을 조사하여 기재하고 있다. 또한 포내면 소재 고마고둔토의 경우도 기(起)전답의 규모는 『화성지』에서와 거의 같으나 진(陳)전답 5결 41부 9속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전답까지 파악하고 있는 현상은 토지를 주로 봉건적 수세 대상으로 인식하던 데서 나아가 진전을 포함하여 토지 자체의 소유관계가 중시되는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융건릉을 중심으로 한 능의 관리와 제향 관련 비용을 조달하는 분봉상시둔,[11] 관천고둔의 전답도 유천둔을 비롯하여 황해도 신천 · 평산 지역과 충청도 연산 지역의 둔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천고 소속으로 화소 내 가방평둔과 남둔과

11 분봉상시 소속의 3개 둔과 관천고 소속 연산둔의 전답 면적이 두락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각각의 전답 합의 결수로 『화성지』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호방에 속한 5둔의 결부 수량도 동일하다.

장주면 소재 둔토, 고마고 소속으로 장주 · 문시 · 태촌 · 남곡 · 용복 · 남부 · 북부면 소재 둔토들이 소규모로나마 새로 파악되어 늘어나고 있다. 원래 수어청 소속이었으나 1798년부터 수원부의 호방에 소속되었던 용인현 소재 4개 둔토와 과천현 안양둔의 면적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둔(五屯)'에 소개되고 있으며, 고등 · 삼봉 · 매곡면 등지에 소재한 향교 전답 1결 98부 9속과 답 17두락, 녹명소둔 전답 21석 16두 5승락이 새로 기재되고 있다. 결국 1891년경 수원부 소속의 둔토는 전 120결 49부 5속과 91석 10두 8승락, 답 119결 87부 8속과 388석 17두 6승락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1894년의 읍지 『기전영사례(수원)』에서 충청도 평신진 둔토 388결 70부 9속과 향탄둔 소속 둔토 1,843.1두락을 제외하고 모두 파악되고 있어,[12] 수원부의 관할 둔토는 1831년 『화성지』 단계의 규모가 19세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매득 등을 통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12 『기전영사례(수원)』에 나타난 각고속둔

소속 각고(各庫)	둔명	전답		비고
		결	두락	
① 관천고(筦千庫)	연산둔(連山屯)	25.218		답
② 분봉상시(分奉常寺)	신천둔(信川屯)	38.650		
	평산둔(平山屯)	12.360		
	유천둔(柳川屯)	12.584		
③ 수성고(修城庫)	대유둔(大有屯)		2,251.4	답
	매향동답(梅香洞畓)		56.0	
	축만둔(祝萬屯)		2,175.8	전 240 포함
④ 책응고(策應庫)	삼도둔(三島屯)	24.477		답
⑤ 군기고(軍器庫)	신천 마정둔(馬井屯)	4.037		
	신천 가곶방둔(加串坊屯)	7.118		답
	은율(殷栗) 광암둔(廣巖屯)	34.427		
⑥ 영고(營庫)	석장둔(石場屯)	31.070		답
⑦ 행궁수리소(行宮修理所)	오타둔(五朶屯)	10.647		
		32.900		답, 신환둔(新換屯)
	안산둔(安山屯)	4.069		
	용인둔(龍仁屯)	5.389		
⑧ 영둔(營屯)	숙성둔(宿城屯)		1,540.7	언답(堰畓), 고미진기(姑未盡起)
⑨ 팔색고(八色庫)	결성둔(結城屯)	4.385		
⑩ 고마고(雇馬庫)	포내언둔답(浦內堰屯畓)	5.083		언답
⑪ 오둔세전질(五屯稅錢秩)	부곡둔(釜谷屯)	61.110		
	험천둔(險川屯)	17.133		
	모현둔(慕賢屯)	20.000		
	도촌둔(導村屯)	14.627		
	안양둔(安養屯)	4.425		
합계		369.709	6,023.9	

출처 : 『기전영사례(수원)』(『읍지(경기도)』, 아세아문화사, 1982).
비고 : 수원부 11개 고(庫)에 소속된 23개 둔별로 전답의 두락과 결부가 함께 기재되고 있으나, 비교를 위해 수성고 소속 3개 둔과 영둔 소속으로서 아직 전부 기간(起墾)된 것이 아닌 숙성둔만을 두락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답 구분 없이 결부로 파악하였다. 5둔은 세전(稅錢) 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결부수가 변함이 없어 같은 해 『기전영지(수원)』의 내용을 옮겨 넣어 계산하였다. 1석=20두.

2. 을미사판 및 광무사검과 수원군의 역둔토

1) 갑오승총과 역둔토의 위상

갑오개화파 정부는 안으로부터 반봉건 · 근대화의 요구와 밖으로부터 자본주의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직면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중에서 근대적 관료제의 실시는 재정제도의 근대적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는 수세원의 정확한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토지조사로서의 양전사업도 생각했으나, 당장에는 수조 혹은 수세권의 분급 형태로 정부의 각 기관별로 재정회계가 이루어지던 체제를 바꾸어 중앙정부가 일관되게 총괄할 필요성이 우선시되었다.

군국기무처는 여러 가지 개혁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궁장토 · 둔토 · 역토 등의 토지에 면세해 주던 것을 혁파하여 모든 토지로 하여금 탁지부에 출세하도록 하는 조처, 곧 갑오 면세지 승총(陞總)을 단행하였다. 우선 1894년 6월에는 각 궁(宮), 사(司), 영(營)으로 하여금 도장(導掌), 전답, 제언, 시장(柴場), 수세에 관한 내용을 조사 · 보고하게 하였다.[13] 이어서 8월에는 각 궁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따위의 문제는 종전대로 각 궁에서 관리하게 하되, 지세(地稅)는 새 규정에 따라 내도록 하고, 만약 각 역에서 종전처럼 결세를 적게 내거나 각 둔토에서 도조만 내고 호조에 납부하는 결세가 면제된 것들이 있으면 모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작인과 마호(馬戶)로부터 징수하도록 조처하였다.[14] 여기서 새로운 규정은 각종 부세를 금납화하고, 전세의 경우는 결가(結價)를 정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15]

조선 후기 면세전은 유토(有土)와 무토(無土)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유권과 관련해서 보면 유토는 해당 궁방 · 아문 등의 소유지였고, 무토는 민유지였으나 다만 결세를 호조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궁, 아문, 기타 기관에 납부하는 토지였다. 갑오승총에 따라 면세지가 혁파되고 출세화함에 따라 궁방전과 역토, 둔토 등에서도 유토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주 경영을 토대로 하는 궁유지 혹은 국유지로 확인되었고, 무토는 궁 혹은 역과 둔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되어 민의 사유지로 확인되었다.[16] 그런데 유토에는 2종류가

13 『의안(議案)』(규 20066), 개국 503년 6월 29일.
14 『고종실록』, 고종 31년 8월 26일.
15 『의안』(규 20066), 개국 503년 7월 10일; 『의안』(규 20066), 개국 503년 8월 22일.
16 김용섭, 『근대한국농업사연구(증보판)』 하, 일조각, 1990, 397~398쪽; 배영순,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59쪽.



『기전영지(수원)』, 둔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있어[17] 소유권이 확실한 제1종 유토와는 달리 궁 혹은 국가기관과 경작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나누어져 있는 제2종 유토는 승총 이후 그 위상이 모호하여 이러한 토지들에서는 소유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18] 또한 갑오승총 조처에서 경작자 출세의 원칙은 지주 경영의 강화를 의미하여 작인 혹은 마호 등의 경작농민은 일토양세의 부담을, 자경무세지였던 유토 역토에서의 마호는 자작농의 처지에서 완전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소유권 확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양전이 곧바로 실시되지는 않았고, 이듬해 지방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공토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른바 을미사판(乙未査辦)으로 갑오개혁파 정부는 역토를 비롯한 전국의 국관유지를 조사하였다.

한편 갑오승총 당시 수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둔전의 내용은 같은 해 승총과 관련하여 작성된 듯한 수원부의 읍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19]

17 『결호화법세칙(結戶貨法細則)』(奎 古5127-10).

18 이영호, 「한말~일제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 · 민유의 분기-경기도 안산 石場屯의 사례」, 『역사와 현실』 77, 2010; 이영호, 「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경상도 창원 용동궁전답 '영작궁둔(永作宮屯)=조(租) 200두형(斗型)' 의 사례」, 『한국학연구』 2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최원규, 「한말 일제초기 공토 정책과 국유민유 분쟁」, 『한국민족문화』 4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등 참조.

19 『기전영지(수원)』(규 12187), 1894(『읍지(경기도)』, 아세아문화사, 1982).

〈표 3〉『기전영지(수원)』(1894년)에 보이는 수원부 둔전[20]

번호	둔명	위치	전답		비고	소속
			결(結)	두락(斗落)		
1	유천둔(柳川屯)	부(府) 남 5리	12.584			분봉상시(分奉常寺)
2	신천둔(信川屯)	황해도 신천군	38.650			
3	평산둔(平山屯)	황해도 평산부	12.360			
4	송동둔(松洞屯)	부 서 30리		652.1		향탄둔(香炭屯)
5	시흥둔(始興屯)	시흥현		371.5	답	
6	안성둔(安城屯)	안성군		443.5	답	
7	진위둔(振威屯)	진위현		2,278.0	(신집 : 新執)	
8	양성둔(陽城屯)	양성현		376.0	답	
9	연산둔(連山屯)	충청도 연산현	25.218		답	관천고(筦千庫)
10	오타둔(五朶屯)	부 남 70리	10.647		(+3속)	수리소(修理所)
11	용인둔(龍仁屯)	용인현	5.389			
12	안산둔(安山屯)	안산군	4.069			
13	가곶방둔(加串坊屯)	황해도 신천군	7.118		답	군기고(軍器庫)
14	광암둔(廣巖屯)	황해도 은율현	34.427		답	
15	대청둔(大靑屯)	황해도 백령진			정철(正鐵) 30근	
16	삼도둔(三島屯)	부 남 100리	24.477		언답	책응고(策應庫)
17	결성둔(結城屯)	충청도 결성현	4.385		답	팔색고(八色庫)
18	포내둔(浦內屯)	부 남 80리	2.356		답(+3부)	고마고(雇馬庫)
19	험천둔(險川屯)	용인현	17.133			호방(戶房)
20	부곡둔(釜谷屯)	용인현	61.110		(-1부)	
21	도촌둔(導村屯)	용인현	14.627			
22	모현둔(慕賢屯)	용인현	20.000			
23	안양둔(安養屯)	과천현	4.425			
24	평신둔(平薪屯)	충청도 평신진	388.709			영고(營庫)
25	석장둔(石場屯)	안산 · 인천 경계	31.070		답	
26	숙성둔(宿城屯)	부 남 80리	5.130		답(-19부)	
27	양향둔(糧餉屯)	본부(本府) 각 면	36.455		(신집)	
합계			760.339	4,121.1		

1894년 수원부의 둔전은 27개 둔으로서 760결 33부 9속과 206석 1두 1승락(4,121.1두락)의 규모를 보여 주고 있다. 1831년『화성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진위둔 전답 113석 18두락(2,278두락)이 수원부 관할로 편입되어 향탄둔에 소속된 듯하고,[21] 수원부의 각 면에 소재한 양향둔[22] 전답 36결 45부 5속이 새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성격상

20『기전영지(수원)』(규 12187), 1894(『읍지(경기도)』, 아세아문화사, 1982). 1석=20두이다. 비고의 수치는『화성지』와의 비교이고, 대청둔(大靑屯)의 경우는 '정철(正鐵) 30근 대전(代錢) 30냥' 이다. 소속은『화성지』와『기전영사례』를 참조하였다.

영고(營庫)에서 관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화영중기』와 『기전영사례』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던 충청도 소재 평신둔의 전답 388결 70부 9속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수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1795년과 1799년에 화성 북쪽과 서쪽에 각각 만석거(萬石渠)와 축만제(祝萬堤)를 수축하고 인근 토지를 사들이거나 개간하여 만든 국유 둔전으로서의 대유둔(大有屯 : 北屯)과 축만제둔(西屯)의 두락수가 여기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831년 당시 둔세가 아니라 두락당 도조 6.8~6.6두를 징수하던 대유둔 2,252.4두락은 1894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축만제둔 1,675.4두락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전(田) 240두락을 포함한 2,175.8두락으로 크게 늘어 있었으며, 매향동답 56두락을 포함한 수성고 소속 둔토는 총 556.4두락 정도가 증가하고 있었다.[23] 이러한 토지의 기재 누락은 갑오승총과 관련하여 여타 둔토와 구별하여 확실한 국가 소유 토지로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하면 19세기 수원부 관할 둔토의 규모를 사실과 가장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결을 40두락으로 보아, 두락으로 파악된 둔토를 결로 환산하여 수원부 관할 둔토의 전체 면적을 살피면 대략 863결 36부 6속에 이른다. 이는 당시 수원부의 원장부(元帳簿) 결수 전답 1만 1,821.613결의 7.3%에 해당하고, 수세 실결 5,871.841결의 14.7%에 이르는 규모이다.[24] 그리고 수원부의 둔토는 대체로 4가지 기능과 관련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능원의 제향 등과 관련하여 분봉상시둔(1~3), 향탄둔(4~8), 관천고둔(9)이 큰 규모로 배치되어 있고, 둘째는 화성 축조 등 신도시 건설 및 경영과 연계된 수성고 소속의 대유둔 · 축만제둔과 수리소둔(10~12), 셋째로 지방의 일반행정과 관련한 군기고둔(13~15), 책응고둔(16), 팔색고둔(17), 고마고둔(18), 호방둔(19~23), 그리고 넷째로 유수영과 관련한 영고 소속의 평신둔(24), 석장둔(25), 숙성둔(26), 양향둔(27) 등으로 구분해 볼

21 『기전영지』에서는 각 고(庫)별 소속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각 둔은 소속된 각 고별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진위둔은 향탄둔에 속한 송동 · 시흥 · 안성 · 양성둔 사이에 있어 향탄둔, 곧 수원 유수영둔을 가리키는 총리영둔(摠理營屯)으로 추정된다. 다만 1793년에 장용외영을 수원에 설치하고 1795년에 협수군(協守軍)체제로 개편할 당시부터 수어청 속오군으로서의 진위(振威) 3초(哨)가 수원부로 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둔 전답이 1894년에 '신집(新執)'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22 양향둔은 양향청(糧餉廳) 둔토를 지칭한다. 양향청은 1593년(선조 26)에 훈련도감을 설치한 이후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관청으로서 그 소관 둔토를 '훈둔(訓屯)' 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양향청이 친군영(親軍營)으로 개칭되어 그 둔토는 '친둔(親屯)' 이라 불리기도 하였다(『조선부동산용어약해』, 한국법제연구원, 2006).

23 각주 12) 『기전영사례(수원)』에 나타난 각고속둔 중 수성고(修城庫) 소속 둔전답 내용을 참조.

24 1894년 수원부의 원장부 결수 및 실결을 『기전영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장부(元帳簿)			각양잡이 (各樣雜頉 : 復戶結)	실결	비고
전	답	합			
6,426.503	5,395.110	11,821.613	5,949.772(742.971)	5,871.841	약치재이칙감어차중 (若値災頉則減於此中)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8세기 말 정조의 개혁정치와 관련하여 설치된 장용외영의 운영을 비롯한 수원부가 지닌 정치적 · 군사행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2) 을미사판과 수원군의 역둔토

갑오승총의 실시와 더불어 정부는 전국의 면세지를 다시 조사해야 했다. 그것은 1895년에 「우체사관제」가 시행되고 체전인부를 대립하면서 종래 마호수의 입마(立馬)역이 폐지됨에 따라 담당부서인 농상공부가 전국에 산재한 역토를 시급히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농상공부는 1895년 9월부터 「역전답 조사에 관한 건」이라는 훈령을 내리고,[25] 사판위원을 파견하면서 역토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보다 앞서 5월에는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되고 부목군현의 읍제도가 일괄 군으로 개정되는 지방제도의 변화에서 수원군은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애초에 인천부의 사판위원은 김용하(金龍河)가 임명되었으나 신병 때문에 같은 해 11월 초순에 이태래(李泰來)로 교체되어,[26] 그가 수원군의 역토조사를 주관하였다. 인천부 소속 12개의 군 전체의 역토조사가 완료되는 것은 1896년 8월 하순으로 확인되어[27] 약 10개월에 걸친 국유토지조사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수원군의 경우는 1896년 3월 중순을 전후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8]

사판위원은 군수와 동등한 주임관(奏任官)의 위계로 파견되어 실제로 현지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역토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실무는 각 군의 이속들이 담당하였다. 또한 1896년 1월에 각 역의 찰방과 역속이 폐지되기까지는 찰방의 협조를 받기도 하였다. 사판을 완료한 문부는 농상공부와 각 군에 1건씩 비치하여 군에서도 참고하도록 하였다.[29]

사판위원은 역토조사의 장정이 된 「농상공부역답사판규례(農商工部驛畓査辦規例)」[30]에 의거하여 역과 관련된 토지와 작인을 조사하고, 도전(賭錢)을 책정하였다.[31] 토지는 유토 역토인 마위전(馬位田)을 비롯하여 결세를 역에 획급한 공수위전(公須位田), 역수리

25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개국 504년 9월 26일.
26 「인천부 관찰사에게 보낸 훈령」(1895년 11월 8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규 17898-2) 1.
27 「인천부 사판위원의 보고」(1896년 8월 22일), 『역토소관사원질보존당(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규 17896).
28 「인천부 사판위원의 보고」(1896년 3월 17일), 『역토소관문첩내안(驛土所關文牒來案)』(규 17898-3). 여기서 수원군 영화역의 장부와 역승의 인신을 봉상한다는 사실을 농상공부에 보고하고 있다.
29 내부대신에 조회 제80호(1895년 9월 21일), 「각 부 관찰사에게 보낸 훈령」(1895년 9월 28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규 17898-2) 1 등 참조.
30 「각 부 관찰사에게 보낸 훈령」(1895년 9월 28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규 17898-2) 1 별지 참조.
31 을미사판의 과정과 내용 및 성격을 분석한 것으로 박진태, 「갑오개혁기 국유지조사의 성격」, 『성대사림』 12 · 13합집, 1997이 참고된다.

(驛首吏) 등의 예하 전답인 장주위전(長走位田)·급주위전(急走位田) 그리고 복호결(復戶結) 등을 군양안과 역양안을 대조하여 조사하되, 양안이 서실된 경우에는 답험척량(踏驗尺量)하여 결수를 집계하도록 하였다. 각 역전답은 결복원수(結卜原數)와 탁지부 출세결로 승총된 결수를 아울러 조사하되 은결(隱結)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도전의 책정과 관련된 실면적으로 두락과 일경수를 조사하고, 전품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사록하게 하였다.

은결 색출뿐만 아니라 역전답의 진폐천반(陳廢川反)과 환간(還墾) 상황, 민전으로 환롱한 것들과 등급 조작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도세(賭稅) 수봉의 적극성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를 둔 것이었다. 유토 역토에서 필지별로 작인의 성명을 조사 기록한 것은 종래 마호들에 한정되지 않고 '허민경작(許民耕作)' 함에 따라 작인을 새로 선정하여 지주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1894년의 각종 부세의 금납화 조처와 더불어 역전답의 도세도 도전으로 책정되었으며, 100두락을 단위로 경상·전라의 양 지역의 경우 답도(畓賭)는 250냥, 전도(田賭)는 50냥, 기타 지역의 경우는 각각 200냥과 40냥으로 정하되, 그것은 상·중·하로 구분된 토품에 따라 가감균배하고 사음 및 동두민과 작인이 공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사음료비 역시 100두락을 단위로 30냥씩 책정하여 원도전(原賭錢)과 함께 분등 균배하였다. 이는 양남 지역의 경우 원도가 1두락당 조 6두에 해당하는 것으로[32] 당시 두락당 소출이 1석(20두) 정도로 볼 때 소출의 대략 30%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조금 비옥한 경우이고, 전반적으로는 두락당 4~5두에 해당하는 도전으로 책정되어 소출의 20~25%, 높은 경우도 30% 정도가 지대 명목으로 작인에게 부과되었다. 양남 이외 지역에서는 이보다 낮게 도전이 책정되었기에 수원 지역 역둔토 도전은 3~4두에 해당하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3] 사답의 도조액보다도 도전 정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풍흉에 관계없이 정액제를 채택하고 선납도전제로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을미사판과 관련하여 조사된 수원부의 공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신 1894년에 지역별 둔토 파악과는 달리 갑오승총과 관련하여 수원부가 미리 승총될 면세지를 파악한 내용을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34]

---

32 1894년 당시 평석(平石) 1석(15두)의 미가(米價)는 22냥 5전으로(『한국세제고(韓國稅制考)』 奎 想伯古336.2), 전석(全石) 조(租) 1석(20斗)의 가(價)는 8냥으로(「전주부사판위원 백봉수(白鳳洙)의 질품서」(1896년 2월 2일), 『역토소관사원질보존당(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답 1두락당 2냥 5전은 미(米) 1.6두에 해당하고, 조(租)로는 약 6두에 이른다.

33 〈표 8〉의 두락당 도조 참조.

34 『광주부수원부춘천부개성부각양면세갑오승총초책(廣州府水原府春川府開城府各樣免稅甲午陞摠抄册)』(규 16616).

〈표 4〉 수원부 각양 면세승총 전답(1894년)[35]

둔전답명	면적(結)			『기전영사례』와 비교
	궁장토	둔토	역토	
관둔전답(官屯田畓)		10.353		
훈련도감전답(訓鍊都監田畓)		26.887		기(起)
공수위전답(公須位田畓)		15.000		
사복시둔전답(司僕寺屯田畓)		46.569		기
수진궁전답(壽進宮田畓)	16.459			
용주사전답(龍珠寺田畓)	17.502			(동일수치)
명안공주방답(明安公主房畓)	5.000			
육상궁답(毓祥宮畓)	3.740			
아록위전답(衙祿位田畓)		41.190		
양향청전답(粮餉廳田畓)		8.862		기
본영이속둔전답(本營移屬屯田畓)		45.872		
균역청전답(均役廳田畓)		66.038		
역마위전답(驛馬位田畓)			177.571	기(동일수치)
급주위전답(急走位田畓)			11.462	기(동일수치)
장주위전답(長走位田畓)			11.510	
공수위전답(公須位田畓)			8.591	
합계(512.606)	42.701	260.771	209.134	

〈표 4〉는 광주부 등 경기 지역 4개 유수부가 관할하고 있던 공토로서 면세되고 있던 전답을 조사한 것 중에 수원부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읍지류와 비교해 보면, 이 「수원부각양면세승총질(水原府各樣免稅陞總秩)」의 통계는 수원부 지역 소재 공토와 인근 경기지역 각 군 소재 공토로서 수원부의 관할에 있는 궁장토, 역토, 둔토를 기전답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된다.

1895년 10월 중순 이후에 전국으로 파견된 사판위원들은 애초에 농상공부 소관의 역토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듬해 2월부터는 조사 대상의 토지가 역토에 한정되지 않고 둔토와 궁장토까지 확대되었다.[36] 물론 역토에 관한 조사가 착수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뒤에 취해진 조치로 이미 역토사판을 마친 각 군의 경우는 둔토에 관한 조사를 해당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판위원들의 주된 임무는 역토와 목장토를 중심으로 한 궁내부 소관의 둔토를 사판정도(査辦定

35 『광주부수원부춘천부개성부각양면세갑오승총초책(廣州府水原府春川府開城府各樣免稅甲午陞摠抄册)』(규16616). 『기전영사례』, 「각양잡이결(各樣雜錄結)」과 비교해 보면, 기전답(起田畓)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

36 「각부 관찰사에게 보낸 훈령」 제345~365호(1896년 2월 5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규 17898-2) 1.

賭)하는 것이었다.[37]

결국 1895~1896년에 걸친 을미사판에서 수원군과 농상공부 사판위원 이태래는 앞의 〈표 4〉에서 확인된 토지를 문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도전을 새로 책정하고 사음을 새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소재 지역별 둔토 파악방식과는 달리 수원부 관할에 있는 공토를 소속별로 조사 집계하여 각각 궁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 중앙의 각 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를 파악, 관리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곧 국가기구의 소유지로 확인하여 점차 국가지주제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였다.

우선 수원군에서 궁방전은 비교적 소규모로 확인된다. 현륭원의 원찰로서 1790년(정조 14)에 건립된 용주사 소유의 전답 17결 50부 2속을[38] 제외하면, 수진궁 전답이 16결 45부 9속과 명안공주방의 답 5결과 육상궁 답이 3결 74부로서 유토 궁방전이 25결 19부 9속으로 확인된다.[39] 그리고 역토가 별도로 확인되고 있다. 즉 역 소유의 유토로서 그동안 마호 등 역속들이 자경무세로서 경작하던 마위토가 177결 57부 1속, 무토로서 역에서 각자 수세하던 급주위 전답, 장주위 전답, 그리고 역공수위 전답이 합하여 31결 56부 3속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역토가 209결 13부 4속으로 드러나고 있다.

둔토의 경우도 이전에 각 지역 둔명별로 파악하던 방식과는 달리 중앙 및 지방의 관할 기구별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지방관아 및 지방관의 경비와 관련하여 마련된 관둔전답이 10결 35부 3속이고, 관공수위 전답과 아록위 전답이 각각 15결과 41결 19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의 각 영문 및 아문 둔토로서 훈련도감 전답과 양향청 전답이 각각 26결 88부 7속, 8결 86부 2속이고, 사복시둔 전답과 균역청 전답이 각각 46결 56부 9속, 66결 3부 8속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본영 이속 둔전답의 45결 87부 2속이 기재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 『화성지』(1831년)와 『기전영지』(1894년)에서 향탄둔답(두락으로 파악됨)으로 수원부 내의 송동둔을 비롯하여 시흥현 소재 시흥둔, 안성군 소재 안성둔, 양성현 소재 양성둔 전답 총 1,843.1두락을 가리키는 듯하다.[40] 결국 여기서 확인되는 둔토 면적 260결 77

37 「평양부 관찰사에게 보낸 훈령」(1896년 5월 28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규 17898-2) 1. 그리고 이후 사판위원의 여비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농상공부와 궁내부에서만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탁지부대신에게 한 조회」 제42호(1896년 9월 1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규 17898-2) 1; 「광주부윤에게 보낸 지령」(1896년 12월 18일), 『역토소관문첩거안(驛土所關文牒去案)』 2 등 참조).

38 『용주사사적(龍珠寺事蹟)』, 「팔로읍진여경각궁조전시주록(八路邑鎭與京各宮曹廛施主錄)」에 의하면 사원 소유의 전답 매수 비용이 2만 8,116냥 3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조선총독부, 『조선사찰사료』 1, 1911;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347쪽).

39 이는 『기전영사례』, 「각양잡이결(各樣雜頃結)」에서 각 궁방 유토(有土) 면세(免稅) 전답 25.385결과 유사하고, 이 외에도 거기서는 각 궁방 환출세(還出稅) 진전답(陳田畓) 0.988결이 무토로 확인되고 있다.

40 40두락을 1결로 하여 환산하면 46결 7부 7속으로서 45결 87부 2속과 유사하다.

부 1속은 『화성지』에서 결부로 파악된 경기도 지역 213결 18부 4속과 두락으로 파악된 향탄둔 소속의 위 4개 지역 46결 7부 7속을 합한 259결 26부 1속과 유사하게 파악되고 있다.

요컨대 19세기 초 이래 한말 수원 지역 둔토는 18세기 말에 신설된 국둔전으로서의 대유둔과 축만제둔을 제외하면 수원부 지역에서는 남부의 유천둔을 비롯하여 5개 면에 소재한 오타둔 · 포내둔 · 숙성둔 · 송동둔, 가사면의 삼도둔과 용인현 5개면 소재 용인둔 · 험천둔 · 부곡둔 · 도촌둔 · 모현둔, 그리고 수원 인근 6~7개 군현에 소재한 안양둔(과천현) · 시흥둔 · 안산둔 · 양성둔 · 안성둔 · 석장둔(안산 및 인천군 소재)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소재의 둔토가 갑오승총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의 각 아문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된다. 결국 갑오 면세지 승총을 토대로 을미사판을 통해 농상공부 사판위원 이태래와 수원군의 군수 책임하에 조사해야 할 국관유지는 역토 209결 13부 4속을 비롯하여 용주사 전답을 포함한 궁장토 42결 70부 1속, 그리고 각 기관 소속의 둔토 260결 77부 1속으로서 도합 512결 60부 6속 규모의 토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95년 6월에 작성되어 을미사판의 문부조사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목장양안(수원)』 등을 살펴보면, 궁내부 소유의 수원 지역 목장토의 규모도 확인할 수 있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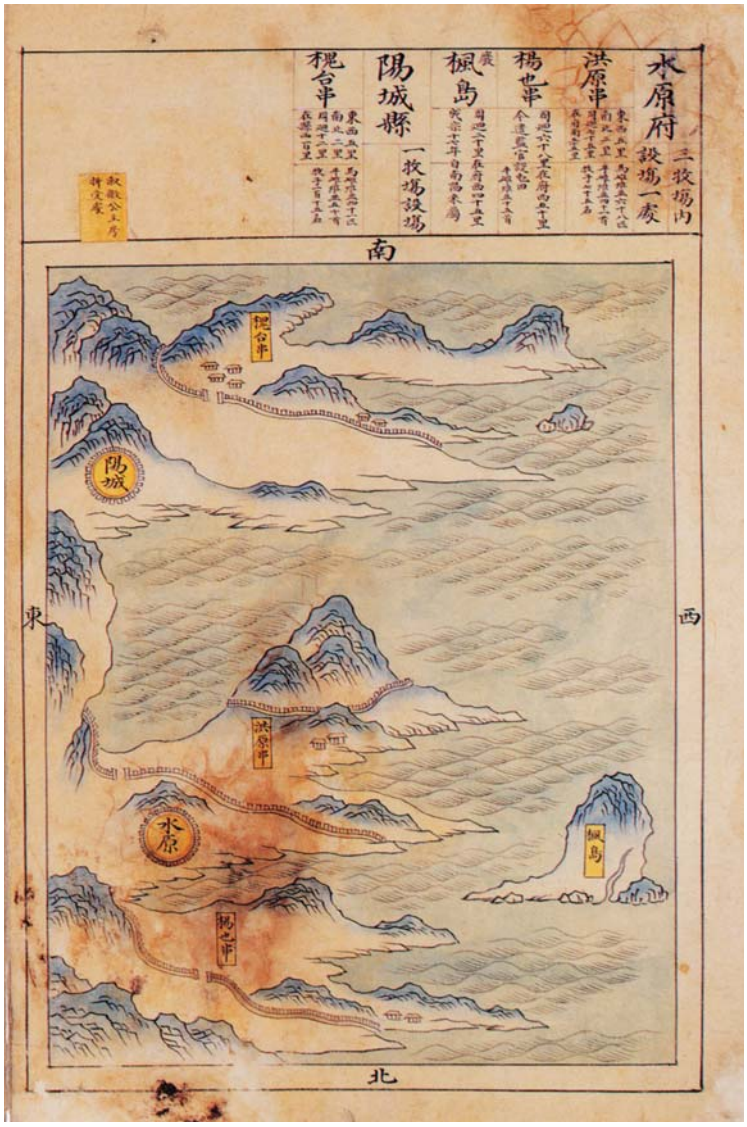
〈표 5〉 수원 지역 목장 전답[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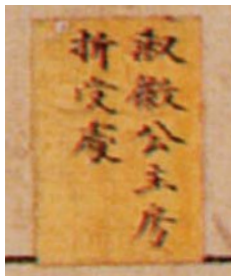
(단위 : 束)

목장명	자호	도이상(都已上)	전		답		전답
			기(起)	진(陳)	기(起)	진(陳)	기(起)
괴태곶	다(多)-조(趙), 합 9자	22,234					22,234
홍원곶	비(枇)-요(飄), 합 16자	77,540	7,871	45,614	20,849	3,206	28,720
수유리	관(官)-제(制), 합 5자	66,686	4,315	36,669	11,457	14,245	15,772
합계		166,460		82,283		17,451	66,726

수원부 관할 목장은 괴태곶(槐台串), 홍원곶(洪原串), 수유리(水流里) 3곳에 설치되어 있다. 괴태곶목장의 경우는 전답 구분 없이 기전답 합이 파악되고 있어 기전답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홍원곶목장이 28결 72부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괴태곶목장이 22

41 『경기목장양안(수원)』(규 19124);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규 19615).
42 『경기목장양안(수원)』(규 19124);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규 19615).





「수원부 목장지도」(『목장지도』, 167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이 있던 괴태곶, 홍원곶, 양야곶, 풍도가 표시되어 있고 숙휘공주의 절수처임을 알리고 있다.

결 23부 4속, 수유리목장이 15결 77부 2속으로 확인된다. 1자(字) 5결의 원칙에 의거하면 3목장 합 30자호면 150결이 되겠으나 진전답을 포함하여 총 166결 46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기전답 합이 66결 72부 6속으로 수원부 전 목장토의 40.1% 정도로 보이나 이는 괴태곶목장의 진전답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경우이다. 홍원곶목장과 수유리목장 합계에서의 기전답 비율이 30.8%임을 감안하면 수원 지역 목장토의 진전답

비율은 59.9~69.2%로 절반을 훨씬 넘어 70%에 근접하고 있어 목장토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한편 1897년 3월에는 역토의 관리권이 농상공부에서 군부로 이속되었고,[43] 이와 함께 각 영읍진보(營邑鎭堡) 소속 둔토도 군부로 귀속되었다. 이는 전국 8개 처에 지방대를 설치 운영하는 경비를 역둔토 지주 경영을 통해서 얻은 지대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44] 이를 계기로 군부는 갑오개혁 이후 각 영문 · 아문과 기타 각 둔이 폐지되면서 그 성격에 따라 탁지부 · 궁내부 · 군부 등으로 분할 귀속되었던 둔토까지도[45] 조사하였다. 수원지방대 본영에서는 경기도 각 군 소재 각 둔토를 조사하여 그해 10월에 성책하고 있다.[46] 그 가운데 수원 지역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표 6〉 및 〈표 7〉과 같다.

우선 자주적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부국강병의 차원에서 지방대를 설

〈표 6〉 1897년 수원군 소재 둔토[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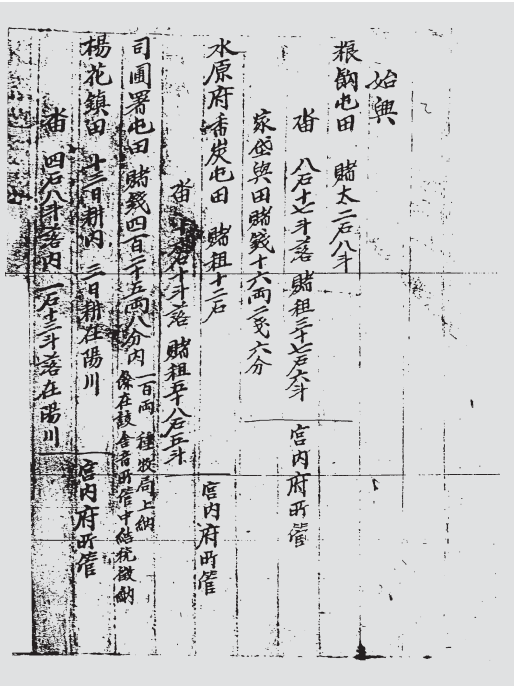
둔명	면적(斗落)			도세(斗)		비고
	전	답	전답	조(租)	태(太)	
양향둔(粮餉屯)		835.6		3,335.4		궁내부 소관
오타둔(五朶屯)		534.0		1,353.0		
포내둔(浦內屯)		247.6		652.0		
유천둔(柳川屯)		835.6		1,703.5		
총융청(摠戎廳)			187.9			
충훈부(忠勳府)			209.5			
용호영(龍虎營)		22.0				
친군영(親軍營)			282.7			
별비둔(別備屯)		375.0				
향탄둔(香炭屯)			205.0			
숙성둔(宿城屯)		1,540.7		1,232.6		봉세조(捧稅租), 궁내부 소관
삼도둔(三島屯)		1,910.8		2,220.0		37석락 도조, 궁내부 소관
지고(紙庫)	130.5	87.7		498.0	129.3	(답)추수조, 병신조(丙申條), 궁내부 소관
고마(雇馬)	15.0	52.0		178.0	35.0	도미(賭米) 89두, 관찰부 소관
수성고(修城庫)		2,800.0				전방포군조(前防捕軍條)
합계	145.5	9,241	885.1	11,172.5	164.3	

43 『고종실록』, 건양 2년 3월 10일.
44 배영순, 『한말 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영남대출판부, 2002, 92~94쪽.
45 和田一郎, 『朝鮮土地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 301~414쪽.
46 수원지방대(水原地方隊),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查成册)』(규 19550), 1897.
47 수원지방대,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규 19550), 1897. 1석=20두이다.

〈표 7〉 1897년 경기 지역 타군 소재 수원부 관할 둔토[48]

군명	둔명	면적			도세		소관처
		전(田耕)	전(斗落)	답(斗落)	도조(斗)	도전(兩)	
진위	수원부 향탄둔				311.1		궁내부
					1,547.2		
양성	수원부 향탄둔 (倉 垈田 1處)		217.0		308.0		궁내부
					20.0		
				378.0	1,434.0		
안성	수원부 향탄둔			440.5	131.0		궁내부
					3,048.0		
시흥	수원부 향탄둔				240.0		궁내부
				330.0	1,165.0		
인천	수원부 석장둔			1,899.6	3,886.6		궁내부
용인	수원부 모현둔	152.11		408.3		1,242.20	궁내부
	수원부 부곡둔	243.06		908.1		2,496.96	
	수원부 험천둔	17.50		147.0		43.00	
	수원부 도촌둔	13.22		349.5		736.45	
	수원부 장둔	5.61		231.0		476.35	
합계		431.5	217	5,092.0	12,090.9	4,994.96	

치하고 그 운영경비를 마련하고자 역둔토를 군부에 이속하고, 또 그 토지에서 지주 경영을 강화하고자 한 사실들은 군부에 의한 역둔토조사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수원지방대에서는 경기도 내 36개 군의 둔토를 조사하고 있는데, 군별로 소재한 둔토를 도조와 함께 파악하고 있다. 〈표 6〉은 수원군 소재 둔토를 기왕의 지역둔별과 관리관청인 아문별로 조사하되 도조의 귀속처, 곧 둔토의 소관처를 같이 파악하고 있으며, 기왕의 고마고 둔전답 67두락이 경기관찰부 소관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궁내부 소관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역둔토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규 19550)

파악이 주로 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군부의 조사에서는 절대면적에 해당하는 두락과 일경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국유지로서의 소유권 확보를 토대로 민전에서와 같이 둔전답에서도 타작제를 지향함으로써 지주 경영의 강화를 꾀하고자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까지는 역둔토가 주로 도조[賭錢]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미 삼도둔의 경우 실답 95석 10두 8승락 내 절반이 훨씬 넘는 58석 10두 8승락이 정률지대인 타조제로 운영되고 있고,[49] 〈표 7〉에서 안성군 소재 수원부 향탄둔의 경우는 전체 지대 158석 19두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52석 8두를 타조로 거두어들이고 있다.[50] 그리고 도세 중에는 숙성둔의 경우처럼 지대로서의 도조가 아니라 '매 두락 8승식(升式)' 이 부과되어 지세적 성격을 지닌 '봉세조(捧稅租) 61석 12두 6승'을 수봉하는 둔토가 있는가 하면, 지고(紙庫) 답도(畓賭)의 경우처럼 두락당 5.7두로 사답의 도조에 근접하는 전답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답도의 경우 두락당 도조액이 조 2~4두로 분포되어 평균 3두로 확인되고 있고, 전도(田賭)의 경우는 태(太) 1~2.3두, 답 도전의 경우는 두락당 1냥[51] 정도의 도전이 부과되고 있었다.[52] 그러나 수원지방대의 둔토조사 내용은 조사성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전답 혹유두수이무도수 혹유도수이무두수 부득출도총(以上田畓 或有斗數而無賭數 或有賭數而無斗數 不得出都摠)"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전답의 면적, 곧 두락수와 도조의 수량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군 소재 둔전답은 〈표 6〉에서처럼 총 15개 둔에 513석 11두 6승락(1만 271.6두락) 정도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전의 결부 중심의 파악 내용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 지역 타군 소재 수원부 관할 둔토는 인천의 석장둔을 비롯하여 용인군에 5둔, 양성 · 안성 · 시흥 · 진위군의 향탄둔 등 이전 경기 지역의 각 둔 내용이 대체로 확인되어 면적 합이 전 431.5일경과 전답 265석 9두락(5,309두락)의 수량을 보여 주고 있으나 여기에는 진위군의 전답 두락수와 시흥군의 일부 두락수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48 수원지방대,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규 19550), 1897. 1석=20두, 미 1두=조 2두로 환산하였다. 1일경=9식경, 반일경=0.5일경=4.5식경, 1식경=0.11일경, 반식경=0.056(0.06)일경, 반반식경=0.028(0.03)일경, 1일경=7두락으로 계산하였다.

49 174석 2두 2승락 내 78석 11두 4승락 미기(未起), 실답(實畓) 95석 10두 8승락 내 37석락 도조(賭租) 111석, 58석 10두 8승락 타작, 연각부동(年各不同)(三島屯).

50 도조 6석 11두 타조(打租) 152석 8두 내 25석 사음예하(舍音例下) 실(實) 133석 19두 병신조 연각부동(年各不同)(안성 소재 수원부 향탄둔).

51 〈표 7〉의 용인군 5둔에서 전 431.5일경을 두락으로 환산하여 원래 답 면적과 합하여 구한 두락당 도전(賭錢)은 0.98냥으로 계산되고 있다.

52 〈표 6〉 및 〈표 7〉의 각 둔별 두락당 도조

(단위 : 두)

구분	양향	오타	포내	유천	숙성	삼도	지고	고마	양성	시흥	인천	평균
답(租)	4.0	2.5	2.6	2.0	0.8	3.0	5.7	3.4	3.8	3.5	2.0	3.0
전(太)							1.0	2.3	1.4			1.7

비고 : 평균은 답(畓)의 경우 숙성둔과 지고둔을 제외하였고, 전(田)의 경우 양성은 조(租)라서 제외하였다.

수원군의 삼도둔과 양성군 소재 향탄둔 등에서는 '미기(未起)' 또는 '구진(舊陳)' 등으로 진전 관계도 일정하게 언급되고 있으나,[53] 대체로는 도조 수봉과 관련하여 기전답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조의 경우는 수원군 소재 둔토의 경우 총융청둔 등 6개 둔의 것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삼도둔에서 타작제로 운용되는 58석 10두 8승락의 지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표 7〉에서와 같이 경기 지역 타군 소재 둔토의 경우는 도조 합이 604석 10두 9승(1만 2,090.9두), 도전 합이 4,994냥 9전 6푼으로 비교적 자세히 확인되고 있다. 결국 군부의 조사에서 이러한 불명확한 내용은 이후 소관기관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었다.

3) 광무사검과 수원군의 역둔토

갑오 면세지 승총 이후 각기 그 내용별로 탁지부와 궁내부, 군부로 나뉘어 이속 관리되어 오던 전국의 둔토가 1899년에는 일체 궁내부 내장원 관할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역토 역시 농상공부(1895년 3월) → 군부(1897년 3월) → 탁지부(1898년 11월)로 이속되어 오다가 1900년 9월에는 내장원으로 귀속되었다.

전국의 둔토, 목장토, 역토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내장원은 이속받은 해당 토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도조액을 재조정할 목적으로 사검장정(査檢章程)을 새로 마련하고,[54] 1899년 6월부터는 둔목토에 대하여 사검위원을, 이듬해 9월부터는 역토조사를 위해 전국 각 도에 봉세관(捧稅官)을 파견하여 역둔토에 대한 전국적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른바 광무사검(光武査檢)을 통해 내장원은 역둔토 경영을 강화해 나갔다.

내장원은 탁지부 및 궁내부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부를 인계받아 우선 각 지역에 소재한 둔목토의 종류를 파악하고,[55] 이어서 사검의 대상이 될 각 도 공토에 대한 대강의 수량까지 파악·정리한 후에[56] 본격적으로 각 도에 사검위원을 파견하여 사검사업을 실시하였다. 수원군을 포함한 경기도 사검위원으로는 이태하(李泰河)와 강봉헌(姜鳳憲)이 1899년 6월 1일자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57] 그러나 그해 12월에 강봉헌이 제주사검위원 겸 독쇄

53 『고종실록』, 건양 2년 3월 10일. 답 18석 18두락, 도조 71석 14두 내 12석 13두 구진(舊陳) 실(實) 59석 1두(양성 소재 수원부 향탄둔).
54 「궁내부각목장둔토사검위원장정(宮內府各牧場屯土査檢委員章程)」, 『탁지부왕부서류(度支部往復書類)』, 1899년 6월; 「전남사검겸독쇄장정(全南査檢兼督刷章程)」, 『장정(章程)』(규 18960), 1900년 1월; 「내장원각목장역토각둔토각양세액봉세관장정(內藏院各牧場驛土各屯土各樣稅額捧稅官章程)」(규 20627), 1900년 9월.
55 『각도각군소재목장둔토총목(各道各郡所在牧場屯土總目)』(규 19612), 1899년 6월.
56 『내장원각도공토안(內藏院各道公土案)』(규 19614), 1899년 7월.
57 『구한국관보』, 광무 3년 6월 3일.

관(督刷官)으로 옮겨 감에 따라 경기 지역은 이태하가 독쇄관 겸임, 1900년 9월에는 봉세관으로 거듭 파견되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58] 봉세관의 경우 종2품, 정3품 등 고위 품계를 지닌 관료가 파견되기도 했으나 이태하는 9품으로서 실무적인 하급관리로 이해된다.

도별로 파견된 사검위원들은 1899년 말경에는 사검한 결과를 토대로 각 군별로 두 종류의 문부를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개인양안으로서 '역둔양안'의 형식을 띤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조부에 해당하는 '정도성책(定賭成册)'이었다. 그리고 도별로는 각 군을 단위로 한 조사문부를 바탕으로 '각군각둔토집도도안(各郡各屯土執賭都案)' 등의 조사문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파견되는 독쇄관과 봉세관의 임무는 누락된 토지 및 사실과 다른 조사내용, 그리고 역토의 재조사 등 토지조사도 일정하게 겸하고 있으나 주로 역둔토 조사 및 정도 내용에 의거하여 각둔 곡포(穀包)와 각양 세액을 차질없이 수봉상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국 내장원의 광무사검은 공토인 역둔토의 필지별 소재지(面, 員, 字號, 地番)와 전답 면적(地目, 結負, 斗落)을 명확히 조사하여 내장원이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조사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작인을 파악하고 그들이 납부할 도조를 현실에 걸맞게 가도(加賭)함으로써[59] 지주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사장(私庄)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수원군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광무사검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조사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결국 광무사검을 실시하기 위해 1899년 7월에 마련한 자료의 하나인 『경기각군공토안』의 수원군 부분을 중심으로[60] 그 대강을 살펴보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같은 해 6월에 작성된 「경기각군공토목록」에는 수원군과 관련하여 목장토는 괴태곶목장, 수유리목장, 홍원곶목장 등 3곳과 둔토로서는 영화역관둔(迎華驛官屯), 훈둔(勳屯), 지고둔(紙庫屯), 경둔(經屯), 고마둔(雇馬屯), 봉둔(烽屯), 포둔(砲屯) 전답 등 7곳을 조사대상 목둔토로 확인하고 있다.[61] 그리고 광무사검과 관련한 수원군 역둔토의 대체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내장원에 의한 광무사검은 각 군별로 소재한 역둔토를 조사하고 도조를 새로 정하는 것이었다. 궁장토를 제외한 모든 역둔토는 내장원 소관이었기에 종래와 같이 중앙 및 지방의 각 기관별 토지 파악과는 달리 내장원은 통일적인 조사를 추구하였고, 행정 및 군사적

58 박진태, 「대한제국 초기의 국유지 조사」,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59 "前委員所定賭額至歇處ᄂᆞᆫ 招致該作民ᄒᆞ야 參其上中下ᄒᆞ야 量宜加定事." (「내장원각목장역토각둔토각양세액봉세관장정(內藏院各牧場驛土各屯土各樣稅額捧稅官章程)」 참조).
60 내장원, 『경기각군공토안(京畿各郡公土案)』(규 19614).
61 「경기각군공토목록(京畿各郡公土目錄)」, 『각도각군소재목장둔토총목(各道各郡所在牧場屯土總目)』(규 19612).

〈표 8〉 광무사검 시기의 수원군 역둔토[62]

둔명		면적(斗落)			도액(斗/兩)			비고(賭租/斗落)
		전	답	전답	조(租)	태(太)	전(錢)	
총융청둔(摠戎廳屯)				187.9				
충훈부둔(忠勳府屯)				209.5				
용호영둔(龍虎營屯)			22.0					
친군영둔(親軍營屯)				282.7				
별비둔(別備屯)			375.0					
향탄둔(香炭屯)				205.0				
삼도둔(三島屯)	기(起)		740.0		2,220.0			(3두)
			1,170.8					타작(打作)
	진(陳)		1,571.4					
지고(紙庫)		130.5	87.7		498.0	129.3		(5.7두)
고마(雇馬)		15.0	52.0		178.0	35.0		(3.4두)
영화역관둔(迎華驛官屯)		466.9			1,389.2	58.5		
			476.5		1,871.0			(3.9두)
목장(牧場)				4,959.6				
							27.0	시장(柴場) 38편(片)
포둔(砲屯)								
봉둔(烽屯)								
합계		612.4	4,495.4	5,844.7	6,156.2	222.8	27.0	

특성과 관련하여 타군 소재 공토까지 특정 군이 관할하여 경영하는 제도도 필요 없게 되었다.[63] 따라서 『경기각군공토안』에는 이제 광무사검에서 조사할 역둔토의 내용이 각 군별로 거칠게 정리되어 있으며, 수원군의 경우는 〈표 8〉과 같다.

기왕에 중앙의 영 · 아문 둔토와 지방 각 둔의 전답으로서 수원군에 소재한 둔토는 총융청둔을 비롯한 13개 둔에 관한 것으로서, 이 공토안에는 각 궁방 소유의 궁장토가 제외되었고,[64] 아울러 역토의 경우는 이듬해에 내장원으로 귀속되는 관계로 역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1894년의 개혁으로 영문과 아문이 폐지되고 면세지가 승총됨에 따라

62 내장원, 『경기각군공토안(京畿各郡公土案)』(규 19614), 1899년 7월. 1석=20두, 1일경=7두락, 1일경=10식경, 미 1두=조 2두, 1결=40두락이다. 삼도둔(三島屯)에서는 도액란에 58석 10두 8승락(1,170.8두락)의 타작(打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지고(紙庫) 답의 경우는 도조가 아니라 '추수조(秋收租)' 24석 18두이고, 고마(雇馬) 답은 '도미(賭米) 89두'를 도조(賭租)로 환산한 것이다. 영화역관둔전(迎華驛官屯田)은 66일 7식경을 두락으로 환산하였으며, 목장 전답은 123결 99부 1속을 두락으로 환산하였고, 아울러 염막(塩幕) 2좌, 세염(稅塩) 30석, 시장(柴場) 38편, 세전(稅錢) 27냥이 추가되었다.

63 결국 종래 수원부의 장용외영(총리영)을 토대로 한 군사도시적 기능과 관련하여 경기도를 넘어 황해도 및 충청도 지역에 소재한 공토까지도 관할 경영하던 것은 물론이고, 수원부 관할로 되어 있던 경기도 내의 이웃 군 소재 둔토마저도 이제는 각 군별 조사대상 토지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동 공토 안에서 경기도 내 타군 소재 수원부 관할 둔토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둔토의 대부분은 탁지부 소관으로 되었다가 1899년에 다시 내장원이 관할 부서로서 조사하고 있으며, 다만 영화역관둔전처럼 역관둔전은 을미사판 시에는 마위토와 구분 없이 조사되었지만 그 후 역토가 아닌 둔토로서 탁지부 소관으로 옮겨졌다가 광무사검 시에 다시 내장원으로 귀속되어 조사대상 토지가 되었다. 갑오승총 이후 궁내부에 소속되었다가 1899년에 내장원 사검위원의 조사를 받게 된 토지로는 수원 유수영둔을 지칭하는 총리영둔(摠理營屯) 전답으로서의 향탄둔토와 목장토가 있다.[65]

광무사검에서 토지조사는 상중하 3등급으로 전품을 구분하고, 면적은 전의 경우 일경을 단위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답 모두를 두락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기의 생산력 발전 수준을 공히 전제하면서도 봉건적 수세를 기준으로 하는 결부 파악과는 달리 지대로서의 도조를 수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뿐만 아니라 절대면적을 토대로 한 소유권 확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된다. 그리고 〈표 8〉에 의하면, 수원군 둔토의 규모는 대강의 면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포둔과 봉둔을 제외하면, 전이 30석 12두 4승락(612.4두락), 답이 224석 15두 4승락(4,495.4두락), 그리고 친군영둔의 14석 2두 7승락을 비롯하여 전답 구분 없이 파악하고 있는 둔토 292석 4두 7승락(5,844.7두락)을 합하면 총 547석 12두 5승락(1만 952.5두락)에 이르고, 삼도둔의 '미기(未起)'로 되어 있는 진답(陳畓) 78석 11두 4승락(1,571.4두락)을 제외한 실 전답도 469석 1두 1승락(9,381.1두락)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이러한 규모의 조사대상 토지는 광무사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1899

군명	둔명	면적(斗落)			도액(賭額)		비고(賭租/斗落)
		전	답	전답	조(두)	전(량)	
용인	모현둔	1,064.7	408.3			1,242.2	
	도촌둔	92.4	349.5			736.45	
	부곡둔						
진위	향탄둔				1,858.3		전답 도조
양성	향탄둔	217.0	378.0		1,742.0		
	창대				20.0		
과천	안양둔						
시흥	향탄둔				240.0		
			330.0		1,165.0		(3.5두)
안성	향탄둔			440.5	131.0		도조
					3,048.0		타조
합계		1,374.1	1,465.8	440.5	8,204.3	1,978.6	

출처 : 내장원, 『경기각군공토안(京畿各郡公土案)』(규 19614), 1899년 7월.
비고 : 1석=20두, 1일경=7두락, 1일경=10식경이다. 용인군 모현둔전은 152일 1식경을, 도촌둔전은 13일 2식경을 두락으로 환산하였고, 진위군 향탄둔의 도조는 전도조 15석 11두 1승과 답도조 77석 7두 2승의 합이며, 안성군 향탄둔 전답 22석 5승락은 도조 6석 11두와 타조 152석 8두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64 궁장토는 1900년 9월에 역토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역둔토를 조사하고 수세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봉세관을 파견할 때의 「내장원각목장역토각둔토각양세액봉세관장정(內藏院各牧場驛土各屯土各樣稅額捧稅官章程)」(1900년 9월)에서도 "各宮庄土ᄂᆞᆫ 勿爲擧論事."라 하여 관여하지 않고 있다.
65 『조선부동산용어약해(朝鮮不動産用語略解)』 참조.

년 이후 내장원의 역둔토 조사는 조사대상 토지가 전 역둔토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근전(軍根田 : 軍土) 및 고마둔토(雇馬屯土) 등 공유지(共有地)까지도 공토(公土)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 조사위원들의 사검이 있었을지라도 철저히 다시 조사하여 도세를 정하여 상납하게 할 것[雖有前委員之査檢이라도 築底更査야 定稅上納事]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양안과 개인양안으로서 목역둔양안을 중심으로 문부조사를 하되 양안이 서실된 경우는 답험척량(踏驗尺量)하여 사실대로 총액을 집계하도록 하였다. 시기전답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진전 관계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환간(還墾)된 토지와 각 군의 관속과 각 둔토 마름이 은닉한 두락 및 결수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있었다.[66] 광무사검의 방향은 공토의 확대를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전체 41개 군 212개 둔전답의 경우, 1899년 사검 직전의 원총(元摠)에 비해 사검 후 신사집(新査執)된 둔토의 비율은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67] 이를 경기도의 경우에 적용해서 수원군의 둔토 증가를 가늠해 보면 당해년의 재해(災害) 전답을 감하더라도 1,557.3두락이 증가하여 수조 실재 전답은 546석 18두 4승락(1만 938.4두락)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토지조사와 함께 정도(定賭) 및 도조의 수봉 상납에 관한 엄격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검이 이루어졌다. 갑오개혁에서 각종 부세의 금납화 조처와 을미사판의 도전정도(賭錢定賭)로 인하여 이 시기 금납지대 형태의 도전제는 일정하게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상품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잉여생산물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귀속을 둘러싸고 작인과 역둔토 지주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사검의 정도 과정에서 도전과 도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기해년 사검 초기에도 사검위원들은 지역별 토품의 후박과 추수곡의 다과에 따라 현물납인 도곡과 금납의 도전으로 적절히 정도(定賭)할 수 있었다.[68] 그러나 그해 10월에 "혹 사검관이 대전정도(代錢定賭)한 곳이 있더라도 본곡(本穀)으로 낱낱이 거두어들이라."고 조처한 이후부터는 도전이 아닌 현물납으로 도조를 정하여 수봉상납하게 되었다.[69] 일반적으로 광무사검 문부에는 답의 경우 벼[租], 전의 경우는 벼와 함께 콩[太] · 보리[牟] · 조[粟] · 기장[稷] 등의 본곡과 목화(木花) 등 현물로 정도되고 있다.

66 「내장원각목장역토각둔토각양세액봉세관장정(內藏院各牧場驛土各屯土各樣稅額捧稅官章程)」(규 20627), 1900년 9월.
67 박진태, 「대한제국 초기의 국유지 조사」,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487~492쪽. 둔토별로는 훈둔전답과 관둔전답의 신사집 비율이 전체의 46.7%에 이르고 있는데, 수원군도 이들 둔토를 포괄하고 있다.
68 「충북사검위원(忠北査檢委員)에게 보낸 훈령」(1899년 8월 30일), 『훈령조회존안(訓令照會存案)』(규 19143) 제1책.
69 「13도관찰사에 조회」(1899년 10월 17일), 『훈령조회존안』 제3책; 「전국 각 군수에게 보낸 훈령」(1899년 10월 20일), 『훈령조회존안』 제3책.

광무사검의 준비자료인 『경기각군공토안』은 각 군별로 소재한 역둔토를 조사 · 정도하는 데 충실하여 이전의 타군 소재 둔토 중 수원부 관할이었던 둔전답을 제외하고 군부(軍部) 조사 시의 내용을 큰 틀에서 답습하고 있다. 수원군 각 둔토의 전답 면적과 더불어 대강의 도액(賭額)이 일부 전의 경우는 태(太)로 파악되고 있지만 대체로 전답 모두 조(租)로 조사되고 있다. 목장둔의 경우는 시장(柴場) 38편(片)에서 도전 27냥이 확인되고 있고, 기왕에 수원부 관할에 있던 용인군의 모현둔과 도촌둔 전답의 도액이 1,242냥 2전, 736냥 4전 5푼으로, 곧 화폐지대인 도전으로 조사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대부분의 둔토가 현물지대의 경향을 띠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도둔의 기답 1,170.8두락과 이전 수원부 관할하의 안성군 향탄둔 전답 다수는 타작제로 운영되어 타조로 정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원군 소재 대부분의 둔토는 도조로 정도되고 있는데, 비교가 가능한 답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두락당 도조를 살펴보면, 〈각주 62〉에서처럼 '추수조(秋收租)'라고 표현된 지고둔답 지대의 경우가 5.7두로 가장 높고, 삼도둔 기답 740두락이 3두, 고마답이 3.4두, 영화역관둔답이 3.9두로 나타나고 있다. 지고둔답 두락당 도조의 경우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 사답의 도조에 육박하는 경우로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이거나 도조와 구별되는 추수조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 보면 타조로 읽히기도 한다. 어쨌든 지고둔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원군 둔토 중 확인이 가능한 두락당 도조의 평균은 3.4두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경기 · 충청 지역의 둔답 도조의 일반적 수량보다도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이며,[70] 여기에 두락당 소요되는 사음료와 지세(결세) 1할을 더하더라도 작인의 부담은 1두락 소출 1석(20두)의 30%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 사답에서의 도조율(4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71] 그리고 기해 · 경자연간의 광무사검을 통해서도 경작 실면적을 포함한 역둔토 전체의 면적 규모가 대체로 증가하는 데 비해 두락당 도조의 실질적 증가가 없었던 전반적 사정을 감안하면, 수원 지역 역둔토 조사에서도 내장원은 이후 봉세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도(加賭) 조처를 취하는 방식으로[72] 지대율을 높여 갔다고 할 수 있다.

70 박찬승, 「한말 역토 둔토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항조」, 『한국사론』 9, 1983, 287~288쪽.
71 박진태, 「대한제국 초기의 국유지 조사」,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박진태, 「갑오개혁기 국유지조사의 성격」, 『성대사림』 12 · 13합집, 1997, 262~263쪽 참조.
72 「경기도수원군삼봉면동화동역토작인김청운등소장(京畿道水原郡三峰面桐化洞驛土作人金靑雲等訴狀)(광무 4년 11월 26일)」, 『경기도각군소장』(규 19148)(『국역 각사등록』 2, 국사편찬위원회, 1981, 455쪽).

3. 통감부시기 수원군의 역둔토

1905년 3월에 내장원이 경리원으로 축소 개편되면서, 경리원에서는 1904년 수원군 '봉세사정(捧稅査正)'[73]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역둔토 규모를 다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다. 1906년(광무 10) 3월 말에 경리원에 보고되고 있는 1905년도 수원군 역둔토의 전답별 면적과 도액의 내용은 〈표 9〉와 같다.[74]

〈표 9〉 통감부시기 수원군의 역둔토와 도액(1906년)[75]

역둔명	전 (日耕)	답 (斗落)	시(柴), 대(座)	전답 (結)	진 (陳:기타)	실면적	도조 (賭租:斗)	도태 (賭太:斗)	도전 (賭錢:兩)	감면 (減免)	재조 (在租)	사음료 (舍音料)	실납조 (實納租)	비고 (原結)
삼봉역 (三峰驛)	62.875					(62.875)		814.3				(40.7)	773.6	
		1,410.7			8.3	1,402.4	9,199			207.3	8,991.7	449.7	8,542	49.605
			(19)						53					
청호역 (晴湖驛)	99				(1.75)	(97.25)		1,258		19.2	1,238.8	(62)	1,176.8	
		842.5			11	831.5	4,752.5			274.5	4,478	224	4,254	45.562
장주역 (章洲驛)	49					(49)		778				(38)	740	
		644				644	3,968.1					198.4	3,769.7	27.401
영화관둔 (迎華官屯)	83.875				(1.312)	(82.563)								
		452.7			12	440.7	3,463.8			86	3,377.8	263.8	3,114	16.099
총융둔 (摠戎屯)	26				(1.5)	(24.5)								
		469.9			47	422.9	1,786.5			153	1,633.5	186.5	1,447	13.460
향탄둔 (香炭屯)	16.125					(16.125)								
		277				277	1,984.5					184.5	1,800	3.400
충훈둔 (忠勳屯)	4.625					(4.625)								
		64.5				64.5	256					26	230	1.175

73 『경기각군봉세사정도안(京畿各郡捧稅査正都案)』(규 21987), 1904.

74 『경기각군각역둔전답일경두락결복도액실수초록(京畿各郡各驛屯田畓日耕斗落結卜賭額實數抄錄)』(규 19178), 1906.

75 『경기각군각역둔전답일경두락결복도액실수초록(京畿各郡各驛屯田畓日耕斗落結卜賭額實數抄錄)』(규 19178), 1906; 『경기각군봉세사정도안(京畿各郡捧稅査正都案)』(규 21987), 1904. 1일경(日耕)=4식경(息耕), 1일경=7두락, 1석락=20두락, 도미(賭米) 1두=도조(賭租) 2두이다. 삼봉역의 19좌와 목장공산의 5좌는 시장(柴場)이고, 별비둔 19좌, 오타둔 8좌, 남곡둔 3좌는 대(垈)를 가리킨다. 사복둔(司僕屯)과 훈련둔의 면적, 그리고 오타둔 둔결은 결부로 파악하고 있다. 사복둔은 목장 결(結) 66.762결에 양성(陽城) 결 29.82결이 합해져 96.582결로 파악된다. 진(陳)과 실면적에서 ( )는 일경, [ ]는 결부가 단위이다. 진(陳 : 기타)란의 청호역 전(田) 1.75일경, 영화관둔 전 1.3125일경, 친둔 1.5두락, 지고고마둔 답 10두락, 수성고둔 전 23.3두락과 답 181.4두락, 유천둔 전 1두락과 답 15.5두락, 훈련둔 0.668결은 '계묘철로범입(癸卯鐵路犯入)'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는 구진(舊陳)·성천(成川)·포락(浦落) 등에 의한 것이다. 수성고둔의 2,800두락은 '서둔수세조(西屯水稅租)'이고, 감면(減免)란의 1,400두는 '인민소감정(因民訴減定)'된 것이다. 수성고둔전 72일(日) 1식경(息耕), 유천둔전 6일 3식경, 관천고둔전 223일경은 각각 두락을 '7두락 작(作) 1일경'으로 환산된 것이다. 훈련둔의 도조(賭租)는 도미(賭米)를 환산한 것이다. 사음료비 중 총융둔·수어둔·오타둔의 경우는 수축비(修築費)가 포함된 것이다. 삼도둔의 원결은 '미승총(未陞摠)'으로 표시되었다.

역둔명	전 (田耕)	답 (斗落)	시(柴), 대(座)	전답 (結)	진 (陳:기타)	실면적	도조 (賭租:斗)	도태 (賭太:斗)	도전 (賭錢兩)	감면 (減免)	재조 (在租)	사음료 (舍音料)	실납조 (實納租)	비고 (原結)
용호둔 (龍虎屯)		22				22	70					10	60	0.322
사복둔 (司僕屯)				96.582	[5.307]	[91.275]			6,573.8					96.582
친둔 (親屯)	6.125					(6.125)								
		205			1.5	203.5	675			4.5	670.5	75	595.5	3,900
지고고마둔 (紙庫雇馬屯)	20.625					(20.625)		178				(18)	160	
		151.4			10	141.4	862.8			100	762.8	72.8	690	2,670
서원토 (書院土)	14					(14)								
		283.6				283.6	1,212.4					122.4	1,090	6,869
별비둔 (別備屯)	0.25					(0.25)								
		317				317	1,033					133	900	8,702
			19											
수어둔 (守禦屯)	4.75					(4.75)								
		205				205	912					112	800	3,050
관둔 (官屯)	5.375					(5.375)		46					46	
		23				23	80						80	3,706
각 면 제언 (堤堰)	1.5					(1.5)								
		675.3			20	655.3	2,311.9			60	2,251.9	225.9	2,026	16,487
목장공산 (牧場公山)			(5)						300					
수성고둔 (修城庫屯)	72.25					(72.25)								
		3,364.2			181.4	3182.8	18,483.3			945.9	18,937.4	1,283.3	17,654.1	55,230
							2,800			1,400				
양향둔 (糧餉屯)	30.125					(30.125)								
		592.8				592.8	3,386.8					326.8	3,060	15,071
유천둔 (柳川屯)	6.75					(6.75)								
		527.7			15.5	512.2	2,199			200	1,999	199	1,800	13,014
오타둔 (五朶屯)	1.25					(1.25)								
		501.2			62.7	438.5	2,370			215.6	2,154.4	270	1,884.4	13,530
			8											
				7.495	[0.15]	[7.345]								
포내둔 (浦內屯)	0.5					(0.5)								
		248.3				248.3	934.9					94.9	840	2,356
훈련둔 (訓鍊屯)				18.761	[0.668]	[18.093]	1,496.06			50.08	1,445.98	[136.06]	1,309.92	20,196
용복둔 (龍伏屯)	22					(22)								
		344				344	2,055.4					255.4	1,800	10,462
관천고둔 (筦千庫屯)	223					(223)		1680		50			1,630	
		1,440.8				1440.8	5,895					400	5,495	

역둔명	전 (日耕)	답 (斗落)	시(柴), 대(座)	전답 (結)	진 (陳:기타)	실면적	도조 (賭租:斗)	도태 (賭太:斗)	도전 (賭錢兩)	감면 (減免)	재조 (在租)	사음료 (舍音料)	실납조 (實納租)	비고 (原結)
남곡둔 (南谷屯)	6					(6)								
		231.5				231.5	1,045.5					105.5	940	4.973
			3											
삼도둔 (三島屯)		2,030			80	1,950	10,547.25			600	9,947.25	900	9,047.25	
합 계	756	15,324.1	(24) 30	122.838	(4.562) [6.125] 449.4	(751.438) [116.713] 14,874.7	83,780.71	4,754.3	6,926.8	4,366.08	57,889.03	(158.7) [136.06] 6,118.9	77,755.27	433.822

우선 〈표 9〉는 역토와 둔토를 비로소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수원군 지역에 소재한 전체 규모의 역둔토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당시 경리원은 27개의 역과 둔에 관련한 토지를 전답별로 그 면적과 도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삼봉역과 목장공산의 경우는 시장(柴場)을, 별비둔과 오타둔, 그리고 남곡둔의 경우는 대(垈)까지 조사되고 있다.

면적은 결부보다는 절대면적 단위인 두락과 일경(日耕)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의 경우 대체로 일경으로 조사되어 총 756일경이 파악되고 있으며, 두락으로 조사된 답은 15,324.1두락(766석 4두 1승락)이 확인되고 있다. 결국 18세기 말에 장용외영 설치와 관련한 운영 경비를 위해 수원유수부 인근의 용인, 진위, 안산, 과천, 시흥군을 비롯하여 황해도 및 충청도 지역의 일부 둔토까지 포괄하고 있던 내용을 제외하고, 수원군 지역에 소재하는 3개의 역토를 비롯한 역둔토 전체의 면적은 전 756일경과 답 766석 4두 1승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시장 24좌와 대 30좌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궁장토를 제외하고 수원군 지역에 소재한 역둔토의 전체 규모로서, 경리원이 파악하고 있다가 1907년 11월에 경리원이 폐지되면서 제실재산정리국의 관리에 속하였던 수원군의 공토였다. 수원군 소재 역둔토도 1908년 6월 칙령 제39호에[76] 의거하여 사궁장토와 함께 국유화되어 탁지부에 소속되었으며, 그해 7월에 새로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1909년 5월에 탁지부훈령 제59호로 「탁지부소관 국유지실지조사절차」에[77] 의거하여 일제 통감부하에서 본격적인 국유지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경리원은 각 역둔별로 소유권과 관련된 원래의 전답 면적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수도(收賭)를 위해 현재 경작되고 있는 전답의 실면적을 확인하고 있다. 〈표 9〉에 의하면,

76 『일성록』, 융희 2년 6월 25일, 「궁내부소관급경선궁소속재산(宮內府所管及慶善宮所屬財産)의 이속(移屬)과 제실채무(帝室債務)의 정리에 관한 건」.
77 『탁지부공보(度支部公報)』 제63호, 1909년 5월 28일.



『경기각군각역둔전답일경두락결복도액실수초록』(규 19178)

수원군 역둔토의 실전답 면적은 전 756일경과 답 1만 5,324.1두락, 그리고 결부로 파악되고 있는 전답이 122결 83부 8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면적의 평균 97.2%에 해당하는 것으로, 탈급된 2.8% 정도의 전답은 1903년(계묘)의 철로범입(鐵路犯入)과 구진(舊陳 : 由來陳), 오집(誤執), 그리고 성천·포락(成川浦落)으로 인한 것이다. 영화관둔역전에서 일부 오집과 삼도둔의 80두락이 '사토탈(私土頉)'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조사에서 민유지로서 역둔토에 혼입된 것이라도 명백한 증빙과 더불어 환급되기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도조 감면 부문에서도 삼봉역의 207.3두와 청호역의 274.5두, 유천둔의 200두 중 112.5두는 1905년의 재조사에서 감면[乙巳再査減]을 인정받은 것이며, 도세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수성고둔의 경우처럼 서둔(西屯) 수세조(水稅租) 2,800두 가운데 절반인 1,400두가 민인들의 호소에 의해 감하여 정해지기도 했다[因民訴減定]. 결국 1905년의 경리원에 의한 역둔토 파악도 현실적인 도세 수취와 관련한 경작 실전답과 그에 따른 도액 확인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하겠다.

그리고 경리원이 확인하고 있는 수원군 소재 역둔 전답의 도액은 그 면적을 두락으로 파악하고 있는 답의 경우는 도조(賭租)를 일관되게 조사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전의 경우는 3개 역토와 지고고마둔, 관둔, 관천고둔 등의 토지에서 도태(賭太)로 확인되고 있을 뿐 비교적 규모가 큰 영화관둔전 83.875일경과 수성고둔전 72.25일경을 비롯하여 총 16개 둔전의 경우는 도액이 기재되고 있지 않다. 면적이 결부로 파악되고 있는 사복둔 및 훈련둔의 전답은 각각 도전(賭錢)과 도조로 확인되고 있으나, 오타둔 전답 7결 49부 5속의 경우는 역시 도액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답을 중심으로 도액의 규모를 살펴볼 때, 수원군의 수도 실답 1만 5,324.1두락의 도액은 도조 8만 3,780.71두에서 수성고둔의 서둔 수

세조 2,800두와 면적이 결부로 파악되고 있는 훈련둔의 도조 1,496.06두를 제외한 7만 9,484.65두에 이른다. 결국 수원군 소재 역둔답 전체의 두락당 도조는 5.3두로 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899년 광무사검 직후 경상북도 전체 둔토의 평균 두락당 도조(5.2두)와 유사한 수치로서, 여기에는 수원군 둔답의 평균 두락당 사음료 0.4두[78] 가 포함된 것이다. 1두락 소출 1석(20두)에서 1할의 지세(결세)를 작인이 감당한다고 할 때 수원군 역둔토 작인의 두락당 부담은 7.3두에 이르고, 이는 소출의 36.5%에 해당하여 비로소 사답(민유지)에서의 도조율에 육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역둔토 작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토양세'라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내장원은 이를 엄격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가도(加賭) 조처로 대응하기까지 한 것은 이 경우도 아직은 민전 지주지에서의 타작제에 의거한 2분의 1지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궁방전뿐만 아니라 명목상 공토의 성격을 지닌 역둔토 가운데서도 일반 민인의 노자(勞資)가 투여되어 일정한 물권을 형성하고 있던 제2종 유토(절수사여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갑오개화파 정부가 제2종 유토를 3년마다 변환하여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토와 다를 뿐 민전 위에 설정되었던 면세지(민결절수지, 민결면세지)였다는 점에서 그 토지의 성격을 민유지로 인식하였던 반면, 광무정권의 사검사업은 국가에서 조를 수취한 유토를 공토로 포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광무사검은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내장원의 수조권을 비롯하여 중답주권, 도지권 등의 물권이 여전히 역둔토에 포괄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일제에 의한 역둔토실지조사 과정에서 중답주가 제거되고 민전지주지에서의 분반소작료로 지대가 증가하며, 국유지대장에 분쟁지로 등록된 토지 중 토지조사사업의 분쟁지 심사에서 '영작궁둔'으로 표현되는 조 200두형의 제2종 유토까지를 대체로 국유화하여 일지일주(一地一主)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국가가 확보하게 되었다.[79] 수원군의 역둔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유화되었다고 하겠다.

78 〈표 9〉에서 사음료가 기재된 것 중에서 면적이 일경(田) 및 결부(田畓)로 파악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둔답 사음료 총합(租 6,118.9두)을 실면적 총합에서 관둔답 23두락을 제외한 1만 4,851.7두락으로 나누면 두락당 사음료는 0.412두로 확인된다.

79 이영호, 「한말~일제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 · 민유의 분기-경기도 안산 석장둔의 사례」, 『역사와 현실』 77, 2010; 이영호, 「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경상도 창원 용동궁전답 '영작궁둔(永作宮屯)=조(租) 200두형(斗型)' 의 사례」, 『한국학연구』 2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최원규, 「한말 일제초기 공토 정책과 국유민유 분쟁」, 『한국민족문화』 4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등 참조.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광무양전의 실시 배경과 수원군 양전사업의 추진
2. 양지아문 시기 수원군 양전의 시행과 기록 내용
3. 지계아문 시기 수원군 양전과 지계양안 작성
4. 수원군 양지 · 지계 양안의 지주 · 농민층 분화 양상

제2장

한말 수원의 광무양전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1. 광무양전의 실시 배경과 수원군 양전사업의 추진

1876년 개항 이후 일본 · 청과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상권 확대와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농업에서 토지의 상품화가 크게 일어났다. 이에 양반 관료와 대지주들은 지주제를 발전시키면서 토지 소유를 늘려 가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들이 토지를 잃어버리고 소작농민이 되거나 무전농민으로 몰락하고 있었다. 결국 토지 소유의 편중으로 말미암아 계층 간의 분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외국인들은 개항장 조계지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집적해 나감으로써 토지 소유의 대립과 갈등은 내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히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1]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토지문제를 둘러싼 계층 간의 대립은 보다 심화되었다. 대한제

1 조선정부에서도 일련의 토지제도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893년부터 실시된 한성부의 가계제도에 이어 1894년 갑오개혁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금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성부 내에 외국인 거류지를 설정하려고 하였다.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도 개항장이 확대되고 한성부 지역에서도 일본 상인, 지주, 자본가들의 토지 침탈이 확대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국정부는 1898년에 "옛 제도를 따르되 새 제도를 참작해서 채택한다[率舊章而參新規]."는 이념을 내세워 신구를 새롭게 절충하고 제도 전반을 개혁하려는 원칙을 세웠다.

이전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토지 측량과 개혁론이 제기되었고,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조사와 소유권 법제를 수립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당시 논의 중에서 이기(李沂)의 「전제망언(田制妄言)」이나 유진억(兪鎭億)의 「방전조례(方田條例)」는 주목할 만한 양전론의 하나였다.[2] 이들은 구래의 결부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방전(方田)·경무법(頃畝法)의 취지를 일정 부분 수용·해결한 토지 측량을 주장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전안(田案)을 발급함으로써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서 소농민의 토지 소유 확보와 농업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전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광무정권은 1898년 6월 「토지 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마련하였다. 6월 23일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가 주도한 것으로 「전국토지측량사」라는 제목으로 의정부회의에 정식 안건을 올렸다.[3]

「토지 측량에 관한 청의서」

전국에 지방을 나누어 구역을 정하고 구역에 지질을 측량하야 조리가 밝게 함은 나라에 있어 커다란 정사이라. 대저 우리나라에 구역이 크지 않음이 없고, 토지가 아름답지 않음이 없으나 강계가 나누어져 있지만, 지질에 대한 측량이 자세하지 않고, 들판의 넓고 협착함과 천택의 길고 짧음과 산 고개의 고저와 수풀의 활협(濶狹)과 바닷가의 넘침과 너울과 밭이랑과 두락의 비척(肥瘠)과 가옥의 점거한 거리, 토지 성질의 마름과 습함, 도로의 거침과 험함이 가히 준거하기 어렵다 하니, 정치 유신(維新)한 시기에 이르러 가히 일대 흠전(欠典)이 아니리오. 지금 금일의 급무가 토지 측량보다 더한 것이 없기로 이때에 회의에 올릴 것이다.

광무 2년 6월 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박정양
의정부찬정 농상공부대신 이도재

의정부참정 윤용선 각하 사조(査照)

2 김용섭, 「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 『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1984(증보판), 508~509쪽; 이기, 「전제망언」, 『해학유서』 권1; 이기, 「급무팔제의」, 『해학유서』 권2; 유진억, 「방전조례」, 『전안식』.
3 「토지 측량에 관한 건」, 1898년 6월 22일, 『거첩존안(농상공부거래첩존안)』 3책; 『주의(奏議)』 17책, 1898년 6월 23일.

이와 같이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는 연명으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을 제기하면서, 측량의 대상을 농지의 비척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지질, 산림과 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었다. 요컨대 전국 토지 일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한 측량사업에 대한 의정부 논의에서는 시행상 여러 문제점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행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급기야 의정부회의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참정 윤용선은 "이는 국가에 있어 최대의 정책이므로 대저 누가 불가라고 하겠는가."라고 하여 강력하게 시행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론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한 사업이라고 해도 실시에는 적당한 인물이나 허다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 의안에 찬성한 대신은 청의서를 낸 박정양과 이도재 이외에 윤용선과 궁내부 윤정구 등 4인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 대신은 외부대신 유기환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민영기 등 6인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 측량에 관한 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 안건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 결과를 뒤집어서 본래의 청의대로 시행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고종 황제가 본래 전국적인 양전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의정부의 회의방식에서는 고종 황제의 최종 결정으로 본회의 안건을 뒤집을 수 있었다.[4] 마침내 1898년 7월 2일 고종 황제에게 직접 토지 측량을 재가하고 양전을 담당할 아문과 그 처무규정을 마련하라는 조칙을 내렸다.[5]

1898년 7월 6일 전국적인 측량을 담당할 기관으로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양지아문은 성격상 정부기구 중에서 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 3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각기 내부의 토목국, 판적국과 탁지부의 사세국, 농상공부의 농무국, 광산국 등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었다. 그래서 양지아문 총재관은 별도의 관료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내부·탁지부·농상공부의 대신을 겸임 발령하여 박정양, 심상훈, 이도재 등을 그대로 임명하였으며, 부총재관도 유관부서로서 한성부와 학부의 장관으로 판윤 이채연과 협판 고영희를 임명하였다.[6] 이렇게 범정부적인 유관기구를 포괄하면서 양전을 전

4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논리」, 『역사학보』 208, 2010, 6~8쪽.
5 「주본」 123호, 『주본존안』 3책; 『일성록』, 고종 35년 5월 14일.
6 칙령 제25호,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 제6조, 『각부청의서존안』 6책; 『일성록』, 고종 35년 5월 18일.

담할 독립관청으로서 양지아문이 발족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정부는 종전의 양전 논의를 일부 수용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지의 객관적인 측량을 위해 외국인 기사를 고빙하고 있었던 점이다. 1898년 7월 14일 정부는 미국인 기사 크롬(Reymond Krumm : 巨廉)의 주도하에 측량견습생을 양성하고, 서양의 측량방식을 사용해서 5년 동안 측량에 종사하도록 하였다.[7]

이렇게 양전을 위한 기구와 방식이 확정되었지만 토지 측량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에서는 서양의 측량기술이나 조사관리들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비판하는 논의가 일어났다. 1899년 3월 10일 중추원에서는 측량사업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양지아문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가 일어날 정도였다.[8]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는 이번 토지조사를 통하여 농촌사회 내부에서 기존의 계급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조사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과제였다. 마침내 1899년 4월 5일 양지아문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조세제도의 문란을 시정하고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국적인 양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9] 조선 후기 숙종조 경자양전 이래 전국적인 양전사업이 180여 년 동안 없었는데, 비로소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양전사업은 측량방식과 구체적인 목적에서 크게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한성부였고, 다른 하나는 전국 지역이었다. 우선 한성부에는 1899년 4월 1일부터 서양의 측량기술에 의거하여 측량하되 기존의 가계발급제도의 확대 실시라는 방향으로 양전사업이 추진되었다. 나머지 전국 각 도 지방에서는 옛 제도인 결부제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측량하되, 토지에 관한 여러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국세조사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더욱이 1899년 6월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시험양전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양전조사의 원칙과 방향을 확정하여 경기, 전라, 경상도 등지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아산군에서 양전을 담당했던 양무위원(量務委員) 4인 중 한 사람인 이종대(李鍾大)가 1899년 11월 11일 경기도의 양무감리로 승진 파견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양전이 처음으로 실시된 곳으로 용인과 수원이었다. 특히 용인 지역에서는 당시 조세

7 칙령 제25호,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 제9조, 『각부청의서존안』 6책; 「大韓政府에서 美國量地技士 巨廉을 本國量地技師로 雇聘ᄒᆞᄂᆞᆫ 合同」, 『외부양지아문래거문』.
8 왕현종, 「대한제국기 양전 · 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55~65쪽.
9 「各道量務監理를 該道內郡守 중에 諳術著績ᄒᆞᆫ 者로 擇任ᄒᆞ야 爲先試可에 關ᄒᆞᆫ 請議書」, 1899년 4월 5일, 『각부청의서존안』 10책.

〈표 1〉 대한제국 양지아문 시기 전국 양전 관리[10]

지역	전임자	전임관직	임명일자	후임자	전임관직	임명일자
경기	이종대(李鍾大)	양무위원	1899. 11. 11.			
충남	정도영(鄭道永)	전의군수	1899. 5. 29.	이승우(李勝宇)	종2품	1900. 4. 27.
				민치순(閔致純)	정3품	1900. 5. 21.
충북	이계필(李啓弼)	옥천군수	1899. 11. 11.	이덕하(李德夏)	6품	1900. 4. 27.
				이필영(李弼榮)	3품	1901. 4. 9.
전남	김성규(金星圭)	장성군수	1899. 3. 18. ~ 1900. 10. 30.	이우규(李祐珪)	4품	1900. 11. 6.
				전병훈(全秉薰)	전의관	1901. 3. 21.
				한용원(韓龍源)	4품	1901. 4. 9.
전북	이태정(李台珽)	남원군수	1899. 5. 29.	이승연(李承淵)		1900. 5. 30.
				오횡묵(吳宖默)	익산군수	1901. 3. 21.
경남	남만리(南萬里)	거창군수	1899. 3. 18.	최두문(崔斗文)	양무위원	1900. 4. 5.
경북	박준성(朴準成)	신녕군수	1899. 11. 11.	김자선(金滋善)	정3품	1900. 4. 5.
황해	전병훈(全秉薰)	전 의관	1901. 4. 9.			
평남	팽한주(彭翰周)	평양감리	1901. 10. 22.			

문제로 1899년 음력 6월 29일에서 7월 2일까지 농민항쟁이 일어났다.[11] 용인 지역에서는 원래 수세의 원총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에서 추가로 징수한 가결(加結)이 문제였다. 1841년 원래 수세결총에 비해 줄어든 결수가 무려 306여 결이었는데, 이를 시기결(時起結)에 분배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지만, 이후 결축이 난 결수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이서배의 은결(隱結)을 일부 찾아내어 보충하기도 했지만 1895년에는 53결이라는 은결이 다시 원래 수세의 대상이 되는 결총에 추가로 부과되었다. 결국 무려 112결 17부 9속이라는 결세의 부족분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런 과중한 조세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898년 11월부터 농민들은 면회(面會)를 개최하고 용인군과 탁지부에 상소하여 상납액의 감액을 요청하였다.[12]

10 『관보』, 『일성록』 해당 일자 인사기록 참조.

11 이영호, 「대한제국시기의 토지제도와 농민층분화의 양상-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光武量案」과 「土地調査簿」의 비교분석」, 『한국사연구』 69, 1990, 79~84쪽.

12 탁지부에서는 은결을 색출하여 농민에게 추가된 가결을 대신하여 보충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용인군수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용인 농민들은 민란을 일으켜 수서기 박희종(朴熙宗)을 결박하고 구타하여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용인군수는 하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대로 가결의 탕감을 허락하였다. 1898년 7월 12일에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죽산군수를 파견하고 사태의 원인을 조사케 했으며, 이후 수세실결에서 가결을 탕감하거나 용인지역에 양전을 우선 실시하여 은결을 찾아내어 원래 결총에 보충하려고 하였다(「龍仁査結」, 『황성신문』 제3권, 70쪽).

그런데 수원에서도 용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세 부과와 징수에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수원부읍지』와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에 따르면, 1894년 현재 수원군 지역의 원장부 결총은 전이 6,426결 50부 3속이었으며, 답은 5,395결 11부였다. 전체 결부수가 1만 1,821여 결에 이르렀지만, 각양잡탈결이 5,949여 결이나 되어 실결의 비중은 50%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13] 이전의 양전을 통해 확보된 수원군 지역 결수 중에서 태반이 이미 각양 잡탈로 면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총의 축소 문제는 당시 현실의 농지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과 수세 과정에서의 비리와 탈법이 만연해 있었다는 개연성을 말해 주고 있다.

〈표 2〉 『수원부읍지』의 원장부 결총

자료	원장부 결총(결부속)			답결 비중 (%)	각양잡탈(결부속)			실결 비중 (%)
	전	답	합		각양잡탈결	복호결	실결	
『수원부읍지』	6,426,503	5,395,110	11,821,613	45.6	5,949,772	742,971	5,871,841	49.7
『기전영사례』	6,426,503	5,395,110	11,821,613	45.6	5,458,621	1,031,369	5,331,623	45.1

2. 양지아문 시기 수원군 양전의 시행과 기록 내용

1) 수원군 양전의 시행과 양안 작성 과정

그러면 수원군 양전사업의 실시 과정을 살펴보자. 1900년 당시 수원군은 모두 39면으로 나뉘어 있었다. 양전은 수원군 북부면 신풍동에 위치한 관찰부의 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시 날짜는 1900년 2월 7일로 기록되어 있다.

각 면별 양전 일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우선 수원군 치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부면, 남부면으로부터 정림면이나 숙성면 등지에는 1900년 2월 중에 시행하였다. 반면에 군의 치소보다 먼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오타면과 토진면 등지는 3월 이후로, 다시 우정면과 팔탄면 · 용복면 등지는 4월 이후에 착수되고 있었다.

13 『수원부읍지』(『畿甸營誌』 1책, 규 12187);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3책(규 12200).

〈표 3〉 수원군 양전 시행 현황

순서	책수	면명	자호	자호2	총호수	자호순서	양전 날짜	양전 시작
1	제69 · 70책	북부면	천(天)	칭(稱)	54	1	1900. 2. 7.	신풍동(新豊洞)
2	제5 · 6책	남부면	야(夜)	애(愛)	59	55	1900. 2. 7.	매향동(梅香洞)
3	제40 · 41 · 42책	장주면	육(育)	여(女)	48	114	1900. 2. 15.	구역촌(舊驛村) 서쪽 밖 가산곡(加山谷)
4	제57책	안녕면	모(慕)	찬(讚)	37	162	1900. 2. 14.	곡반정(谷磻亭一洞)
5	제3 · 4책	문시면	양(恙)	진(盡)	57	199		
6	제28 · 29책	태촌면	명(命)	종(從)	56	256	1900. 2. 15.	구봉리(龜峰里) 이천평(泥川坪)
7	제9 · 10 · 20책	동북면	정(政)	우(友)	51	312	1900. 2. 15.	당현리(堂峴里)
8	제21 · 22책	어탄면	투(投)	의(意)	37	363		방교동(防橋洞)
9	제73책	청호면	이(移)	금(禽)	36	400	1900. 2. 14.	분곡(焚谷)
10	제46 · 47책	초평면	수(獸)	분(墳)	40	436	1900. 2. 15.	위포(圍浦)
11	제13 · 14책	정림면	전(典)	구(驅)	34	476	1900. 2. 21.	덕동(德洞)
12	제7 · 8 · 19책	남곡면	곡(穀)	용(用)	88	510		수곡대원(秀谷大員)
13	제1 · 2책	남면	군(軍)	곤(昆)	36	598	1900. 3. 4.	칠야평(七夜坪)
14	제23책	상홀면	지(池)	무(畝)	27	634		청등동(靑登洞)
15	제66책	양간면	아(我)	리(理)	32	661		시남곡(時南谷)
16	제58책	수북면	감(鑑)	행(幸)	27	693	1900. 9. 30.	상용곡(上舂谷)
17	제63책	종덕면	즉(卽)	적(的)	36	720		가산전평(佳山前坪)
18	제56책	오타면	역(歷)	외(畏)	41	756	1900. 3. 16.	동청평(東靑坪)
19	제17 · 18책	숙성면	속(屬)	면(眠)	46	797	1900. 2. 29.	주교동(舟橋洞)
20	제43책	토진면	석(夕)	상(嘗)	30	843	1900. 3. 16.	토진삼동(土津三洞) 용천평(湧泉坪)
21	제11 · 12책	청룡면	계(稽)	도(盜)	36	873	1900. 3. 14.	벌대리(泼垈里)
22	제50 · 51책	오정면	포(捕)	희(羲)	41	909		사근평(沙斤坪)
23	제62책	광덕면	휘(暉)	조(眺)	35	950	1900. 3. 14.	허청평(墟淸坪)
24	제61책	가사면	고(孤)	양김(兩金)	57	985	1900. 3. 17.	보언평(洑堰坪)
25	제67 · 68책	현암면	양생(兩生)	양상(兩翔)	31	1,042	1900. 8. 7.	서두호전평(西斗湖前坪)
26	제59 · 60책	포내면	양룡(兩龍)	양하(兩遐)	49	1,073	1900. 3. 30.	일문곡(日文谷)
27	제71 · 72책	장안면	양리(兩邇)	양녀(兩女)	40	1,122		화도남평(花島南坪)
28	제30 · 31책	초장면	양모(兩慕)	양념(兩念)	45	1,162		산은천전곡(山隱川前谷)
29	제24 · 27책	압정면	양작(兩作)	양사(兩斯)	61	1,207	1900. 3. 27.	만곶리(萬串里)
30	제37 · 38 · 39책	우정면	양형(兩馨)	양수(兩隨)	69	1,268	1900. 4. 8.	오동(五洞) 멱운리(貧雲里) 창촌(倉村) 전병산평원(前餠山坪員)
31	제64 · 65책	공향면	양외(兩外)	양신(兩神)	55	1,337	1900. 3. 23.	삼일암(三日岩)
32	제54 · 55책	팔탄면	양피(兩疲)	양고(兩敲)	62	1,392	1900. 4. 4.	장지동전평(長芝洞前坪)
33	제34책	갈담면	양슬(兩瑟)	양두(兩杜)	28	1,454	1900. 4. 15.	충량리(忠良里)
34	제32 · 33책	삼봉면	양고(兩稿)	양시(兩時)	53	1,482	1900. 4. 16.	삼천병마동(三千兵馬洞)
35	제48 · 49책	용복면	양아(兩阿)	양멸(兩滅)	45	1,535	1900. 4. 6.	해수동후평(海水洞後坪)
36	제52 · 53책	매곡면	곡(號)	적(赤)	52	1,580		인치곡(麟峙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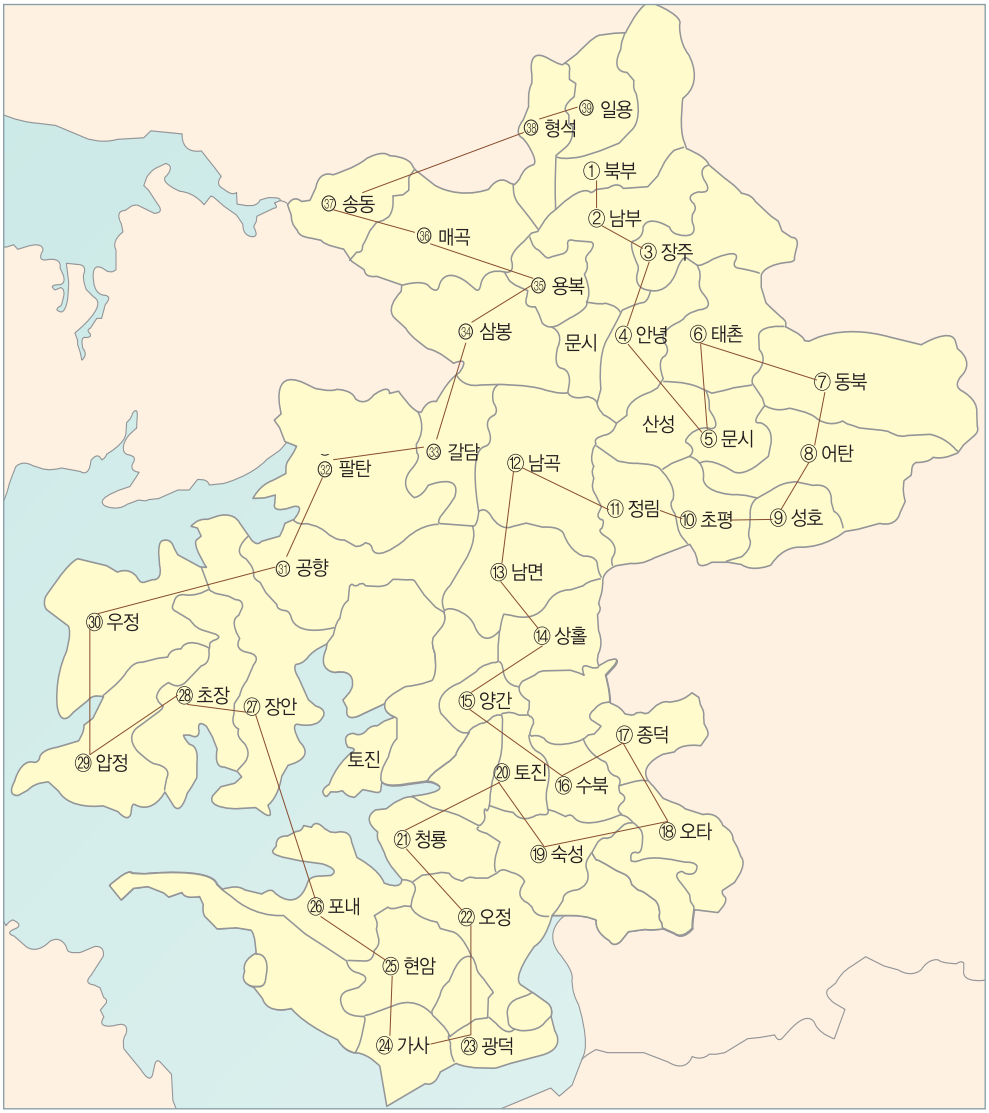
순서	책수	면명	자호	자호2	총호수	자호순서	양전 날짜	양전 시작
37	제15 · 16책	송동면	양성(兩城)	양상(兩賞)	39	1,632	1900. 3. 14.	숙곡(肅谷)
38	제35 · 36책	형석면	양출(兩黜)	양기(兩譏)	37	1,671	1900. 3. 16.	탑동전평(塔洞前坪)
39	제44 · 45책	일용면	양계(兩誡)	양견(兩遣)	41	1,708	1900. 3. 2.	지지현(遲遲峴)

각 면의 양전이 끝나게 되면 면별 양안으로 편철되었다. 〈표 3〉은 각 면별 양안의 편철 과정에서 매긴 자호를 기준으로 해서 각 면별 양안의 순서를 재배열한 것이다. 각 면의 순서는 인접 면에 따라 연속되어 천자문의 자호 순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면별로 이루어진 토지조사 이후, 군에서 전체적으로 자호 순서를 정할 때 면과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재배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각 면별 경계와 경계 사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자호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원군 전체의 지역 지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군 북부면의 경우에는 양전관리는 양무위원 임병한(林炳漢)의 지휘하에 조동오(趙東五), 윤태범(尹泰凡), 염정호(盧定鎬), 이용설(李容卨) 등 4명의 학원이 담당했으며, 현지의 지심인으로 순교 황만유(黃萬唯)가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천(天)이라고 붙여진 북부면 신풍동에 산재한 관아의 대지, 일반 민인의 대지 등을 차례차례 측량해 나갔다. 당시 북부면 양안의 대상 동리는 모두 14개였다. 수원 화성을 둘러싸고 신풍동, 군기동, 장안동, 보시동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2월 7일에 시작한 양전은 각 동리별로 1~2일 정도 소요되어 2월 20일까지 약 2주일간 진행되었다. 물론 동네별로 필지의 모양과 수는 다양하여 방교동의 경우에는 37필지로 작았지만, 보시동의 경우에는 276개 필지로 많은 편이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측량할 때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심인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심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순교, 동장, 소임 등 여러 직책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순교가 많았다. 순교들은 양전 시행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역할도 겸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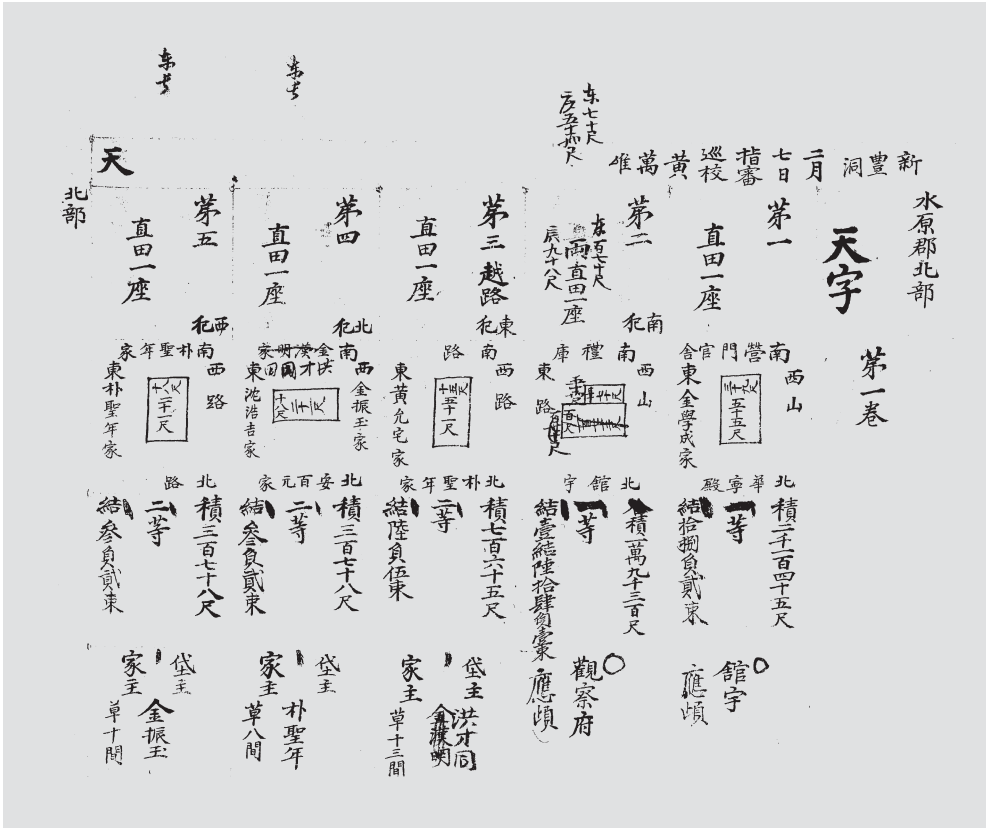
수원군 양전에서 양전관리들은 초기 측량 과정에서 토지의 모양, 크기, 위치, 토지 관련자 등의 주요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였다. 위의 『수원군 북부면 양안』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단에는 지번(제1, 제2, 제3 ……)을 표시했으며, 둘째 단에는 토지의 모양과 지목(直田, 方田 등)을 기록하고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사표(四標)를 기록하였다. 사표의 바깥에는 주위의 산, 관가, 토지나 가옥주의 성명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넣었으며, 사표의 안쪽에는 토지의 가로 세로 길이를 적어 놓았다.

이 사표는 단순히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할 때



『**수원군 양안**』**의 자호 순서** 지명이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다른 군현의 월경지이다.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웃한 토지의 주인들이 사표로 둘러싸인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다. 셋째 단에는 토지의 가로 세로 길이를 산정하여 면적을 추산하고, 등급과 결부를 매겼다. 곧 실적수, 등급, 결수가 연이어 열거되었다. 넷째 단에는 토지의 소유자 혹은 대지의 소유자와 가옥의 소유주 혹은 토지의 경작자 등 토지와 관련된 사람을 기록하였다.



『수원군 양안 – 북부면(상)』 천(天)자 1~5번 필지

자료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첫 번째 필지에는 관우(館宇)가 기록되었으며, 두 번째는 관찰부가, 세 번째는 원래 김한명(金漢明) 이후 수정된 홍재동(洪才同)이 기록되어 있다. 가주(家主)는 가옥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초가와 와가 등 가옥의 종류와 칸수(13칸, 10칸 등)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런데 수원군 지역에서는 원래 양지아문의 사목에서 토지 소유자를 '시주(時主)'와 '시작(時作)'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촌 현실에서 더 많이 쓰이는 전주(田主), 답주(畓主), 그리고 작인(作人)으로 표시하였다.

이렇게 크게 4개의 단으로 나뉘어 각기 각 단에 필요한 기록요소를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이것이 양지아문의 양안장부이고, 처음에 조사한 문서를 들고, 들에 나가 측량하고 기록했다고 해서 '야초(野抄)'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북부면 양전의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14개 동별로 양전이 진행되었다. 1900년 2월 7

〈표 4〉『수원군 양안 – 북부면(상)』에 나타난 동별 양전 진행

순서	동명	일자	지번	지심인	비고
1	신풍동(新豊洞)	1900. 2. 7.	천(天) 1~50, 지(地) 19~53	순교 황만유(黃萬唯)	
2	군기동(軍器洞)	1900. 2. 9.	천(天) 51~69, 지(地) 1~18, 54~114	순교 황만유	
3	장안동(長安洞)	1900. 2. 10.	현(玄) 1~132	순교 황만유, 순교 이덕환(李德煥)	
4	보시동(普施洞)	1900. 2. 11.	황(黃) 1~276	순교 이덕환	
5	관길동(觀吉洞)	1900. 2. 13.	우(宇) 1~48	순교 이대술(李大述), 동장 윤춘명(尹春明), 소임 신기현(申基鉉)	
6	영화동(榮華洞)	1900. 2. 15.	우(宇) 49~58, 주(宙) 1~33, 홍(洪) 1~22	강사인(姜士仁)	
7	서문 외 한평동(寒坪洞)	1900. 2. 15.	황(荒) 1~26, 일(日) 1~18, 월(月) 1~11	동장 박치원(朴致元)	
8	오소평(五所坪)	1900. 2. 17.	영(盈) 1~7, 측(仄) 1~15, 진(辰) 1~16, 숙(宿) 1~15	순교 홍인옥(洪仁玉)	
9	군기동(軍器洞)	1900. 2. 18.	숙(宿) 16~54, 열(列) 1~20	순교 홍인옥, 동장 홍경수(洪京守)	
10	방교(芳橋)	1900. 2. 10.	열(列) 21~ 57	순교 이대술, 동장 강인수(姜仁守), 순교 엄선효(嚴善孝)	
11	고등촌(高登村)	1900. 2. 19.	장(張) 1~63, 한(寒) 1~84, 래(來) 1~46, 서(暑) 1~28	존위 심원석(沈遠錫), 동장 김순돌(金順乭), 소임 김용서(金用西), 순교 홍인옥	고등촌후평(來 19~)
12	동촌 서둔평(西屯坪)	1900. 2. 19.	왕(往) 1~33, 추(秋) 1~33, 수(收) 1~39, 동(冬) 1~10, 장(藏) 1~3	동장 강인수	
13	서둔(西屯)	1900. 2. 19.	장(藏) 4~21, 윤(閏) 1~19, 여(餘) 1~29	장도일(張道一)	
14	서둔평(西屯坪)	1900. 2. 20.	성(成) 1~48	유대여(柳大汝), 순교 홍인옥	

일에 신풍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동리별로는 대개 1~2일 정도 소요되었다. 필지수로는 적게는 7필지에서 많으면 276개 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해당 양전관리와 지심인들이 다수 동원되었다. 실제 양전은 양무위원과 학원이 담당하는 대신에, 해당 지역의 농지사정과 지주, 소작인 등을 잘 아는 사람으로 지심인들을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동리의 동장과 존위, 소임 등이 그러한 일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순교는 양전 시행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에 동원된 현지 주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원군 양전에 참여한 양무관리의 전체 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초기 양전에서는 많은 양전관리가 동원되었다. 각 면별로 양무위원 1명과 학원 4~10명 정도를 파견하여, 면에서는 1명의 양무위원으로 책임을 맡게 하되, 학원은 4명 정도로 나누어 면을 2~3개로 분리하여 측량업무에 종사하였다. 대개 양무위원과 학원은 하나의 조를 이

〈표 5〉 수원군 각 면 양전관리

책수	면명	책수	양무위원	학원	책수	양무위원	학원
1 · 2	남면	1	서병덕 (徐丙德)	김정두(金正斗), 김형식(金榮植), 이현우(李賢雨), 윤자학(尹滋學)	2	서병덕	권영우(權永佑), 김교순(金敎恂), 정동하(鄭東夏), 윤태정(尹泰貞)
3 · 4	문시면	3	이상호 (李商鎬)	원영상(元永常), 이규열(李圭烈), 박초양(朴初陽), 고희만(高熙萬)	4	이상호	어명우(魚命雨), 구연해(具然海), 이한기(李漢紀), 이승필(李承必)
5 · 6	남부면	5	김기종 (金基宗)	이범하(李範夏), 조동환(趙東煥), 이범직(李範稙), 남계양(南啓暘), 서상우(徐相禹), 이원찬(李源贊)	6		X
7 · 8 · 19	남곡면	7	원직상 (元稷常)	박재돈(朴載敦), 정해창(鄭海昶), 임용구(林容九), 강태균(姜泰均), 이승우(李承雨), 전양호(全養浩), 이영헌(李令憲), 이인호(李寅浩), 권명채(權命采)	8 · 19		X
9 · 10 · 20	동북면	9	이규상 (李圭尙)	박회구(朴會九), 원긍석(元兢錫), 오영국(吳永國), 백낙홍(白樂弘)	10	이규상	오명근(吳命根), 심원직(沈遠稷), 오영조(吳永祚), 류벽(柳碧)
					20	이규상	이종면(李鍾冕), 이응우(李應宇), 윤태정(尹泰貞), 이규화(李奎和)
11 · 12	청룡면	11	김완흠 (金完欽)	권응면(權應冕), 김병기(金秉夔), 신현국(申鉉國), 김용기(金龍起)	12	김완흠	신현필(申鉉弼), 김정연(金正涓), 고 섭(高 涉), 성주경(成周慶)
13 · 14	정림면	13	원직상 (元稷常)	박재인(朴載寅), 김계환(金啓煥), 이인호(李寅浩), 권명채(權命采)	14	원직상	박재인(朴載寅), 김계환(金啓煥), 이인호(李寅浩), 권명채(權命采)
15 · 16	송동면	15	임병한 (林炳漢)	정현조(鄭顯朝), 이종하(李鍾夏), 이신희(李信熙), 김택기(金宅基)	16	임병한	조병일(趙炳日), 이병완(李秉完), 박창수(朴昶壽), 박인양(朴仁陽)
17 · 18	숙성면	17	김동준 (金東駿)	어택선(魚宅善), 권형집(權衡集), 고택규(高宅奎), 채규원(蔡奎遠)	18	김동준	김학로(金學魯), 김승렬(金承烈), 연병환(延秉煥)
21 · 22	어탄면	21	송종원 (宋鍾遠)	이규신(李圭信), 송순영(宋淳榮), 김영주(金永周), 이하교(李夏敎)	22	송종원	홍재진(洪在震), 황종균(黃鍾均), 류영수(柳永秀), 허 숙(許 塾)
23	상홀면	23	이상호 (李商鎬)	이규열(李圭烈), 박초양(朴初陽), 이교승(李敎升), 이승필(李承泌)			X
24 · 25 · 26 · 27	압정면	24	김완흠 (金完欽)	신현국(申鉉國), 고 섭(高 涉), 성주경(成周慶), 신현필(申鉉弼)	25	김완흠	신현국(申鉉國), 고 섭(高 涉), 성주경(成周慶), 신현필(申鉉弼)
24 · 25 · 26 · 27	압정면	26	김완흠 (金完欽)	김용기(金龍起), 권응면(權應冕), 김병기(金秉夔), 김정연(金正涓)	27	김완흠	김용기(金龍起), 권응면(權應冕), 김병기(金秉夔), 김정연(金正涓)
28 · 29	태촌면	28	강희세 (姜熙世)	허 숙(許 淑), 이헌우(李憲雨), 이현성(李玄成), 손석윤(孫錫胤), 이성직(李性稙)	29	강희세	조동원(趙東元), 하병순(河炳淳), 오득영(吳得泳), 정규하(丁奎河)
30 · 31	초장면	30		X	31		X
32 · 33	삼봉면	32	임병한 (林炳漢)	이철규(李哲珪), 노정호(盧定鎬), 조동오(趙東五), 이용설(李容卨)	33		X
34	갈담면	34	김기종 (金基宗)	남계양(南啓暘), 이범직(李範稙), 이원찬(李源贊), 조동환(趙東煥), 서상우(徐相禹), 김학로(金學魯), 이승렬(李承烈), 박초양(朴初陽), 원영상(元永常)			
35 · 36	형석면	35	임병한 (林炳漢)	조동오(趙東五), 이용설(李容卨), 이병만(李秉晩), 이석균(李錫均)	36	임병한	이철규(李哲珪), 노정호(盧定鎬), 최광국(崔光國), 오문환(吳文煥)

책수	면명	책수	양무위원	학원	책수	양무위원	학원
37 · 38 · 39	우정면	37	이규상 (李圭尙)	이종면(李鍾冕), 박회구(朴會九), 장규환(張奎煥), 원긍석(元兢錫), 이종화(李鍾華), 오영국(吳永國), 전영기(錢英起), 조동숙(趙東肅)	38	이규상	백낙홍(白樂弘), 류 벽(柳 碧), 이응우(李應宇), 이규화(李奎和)
					39	이규상	오명근(吳命根), 심원직(沈遠稷), 오영조(吳永祚), 박채춘(朴采春)
40 · 41 · 42	장주면	40	김완흠 (金完欽)	신현국(申鉉國), 고 섭(高 涉), 신현필(申鉉弼), 김병기(金秉夔)	41	김완흠	권응면(權應冕), 김정연(金正涓), 이신희(李信熙), 성주경(成周慶)
					42	김완흠	신현국(申鉉國), 고 섭(高 涉), 신현필(申鉉弼), 김병기(金秉夔)
43	토진면	43		조동원(趙東元), 오긍선(吳肯善), 강태영(姜泰燮), 서두영(徐斗榮), 박제호(朴齊浩)			
44 · 45	일용면	44	임병한 (林炳漢)	정현조(鄭顯朝), 이철규(李哲珪), 최광국(崔光國), 오대환(吳大煥)	45	임병한	조동오(趙東五), 이용설(李容卨), 노정호(盧定鎬), 이병만(李秉晩)
46 · 47	초평면	46	원직상 (元稷常)	박재돈(朴載敦), 임용구(林容九), 강태균(姜泰均), 박재인(朴載寅), 정해창(鄭海昶), 이승우(李承雨), 전양호(全養浩), 이인호(李寅浩)	47	X	
48 · 49	용복면	48		조양(助量)사무원 남정춘(南廷春), 정행민(鄭行敏)	49	임병한	조동오(趙東五), 이용설(李容卨), 이종하(李鍾夏), 이석균(李錫均)
50 · 51	오정면	50		이종면(李鍾冕), 장규환(張奎煥), 전영기(錢英起), 이종화(李鍾華)	51		조기준(趙基駿), 김규영(金奎英), 정규하(丁奎河), 박영구(朴永九)
52 · 53	매곡면	52	임병한 (林炳漢)	정현조(鄭顯朝), 김택기(金宅基), 박창수(朴昶壽), 이종각(李鍾珏)	53	임병한	조병일(趙炳日), 박인양(朴仁陽), 이병만(李秉晩)
54 · 55	팔탄면	54	원직상 (元稷常)	박재돈(朴載敦), 정해창(鄭海昶), 임용구(林容九), 강태균(姜泰均), 이승우(李承雨), 전양호(全養浩), 이영헌(李令憲), 이인호(李寅浩), 권명채(權命采), 윤희영(尹熹榮), 신세구(申世求), 이근인(李根仁), 김두현(金斗鉉)	55	X	
56	오타면	56	이규상 (李圭尙)	박회구(朴會九), 오영국(吳永國), 원긍석(元兢錫), 조동숙(趙東肅), 오명근(吳命根), 오영조(吳永祚), 심원직(沈遠稷), 박래춘(朴來春), 류 벽(柳 碧), 백낙홍(白樂弘), 이규화(李奎和), 이응우(李應宇)			
57	안녕면	57	서병덕	김정두(金正斗), 김형식(金榮植), 이현우(李賢雨), 윤자학(尹滋學), 조병일(趙炳一), 공익렬(孔益烈)			
58	수북면	58	(徐丙德)	이규신(李圭信), 송순영(宋淳榮)			
59 · 60	포내면	59	송종원	하병순(河炳淳), 오득영(吳得泳), 허 숙(許 淑), 이성직(李性稙), 손석윤(孫錫胤), 공석진(孔錫辰), 공재헌(孔在憲), 안교선(安敎善)	60	이상호 (李商鎬)	원영상(元永常), 이규열(李圭烈), 박초양(朴初陽), 고희만(高熙萬), 이승필(李承泌)
61	가사면	61	(宋鍾遠)	김학로(金學魯), 김승렬(金承烈), 연병환(延秉煥), 고택규(高宅奎)			

책수	면명	책수	양무위원	학원	책수	양무위원	학원
62	광덕면	62	강희세 (姜凞世)	하병순(河炳淳), 이헌우(李憲雨), 허 숙(許 淑), 오득영(吳得泳), 이성직(李性稙), 손석윤(孫錫胤), 공석진(孔錫辰), 공재헌(孔在憲)			
63	종덕면	63	김기종 (金基宗)	남계양(南啓暘), 이범직(李範稙), 이범하(李範夏), 조동환(趙東煥), 서상우(徐相禹), 이원찬(李源贊), 김창식(金昌植), 유은영(柳殷永)			
64 · 65	공향면	64	김동준 (金東駿)	어택선(魚宅善), 권형집(權衡集), 이재철(李載轍), 박재화(朴在和)	65	김동준	어택선(魚宅善), 권형집(權衡集), 박재화(朴在和), 이재철(李載轍)
66	양간면	66	이상호 (李商鎬)	원영상(元永常), 이규열(李圭烈), 어명우(魚命雨), 이교승(李敎升)			
67 · 68	현암면	67	김동준 (金東駿)	손석윤(孫錫胤), 오시중(吳時中), 김택기(金宅基), 임병선(林炳善), 공석진(孔錫辰)	68	김정두 (金正斗)	권영우(權永祐), 박재화(朴在和), 정규하(丁奎河), 정동하(鄭東夏), 박래춘(朴來春), 연병환(延秉煥)
69 · 70	북부면	69	임병한 (林炳漢)	조동오(趙東五), 윤태범(尹泰凡), 노정호(盧定鎬), 이용설(李容卨)	70		X
71 · 72	장안면	71	송종원 (宋鍾遠)	이규신(李圭信), 이하교(李夏敎), 황종균(黃鍾均), 허 숙(許 塾)	72	송종원	송순영(宋淳榮), 김영주(金永周), 홍재진(洪在震), 류영수(柳永秀)
73	청호면	73	김동준 (金東駿)	어택선(魚宅善), 김학로(金學魯), 권형집(權衡集), 김승열(金承烈), 연병환(延秉煥), 고택규(高宅奎)			

루어 시행하였는데, 삼봉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양무위원을 파견하지 않고 학원만으로 양전을 시행하게 하였다.[14]

〈표 6〉 수원군 양전관리의 양전 지역 및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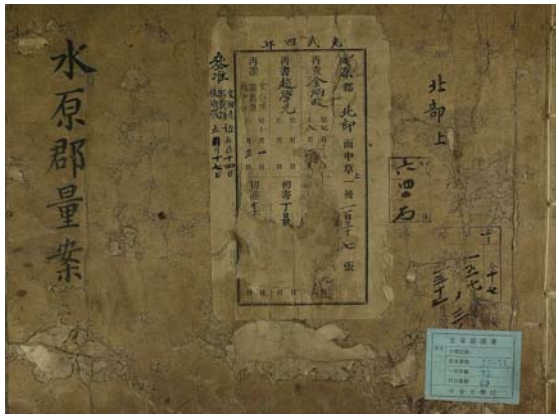
번호	양무위원과 학원	시행지역	시행일자
1	이규상(위원), 박회구, 원긍석, 오영국, 백낙홍	동북면 상(9책), 정(政)자	1900. 2. 15.
2	이규상(위원), 오명근, 심원직, 오영조, 류벽	동북면 상(10책), 부(夫)자	1900. 2. 18.
3	이규상(위원), 이종면, 이응우, 윤태정, 이규화	동북면 하(20책), 비(比)자	1900. 2. 23.
4	이규상(위원) 박회구, 오영국, 원긍석, 조동숙, 오명근, 오영조, 심원직, 박래춘, 류벽, 백낙홍, 이규화, 이응우	오타면 단(56책), 역(歷)자	1900. 3. 16.
5	이규상(위원) 이종면, 박회구, 장규환, 원긍석, 이종화, 오영국, 전영기, 조동숙	우정면 상(37책), 양형(兩馨)자	1900. 4. 8.
6	이규상(위원), 백낙홍, 류벽, 이응우, 이규화	우정면 중(38책), 양미(兩美)자	1900. 4. 6.
7	이규상(위원), 오명근, 심원직, 오영조, 박래춘	우정면 하(39책), 양감(兩甘)자	

14 일부 면에서는 양무위원과 학원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6책 남부면(하), 8책과 19책의 남곡면, 30책과 31책의 초장면, 47책의 초평면(하), 55책의 팔탄면(하)의 경우에는 누가 담당했는지 알 수 없다. 표에 기록이 없는 것은 'X'로 표시하였다.

수원군의 양무위원으로는 서병덕, 이상호, 김기종, 김동준, 원직상, 이규상, 강희세, 임병한 등 8명이었으며, 이들은 각 면으로 나누어 담당하였다. 그런데 〈표 6〉과 같이 양무위원 이규상(李圭尙)이 이끄는 양전조는 양무학원 박회구 · 원긍석 · 오영국 · 백낙홍 등 4명, 그리고 오명근 · 심원직 · 오영조 · 류벽 등 4명, 또한 이종면 · 이응우 · 윤태정 · 이규화 등 4명 등 3개 조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면을 나누어, 1900년 2월 15일 동북면, 3월 16일에 오타면, 4월 8일에 우정면 등 3개 면을 측량하였다. 이들이 대개 1달 정도 1개의 면을 측량하였으므로 대개 1,450개 필지를 측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원군 전체의 양무위원은 60명, 학원은 313명으로 총 연인원 373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양무위원 13명과 학원 125명 등 138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양전사업에 종사하였다.[15]

2) 『수원군 양안』의 기록 내용과 특징

이렇게 완성된 양안의 초본은 곧이어 각 면별로 모아 수정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수원군의 경우에는 양무위원과 학원들이 각 면별로 시행된 양전 기록을 한데 모아 새로 정리하게 되었고, 이는 '중초책(中草册)'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때에는 1자 5결을 단위로 하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각 면의 순서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며, 각 자호별 통계, 각 면별 통계를 일치시키고, 또한 각 필지별 기록 상태를 재점검하게 된다. 예컨대 수원군 북부면 상의 표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원군 양안-북부면(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수원군 각 면의 양안에는 중초책 양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지를 붙여 초사와 재사, 초서와 재서, 초준과 재준 혹은 삼준에 이르는 대조 과정을 거쳤다. 북부면 1900년 7월 20일

15 전체 양무위원 중에서 김정두와 학원 김정두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어 학원 인원에서 제외하였고, 반면에 이승필(李承必)과 이승필(李承泌)은 같은 사람으로 처리한 반면, 조병일(趙炳一)과 조병일(趙炳日)은 다른 위원 아래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인물로 처리하였다.

경에 양전을 끝낸 후 다시 조사하는 재사(再査)에 돌입하여 김병준(金炳畯)이 검사를 담당했으며, 이어 초서와 재서를 거쳐 조학원(趙學元)이 재서(再書)를 확인했으며, 이어 초준과 재준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초준과 재준, 삼준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록의 내용을 다시 점검했다는 뜻일 것이다. 1901년 5월에 삼준을 마침으로써 중초책 양안에 대한 확인 과정을 끝냈다.

수원군 39개 면의 양전의 결과는 각 면별, 각 군의 총목(總目)으로 집계되어 기록되었다. 당시 수원군 북부면은 전체 필지의 면적 규모는 556만 척이고, 남부면은 762만 척이었으므로 전체 1,318만 8,813척이었다.[16] 431만 4,299평이고, 미터법으로는 1억 4,262만 1,146㎡ 혹은 14.26㎢로 된다. 즉, 사방 3.78㎢ 정도로 된다. 전체 수원군 지역 39개 면 중에서 2개 면의 토지면적은 6.35%에 불과하였다. 또한 답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북부면은 57.1%, 남부면은 65.5%로 수원군 전체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북부면과 남부면 지역이 주로 사람이 사는 거주지였으므로 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양안 집계

면명	자호	자호2	자호수	수정 총적(척)	전적	답적	답적 비중(%)
북부면	천(天)	칭(稱)	54	5,560,045	2,385,596	3,174,449	57.1
남부면	야(夜)	애(愛)	59	7,628,768	2,634,042	4,994,719	65.5
군총목	천(天)	양견(兩遣)	1,748	207,694,708	66,294,617	141,400,091	68.1
면명	전답 총결	전결	답결	답결 비중(%)	실전답	진전답	실전답 비중(%)
북부면	292,937	115,089	177,848	60.7	289,631	119	98.9
남부면	332,339	97,451	234,888	70.7	331,934		99.9
군총목	9,137,244	2,472,930	6,664,314	72.9	9,119,990	11,969	99.8

각 면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를 나타내는 결수에 대해서는 북부면은 292결, 남부면은 332결 정도로 나타난다. 남부면의 전결 총수가 더 높다든지, 대개 대지를 나타내 주는 전결도 상당히 있지만, 답결의 비중도 60.7% 대 70.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대지와 더불어 논이 면 내에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 2개 면 양안의 또 다른 특징

16 이를 정보로 환산하면, 1결 10,000척(10,000×1,081㎡)을 기준으로 하였다. 1결은 약 3,270.8평으로 환산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척수에 3.057로 나누어 환산하였다(최윤오, 「대한제국기 충주군 양안의 지주제와 농민층 분해」, 『광무양안과 충주의 사회경제구조』, 혜안, 2010, 35쪽, 각주 26 참조).

은 전체 전답 총결 중에서 실전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98.9%, 99.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지아문의 토지조사에는 실경작지와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진전 등은 조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각 면별로 전과 답의 총면적을 비교하면 이전의 양안 결총과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점이 있었다. 수원군 전체 39개 면 중에서 답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하인 경우는 불과 4개 지역으로 동북면, 정림면, 일용면, 북부면 등이었다. 이 중 북부면은 성내로 택지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3개 면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답의 비중이 80%를 넘는 지역은 숙성면, 오타면, 수북면, 가사면 등 4곳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68.1%로 전에 비해 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군의 결부의 비중에서는 〈표 7〉과 같이 7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표 2〉의 1894년 원장부 결총에서 답결의 비중이 45.6%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7.3%나 증가한 것으로 기존의 답결 중에서 대략 50%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하면 전체 토지 가운데 약 4분의 1 정도가 전에서 답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수원군 각 면 광무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우선 수원군 전체 민호의 숫자와 거주 형태를 살펴보자. 수원군 전체에 거주하는 민호는 1만 4,846호이며, 이 중에서 와가는 사찰 14칸을 포함하여 총 852칸이며, 초가는 98.6%인 6만 907칸으로 대부분 초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부 · 남부면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민호의 숫자와 거주형태는 〈표 8〉과 같다.

〈표 8〉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거민호 및 주거형태

면명	거민호		주거형태					초가비중 (%)	거민호 칸수
	거민호수	비중(%)	와가칸수	비중(%)	초가칸수	비중(%)	합계		
북부면	946	6.4	262	30.75	4,596	7.55	4,858	94.6	5.1
남부면	1,006	6.8	76	8.92	5,860	9.62	5,936	98.7	5.9
수원군	14,846	100	852	100.00	60,907	100.00	61,759	98.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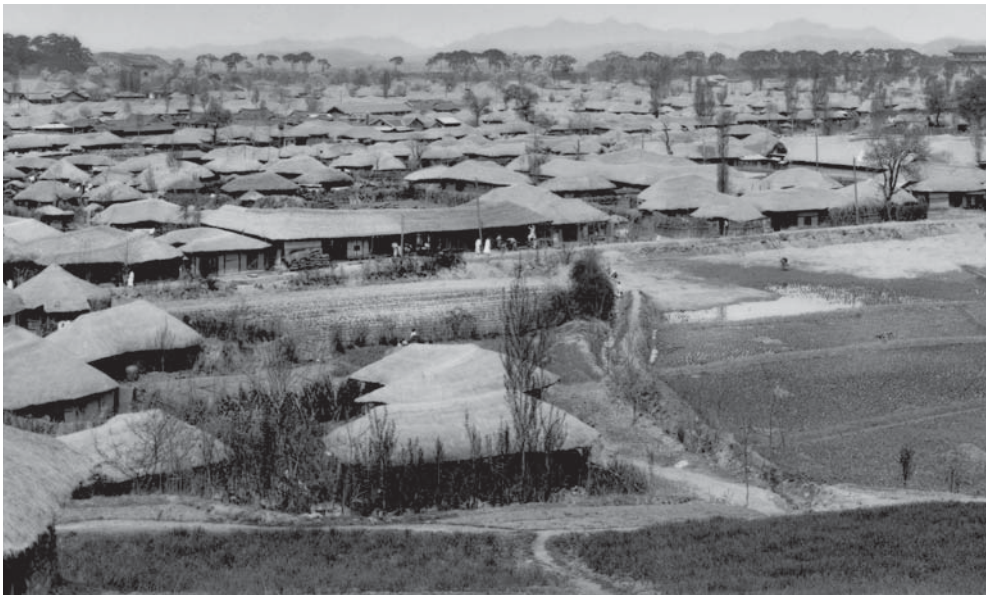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의 거민호는 각기 946호와 1,006호였으며, 와가와 초가는 각기 262칸과 76칸, 4,596칸과 5,860칸이었다. 남부면 지역이 시장을 끼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민과 주거 칸수가 많았다. 거민호당 칸수는 남부면이 1호당 5.9칸으로

〈표 9〉 수원 북부면 · 남부면 기와집 소유 현황

번호	지역	동명	실적(척)	등급	결수(결)	지주명	가주명	가옥	칸수	수정 가주명	수정 작인명	비고
1	북부	보시동	806	2	69	차시민(車時民)	차시민	와	31	차원린(車原麟)	차원린	
2	북부	보시동	418	2	36	홍형순(洪亨淳)	홍형순	와	30	박조이(朴召史)	박조이	
3	북부	보시동	2,860	2	243	지방대(地方隊)	지방대	와	30			
4	북부	보시동	726	2	62	최승대(崔承大)	최승대	와	27	차형린(車珩麟)	차형린	
5	남부	남창동	1,350	2	115	구관청(舊官廳)	구관청	와	27	변태순(卞太順)	변태순	응탈, 사표서(초관청)
6	북부	보시동	476	2	40	성교당(聖敎堂)	성교당	와	24	민만길(閔萬吉)		
7	남부	남창동	520	1	52	우체사(郵遞司)	우체사	와	22			응탈
8	북부	장안동	1,612	2	137	임화실(林化實)	소학교	와	20			지주명 임화실, 소학교 응탈
9	남부	남창동	1,120	2	95	나복남(羅卜男)	나복남	와	20	나진규(羅晉奎)	나진규	와가 20칸, 초가 35칸
10	북부	보시동	528	2	45	김현오(金鉉五)	김현오	와	17	김상준(金相俊)	김상준	
11	남부	산루동	1,144	3	80	이종필(李鍾弼)	이종필	와	17			와가 17칸, 초가 8칸
12	남부	남창동	1,125	2	96	관노청(官奴廳)	관노청	와	16	임복업(林卜業)	임복업	응탈
13	북부	장안동	3,264	2	277	나기택(羅己澤)	나기택	와	15			
14	북부	보시동	380	2	32	홍대윤(洪大允)	홍대윤	와	13	이중선(李仲先)	이중선	와가 14칸으로 수정
15	북부	장안동	528	2	45	감옥서(監獄署)	감옥서	와	13			응탈
16	남부	남창동	1,375	2	117	윤수영(尹水永)	윤수영	와	10			초가 28칸
17	남부	남창동	621	2	53	이종칠(李鍾七)	이종칠	와	9	김희용(金喜龍)	김희용	와가 10칸, 초가 11칸
18	남부	남창동	225	2	19	강봉엽(姜鳳葉)	강봉엽	와	9			
19	북부	보시동	234	2	20	강성경(姜聖京)	강성경	와	8	박대련(朴大連)	박대련	
20	북부	역촌	700	2	60	이성선(李聖先)	이성선	와	7	이성실(李聖實)		초가 5칸 추가
21	남부	구천	1,764	2	150	신영조(申永兆)	신영조	와	6			초가 70칸
22	남부	구천	475	2	40	최광준(崔光俊)	윤일성(尹日盛)	와	5			초가 5칸
23	북부	보시동	152	2	13	김종생(金宗生)	김종생	와	4			



근대 초기 수원 성내 와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근대 초기 수원 성내 초가(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높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와가의 칸수에서는 북부면이 30.75%로 높게 나타나 이곳에 비교적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민호 중의 비중은 북부와 남부가 각기 6.4%와 6.8%를 보여 전체 39개 면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 지역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에 거주하였던 1,952호 중에서 기와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에 소재한 기와집 소유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가의 소유자는 크게 관청과 민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관청(와가 27칸), 성교당(와가 24칸), 우체사(22칸), 소학교(와가 20칸), 관노청(와가 16칸) 등이 주목된다. 여기서 원래 기록 자체가 누락된 건물은 관우(館宇)와 관찰부의 건물이었다.

민간으로서 가장 큰 기와집 소유자는 31칸 소유자인 차시민(車時民)과 30칸 소유자인 홍형순(洪亨淳), 그리고 27칸 소유자인 최승대(崔承大) 등이 주목된다. 그 밖에도 신영조의 경우 와가 6칸에 불과하지만 초가가 70칸이나 되었다. 또한 기와집의 소유자 중에서 남부면 남창동에서 거주하는 나복남(羅卜男)의 경우 와가 20칸과 초가 35칸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양안의 수정 과정에서 소유자명이 나진규(羅晉奎)로 바뀌고 있다. 북부면 장안동에 거주하는 나기택(羅己澤)의 경우도 와가 15칸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초가집 소유 형태를 초가 10칸 이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표본 검

〈표 10〉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초가집 소유 현황

번호	지역	동명	실적(척)	등급	결수(결)	지주명	가주명	가옥	칸수	수정 지주명	수정 가주명	비고
1	남부	구천	1,764	2	150	신영조(申永兆)	신영조	초	70			기와 6칸
2	남부	남창동	880	2	75	최흥도(崔興道)	최흥도	초	30			
3	남부	구천	1,015	2	86	신윤삼(申允三)	신윤삼	초	30	김성옥(金成玉)	김성옥	
4	남부	산루동	868	3	61	윤구성(尹九成)	윤구성	초	27			초가 27칸을 17칸으로 변경
5	남부	남수동	1,156	2	98	최재현(崔在鉉)	최재현	초	25			초가 12칸으로 변경
6	남부	산루동	280	2	24	이조이(李召史)	이조이	초	25	이치영(李致永)	이치영	초가 25칸 8칸으로 변경
7	남부	산루동	500	3	35	이시화(李時化)	이시화	초	24			초가 24칸 15칸으로 변경
8	남부	남창동	525	2	45	홍덕래(洪德來)	홍덕래	초	23			
9	남부	산루동	400	2	34	김순오(金順五)	김순오	초	23	김형기(金兄基)	김형기	

번호	지역	동명	실적(척)	등급	결수(결)	지주명	가주명	가옥	칸수	수정 지주명	수정 가주명	비고
10	남부	구천	1,350	2	115	최재신(崔在申)	최재신	초	22	조운철(趙云喆)	조운철	
11	북부	장안동	840	2	71	홍화섭(洪化燮)	홍화섭	초	21	차희균(車希均)	차희균	
12	남부	남창동	750	2	64	이희인(李喜仁)	이희인	초	21	김기종(金基鍾)	김기종	
13	북부	군기동	1,880	2	160	박동이(朴童伊)	박동이	초	20			
14	남부	구천	468	2	40	임원칠	임원칠	초	20			
15	남부	남수동	740	2	63	이순명(李順命)	이순명	초	20		엄주필(嚴柱必)	
16	남부	구천	264	2	22	김민호(金敏浩)	김민호	초	20	최여장(崔汝長)	최여장	
17	남부	남수동	560	2	48	최희선(崔喜先)	최희선	초	20	김□원(金□元)		
18	북부	서둔서촌	2,088	3	146	이일매(李一梅)	이일매	초	15		이정생	이정생가, 초가 3칸
19	북부	평촌	396	3	28	수성둔(修城屯)	유승옥(劉承玉)	초	12		(李正生)	
20	북부	평촌	713	3	50	수성돈	유성수(劉聖守)	초	12			
21	북부	화산동	224	2	19	홍남순(洪南順)	김번성	초	10			
22	북부	고양	816	4	45	임면호(任冕鎬)	홍학봉	초	10			
23	북부	서둔동촌	1,056	3	74	이춘쇠(李春釗)	이춘쇠	초	10		편여삼	
24	북부	서둔동촌	238	3	17	이영선(李永先)	이영선	초	10		(片汝三)	
25	북부	서둔동촌	280	3	20	유원삼(劉元三)	유원삼	초	10			
26	북부	서둔동촌	294	3	21	유남수(劉南守)	유남수	초	10			
27	북부	서둔동촌	799	3	56	양춘오(梁春五)	양춘오	초	10			
28	북부	화산동	740	2	63	김점쇠(金占釗)	김점쇠	초	10			
29	북부	역촌	399	2	34	김재명(金在明)	김재명	초	10			
30	북부	역촌	144	2	12	오근성(吳根成)	오근성	초	10	이오득(李五得)		
31	북부	불당	330	2	28	이인돌(李仁乭)	이인돌	초	10	윤재용(尹在用)		
32	북부	상광교	484	2	41	정낙현(鄭洛鉉)	정낙현	초	10	오흥서(吳興西)		
33	북부	화산동	300	2	26	김기덕(金己德)	김기덕	초	10	김중덕(金中德)		칸수 10으로 수정

토하면 〈표10〉과 같다.

초가집의 경우 대개 자기의 소유대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서 초가 20호 이상의 대저택도 많았다. 특이한 것은 양전의 재조사 과정에서 남부면 산루동의 경우 이시화(李時化), 이조이(李召史), 윤구성(尹九成) 등의 초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정되는 과정에서 초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가옥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양전 당시 결수나 가옥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 수원군 광무양안은 측량 이후 양안을 만들면서 야초와 중초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정서책' 양안은 완성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은 양전 과정과 결과에서 종전과 다르게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3년 지계아문이 설립되었을 때, 수원군과 용인군은 다시 조사를 해서 양안의 전체 내용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다.[17]

3. 지계아문 시기 수원군 양전과 지계양안 작성

대한제국은 양지아문의 설립을 통해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진행시키고 시주와 작인을 양안에 등재시키는 과정에 있었지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1900년 11월 중추원 의관 안종덕(安鍾悳)은 '관급계권(官給契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901년 10월 중추원 의관 김중환(金重煥)은 '전토관계지법(田土官契之法)' 제정을 재차 요구하였다.[18] 결국 대한제국정부는 1901년 10월 20일 칙령 21호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을 마련하였다.[19]

이때 설립된 지계아문(地契衙門)은 한성부와 13도 지역에 전토계권을 정리하는 기관이었다. 지계아문은 토지의 답사, 신계(新契)의 환급 및 구계(舊契)의 격소(繳銷), 매매증권(賣買證券)의 발급을 담당할 예정이었다.[20] 11월 11일에 수정된 '처무규정'에서는 지계의 발급대상이 전답에 국한되지 않고 산림, 천택, 가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토

17 이영호, 「광무양안의 기능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최원규, 「대한제국기 양전과 관계발급사업」,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참조.
18 안종덕, 「중추원건의」, 『석하집(石荷集)』 권9, 잡저; 「중추원의장 김가진 언사소」, 『비서원일기』, 1900년 9월 11일; 「중추원의관 김중환소」, 『비서원일기』, 1901년 9월 1일.
19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 『주의』(규 17703) 참조.
20 『지계아문래문』(규 17776) 참조.

지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21] 이는 당시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였다. 1898년 7월부터 추진되었던 한성부의 관유지 방침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분간 가사(家舍)의 소유를 허용하던 방침이었으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일체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겠다는 개혁방향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개항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종래 한성부에서 외국인의 소유에 대해 일정하게 허용하고 있었던 종전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계아문의 지계발급사업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 확정과 이전에 관한 국가적인 법인과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2년 3월 지계아문은 이전에 양전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양지아문과 통합됨에 따라 전국적인 토지조사와 관계발급을 위해 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1902년 1월부터 양지아문의 양전과 양안 작성 업무를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3월 17일 지계아문은 양지아문을 통합하여 명실공히 토지의 측량과 지계의 발급기관으로 재정립하게 되었다.[22]

이 과정에서 경기도 용인과 수원 지역에서는 2차례에 걸쳐 양전이 실시되었다.[23] 용인군의 양전은 1899년 11월부터 12월경까지 2개월여 동안 16개 면에 걸쳐 실시되었다.[24] 이곳에서는 경기도 양무감리인 이종대(李鍾大)의 지휘하에 이상호(李商鎬), 원직상(元稷常), 김기종(金基宗) 등 3명의 양무위원을 중심으로 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용인 지역에서 양전의 결과는 전답결총이 3,542결 97부 4속으로 당시 수세결총 2,549결 15부 5속에 비하여 도리어 993결 81부 9속이 증가하였다.

이때 수원군의 경우에도 용인군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1903년 10월 경기도 양무감리 이종대가 피소된 사건이었다.

> 수원군의 결부를 말하자면 300년 전 결총이 1만 1,000여 결인데, 진황지가 오래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시기결은 6,700결이라고 하였다. 옛날에 비해 부족한 결이 4,000여 결인데, 금번 개량할 때에 총결을 모은 것을 합하면 8,900여 결이었다. 그래서 새로 잉여된 결이 2,200여 결이었다.

21 "第十條 山林土地田畓家舍는 大韓國人外에는 所有主되믈 得지 못홀 事 但開港口內에는 不在此限홀 事." (개정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 제10조 참조).
22 1902년 1월 21일에는 지계아문사무소를 탁지부로부터 양지아문으로 옮겼으며, 3월 17일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합설하였다(『관보』 2107호, 1902년 1월 27일, 74쪽; 『일성록』, 1902년 2월 8일, 44쪽).
23 「光武三年八月 日 龍仁郡民擾事査官竹山郡守行査文案」, 『사법품보(司法稟報)(갑)』.
24 「훈령 수원군수」, 1899년 11월 1일 및 1899년 12월 1일, 『공문편안』 제5책(규 17876); 『용인군양안초』 29책(규 17645) 참조.

이것이 모두 관리와 민의 은결이 탄로난 것인 고로 자연히 무리들이 일어나 억울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군 당국에서 민소(民訴)라고 보고하였다. 경계가 모호하고 시작이 섞인 것은 측량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바가 없는 것이었다. 읍에서는 어린성책(魚鱗成册)이 있고, 동에는 지심인이 있고 두민(頭民)과 동장(洞長)이 작인과 답주를 보고하여 현록(懸錄)한 것이었다. 그 읍과 동이 잘 살피지 못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려서야 되겠는가. 어찌 모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개량하는 비용으로 말하자면, 수원과 용인 양군의 공전이 사용하여 합하면 3만 6,000여 냥이었다. 본 아문의 장정과 감리 및 위원, 학원 척수군(尺數軍), 순교(巡校) 등의 일비를 계산하여 날마다 분급하였고, 또 사용된 물품은 역시 일일이 명세서에 시가를 적어 본 아문에 납부하였다. 본 아문으로부터 조사하여 명확한 연후에 탁지부의 날인을 받아 성첩하였으므로 일비는 처음부터 더하지도 않았고 먹는 것을 제외하고 물가를 썼으며, 또한 더 많이 지출하거나 계산을 숨긴 것이 없었다는 것은 본 아문에서도 공히 아는 것이다. 개량이 좋지 않았다고 구실을 붙여 소모비액을 추징한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는가.[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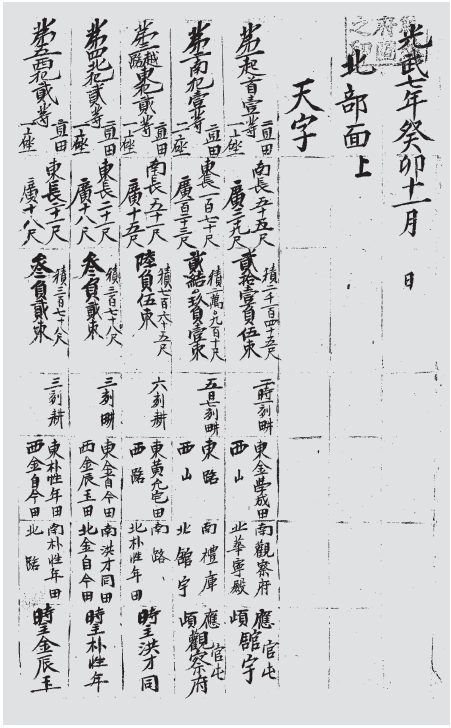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양무감리 이종대는 자신들의 조사활동은 양지아문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철저하게 조사되었으며, 심지어 양전의 비용도 정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평리원 검사 홍종억은 보고서에서 당초 개량의 본의는 결수를 실제대로 하여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관은(官隱), 이은(吏隱), 민은(民隱) 등으로 인하여 2,200여 결이 이번에 사출되었는데, 이를 군이 민소를 보고하면서 "토지 측량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추징한다는 것은 해당 관원들이 억울하다고 하니 사리에 흡사 합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해당 양전관리들에게 비용을 추징할 수 없으며, 도리어 방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건의하였다. 실제 1900년 경자년의 수세결에 비해 광무양전의 결과는 무려 2,321여 결이나 증가하였다.[26] 이렇게 결총이 증가한 원인은 타량(打量)에서 토지등급을 지나치게 상품으로 규정한다든지 진결을 시기전으로 파악하는 등 결수를 지나치게 많이 증가시켰다고 지적되었다.[27]

수원군 지역에서 전답결수가 증가하고 재양전의 시비가 크게 일어난 배경에는 실제로 "전토의 태반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마름, 향대부의 토지" 였기 때문이었다. 즉, 중앙의 관료지주와 향촌 유력자의 토지가 실제 이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전에 따라서 새로 과세대상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들이 양전 결과를 비판하였던 것이었

25 「보고서」 제64(평리원 검사 洪鍾檍→법부대신 李址鎔), 1904년 6월 15일, 『사법품보(을)』 제42책(규 17279).
26 왕현종, 「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혁과 성격」, 『한국사연구』 77집, 112쪽, 〈표 4〉 경기도 각군 결총 증가표 참조.
27 『관보』, 1903년 9월 30일; 『일성록』, 1903년 8월 5일; 『일성록』, 1903년 8월 23일.

다.[28] 그렇다면 실제 수원군 지역의 지계아문 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지계아문의 양안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지계아문의 조사위원들이 양지아문 시기에 만들었던 중초책 양안의 표지에 초사, 재사를 붙여 가면서 각 면별로 전답의 실적통계 및 결부수, 시주와 시작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제 양안을 만드는 목적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유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경영자를 나타내는 작인, 즉 시작의 인명은 모두 생략되었다. 따라서 1903년 11월 지계아문에서 재차 작성한 지계아문의 양안은 양식상 크게 달라져 있었다. 먼저 수원군 '북부면 상'이라는 지역 표기는 그대로이지만, 같은 천(天)자의 경우, 한 줄로 정연하게 아래로 정렬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전답도형도가 생략되어 있는 대신에 토지의 실적수를 나타내는 두락과 일경의 표기가 기록되어 있


光武七年癸卯十月 日
北部面上
天字

수원군 북부면 지계아문 양안

〈표 11〉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지계양안 집계

면명	구분		자호	자호2	자호수	수정 총적(척)	전답 총결(결)	적수 증가	결수 증가	비고
북부면	양지양안		천(天)	칭(稱)	54	5,560,045	292,937			(가)
	지계양안	북부면 상	천(天)	조(調)	34	2,685,376	155,010			
		북부면 하	양(陽)	중(重)	31	3,587,812	154,944			
		합계			65	6,273,188	309,954	12.8%	5.8%	(가)와 비교
남부면	양지양안		야(夜)	애(愛)	59	7,628,768	332,339			(나)
	지계양안	남부면 상	개(芥)	의(衣)	25	2,658,065	125,024			
		남부면 하	상(裳)	장(場)	49	5,296,245	243,801			
		합계			74	7,954,310	368,825	4.3%	11.0%	(나)와 비교

28 경기도의 경우, 종전 수세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군은 수원, 광주, 여주, 용인, 이천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경기도 지역 각군 양안 및 「光武三年八月 日 龍仁郡民擾事査官竹山郡守行査文案」, 『사법품보』(갑) 참조).

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위주로 하여 시주(時主)로 표기되어 있지만, 시작(時作)의 표기는 삭제되었다. 이 양안 기록방식에서는 전답의 위치나 소작농민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는 대신, 토지의 객관적인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이름 위주로 파악한 것이다.

수원군 북부면 지계아문의 양전 결과는 천자에서 중자까지 모두 65자호, 627만여 척, 309결 95부 4속이었다.[29] 남부면의 양전 결과는 개자에서 장자까지 모두 74자호, 795만여

〈표 12〉 지계아문의 수원군 각 면 양전 시행 현황

순서	책수	면명	자호	자호2	자호	자호2	총호수	자호순서	양전 날짜	양전 시작
1	제32 · 33책	북부면	천(天)	칭(稱)	천(天)	중(重)	62	1	1903. 11.	신풍동
2	제46 · 47책	남부면	야(夜)	애(愛)	개(芥)	장(場)	74	63	1903. 11.	매향동
3	제54 · 55책	장주면	육(育)	여(女)	화(化)	난(難)	55	137	1903. 11.	구역촌 서쪽 밖 가산곡
4	제15 · 16책	안녕면	모(慕)	찬(讚)	양(量)	경(競)	49	192	1903. 11.	곡반정일동 (谷磻亭一洞)
5	제61 · 62책	문시면	양(恙)	진(盡)	자(資)	우(優)	66	241	1903. 11.	
6	제50 · 51책	태촌면	명(命)	종(從)	등(登)	수(守)	87	307	1903. 11.	이사니천평 (二祀泥川坪)
7	제52 · 53책	동북면	정(政)	우(友)	진(眞)	승(陞)	64	394	1903. 11.	당현리
8	제11 · 12책	어탄면	투(投)	의(意)	계(階)	가(家)	44	458	1903. 11.	방교동
9	제21 · 22책	청호면	이(移)	금(禽)	급(給)	숙(孰)	42	502	1903. 11.	분곡
10	제23 · 36책	초평면	수(獸)	분(墳)	영(營)	준(遵)	43	544	1903. 11.	위포
11	제7책	정림면	전(典)	구(驅)	약(約)	안(雁)	39	587	1903. 11.	덕동
12	제39 · 40 · 41책	남곡면	곡(穀)	용(用)	문(門)	즉(卽)	101	626	1903. 11.	수곡대원
13	제13 · 14책	남면	군(軍)	곤(昆)	(중간 없음) 수(誰)	오(梧)	39	727	1903. 11.	칠야평
14	제30책	상홀면	지(池)	무(畝)	동(桐)	이(耳)	32	766	1903. 11.	청등동
15	제25책	양간면	아(我)	리(理)	원(垣)	방(房)	35	798	1903. 11.	시남곡
16	제8책	수북면	감(鑑)	행(幸)	환(紈)	제(祭)	37	833	1903. 11.	상용곡
17	제42 · 43책	종덕면	즉(卽)	적(的)	사(祀)	망(亡)	43	870	1903. 11.	가산전평
18	제31책	오타면	역(歷)	외(畏)	포(布)	회(晦)	45	913	1903. 11.	동청평
19	제34 · 35책	숙성면	속(屬)	면(眠)	백(魄)	양성(兩成)	71	958	1903. 11.	주교동
20	제26책	토진면	석(夕)	상(嘗)	양률(兩律)	양채(兩菜)	33	1,029	1903. 11.	토진삼동 용천평
21	제2책	청룡면	계(稽)	도(盜)	양중(兩重)	양민(兩民)	37	1,062	1903. 11.	벌대리
22	제59 · 60책	오정면	포(捕)	희(羲)	양벌(兩伐)	양방(兩方)	46	1,099	1903. 11.	사근평
23	제5책	광덕면	휘(暉)	조(眺)	양개(兩蓋)	양신(兩信)	41	1,145	1903. 11.	허청평
24	제28책	가사면	고(孤)	양금(兩金)	양사(兩使)	양충(兩忠)	68	1,186	1903. 11.	보언평

29 이하 각 면별 총적수와 총결수는 지계아문의 양안상의 기록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합계한 숫자이다. 이는 미완성 양안으로 면 총목이나 군총목이 따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총적수와 총결수는 추정치이다.

순서	책수	면명	자호	자호2	자호	자호2	총호수	자호순서	양전 날짜	양전 시작
25	제4책	현암면	양생(兩生)	양상(兩翔)	양칙(兩則)	(없음)	31	1,254	1903. 11.	서두호전평
26	제9 · 10책	포내면	양룡(兩龍)	양하(兩遐)					1903. 11.	일문곡
27	제37 · 38책	장안면	양이(兩邇)	양여(兩女)					1903. 11.	화도남평
28	제17 · 18책	초장면	양모(兩慕)	양념(兩念)					1903. 11.	산은천전곡
29	제48 · 49책	압정면	양작(兩作)	양사(兩斯)					1903. 11.	만곶리
30	제56 · 57 · 58책	우정면	양형(兩馨)	양수(兩遂)					1903. 11.	오동 멱운리 창촌전병산평원
31	제6책	공항면	양외(兩外)	양신(兩神)					1903. 11.	삼일암
32	제63 · 64 · 65책	팔탄면	양피(兩疲)	양고(兩鼓)					1903. 11.	장지동전평
33	제29책	갈담면	양슬(兩瑟)	양두(兩杜)					1903. 11.	충량리
34	제44 · 45책	삼봉면	양고(兩槁)	양시(兩時)					1903. 11.	삼천병마동
35	제24책	용복면	양아(兩阿)	양멸(兩滅)					1903. 11.	해수동후평
36	제19 · 20책	매곡면	곡(號)	적(赤)					1903. 11.	인치곡
37	제27책	송동면	양성(兩城)	양상(兩賞)					1903. 11.	숙곡
38	제3책	형석면	양출(兩黜)	양기(兩譏)					1903. 11.	탑동전평
39	제1책	일용면	양계(兩誡)	양견(兩譴)					1903. 11.	지지현

척, 368결 82부 5속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양지아문의 양전 결과와 비교하면 북부면의 경우에는 자호가 11개가 늘고, 면적은 12.8%, 결수는 5.8%가 증가한 결과였으며, 남부면의 경우에는 자호가 15개가 늘고, 면적은 4.3%, 결수는 11.0%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면적과 결수의 증가는 양지아문에서 파악하거나 포함하지 않았던 진전을 다수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지계아문의 양전은 양지아문 시기의 양전과 달리 다수의 진전을 포함하여 양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계아문의 수원 지역 재양전은 대체로 이전의 양지아문의 것과 동일한 순서로 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계아문 13~14책 남면의 경우에는 자호 순서로 721번인 양(兩)자 이후 726번인 조(組)자까지가 자호명이 붙여져 있지 않고, 중간에 생략되고 727번인 수(誰)자에서 시작되고 있듯이, 중간 자호명이 붙여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4책 현암면의 경우에는 1254번의 양칙(兩則)자가 면의 시작 자호로 설정되기는 했지만, 이후 나머지 자호는 전혀 자호를 붙이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후 포내면 등 나머지 14개 면에서도 동일한 상태였다. 이렇게 지계양안의 기록 부실 사태는 수원군 지계양전이 1903년 11월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1904년 러일전쟁의 여파로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원군 지계양안의 개수 과정은 결국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계아문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양안기록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수

〈표 13〉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지계양안의 관유지 현황

번호	자료명	면수	동명	자호2	지번	등급	열좌	실적(척)	결수(결)	실적2	지주 한자	작인명	작인 한자	비고
1	북부면 상권	2	신풍동	천(天)	1	1	1	2,145	215	2시 1각경	館宇			응탈
2	북부면 상권	2	신풍동	천(天)	2	1	2	20,919	2,091	5일 7각경	觀察府			응탈, 관둔
3	북부면 상권	3	신풍동	천(天)	7	1	1	2,025	203	2시경	都倉			응탈, 관둔
4	북부면 상권	3	신풍동	천(天)	8	1	1	5,015	502	1일 1시경	本府			응탈, 관둔
5	북부면 상권	3	신풍동	천(天)	11	1	1	400	40	3각경	稅務廳			응탈, 관둔
6	북부면 상권	7	신풍동	천(天)	44	1	1	6,800	680	1일 2시 7각경	華寧殿			응탈
7	북부면 상권	8	신풍동	천(天)	51	1	1	840	84	7각경	修城庫			응탈, 관둔
8	북부면 상권	9	신풍동	지(地)	1	1	2	25,500	2,550	6일 1시 4각경	講武堂			응탈, 관둔
9	북부면 상권	10	신풍동	지(地)	8	3	1	1,815	127	1시 7각경	火藥庫	김준성	金俊成	관둔
10	북부면 상권	10	신풍동	지(地)	9	1	1	1,050	105	1시경	守門廳			응탈, 관둔
11	북부면 상권	24	군기동	현(玄)	75	1	1	3,060	306	3시경	二倉			응탈관둔
12	북부면 상권	27	군기동	황(黃)	6	2	1	400	34	3각경	守門廳			응탈, 관둔
13	북부면 상권	40	장안동	우(宇)	7	1	1	4,980	498	1일 8각경	一倉			응탈, 관둔
14	북부면 상권	44	장안동	우(宇)	34	1	1	552	55	4각경	監獄署			응탈, 관둔
15	북부면 상권	45	보시동	우(宇)	48	2	3	3,240	275	3시 2각경	兵營			응탈, 관둔
16	북부면 상권	50	보시동	우(宇)	83	2	1	190	16	2각경	營廂			관둔
17	북부면 상권	50	보시동	우(宇)	85	2	1	400	34	4각경	官廂			관둔
18	북부면 상권	57	보시동	우(宇)	143	3	1	150	11	1각경	守門廳			응탈, 관둔
19	북부면 하권	99		망(罔)	42	2	1	3,136	267	3시경	蔡訪鎭驛			응탈
20	남부면 상권	13	남수동	강(薑)	21	1	1	1,387	139	1시 3각경	獄			응탈
21	남부면 상권	25	남수동	강(薑)	117	2	1	81	8	1각경	鍾閣			응탈
22	남부면 상권	25	남창동	강(薑)	119	2	1	580	58	5각경	郵遞司			응탈
23	남부면 상권	48	남창동	해(海)	139	2	1	42	4	1각경	守門廳			응탈, 관둔

원군 북부 · 남부면 양안에 나타난 관공서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에 소재한 관공서의 부지는 〈표 13〉과 같이 모두 23개이다. 수원군 관아를 비롯하여 경기관찰부, 도창, 본부, 세무청, 화령전, 강무당, 감옥서, 병영, 수문청, 찰방진역, 옥, 종각, 우체사 등의 관청이 있었다. 또한 수원 화성을 관리하는 수성고, 영포, 관포 등 관둔전이 있었다. 관공서의 부지 총면적은 8만 4707척으로 9.2정보가 되는 넓은 면적이었고, 결부로도 8결 30부 2속에 달하였지만, 이들 토지는 국유지인 관계로 모두 결세 부과에서 면제되었다. 이 외에도 관에서 소유한 각종 둔전과 궁방전이 있었다.

〈표 14〉 수원 북부면 · 남부면 지역 관둔과 궁방 현황

번호	명칭	필지		실적		결부	
		필지수(개)	비중(%)	실적수(척)	비중(%)	결부수(결)	비중(%)
1	수성둔(修城屯)	411	36.3	1,590,461	52.6	95,024	52.2
2	누동궁(樓洞宮)	124	10.9	527,722	17.4	36,557	20.1
3	선희궁(宣禧宮)	115	10.2	430,040	14.2	21,594	11.9
4	영화마위(迎華馬位)	90	7.9	165,540	5.5	9,195	5.1
5	관둔(官屯)	341	30.1	145,608	4.8	11,201	6.2
6	교위(校位)	12	1.1	59,723	2.0	3,161	1.7
7	지고둔(紙庫屯)	24	2.1	36,655	1.2	1,459	0.8
8	명례궁(明禮宮)	9	0.8	36,408	1.2	2,078	1.1
9	고마둔(雇馬屯)	5	0.4	21,210	0.7	1,220	0.7
10	양향둔(糧餉屯)	2	0.2	11,375	0.4	455	0.3
합계		1,133	100.0	3,024,742	100.0	181,944	100.0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무래도 수성둔이었다. 이곳에는 모두 411개 필지로 159만 척, 결부로도 95결여에 달하고 있었다.[30] 전체 둔전의 규모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다음으로는 누동궁과 선희궁, 영화둔, 관둔 등이었고, 그 밖에 지고둔, 명례궁, 고마둔, 양향둔이 있었다.

한편 지계아문의 양안에는 종래 양지아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진전(陳田)이나 낙전(落田) 등 경작지가 아닌 경우도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지계양안에는 진전이 전체 324개 필지, 167만여 척, 결수 64결여 등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

30 수성둔의 경우, 북부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웃한 일용면(상, 하)에서는 전 7결 11부 7속, 답 16결 55부 7속으로 총 23결 67부 4속에 불과하였다.

〈표 15〉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지계양안의 진전

번호	명칭	필지		실적		결부	
		필지수(개)	비중(%)	실적수(척)	비중(%)	결부수(결)	비중(%)
1	부분 진전	189	58.33	721,747	43.20	29,458	45.65
2	전체 진전	73	22.53	613,900	36.74	19,322	29.94
3	철도로 인한 진전	47	14.51	224,149	13.42	12,978	20.11
4	진전으로 무주(無主)	15	4.63	110,948	6.64	2,775	4.30
합계		324	100.00	1,670,744	100.00	64,533	100.00

전이 된 사유로는 부분 진전이 발생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전 양지아문의 양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체 필지의 진전도 73필지나 발생되었다. 또 구래의 진전으로 토지 소유자가 무주로 기록된 토지도 15개 필지가 되었다. 또한 철도 부설로 일부 필지가 잠식되어 진전이 된 경우도 47필지, 22만 척, 결부로는 12결여가 포함되었다. 이렇듯 지계아문의 양전사업은 실경작지 위주로 측량조사된 양지아문의 경우와는 달리 진전을 포함하여 성천, 포락 등 다양한 토지의 상태를 모두 반영하여 전체 토지를 측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원군 양지 · 지계 양안의 지주 · 농민층 분화 양상

1900년 당시 수원군 각 면에서 지주와 농민층의 농지 소유와 경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북부면과 남부면의 경우에는 수원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체 필지 중에서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2%나 되었으며, 면적으로도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과 답은 전체 토지 필지의 4.6%, 면적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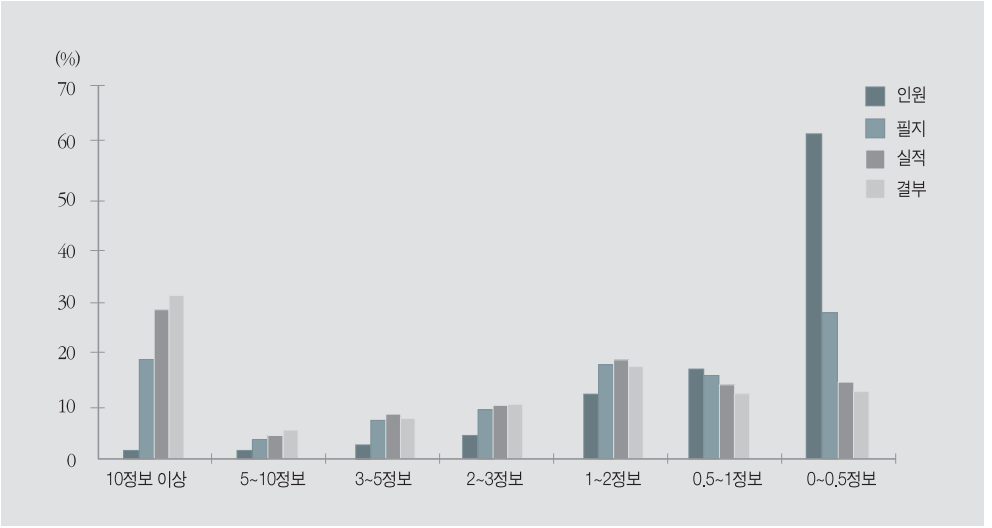
수원군 북부와 남부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현황은 〈표 16〉과 같다.[31] 〈표 16〉에서 보듯이 수원 북부면과 남부면 토지 소유자는 모두 1,423명이었다.[32] 0.5정보 미만의 영세 토지 소유자는 898명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 다수였으며, 소유 토지의 필지 비중은 불과 25.5%였고, 실적으로도 14.6%, 결부수로도 12.8%에 지나지 않았다.

31 토지 소유자와 토지 경영자의 현황에 대한 구분은 1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0.5정보 이상(영세소농)과 이하(영세빈농), 그리고 1~2정보, 2~3정보(중농), 3~5정보, 5~10정보(지주층), 10정보 이상 등 7개 구간을 설정하였다.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1결 정도가 중농 혹은 자영농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1~3정보를 중농층(中農層)으로 비정하였다.

32 〈표 16〉의 작성은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 전체 양안 기록 중에서 대지를 일단 제외하고 기타 삽입된 토지 등을 제외시켜 전체 전과 답에 한정하여 6,680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6〉 1900년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토지 소유자 현황

구간	구간 기준	인원		필지		실적		결부	
		인원수(명)	비중(%)	필지수(개)	비중(%)	실적수(척)	비중(%)	결부수(결)	비중(%)
10정보 이상	91,680 이상	9	0.6	920	19.1	3,178,436	27.2	174,266	32.7
5~10정보	45,840~ 91,680 미만	13	0.9	271	5.6	806,994	6.9	38,149	7.2
3~5정보	27,504~ 45,840 미만	31	2.2	407	8.5	1,059,597	9.1	45,950	8.6
2~3정보	18,336~ 27,504 미만	48	3.4	417	8.7	1,077,198	9.2	45,690	8.6
1~2정보	9,168~ 18,336 미만	177	12.4	861	17.9	2,257,573	19.3	94,985	17.8
0.5~1정보	4,584~ 9,168 미만	247	17.4	709	14.7	1,598,649	13.7	65,776	12.3
0~0.5정보	0~4,584 미만	898	63.1	1,225	25.5	1,708,398	14.6	68,076	12.8
합계		1,423	100.0	4,810	100.0	11,686,845	100.0	532,8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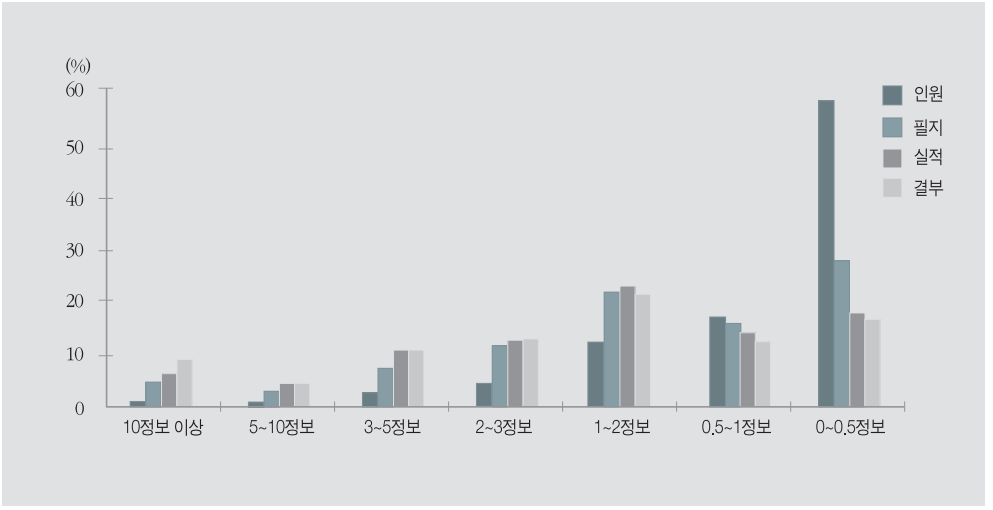


1900년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토지 소유자 현황

또한 1정보 미만의 구간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247명이었으며, 인원수 비중은 17.4%인 데 반하여 실적의 비중이 13.7%에 불과하였다. 1정보에서 3정보에 이르는 중농층(中農層)의 경우에는 225명이어서 필지 비중이 26.6%였지만, 실적 비중은 28.5%로 비교적 높았다. 5정보 이상의 지주층은 22명에 불과했지만, 실적의 비중이 34.1%에 이를 정도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표 17〉 1900년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토지 경영자 현황

구간	인원		필지		실적		결부	
	인원수(명)	비중(%)	필지수(개)	비중(%)	실적수(척)	비중(%)	결부수(결)	비중(%)
10정보 이상	1	0.1	181	3.8	832,997	7.1	50,568	9.5
5~10정보	8	0.5	161	3.3	474,405	4.1	21,478	4.0
3~5정보	38	2.2	425	8.8	1,303,052	11.1	59,140	11.1
2~3정보	80	4.7	634	13.2	1,802,867	15.4	82,989	15.6
1~2정보	247	14.5	1,176	24.4	3,141,017	26.9	139,623	26.2
0.5~1정보	329	19.3	889	18.5	2,121,755	18.2	93,550	17.6
0~0.5정보	1,003	58.8	1,344	27.9	2,010,752	17.2	85,544	16.1
합계	1,706	100.0	4,810	100.0	11,686,845	100.0	532,892	100.0



1900년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토지 경영자 현황

그렇다면 당시 같은 지역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의 존재 형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당시 농민층 분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경작 농민의 수는 1,706명이었다. 토지 소유자에 비해 약 300명 정도 많았다. 우선 0.5정보 이하를 경작하는 농민은 1,003명으로 전체 농민의 58.8%를 차지한 반면, 필지수의 비중에서도 27.9%, 실적에서도 17.2%로 적은 토지를 경작할 뿐이었다. 1~2정보를 경작하는 농민은 247명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적 비중에서는 2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상당한 토지를 경작하는 자영농민층도 전체 농지의 1/4 가량을 경작하고 있을 정도로 건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5정보 이상 많은 토지

〈표 18〉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대규모 경작농민 현황

순위	성명	경작 필지수(개)	경작실적(척)	경작결부(결)	소유 필지수(개)	소유실적(척)	소유결부(결)	비고
1	박문회(朴文會)	181	832,997	50,568	0			수성둔(水城屯) 경작
2	이화선(李化先)	32	90,543	4,108	20	40,807	1,309	누동궁(樓洞宮) 경작
3	김택수 (金澤守, 金澤壽, 金宅水)	23	61,339	2,341	59	155,913	6,876	
4	유남수 (劉南秀, 劉男秀, 劉南守)	24	59,364	2,860	8	13,956	481	
5	김윤서(金允西)	23	57,028	2,693	120	389,929	18,166	
6	이철쇠(李喆釗)	21	54,018	2,359	40	120,322	5,371	
7	김점득(金占得)	7	52,308	2,277	2	4,292	205	제상둔(堤上屯) 경작
8	이호년(李浩年)	17	51,189	2,515	6	15,314	531	관둔, 누동궁 경작
9	김낙현 (金洛賢, 金洛玄)	14	48,616	2,325	9	17,061	934	제상둔 경작

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관둔과 궁방에는 수많은 소작인이 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마름 등도 있었다. 수성둔의 경우에는 전체 필지의 경작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지만, 박문회의 경우에는 그의 이름으로 181필지, 83만여 척, 90.9정보에 이르는 농지를 짓고 있는 작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성둔의 장토를 관리하는 마름으로 생각된다.

이화선도 누동궁의 토지와 또 다른 지주인 김윤서(金允西)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김점득, 이호년, 김낙현 등은 대개 비슷하게 관둔전을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마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택수는 자기 소유 토지를 경작할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를 대여한 자작지주로서 나타난다. 또 이철쇠의 경우에도 자기 토지를 경작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토지를 다른 농민에게 대여하는 지주로서 나타난다. 그중에서 특이한 존재는 유남수인데, 그의 이름은 대개 3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서둔 동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토지 소유보다 경작하는 토지가 많은 부농이라고 할 수 있다.[33] 이들 중 다수가 대지주 아래 궁방전, 역둔토를 관리하는 중답주 혹은 마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토지 소유와 경영과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33 유남수는 수원군 북부면 서둔 동촌 마을에서 초가 10칸을 소유한 농민으로 나타난다(『수원군 북부면 양안(하)』, 85쪽).

〈표 19〉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소유와 경영 분화

(단위 : 명)

소유 \ 경영	0정보	0~0.5 정보	0.5~1 정보	1~2 정보	2~3 정보	3~5 정보	5~10 정보	10정보 이상	합계
0정보	0	326	100	54	9	2		1	492
0~0.5정보	125	621	87	48	11	5	1		898
0.5~1정보	42	29	115	44	11	6			247
1~2정보	28	19	15	86	19	7	3		177
2~3정보	5	2	3	9	24	5			48
3~5정보	1	4	6	5	4	10	1		31
5~10정보	5		3	1	1	3			13
10정보 이상	3	2			1			3	9
합계	209	1,003	329	247	80	38	5	4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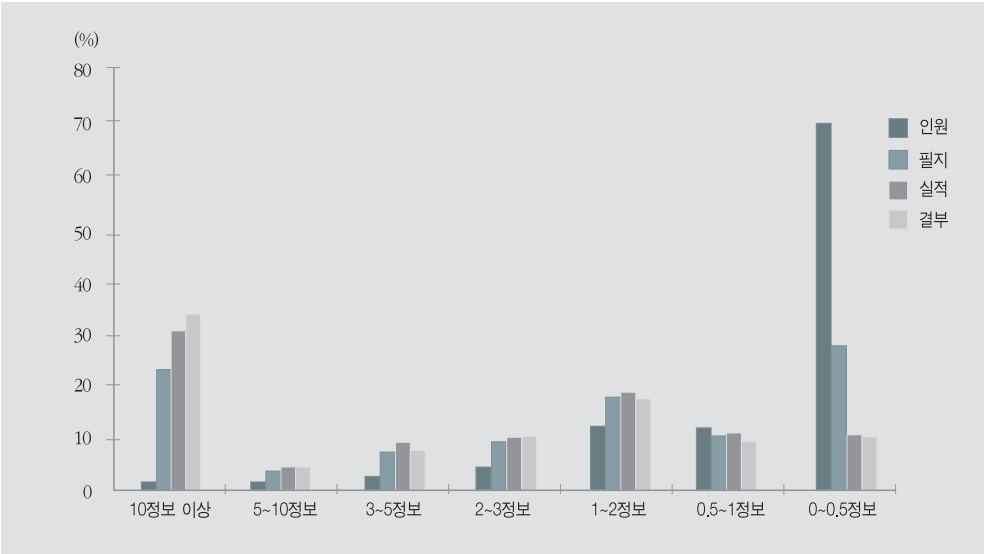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1,915명이었다. 이 중에서 횡축으로 0정보는 소유를 전혀 하지 않는 농민으로 각기 구간별로 다양하게 토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492명이나 되었다. 아랫단에서 나타나듯이 10정보 이상 소유한 이들 중에서 아무런 토지도 경작하지 않은 3명과, 0.5정보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 2명, 2~3정보를 경작하는 사람 1명, 10정보 이상 경작하는 3명 등 모두 9명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종축으로 0정보는 아무런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유지가 나타나는 사람들로 모두 209명이 있는데, 이들은 궁방전, 관둔전 등 대지주이거나 수원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 수원에 거주하면서도 자기 토지를 모두 대여해 주는 순전한 지주들이다.

또한 〈표 19〉에서 '가' (분홍색 색칠) 부분은 소유와 경영 토지가 1정보 이하의 영세 소농이며, 이 중에서도 0.5정보 이하의 경우에는 영세빈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1,072명으로 전체 농민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나' (연두색 색칠) 부분 중에서 1~3정보 중농층은 138명으로 비중은 7.2%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3정보 이상 토지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자도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나 경영 토지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는 1903년 지계아문 양안의 작성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 지계아문의 양안에 따르면, 모두 1,928명의 소유주가 등장하며, 이들이 6,506필지에 대하여 다양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우선 0.5정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인원은 전체 1,365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영세농민은 불과 1,816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실적으로는 12.4%, 결부수로는 12.1%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어 0.5정보 이상 1정보까

〈표 20〉 1903년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토지 소유자 현황

구간	인원		필지		실적		결부	
	인원수(명)	비중(%)	필지수(개)	비중(%)	실적수(척)	비중(%)	결부수(결)	비중(%)
10정보 이상	17	0.9	1,577	24.2	5,017,181	35.3	263,761	38.9
5~10정보	16	0.8	379	5.8	897,059	6.3	42,891	6.3
3~5정보	37	1.9	512	7.9	1,244,926	8.8	56,297	8.3
2~3정보	60	3.1	522	8.0	1,349,354	9.5	63,103	9.3
1~2정보	187	9.7	993	15.3	2,358,797	16.6	101,885	15.0
0.5~1정보	246	12.8	707	10.9	1,591,556	11.2	68,507	10.1
0~0.5정보	1,365	70.8	1,816	27.9	1,768,625	12.4	82,335	12.1
합계	1,928	100.0	6,506	100.0	14,227,498	100.0	678,779	100.0



1903년 수원군 북부면 · 남부면 토지 소유자 현황

지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246명으로 인원으로는 12.8%를 차지하였으나, 필지와 실적, 결부의 비중은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1정보 이상 2정보 미만, 2~3정보, 3~5정보 등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토지의 비중이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5~10정보의 경우에는 16명의 소수 인원이 전체 실적의 6.3%를 차지했으며, 결부의 비중도 6.3%로 같았다. 더욱이 1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17명으로 전체 인원의 0.9%에 불과했으나, 필지는 1,577필지, 실적수로는 35.3%, 결부로도 38.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의 토지 소유 상황은 0.5정보 이하 영세 빈농이 농민의 70%를 차지하고 농지의 비중은 12% 정도로 극히 영세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10정보 이상의 대지주들은 소수의 인원이 전체 토지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

〈표 21〉 수원군 북부면과 남부면 5정보 이상 대토지 소유자 현황

순위	소유주명	소유주(한자)	필지수(개)	실적수(척)	결부수(결)	비고
1	수성둔	修城屯	410	1,570,211	93,910	관둔
2	누동궁	樓洞宮	124	527,722	36,557	궁장
3	무주	無主	24	475,186	13,327	무주
4	선희궁	宣禧宮	115	430,040	21,594	궁장
5	김윤서	金允西	118	369,650	18,110	
6	수성고	修城庫	32	225,315	10,417	관둔
7	진무주	陳無主	27	183,383	4,586	무주
8	김택수	金宅水	65	157,656	7,754	
9	관둔	官屯	341	145,608	11,201	관둔
10	제상둔	堤上屯	32	139,781	6,986	관둔
11	나선필	羅善必	48	124,013	5,856	
12	용주사	龍珠寺	31	119,267	6,273	
13	이철쇠	李喆釗	36	115,473	4,865	
14	영화마위	迎華馬位	75	113,218	6,546	관둔
15	박복생	朴卜生	36	110,551	5,633	
16	신태희	申泰希	35	106,602	5,518	
17	최여도	崔汝道	28	103,505	4,628	
18	김인보	金仁甫	27	75,180	4,031	
19	조무술	趙戊戌	21	66,803	3,218	
20	지천경	池千京	13	59,311	2,709	
21	교위	校位	11	59,261	3,136	관둔
22	박문회	朴文會	29	58,398	2,457	
23	박영선	朴永先	25	57,575	2,860	
24	관천고	管千庫	22	57,079	2,639	
25	심팔쇠	沈八釗	39	56,423	2,808	
26	교궁	校宮	59	55,942	3,131	관둔
27	곽주경	郭周京	17	55,180	2,816	
28	영화역	迎華驛	15	52,322	2,649	관둔
29	이치덕	李致德	16	51,615	2,031	
30	김선경	金善京	17	50,112	2,311	
31	손승조	孫承朝	29	49,446	1,712	
32	신수보	申守甫	18	46,350	2,421	
33	이중선	李中先	21	46,062	1,962	
합계			1,956	5,914,240	306,652	

었다. 그런데 앞서 1900년 양지아문의 양안 통계와 비교해 보면, 토지 소유자가 1,423명에서 1,928명으로 35% 정도 인원수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1정보 이하의 영세 소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원수 80.5%에서 83.6%로 약간 늘어난 반면, 토지의 규모는 40.2%에서 38.8%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정보 이상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22명에서 33명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적의 비중도 34.1%에서 41.6%로 약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3년 만에 토지 소유와 경영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표 21〉은 1903년 지계아문의 양안에 나타난 5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 현황을 제시한 표이다. 〈표 21〉에서 관둔전과 궁방전 10개를 제외하면 반 수 정도가 민간의 대토지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34] 이 중에서 김윤서의 경우 전체 118개 필지에 36만여 척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약 40정보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결부로도 18결에 이르는 최대의 지주였다. 이어 김택수, 나선필, 이철쇠, 박복생, 신태희, 심팔쇠 등은 30필지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는 호명(戶名)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수원군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지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명으로 등재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기는 어렵다.[35]

1900년 당시 수원군 각 면의 양안상에 재지지주와 부재지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수원군 남쪽에 위치한 안녕면의 양안 내용과 비교해 보자.

우선 1필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472명이었다. 1필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37명으로서 전체 소유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곳은 건릉(434필지, 101정보)과 융릉(393필지, 102정보)이었다. 이들 토지는 전체 토지의 38%나 되었다.

이 외에 소유필지가 10필지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시하면 〈표 22〉와 같다.[36] 〈표 22〉와 같이 10개 필지 이상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은 모두 31명이었다. 여기서 안녕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5명이었다. 이들은 대개 곡반정동이나 황계동, 간촌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칸의 가옥으로부터 16칸에 이르기까지 넓은 규모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건릉과 융릉, 역토 등 국유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이 지역에 토지와 가옥

34 관둔전의 종류는 수성둔, 수성고, 누동궁, 선희궁, 관둔, 제산둔, 영화마위, 교위, 교궁, 영화역 등이었다. 명목이 비슷한 수성둔과 영화역 등은 원래 기록된 대로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다만 지계아문에서는 무주, 진무주 등 51필지의 진전이 나오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이 표에는 적절하지 않다.

35 양안에 기록된 인명(人名)은 호족상의 성명이나 족보상의 것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나타난 이름들은 대개 호명(戶名) 혹은 택호명(宅戶名), 자명(字名)이거나 노비명(奴婢名)일 가능성도 있다(이영훈,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115~134쪽).

36 이하 안녕면의 양안 분석은 왕현종, 「만년제 축조와 경제적 변화」, 『화산동지』, 화성시, 2006, 106~11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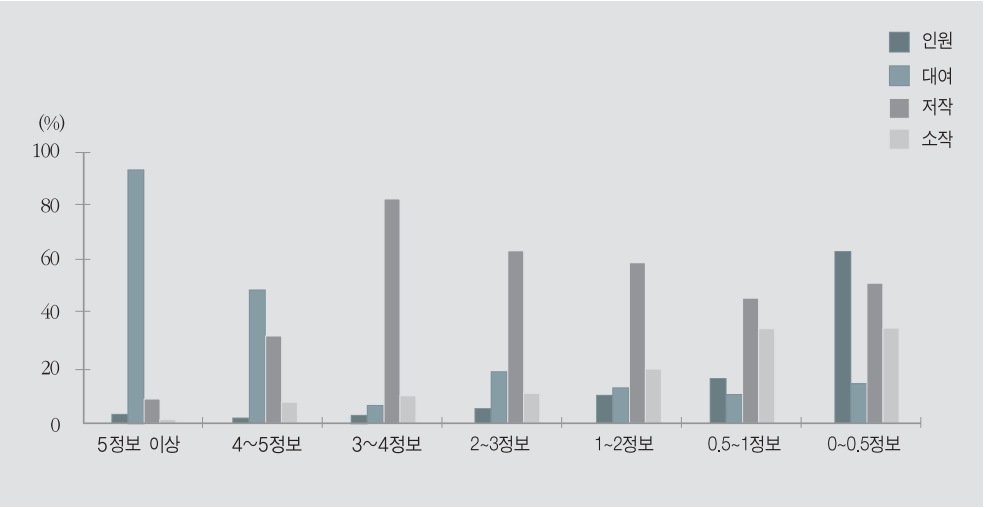
〈표 22〉 수원군 안녕면 화산동 지역 10필지 이상 토지 소유자 현황

번호	답주	답주(한자)	필지수	척수	결부수	재지지주	부재지주
1	건릉	健陵	434	930,491	48,156		황실
2	융릉	隆陵	393	935,526	40,095		황실
3	박흥태	朴興台	47	118,501	4,486	곡반정(谷潘亭) 효(效) 24, 29번지, 15칸 가옥	
4	나순필	羅順必	45	37,013	1,764		대지는 많으나 거주지 없음.
5	윤용섭	尹容燮	38	80,571	3,722		대지는 많으나 거주지 없음.
6	김순서	金順西	25	54,158	1,729	야반정동(野磻亭洞) 남(男) 24, 10칸	
7	박복례	朴卜禮	25	55,475	2,156	곡반정 재(才) 64, 10칸	
8	신인수	申仁守	23	50,807	1,518	황계동(黃鷄洞) 득(得) 43, 6칸	
9	김경락	金景洛	19	54,907	1,543		거주지 없음.
10	이경실	李京悉	17	35,063	1,394		대지는 많으나 거주지 없음.
11	김중오	金仲五	15	31,878	1,208		거주지 없음
12	박복남	朴卜男	15	24,218	920	곡반정 재(才) 38, 5칸	.
13	박순남	朴順男(南)	15	47,647	1,452	곡반정 남(男) 110, 8칸	
14	고윤오	高允五	14	22,710	1,086	황계동 득(得) 34, 4칸	
15	김덕재	金德在	14	20,946	786		거주지 없음.
16	김원삼	金元三	13	41,978	1,548		거주지 없음.
17	박례금	朴禮今	12	22,508	1,134	곡반정 재(才) 43, 3칸	
18	박순매	朴順妹	12	25,222	985	곡반정 재(才) 35, 36, 16칸	
19	박언례	朴彦禮	12	24,317	799		거주지 없음.
20	고성삼	高性三	11	15,947	512	간촌(間村) 망(罔) 59, 6칸	
21	김덕문	金德文	11	18,767	747		거주지 없음.
22	박순점	朴順占	11	26,268	955	곡반정 재(才) 42, 6칸	
23	박씨돌	朴氏乭	11	15,832	446	곡반정 재(才) 47, 5칸	
24	정고양	鄭高陽	11	36,982	1,479		거주지 없음.
25	정명랑	鄭明郎	11	17,484	735	곡반정일동 모(慕) 40, 41, 7칸	
26	박복이	朴卜伊	10	30,315	1,205		거주지 없음.
27	박순복	朴順卜	10	19,001	681	곡반정 재(才) 42, 5칸	
28	박필례	朴必禮	10	8,389	340	곡반정 재(才) 25, 5칸	
29	수원역	水原驛	10	16,147	551		역토
30	전자운	全自云	10	17,268	507		거주지 없음.
31	최범일	崔凡一	10	26,822	1,222		대지는 있으나 거주지 없음.

을 다수 가지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웃한 마을에 거주하거나 수원 이외의 먼 곳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지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결국 1900년 현재 안녕면에 거주하고 있

〈표 23〉 수원군 안녕면 지주들의 토지 소유 · 경영 현황

구분	인원		대여		자작		소작	
	인원수(명)	비중(%)	대여지	비중(%)	자작지	비중(%)	소작지	비중(%)
5정보 이상	9	1.9	2,150,362	92.0	177,721	7.6	8,628	0.4
4~5정보	3	0.6	72,362	59.3	43,611	35.7	6,136	5.0
3~4정보	4	0.8	7,624	5.5	119,775	86.4	11,218	8.1
2~3정보	24	5.1	135,842	22.8	404,162	67.9	54,891	9.2
1~2정보	55	11.7	159,232	17.6	556,750	61.7	186,748	20.7
0.5~1정보	82	17.4	95,392	11.2	448,912	52.9	304,859	35.9
0~0.5정보	295	62.5	110,463	11.6	498,590	52.2	346,619	36.3
합계	472	100.0	2,731,277	46.3	2,249,521	38.1	919,099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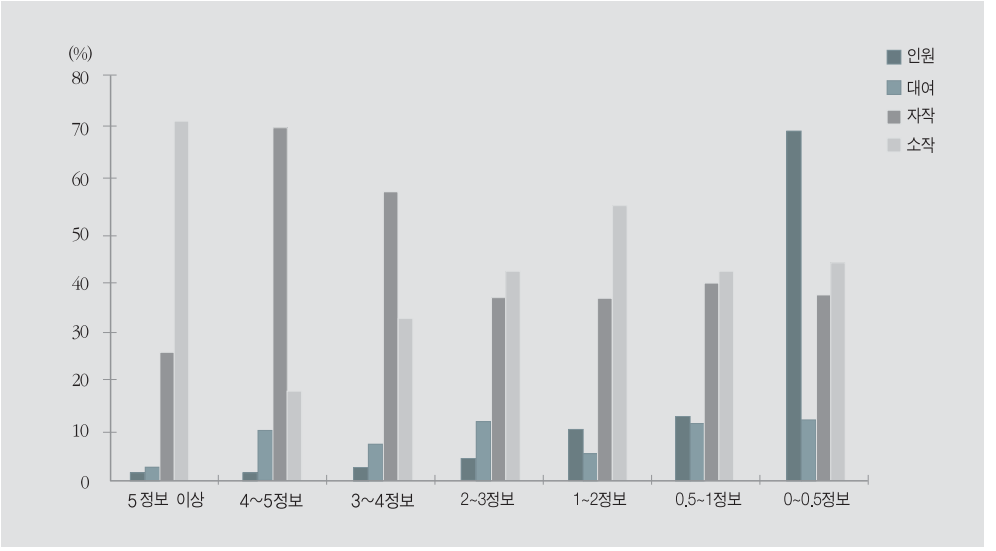
수원군 안녕면 지주들의 토지 소유 · 경영 현황

는 10개 필지 이상이며, 국가에 세금을 내는 단위인 결부(結負)로 적어도 1결 이상의 토지 소유자 중에는 부재지주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수원군 안녕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경영 실태를 살펴보자. 〈표 23〉에서는 0.5정보 미만의 토지 소유자는 295명으로 절대 다수인 6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경작하는 자작지의 비율은 52.2%에 불과했고, 36.3%의 소작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일부 대여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세 빈농으로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충분치 않은 소작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대여지와 자작지, 소작지 사이의 비중 변화는 토지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작지의 비중이 높으며, 소작지의 비중은 낮아짐

〈표 24〉 수원군 안녕면 소재 농민들의 토지 소유 · 경영 현황

구분	인원		대여		자작		소작	
	인원수(명)	비중(%)	대여지	비중(%)	자작지	비중(%)	소작지	비중(%)
5정보 이상	4	0.4	5,056	2.1	63,774	26.0	176,678	72.0
4~5정보	2	0.2	10,742	11.4	66,299	70.4	17,145	18.2
3~4정보	13	1.4	43,742	9.7	261,257	58.0	145,333	32.3
2~3정보	47	5.2	174,708	14.3	482,679	39.4	566,617	46.3
1~2정보	103	11.4	84,478	5.9	539,069	37.4	818,131	56.7
0.5~1정보	137	15.1	127,242	12.3	433,180	41.9	473,195	45.8
0~0.5정보	601	66.3	144,785	13.7	403,263	38.1	511,577	48.3
합계	907	100.0	590,753	10.6	2,249,521	40.5	2,708,676	48.8



수원군 안녕면 소재 농민들의 토지 소유 · 경영 현황

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4정보 이상의 지주인 경우에는 대여지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대여하거나 자작하고 있는 9명의 지주들은 92%에 이르는 대부분의 토지를 소작 농민에게 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 중에서도 지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영세 빈농들 사이에 농업경영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7] 이들 영세 자영농은 자기

37 당시 수원군 안녕면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 중에서는 3필지 이내 소규모의 영세 토지 소유자가 무려 358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전체 농민수와 비교하자면, 75.8%나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0.5정보 이하 극히 영세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295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가진 토지의 비중은 12%로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토지로서는 농업을 짓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 농민을 겸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과 같이 이 시기 소작 농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매우 열악하였다. 1900년 당시 안녕면 주민 중에는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하거나 남의 땅을 빌려 짓는 농민들은 모두 907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0.5정보 이하 영세빈농은 601명으로 전체 농민의 66%나 되었다.[38] 반면에 0.5정보 이상 1정보 이하의 농민들은 137명이었으며, 1~2정보와 2~3정보는 각각 103명, 47명이었다. 그 이상의 토지를 경영하는 농민들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1정보 이하의 농민들은 자작지에 비해 소작지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고, 1~3정보의 농민들도 자작지보다 소작지가 더 많음을 보여 준다. 또한 4정보 이상의 경영지를 갖고 있는 경작 농민도 일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군 안녕면 토지와 경영 상황 지표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 필지도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순전한 지주들이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64명인데,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233정보나 되었다. 이들의 소유토지 비중은 전체 면내에서 43%나 되었다. 그만큼 많은 농민들은 이들 순지주의 토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수원군 안녕면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건릉과 융릉 소유의 토지에 가옥을 짓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수가 각각 171명과 99명이었다. 이 외에도 안녕면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대지 위에 가옥을 빌려 사는 수가 372명이나 되었다.[39]

대한제국기 수원과 같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던 지역에서는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대토지 소유자이거나 국가 혹은 황실의 소유지로서 대지주가 있어 많은 토지를 집적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극히 영세하고 빈곤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지주들의 소작지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었고, 거기에서조차 탈락한 농민들은 농촌에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다. 이렇게 농민층의 분화가 클수록 농촌사회의 대립과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비집고 일본 토지자본이 일본 제국주의의 비호하에 자유롭게 농촌에 들어왔다. 이제 1900년대 중반 수원 주민과 농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다.

38 이들 중에는 자기 땅 한 필지도 없이 소작으로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99명에 이르렀다.
39 화성시, 『화산동지』, 2006, 113~115쪽, 참조.



조석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대한제국의 역둔토 관리
2. 수원 지역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한국 지적제도는 21세기에 들어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하던 동리 단위의 지번체계가 시군구 단위의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그동안 사용하던 종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자는 땅 중심의 지번체계를 건물 중심의 도로명체계로 바꾼다는 표면상의 이유 외에도, '도 – 시군 – 읍면 – 동리' 라는 다단계 행정체계를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로 단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후자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진행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종이지적도를 현실과 부합시킨다는 표면상의 목표를 넘어서, 지적제도가 디지털화됨으로써 향후 큰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리정보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체계나 종이지적도는 사실 일제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가 설정한 지적체제의 범위 내에서 한 세기를 지내 온 셈이었다. '사업' 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실시한 주요 경제정책으로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한 후 필지별 소유자와 지세액을 확정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전국 경지의 필지별 토지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국가기록원 소장)

으며, 필지의 면적 · 지목 · 지가 등이 결정되었다. '사업'의 의도는 식민지의 가장 주요한 물적 자산인 토지를 일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일제가 식민지의 장기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동안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사업'의 수탈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많았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사업'이 만들어 놓은 토지제도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업'이 만든 토지 소유제도가 근대적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의 형성은 '사업'이 아니라 광무양전사업으로 이미 개시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여기서 이 논쟁을 번잡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1] '사업'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 온 사적 소유권은 '사업'을 통하여 비로소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

인(法認)될 수 있었다.[2] 산림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는 작업을 1912년부터 1918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통일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적 소유권의 발전 정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토지 소유권 조사가 기존의 토지 소유관계를 근대적인 제도 속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었다.

물론 '사업'이 기존의 모든 소유관계를 그대로 다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 직전까지도 국유·민유의 구분이 애매한 채로 남아 있었던 일부 토지에 대해서 국유·민유 여부를 명확히 하였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한 것은 아니었고 국유지 분쟁이라는 다툼으로 비화하였다. 이 토지들에서는 조선 후기에 절수(折受) 등의 명목으로 끊임없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토지 지배관념과 아래로부터 성장해 오던 사적 토지 소유제도가 충돌하고 있었는데, 사안별로 처리방식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었다.[3] 그 외에도 토지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관행화된 공동체적인 토지 소유관계가 해체된 점, 결부제에 입각한 국가의 토지 지배방식이 해체되고, 조세법정주의에 기초한 균등과세방식으로 전환된 점 등이 '사업'에 의한 두드러진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4]

이 장에서는 수원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수원에서 진행된 '사업'의 결과는 『토지조사부』에 정리되어 있어 이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의 편의상 대상 지역은 '사업' 당시 수원군이었던 지역으로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수원군(수원면, 일형면, 태장면, 안룡면, 매송면, 봉담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성호면, 동탄면)과 남양군(음덕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을 통합하고 광주군(의왕면)과 안산군(반월면)의 일부 지역을 합하여 총 21면 279리로 구성되었다.[5]

이하 서술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유지 면적이 넓은 편임에

1 수탈론의 입장에 선 대표적 저작은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를 들 수 있다. '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제도 형성론은 김홍식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과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등이 있다. 광무양전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론은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7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2 광무양전사업이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을 의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며, 근대적 토지제도의 주요한 한 축인 등기제도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광무양전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업'에서 국유지 분쟁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석곤, 「토지조사사업 국유지 분쟁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 『대동문화연구』 50, 2005를 참조하라. 그는 일제가 국·민유 구분의 대강을 정해 놓고 '사업'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건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4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5 이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명은 1914년 당시의 지명이다.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현재의 지명을 명시한다.

도 불구하고 분쟁 건수가 많은 지역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에서의 진행된 '사업'을 국유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사업'의 특징은 국유·민유 구분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사업'에서 국유지로 전환되는 근거가 된 대한제국기의 역둔토 관리에 대해 수원 지역의 역둔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국에 걸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수원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수원면 지역을 대상으로는 '사업'의 귀결점이었던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토지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대한제국의 역둔토 관리

'사업'은 일본에 의해 근대적 토지제도를 이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적 토지 소유권이 확고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경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를 인정해 주면 그만이었다. '사업'에 의해 확정된 필지는 약 2,000만 필지였는데, 이 중 분쟁지로 별도의 심사를 거친 토지는 10만 필지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중 3분의 2는 국유지 관련 분쟁이었다.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지가 전체 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쟁지 현황을 보면 민유지에서의 소유권 확정이 큰 문제가 없었던 반면, 국유지의 소유권 확정은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업으로 확정된 경지면적은 약 490만 정보였으며, 그중 국유지는 13만 정보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6]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정면적의 2.6%였으며, 동일 비율을 필지수에 적용하여 환산하면 약 50만 필지의 국유지가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7] 국유지 관련 분쟁 필지수가 6만 필지가 넘었음을 상기하면 민유지에서 분쟁이 거의 없던 것과 비교할 때 국유지에서 분쟁 발생비율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왜 '사업'에서 대규모 국유지 분쟁이 일어났을까? 막무가내로 민간인의 토지를 약탈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 곧바로 소작인들에게 국유경지를 불하해 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국유지 분쟁이 일어난 실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해 창출된 국유지가 어떤 역사적 성격을 가진 토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

6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 13, 한길사, 1994.
7 국유지의 필지당 평균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참고로 수원군의 경우 필지당 평균 면적은 민유지가 689평인 데 반해 국유지는 2,038평이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국유지 필지수는 20만 필 이하로 하락한다.

정에서 우리는 대한제국기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역둔토 수입을 증대시키려 했던 역둔토정책이 국유지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절에서는 대한제국기 수원군에서 관할했던 역둔토[8]를 분석하면서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에 이르면 사적 토지 소유에 대한 관념은 특히 전답을 중심으로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 소유관계의 변화는 국가의 공식적인 토지장부인 『양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19세기 수원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양전인 이루어진 때는 19세기가 다 저물어 가는 광무연간에 이르러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토지에 대한 과세나 소유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전통적 유교사회의 관념상 모든 토지는 왕으로 상징되는 '공(公)' 에 속한 것이었지만 개인들은 사실상 토지를 '사(私)' 적으로 점유하고 그 증거를 '문기(文記)' 라는 형태로 남겼으며, 이러한 민간의 관행을 국가도 인정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지세의 부과는 총액제의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별로 과세지 면적을 할당하고 지방에 파견된 수령은 그 면적에 해당하는 과세액을 거두어 중앙에 상납하는 제도였다. 결국 필지별 과세는 지방에 광범하게 위임되었으며, 이것이 중앙정부가 개별 필지의 소유자나 납세액 파악에 소홀했던 이유의 하나였다.

지방에 할당된 과세지 면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려는 개인들의 요구와 자신의 수세지를 확대하려는 궁방이나 관청의 요구 때문에 할당된 과세지 면적, 즉 원장부 전답의 면적은 일정했지만, 국가가 수세하는 면적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매년 홍수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경작이 불가능해진 토지에 대한 조세 감면, 즉 재감(災減)을 요청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가급적 수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용할 경우에도 일시적인 것으로 처리했고, 다음 해에는 다시 수세지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표 1〉에서 갑오개혁 이전 시행되었던 총액제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을 볼 수 있다. 매년 과세지를 확정하면서 그 내용을 '연분성책' 이라는 책자로 정리하였는데, 〈표 1〉은 그 중 1878년, 1886년 그리고 1894년의 연분성책을 정리한 것이다. 1894년은 잘 알려져 있듯이 갑오개혁이 시행된 해로 원칙적으로 모든 무세지가 과세지로 전환되는,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는 중앙정부인 탁지부아문이 관장하는 방식이 시행된 첫해였기 때문에

8 수원부에서 관할했던 역둔토에는 수원유수부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 지역에 장토가 있기도 하였다. 오타둔과 삼도둔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다른 군현지역에 섬처럼 존재하는 관할구역이 있기도 했는데 이를 비월지(飛越地)라고 불렀다. 이러한 비월지는 '사업'에서 모두 관할권이 정리된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관할권을 중심으로 이들 장토도 포함하여 서술한다.

〈표 1〉 수원부 연도별 지목별 과세지와 비과세지 현황[9]

(단위 : 결)

구분		전			답			계		
연도		1878	1886	1894	1878	1886	1894	1878	1886	1894
원장부		6,426.503	6,426.503	6,426.503	5,395.110	5,395.110	5,395.110	11,821.613	11,821.613	11,821.613
	무세전	948.663	962.135	962.135	981.763	991.936	999.936	1930.426	1,954.071	1,962.071
	진 전	3,186.207	3,172.645	3165.32	1,022.248	1,215.876	1,116.402	4,208.455	4,388.521	4,281.722
기정 과세전		2,291.633	2,291.723	2,299.048	3,391.099	3,187.298	3,278.772	5,682.732	5,479.021	5,577.820
	출세전	15.263	9.381	7.381	787.212	777.703	774.703	802.475	787.084	782.084
	환기전	84.455	84.455	84.455	266.144	483.385	431.36	350.599	567.840	515.815
	진 전	84.455	84.455	84.455	911.567	862.78	1,191.858	996.022	947.235	1,276.313
당년 과세전		2,306.896	2,301.104	2,306.429	3,532.888	3,585.606	3,292.977	5,839.784	5,886.710	5,599.406

선정하였고, 나머지 두 해는 임의로 선정하였다.[10]

원장부 전답의 면적은 해당 기간에 변하지 않았지만 무세지와 진전의 면적은 변화를 겪었다. 무세지는 국가에 낼 세금을 궁방이나 중앙 및 지방의 각 아문에서 직접 수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이며, 진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작이 불가능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한다. 무세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전의 규모는 전에서는 감소 추세가, 답에서는 큰 변화 속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성천 · 포락 등으로 경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규모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무세전은 전체 원장부 전답의 16.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필지 중 1필지는 무세지이고 3필지 중 1필지는 진전이라는 상황을 보여 준다. 당시 농업 생산성의 발전이나 인구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광범한 진전의 존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토지 파악방식이 얼마나 느슨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무세전과 진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비과세지로 확인된 토지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과세지이다. 실제 과세지의 면적은 원장부 전답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면세지 외에도 매년 여러 명목의 재감 요청이 있었는데, 국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 해에는 그 과세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하였다. 당년의 출세

9 『수원부무인조연분성책』(1878, 규 19525); 『수원부병술조연분성책』(1886, 규 16599); 『수원부갑오조연분성책』(1894, 규 19604).

10 1894년 이후는 제도적으로 총액제가 폐지된 셈이었지만, 개별 필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과세하는 시스템은 통감부 시절인 19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시도되었으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비로소 제도화될 수 있었다. 현재 수원부 연분성책은 총 6개년도분이 남아 있는데, 1878년과 1886년은 1894년으로부터 역산하여 8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전과 환기전은 이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해당 토지들이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시 진전으로 분류하여 과세지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의 '당년'에 있는 항목들은 이러한 조정의 결과이며, 당년 과세전이 실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총결수였다. 환기전의 대부분은 다음 해에도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재감된 토지는 영구 면세될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총액제적 수세제도에서 중앙정부는 한 군현의 과세총수만 관리하였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필지들로 구성되었는지는 알 바 아니었다. 홍수나 한발 등으로 경작불능상태가 된 토지들은 일시적으로 면세되었는데, 한 번 진전으로 파악된 토지들은 그 토지의 실상과 무관하게 영구 면세될 가능성이 높았다. 장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마련이었다. 대한제국기 정부가 양전을 서두른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양전사업과 별도로 고종은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경제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내장원은 1895년 주로 왕실의 보물이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1899년 전국에 산재한 역둔토에 대한 수조권을 흡수하고 각지에 봉세관을 파견함으로써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내장원의 책임자였던 이용익은 인삼전매권, 어염선세, 정육점세 등 돈이 될 만한 것이면 가리지 않고 내장원의 관할에 두면서 내장원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른바 '광무사검'으로 불리는 역둔토조사 과정에서도 내장원이 관할하는 토지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속공(屬公)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는데 이 광무사검의 결과 작성된 장부들이 '사업' 당시 국유지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의 하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제 내장원에서 관리했던 역둔토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표 2〉는 한말 수원부 소재 역둔토의 원결수와 원총액을 역둔토의 원 소속기관별로 정리한 것이다. 역둔토 중에서 둔토는 1899년에 내장원으로 이속되었지만 역토는 1900년에 이속되었으므로, 역토의 경우는 1899년의 과세액이 없다. 1901년에는 수성고둔 · 양향둔 · 유천둔 · 오타둔 · 포내둔 · 훈련둔[11] · 용복둔 · 관천고둔 · 남곡둔 등의 둔토가 선희궁에서 이속되어 원총에 포함되었다.[12] 1901년 원총액이 19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03년 원총액이 급증한 것은 삼도둔의 둔토가 사검되어 도조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총액의 급증은 해당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11 청호면(성호면 소재)에 있는 양향둔을 훈련둔으로 별칭한 것이다.
12 『선희궁각읍상납정간책』(규 19583).

〈표 2〉 한말 수원부 소재 역둔토의 원결수 및 원총액[13]

(단위 : 결, 석-두-승-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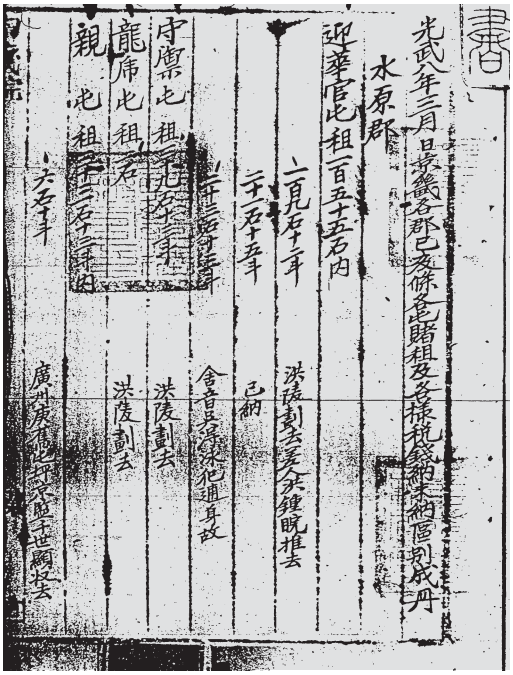
장토명	구분	원결	원총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삼봉역	도조	49.605		457-17-6	459-19	459-19	459-19	388-1-9	427-2	427-2
	도태			42-10-6	40-14-3	40-14-3	40-14-3	38-13-6	38-13-6	38-13-6
	도전			56	53	53	53	53	53	53
청호역	도조	45.562		239-2-5	237-12-5	237-12-5	237-12-5	206-19-2	212-14	212-14
	도태			62-18	62-18	62-18	62-18	58-1-6	58-16-8	58-16-8
장주역	도조	27.401		200-16-7	198-8-1	198-8-1	198-8-1	188-9-7	188-9-7	188-9-7
	도태			39-19	38-18	38-18	38-18	37	37	37
영화관둔	도조	16.099	155	155	160	160	160	155-14	151-15	153-12
총융둔	도조	13.46	100	75	80	80	80	72-7	72-7	72-7
향탄둔	도조	3.4	90	90	90	90	90	90	90	90
총훈둔	도조	1.175	7-16-7	7	11-10	11-10	11-10	11-10	11-10	11-10
용체둔	도조	0.322	2	2	3	3	3	3	3	3
사복목장	도전	96.582	6,573.8	6,573.8	6,573.8	6,573.8	6,573.8	6,573.8	6,573.8	6,573.8
우정사복둔	도조		60-6-3							
우정제언답	도조		100							
친둔	도조	3.9	33-13	27-3	37	30	30	29-15-5	29-15-5	29-15-5
지고고마둔	도조		57-16-3	48-7-7	39	39	39	32-10	30	34-10
	도태	2.67			8	8	8	8	8	8
서원토	도조	6.869	50	46석	54-10	54-10	54-10	54-10	54-10	54-10
별비둔	도조	8.702		42	45	45	45	45	45	
수어둔	도조	3.05	39-13	39-13	40	40	40	40	40	40
관둔	도조		4	4	4	4	4	4	4	4
	도태	3.706	2-6	3-1	2-6	2-6	2-6	2-6	2-6	2-6
	도전		1341.57							
광덕제언답	도조		20							
각면제언답	도조	16.487		149-5-9	101-14	102-14	102-14	101-6	84-16	101-6
목장공산	도전			1,000	300	300	300	300	300	300
수성고둔	도조	55.23			1,000	1,000	1,000	952-14-1	793-13-8	875-19-9
양향둔	도조	15.071			153	153	153	147	148-8	153
유천둔	도조	13.014			100	100	100	81-8-5	90	90
오타둔	도조	13.53			105	105	105	96-7-3	94-4-4	85-7-9
포내둔	도조	2.356			42	42	42	40-7-8	40-17-2	42
훈련둔	도미	20.196			34	34	34	32-9-9-6	32-9-9-6	32-9-9-6
용복둔	도조	10.462			90	90	90	79-2-7	90	90

장토명	구분	원결	원총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관천고둔	도조	면세			274-15	274-15	274-15	274-15	250-18-5	260-8
	도태				84	84	84	84	81-10	81-10
남곡둔	도조	4.973				47	47	47	47	47
삼도둔	도조	미승총					482-7-2-5	563-14-7	452-7-2-2	
광둔	도조									60
경리둔	도조									89-18-7-5
숙성둔	도조									40
염정세	도전		1212	1212	800	800	800			
합계	도조	433.822	1,172-12-3	1,583-6-4	3,326-8-6	3,374-8-6	3,826-15-8-5	3,705-13-4	3,452-8-3-5	3,256-10-7-5
	도태		2-6	236-16-3	236-16-3	236-16-3	236-16-3	228-1-2	226-6-4	226-6-4
	도미				34	34	34	32-9-9-6	32-9-9-6	32-9-9-6
	도전		9,127.37	8,841.8	7,726.8	7,726.8	7,726.8	6,926.8	6,926.8	6,926.8

것이어서 강하게 저항하였지만, 내장원은 적어도 1904년까지는 요지부동한 입장을 취하였다. 1906년에 광둔, 경리둔, 숙성둔이 추가된 것은 원래 평택 관할이었던 이 토지들이 수원부로 이속되었기 때문이다. 1902년 제언답이 1석 늘어난 것은 양간면의 제언답 원총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없어진 둔토도 있었다. 우정면에 소재한 사복둔과 관둔의 도전은 허록임이 밝혀져 탕감되었고, 우정면과 광덕면의 제언답은 다른 면에 소재한 제언답들과 통합 관리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이제 연도별 원총액에 대해 살펴보자. 광무사검에 대해 농민들은 크게 저항하였다. 급작스런 도조액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옛날에 작성되어 현실과 크게 괴리되었던 『양안』에 근거하여 국유지로 편입시키려는 내장원의 무리한 시도도 농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연도별 미납액이 매우 많았는데, 이러한 내장원과 농민의 갈등은 1903년 정도가 되면 일단 정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갈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내장원에서는 1904년 3월에 1899년부터 1903년에 이르는 납부 원총(원래 결정된 실납부액)과 그 시점까지의 미납액을 정리하여 『경기각군각둔도조급각양세전납미납구별성책』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04년분의 납부 여부는 1905년 9월에, 1905년분은 1906년 10월, 1906년분은 1907년 9월에 같은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표 2〉는 이 8년분의 책(규 19177)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13 『경기각군각둔도조급각양세전납미납구별성책』(규 19177); 『경기각군역둔전답일경두락결부정도실수도안』(규 19178). 미는 1석=15두, 벼와 콩은 1석=20두이다.



『경기각군각둔도조급각양세전납미납구별성책』(규 19177)

원결(元結)은 해당 역둔토에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1894년 갑오승총을 통하여 역둔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그때 부과된 해당 토지의 과세액이었다. 이 결수는 1899년 광무사검이나 역둔토 조사사업 당시의 결수는 아니며, 1906년 3월에 조사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경기각군역둔전답일경두락결부정도실수도안』(규 19178)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자료들과 비교하면 각 역둔토별로 전답의 일경 두락수와 그에 해당하는 도조액 및 공제 후 실수납량을 기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05년에 새삼스럽게 일경 두락수와 그에 해당되는 도조액 및 공제액을 조사한 것은 당시의 정치 정세와 관련이 있다. 대한제국기 고종은 황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내장원은 그러한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황권은 위축되었으며, 내장원도 경리원으로 개칭되었다.[14] 내장원과 경리원은 담당 업무가 유사했을지 모르나 그 기관의 성격은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내장원이 고종 황제의 '금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경리원은 황실재산을 정리하고 국유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관이었다. 1905년에 역둔토의 일경 두락수와 실상납액을 조사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진 것이었다.

원총액은 1903년까지는 급증하다가 1904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납부하는 물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가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벼로 납부하는 경우(주로 경지, 특히 논)는 1903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904년부터는 반대로 급격히 감

14 1905년 3월 내장원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는 경리원과 내장사로 분할되었다. 내장사는 1899년 이전과 같은 내장원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경리원은 역둔토의 수조업무와 광업 및 삼정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순종의 즉위 이후 1907년 12월 경리원은 폐지되었고, 그 업무는 제실재산정리국에 이관되었다. 이후 황실이 관리하던 토지 등은 재실재산정리국에 의해 일종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콩 · 쌀 · 화폐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납부액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903년까지의 급증과 1904년 이후의 급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04년은 1903년에 비해 100여 석 정도 소폭 감소하였는데 철로로 범입되어 들어간 필지의 원총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15]

이를 고려한다면 수원군의 경우 1903년까지는 역둔토 수조액을 최대한 늘려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1904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05년부터는 원총액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경리원의 위상 변화가 놓여 있다. 삼봉역 · 청호역 · 유천둔 등의 원총액은 1905년에 재조사를 통해 감소하였는데, 1900년대 초반 내장원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수성고둔에서 농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도조액 70석을 감면한 것도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역둔토의 수조기관이 각 군영이나 선희궁 등에서 내장원으로 통일되면서 징세가 강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토가 무리하게 속공(屬公)되거나 이전 수준에 비해 과도한 도조가 청구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때문에 내장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토지 경작자들의 호소가 끊임없었는데, 이 청원 내용은 경기각군보고 또는 경기각군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는 『각사등록』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자료로 하여 대한제국기 역둔토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마름과 경작자의 부당한 교체와 관련된 청원이 있다. 1899년 수조가 순조롭지 않기도 했고, 1900년 역토가 내장원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역토에서 마름의 교체작업이 있었다. 삼봉역 마름 임병팔(林丙八)이나 관둔(官屯) 마름 오득영(吳得泳), 광덕면 제언답 마름 정두영(鄭斗永)도 교체되었다.[16] 다만 1901년 이후에는 마름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교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작권의 무단 이작, 특히 봄 이후의 소작인 변경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청원은 소작인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시정되었다. 경작권은 주로 양반,[17] 능참봉[18] 등 유력인사의 권위를 업고 시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름의 임농탈경[19] 시도도 적지 않았다. 임농탈경을 이유로 내장원에 청원한 경우는 필자가 아는 한 모두 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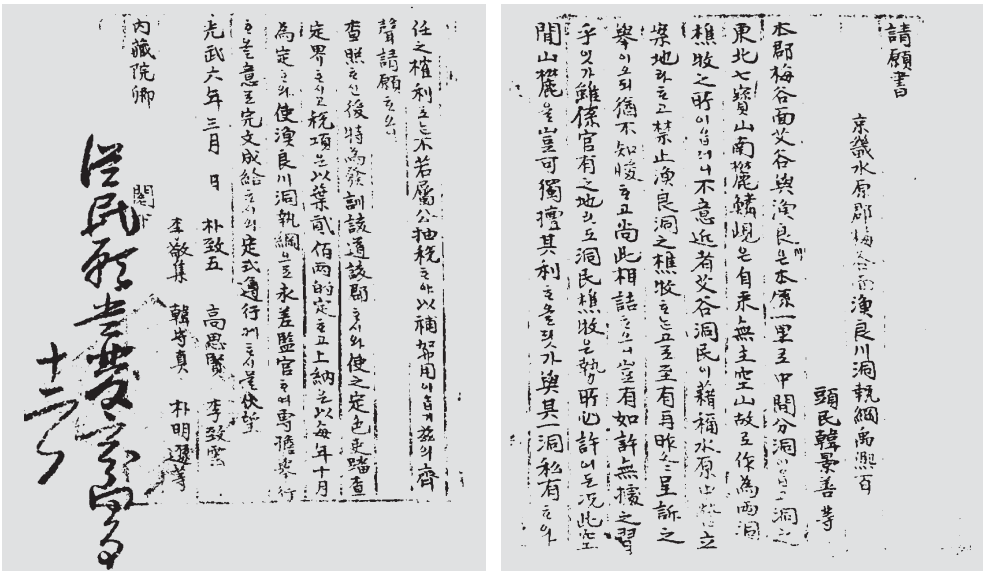
15 수성고둔에서만 철로로 들어간 역둔토 부분에서 47석 5두 9승의 원총이 감소하였다.
16 『각사등록』 2-439; 『각사등록』 2-446; 『각사등록』 2-456(2권의 439쪽, 446쪽, 456쪽이라는 의미이다. 이하 동일).
17 『각사등록』 3-91, 1903년 9월, 남창동 송성오(宋聖五) 청원.
18 『각사등록』 3-142, 1904년 3월, 수원부 김치경(金致京) 청원.
19 『각사등록』 3-188, 1904년 6월, 삼도둔 주민.

하지만 도조액 책정과 관련해서는 내장원의 태도가 강경 일변도였다. 역둔토를 둘러싼 갈등의 대부분은 이러한 내장원의 강경한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황권 강화를 위한 재정 소요의 충당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인지 내장원의 역둔토 수조방식은 징수액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원칙 수정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였다. 역둔토에서는 당시 일반적인 타조례를 따르지 않고 정액제인 도조방식을 고수했으며, 풍흉 등의 수확 변화에도 상납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다른 정부기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무명잡세를 신설하기도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첫째, 수원 서원토는 중앙관아와 갈등을 보인 대표적 사례이다. 서원토는 원래 면세지였다가 갑오승총으로 학부 소관으로 변하였지만 1899년 내장원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원둔 마름 오득영은 1899년분 도조를 거두었으나 관찰부에서 이를 학부로 보내라는 훈령이 있자 내장원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장원에서는 학부 관할이 아니므로 출급하지 말라고 훈령하였다.[20] 하지만 이 도조를 보관하고 있던 차중인(車仲仁)은 관찰부 훈령에 따라 학부에 이 액수를 출급하였고, 내장원은 그를 잡아 가둘 것을 명하였다.[21]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군수는 차중인이 관찰부의 명에 따라 학교로 납부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22] 내장원의 입장은 완강했으며, 심지어 차중인에게 받아 내라고 군수에 지시할 정도였다.[23] 이후 경과는 알 수 없지만, 〈표 2〉에 보듯 서원둔의 도조가 내장원의 원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결국 내장원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장원은 한 번 파악한 세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칠보산 금양권을 둘러싼 어랑천동과 예동 부락민 사이의 분쟁이다. 분쟁의 발단은 1900년 어랑천민이 칠보산 남쪽 기슭에 벌채하러 갔다가 예동민들에게 밀려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어랑천동의 집강은 해당 지역의 산림 금양권을 얻는 대가로 매년 200냥을 내겠다고 내장원에 청원하면서[24] 내장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해당 토지를 조사한 봉세관은 이 토지가 원래 양 동민이 공동 이용하다가 예동민이 100여 년 전에 수원 군영으로부터 입안을 받아 금양해 왔던 토지임을 밝히고, 어랑동민에게만 이용케 하면 예동민의 불만이 있을 것이므로 두 동네가 분담하

20 『각사등록』 2-379, 1900년 2월 18일.
21 『각사등록』 2-386, 1900년 5월 22일, 서원둔 마름 오득영(吳得泳)의 청원.
22 『각사등록』 2-22, 1900년 7월 8일, 수원군수 보고.
23 『각사등록』 2-33, 1900년 9월 3일, 수원군수 보고에 대한 답변.
24 『각사등록』 2-602, 1902년 3월, 우희백(禹熙百)의 청원.



請願書

京畿水原郡梅谷面漁良川洞執綱兩派百

頭民韓景善 等

本郡梅谷面父谷與漁良是本係一里之中間分洞而之洞之東北七寶山南麓緒峴是自來無主空山故至作爲兩洞樵牧之所而不意近者父谷洞民以籍稱水原山地立

禁地禁止漁良洞之樵牧是乎至有耳昧之呈訴之擧而猶不知悛尙此相詰是乎所有如許無稽之習乎矣雖係官有之地而洞民樵牧是執昕心許與況此空閒山麓是乎可獨擅其利是乎與其一洞私有之

任之權利是乎不若屬公抽稅是乎以補邦用之爲益之意

聲請願是乎旀

查照是乎後特爲發訓該道該郡是乎外使之定色踏査

定界是乎旀稅項是乎以葉貳佰兩的定是乎上納是乎以每年十月

爲定是乎外使漁良川洞執綱是乎永差監官是乎事擔來行

是乎旀完文成給是乎事定式通行是乎事伏望

光武六年三月 日 朴致五 高恩賢 李致宗

李敬集 韓守真 朴明遷 等

內藏院卿

閣下

어랑천동 거주 한경선 등의 청원서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원래 예동민이 금양한 것이 맞으므로 예동민에게 200냥씩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25]

예동민으로서는 난데없이 200냥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었다. 예동민은 이미 100여 년 넘게 무덤을 쓰고 잘 가꾸어 온 산림에 대해 무주공산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억울하다고 청원하였다.[26] 군수나 관찰부의 판단도 이미 무덤에 주인이 있어 무주공산이라 하기 어려워 실제 민간의 원성이 예상되므로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27] 내장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03년에도 주민들의 청원은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동일하였다.[28] 예동민과 어랑천민 간 갈등의 연원이 오랜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어랑천민이 자기 것이 아닌 산림에 대해 사용권을 주장한 것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무주공산을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지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한 번 파악한 세원은 끝까지 유지한다는 초기 내장원의 입장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임은 분명하다.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군수의 보고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장원은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든

25 『각사등록』 2-128, 1902년 4월 9일, 경기봉세관 이태하 보고 11.
26 『각사등록』 2-642, 1902년 5월, 매곡 이시석(李是錫) 등 청원.
27 『각사등록』 2-140, 1902년 5월 23일, 경기관찰사 이근명 보고 8.
28 『각사등록』 3-15, 1903년 2월, 예동민의 청원.

토지나 세원에 대해서는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셋째, 내장원에 편입된 토지들은 높은 도조액과 풍흉을 고려하지 않은 예외 없는 집행 때문에 농민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내장원은 처음 정한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원래 의도의 상당 부분을 관철시켰다. 이제 각 둔토별로 갈등 내용과 그 원인을 간단히 정리한다.

① 제언답 : 제언답은 광덕면(음덕면 소재), 우정면, 공향면(팔탄면 소재) 등지에 산재하고 있었다. 제언답이란 제언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자 그 토지에 대해 개인들이 광범하게 개간하여 사점(私占)하였고 결세도 납부하던 토지로서 사유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내장원이 이를 속공하여 새로 도조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899년 새롭게 도조가 부과되자 제언답 경작자들은 당시만 해도 '남봉지폐(濫捧之弊)'로 인식하고 내장원에 청원하여 종래 수준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29] 애초 원총액 149석 5두 9승 중에서 사토가 잘못 편입된 것이 47석 11두 9승에 달할 정도로 제언답의 속공은 무리한 부분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무리한 도조액 편성 때문에 마름 역시 식비나 결세액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30]

② 향탄둔 : 향탄둔은 송동면(매송면 야목리, 원리 소재)에 있었는데, 원래 90석의 도조 중에는 종자대, 마름 경비, 보 관리비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장원은 90석 전액 납부를 요구했고,[31] 이 때문에 마름들은 수고비는커녕 종래 관행대로 지급하던 종자나 보의 수선비 등을 마련할 방도조차 사라졌다. 이후 어느 시점에서 마름은 이순원으로 교체되었고, 마름료나 종자대는 작인들이 분담 갹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1904년 마름 집이 불이 나서 거두어들인 곡식도 함께 소실되자, 소실된 34석을 탕감해 줄 것을 동민들이 대신 청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32] 도조액에 대해 동민과 마름이 공동책임을 지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마름과 작인이 공동으로 청원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1907년까지도 계속 마름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작인과 내장원 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언 수축비는 거액이 소요되는 것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1903년 마름 이순원은 제언 수축비를 청구했지만, 내장원은 수축비는 작인이 부담하는 것이 규칙이며

29 『각사등록』 2-371, 1899년 12월, 수원 우정면 거주민의 소장. 이와 별도로 최철영(崔哲永)은 자신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 결세 1석씩 납부하고 있었는데, 내장원에서 2석락의 도조를 별도로 부과하자 탕감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다(『각사등록』 2-436, 1900년 10월, 가사면 최철영의 청원).
30 『각사등록』 2-406, 1900년 7월, 마름 홍경구(洪景九)의 청원.
31 『각사등록』 2-416, 1900년 9월, 마름 황종채(黃鍾彩)·이순경(李順敬)의 청원.
32 『각사등록』 3-162, 1904년 4월, 송동면 주민 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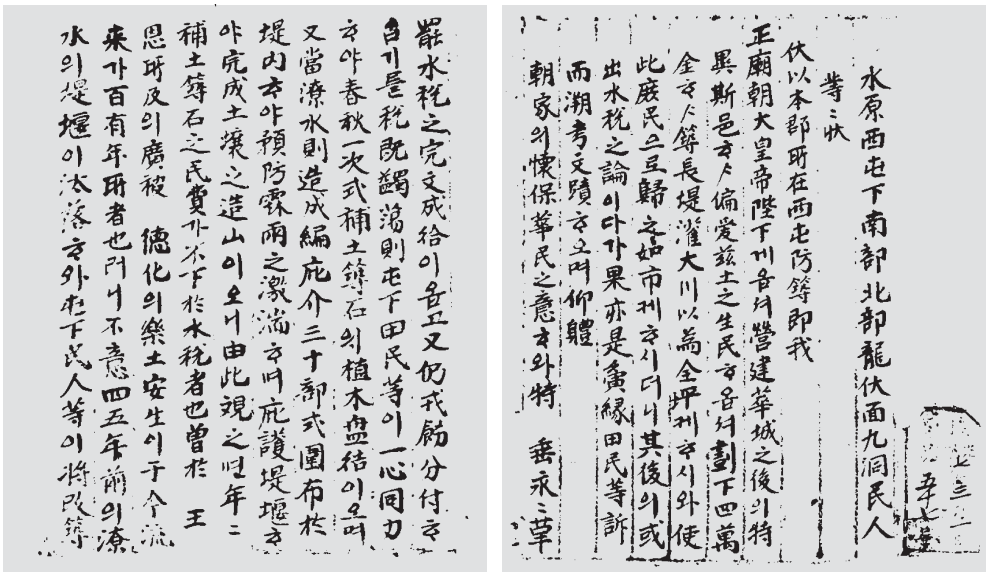
그 비용을 획급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33] 하지만 이러한 내장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름 이순원은 1904년 다시 제언 수축비를 요청하면서,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방축이 70~80칸 소요되는데, 궁내부 소관 시에는 방축비를 획급해 주었지만, 내장원에 이속된 뒤에는 획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공사비로 소나무 80주 2,000냥, 운반비 800냥, 양미 1석 10두 900냥 등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에 내장원은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한 후 바로잡을 것을 봉세관에게 지시함으로써 한 발 물러섰다.[34] 그는 이후에도 수문 보수를 요청했는데, 내장원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수축비의 지급은 이후 관례가 된 것으로 보인다.[35]

③ 총융둔 : 총융둔은 압정면 백곡, 초장면, 우정면, 현암면 신영리, 안녕면, 양간면, 상홀면 삼동, 공향면, 남곡면 귀래동 등지(우정면, 정남면, 성호면 지역)에 소재하였다.[36] 마름 박상훈이 수세를 위해 토지를 조사한 즉, 허록된 토지나 무경작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장원에 새로이 사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장원은 100석 모두 납부하라고 강변하였다.[37] 초창기 내장원의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잘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때문인지 1899년의 납부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다만 1899년 미수액 중 17석은 성천되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 몫이었음이 드러났는데, 1900년 원총액이 75석으로 감소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목장토 : 포내면(진위군 포승면)에 위치한 홍원목장[38]의 땔감채취권 명목으로 부과된 세금이다. 이 토지는 종래에는 전 20냥, 답 40냥씩 납부했지만,[39] 1900년 내장원에 편입된 이후에는 내장원에 결당 100냥을 내고, 탁지부에 조세를 결당 25냥씩 납부하였다고 한다.[40] 애초 1,000냥이 책정된 원총액이 1901년부터 300냥으로 줄어든 것은 허록이 많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⑤ 역토 : 수원군 역토는 삼봉역, 청호역, 장주역이 있었다. 삼봉면(봉담면 소재) 동화리에는 역토가 많았는데 이 토지들은 1898년에 집총되어 도조와 세금을 납부하다가, 1900년 내장원에 속하면서 다시 도조가 올랐다. 농민들은 탕감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기각되

33 『각사등록』 3-47, 1903년 4월, 향탄둔 마름 이순원(李順元) 청원.
34 『각사등록』 3-204, 1904년 7월, 마름 이순원 청원.
35 『각사등록』 3-605, 1907년 4월, 향탄둔 작인 청원.
36 『추수기』, 「수원총훈양둔수세성책」(규 22036-18).
37 『각사등록』 2-417, 1900년 9월, 총윤둔 마름 박상훈(朴尙勳)의 청원.
38 작성 연대 미상인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규 19615)에 따르면 홍원곶의 목장은 77.54결 규모였지만 이 중 사용되는 것은 기전 7.976결, 기답 20.849결이었다고 한다.
39 『각사등록』 2-603, 1902년 3월 9일, 포내면 박윤수(朴允壽)의 청원.
40 『각사등록』 2-377, 1900년 1월, 홍원목장 내 거주 이성관의 소장.



서둔방축 수세에 관한 둔민들의 소

었다.[41] 동화리는 해당 토지의 약 5분의 1이 토지조사사업 당시 국유지로 사정될 정도로 역토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다. 삼봉역토 작인들도 제언답 작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조의 증가가 단순히 마름의 폐단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음 해인 1901년 12월 장주역토의 작인들도 추가 징수에 대해 항의했지만, 납부액을 인상한 것이므로 사정한 액수대로 납부하라는 답변만 들었다.[42]

⑥ 수성둔 : 수성둔은 수원 서둔 아래 쪽 남부면 · 북부면(수원면 소재), 용복면(안룡면 소재)에 소재한 세동, 고색리, 지장동, 벌리, 중보동, 둔촌동, 동수촌동, 고등촌동, 매산동 등 9동에 걸쳐 존재한 광범한 장토였다. 1901년 내장원에 편입된 다른 둔토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 토지는 선희궁 소속이었다가 내장원에 속하면서 도조 인상 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서둔의 창설경위는 다음 소장을 통해 알 수 있다.[43] 서둔의 방축은 정조 때 축조하여 수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민인들의 소를 받아들여 혁파되었다. 이후 둔민이 춘추 1회씩 축석, 식목하고 노역을 제공하여 제언을 구축 유지해 왔다. 4~5년 전(1899년 경) 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 선희궁 마름 박문회(朴文會)가 1만 냥을 내고 동민이 부

41 『각사등록』 2-455, 1900년 11월, 역토작인 청원.
42 『각사등록』 2-589, 1901년 12월, 장주역토 작인 청원.
43 『각사등록』 3-19, 1903년 2월, 서둔 작인 등.

역하여 개축한 뒤, 그해 가을 추수 시 수세 명목으로 두락당 벼 1두씩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둔민 등은 이것의 부당함을 군, 군영, 심지어 선희궁에까지 정소했지만, 답신은 선희궁도 기만 냥을 출급하였으므로 1두씩 거두는 것은 온당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3년간 납부하였지만, 1901년 한해로 물이 말라 벼를 심지 못하고 대신 보리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 독촉에 기천 농민이 굶을 지경이라 주장하면서 수세를 영영 혁파할 것을 요구하였다. 작인들은 이 청원 이전에도 이미 진폐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다시 조사하여 도조액을 정하거나 타작제로 바꿔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4]

수성둔의 방축 보수문제는 이후에도 큰 현안이었다. 1904년 3월 수원군수는 이미 1899년 제언이 붕괴되어 손실이 큰데다가, 1903년 홍수로 서북양둔의 석축과 제언의 붕괴가 심해 급히 수축하지 않으면 제언 아래 기천석이 위험하므로 빨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45] 상황 조사를 요구받은 경기봉세관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하자,[46] 내장원은 결국 수축공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인들의 감세 저항은 계속되었는데, 그 주된 논리적 근거는 수세명목의 징수는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남부면 · 용복면 주민들은 지형으로도 서둔에서 10여 리이고, 중간에 보를 세 곳에 쌓아 관개하고 있으므로 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탕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47]

⑦ 훈련둔 : 훈련둔은 청호면(성호면 원리)에 있는 훈련도감의 둔토로서 민결이 강제로 속공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둔토이다. 훈둔 작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토지는 갑오 이전에는 대동례에 따라 응세하다가 갑오 이후 선희궁 또는 내장원에 이속되었다는 것이다. 대동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토지는 당연히 민유지였다. 그런데 수원부에 거주하는 박문회가 세감을 칭하고 부당 미 3승 3홉씩 거두다가 3년 전, 즉 내장원 이속 후에는 6승씩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대한 수원군수의 판단은 이 토지는 민결이므로 본군에 결전을 납부해야 하고, 내장원에 납부하는 쌀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8] 이에 대해 내장원은 이 토지가 본원에 소관되어 쌀 34석을 거둔 지 이미 수년이므로 관찰부에서 따질 일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둔민들은 한 발 물러서 선희궁 시절처럼

44 『각사등록』 2-684, 1902년 10월, 수성둔민 청원. 하지만 결국 내장원은 1904년 수성고둔에 대해 진폐 상황을 조사하였다. 경상남북도역둔토사검성책 내에 있는 『내장원소관수원군소재수성고둔전답임인조진폐사검성책』(규 21025-22, 1904)은 수성고둔의 1902년조 진폐상황을 자번 순으로 두락, 도조, 작인, 진폐여부 등을 기록한 장부이다. 진폐여부는 금진(今陳), 영진(永陳), 만이반감(晩移半減)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45 『각사등록』 2-241, 1904년 3월 6일, 수원군수 김각현 보고 1.
46 『각사등록』 2-244, 1904년 4월 2일, 경기봉세관 이태하 보고 3.
47 『각사등록』 3-392, 1905년 10월, 용복 · 남부 양면 민인 청원.
48 『각사등록』 2-279, 1904년 12월 30일, 수원군수 김각현 보고.

〈표 3〉 수원부 역둔토 도조 납부 현황(1899~1906)[49]

(단위 : 전은 냥, 나머지는 석-두-승-홉)

구분		1899			1900			1901				1902		
		합	납	미납	합	납	미납	합	납	미납	재감	합	납	미납
삼봉역	조				457-17-6	407	50-17-6	459-19	187-8-7	9-6-4	263-3-9	459-19	441-4-7	18-14-3
	태				42-10-6	42-10-6		40-14-3	40-14-3			40-14-3	40-14-3	
	전				56	56		53	53			53	53	
청호역	조				239-2-5	204-16	34-6-5	237-12-5	59-10	1-9-5	176-13	237-12-5	217-9-4	20-3-1
	태				62-18	62-18		62-18	56-10-7	6-7-3		62-18	60-10-3-5	2-7-6-5
장주역	조				200-16-7	191-4-5	19-12-2	198-8-1	34-17		163-11-1	198-8-1	194-13-1	3-15
	태				39-19	39-19		38-18	38-18			38-18	38-18	
영화관둔	조	155	21-15	133-5	155	150	5	160		109-0-8	50-19-2	160	151-12	8-8
총융둔	조	100	33-3-8	66-16-2	75	39	36	80	22-9		57-11	80	71-19-5	8-0-5
향탄둔	조	90	29-10	60-10	90	90		90	65-15		24-5	90	81	9
훈둔	조	7-16-7	2-16-7	5	7	7		11-10	2-1-5		9-8-5	11-10	11-10	
용둔	조	2		2	2	2		3	1-13		1-7	3	3	
사복둔	전	6,573.8	4,160	2,413.8	6,573.8	6,396.53	177.27	6,573.8	2,110	421.65	4,042.15	6,573.8	6,573.8	
우정사복둔	조	460-6-3		460-6-3										
우정제언	조	100		100										
친둔	조	33-13		33-13	27-3	27-3		37	15-12-5	4-6	17-1-5	37	37	
지고고마둔	조	57-16-3		57-16-3	48-7-7	40	8-7-7	39	12-1-7		26-18-3	39	39	
	태							8	8			8	8	
서원둔	조	50	50		46	46		54-10	18-3		36-7	54-10	51-19	2-11
별비둔	조				42		42	45			45	45	45	
광둔	조	39-13		39-13	39-13	39-13		40	40			40	40	
관둔	조	4	4		4	4		4			4	4	4	
	태	2-6	2-6		2-6	2-6		2-6	2-6			2-6	2-6	
	전	1,341.57		1,341.57										
광덕제언	조	29	20	9										
각면제언	조				149-5-9	90	59-5-9	101-14	24-2-1		77-11-9	102-14	94-17	7-17
목장공산	전				1,000	27	973	300	300			300	300	
수성고둔	조							1,000	419-14-4		580-5-6	1,000	564-3-6	435-16-4
양향둔	조							153	66-0-3		86-19-7	153	153	
유천둔	조							100	16-2-5		83-17-5	100	90-7-5	9-12-5
오타둔	조							105			105	105	88-14-8	16-5-2
포내둔	조							42			42	42	37-10	4-10
훈련둔	미							34	18-8-5-2		15-6-4-8	34	34	
용복둔	조							90	45	5	40	90	90	
관천고둔	조							274-15	117-10-9	157-4-1		274-15	222-12-4	52-2-6
	태							84	84			84	78-5	5-15
남곡둔	조											47	47	
삼도둔	조													
광둔	조													
경리둔	조													
숙성둔	조													
염정세	전	1,212		1,212	1,212		1,212	800		800		800	740	60
계	조	1,172-12-3	204-12-15	967-19-8	1,583-6-4	1,327-15-5	255-10-9	3,326-8-6	1,146-1-6	286-6-8	1,894-0-2	3,374-8-6	2,777-13	596-15-6
	태	2-6	2-6		236-16-3	236-16-3		236-16-3	230-9	6-7-3		236-16-3	228-13-6-5	8-2-6-5
	미							34	18-8-5-2		15-6-4-8	34	34	
	전	9,217.37	4,160	5,057.37	8,841.8	6,479.53	2,362.27	7,726.8	2,443	1,221.65	4,042.15	7,726.8	7,666.8	60

구분		1903			1904			1905				1906		
		합	납	미납	합	납	미납	합	납	미납	재감	합	납	미납
삼봉역	조	459-19	450-10	9-9	388-1-9	388-1-9		427-2	427-2			427-2	427-2	
	태	40-14-3	40-14-3		38-13-6	38-13-6		38-13-6	38-13-6			38-13-6	38-13-6	
	전	53	53		53	53		53	53			53	53	
청호역	조	237-12-5	180	57-12-5	206-19-2	206-19-2		212-14	212-14			212-14	212-14	
	태	62-18	58-14-6	4-3-4	58-1-6	58-1-6		58-16-8	58-16-8			58-16-8	58-16-8	
장주역	조	198-8-1	196-6-1	2-2	188-9-7	188-9-7		188-9-7	188-9-7			188-9-7	188-9-7	
	태	38-18	38-18		37	37		37	37			37	37	
영화관둔	조	160	141-6-6	18-13-4	155-14	155-14		151-15	151-15			153-12	153-12	
총융둔	조	80	61-7	18-3	72-7	72-7		72-7	72-7			72-7	72-7	
향탄둔	조	90	56	34	90	90		90	90			90	90	
훈둔	조	11-10	11-10		11-10	11-10		11-10	11-10			11-10	11-10	
용둔	조	3	3		3	3		3	3			3	3	
사복둔	전	6,573.8	6,038	535.8	6,573.8	2,710	3,863.8	6,573.8	6,573.8			6,573.8	6,573.8	
우정사복둔	조													
우정제언	조													
친둔	조	37	29-15-5	7-4-5	29-15-5	29-15-5		29-15-5	29-15-5			29-15-5	29-15-5	
지고고마둔	조	39	35-10	3-10	32-10	32-10		30	25-10		4-10	34-10	34-10	
	태	8	8		8	8		8	8			8	8	
서원둔	조	54-10	49-8	5-2	54-10	54-10		54-10	54-10			54-10	54-10	
별비둔	조	45	45		45	45		45	45					
광둔	조	40	40		40	40		40	40			40	40	
관둔	조	4	4		4	4		4	4			4	4	
	태	2-6	2-6		2-6	2-6		2-6	2-6			2-6	2-6	
	전													
광덕제언	조													
각면제언	조	102-14	98-13	4-1	101-6	101-6		84-16	20-10	47-16	16-10	101-6	101-6	
목장공산	전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수성고둔	조	1,000	952-14-1	47-5-9	952-14-1	952-14-1		793-13-8	704-13-5		89-0-3	875-19-9	875-19-9	
양향둔	조	153	145-6	1-14	147	147		148-8	143-16		4-12	153	153	
유천둔	조	100	85-17	14-3	81-8-5	81-8-5		90	90			90	90	
오타둔	조	105	81-11-3	23-8-7	96-7-3	96-7-3		94-4-4	94-4-4			85-7-9	85-7-9	
포내둔	조	42	40-17-1	1-2-9	40-7-8	40-7-8		40-17-2	40-17-2			42	42	
훈련둔	미	34	32-9-9-6	1-5-0-4	32-9-9-6	32-9-9-6		32-9-9-6	32-9-9-6			32-9-9-6	32-9-9-6	
용복둔	조	90	82-17	7-3	79-2-7	79-2-7		90	90			90	90	
관천고둔	조	274-15	255-7	19-8	274-15	274-15		250-18-5	227-2		23-16-5	260-8	260-8	
	태	84	82-14	1-6	84	84		81-10	81-10			81-10	81-10	
남곡둔	조	47	47		47	47		47	47			47	47	
삼도둔	조	452-7-2-5		452-7-2-5	563-14-7	519	44-14-7	452-7-2-2	452-7-2-2					
광둔	조											60	60	
경리둔	조											89-18-7-5	89-18-7-5	
숙성둔	조											40	40	
염정세	전	800	800											
계	조	3,826-15-8-5	2,100-5-7	726-10-1-5	3,705-13-4	3,660-18-7	44-14-7	3,452-8-3-5	3,267-3-5-5	47-16	138-8-8	3,256-10-7-5	3,256-10-7-5	
	태	236-16-3	231-6-9	5-9-4	228-1-2	228-1-2		226-6-4	226-6-4			226-6-4	226-6-4	
	미	34	32-9-9-6	1-5-0-4	32-9-9-6	32-9-9-6		32-9-9-6	32-9-9-6			32-9-9-6	32-9-9-6	
	전	7,726.8	6,391	535.8	6,926.8	3,063	3,863.8	6,926.8	6,926.8			6,926.8	6,926.8	

부당 3승씩 납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0]

이상 7곳의 역둔토를 둘러싼 내장원과 작인 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갈등의 원인은 내장원으로 이속된 이후 급속하게 도조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수선유지비도 작인이나 마름에게 전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초기에 농민들은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저항했지만 점차 내장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내장원도 앞서 원총액 변화 부분에서 서술했듯이 일부 역둔토에서는 원총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표 3〉은 1899년부터 1906년 사이의 수원부 역둔토 도액의 연도별 납부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도액은 현금으로 거두기도 했으며(사복둔과 목장공산의 땔감가격, 삼봉역과 관둔의 관사 이용료, 염전에 부과한 세전 등), 현물로 받을 경우 논에서는 벼로 거두었고, 밭에서는 일부 콩으로 거두기도 하였다. 쌀로 거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훈련둔의 경우 종래 대동미를 납부했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도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도조액의 추이를 중심으로 연도별 납부액의 추이를 살펴보자. 1899년은 도조액 1,172석 12두 3승 중에서 967석 19두 8승이 미납되어 미납률이 82.5%에 달하였다. 도전의 미납률도 54.9%였다. 1899년은 전체 역둔토에 대해 거납하는 분위기가 주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1900년에 되면 도조의 미납률은 16.1%로 급격히 감소한다. 총융둔, 별비둔 및 제언답을 제외하고는 새로 편입된 역토에서조차 미납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도액 납부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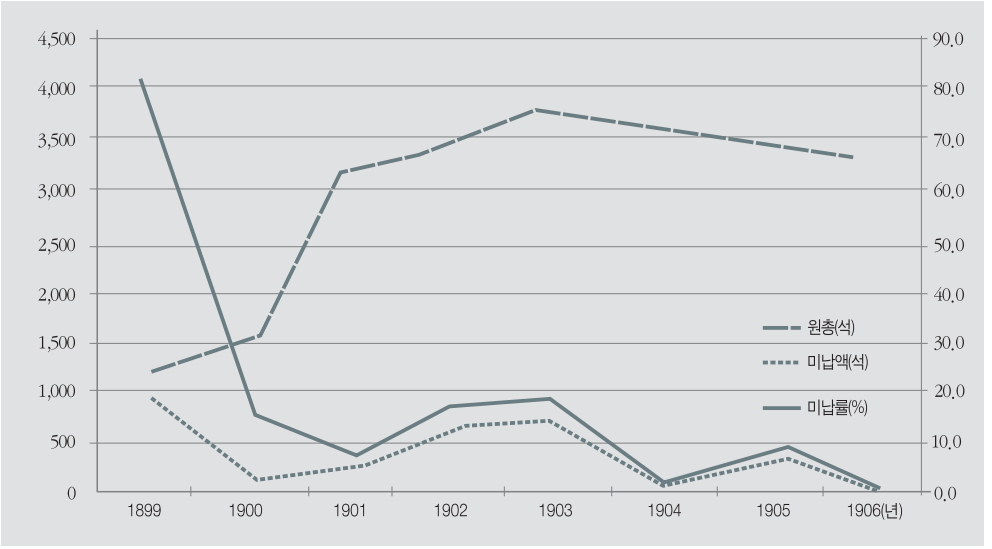
1901년에는 처음으로 재감액(災減額)을 설정하였다. 애초 내장원은 도조액은 풍흉에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1901년의 유래 없는 대한발로 소출이 없는 경지가 속출하자 어쩔 수 없이 재감액을 인정한 셈이었다. 1901년의 재감액은 1,894석 2승으로 원총액의 56.9%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로 탕감해 주었다. 1901년 미납률이 10% 이하로 하락한 것은 이처럼 절반 이상의 원총이 탕감되었기 때문이다. 1901년을 제외하면 1900년부터 1903년까지는 10% 후반대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1902년과 1903년의 미납률은 17~19%로 1900년의 16%보다 약간 높지만 이처럼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1901년 선희궁의 장토들이 대거 내장원 관할 역둔토로 포함되어 들어

49 『경기각군둔역도조기경신임계봉미봉책』(규 19623); 『경기정간책』(규 18185).
50 『각사등록』 2-319, 1905년 12월 30일, 수원군수 이완용.

왔기 때문이다. 이 장토들은 다른 역둔토와 마찬가지로 내장원과 도조액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처음 두 해 동안은 미납률이 높았다. 1904년이 되면 삼도둔과 사복둔을 제외하면 모든 둔토에서 원총액대로 징수되었다.

1905년에도 재감액이 있는데, 이는 1901년의 재감액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05년 역둔토 관리업무가 경리원으로 옮겨 가면서 일부 역토에 대해 새로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조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탈감된 액수였다. 조선 후기 총액제에서 한 번 재감된 필지들이 다시 과세지로 되는 일이 드물었던 데 반해, 1905년에 재감된 필지의 원총액은 1906년에는 모두 다시 원총액에 포함되었으며, 그 금액도 모두 완납되었다.



수원군 역둔토의 연도별 미납액과 미납률(1899~1906년)[51]

위 그림은 미납액과 미납률의 연도별 추이를 표시하고 있다. 내장원 이속 첫해인 1899년을 제외하면 미납률은 전체적으로 20% 미만이었으며, 1904년에는 10% 미만으로 하락한 뒤 1906년에는 완납을 기록하였다. 1899년에는 거납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음에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역둔토 도조의 징수는 내장원의 처음 입장에서 큰 변화 없이 관철되었다.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인 내장원의 의도는 물론 도조

51 『경기각군둔역도조기경신임계봉미봉책』(규 19623); 『경기정간책』(규 18185). 좌측 축은 원총 및 미납 석수, 우측 축은 미납률(%)이다.

증수였고, 농민들도 빠르게 체념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둔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민결승총의 사례처럼 보인다. 선희궁 소속 당시 결당 납부한 세액은 쌀 33두로, 갑오개혁 이전 경지도 지방에서 토지에 부과되던 공식적인 세금 23두보다는 높지만, 각종 부가세를 포함한 징수액으로 추정되는 47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내장원에서 결당 60두를 부과했을 때 농민들이 애당초 반발하다가 선희궁 소속 당시의 33두 수준으로라도 해 달라고 청원한 데에는 이러한 셈법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보는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볼 때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훈련둔과 같이 민유토지가 국유지로 혼입되어 들어갔을 때 소유자들이 민유임을 주장하게 되면 이른바 국유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국유지 여부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가 납부한 원총액이 지세에 해당하는 액수인지, 소작료에 해당하는 액수인지 여부였기 때문이다. 수원군처럼 역둔토 대부분에서 내장원의 도조 부과를 수용한 경우는 국유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것이 수원군의 국유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의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2. 수원 지역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수원의 '사업'도 일정상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인 '사업'의 진행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전국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개요는 기존 연구[52]를 참조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각각의 과정이 수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서술한다. 토지조사를 위한 준비는 이미 통감부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1909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부평군에서 시험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토지조사는 '사업'에 관한 세부원칙들이 결정되고 1912년 「토지조사령」이 공포된 이후에 실시되었다.[53] 「토지조사령」에서는 『결수연명부』를 「토지신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로 인정하였으며 『결수연명부』에 표시된 자번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1912년 전국적으로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수연명부』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졌다. 국유지에 대해서도 그 토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국유지통지

52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 13, 한길사, 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53 「토지조사령」이 공포됨으로써 1910년 3월 제정된 「토지조사법」은 폐지되었다.





토지조사(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서」를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신고에서 정부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사업'은 소유권조사, 지가조사, 지형지모조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수원군에서 '사업'의 직접적인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토지조사부』가 유일하다. 『토지조사부』에는 지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는 소유권조사와 관련된 내용만 일부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조사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54]

토지 소유권조사는 「토지신고서」를 수합하는 준비조사, 측량반이 작성한 지도의 필지와 「토지신고서」를 대조하면서 지주 · 지번 · 지목 등을 확인하는 일필지조사, 한 필지에 대해 여러 명의 「토지신고서」가 존재하거나 신고서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분쟁지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준비조사는 1910년 5월부터 1916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처리한 것은 신고서

54 지가조사는 필지별 수확고에 기초하여 지가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는 과거 결부수에 근거해서 부과하던 토지세를 지가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지가는 필지별 지위등급에 의해 정해진 수확량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결정하였으며, 1918년 「지세령」을 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었다. 최초의 지세율은 1.3%였는데, 1918년의 지세액이 전년대비 약 20%를 넘지 않게 한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표 4〉 수원면 리별 「토지신고서」의 접수일[55]

(단위 : 필)

신고 연월	북수	신풍	남수	산루	매산	남창	총계
1911년 3월	334	326	256	264	128	248	1,556
1911년 4월	22	113	16	196	24	16	387
1911년 5월	21	1	12	27	11	2	74
1911년 6월				15			15
1911년 7월				3			3
1913년					2	1	3
합계	377	440	284	505	165	267	2,038

551만 3,516통, 신고필수 1,978만 3,745필에 달하였다. 수원군 「토지신고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원에서도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지역에 따라 30~90일 정도였는데, 〈표 4〉를 보면 수원면의 경우는 전체 2,038필지 중 21필을 제외한 2,027필지(99.0%)가 191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최초로 신고서가 접수된 1911년 3월 10일부터 30일 동안인 1911년 4월 9일까지 총 1,895필지(90.3%)가 접수되었다. 1913년에 「토지신고서」가 접수된 3필지는 모두 일본인 소유토지였다. 가장 늦게 신고된 것은 1913년 11월 7일로 사정공시일을 겨우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이 「토지신고서」가 소유권 사정에 필요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접수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날짜별로 보면 1911년 3월 20일에 529건(26.0%)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접수되었으며, 3월 30일에는 731건(35.9%)이 접수되어 이틀 동안 접수된 「토지신고서」가 전체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날 「토지신고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원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56] 「토지신고서」가 면에 보관되어 있는 『결수연명부』에 근거하여 대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일필지 측량에 근거하여 조사된 지주 · 경계 · 지목 · 지번 등과도 대조하면서 필지별 정보를 확정하였다. 일필지조사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부분의 임

55 수원군, 『토지조사부』.

56 김해군에 대한 사례(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와 창원군에 대한 사례(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 2011)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야나 도로 등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이 때문이다.[57] 일필지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부』가 작성되었다. 일필지조사는 1910년 6월 시작하여 1916년 11월에 종료하였다. 측량 총필수는 1,910만 1,989필이었다.

일필지조사 시 필지별 경계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화해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분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쟁지조사는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어온 분쟁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판별하는 작업이었다.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작성된 분쟁지조서를 심사하여 분쟁지의 소유자 또는 경계를 확

〈표 5〉 '사업' 당시 수원군의 분쟁지 현황[58]

면명	리명	분쟁호수	필수	면적(평)	사정인	분쟁 당사자
매송	숙곡	178	2	1,378	조한복	
매송	숙곡	179	1	740	국	
반월	건건	을243	2	630	한도원	한원회와 분쟁
비봉	쌍학	을685	5	2,495	윤교범 외 6	윤우선과 분쟁
서신	궁평	145	31	41,999	김송강	
서신	백미	143	2	3,199	김송강	
서신	칠곡	144	1	4,503	최성집	종중재산
서신	칠곡	454	1	190	최성집	종중재산
서신	칠곡	을414	1	481	최정희	김재홍과 분쟁
서신	칠곡	을415	3	1,008	최성집	황장보와 분쟁
성호	오산	950	2	960	김광문	
성호	오산	951	1	1,527	양주원	
성호	원	952	1	1,344	김봉필	
성호	지곶	171	1	1,558	보적사	
수원	산루	172	19	1,486	고경삼 외 17	
수원	산루	176	21	1,902	고정남 외 19	
수원	산루	993	1	40	지홍갑	
양감	선문	177	14	12,488	홍종억	
양감	용소	164	2	2,238	국	
양감	용소	165	3	6,676	국, 이항구	
정남	귀래	148	1	1,035	국	
정남	발산	147	3	2,077	최명래, 한상학	
태장	신	을682	1	3,814	정조이	정기준과 분쟁
태장	신	을683	1	2,163	정조이	정기준과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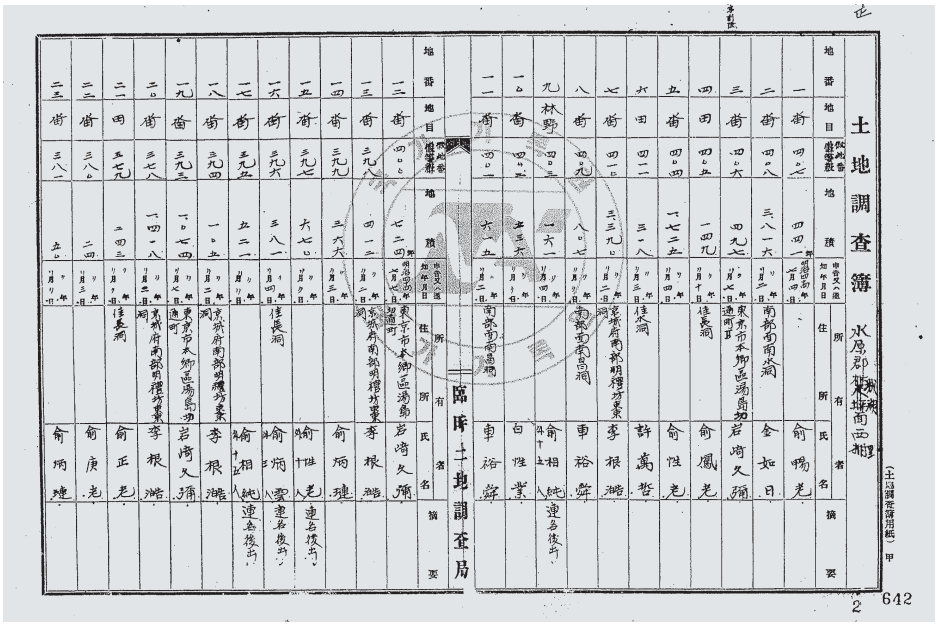
57 임야는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되었으며, 도로는 해방 이후에 별도의 지번을 부여받아서 등록되었다.
58 수원군, 『토지조사부』.

정하였다. 분쟁지조사는 1910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총 3만 3,937건, 9만 9,445필을 심사하였다.

〈표 5〉는 수원군 분쟁지를 접수 건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원군 전체 분쟁지는 24건 120필지이며, 면적은 9만 5,931평이다. 사정 총필지 및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7%와 0.08%로 아주 미미하다. 필수에서 분쟁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전국 평균이 0.5%를 약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원군 분쟁지의 비율은 의외로 낮은 편이다. 이는 수원군에서의 사적 토지 소유권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유지 분쟁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5〉에서 사정 명의인이 '국'으로 되어 있는 4건은 국유지 분쟁이 분명하다. 기타 제언답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서신면 궁평리의 토지와 양향둔 또는 수성둔과 관련이 있는 수원면 산루리의 토지들이 국유지 분쟁이라고 한다면 국유 분쟁지는 78필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일필지조사와 분쟁지조사가 종료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작성 과정이 곧 토지 소유권 사정 과정이었다. 『토지조사부』에는 필지별로 지번, 지목, 가지번(실지조사부의 지번), 지적, 토지신고일,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록하


土地調查簿 水原郡 [illegible] 面 [illegible]
臨時土地調查局
642

『토지조사부』의 예(성호면 서리의 첫 장)

였다.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30일간 공시하도록 하였다. 사정의 공시는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시작하여 1917년 10월 28일 평북 용천군 신도면 일부 지방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수원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사정공시일이 달랐는데, 먼저 수원면은 1913년 12월 27일부터 1914년 1월 25일까지로 전국적으로 가장 빠른 편에 속하였다. 기타 대부분 지역은 1915년 4월 2일부터 30일간, 서신면의 제부도, 송산면의 우음도와 어도, 우정면 국화도 등 일부 도서 지방은 1916년 12월 1일부터 30일간 공시하였다.[59]

사정이 갖는 의미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토지에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구래의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이전의 소유관계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소유주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셈이 되었다. 지금도 토지 관련 재판에서 간간히 『토지조사부』가 활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러한 임시토지조사국의 사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토지 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사기관이었다.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 최초의 재결은 1914년 8월 1일 공고되었으며 1922년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1920년 8월 현재 접수된 불복신청 건수는 2만 148건이다. 불복신청을 제기한 것 중에서 사정 당시에도 분쟁지였던 것은 2,872건(14.3%)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불복신청한 건수의 85% 이상은 새롭게 분쟁이 제기된 셈이었다.

불복신청지는 『조선총독부관보』에 그 재결내용이 공시되었기 때문에 현황을 알 수 있다. 관보에 따르면 수원군 불복신청지는 총 566필지였는데 그 현황은 〈표 6〉에 정리하였다. 분쟁지의 필지수보다 거의 다섯 배 정도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412호의 224필과 452호의 153필지는 철도부지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상 경계분쟁에 해당한다. 불복신청지 중에서 분쟁지와 겹치는 것은 정남면 발산리의 최명래와 한상학의 분쟁지 3필지가 유일하다.

분쟁지와 구별되는 불복신청지의 특징은 국가(경기도장관, 국가, 총독부국장)가 제기한 불복신청이 많다는 사실이다. 불복신청의 경우는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거의 재결되었기 때문에 이들 토지는 국유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일형면의 112필지는 역둔토 관련

59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416 · 417 · 425쪽.

〈표 6〉 수원군의 불복신청지[60]

호수	구분	주소	재결명의인	재결일	필지수
468	소유권	반월면 본오리 3, 송산면 육일리 587	국가	1916.06.03.	2
345	소유권	반월면 속달리 326 외 5	용주사 주지	1918.11.02.	6
470	일부소유권	반월면 월암리 225	민대식	1916.06.03.	1
437	소유권	비봉면 상기리 336 외 7	이병선 외 7	1918.11.02.	8
411	소유권	비봉면 자안리 179 외 3	김순칠 외 2	1919.11.17.	4
471	일부소유권	서신면 궁평리 548	김봉모	1916.04.11.	1
455	일부소유권	서신면 궁평리 550	정봉구	1916.07.28.	1
449	일부소유권	서신면 궁평리 580	정광헌	1916.07.28.	1
466.21	소유권	성호면 오산동 357 외 9	경기지사	1920.02.25.	10
386	소유권	성호면 오산리 520, 612	정순문	1918.11.02.	2
403	소유권	안룡면 장지리 440	고목덕치	1916.08.30.	1
412	일부소유권	의왕면 2리 외 4면 22, 204 외 223	국가	1919.04.21.	224
472	소유권	의왕면 왕곡리 456	김수영	1916.06.03.	1
475	경계	일형면 동리 223, 224	국가	1916.09.15.	2
475	경계	일형면 서둔리 8, 10, 208, 196	국가	1916.09.15.	4
344	일부소유권	일형면 영화리 288	윤성서	1916.06.03.	1
463	소유권	일형면 율전리 외 3, 619 외 111	경기장관	1917.12.15.	112
346	소유권	일형면 정자리 77	최동필	1918.11.02.	1
438	소유권	정남면 발산리 595 외 2	한상학 외 1	1918.11.02.	3
338	소유권	정남면 발산리 595 외 2	한상학 외 1	1918.11.02.	3
391	일부소유권	태장면 인계리 572	동척	1916.06.17.	1
452	일부소유권	태장면 지리 외 3, 410 외 152	총독부국장	1918.11.02.	153
357	소유권	태장면 진안리 740, 741	국무(명)	1915.12.24.	2
466.11	소유권	향남면 발안리 외 1면 1, 95 외 21	경기지사	1920.02.25.	22

분쟁으로 추정되지만 『토지대장』 등 그 연혁을 추적할 수 있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이제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사업' 당시의 토지 소유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표 7〉에는 수원군의 면별 국민유별 사정 필수 및 면적을 정리하였다.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수에서는 1.7%이고, 면적에서는 5.0%였다. 전국적으로는 국유지가 차지한 면적은 전체의 2.6%였는데, 수원의 국유지면적은 전국 평균의 거의 배에 달하였다.

1절에서 살펴본 국유 역둔토의 소재지와 〈표 7〉의 면별 국유지 분포를 대조하면, 개략

60 『조선총독부관보』.

〈표 7〉 수원군 면별 국 · 민유별 사정 필수 및 면적[61]

(단위 : 평)

면명	국유지		민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수원	85	146,056	1,953	424,119	2,038	570,175
일형	376	1,223,722	7,175	6,374,219	7,551	7,597,941
태장	204	482,765	9,239	9,437,674	9,443	9,920,439
안룡	605	1,882,859	5,618	5,802,370	6,223	7,685,229
매송	197	185,975	6,620	5,049,709	6,817	5,235,684
봉담	279	658,144	6,201	4,237,866	6,480	4,896,010
향남	6	21,048	9,508	6,196,054	9,514	6,217,102
양감	32	30,986	7,373	4,862,801	7,405	4,893,787
음덕	121	105,244	12,293	6,295,678	12,414	6,400,922
마도	89	112,174	6,810	3,777,312	6,899	3,889,486
송산	76	27,511	10,996	7,146,622	11,072	7,174,133
서신	16	14,563	8,486	4,799,974	8,502	4,814,537
비봉	170	134,209	7,410	4,880,704	7,580	5,014,913
팔탄	23	15,584	9,374	5,227,657	9,397	5,243,241
장안	7	11,638	8,582	4,900,630	8,589	4,912,268
우정	25	27,570	11,381	7,496,543	11,406	7,524,113
의왕	108	91,782	5,824	4,014,891	5,932	4,106,673
정남	165	348,746	9,181	6,663,998	9,346	7,012,744
성호	255	417,257	9,178	6,335,076	9,433	6,752,333
동탄	6	2,897	8,722	6,538,545	8,728	6,541,442
반월	212	290,455	10,195	8,081,402	10,407	8,371,857
계	3,057	6,231,185	172,119	118,543,844	175,176	124,775,029

적으로 국유지의 역사적 연원을 알 수 있다. 수원면 국유지는 양향둔과 수성둔, 일형면 · 태장면의 국유지는 양향둔과 영화관둔, 안룡면은 수성둔, 매송면은 향탄둔, 우정면과 정남면은 총융둔의 소재지였다. 봉담면에는 삼봉역토가 많았으며, 음덕면과 팔탄면에는 제언답이 있었다. 성호면에는 총융둔, 친둔, 훈련둔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중 훈련둔은 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호면 국유지 255필지 중 159필지는 원리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민유지 속공의 가능성이 가장 컸던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고찰은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사업' 당시 임시토지조사국에서는 분

61 수원군, 『토지조사부』. 성호면 금암리의 면적은 제외한 통계이다. 현재 양감면 삼계리 및 고잔리, 성호면 금암리의 『토지조사부』는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 양감면 『토지조사부』에 면 합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활용할 수 있었다.

쟁지심사 시 조사할 사항으로 ① 관계서류의 대조 ② 소유권원 및 점유 ③ 실지상황 ④ 양안과 기타 참고장부 ⑤ 납세의 사실 ⑥ 참고인의 진술 ⑦ 법규 및 관습 등을 들었다. 국유 · 민유 구분의 증거로서 관계서류 · 현지 상황의 청취 외에도 '납세의 사실' 이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똑같이 강가의 이생처를 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의 임진둔은 민유로 사정되었고, 낙하둔은 국유로 사정되었는데, 그 판단을 가른 것은 임진둔토에서 내장원에 납부한 금액은 지세 수준에 불과했지만 낙하둔토는 임진둔토와 달리 내장원에 '도조' 를 납부하였다는 점이었다.[62] 추론 수준이긴 하지만 내장원이 수원군의 역둔토에 대해 도조 수준의 원총을 책정하였고, 이유야 여하튼 농민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들이 '사업' 에서 국유지로 사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추론에 입각한다면 수원군이 국유지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유분쟁지는 매우 적다는 일견 모순되는 현상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수원면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수원면의 국유지는 필지수로는 4.2%, 면적으로는 25.6%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면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63] 필지수와 면적 모두에서 국유지의 비중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수원군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표 9〉를 보면 국유지의 약 절반가량이 임야의 면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유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수원면에 수성둔과 양향둔 등 군영 관련 둔토와 영화관둔 등의 둔토가 많았던 역사적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표 5〉에 있는 수원면 산루리의 분쟁지는 1필지를 제외하고 지목이 모두 대지였는데, 관둔의 공해 터 대지와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는 모두 민유

〈표 8〉 수원면 리별 국 · 민유별 사정 필수 및 면적 현황[64]

지역	국유지		민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평)
북수	19	46,112	358	36,342	377	82,454
신풍	16	7,377	424	52,997	440	60,374
남수	19	36,494	265	41,904	284	78,398
산루	9	7,197	496	91,364	505	98,561
매산	7	33,840	158	171,204	165	205,044
남창	15	15,036	252	30,308	267	45,344
계	85	146,056	1,953	424,119	2,038	570,175

62 조석곤, 「토지조사사업 국유지 분쟁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 『대동문화연구』 50, 2005, 456~460쪽.
63 〈표 9〉를 보면 필지수에서 차지하는 대지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64 수원면, 『토지조사부』.

〈표 9〉 수원면 지목별 국 · 민유별 사정 필수 및 면적 현황[65]

지목	국유지		민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평)
전	40	26,710	231	93,081	271	119,791
답	2	1,693	92	101,263	94	102,956
대	25	19,954	1,607	202,012	1,632	221,966
지소	1				1	322
임야	16	67,116	14	25,949	30	93,065
분묘지			2	599	2	599
사사지			4	768	4	768
철도용지	1	30,261			1	30,261
잡종지			3	447	3	447
합계	85	146,056	1,953	424,119	2,038	570,175

로 사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불복신청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제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수원면의 토지 소유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토지 소유규모의 분석을 위해서 전 · 답 · 대지 이외의 다른 지목은 제외한다. 〈표 10〉을 보면 수원면에 '사업' 당시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259명이며, 이 중 같은 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1,124명으로 압도적이다. 택지의 경우 대개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군 거주자의 소유면적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유지를 제외하고서도 약 30%의 경지를 타군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도 304필, 14만 9,444평으로 전체 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10〉 수원면 토지 소유자 거주지별 토지 소유 현황[66]

구분	인원(명)	면적(평)	비율(%)	
			인원	면적
같은 리 거주	1,124	195,685	89.3	44.0
수원면 거주	80	70,108	6.4	15.8
수원군 거주	5	6,422	0.4	1.4
타군 거주	50	172,498	4.0	38.8
계	1,259	444,713	100.0	100.0

65 수원면, 『토지조사부』.
66 수원면, 『토지조사부』.

은 14.9%이고, 전체 면적에서는 26.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매우 많은 편이다. 이 중 경지와 대지 이외의 필지는 13필, 1만 1,764평에 불과하다.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경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수원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면적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3단보 미만의 영세 토지 소유자가 9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원면이 대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3정보 이상 토지 소유자가 5명인데, 국가를 제외한 4명 중 1인이 일본인이다. 주거지역이라는 특징상 대토지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 또한 수원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수원면 토지 소유자 소유면적별 현황[67]

소유규모	인원(명)	면적(평)	비율(%)	
			인원	면적
0.3정보 미만	1,185	149,611	94.1	33.6
0.3~1.0정보	52	81,372	4.1	18.3
1.0~3.0정보	17	82,220	1.4	18.5
3.0정보 이상	5	131,510	0.4	29.6
계	1,259	444,713	100.0	100.0

이 글에서는 수원군에서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주로 국유지의 창출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수원군의 국유지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국유지의 면적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분쟁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대한제국기에 실시된 역둔토조사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황실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종은 역둔토를 내장원 관할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종래 타조제로 운영되던 납부방식이 도조로 바뀌었고, 그 액수도 대폭 증액된 경우가 많았다. 초기에 농민들은 도조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저항했지만 점차 내장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군의 경우 거납 분위기가 강하다가 곧바로 납부 분위기로 선회했는데, 서울과 가까워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1905년 경리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일부가 탕감되기도 하는데, 내장원이 고종 황제의 '금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경리원은 황실재산을 정리하고 국유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관이라는

67 수원면, 『토지조사부』.

성격 변화가 그 배경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국 · 민유 구분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분쟁이 발생한 역둔토의 경우 납부한 도조액이 결세 수준인지 아닌지도 국유와 민유를 판별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수원군처럼 역둔토 대부분에서 내장원의 도조 부과를 수용한 경우는 국유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원군의 국유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분쟁이 의외로 적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후 한 세기가 지났다. 대한민국정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었던 지번체계와 지적도를 교체하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10년 내로 새로 만들어질 제도가 적어도 한 세기 이상 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1. 일제의 임야 소유권 정리 방향
2. 수원군 임야조사사업의 결과
3. 수원면 면유재산에 포함된 임야

제4장

일제하 수원의 임야조사사업과 임야 소유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조선총독부는 1918년 4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관제」를 공포하고, 그해 5월부터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임야 소유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 그 소유권을 사정 ·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실시된 바 있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이은 후속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지역에서도 「임야소유신고서」 수납을 시작으로 측량, 사정, 공시 등의 제반 조사 과정이 시작되었고, 1920년 7월 무렵에는 실지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 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산림의 소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된 적이 사실상 없었고, 산림 소유자들에게 등기 문서도 발급된 적이 없었다. 물론 대한제국기인 1901년 양전사업 감독기구로 만들어진 지계아문이 임야 소유자들에게 '지계'를 일부 발급해 준 적은 있었다. '지계'란 일종의 토지 소유권 증명 문서인데,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와 산림을 대상으로 양전(혹은 토지조사)을 미처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계도 널리 발급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계와 같은 토지 소유권 증명 문서가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



〈그림 1〉 1907년에 지계아문이 발급한 지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소유권 증명 문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를 근거로 배타적인 소유권이 확립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를 꽃피운 나라들은 소유권 증명 문서를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소유권 증명 문서를 발급하려 했던 것은 1899년에 광무양전을 실시하면서부터였다. 광무양전 초기에 정부는 지계를 발급한다는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1901년에 칙령 제21호 「지계아문직원급처무규정(地契衙門職員及處務規程)」을 공포함으로써 지계 발급방침을 처음으로 내외에 발표하게 되었다. 당시 법 규정에는 "지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府)·군(郡)의 산림과 토지, 전답 가사(家舍) 계권(契券)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대한제국정부의 지계 발급은 재정 악화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산림 소유권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임야의 소유권 정리 작업에 돌입하였다. 이하에서 일제의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수원 지역에서 실시된 조선임야조사사업의 결과와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일제의 임야 소유권 정리 방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대하는 태도는 서양 여러 나라에 비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다. 그 오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산을 무척 신성시했다. 신라시대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3산·5악(岳)' 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산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3산 · 5악' 뿐만 아니라 고을마다 '진산(鎭山)' 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있었다. 이렇게 특별히 지정한 산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산신이 거주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에 함부로 들어가 나무를 베게 되면 산신이 노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국가 혹은 고을에서 따로 지정한 산뿐만 아니라 벽촌 마을 사람들도 자기 마을의 수호신이 위치해 있다는 산에는 함부로 입산하지 않았다. 물론 산에서 장작을 모아 두어야 겨울을 무사히 나기 마련이므로 기온이 떨어질라 치면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에도 따로 마련된 신당에 찾아가 입산 사실을 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을 이처럼 신성시하다 보니 산림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물론 권세가 혹은 귀족이 산을 개별적으로 사점하는 일은 없지 않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산을 개인 재산으로 한다는 관념이 그리 퍼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고려시대 후기에 접어들어 크게 변하였다. 당시 정치권력을 농단하고 있던 권문세가들은 산과 들을 사점한 후 곳곳에 전답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들이는 등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였다.

권문세족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은 산을 개인이 사점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역성혁명에 가담했던 사대부들은 산림천택(山林川澤)의 사점을 엄금하고, 이를 여민공리(與民共利)의 땅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민공리' 란 맹자가 주장했던 선정의 기본조건으로서, 누구나 그 땅에 들어가 나무를 베거나 임산 자원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유학자들은 맹자의 가르침대로 선정을 베풀려면 산림의 사점을 엄금해야 한다고 믿었다. 산림천택을 공공의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던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권문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산림천택 여민공지' 라는 원칙을 국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한 조선왕조는 산림천택의 사점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방침은 조선시대 내내 상당히 중시되었다. 일례로, 명종 대에 경연석상에서 경연관들은 "왕자(王者)는 백성에 대하여 후생(厚生)하는 방법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림과 천택(川澤)의 이익을 백성과 함께하니, 그 은혜로움이 넓다 하겠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동안 …… 사사로이 시장(柴場 : 임야)을 점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였으니, 이는 곧 후생(厚生)하는 방법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권세가가 산림을 사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하며, 이것이 유교적 선정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림 2〉 「능원침금양전도」(『건릉지』, 1821,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이처럼 조선의 정치를 주도했던 유학자들은 산림 사점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그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조선 후기 이래 산전과 화전 개간이 확대되고 목재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산림을 사점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고, 권세가 및 종실 사람들도 공공연히 산림을 사점하려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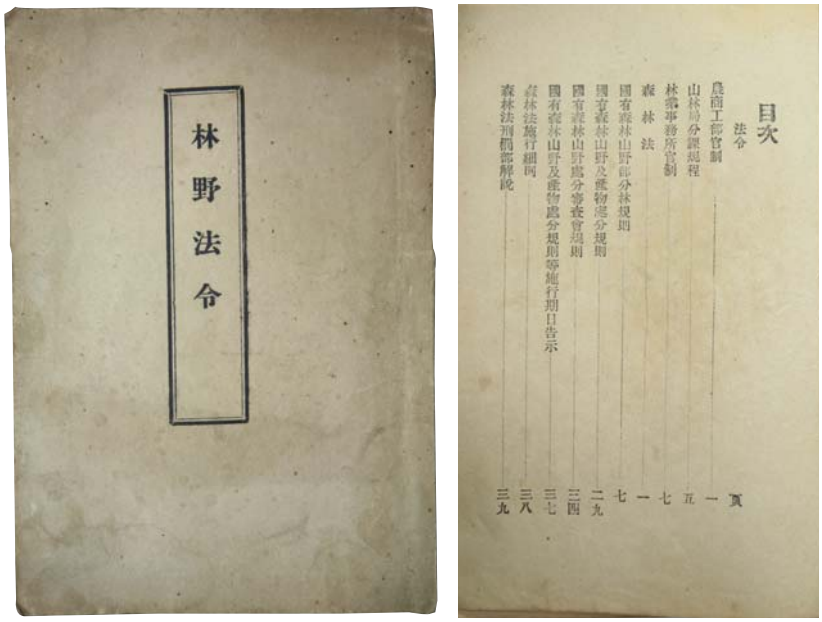
산림의 사점은 주로 특정 임야에 대한 금양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 왕조는 금양할 목적으로 묘 주위의 임야를 점유하는 행위만큼은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분묘 금양의 범위는 대체로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벼슬아치들은 선조의 묘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을 자기의 점유지로 삼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권세가들은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는 면적의 땅을 점유하기에 이르렀고, 19세기 무렵에는 임야를 일반 전답과 같이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는 관습도 자리 잡았다.

사점 행위의 확대로 산림은 갈수록 황폐해졌다. 산림 황폐화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던 것이 바로 사점자의 화전 경작 행위였다. 조선 후기에는 산림을 사점한 개인이 그 산에 화전을 일구는 사례가 무척 많았다. 화전은 본래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추수한 후 지력이 쇠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유농(遊農) 경작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부 산간지대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여 농경을 행하는 화전민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그 경우 화전이 숙전 혹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안정적으로 돌려짓기를 하는 땅으로 변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땅을 '산전(山田)'이라고 따로 지칭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농민들이 일부러 산 속에 화전이나 산전을 조성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전세를 피하기 위해 산 속으로 경작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전 경작을 단속하려 했다. 효종 9년, 정부는 산허리 이하에 있는 화전 경작을 당분간 용인하겠지만 그 이상의 경사지에 위치한 전답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산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데다가, 지방관들이 지방관아의 경비를 마련한다면서 화전 경작을 용인하는 대가로 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상납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령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요컨대 조선 초기에 산림의 사점이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묘 금양 등을 명분으로 산림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산에 화전이나 산전을 경작하는 자도 늘어났다. 이렇게 산림의 사점이 극심해지면서 산은 조금씩 황폐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침탈을 시작하였다. 당시 통감부 관리들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주기 위해 보호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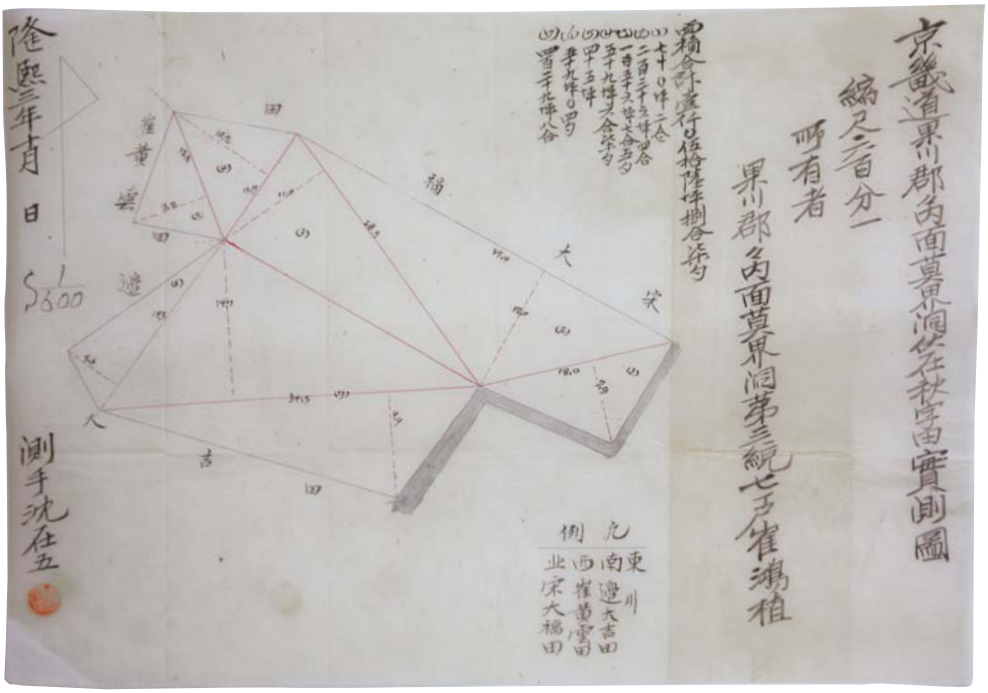


『**임야법령**』(과천문화원 소장) 1908년에 반포된 「삼림법」, 농상공부 관제 및 관련 규칙, 각종 서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일본인 관리들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농림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산림녹화를 위해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임야를 소유한다는 관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주인이 없는 임야는 그를 관리하고 보호할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황폐해지기 마련이며, 이를 방지하는 길은 오직 개인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당시 우리나라의 임야에는 대부분 점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 관리들이 말하던 것처럼 임야 소유의 관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가 유교적 가치에 따라 공식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야를 점유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일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임야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 문서를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소유자들의 임야 애호 관념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일제는 1908년에 「삼림법」을 공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임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법의 제19조에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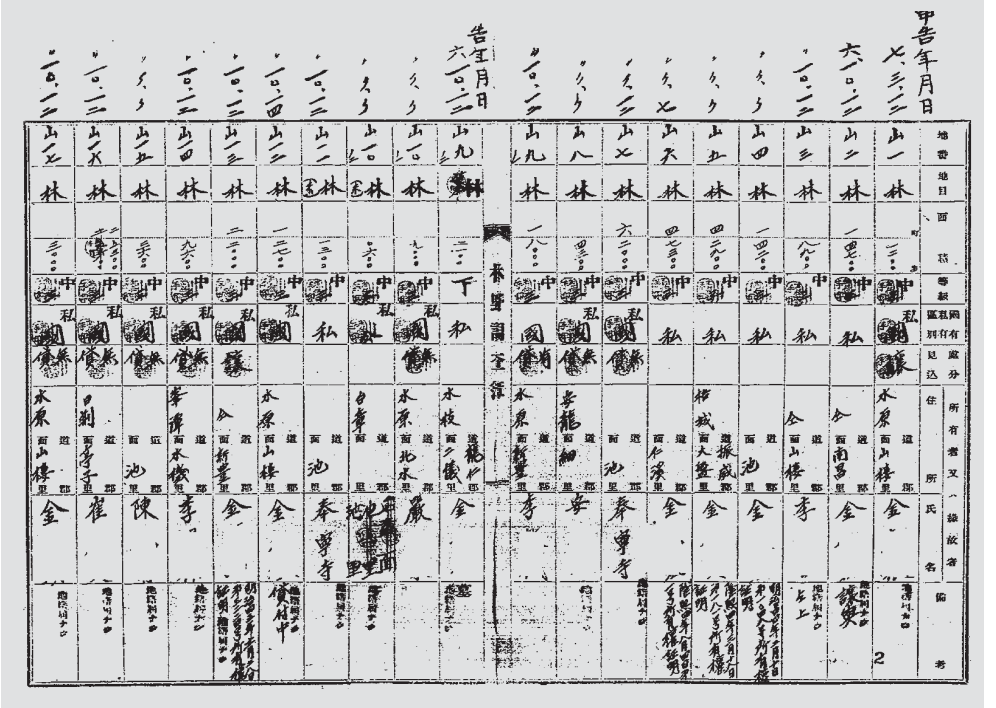


1908년 「삼림법」에 따라 「임야소유신고서」에 첨부된 임야 지적도(과천문화원 소장)

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地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야를 점유해 온 사람들은 1911년까지 임야의 점유 사실을 정식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했다. 일제는 그 절차를 밟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시행하여 임야 소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 증명문서를 발급하였다.

이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적신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실제로 신고를 이행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임야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삼림법」 제19조의 조항에 따라 1911년까지 「임야소유신고서」가 대략 52만 건 정도 접수되었고, 그 대상 면적도 220만 정보에 이르렀지만 이는 전체 임야 1,600만 정보의 15%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지적신고가 끝나면 일제가 곧바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했던 것이다. 수원 지역에서도 1908년 「삼림법」 공포 직후에 지적신고를 이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림 3〉 태장면 지리의 『임야조사부』 수원 지역에서는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임야소유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유독 적었다.

조선총독부는 1908~1911년 당시에 지적신고를 행한 임야 소유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1917년부터 다시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임야조사부』를 만들어 사정 및 등기 발부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임야조사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1908년 당시 지적신고가 이행된 임야의 경우 이를 비고란에 적어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야조사부』를 확인하면 어느 필지가 1908~1911년에 지적신고 절차를 밟았는지 알 수 있다. 임야조사사업 당시 수원군 태장면 지리(池里) 내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와 신고 일자, 처리 결과 등을 담은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이 동리 내 37필지의 임야 중에 겨우 두 곳만 지적신고 절차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의 산5번지, 6번지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지번의 비고란에는 그 소유자가 융희 4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융희 4년은 1910년으로, 이는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의 지적신고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수원군 내에서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이행한 사람은 다른 지방에 비해 유독 적은 편이었다. 이는 아마도 수원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과 만행을 직접 목도할 기회가 많았고, 일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임야세를 비롯한 갖가지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일찍부터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일제 침략에 대한 소극적 의미의 저항에 다름 아니었던 셈이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삼림법」에 따른 지적신고를 대충 마무리한 직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지적신고와 별도로 어느 산림이 국유지이고, 또 어느 산림이 민유지인지 파악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임적조사' 라고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일제는 전체 임야 중에서도 최소한 47% 이상은 원래부터 점유자가 있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 결과와 「삼림법」에 따른 지적신고 결과를 대비해 본 결과 지적신고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일제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유지라고 판명한 임야를 원래의 점유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게 된다.

혹자는 조선총독부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야를 빼앗아 국유지로 삼으려 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로서는 조선 후기 이래 상당히 황폐해져 있던 임야를 모조리 국유지로 편입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 화전과 산전 등으로 독산이 되어 버린 임야를 굳이 국유지로 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제는 대신 「삼림법」 제19조 조항에 따른 지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국유지가 되어 버린 임야를 원래의 연고자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 식림의 의무를 강제로 전가하려 했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법인데, 그 나무를 원래 연고자가 직접 심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임적조사가 끝나자마자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를 원래의 연고자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림대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림대부' 란 국유임야를 연고자 혹은 자본가들에게 빌려 주는 대신 그들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여 조림을 하도록 하고, 그 조림이 성공하게 되면 소유권을 완전히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11년에 발표된 「삼림령」이라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림대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일제는 '구분조사' 라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 중에서 조림대부를 할 대상지를 골라내는 작업이었다. 국유지가 된 임야 중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가 커서 원래의 연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땅을 '요존 국유림' 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내는 것이 이 작업의 주된 내용이었다. '불요존 국유림' 으로 구분된 경우에만 조림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림 3〉의 산12번지 비고란에는 '대부중(貸付中)'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땅이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래의 연고자에게 대부된 땅에 해당된다.

이 제도를 시행할 무렵, 조선총독부는 지적신고 미이행 사유 등으로 하루아침에 국유지로 편입된 땅의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조림대부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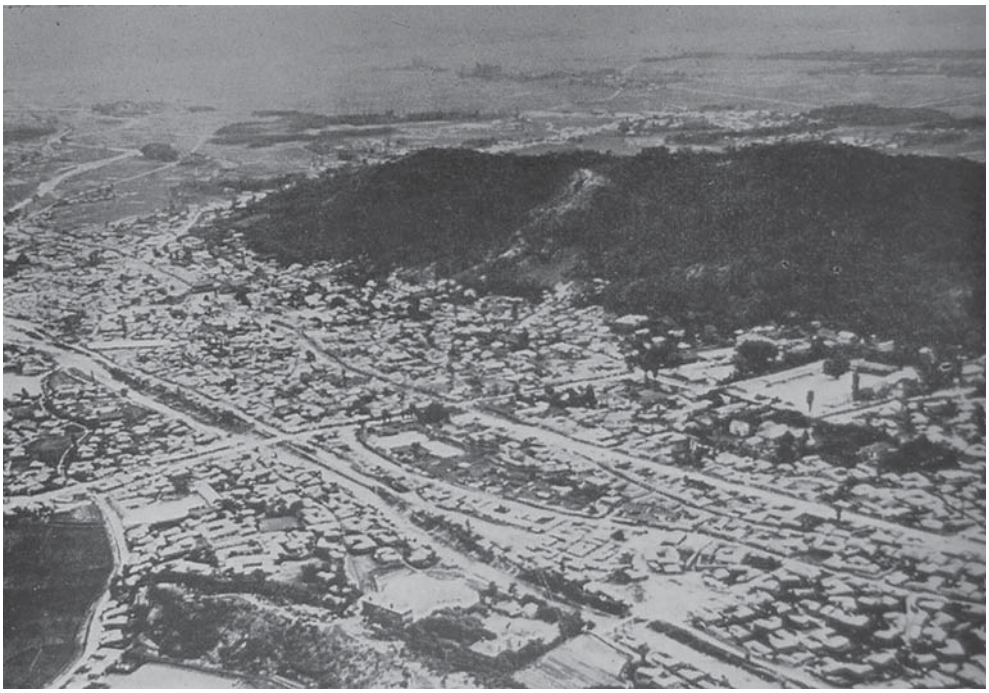
상은 그렇지 않았다. 조림대부를 받게 되면 계약에 따라 묘목을 구입해야 하고, 또 그 나무를 심어 죽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귀찮았다. 사람들은 차라리 임야를 포기할망정 엄청난 돈을 들여 조림대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임야를 갖고 있다가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로 빼앗긴 땅의 소유자는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소유권을 되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조림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황폐해 있던 임야의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한 다음, 그들에게 조림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복안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런데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포한 「삼림법」 제19조 조항에 따른 지적신고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림대부를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당초의 방침을 밀어붙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1917년부터 다시 「삼림법」 제19조 조항에 따른 지적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 신고 절차를 재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임야조사사업인 것이다.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의도에 대해 역사 연구자들의 대다수는 조선총독부가 임야를 강탈하기 위해 조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견해일 뿐이다. 조선총독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임야 소유권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모아 삼림조합을 만들고, 그 삼림조합을 통해 식목을 강제한다거나 입산을 통제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은 식목을 강제할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2. 수원군 임야조사사업의 결과

일제는 1917년 이후 임야조사사업에 돌입하여 1924년까지 사정 및 공시를 끝냈다. 임야조사사업은 부윤과 면장이 도장관의 지휘 하에 조사예정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임야를 사점한 연고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소유권자의 자격을 가졌다고 보이는 사람이 그 소유 사실을 신고하면 각 면에서 채용한 측량원이 출장하여 측량을 실시하는데, 이를 '실지조사'라고 한다. 실지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신고자와 지주총대(地主總代)가 공동으로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측량 결과는 도장관이 주관하는 사정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그 결과물을 다시 면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신고자가 확인하도록 한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야심사위원회에 이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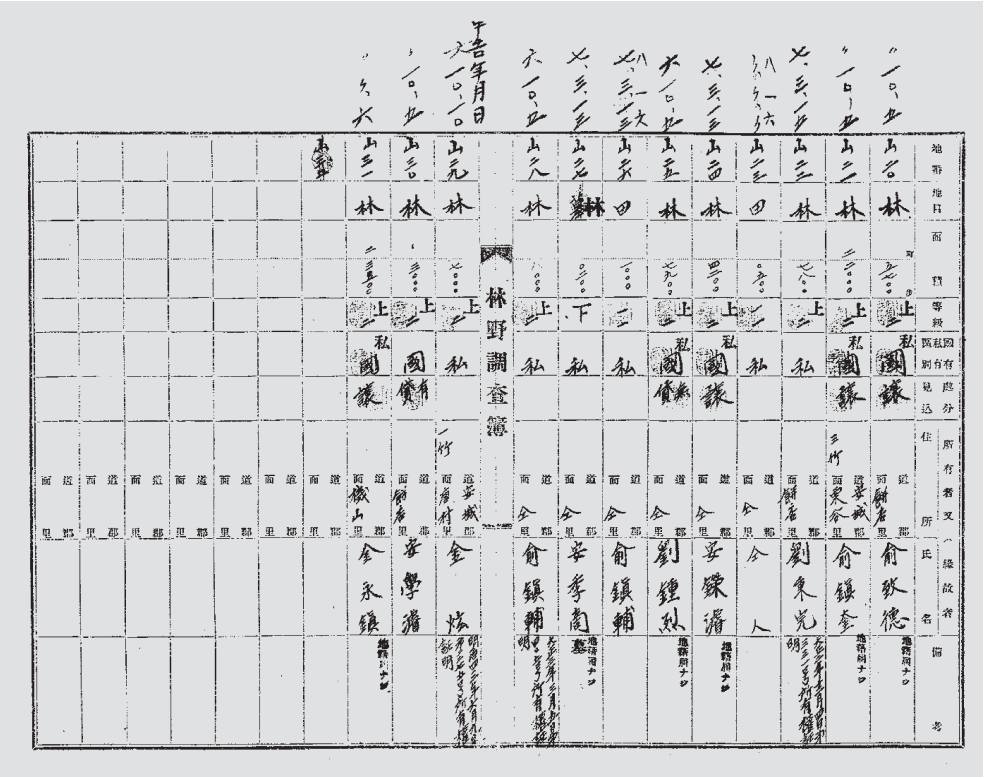
〈그림 4〉 1933년 수원의 대표적인 국유지 팔달산 전경

제기할 수 있었다.

측량 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던 지주총대는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만스럽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이의를 표시할 수 있었다. 지주총대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인물' 들로서 신고서에 적혀 있는 사실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아 보았다.

이 임야조사사업으로 그 당시까지 아직 조림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및 「삼림법」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로 다시 사정받게 되었다.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국유지가 된 땅은 적은 편이었다. 대다수 동리의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가 되었거나 조림대부를 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수원면의 팔달산은 일부 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화성이 위치한 구역 내의 산림국유지로 판정받았다.

수원 지역에서는 1908년 「삼림법」 실시 당시에 지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유독 많았다고 앞서 말한 바 있는데, 흥미롭게도 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될 때에도 지적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그림 5〉는 태장면 병점리의 『임야조사부』를 일부 제시한 것이다. 이 조사부의 '비고란' 에는 "지적계가 없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필지가 많은데, 일



〈그림 5〉 태장면 병점리의 『임야조사부』

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적계를 제출하지 않은 땅도 원래 연고자의 사유지로 처리하거나, 이를 일단 국유지로 편입시킨 다음에 강제로 조림대부를 해 버리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하에서는 현 수원시 지역에 포함된 동리들의 임야조사사업 사정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수원면 지역

1917년에 임야조사사업이 시작될 당시 수원면에서 임야가 분포한 동리로 지목되어 임야조사가 실시된 곳은 남창리(南昌里), 산루리(山樓里), 매산리(梅山里)이다. 수원면 내 임야는 12필지에 불과하였고, 그 면적은 49정보 2단보 8무(이하에서 단보 아래의 면적은 단위명을 기재하지 않고 소수점 아래의 숫자만 나열함. 예를 들어 49정보 2단보 8무는 49.28정보로 표시)였다. 이를 동리별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원면 임야조사 결과

지역	국유지		정식 절차를 밟아 사유권을 인정받아 민유지가 된 임야
	원래부터 연고자가 없어 국유지가 된 임야	연고자가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임야로서 향후 조림대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곳(또는 처분한 곳)	
남창리	3필지(26.90정보)		
산루리	2필지(10.3정보)	1필지(0.55정보)	1필지(1.85정보)
매산리	1필지(4.92정보)	2필지(4.1정보)	2필지(0.32정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시기 수원면으로 분류되어 있던 지역에는 팔달산이 자리 잡고 있다. 〈표 1〉의 남창리, 산루리, 매산리 지역에 "원래부터 연고자가 없어 국유지가 된 임야"는 거의 모두 팔달산 구역에 해당한다. 팔달산은 조선시대 이래 국가가 송금령을 내려 관리하던 곳이다. 수원 읍치가 자리 잡은 이래 팔달산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사점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도 팔달산은 국유림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그림 6〉 수원면 매산리의 『임야조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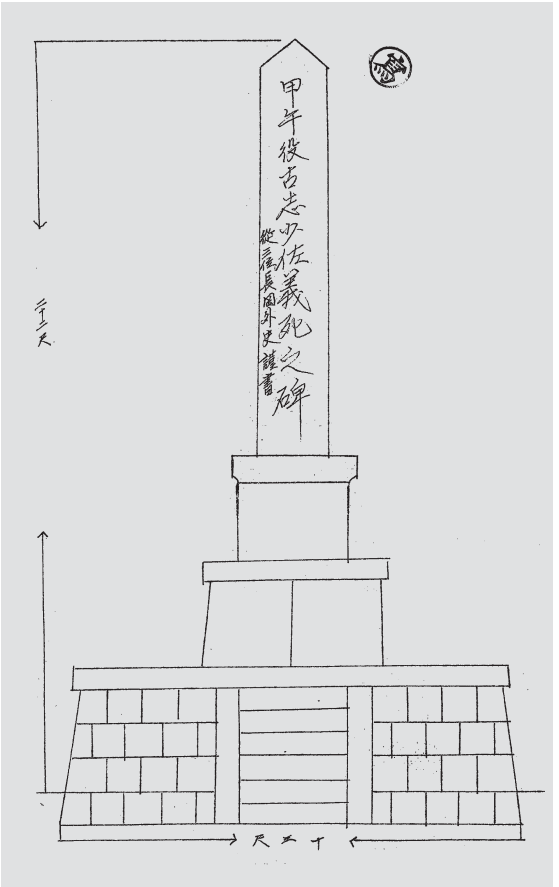
이 팔달산에는 일본인들이 만든 수원신사도 있었는데, 조선총독부는 신사가 자리 잡은 곳 일대를 국유지로 삼은 다음 이를 수원신사에 대부하였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원신사가 대부를 받은 임야는 매산리 산2번지와 3번지이다. 수원신사는 산루리 산2번지 0.55정보의 임야도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부를 받아 관리하였다.

신사가 대부받은 임야도 조림대부의 명목으로 절차를 밟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신사가 해당 임야에 대한 식목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대부계약서에 그 조림의 양과 횟수가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사가 대부를 받은 임야는 나무가 울창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서에 규정된 조림의 양도 그리 많지 않았다. 수원신사는 팔달산 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이를 점유하게 된다.

한편 팔달산에는 적은 면적이나마 민유지도 있었다. 매산리 산4번지와 5번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땅은 일본인 학교를 관리하는 수원학교조합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양여받은 땅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학교의 재정 수입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겨울철 연료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을 대거 양여한 바 있는데, 수원에서도 팔달산의 일부를 일본인 학교조합에 넘겨주었던 것이다. 한편 산루리 산3번지도 민유지로 사정되었는데, 이 땅은 수원향교가 향교재산으로 관리하던 땅이다.

팔달산을 국유림으로 삼은 일제는 1934년에 이르러 그 일부를 수원읍에 불하하였다. 수원읍은 1927년 무렵 팔달산에 공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에 정식으로 조선총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팔달산 내 100여 정보가량을 대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림 7〉「고시소좌의사기념비」 설립을 신청할 당시 수원읍에서 그려 제출한 기념비의 스케치

수원읍의 신청은 1934년에 인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그해 9월에 팔달산 공원 설립 계획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때 대부신청서에 첨부된 공원화 계획에 따르면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시설물을 완비한다고 되어 있었다.

한편 수원읍은 대부를 신청한 임야 내에 이른바 「고시소좌의사기념비(古志少佐義死記念碑)」라는 것을 만들겠다면서 1932년에 조선총독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는 수원읍이 제출한 임야 대부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해당 비석의 건립을 곧바로 인가하고, 해당 비석의 건립이 완료되면 이를 수원읍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고시 마사쓰나(古志正綱)는 청일전쟁 당시에 성환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가하고자 수원을 거쳐 간 일본군 전위부대 제21연대에 소속된 군인으로서, 급식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징발한 조선인들이 전투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이탈하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 1894년 7월 27일 자결하였다.

수원읍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고시'의 죽음을 기념한다면서 조선총독부에 해당 임야의 대부를 특별히 신청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와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임야조사사업 이후 국유지로 편입된 팔달산을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일본인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2) 태장면 지역

1914년 행정구역 정리에 의하여 수원군 태장면에 속한 동리들 가운데 현재 수원시 관내에 편입된 곳은 원천리, 매탄리, 권선리, 영통리, 인계리, 지리 일대이다. 이 구역 내에 임야가 존재하고 있어 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된 동리는 원천리, 매탄리, 영통리, 인계리, 지리이다. 이들 동리에 대한 임야조사사업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태장면 임야조사 결과

지역	국유지		정식 절차를 밟아 사유권을 인정받아 민유지가 된 임야
	원래부터 연고자가 없어 국유지가 된 임야	연고자가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임야로서 향후 조림대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곳(또는 처분한 곳)	
지리	-	2필지(2.45정보)	35필지(35.63정보)
인계리	-	-	43필지(35.65정보)
원천리	-	14필지(9.15정보)	97필지(100.17정보)
영통리	-	1필지(1.09정보)	66필지(98.45정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태장면 지역에서는 국유지로 분류된 임야가 거의 없었다. 물론 "연고자가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임야"가 17필지 정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모두가 원래 연고자에게 조림대부한 곳이었다. 즉 태장면 지역에서는 일제가 원래 연고자가 있음에도 그 땅을 따로 국유지로 분류하여 강탈한 임야가 없는 것이다.

수원 지역에서는 수원면 내의 팔달산과 광교산 일부 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임야가

사유림으로 사정, 공시되었다. 태장면 내 임야도 모두 원래부터 연고자(혹은 점유자)가 있는 곳으로 조선임야조사사업으로 대부분 사유지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수원 내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이행한 사람이 상당히 적었다. 그 때문에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신고가 완료된 1911년에 국유지가 된 곳이 많았는데,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 대다수가 조림대부도 신청하지 않은 채 1917년 임야조사사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땅을 거의 모두 원래의 연고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지역에서 사유지로 결정된 임야의 상당수는 문중 소유의 선산이거나 개인 소유의 묘지 터였다. 문중 소유 선산의 경우에는 해당 가문을 대표하는 복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형태를 띠었다. 개인이 별도로 소유한 묘지 용지는 상당히 적은 면적이었는데, 1910년대에는 「묘지규칙」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땅에 묘를 쓰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들 임야의 거의 전부가 그 소유자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사실 이 지역에서 사유지로 분류된 곳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렇게 독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일제는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임야의 소유자를 묶어 수원군삼림조합을 결성하였다.

삼림조합은 군을 단위로 하는 임야 소유자들의 조직이다. 삼림조합은 임야조사사업 종료 즉시 만들어졌는데, 그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조합장이 되어 군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킨 관제조직이었다. 이 조합에는 임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조림대부를 받은 사람까지 가입되어 있었다.

삼림조합은 조합원에게 산불 방지활동, 송충이 구제, 벌채 제한, 묘목 구입과 식수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징수한다면서 조합비도 거두어들였다. 이 삼림조합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 시행한 것은 이른바 '임목벌채지도'였다. '임목벌채지도'란 조합원 소유림 및 대부림 내 수목의 벌채를 완전히 금지하고 정해진 기일에만 군직원의 감독 하에서 지엽 정도를 채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로 조선인들은 자신의 소유지에서도 마음대로 벌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 단위 삼림조합은 1931년 무렵에 그 조직이 대충 마무리되는데, 임야조사사업 직후부터 이때까지 전국의 220개 군·도(島) 가운데 함경도 지역의 10개 군을 제외한 곳에 모두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국의 삼림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조합비의 총액은 1년에 280만 원가량이었다.

삼림조합 세출은 사무비와 회의비 등 삼림조합 업무 담당 군청 직원의 급여 혹은 사무 관련 지출에 쓰였는데, 총독부는 이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927년 1월 「삼

림조합보조규칙」을 제정하고 이후 매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동 규칙에 따르면 삼림조합 보조금은 "우수한 기술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1개 조합에 대하여 기수 1명에게 지급하는 1년치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였다. 보조금 교부를 받는 기수는 2년 이상 판임관 대우 이상의 직에 있으면서 임업에 관한 기술에 종사한 자, 5년 이상 관공서 혹은 삼림조합에서 임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수학 연한 2년 이상의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관공서 혹은 삼림조합에 3년 이상 종사하면서 임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각 삼림조합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조합 규약과 현황(조합원수, 조합 가입 임야 면적, 조합비 징수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도지사를 경유,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했다. 수원군삼림조합도 이 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조합보조금교부신청서를 경기도삼림조합연합회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

3) 일형면 지역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일형면 지역에서 임야 조사가 실행된 동리는 고등리, 지소리, 하광교리, 상광교리, 동리, 서둔리, 파장리, 조원리, 송죽리, 율전리, 이목리 등이다. 이 지역들에서 실시된 조사사업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일형면 지역에서 '원래부터 연고자가 없어 국유지로 편입된 임야'는 모두 20필지 172.78정보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시기 태장면 지역의 임야조사사업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원래 사유지였던 것을 강제로 국유화한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국유지로 분류된 임야는 팔달산 구역 내에 위치한 것이거나 지지대고개 혹은 광교산에 자리 잡은 곳이었다. 상광교리의 경우 광교산 일대 88정보 가량의 임야가 산1번지로 묶여 국유지가 되었는데, 이곳은 산 중턱 이상의 지대로서 산 아래의 주민들이 드나들기에 다소 불편하였다. 마을과 떨어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산림 지대는 조선시대에도 이를 점유한 사람이 없었고, 그 때문에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국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파장리 산45, 산46, 산75번지는 모두 지지대고개에 위치한 임야이다. 이 땅도 임야조사사업 당시까지 점유자가 없던 곳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유지로 사정되었다. 일제는 이렇게 연고자가 없어 국유지가 된 땅을 '불요존 국유림', '요존 국유림'으로 나눈 후 요존 국유림은 영림창·영림서 혹은 조선총독부 산림과출장소가 관리하도록 하고, 불요존

〈표 3〉 일형면 임야조사 결과

지역	국유지		정식 절차를 밟아 사유권을 인정받아 민유지가 된 임야
	원래부터 연고자가 없어 국유지가 된 임야	연고자가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임야로서 향후 조림대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곳(또는 처분한 곳)	
고등리	1필지(11.05정보)		2필지(7.03정보)
지소리	6필지(12.75정보)	6필지(11.16정보)	15필지(18.58정보)
하광교리		8필지(55.21정보)	65필지(309.53정보)
상광교리	2필지(93.33정보)	17필지(128.13정보)	76필지(360.32정보)
동리	1필지(11.68정보)	8필지(21.62정보)	34필지(47.23정보)
서둔리	6필지(39.90정보)		7필지(4.39정보)
파장리	3필지(4.07정보)	29필지(70.03정보)	112필지(333.85정보)
조원리		2필지(1.91정보)	25필지(106.50정보)
송죽리		16필지(21.52정보)	16필지(33.10정보)
율전리		5필지(12.19정보)	46필지(42.53정보)
이목리		22필지(30.64정보)	48필지(137.35정보)

국유림은 유상대부의 방식으로 민간에 대부 · 양여하였다(원래 연고자가 있는데 지적신고 소홀로 국유지가 된 땅은 불요존 국유림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되어 있음).

영림창은 1907년에 요존 국유림의 관리를 위해 일제가 설립한 기관이다. 영림창은 1926년 '임정 통일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고, 그에 대신해 전국 주요 36개소에 영림서가 설치되었다. 이후 수원 지역의 요존 국유림은 경성영림서가 관할하게 되었다.

수원 지역에 위치한 임야 중 요존 국유림은 팔달산 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 요존 국유림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대부할 수 없는 임야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불요존 국유림으로 지정한 후 민간에 대부할 수 있었으며, 군사 혹은 기타 산업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요존 국유림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대부할 수 있었다. 파장리와 상광교리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국유림은 모두 팔달산 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요존 국유림에 해당하는데, 서둔리 산1~6번지는 요존 국유림이기는 하지만 팔달산에 연접하여 자리 잡은 곳이 아니라 권업모범장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해당 기관의 시설로 편입되어 있었다.

권업모범장은 1906년 공포된 「권업모범장관제」에 따라 그해 6월 수원 서둔리에 개장한 기관으로서 목포, 군산, 평양, 대구 등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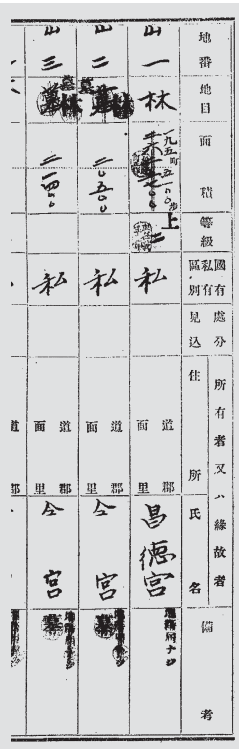
들어선 후 이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으며, 수원농림학교를 부속학교로 흡수, 농업지도자 교육을 병행하였다.

4) 안룡면 지역

임야조사사업 당시 안룡면 지역 내에서 임야조사가 실시된 곳은 배양리, 안녕리, 송산리, 황계리, 기안리, 오목천리이다. 이 동리 중에서 배양리, 안녕리, 송산리, 황계리, 기안리에는 유독 '창덕궁'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임야가 많다. 이는 이 지역에 융건릉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왕이나 왕비의 능은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창덕궁 혹은 덕수궁의 명의로 사정을 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융건릉이 위치한 지역은 융건릉을 포함한 일정 구역을 조선시대에도 금양해 왔는데, 해당 금양 구역을 창덕궁의 소유로 사정해 준 것이다. 참고로 이 동리들은 현재 수원시 관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

안룡면 임야조사사업 실시 구역 내에 위치한 동리로서 현재 수원시에 편입되어 있는 곳은 오목천리이다. 오목천리 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는 모두 45필지로서 그중 '연고자가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지적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지가 된 임야'는 8필지로서, 그 대부분이 원래의 연고자에게 조림대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외의 임야는 모두 사유지로 사정되었다.

현재는 오목천리 일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임야가 상당수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동리의 인근에 수원역이 위치해 있는데, 당시 일본인 중에는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역 부근 땅의 지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전답 혹은 임야를 매입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목천리 일대 임야의 소유자 중에는 야마다 나오야(山田直矢)라는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는 오목천리에서만 11필지, 약 10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임야조사부』에는 야마다가 소유한 땅 가운데 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야마다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를 모시기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역에 어느 주민이 금양하고 있던 묘역을 모두 구매한 다음 묘를 정리하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이를 매도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8〉 안룡면 『임야조사부』
창덕궁 소유로 표시되어 있다.

야마다 나오야는 미이케탄광(三池炭礦)의 사무장을 지낸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광부로 채용하여 후쿠오카 등지에서 광산을 개발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사정에 밝아 경부선 철도가 만들어진다는 정보도 이른 시기에 입수한 듯하며,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야 매입에 나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수원 지역 사유 임야의 대다수는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광교산과 팔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임야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장작을 구하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임야는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땅이 대부분이다. 오목천리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가 이 땅에 그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면서 조선인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던 묘 터까지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임야는 대부분 사유지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 임야의 주인들은 삼림조합에 매년 조합비를 물어가면서도 강제로 조림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3. 수원면 면유재산에 포함된 임야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조선면제'를 실시하면서 면의 재산을 확충하여 면 행정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었다. 이를 위해 면내 여러 동리들이 가지고 있던 동리재산을 모두 면유재산(面有財産)으로 이체시킨다는 계획을 입안하였다. 실제로 1916년 3월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각 도 영림창 임무주임회의'에서 "장래 적당한 시기에 동리재산을 면유재산으로 이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동리재산이 바로 임야였다. 당시 일제 당국자는 "소위 부락유림이라고 하는 것은 면내의 일부, 즉 구시의 행정단위인 동리(洞里) 또는 현시의 행정구역 내의 일구(一區)에 속한 임야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면제에 의하면 부락유재산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없고, 그래서 현재 소위 부락유재산은 법제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부락유림은 결과에 있어서 특정의 부락민에 대하여 특정의 임야에 무주공산시대 공동사용의 관행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임야황폐의 원인이 된다. 면내 소면적의 부락유림이 산재하여 각자 독립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임업의 성질에서 통일된 면유림에 비하여 불경제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부락유림을 통일하고 연후 그 정리에 착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조선총독부는 임야조사사업 직후 동리 소유 땅으로 판명된 임야 혹은

실제로는 동리재산이면서도 이장 등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임야를 면유림으로 강제 편입시키려 하였다.

동리 소유 임야의 면유재산 편입은 대개 '기부'의 형식으로 강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도 면이 소유한 임야가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자료상의 문제로 수원면의 면유 임야 면적 증감 추이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수원면 소유 임야 면적

(단위 : 평)

구분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면적	17,750	17,750	141,230	141,230	130,640	130,640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원면은 1930년 이래 면유 임야를 늘려 왔는데 1935년에는 그 면적이 13만 640평이 이르러 불과 5년 만에 11만 2,000여 평의 땅을 면유재산으로 편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땅의 대다수는 동리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던 임야거나 국유지를 유상으로 대부받은 것이다.

일제는 면유재산으로 편입한 임야를 장작 채취지로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고, 그 수입으로 면의 세입을 늘리려 했다. 그러나 이 면유림의 대다수가 독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면유림 조성비'라는 항목의 세출을 각 면에 두도록 하여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면유재산으로 생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수원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원면세입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수원면이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지출한 면유림 조성비의 액수와 면유림에서 발생한 수입을 보면, 수원면 소유 임야에 면민들이 장작 채취 대금으로 납부한 돈은 전혀 없었고, 이 땅에 나무를 심기 위해 수원면이 지출한 돈만 1,8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수원면유림으로 편입되어 있던 임야에 나무가 없는 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면은 이 임야의 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수원 사람들은 임야조사사업 이후 들어선 삼림조합 때문에 자기 소유의 임야에서 장작을 마음껏 마련할 수 없었다. 수원면유림 등에서 장작을 채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임야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은 당시 겨울철 장작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삼림조합비를 납부하느라 가계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조석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농지개혁 연구 동향과 과제
2. 「농지개혁법」의 제정과 분배농지의 확정
3. 수배농가의 변화
4.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와 영세 자작농체제의 성립
5. 요약 및 정리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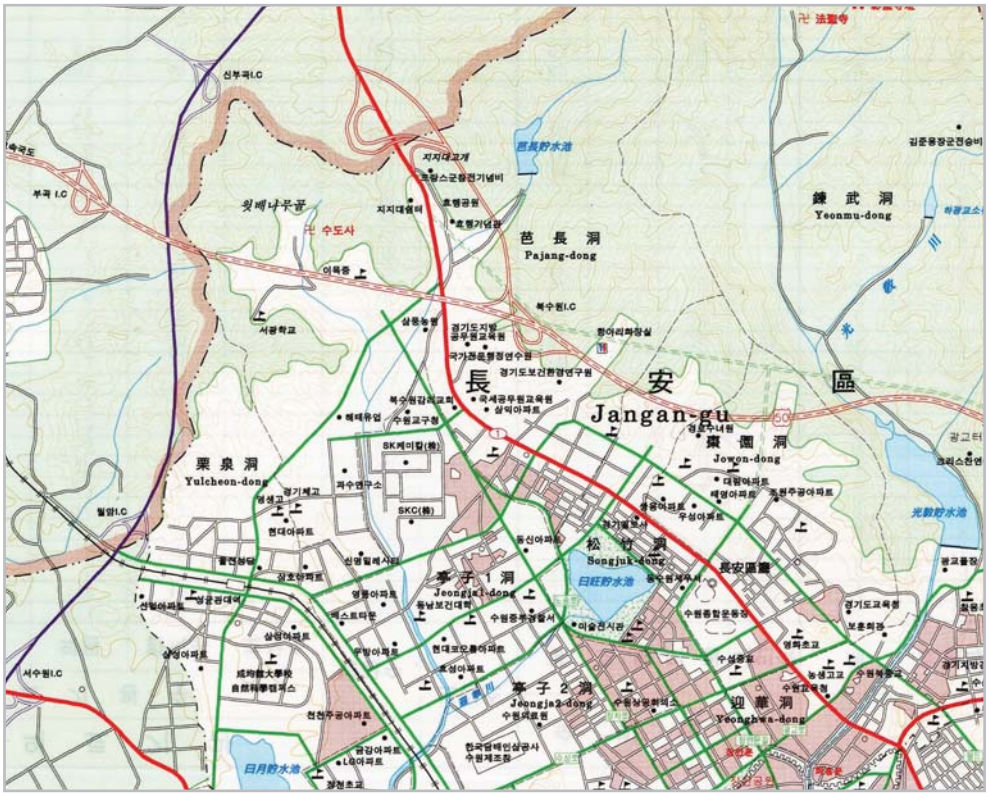
해방 후 수원의 농지개혁

_『토지대장』과 『상환대장』을 통해 본 일왕면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 연구 동향과 과제

해방 후 한반도 최대 관심사는 한민족과 연합국 모두에게 새로 세워질 정부의 형태였다. 1945년 이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논의는 이처럼 외국 군대가 잠정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민족에게는 불행스럽게도 점령군인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는 서로 달랐고, 결국 남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된다는 점에는, 방법론을 별도로 한다면, 두 강대국에 큰 이견은 없었다. 식민지시기 공업화가 진전되기는 했지만 전체 인구의 과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한의 경우는 농가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80%에 달할 정도였다. 남한 농민의 대략 70%는 소작인이었기 때문에 소작지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주민 절반 이상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토지개혁은 민족국가 수립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국내 정치지도자들이건, 국민국가 수립



〈그림 1〉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연무동(「수원시 행정지도」, 1/31,000)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미국과 소련 정부이건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먼저 국내 정치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생 국가의 경제적 과제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일본과의 역외 분업구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재생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 글의 주제인 농지문제에 국한해서 본다면 일본으로 값싼 조선산 미곡을 이출하는 기구로 작용했던 식민지 지주제를 해체하고, 그것을 대신할 자작농체제를 수립하여 새롭게 태어날 민족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어야 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민족적 욕구이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략적 선택이건 간에 농지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적대적인 입장의 정권이 들어서길 원치 않았다. 한반도 남쪽을 통치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 자본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권이 수립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

신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서라도 그러한 입장을 관철하고자 했다. 1946년에 일찌감치 토지개혁을 단행했던 북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 토지개혁의 실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농지개혁의 실시는 제헌헌법에도 명문화되었다.[1] 그러나 농지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는 1년가량이 더 소요되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된 것은 해를 넘긴 1950년이었다. 농지개혁의 실행방식을 둘러싸고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실시한 농지개혁이 실제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수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한 자료는 현재 장안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과 『상환대장』, 그리고 농지개혁 관련 자료이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이 글에서는 상광교리 · 하광교리 · 파장리 · 이목리 등 4개 리(이하에서는 '일왕면 4개 리'라 함)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2] 파장리와 이목리는 행정동으로는 파장동에 속하며, 상광교리와 하광교리는 연무동에 속한다. 연무동에는 구 연무리 지역도 포함되지만 수배 농가대장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 파장동과 연무동은 수원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진행이 더딘 곳이기 때문에 농지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 이러한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농지개혁 연구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이는 농지개혁 연구사의 현 단계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보관되어 있는 농지개혁 자료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체제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의 가장 큰 의의는 신생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농지개혁은 지주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남한에서 자본주의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지만, 빈농에게

1 제헌헌법 제86조에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 4개 리는 일제시기에는 수원군 일형면에 속했다가 1936년 의왕면과 통합하여 일왕면이 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수원군의 명칭이 화성군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화성군 일왕면이 되었다. 이후 1963년 구 일형면 지역은 수원시에, 구 의왕면 지역은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88년 수원시가 2개 구로 개편되면서 장안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농지개혁 관련 서류들이 현재 장안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자료 이용에 큰 도움을 주신 수원시사편찬위원회 및 장안구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구 일형면 지역에서 현재 장안구청에 속한 지역은 총 11개 리이며, 이 중 농지개혁 관련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상환대장』·『분배농지부』가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은 정자 · 파장 · 조원 · 상광교 · 하광교 · 천천 · 이목 등 7개 리이다.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소유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 국가는 남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적어도 1980년대 이전까지 농지개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 불철저함을 주장하는 논의가 많았다. '불철저성'의 근거는, 분배대상 토지를 농지에 한정하여 삼림 등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상몰수·유상분배라는 '온건한' 형태의 분배방식을 택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농지개혁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토지들이 사전에 방매되었고, 여러 예외 조치들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분배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등 다양하였다. 이 때문에 토지개혁을 통한 자립농가 육성은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농지개혁 이후 소유 규모의 영세화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았다.[3]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충남 서산군을 대상으로 한 장상환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농지개혁사연구』는 그러한 변화를 집대성하여 보여 주었다.[4] 이전 연구들이 「농지개혁법」의 입법 과정 연구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후의 연구는 농지개혁에 관한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지주제의 해체와 자작농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쪽으로 변화하였다.[5]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이례적 성공 원인의 하나로 남한 농지개혁의 성공이 지목되었다. 이들은 농지개혁의 역사적 과제는 기본적으로 지주제 해체 및 자작농체제의 확립이었는데, 이를 기초로 농지개혁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6]

그러나 농지개혁의 성과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농지개혁에 관한 최근 연구는 농지개혁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농지개혁의 상호관련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7] 정승진과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는 농지개혁을 1950년에 종료된 것이

3 김준보, 『한국자본주의사연구(II)』, 일조각, 1970; 유인호, 「해방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I, 한길사, 1980;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박현채, 『한국경제와 농업』, 까치, 1983.

4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 『경제사학』 8, 1984;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 『경제사학』 9, 1985; 김성호 외, 『한국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5 박석두, 「농지개혁과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경주 이씨가(李氏家)의 토지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1, 1987; 박희진, 「농지개혁을 통한 50년대 한국자본축적-농가수지를 중심으로 경북 월성군 서면 사라리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류기천, 「농지개혁과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충남 연기군 남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4, 1990; 조석곤, 「원주의 농지개혁과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 『원주사회연구 I』, 한울, 1998; 이종범, 「20세기 중반 농지개혁과 농촌사회변동-전라남도 구례군 사례」, 『역사학연구』 19, 2002; 정승진,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8, 2004.

6 이지수, 「해방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장시원,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성립의 역사적 의의」,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3. 경제』, 1995; 김일영,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1, 2000; 장상환,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6-1, 2000;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아니라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일련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켰으며, 하유식은 농지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한 합리성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혀 냈다. 조석곤은 수분배농가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한국전쟁 이후 농촌사회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탐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수원시 농지개혁을 분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 동향과 연결되어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진행된 농지개혁의 실상은 어떠하였으며, 그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농지개혁의 역사적 성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이 글의 연구과제이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개혁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의 입안 과정과 그에 따라 분배농지가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분배농지 전매매(轉賣買)에 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농지개혁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1960년대 후반 이후까지의 토지 소유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농지개혁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고 논의를 요약한다.

2. 「농지개혁법」의 제정과 분배농지의 확정

1) 「농지개혁법」의 제정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소 양대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했던 지역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정파들이 신생 독립국가의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이는 남한 농지개혁의 실현 방식을 규정하는 내적 ·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한 농지개혁을 규정한 외적 요인으로는 북한에서 실시한 토지개혁과 토지개혁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이, 내적 요인으로는 농지개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이승만과 이를 제어하려는 한민당(지주계급의 정당)의 입장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적 요인부터 살펴보자. 1946년 3월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 무상분배의 원칙 위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몰수대상은 모든 일본인 소유 토지, 모든 조선인 지주의 소

7 정승진 · 松本武祝,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한국경제연구』 17, 2006; 조석곤, 「농지개혁당시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46, 2009; 하유식, 「농지개혁 후 울산군 상북면의 정치지배층과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지역과 역사』 27, 2010; 조석곤,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 지주 농민의 입장-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2011; 조석곤,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2013; Cho,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 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013.

작지로 하며 몰수된 토지는 고농(雇農)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 등에게 분배되었고, 자경 의사가 있는 지주는 타 지역에 이주한 경우에만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다. 분배방법은 토지를 농가의 가족수와 노동자수에 따라 분배하는 점수제를 채택하였다. 북한이 서둘러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은 당연히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이 남한에 진주할 당시 농지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1945년 11월 모든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귀속재산에 편입함으로써 식민지 지주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귀속농지의 매각을 통해 상환곡으로 식량을 확보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미군정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동기였다. 사회주의세력이 농지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를 시행하지 않고서 남한 지역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귀속농지의 매각에 대해 남한 내의 좌우익은 모두 반대했지만,[8] 미군정은 1948년 3월 「귀속농지매각령」을 공포하고, 상환곡은 평균 수확량의 300%를 매년 20%씩 15년 분할 상환하게 했다.

미국이 이처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귀속농지의 분배를 단행한 것은 농지개혁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한민당 계열의 세력이 많았던 '입법의원' 에서 귀속농지의 분배안이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부 수립 이후 자칫 농지개혁이 유명무실화될 경우 정치적으로 지게 될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하튼 북한과 미국이 설정한 범위는 이후 남한 농지개혁의 방향타가 되었다. 북한은 농지개혁을 기정사실화했으며, 미국은 우파의 유상몰수 · 유상분배 방안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당시 남한에 있던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농지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주-소작관계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결코 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두고 크게 3가지 안이 대립하였다. 한민당은 지주계급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대변하여 유상매수 · 유상분배안을 제시하였고, 사회주의 계열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무상몰수 · 무상분배안을, 그리고 중도파는 체감매수 · 무상분배안을 주장하였다.[9] 하지만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되고 1948년 귀속농지 분배가 단행된 시점에 이르면 우파의 안이 기정사실화되었다.

8 좌익과 우익 모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인 손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동상이몽이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주된 논쟁은 지주에 대한 보상 및 농민의 상환율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하였다.[10] 농지개혁에 관한 정부 시안은 1948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통상 '농림부안' 이라고 부른다. 이는 유상매수 · 유상분배 방식을 취한 것이었지만, 매수가는 평년 소출의 150%였고, 분배가는 120%였다는 점에서 중도파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이는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조봉암의 진보적 성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부안' 은 먼저 행정부서인 기획처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획처에서는 매수 및 분배가를 평년 소출의 2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안을 1949년 2월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농지개혁법안을 작성하였다. 한민당 소속 이훈구 의원이 주도한 '농림분과안' 은 산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949년 3월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산업위원회안' 은 귀속농지 분배안과 마찬가지로 매수가와 분배가로 평년 소출의 300%로 상정했고,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주 편향의 산업위원회안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웠으며, 본회의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매수액 150% 상환액 125%로 수정되었다. 그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이 '본회의안' 은 1949년 4월에 확정 ·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안'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예산상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개정을 전제로 법안을 정부에 재이송하고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은 일단 공포되었다. 결국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에서 매수가와 분배가는 150%로 확정되어 1950년 3월 10일 공포되었다.

2) 분배농지의 확정[11]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공포 과정과는 별도로 농림부에서는 농지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첫 단계가 농가실태조사였다. 농가실태조사는 "경작의 실태와

9 '체감매수 · 무상분배' 방식은 자경한도를 벗어나는 면적을 체감률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의 국가관리제도로서, 좌파와 우파의 주장을 일부씩 수용한 안이다. 하지만 지주에게 보상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매우 희박한 안이었다.

10 이에 관한 논의는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가 자세하다. 이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보상률 · 상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1 농지개혁이 현지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조석곤,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 지주 농민의 입장–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2011이 자세하다. 비록 남종면의 사례이지만, 농지개혁의 실시 과정은 날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석곤의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서술한다.

농가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지개혁의 기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농가단위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수와 그 노동력, 기타에 종사하는 가족수, 농가의 경작면적 및 수확고, 가축 및 양잠, 농기구, 경작가능면적 등을 조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농가실태조사 신고표」를 작성하였다.[12] 조사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 노동 · 자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농가별 분배면적을 조사하고자 한 조처였다. 북한 토지개혁에 적용된 점수제에 대응한 사전 준비이기도 했다.

농가실태조사의 기준일은 1949년 6월 21일, 즉 「농지개혁법」의 공포일이었다. 시행령이 없어 실효는 없는 법이었지만, 농림부는 이 날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농지개혁을 시작한 것이었다. 1949년 12월 집계된 농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는 247만 3,833호이고 경지면적은 전답 207만 577정보였다. 그중 매수면적이 60만 1,097정보(29%)에 달하였고, 귀속농지 23만 2,833정보를 합하면 분배 대상농지는 83만 3,930정보(40.3%)였다. 총호수 중 자작농은 92만 5,218호(37%)였으며, 나머지는 소작 혹은 소자작농이었다.[13]

농림부는 농가실태조사와 함께 실지조사를 통해 「농지소표」도 1949년 12월 말까지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지조사의 지침이 될 「농지소표취급요령」이 1950년 2월에야 전국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다. 농가실태조사가 농가단위의 대인조사(對人調査)였다면, 「농지소표」 작성은 필지 단위의 대지조사(對地調査)였다.[14] 「농지소표」는 사실상 농지개혁의 근거가 된 최초 문서로 보아도 좋은데, 그 이유는 해당 필지의 자작 · 소작 여부의 조사가 분배농지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필지별로 작성된 「농지소표」는 경작자별로 집계해서 『경작자별농지일람표』를 만들고, 해당 농민들에게 열람토록 했다.[15] 열람이 끝난 후 분배 대상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분배예정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상환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분배 확정통

12 농지 제303호, 「농가실태조사요령」, 1949년 5월 20일(『자료집』 2, 1쪽).
13 농림부, 『농지개혁통계요람』, 1951, 45쪽.
14 농지 제24호, 「농지소표 취급에 관한 건」, 1950년 2월 3일(『자료집』 2, 4쪽). 「농지소표」는 일단 지세명기장에 기초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지주의 주소 · 성명 등 공부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기입하였다. 이를 부락별로 편철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 후 각 부락으로 송부하면, 부락에서는 지적도를 휴대하고 필지별 대지조사를 실시한다. 대지조사 시에는 자소작 여부, 지목 · 지적 등의 실제와 공부상 상위 여부, 미등록지 · 면세지 여부, 주재배작물명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입한다.
15 『경작자별 농지일람표』는 3월 1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10일간 열람시키도록 하였다. 농지 제114호,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에 관한 건」, 1950년 2월 24일.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일정을 맞추지는 못하였다. 조석곤,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2013. 또 한국전쟁 와중에서 「농지소표」가 유실된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1951년 초 새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농지 제121호, 「농지개혁 실시 및 임시조치에 관한 건」, 1951년 3월 14일(『자료집』 2, 7쪽).

지를 대신하게 하였다.[16] 이상의 과정을 보면 파종 전에 농지 분배를 완료하려는 농림부 당국자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농지소표」 작성 단계에서 매수농지로 파악되었다는 것은 그 토지의 지주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성호의 지적은 과언이 아니었다.[17]

일왕면 4개 리의 경우 최초 분배면적은 얼마나 되었을까? 아쉽게도 『경작자별농지일람표』가 없어서 필지별 자소작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배농지수배대장』이라는 장부가 남아 있어 농지개혁 초기의 분배농지 현황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작성 연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환대장』 작성을 전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18]

〈표 1〉에는 일왕면 4개 리의 리별 매수 · 귀속별 수배농지의 면적과 상환량을 정리하였다. 일왕면 4개 리의 수배농가(농지를 한 필지라도 분배받은 농가)는 모두 237호였으며, 파장리 거주자가 100호로 가장 많았다. 분배농지의 면적은 145.3정보(43만 6,149평)였으며, 상환량은 4,711.5석이었다.

분배농지 중 매수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에서는 85.6%였고, 상환량에서는 86.4%였다. 전체 분배농지에서 귀속농지가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환량도 그 정도 수

〈표 1〉 일왕면 4개 리의 매수 · 귀속별 수배농지의 면적과 상환량

구분	리	분 배 농가수	매수농지			귀속농지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계
면적 (평)	상광교	34	18,404	13,552	31,956	9,287	1,145	10,432	27,691	14,697	42,388
	하광교	41	19,793	20,111	39,904	13,127	12,905	26,032	32,920	33,016	65,936
	이목	62	39,309	70,038	109,347	6,295	5,272	11,567	45,604	75,310	120,914
	파장	100	56,093	135,970	192,063	5,376	9,472	14,848	61,469	145,442	206,911
	계	237	133,599	239,671	373,270	34,085	28,794	62,879	167,684	268,465	436,149
상환량 (석)	상광교		135.1	182.2	317.3	65.8	10.5	76.3	200.9	192.7	393.6
	하광교		145.0	273.3	418.4	93.9	171.1	265.0	238.9	444.5	683.4
	이목		287.7	885.9	1,173.6	50.8	69.1	119.9	338.5	955.0	1,293.6
	파장		382.6	1,780.4	2,162.9	37.9	140.1	178.1	420.5	1,920.5	2,341.0
	계		950.4	3,121.8	4,072.2	248.5	390.9	639.3	1,198.8	3,512.7	4,711.5

출처 : 일왕면, 『분배농지수배대장』.

16 농지 제339호,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건」, 1950년 4월 3일(『자료집』 2, 5쪽).
17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615쪽.
18 1956년 4월 당시의 소유자 변동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기록 방식은 원래 수배자 성명을 횡선으로 그은 후 그 내용을 적고 있다.

준인 것으로 보아 일본인 지주 소유지와 조선인 지주 소유지 사이에 큰 생산성 격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목별로는 매수농지와 귀속농지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매수농지는 답의 비중이 컸던 반면, 귀속농지는 전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들이 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리별로는 하광교리에 귀속농지의 비중이 높았다.

그럼 이 분배농지의 규모를 1953년 말 일왕면 4개 리의 경지 규모와 비교해 보자. 1953년 말 경지 규모는 『토지대장』으로부터 계산하였다. 1953년도 말을 택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19] 〈표 2〉는 1953년 말 일왕면 4개 리의 경지 필지수와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53년 말 일왕면 4개 리의 경지 필지수와 면적

지역	필지			면적(평)		
	전	답	계	전	답	계
상광교	282	141	423	136,735	69,145	205,880
하광교	289	208	497	113,913	119,119	233,032
이목	285	223	508	151,217	128,926	280,143
파장	303	211	514	161,827	134,145	295,972
계	1,159	783	1,942	563,692	451,335	1,015,027

출처 : 수원시, 『토지대장』.

일왕면 4개 리의 총경지 필수는 1,942필지에 338.3정보였다. 〈표 1〉의 분배면적 145.3정보의 4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전체 경지에서 분배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3%였음을 살펴보았는데, 일왕면 4개 리의 분배농지 면적은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농지의 비중을 보면 전국은 29.0%인 데 반해 일왕면 4개 리의 경우는 36.8%에 달한다. 그에 반해 귀속농지의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일왕면 4개 리의 경우는 귀속농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전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일본인 지주제 발달 정도는 보잘 것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 지주에 의한 소유면적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서울과 수원이라는 도시를 끼고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조선인의 토지 집적이 집중

19 한국전쟁 기간에 토지 매매가 활발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농지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의 매매는 엄격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1953년을 택한다 하더라도 농지개혁 직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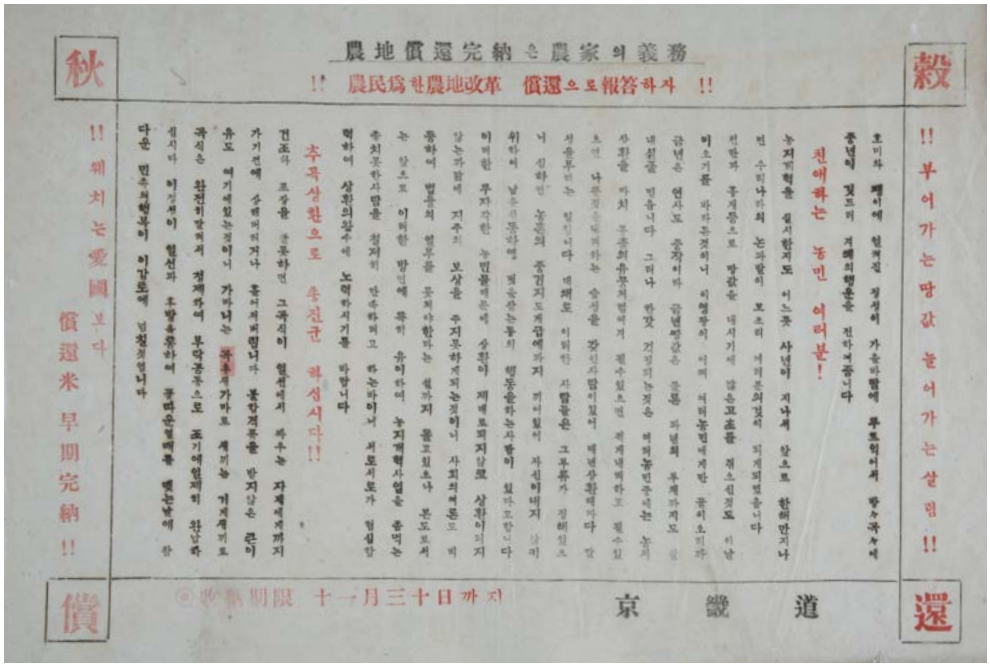
리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 격차는 〈표 1〉에 표시된 분배농지의 격차보다는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광교리가 20.6%로 가장 낮았으며, 파장리는 70.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광교리는 28.3%로 상광교리와 유사한 수준을, 이목리는 43.2%로 이 지역 평균 수준과 유사하였다.[20]

그런데 〈표 1〉의 작성 근거가 된 장부는 「농지개혁법」이 정한 공식장부는 아니었다. 그리고 〈표 1〉은 수배농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농가가 일왕면 4개 리 이외 지역에 소유한 분배농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표 1〉의 면적은 일왕면 4개 리의 분배농지 면적은 아니다. 하지만 공식장부인 『상환대장』에서 분배농지의 면적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농지개혁은 이론상으로는 1950년에 상환을 개시하여 1954년에 상환과 보상을 완료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종료하도록 계획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일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상환 및 보상 업무는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농지와 관련된 수배농가의 변화나 토지정보의 변화는 『상환대장』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농지개혁 사무가 완료되어 갈 즈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농지개혁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분배농지의 매매가 현실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상환대장』의 정보가 토지에 관한 기본 장부인 『토지대장』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전자의 문제는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와 관련된 정리 과정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지개혁은 「농지소표」 작성 당시 『지세명기장』과 실지조사를 통하여 분배 대상농지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장부, 즉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은 소유권 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또 지적도에는 한 필지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명이 나누어 소작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

20 파장리의 경지 중 70.0%가 분배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표 1〉의 리는 수배농가의 주소지이며, 〈표 2〉의 리는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다. 따라서 파장리에 거주하는 농가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상광교리에 있는 농지를 분배받을 경우 〈표 1〉에서는 해당 상광교리의 필지는 파장리에 포함된다. 〈그림 1〉을 보면 상광교리와 하광교리는 산간지역으로 부락의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지를 타 지역의 농민이 분배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파장리의 농민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 파장리의 70%라는 비율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 파장리에서의 식민지 지주제의 발전 정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2〉 농지 상환 완납을 독려하는 전단지(수원박물관 소장)

이다. 후자의 사례는 특히 많았는데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분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소유권 정리 여부와 함께 상환곡을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었다. 왜냐하면 상환곡 완납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위해 196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농지소표」를 정리하고 『상환대장』과 대조하여 정정된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대조와 동시에 정정인을 날인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고 「농지소표」는 매수, 귀속, 신규농지별 지번 순으로 편철한 후, 이 내용을 근거로 『분배농지부』를 작성하여 이후 농지개혁사업의 기본 장부로 삼았다.[21]

『분배농지부』에 집계된 면적은 1960년 5월 말 현재의 분배농지 현황을 보여 준다. 〈표 3〉은 『분배농지부』에 기록된 1960년 5월 말 현재 일왕면 4개 리 매수분배농지 전답별 필지수와 면적이다. 매수분배농지 면적은 94.8정보로 〈표 1〉의 124.4정보(37만 3,270평)에

21 농지 제1480호, 「분배농지부 설치 및 통계정비요강」, 1960년 5월 20일(『자료집』 1, 234쪽). 『분배농지부』는 2권을 작성하여 1권은 읍면에서 보관하고, 1권은 시도에서 보관하였다. 시도에서는 이를 보상상환 대조의 원부로서 엄중 관리하게 하였다. 『분배농지부』 작성 기준일은 1960년 5월 말로 하게 하였다.

〈표 3〉 1960년 5월 말 일왕면 4개 리의 매수분배농지 전답별 현황

지역	필지수			면적(평)		
	전	답	계	전	답	계
상광교	53	26	79	22,119	13,158	35,277
하광교	45	47	92	18,284	22,682	40,966
이목	108	99	207	50,859	55,880	106,739
파장	117	99	216	42,935	58,495	101,430
계	323	271	594	134,197	150,215	284,412

출처 : 일왕면, 『분배농지부』.

비해 30정보 정도 적다. 일왕면 4개 리 중에서 입경작(즉 다른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왕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광교리 1,463평에 불과하였다.[22] 따라서 이 30정보의 차이는 주로 파장리 · 이목리 주민이 일왕면 4개 리 이외의 일왕면 소재 다른 리의 농지를 분배받은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23]

『분배농지부』가 196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경지에서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1960년 말의 경지 규모를 이용한다. 〈표 4〉는 1960년 말 일왕면 4개 리의 경지 필지수와 면적이다.

1953년 말과 비교할 때 필지수는 변함이 없지만, 면적은 33.3정보(9만 9,777평)가 줄었는데, 1953년 말 면적 기준으로 9.8%가 감소하였다. 7년 만의 변화치고는 적지 않은 변화인데, 이처럼 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경지에서 임야로 전환되는 토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면적은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지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한 지번의 토지

〈표 4〉 1960년 말 일왕면 4개 리의 경지 필지수와 면적

지역	필지			면적(평)		
	전	답	계	전	답	계
상광교	276	137	413	123,341	67,387	190,728
하광교	207	171	378	73,973	98,273	172,246
이목	320	250	570	145,335	121,561	266,896
파장	360	214	574	162,007	123,373	285,380
계	1,163	772	1,935	504,656	410,594	915,250

출처 : 수원시, 『토지대장』.

22 일왕면, 『분배농지부』.

23 〈표 3〉은 〈표 1〉과 달리 소재지별 분배농지의 면적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의 통계는 매수농지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치 비교도 매수농지에 국한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를 여러 명이 소작하고 있었던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분필한 필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24]

이제 1960년 일왕면 4개 리의 경지 중에서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총 305.1정보의 경지 중에서 매수분배농지는 94.8정보로 3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 29.0%보다 약간 많은 수치이다. 반면 귀속농지는 21.0정보로 전체 경지의 6.9%의 비중을 차지하여 분배농지가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0%로서 전국 평균 40.3%보다 약간 낮다. 『분배농지부』에 근거한 1960년 현재 일왕면 4개 리의 분배농지 현황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매수농지의 비중은 약간 높지만 귀속농지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3. 수배농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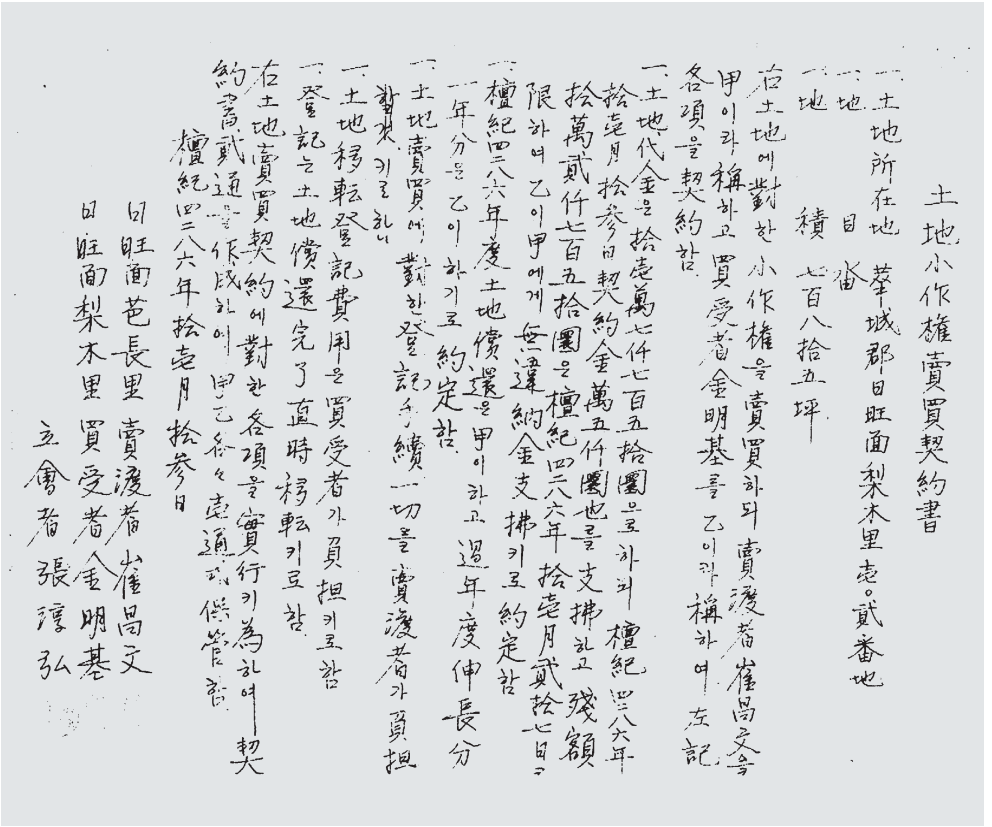
농지개혁 사무는 1950년대 중반까지 상환 및 보상 업무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면, 1950년대 말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사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특히 고심한 것은 「농지개혁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었던 분배농지 전매매(轉賣買)의 처리방법이었다.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최초 분배받은 농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토지의 경작권을 다른 농민에게 넘기는 행위를 지칭한다. 당시 서류에서는 최초 분배받은 농가를 수배농가라고 불렀고, 분배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넘겨받은 농가를 현경작자라고 불러 구별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초 분배받은 농가를 '원수배농가'로 표현하며, 당시 현경작자로 불렀던 분배농지 매입자를 '최종수배농가'라고 부르기로 한다.[25]

분배농지가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1953년부터 경찰 계통을 통해 보고되고 있었고,[26] 정부도 1950년대 중반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

24 일왕면 4개 리의 『토지대장』에서는 농지개혁과 관련하여 두 개의 중요한 날짜가 발견된다. 1956년 6월 15일에는 유난히 분필되는 필지가 많은데, 그것은 농지개혁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이동지조사(즉 『상환대장』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자를 정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을 동일한 날짜로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1957년 12월 8일에는 4개 리 모두 경지가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필지가 다수 발견된다. 농지개혁 과정에서 분배농지로 선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환곡을 부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수배농가는 분배농지를 포기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재분배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야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25 물론 수배농가의 변동은 상속이나 분배농지의 포기에 따른 재분배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분배농지의 전매매란 이러한 합법적인 수배농가의 변화가 아닌 농지개혁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에 의한 수배농가의 변화를 지칭한다.

26 조석곤,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2013, 402쪽.



土地小作權賣買契約書

一、土地所在地 全城郡日旺面梨木里壹弐番地
一、地目 畓
一、地積 七百八拾五坪

右土地에對한小作權을賣買하되賣渡者崔昌文을甲이라稱하고買受者金明基를乙이라稱하여左記各項을契約함

一、土地代金은拾壹萬七仟七百五拾圜으로하되檀紀四二八六年拾壹月拾參日契約金萬五仟圜也를支拂하고殘額拾萬貳仟七百五拾圜은檀紀四二八六年拾壹月貳拾七日限하여乙이甲에게無違納金支拂키로約定함

一、檀紀四二八六年度土地償還은甲이하고還年度伸長分一年分은乙이하기로約定함

一、土地賣買에對한登記의續一切를賣渡者가負担키로함

一、登記는土地償還完了直時移転키로함

一、土地移転登記費用은買受者가負担키로함

右土地賣買契約에對한各項을實行키爲하여一契約書貳通을作成하여甲乙各々壹通式領管함

檀紀四二八六年拾壹月拾參日

日旺面芭長里 賣渡者 崔昌文
日旺面梨木里 買受者 金明基
立會者 張淳弘

〈그림 3〉 분배농지 전매매 증빙서류 사례(일왕면, 『상환대장-파장 · 조원리 매수』)

하고 있었다. 1958년 10월 경남 · 충남 · 전북의 7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충남 천안은 전매농가의 비율이 22%인 반면, 당진은 50%를 기록하였다. 한편 전북 익산은 32%였으며, 정읍은 60%에 달하였다. 도별 · 군별로 편차가 있긴 했지만 분배농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었다.

이와 같이 광범하게 진행된 분배농지의 전매매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했고, 이는 또한 농지개혁 사무를 종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실태 파악을 위해 1959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농지대가 상환완료 전에 전매매한 분배농지를 전매수한 적격농가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27]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매매 행위 자체가 아

니라 전매수한 농가가 '적격'인지 아닌지 여부였다. 다시 말하면 전매수한 농가가 1950년 3월 기준으로 농지를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농가였음이 판명된다면 허가받지 않은 분배농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

마침 일왕면 4개 리의 『상환대장』에 분배농지 전매매가 이루어진 농지의 처리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이목리 102번지는 파장리에 거주하는 최창문의 『상환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최수환으로 수정되었고 그 뒤에 호적부와 매매계약서 양식이 첨부되었다. 한편 이 필지의 『분배농지부』상 수배농가는 최창문이었으며,[28]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1964년 9월 12일 김명기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 필지에 3인의 농민이 등장한 것이다.

『상환대장』에 첨부된 호적부와 〈그림 3〉은 이들과 해당 필지의 관련성을 보여 준다. 호적부로부터 최창문과 최수환이 부자지간임을 알 수 있다. 최창문이 사망하자 형 최종환이 호주상속하였는데, 형도 1955년에 사망하면서 최수환이 호주가 되었다. 첨부된 호적부에서 최창문의 사망일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상환대장』은 최창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50년 당시에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필지의 법적인 수배농가는 최창문이며, 『분배농지부』 작성시점인 1960년에는 상속권자인 최수환이 합법적인 수배농가였다.

그런데 이 필지는 현실적으로는 이목리에 거주하는 김명기가 경작하고 있었고, 아마도 상환곡도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명기는 원수배농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13호, 1961년 5월 5일)에서는 "각급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 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으며, 동 시행규칙에서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수배자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로 하되, 위 문서가 없을 경우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의해 원수배농가가 아니더라도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수배농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사실상의 소유자(최종 수

27 『자료집』 3, 92쪽.

28 『분배농지부』에는 지주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필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근환의 소유지였다. 양근환은 농지개혁 당시 일왕면 4개 리에서만 42필지 4만 974평을 소유한 대지주였다.

배농민)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29] 〈그림 3〉은 1953년 11월 13일에 최창문과 김명기 사이에 작성된 「토지소작권매매계약서」인데, 1953년 당시 시점에서 소작권 매매라는 다소 '불법적' 인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매매계약서' 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근거하여 김명기는 『토지대장』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었다.

다시 실태조사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표 5〉는 분배농지 전매농가 실태조사를 요약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152만여 호의 수배농가 중에서 상환 및 등기 이전까지 완료한 농가는 42만여 호로 전체의 27.7%에 불과하였다. 상환만을 완료한 농가는 92만여 호로 전체 수배농가의 60.7%였지만, 이 중 등기 이전까지 마친 농가의 비율은 45.7%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상환을 완료하고도 분배농지의 전매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농가도 15만 766호로 미등기 사유의 30.0%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의 등기 완료 비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총수배농가 19만 369호 중 1만 7,661호(9.3%)만이 상환 및 등기 이전을 마쳤으며, 상환을 완료한 농가 중에서도 등기 이전을 마친 농가는 13.7%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이 낮았던 주요 원인의 하나는 분배농지 전매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전매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29.8%였지만, 경기도의 경우 그 비율이 37.0%였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충북에 비해서는 거의 3배에 달했으며, 영남 지역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

〈표 5〉 분배농지 전매농가 실태조사

(단위 : 호)

구분		전국			경기		
상환완료 여부 등기 여부		완료	미완료	계	완료	미완료	계
등기(A)		421,875		421,875	17,661		17,661
미등기	원수배	351,096	294,861	645,957	69,840	32,454	102,294
	전매(B)	150,670	302,739	453,409	41,017	29,397	70,414
	소계	501,766	597,600	1,099,366	110,857	61,851	172,708
계(C)		923,641	597,600	1,521,241	128,518	61,851	190,369
비율(%)	A/C	45.7		27.7	13.7		9.3
	B/C			29.8			37.0

출처 : Cho,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 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013, p.82.

29 이 법은 2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2차례에 걸친 입법을 통해 1965년 6월 30일까지로 연기되었다.

었다.[30]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었던 셈이다.

이제 일왕면 4개 리의 수배농가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전매매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배농지 관련 자료들을 연결하여 전매매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상환대장』 → 『분배농지부』 → 『토지대장』으로 이어지는 장부의 흐름을 따라서 수배농가의 변화를 정리하되,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대장』(이하 『등기처리대장』이라 함)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상환대장』은 최초에는 1950년에 작성되었지만, 이후의 변동이 계속 반영되었으므로 그 선후관계를 1960년에 작성된 『분배농지부』와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가 기록된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한다.

먼저 『상환대장』에는 수배농가 변동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첫째,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필지의 경작권이 다른 농가에게 이전된 경우 '농림부령 제79호에 의하여 제○○○호에 移記로 削除'라는 고무인을 찍어 옮겨 간 『상환대장』을 기록하였다. 반대로 다른 농가로부터 옮겨 온 필지에 대해서는 '농림부령 제79호에 의하여 제○○○호로부터 移記'라는 고무인으로 그 사정을 표시하였다.[31] 둘째, 두 명 이상의 『상환대장』에 중복되어 나타난 필지의 경우는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수배농가가 변동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상환대장』의 수배농가 성명이 변동한 사유가 '상속'으로 명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수배농가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다른 장부들에 수배농가의 성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의 수배농가 성명이 다를 경우는 『상환대장』의 수배농가를 원수배농가로 간주하되, 『등기처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정보에 의해 선후관계를 조정한다. 『상환대장』에는 없지만 『분배농지부』에 있는 필지는 분배농지로 간주하여 삽입한다. 둘째, 『등기처리대장』의 등기권리권자가 『상환대장』의 수배농가와 다를 경우 수배농가가 변화한 것으로 정리한다. 셋째, 이상 정리한 분배농지를 『토지대장』에서 확인하여 대장상에 분배농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수배농가와 다른 이름으

30 전매매 실태를 도별로 살펴보면 전북과 경기가 이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추후 과제가 될 것이다.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총수배농가	9,639	190,369	15,568	77,160	214,635	294,554	325,348	161,605	230,099	2,264	1,521,241
전매농가	1,290	70,414	3,545	9,373	57,514	147,693	96,591	28,275	38,714	–	453,409
비율(%)	13.4	37.0	22.8	12.1	26.8	50.1	29.7	17.5	16.8	–	29.8

출처 : Cho,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 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013, p.83.

31 농림부령 제79호는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961년 5월 25일)을 말한다.

로 된 경우에는 『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의 정보와 무관하게 수배농가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32]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833필지 중에서 중복된 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배농지에서 제외된 필지 등 62필지를 삭제한 뒤[33] 나머지 771필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 자료를 『통합분배부』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후 전매매에 관한 분석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이제 『통합분배부』를 기초로 일왕면 4개 리의 분배농지 현황을 살펴보자. 『통합분배부』는 196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토지대장』상의 경지면적은 1965년 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1965년 6월까지였던 점도 고려하였다. 1960년 말과 비교할 때 1965년 말에는 경지 면적 및 필지수 모두 약간 증가하였다. 1950년대 말 임야로 전환되었던 필지 중 일부가 1965년 9월 다시 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표 6〉을 보면 일왕면 4개 리의 총경지는 1,982필지이며, 이 중 771필지에서 전매매가 수배농가의 변동이 있었다. 이후 이 필지들을 '전매매농지' 라고 표현한다.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3〉과 비교할 때 필지수와 면적 모두 절대적으로 증가했으며, 분배농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필지수와 면적이 각각 38.9%와 40.0%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40.3%와 유사한 비율이었다. 귀속농지는 168필지 8만 6,859평으로 전체 분배면적에서 차지하

〈표 6〉 『통합분배부』로 살펴본 일왕면 4개 리별 분배농지 비율

지역	총경지		분배농지		비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상광교	415	196,147	112	56,631	27.0	28.9
하광교	387	175,792	169	71,183	43.7	40.5
이목	580	267,630	245	124,685	42.2	46.6
파장	600	293,015	245	120,989	40.8	41.3
계	1,982	932,584	771	373,488	38.9	40.0

출처 : 수원시, 『토지대장』; 일왕면, 『통합분배부』.
비고 : 총경지는 1965년 말 기준이다.

32 이 경우 수배농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수배농가가 변한 것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원수배농가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하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 매각한 후, 경지 구입자가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전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매매된 필지로 파악된다. 즉 이 글의 분석에서는 전매매 필지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33 삭제 사유로는 『상환대장』에서 작인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위토 · 자작지 · 농지이외의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된 필지도 있었다. 또 『상환대장』에는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없는 필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는 비중은 21.8%로 전국 평균 27.9%보다 낮았다. 요컨대 분배면적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왕면 4개 리의 식민지 지주제의 발전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지만 일본인 지주보다 조선인 지주의 비중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7〉 일왕면 4개 리의 분배농지 중 전매매농지 현황

지역	필지수				면적			
	불변	전매매	계	전매매율	불변	전매매	계	전매매율
상광교	65	47	112	42.0	37,101	19,530	56,631	34.5
하광교	125	44	169	26.0	53,642	17,541	71,183	24.6
이목	138	107	245	43.7	67,146	57,539	124,685	46.1
파장	124	121	245	49.4	62,973	58,016	120,989	48.0
계	452	319	771	41.4	220,862	152,626	373,488	40.9

출처 : 일왕면, 『통합분배부』.

이제 전매매 실적을 살펴보자. 〈표 7〉은 일왕면 4개 리에 있는 '전매매농지'(분배농지의 전매매가 이루어진 농지)의 필지수와 면적을 리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매매농지는 319필지 15만 2,626평으로 전체 분배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4% 및 40.9%인데, 〈표 5〉의 경기도 평균 37.0%에 비해 약간 높다. 이 두 수치를 비교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표 5〉는 1959년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표 6〉은 1960년대 후반까지의 수배자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주32)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전매매 필지수가 과대평가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일왕면 4개 리에서 이루어진 분배농지의 전매매가 경기도 평균 수준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계층의 농민이 분배농지를 매도하고 그것을 매수한 농민은 누구였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한다. 전매매농지의 두 당사자를 각각 매도농가와 매수농가라 한다면, 매도농가가 '원수배농가'이며 매수농가는 '최종 수배농가'이다. '원수배농가'에는 일부 필지만 매도하고 여전히 수배농가로 남아 있는 '잔류농가'와, 자신의 분배농지를 모두 매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배농가가 아닌 '포기농가'가 있다. 또 분배농지를 매입한 '최종 수배농가' 중에는 원수배농가가 매입한 경우도 있지만, 매수를 통해서 신규로 '진입'한 농가도 있다. 이들은 각각 '기존농가'와 '진입농가'라고 부르기로 하자.

〈표 8〉은 일왕면 4개 리 원수배농가와 최종 수배농가의 유형별 호수를 정리하였다. 〈표 8〉에서 '(진입)' 122호는 원수배농가는 아니었다가 최종 수배농가에 나타난 농가이다. 따

〈표 8〉 일왕면 4개 리 원수배농가와 최종 수배농가의 유형별 호수

구분		최종 수배농가				
		불변	진입농가	기존농가	포기농가	계
원수배농가	불변	50	6	9		65
	포기농가	3	11	5	52	71
	잔류농가	15	3	90	35	143
	진입농가		98	24		122
	계	68	118	128	87	401

출처 : 일왕면, 『통합분배부』.

라서 원수배농가는 279호이다. 한편 '(포기)' 87호는 원수배농가였으나 자신이 원래 분배받은 모든 농지를 포기한 경우이다. 따라서 최종 수배농가는 314호였다. 포기농가이면서 동시에 진입농가인 호가 11호인데,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애초에 분배받았던 모든 토지를 포기한 대신, 다른 사람이 분배받은 새로운 필지의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라 할 것이다. 원수배농가 중에서 자신이 애초에 분배받은 농지에 전혀 변화가 없고, 신규로 분배받지도 않은 사람은 50명(17.9%)에 불과하였다. 분배농지의 이동이 매우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이 전매매농가별로 잔존 여부를 파악한 것이라면, 〈표 9〉는 분배농지 필지별로 원수배농가와 최종 수배농가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표의 해석방식을 '포기농가'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수배농가 중에서 모든 수배농지를 포기한 사람이 소유한 필지는 106필지(13.8%)였으며, 이 필지 중 3필지는 기존 분배농지에 변화가 없던 사람에게 추가로 분배되었으며, 원수배농가가 아닌 농가에게 38필지, 그리고 나머지 65필지는 수배농지에 변화가 있었던 사람에게 분배되었음을 뜻한다. 〈표 8〉과 〈표 9〉가 보여주는 복잡함은 분배농지의 전매매 과정에서 전매매농가의 유형별 특징이 큰 영향을 미치

〈표 9〉 일왕면 4개 리 전매매농가 유형별 분배농지 현황

최종 수배농가 / 원수배농가	필지수				면적			
	불변	진입 농가	기존 농가	계	불변	진입 농가	기존 농가	계
불변	50	2	13	65	36,571	1,147	8,729	46,447
포기농가	3	38	65	106	1,042	25,083	30,208	56,333
잔류농가	15	66	519	600	7,917	35,205	227,586	270,708
계	68	106	597	771	45,530	61,435	266,523	373,488

출처 : 일왕면, 『통합분배부』.

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분배농지의 전매매가 일정한 패턴이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원수배농가와 최종수배농가는 토지 소유 규모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원수배농가의 호당 평균 분배면적은 1,339평인 반면 최종 수배농가의 평균 분배면적은 1,189평이었다. 이는 최종 수배농가의 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4] 원수배농가나 최종 수배농가는 분배농지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원수배농가와 최종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면적별 분포

구분	원수배농가				최종 수배농가			
	호수	비중	면적	비중	호수	비중	면적	비중
3단보 미만	121	43.4	65,078	17.4	157	50.0	78,282	21.0
5단보 미만	72	25.8	87,699	23.5	75	23.9	88,208	23.6
1정보 미만	64	22.9	131,181	35.1	62	19.7	123,702	33.1
2정보 미만	20	7.2	71,761	19.2	17	5.4	60,421	16.2
2정보 이상	2	0.7	17,769	4.8	3	1.0	22,875	6.1
계	279		373,488		314		373,488	

출처 : 일왕면, 『통합분배부』.

그런데 분배면적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영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보 미만의 영세면적을 분배받은 농가의 비중은 커졌으며, 표본수가 매우 적은 2정보 이상 분배받은 농가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감소하였다. 5단보 미만으로 확대해도 최종 수배농가가 원수배농가에 비해 농가호수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이는 분배농지의 불법적인 전매매를 통한 수배농가의 변화가 오히려 농가 소유 규모의 영세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34 평균의 차이에 관한 유의확률은 0.3312였다. 검정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와 영세 자작농체제의 성립

농지개혁사업의 최종 단계는 수배농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었다. 농지개혁 기간에 만연했던 분배농지의 전매매 현상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합법화시킨 것은 전매수한 농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환곡을 완납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증빙서는 「상황완료증명서」였다.[35] 상환곡 완납기간이 지난 1955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폭주하고 농민의 등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사법서사협회에 위탁하여 등기사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1950년대의 등기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것은 수배농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무지 또는 등기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고, 분배농지 전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등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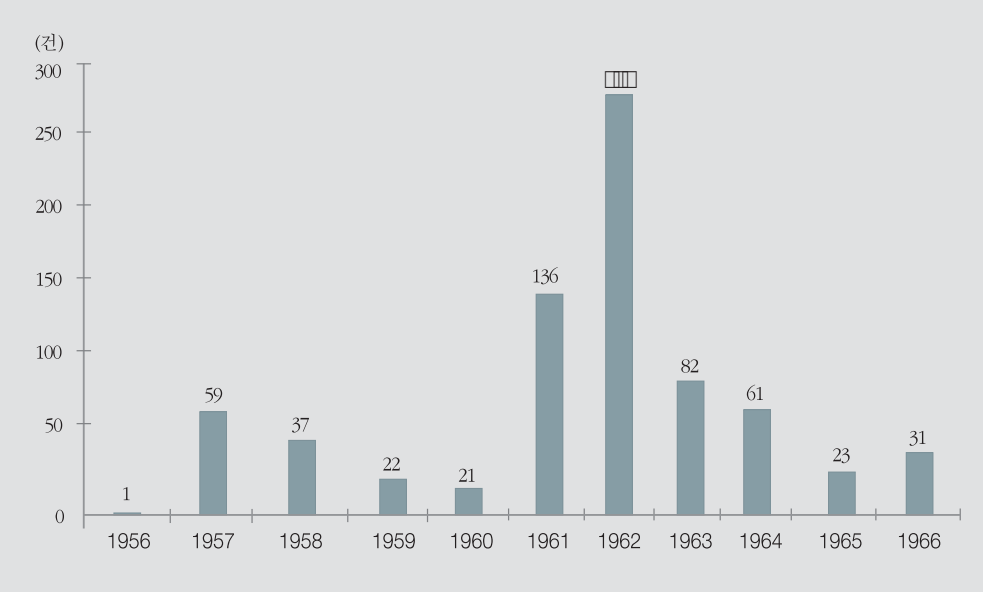
일왕면에서 분배농지 중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필지는 771필지 중 742필지(96.2%)였다. 가장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필지는 하광교리에 소재한 귀속농지로 1956년 4월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 1950년대 후반인 1956~1959년에 등기가 이루어진 필지는 109필지(14.1%)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귀속농지였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1961년과 1962년 두 해 동안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는 405건(52.5%)으로 전체 분배농지의 절반을 넘었다. 특별조치법이 적용된 5년 동안의 등기건수를 합하면 571건(74.1%)로 전체 분배농지 4필지 중 3필지에서 이 시기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법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독려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36]

1960년대 말이 되면 농지개혁사업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직접적으로는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록 영세하나마 자작농체제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변화가 이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와 영세 자작농체제의 성립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

35 농지 제840호,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건」, 1951년 8월 31일(『자료집』 2, 357쪽).

36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농지개혁이 종료되었지만, 1969년까지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필지가 29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 필지들이 상환을 완료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극소수이지만 농지개혁 사무의 일부는 1970년대로 이월되었던 것이다.



〈그림 4〉 **일왕면 4개 리 분배농지의 연도별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일왕면, 『통합분배부』) 1966년의 경우는 1966~1969년의 합계이다.

〈표 11〉은 일왕면 4개 리 피분배지주의 피분배 면적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피분배지주는 모두 141명이었으며, 이 중 1정보 미만의 토지를 분배당한 지주가 119명(84.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3정보 이상의 경지를 분배당한 지주는 8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4%로 절반에 육박하였다. 3정보 이상 지주 8명 중에는 이봉래가 16.3정보로 가장 많았으며, 양근환(12.3정보)과 이휘래(6.8정보)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인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분배당한 지주는 동산농사주식회사로서 5.8정보를 분배당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도 4.3정보가 분배되었다. 이들 8명의 평균 피분배 면적은 7.7정보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1정보 미만의 토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경우 평균 피분배 면적이

〈표 11〉 일왕면 4개 리 피분배지주의 피분배 면적별 분포

구분	지주수	피분배 면적(평)	평균
1정보 미만	119	111,006	933
3정보 미만	14	78,109	5,579
3정보 이상	8	184,373	23,047
계	141	373,488	2,649

출처 : 일왕면, 『통합분배부』.

3단보를 겨우 넘을 정도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사실로부터 해당 피분배 지주들의 소유 규모가 이처럼 영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지주가 다른 지역에 많은 규모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피분배 면적이 영세했던 것은 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에는 거주지와 먼 곳의 토지를 교환하는 등의 일도 있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실제로 141명의 피분배 지주 중에는 12명의 원수배농가와 9명의 최종 수배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표 12〉 일왕면 4개 리의 토지 소유자수와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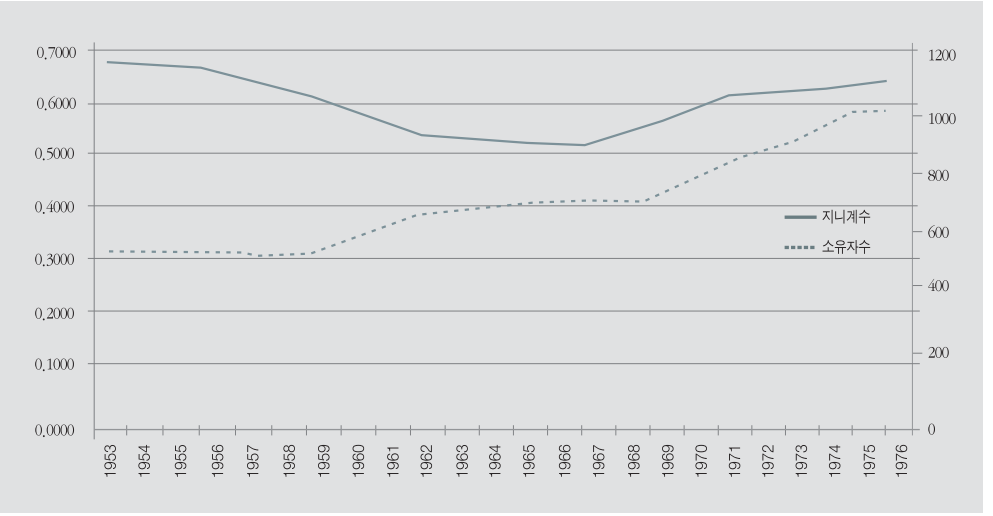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소유자수	535	534	542	549	526	540	550	554	589	656	671	688
지니계수	0.651	0.650	0.648	0.646	0.628	0.624	0.618	0.611	0.585	0.542	0.535	0.520
연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소유자수	696	668	694	717	752	802	856	871	916	957	1,019	1,019
지니계수	0.526	0.551	0.565	0.573	0.590	0.616	0.625	0.622	0.636	0.643	0.659	0.659

출처 : 수원시, 『토지대장』.

그럼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5〉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왕면 4개 리의 토지 소유자수와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축이 지니계수이며 오른쪽이 소유자수이다. 지니계수는 1953년 0.651 수준이었다가 점차 하락하여 1964년 0.520을 최저점으로 하여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최저점을 기록한 다른 지역 사례들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37] 1960년대까지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속속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에 표시된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이 집중되었던 1961년과 1962년에 지니계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에 반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수는 1950년대에는 정체되었다가 1960년

37 예천 용문면은 1953년 0.5371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66년 0.4984로 저점에 도달한 후 상승하였다(조석곤,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원주 호저면은 1953년 0.5724이었다가 하락하여 1964년 0.5577을 최저를 기록한 후 상승하였다(조석곤,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농촌경제』 28-2, 2005). 시흥 수암면은 1953년의 0.5998에서 계속 하락하여 1968년 0.5153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였다(Cho,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 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013). 한편 김제 죽산면은 다른 지역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1953년 0.6994였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965년 0.5647을 일차 저점에 도달한 후 약간 상승했다가 1975년 0.5565로 최저를 기록하였다(조석곤, 「 '토지대장' 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 김제시 죽산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5, 2005). 이는 이 지역이 일본인 지주를 주축으로 한 식민지 지주제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5〉 일왕면 4개 리의 토지 소유자수와 지니계수

대 초반 급증한 후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6년에는 1953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1960년대 초반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대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1960년대 중반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진입하는 영세 토지 소유자와 함께 토지를 집적하는 소수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토지 소유자의 진입 양상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실적에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3〉은 일왕면 4개 리의 연도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 초반은 농지개혁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1950년대 후반의 소유권 이전등기 256건 중 140건(54.7%)은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이다. 이를 제외하면 소유권 이전실적은 필지수 대비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960년대 이후 이전 등기 실적은 급증한다. 1960~1964년에 1,022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569건(55.7%)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실적은 필지수 대비 3%를 상회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분배농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농지개혁 요인을 배제한 토지 소유권 변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1960년대 후반의 소유권 변동이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38]

소유권 이전등기와 〈그림 5〉의 토지 소유자수 변동을 연결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60~1964년에 소유권 이전 건수는 1,022건이며, 같은 기간 토지 소유자의 수는 138명 증가하였다. 한편 1970~1974년의 경우는 이전등기 1,324건에 소유자는 205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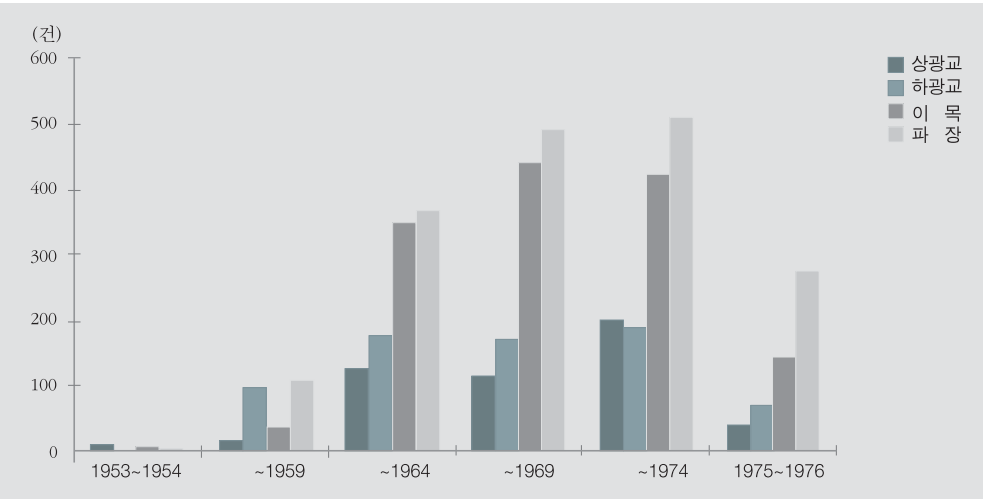
하였다. 두 시기를 비교하면 이전등기 건수는 29.5% 증가한 반면, 소유자수는 48.6%가 늘었다. 1960년대 전반에는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많았음에도 1970년대 초반에 소유자수가 더 늘어난 것은 이들 중 상당수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영세 토지 소유자의 증가가 해당 시기 토지 소유 규모의 불평등도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표 13〉 일왕면 4개 리의 연도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

(단위 : 건)

구분	1953~1954	~1959	~1964	~1969	~1974	1975~1976	계
상광교	10	16	127	115	201	41	510
하광교	0	96	177	171	188	69	701
이목	8	36	350	443	425	145	1,407
파장	3	108	368	493	510	275	1,757
계	21	256	1,022	1,222	1,324	530	4,375
필지수	5,002	13,510	14,099	15,246	19,248	8,778	75,883
비율(%)	0.4	1.9	7.2	8.0	6.9	6.0	5.8

출처 : 수원시, 『토지대장』.



〈그림 6〉 일왕면 4개 리의 연도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

38 한편 1965~1969년에는 1,222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는데, 같은 기간 토지 소유자의 수는 64명 증가하였다. 이는 이 시기 일부에 의한 토지 집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파장리의 지방행정연수원, 이목리의 농업진흥청 소관 토지의 증가가 그 예이다. 하나 더 언급할 것은 1966년은 토지 소유자의 숫자가 감소한 유일한 해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증가한 토지소유자 64명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정리

수원에서 진행된 농지개혁에 관하여 일왕면 4개 리(현재의 장안구 상광교동 · 하광교동 · 이목동 · 파장동)에 있는 농지개혁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경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농의 염원이 대한민국에 자본주의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의도 및 이승만의 권력의지와 맞물리면서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성공한 사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의 농지개혁도 이러한 큰 틀에서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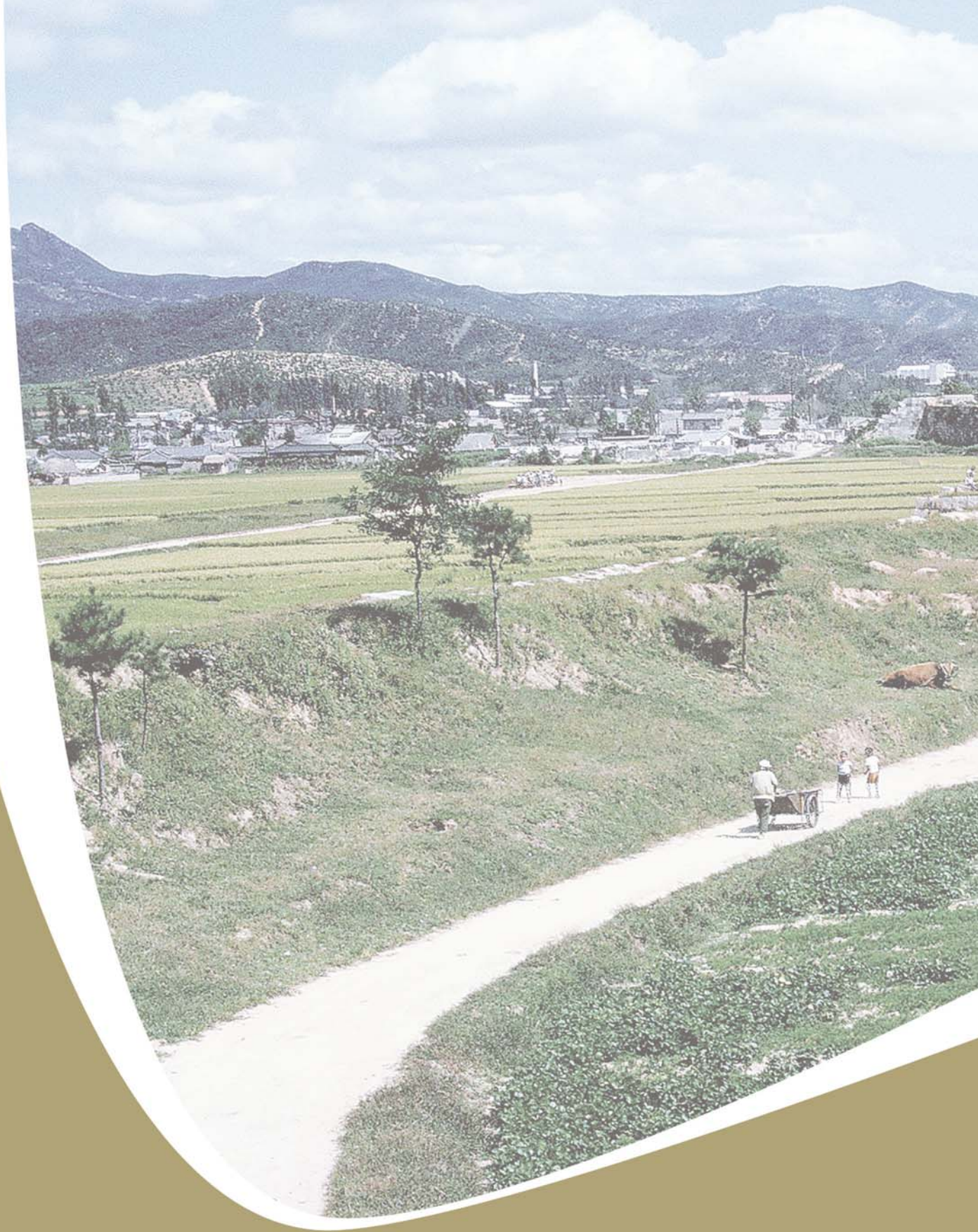
농지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왕면 4개 리에 거주한 수배농가는 237호였으며, 그들이 분배받은 면적은 145.3정보였다. 한편 일왕면 4개 리에 소재한 경지는 1965년 말 현재 1,982필지에 310.9정보였는데, 이 중 분배농지는 771필지(38.9%)에 124.5정보(40.0%)였다.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분배농지에 관한 내용이 변동된 탓도 있지만, 전자는 사람 기준으로 후자는 토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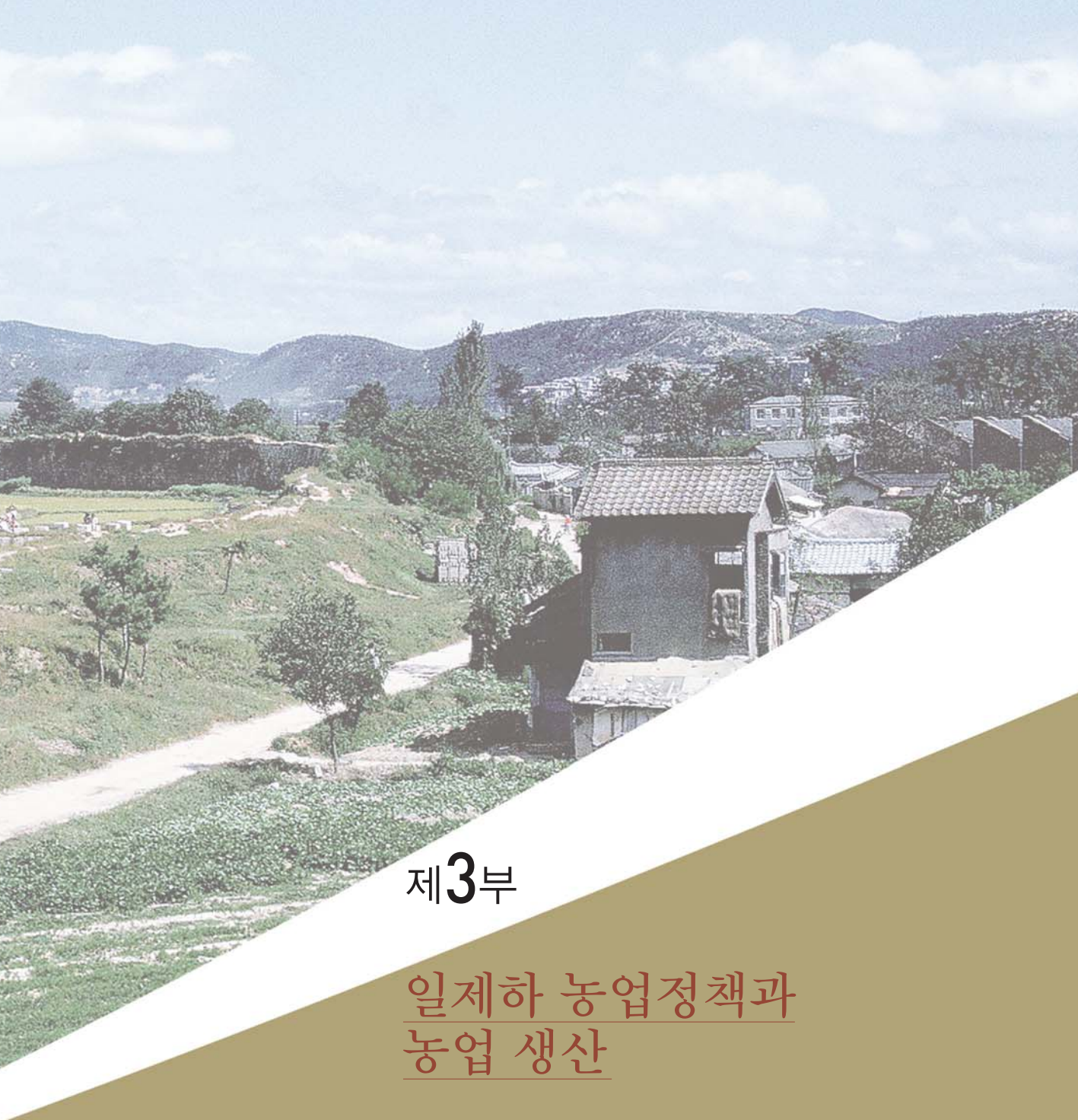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농지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1959년 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분배농지의 29.8%에 달했으며, 경기도는 37.0%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일왕면 4개 리의 경우 771필지 중 319필(41.4%) 50.9정보(40.9%)가 전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실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일왕면 4개 리의 분배농지 전매매의 실상도 경기도 평균에 못지않았다. 원수배농가는 모두 279호였지만, 전매매 이후의 최종 수배농가는 314호였다. 원수배농가나 최종 수배농가는 분배받은 농지의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농가의 숫자가 증가한 만큼 전반적으로 영세화 경향을 보였다.

농지개혁의 최종 단계인 소유권 이전등기는 1956년부터 실적이 나타나지만 1950년대에는 지지부진하였다. 분배농지를 전매매한 농가에게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독려하면서 1960년대 초반에 이전등기 실적이 급증하였고, 1960년대 말이 되면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되었다.

농지개혁의 결과 식민지 지주제는 해체되었다. 분배농지의 절반은 8명의 피분배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소유지가 농민에게 분배되면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도 계속 하락하였다. 지니계수는 1964년에 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64년까지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농지개혁으로 소유권 이전이 제약된 상황에서 분배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196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 거주민 이외의 토지 매매(또는 상속)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는 영세 토지 소유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세 자작농체제가 일왕면 4개 리의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제3부

일제하 농업정책과 농업 생산

제1장 권업모범장의 설립과 운영
제2장 일제하 수원의 농업 생산과 농가경제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개량사업 추진
제4장 일제하 수원의 수리조합 설립과 운영



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권업모범장의 설립 과정
2. 권업모범장의 조직 변천
3. 권업모범장의 인적 구성
4. 권업모범장이 한국 농업에 끼친 영향

제1장

권업모범장의 설립과 운영

1. 권업모범장의 설립 과정

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물이다. 즉 일본의 경제성장이 시작된 이래 농업 생산에서 쌀은 거의 60%를 차지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인의 칼로리 섭취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쌀은 일본 제국주의의 판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근간으로 식민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일제는 자신들의 농업기술이 한국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제국의 판도 내에서 농업 생산의 증대는 자신들의 농업기술을 이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의 전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제는 식민지에 대한 세심한 농업계획과 최신 농업기술을 강제한다면 일본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침략 초기부터 한국에서 농업 수탈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통적 농업기술체계를 개량시키기보다는 농업 생산력이 높았던 일본식 농업기술을 이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일제는 한국의 전통적 농업 생산방식이 약탈적이고 생산력이 낮았다는 점을 들어 일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본식 농법체계를 강제적으로 보급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일본식 농법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농업기술기구를 창설하고자 하였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구가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다.

권업모범장은 일제 통감부에 의해 창설되어 대한제국정부에 이양되었다가, 1910년 일제의 완전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총독부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 농업기술의 단순한 이식만으로 한국에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권업모범장은 1928년부터 실질적 시험·연구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1929년 9월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일제 말기인 1944년 5월에는 농업기술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통합이 단행되면서, '농사시험장'을 '농업시험장(農業試驗場)'으로 고치고, 농사 시험·연구기구가 전부 조선총독부 산하로 일원화되었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이라는 미명하에 농업기술 보급기관을 설치하여 한국에 일본식 농업기술을 강제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이름 그대로 일본식 농업기술을 '모범'이라고 하여 강제적으로 보급하는 데 있었다. 일제는 한국의 전통적 농업과 자연환경을 무시한 채 일본식 농업체계를 강제적으로 보급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권업모범장은 한국

의 전통적 농업기술체계가 저급하고 생산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품종과 비료의 개량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일본식 농업체계를 선진적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하였던 것이다.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이후 이 기구는 일제의 농업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권업모범장 등 일제의 농업기술기구가 한국 농업을 식민지 농업으로 재편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제도 권업모범장을 한국 농업의 '참모부(參謀部)'라고 불렀다. 권업모범장 등 농업기술기구가 식민지 농업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들 기구가 한국의 농업을 연구 · 시험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 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전문인력과 농업에 관한 정보는 한국 농업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였으며, 일제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일제는 한국에 권업모범장을 설립하여 한국을 쌀의 안정적 공급지로 삼고자 하였다. 생산 증대를 통해 양질의 쌀을 일본에 공급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일제강점기 전 시기 동안 이 같은 기조에서 농업기술기구를 중심으로 농업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은 식민지 본국의 요구에 따라 생산과 유통 등 농업 제반 문제가 결정되는 전형적인 식민지 농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1) 초기 농사시험장 설립계획

일제가 농업을 조사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구를 한국에 설치하고자 한 것은 개항 이후 한국의 쌀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면서부터였다. 한국의 각 개항장에는 미곡수출조합과 일본인 미곡상들을 중심으로 수출미의 품질 유지를 위해 미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었다. 개항장의 일본인 미곡상들은 한국에서 이른바 '조악미(粗惡米)'의 수출을 막는 방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 농업 전반에 대한 개량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 미곡상들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을 설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1903년 재조선일본인상업회의소연합회(在朝鮮日本人商業會議所聯合會)가 당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한국농사개량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 농사시험장이 농업국에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오로지 한국

은 농본주의로서 차제에 우선 한국정부로 하여금 추요(樞要)의 토지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시의(時宜)에 합당한 것이라고 믿는 동시에 이 뜻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고자 하는 것은 각하(하야시 곤스케-필자)가 본회(재선일본인상업회의소연합회-필자)에 미지(未知)의 어떤 곳을 양찰(良察)하여 속히 한국정부에 권고하여 주십시오.[1]

라고 하여, 한국 거주 일본인 미곡무역상들이 농사시험장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물론 일본인 미곡상들이 이때 최초로 한국의 농사개량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목포 일본인상업회의소에서는 1901년 8월 26일에,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도 1903년 6월 25일에 모두 벼농사의 습관 개량을 한국정부에 권고할 것을 하야시 곤스케 일본공사에게 청원한 바 있었다.

이같이 일본인 미곡무역상이 중심이 되어 농사시험장의 설립과 한국 쌀의 개량을 부르짖고 나섰다. 그러나 일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였다. 일제는 1904년 3월부터 한국의 토지와 농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더불어 이른바 '농사모범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일제는 한국에서 농사모범장의 설치를 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산 쌀은 우리나라(일본-필자) 쌀의 중품(中品)에 해당하여 우리의 상식물(常食物)로 족하다. 관개의 법이 천수(天水)에 일임(一任)하여 한해(旱害)를 입어 풍흉(豊凶)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을 탈각(脫却)시키려면 상식물의 공급지로서 보아 위험이 없고 저수관개(貯水灌溉)의 모범을 보여 크게 장려하고, 또 토지를 개발하여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같이 유도(誘導)하는 것을 한국정부 또는 그 인민에 기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우리 정부(일본정부-필자)는 그들의 생산수확물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 수요(需要)의 적당한 경작법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양국 관계상 필요한 조치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적당한 곳(경부철도 선로 부근 可하다)에 농사모범장을 설치함으로써 피아(彼我)의 이익을 꾀할 수 있다.[2]

라고 하여, 일제는 한국에서 농사모범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다. "모범장은 농작 · 농법 · 양잠 · 수리 등의 모범을 보이고 시험을 행하는 외에 한국의 물산 특히 농광산(農礦産) 조사도 편의상 본장(本場)에서 시행하게"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사모범장에는 진열실과 도서관을 두고 건물은 기와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며, 「농사모범장 관제」

1 小早川九郎 編著, 『補訂 朝鮮農業發達史』 政策篇, 友邦協會, 1959, 35쪽.
2 「韓國農事調査ノ件(1904년 3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2권, 국사편찬위원회, 1997, 100쪽.

에 의해 장장(場長) 1명을 비롯한 기사(技師)·기수(技手) 각 6명과 서기(書記) 5명을 두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농사모범장관제」까지 준비하는 등 한국에서 농사모범장을 창설할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의해 1904년 4월 사코우(酒匂)라는 일본 농상무성 서기관이 「한국토지농산조사」와 함께 「농사모범장 설립계획서」를 주한일본공사관에 제출하였다. 일본 농상무성은 1904년 말부터 1905년에 걸쳐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및 농상무성의 학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농업자원을 조사하였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와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 농사모범장의 설치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일제의 농사모범장을 창설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1904년 5월 2일 '재한일본인상업회의소연합회'에서도 회의를 열어 1903년도부터 계획하였던 농사모범장을 창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처럼 러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본정부와 재한 일본인들에 의해 농사모범장이라는 이름의 농업 시험·연구기관의 설립이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 후 농사모범장의 설립에 대해서는 일본 농사시험장 장장인 고자이요 시나오(古在吉直)가 한국에 와서 당시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에게 두 가지 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재정고문 메가타는 한국의 한두 지역에 '농사시험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1905년 11월 24일 「농사시설에 관한 상신서(上申書)」를 본국에 제출하였다. 이후 일본 농상무성에서는 「한국토지농산조사」를 기초로 농사시험장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1906년에 8만 원의 창설비와 8만 원의 경상비를 만들어 두고 있었다.

한편 한국정부에서도 1904년 10월 농·상·공의 실업에 관한 학술과 기능을 가르칠 목적으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를 서울에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과 실습을 위해 1905년 12월 29일 칙령 제60호로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관제」를 공포하고, 그 실습농장을 뚝섬[纛島]에 설치하였다. 일본정부와 재한 일본인들의 '농사모범장' 혹은 '농사시험장'을 설립하려는 계획과는 별도로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시험장' 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한국정부가 농사시험장을 설립한 목적은 농상공학교에 부속하여 필요한 농사시험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 나아가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농사기술을 시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목적이 있었다.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은 서울 동대문 밖 뚝섬에 480정보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실습을 겸하여 각종 농사시험을 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업기술을 관장할 장장 이하 기사 4명, 기수와 사무원 약간 명을 두었다.

2) 통감부 주도의 농사시험장 설치계획

일제는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시킨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통감부는 한국정부 조직 속의 행정기구는 아니었지만, 외부 조직으로서 한국의 정치에 간섭하고 감독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 이후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주재로 대신회의가 통감관사(統監官舍)에서 개최되는 등 변칙적인 행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 당시 한국정부의 대신회의 기록들이 「대신회의필기(大臣會議筆記)」라는 이름으로 『일한외교자료집성(日韓外交資料集成)』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일제 주도의 '농사모범장' 혹은 '농사시험장' 설립에 대해 살펴보면, '권업모범장'을 설치하는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1906년 3월 13일 통감관사에서 개최된 대신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정부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차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대신들도 대체로 한국의 재정 부족에 대해 공감하였는데, 이토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은 "우선 다수 농민을 이롭게 할 방법, 예를 들면, 농사 개량, 도로 수축, 배수, 관개, 식림과 같이 장래 물산을 증가할 방법에 사용할 것을 요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의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은 "제일로 농업을 발달시켜 국민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고, 다음으로 교육을 보급하여 인지를 개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여 한국의 농업 개발을 위해 차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이토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민의 수가 심히 많고 …… 다수 인민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의 개량에 착수하는 것이 자연의 순서이고 …… 내가 우선 농업에 주의할 필요를 제창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여 농업의 개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농업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뿐만 아니라, 1906년 초에 농상공부 주관하에 '농사시험장'을 만들 계획도 수립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는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갔다. 그러던 중 1906년 3월 22일 다시 통감관사에서 개최된 대신회의에서 차입할 자금의 소용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민영기(閔泳綺) 탁지부대신이 처음으로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농사시험장의 설립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거론하였지만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4월 9일에 열린 '한국시정개선(韓國施政改善)에 관한 제3회 협의회'에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 일본정부는 금년도(1906년-필자)에 약 16만 원의 경비를 주어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할 예정

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도 같은 계획이 있고, 일본에서는 예산 등 이미 의회를 통과하여 5, 6인의 기사를 채용하였다. 한국에 있어서도 또한 대략 같은 규모에 의한 것 같다. 과연 똑같이 일한(日韓) 양국의 모범장을 병립(駢立)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믿어진다. 고로 나의 생각으로는 한국 측의 계획은 본 연도에 그것을 중지하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모범장을 설립하게 하고, 명년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모두 한국정부에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농상공부대신의 의견은 여하한가.[3]

라고 하여, 일본이 주도가 되는 농사모범장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농상공대신 권중현(權重顯)은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모범장을 설치하기 위해 "남부 또는 동부에 땅을 선정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토는 계속해서,

농사모범장은 불완전한 것을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의 완전한 것을 설치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일본정부의 수원 모범장은 실제로 통감부의 계획에는 있지 않다. 내가 취임 이전에 농상무성에서 이미 그 계획을 세워 금년도에 8만 원의 창설비와 8만 원의 경상비를 쓸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모범장의 목적은 각종의 농작물이 한국의 토지에 적당한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데 그친다. 반드시 통감부에서 영구히 관리할 이유가 없는 고로 명년도에 들어서는 그것을 한국에 옮기는 것도 가하다. 기사(技師)도 한국정부에서, 특히 일본으로부터 용빙(傭聘)하는 것을 금년도는 일본 측에서 사용하고 명년은 모범장과 함께 귀국 측에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4]

라고 하여, 농사모범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이미 일본의 농상무성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하였다. 1906년 일본정부 주도로 농사모범장을 설립한 후 다음 해에 한국정부에 이양할 것이며, 그 비용을 한국에서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일제 통감부의 뜻에 따라 한국정부에서 설립하려고 하였던 '농업시험장'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4월 13일에 개최된 대신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금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권중현 농상공부대신이 한국정부에서도 농사시험장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에 별도로 농사시험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는 내년에 수원의 농사모범장을 한국정부에 이양할 것인데 굳이 같은 시험장을 "대구와 수원에 대략 같은 시험장을 양립시키는 것은 장래 관할상 통일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저지시켰다.

즉, 한국정부에서는 이미 경상북도 대구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농사시험장 설립계획에 대해 이토 통감은 완강하게 거부하였

3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日韓外交資料集成)』 제6권 상, 175~176쪽.
4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 제6권 상, 176쪽.

던 것이다. 이에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한 발 물러나서, 대구에 지장(支場)을 설치할 목적으로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토 통감은 "토지의 대가(代價)는 금후 더욱더 등귀(騰貴)할 것임으로 부지(敷地)를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찬성한다."고 하였다. 한국정부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자, 이토 통감은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농상공부총장(總長)으로 하여금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설득하여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시험장 설치계획을 그만두게 하였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가던 상황에서 일제는 한국정부의 '농사시험장' 설치계획이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고, 설계에도 결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의 폐지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통감부는 한국 농업에 대한 지배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농상공학교 부속의 농사시험장도 1906년 5월 31일자로 폐지시켰다.

그러면 일제는 왜 한국정부에서 실행하는 '농사시험장'의 폐지를 요구하였는가? 그 이유는 그 후 권업모범장의 사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시험장이 설립된다면 일제가 목적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농업적 지배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한국정부에서 농사시험장을 설치하면 식량 공급지를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와 달리 한국정부는 전통농업기술체계를 발전시킬 것이 분명하였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제가 목적으로 하는 식량공급지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시험장 설치를 막았던 것이다. 이 같은 일제의 의도는 당시 통감부가 한국 농업에 강요한 소위 '농업 진흥의 대안목(大眼目)과 실시 4대 요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즉, 일제는 한국 농업에서 "실행을 간이하게 하여 비용의 지출이 없게 하거나 소액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한국정부의 농사시험장 설립계획을 좌절시키고, 이미 폐지된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 용지 13정보에 미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원예만을 시험하는 원예모범장(園藝模範場)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1906년 8월 9일 농상공부 소관 「원예모범장관제」가 발포되었다. 원예모범장은 농상공부에 속하게 하고, 장장 이하 기사 2명, 기수 3인, 서기 2명의 직원을 두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 4,726원을 예비금에서 지출하였으며, 건축비 · 토지구매 · 물품구매를 위해 7,344원을 예비금에서 지출하였다.

3) 권업모범장의 창설과 이양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1884년에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을 설립하고 서구의 발달된 농업기술을 받아들여 농업을 근대화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기에도 광무

개혁을 통해 농업의 근대화를 꾀하였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 중심의 농업기술기구의 설립계획은 좌절되고, 일제가 주도가 된 농사시험장이 설립될 수밖에 없었다.

> 수원에 설치할 권업모범장은 당연히 아국(我國) 정부의 사업에 속할 자로대 목하(目下) 재정이 군출(窘絀)함으로 통감부에서 경상비 8만 원과 임시 설비비 9만 원을 지출하여 전(專)히 모범농사시험장(模範農事試驗場)에 충(充)할 터인데 근근(近近)히 설치하겠고 우(又) 아국정부(我國政府)에서는 평양농림모범시험장(平壤農林模範試驗場)만 영위(營爲)할 터이라더라.[5]

위의 『황성신문』 1906년 4월 9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제국정부에서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감부의 예산으로 '모범농사시험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한국정부에서는 평양에 '농림모범시험장'만 운영한다고 하였다. 일제 통감부의 권업모범장 설치계획에 따라 그 장장은 일본인 농학박사인 혼다 코스케(本田幸介)가 맡기로 하였으며, 「권업모범장관제」는 법제국에서 심의하였다.

일제의 통감부가 주도하는 권업모범장은 수원군 서둔평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토지는 원래 궁내부(宮內府) 경리원(經理院) 소관으로 통감부에서 차용하기로 하였고, 그 외 필요한 민유지는 시가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을 설치할 때 어쩔 수 없이 민유지를 침탈하게 되었다. 당시 경기관찰사 이규환(李圭桓)의 보고에 따르면, "권업모범장에 범입지단(犯入地段)을 조사하여 탁지부에 보고하였는데 밭이 1,170평이요, 논이 1,446평"이라고 하였다. 창설 당시 권업모범장의 규모는 총면적 87여 정보, 그중 밭 28정보는 민유지이고, 논 59정보는 경리원 소속지를 임차하고 민유지를 매수한 것이다.

권업모범장은 1906년 10월 정리사업의 설계를 마치고, 11월 2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신축공사를 하고 수원정거장부터 권업모범장에 이르는 도로와 논밭 27정보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등 1906년 말까지 시설과 설비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었다. 그 후 권업모범장의 사업이 증대되면서 1929년 농사시험장으로 바뀐 이후 1940년에는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460.68정보로 확대되었다.

일제는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모범장 설립계획을 무산시키고, 1906년 4월 「권업모범장관제」를 공포한 후 그해 6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개설하였다. 일제 통감부

5 『황성신문』, 1906년 4월 9일, 「잡보」.



권업모범장 전경(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에 의해 설립된 권업모범장에는 장장 이하 기사(전임 6인), 기수(전임 8인), 서기(전임 4인)를 두었으며, 면화재배협회의 위촉에 의해 목포에 출장소를 두어 면화재배사업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처럼 설립 초기 권업모범장의 전임 구성원은 20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목적도 「권업모범장관제」를 보면, "한국산업의 발달 개량을 돕기, 모범 및 시험, 한국물산의 조사와 아울러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 감정, 종묘 · 잠종 · 종금 · 종돈 등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 · 통신 및 강화를 담당한다."고 하여 한국 농업에 대한 연구조사 · 시험을 통해 농업의 개량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권업모범장관제」에서 말한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 일제는 '모범'이라는 명칭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이 '농사시험'보다는 '권업모범'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후인 1906년 10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이것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해 10월 26일 한국정부에서 통감부에 권업모범장 인계에 대해 조회를 하고, 통감부는 11월 권업모범장 사업에 대해 종래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타 여러 조건을 붙여 대한제국정부에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4월 1일부터 권업모범장은 한국정부의 관리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권업모범장의 직원들은 모두 한국정부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의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담당하던 기사와 기수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이들 일본인 기사들은 한국정부의 초빙형식으로 권업모범장에 계속해서 근무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907년 7월 '정미조약'이 체결되면서 정미조약 제5조에 의해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용하게 되었다. 이에 1908년 1월 1일부터는 권업모범장의 일본인 촉탁 직원들이 전부 한국의 정식 관리로 임용되었던 것이다.

1907년 3월 22일 「권업모범장관제」가 칙령 제17호로 고종 황제의 재가를 얻었으며, 그 해 5월 15일 수원에서 권업모범장 본장(本場)의 개장식이 거행되었다. 개장식에는 한국 측에서 성기운(成岐運) 농상공부대신을 비롯한 각부 대신들이 참석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비롯하여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주차한국군 사령관, 각국 영사, 신문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개장식은 혼다 코스케 권업모범장 장장의 보고가 있은 후에 농상공부대신의 식사(式辭),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훈사(訓辭), 군부대신의 축사가 있었다.

권업모범장 개장식에서 초대 장장 혼다 코스케는 "목적을 달하는 첩경은 실제에 개량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농민을 유도계발(誘導啓發)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모범장의 설치는 우리 일본국이 지도자가 되어 한국 농업의 개량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단(一端)이다."라고 하였다. 즉 일제는 한국에 권업모범장을 설립한 것은 '농사시험'이 아닌 '권업모범'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업모범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초대장장 혼다 코스케의 한국 농업관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권업모범장이라고 명명해서 내지류(內地類 : 일본농법-필자)의 농업방법을 이 권업모범장에서 실행해 보고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서 개량에 노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2. 권업모범장의 조직 변천

1) 1910년대 권업모범장 조직

권업모범장이 한국정부에 이양된 직후인 1908년 현재 수원에 본장인 권업모범장을 두고 지방에는 도종묘장(道種苗場)과 각 지방 농업기술관이 배치되었다. 이 기간 권업모범장에는 기감(技監) 1명, 기사 8명, 기수 10명 등 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다.

1910년 8월 일제에 강점됨과 동시에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



권업모범장 축사 전경과 방목하는 송아지(수원박물관 소장)

으며, 지방의 종묘장은 지방청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해 9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가 발포되었으며, 「사무분장규정」이 공포되었다. 권업모범장에는 전임 기사 10명, 전임 서기 · 기수 35명을 두고 있어 한말 때보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확대 · 개편되었다. 그리고 수원농림학교를 부속시키면서 식민지 농정의 '참모부'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권업모범장은 종래의 '출장소' 를 '지장(支場)' 이라 개칭하면서, 농림업에 필요한 실무를 교습하기 위해 농림학교를 두었으며, 대구 · 평양 · 뚝섬 · 용산 · 목포의 5개소에 지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권업모범장은 1본장, 5지장, 1학교로 구성되면서 식민지 농업수탈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수원본장의 사무분장은 서무계(庶務係), 종예계(種藝係), 축산계(畜産係)로 조직되었다.

권업모범장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농업기술인력이 대거 확충되었는데, 1910년도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을 보면 권업모범장의 구성원은 총 48명에 이르렀다. 수원본장의 경우 장장을 비롯한 기사가 6명, 기수 7명, 서기 3명으로 16명이었으며, 대구지장에는 기사 2명, 서기 1명을 두고 있었다. 뚝섬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2명, 서기 1명이 있었으며, 목포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9명이 있었다. 용산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2명, 서기 1명이 있었으며, 평양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수원농림학교에는 권업모범장 기사를 겸직하고 있는 4명을 비롯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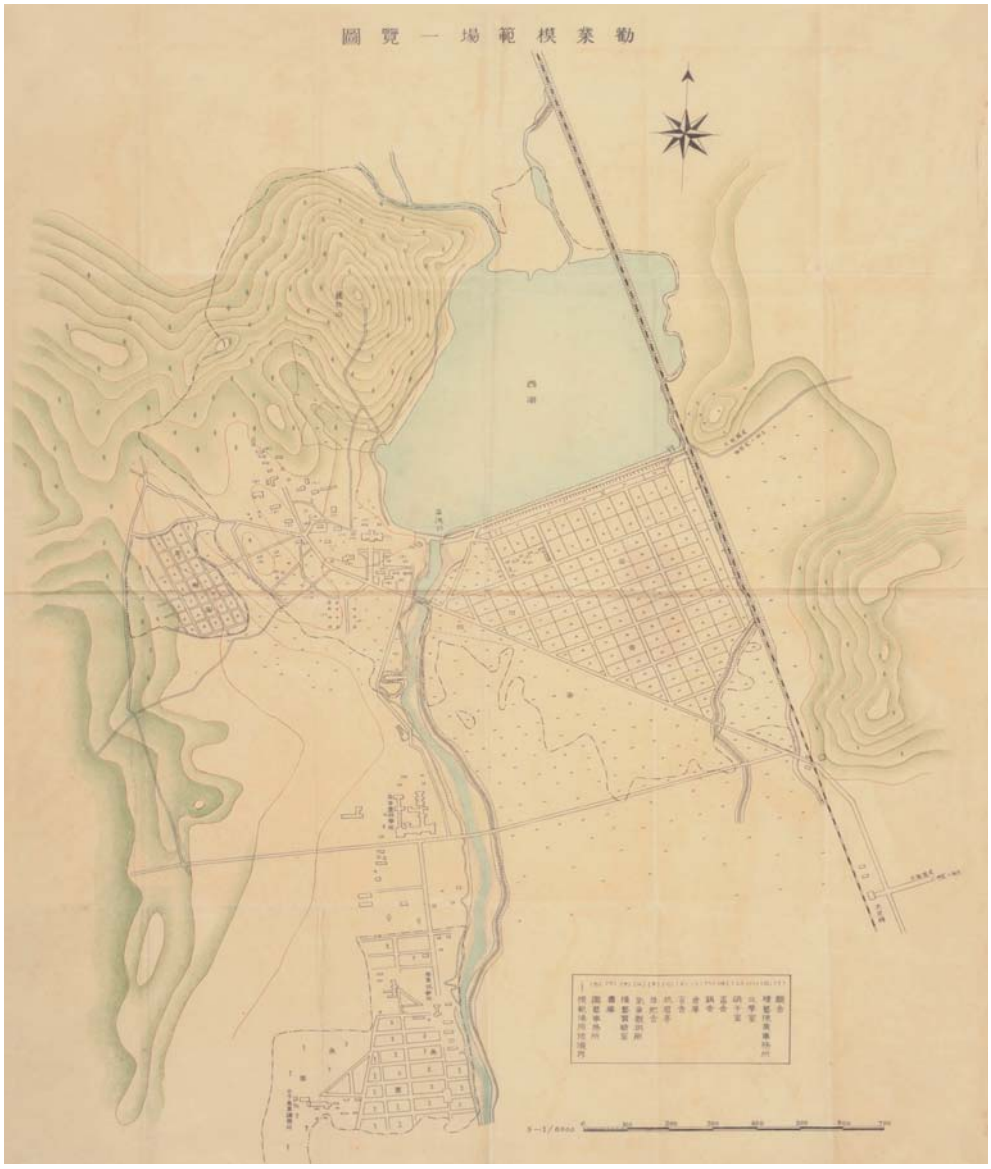
여 교유(敎諭) 4명, 조교유(助敎諭) 4명, 서기 1명이 있었다.

일제에 강점됨과 동시에 1910년 10월 5일 권농방침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은 각 도 장관에 대한 훈시에서 농사개량 방침을 재천명하였다. 그중 이른바 '우량미종(優良米種)' 보급의 과제가 권업모범장에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1912년 12월 농업기술관 회동에서 「미작(米作)에 관한 건」이 지시되었다. 우량품종은 반드시 권업모범장본·지장 또는 도종묘장의 시험성적에 의거하여 작물을 장려할 것을 지시하였다. 여기서 일제가 말하는 '우량품종'이란 한국 재래의 벼품종보다 생산력이 높은 일본품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일제는 한국의 재래품종보다도 생산력이 뛰어난 일본 벼품종을 보급시키는 사명을 권업모범장에 부여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10년대 농업 개량의 사명을 담당할 기관으로 권업모범장이 지적되었다. 이후 권업모범장은 이른바 '우량품종'을 위주로 하는 일본 농업기술체계의 보급자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11년 2월 6일 권업모범장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용산지장에 여자잠업강습소(女子蠶業講習所)를 두었다.

1914년에 이르러 일제는 지방제도를 개편하는 등 식민지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권업모범장도 단순한 지도·장려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비로소 시험·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서 기능할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농업 수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편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1914년 3월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의 지도·장려기관인 대구지장과 평양지장이 폐지되었고, 연구적 성격을 가진 원산출장소는 규모를 확장해서 덕원지장(德源支場)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잠업의 연구·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지장을 폐지하고 새로이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를 설치하였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연구·시험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농업의 기초적인 지도장려사업은 도종묘장 등 지방농업기구에 대폭적으로 이양되었다. 나아가 이전 시기 주먹구구식의 농업시험과 조사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시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권업모범장이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은 1918년 3월 30일자로 관제가 재개편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특수가 식어 가면서,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 가는 기간이었다. 이제 권업모범장은 단순한 농사 개량 장려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의 제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 중심으로 옮겨 가야만 했다. 그래서 권업모범장의 본장이 있는 수원에 1918년 곤충병리계(昆蟲病理係)를 두고, 오로지 병충해에 관한 시험조사를 행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곤충 및 병리에 관한 사항은 종예계에서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별도로 부서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



「권업모범장 일람도」(수원박물관 소장)

에 따라 기사 9명을 1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농림업 교습을 담당해 왔던 수원농림학교를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이탈시켰다. 이에 농림학교는 농림전문학교(農林專門學校)로 승격되었으며, 그해 3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전문학교 관제」가 발포되어 1918년 4월 15일에 개교하였다.

2) 1920년대 권업모범장 조직

1918년 3월 「권업모범장관제」가 개정되면서 권업모범장은 연구 · 시험기관으로서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갔다. 권업모범장의 역할이 연구 · 시험기관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농업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1918년 일본에서 일어난 이른바 '쌀폭동' 이었다. '쌀폭동' 은 곧 수습되었지만 일제에게는 식민지 한국이 안정적 식량공급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그러자면 식민지에 대한 농업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1910년대까지 권업모범장의 주된 사업은 지도 · 장려를 통해 '모범' 을 보이는 수준이었고, 방법상으로는 한국의 전통적 농업기술과 품종을 구축(驅蹴)하고 일본식 농업기술체계와 일본품종을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하여 1920년부터 일제가 실시한 대규모 농업정책이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가 한국에서 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대량으로 반출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 계획을 실시하는 데는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연구 · 시험기구의 확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1919년 12월 제2대 장장이 된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도 권업모범장을 기존의 '장려 · 지도적 성격' 에서 '시험 · 연구적 성격' 으로 그 위상을 강화시켜 나아가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도 1920년 4월부터 산미증식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식산국(殖産局)에서 수리(水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1월 토지개량과(土地改良課)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토지개량보조규칙」이 발포되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1921년 4월부터 농무과(農務課)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쌀 증산을 위한 제도적 완비가 진행되었다. 대규모 쌀 생산정책인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권업모범장의 대규모 확장은 뒤따르지 않았으며 사업내용도 확충되지 못하였다. 대규모 쌀 증산책이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을 총괄하는 기구인 권업모범장은 조사시험 등 응급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 연구가 가능하였으나, 토양과 비료 또는 병리와 곤충 등 농업 전반에 걸친 과학적 연구와 농산제조물 등의 시험 · 연구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었다. 그후 1922년 5월 관제가 개정되어 기수 8명만을 증원하였을 뿐이다. 이것도 1923년 5월 행정 · 재정정리사업으로 도리어 기사 1명, 기수 3명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면서 덕원원예지장이 폐지되었으며, 용강면작출장소는 목포지장에 속하게 하여 목포지장용강면작출장소(木浦支場龍岡棉作出張所)로 개칭되었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와 함께 1920년 1월 「권업모범장관제」를 개정하여 기수 2명을 증원하였으며, 그해 3월 27일 권업모범장 지장과 출장소를 증설하였다. 즉 그해 4월 13일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 서선지장(西鮮支場)을 설치하였으며, 4월 14일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면에 용강면작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5월 3일 규슈(九州)제국대학 교수인 다이쿠바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가 제3대 장장이 되었다. 다이쿠바라는 농예화학자(農藝化學者)로 독일에서 유학하고 토양 · 비료학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의 농업에 관해서는 심히 연구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권업에 관하여는 전혀 소인(素人)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농업 실정에 대해서 식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권업모범장을 일본의 농업시험장과 비슷한 농업기술 연구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권업모범장의 성격도 당연히 "연구기관에 몸을 두고 있는 자는 연구적 태도로써 연구에 종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권업모범장을 농업 전반에 걸친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다이쿠바라가 장장으로 있을 당시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면서 토지가 개량되고 우량품종이 보급됨에 따라 시비량의 증가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한국 농업에서 시비량 증가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화학비료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였다. 그러나 화학비료는 종류의 선정, 시용방법을 틀리게 하였을 때 도리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토양과 비료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때까지 권업모범장에서는 비료 및 토양에 관한 연구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토양 · 비료학의 대가인 다이쿠바라를 장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이쿠바라 장장 시절 권업모범장은 1923년에 이어, 1924년 12월 다시 행정정리에 따라 기사 5명, 속(屬) 3명, 기수 9명이 감원되는 등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무분장규정」도 개정되어 뚝섬 · 세포 두 지장도 폐지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업모범장의 위상이 축소된 것은 당시 산미증식계획이 가지는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는 제1차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개량사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개량을 등한시하였다. 따라서 권업모범장의 기능과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토지 개량과 더불어 농사 개량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권업모범장이 대규모 쌀 증산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그 위상이 도리어 위축되면

서, 일제는 1926년 4월부터 제2차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2차 산미증식계획 실시를 앞두고 권업모범장 장장 다이쿠바라가 1926년 3월 19일 규슈제국대학 총장으로 감에 따라, 제4대 권업모범장 장장에는 가토 시게토모(加藤茂苞)가 취임하였다. 가토 장장은 1903년부터 농상무성 기내(畿內)지장에 재직하면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해 일본 최초로 쌀 품종을 인공교배(人工交配)하였고, 그가 육성한 벼 품종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 후 농학박사로서 규슈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1923년 2월에 총독부 제3회 농업기술원강습회 초청강사로 참석하였으며, 권업모범장의 촉탁을 받아 한국의 각지를 순회하면서 벼농사 상황을 조사한 바가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 농업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가토 시게토모가 제4대 장장이 되면서 권업모범장은 한국 농업의 지도 · 장려적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연구 · 시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1926년 12월 권업모범장 주최 전선지주간담회(全鮮地主懇談會)의 연설에서 그는 모범장의 위상을 '시험 · 연구기관'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기관으로의 위상 강화를 꾀하기 위해 1927년 7월 전임 기사를 11명에서 14명으로, 전임 기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시켰다.

3) 권업모범장 이후의 조직 변천

일제는 192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식 농업기술체계의 단순한 이식만으로는 한국에서 농업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 일본식 농업기술은 한국의 기후와 토질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농업 생산력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1920년까지 농업 생산력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으나, 전간기(戰間期)에 스테그네이션(Stagnation)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권업모범장을 1928년부터 실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결과 1929년 9월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통감부 시기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창설된 권업모범장은 그 사명을 다하고, 이후부터는 '시험 · 연구적 지도' 기관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일제는 1929년 9월 17일자로 「권업모범장관제」를 폐지하고, 칙령 제279호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관제」를 공포하였다. 권업모범장 때는 본장의 사무에 대한 분장규정이 따로 없었다. 내규로서 서무계, 종예계, 토지개량계, 분석계, 곤충병리계, 축산계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면서 「사무분장규정」은 전문분야에 따라 서무과, 종예부, 화학부, 병리곤충부, 축산부, 잠사부 및 여자잠업강습소를 두었다.



농사시험장(수원박물관 소장)

농사시험장은 1930년 초반 본장 1과 4부 1소, 3지장, 4출장소를 두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농업 전반에 걸친 시험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으며, 기초적인 연구를 이끌기 위한 능력을 배양시켰다. 그리고 도종묘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연구와 시험을 행하여 식민지 농업수탈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다년간 서선면작(西鮮棉作)지대에서 면업의 시험과 연구 및 보급을 담당해 왔던 용강면작출장소가, 1930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한편, 일제는 개량품종의 육성과 배포를 목적으로 1908년 종묘장을 설치하여, 일본식 농업기술체계를 지방에까지 이식·전달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식 농법 체계가 한국의 조건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이에 중앙의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것과 더불어 지방의 농업기술을 지배해 왔던 도종묘장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32년 8월 22일 농림국장(農林局長) 통첩(通牒) 제133호로 도종묘장을 도농사시험장(道農事試驗場)으로 개편하였다.

도종묘장이 도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이유는 그동안 일제가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을 이식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도종묘장 시기에는 그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지방에 개량종묘를 육성 배부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종묘장에서 농업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종묘의 육성배부와 같은 사업은 지방의 행정기관과 조선농회 · 산업조합 · 식산계 등과 같은 농업장려기관과 단체로 이관되었다. 그 대신 지방의 농업기술기구는 각 지방에 적응하는 시험 ·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도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도종묘장에서 계속해 온 사업을 계승함과 동시에 농업에 대한 시험 · 조사사업이 확충되었다. 즉 지방에 맞는 품종의 선택에 관한 시험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도조묘장을 도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여 존속하다가, 1944년 5월 이를 모두 농업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15년 동안 농사시험장은 여러 차례 관제와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조직과 사업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제 말기인 1944년 5월 농사시험장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농업기술기관정리통합안(農業技術機關整理統合案)' 에 의거하여, 농업기술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 통합이 단행되었다. 우선 '농사시험장' 을 '농업시험장' 으로 고치고, 농사 시험 · 연구기구를 전부 총독부 산하로 일원화하였다. 즉 중앙에는 본부를 두고 본부 내에는 시험부 · 총무부 · 경영부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지장과 분장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도 단순히 재배기술의 개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농업기술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어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통합정리에 중추적 역할을 한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가 총무부장이 되었으며, 사와무라 도우헤이(澤村東平)가 경영부장이 되었다. 요컨대 농업기술기구를 전면적 총동원체제로 일원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시험장 시설은 8개 지장, 17개 분장으로 하여 총독부 산하로 일원화되었다. 농사시험장에는 경성 · 이리 · 광주 · 대구 · 사리원 · 정주 · 함흥 · 혜산에 지장을 두었고, 그리고 지장 산하에 담당 분장을 두게 되었다.

즉 기존의 도농사시험장이 중앙의 농업시험장 산하로 들어오면서 각 도 주요 농산물 생산지를 지장으로 정하고, 그 외 중요지를 분장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성 · 사리원에 4분장, 이리 · 정주 · 함흥 지장에 2분장, 광주 · 대구 지장에 각각 분장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총무부 · 경영부 · 시험부 및 여자잠업강습소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의 내용을 보면 농업시험장도 농사시험장 시절의 시험 · 연구기관적인 내용이 축소되고, 농촌 통제를 위한 기구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시험장으로 개편되면서 일제는 '종양장(種羊場)', '종모양육성소(種牡羊育成所)' 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 「조선총독부농업시험장 수탁시험 규칙」이 제정되면서 누구든지 시험장에 시험을 수탁(受託)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패전 때까지 농업시험장은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한 채 해방이 되었다.

3. 권업모범장의 인적 구성

권업모범장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농업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농업기술자들이 농업기술을 관장하고 있었다. 권업모범장은 기본적으로 「사무분장규정」에 의해 그 정원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규정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은 1910년부터 1929년까지 권업모범장 수원본장의 직원수이다.

〈표 1〉은 수원본장만의 직원수이기 때문에 권업모범장 전체 구성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929년 9월 17일자로 「권업모범장관제」가 폐지되고, 칙령 제279호로

〈표 1〉 권업모범장 수원본장의 직원수[6]

(단위 : 명)

연도	기사	기수	서기	속	촉탁	합계
1910	6	7	3			16
1911	6	9	3			18
1912	7	8	3			18
1913	8	7	3			18
1914	8	6	3			17
1915	12	10	6			28
1916	9	6	4			19
1917	8	7	4			19
1918	8	5	3			17
1919	9	4	3			16
1920	8	6	4			18
1921	7	7	3			17
1922	10	9		4	2	25
1923	9	14		3	1	27
1924	10	9		4	2	25
1925	9	12		3	1	25
1926	10	13		3	2	28
1927	14	13		3	1	31
1928	19	13		3	2	37
1929	12	14		3	3	32

6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조선총독부직원록」을 참고하여 작성). 1913년과 1935년은 『일본 직원록』을 참고하였다.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관제」가 새로이 제정되었을 때, 기사 15명, 속 6명, 기수 26명을 둘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1920년대 말까지 권업모범장의 정규 직원은 40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에는 관제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촉탁 · 고원 · 조수 등의 보조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

〈표 2〉는 1938년 11월 현재 농사시험장의 직원수이다. 이것을 통해서 권업모범장 시절의 구성원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는 25명, 기수는 45명이었다. 그 외 속 · 촉탁 · 고원 · 조수 · 부수 등 연구보조인력과 견습생 · 용부 · 목부 등 용역을 담당하는 인력 합쳐 모두 347명이나 되었다.

〈표 2〉 1938년 11월 농사시험장 직원수[7]

(단위 : 명)

구분	기사	속	기수	촉탁	고원	조수	부수	견습생	용부	목부	기타	계
본장	9(10)	4	22(2)	1(1)	49	22	19	11	16	2	43	198(13)
남선지장	1		2		3	5		8	1		2	22
서선지장	2	1	4		4	7	3		3		2	26
북선지장	1	1	7		7	2			3		2	23
목포면작지장	1	1	4	1(2)	3	6		6	2		1	25(2)
용강면작지장	1		2		2	5		3	4			17
김제간척출장소			1	4(4)	2			1				8(4)
차련관출장소			1		3	2	2		1			9
합계	15(10)	7	43(2)	6(7)	73	49	24	29	30	2	50	328(19)

다음으로 실질적 일제의 농업기술을 담당한 농업기술자들에 대해 살펴보자. 〈표 3〉은 1931년 5월 현재 권업모범장의 후신인 농사시험장의 직원이다. 대부분이 권업모범장 때부터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속(屬)과 같이 직접 농업기술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사와 기수 등 농업기술자만 살펴보도록 하자. 〈표 3〉에서 기사들은 대부분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한국인은 조백현(趙伯顯) 한 사람뿐이었고, 전부가 일본인들이었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을 일본인만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하 농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은 주로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지방의 농

7 조선총독부 농림국, 『朝鮮の農業』, 1940, 219쪽. 괄호 안은 겸직을 뜻한다.

〈표 3〉 1931년 5월 농사시험장 직원[8]

(단위 : 명)

소속	성명	직임	직위	겸직	소속	성명	직임	직위
본장 (本場)	加藤茂苞	장장(場長)	기사	농학 박사	본장	久納佑孚		기수
	滿田隆一		기사	규슈대(九州大) 교수		福田順		기수
	八田吉平		기사	수원고농 교수		野瀨直毅		기수
	鈴木竹麿		기사	총독부 기사		掘越二郎		기수
	永井威三郎	종예부 주임	기사	농학 박사		高崎達藏		기수
	中田角五郎		기사	규슈대 교수(농학 박사)		今井次郎		기수
	油井岱治	축산부 주임	기사			西嶋辰雄		
	江角金五郎		기사			岩脇龍也		
	田中明		기사	총독부 기사		澁谷佐市		
	川口淸利		기사	수원고농 교수	남선(南鮮)	和田滋穗	지장장	기사
	西川久		기사	농학 박사		佐藤健吉		기사
	中嶋友輔		기사	수원고농 교수		原史六		기수
	三須英雄	화학부 주임	기사			永友辰吉		기수
	尾崎史郎		기사	총독부 기사	서선(西鮮)	高橋昇	지장장	기사
	葛野淺太郎		기사	수원고농 교수		白木新五郎		기사
	中山昌之介	병리곤충부 주임	기사			梅田郁彦		속
	菅野八郎		기사			平田榮吉		기수
	中村鐵夫		기사			澤村東平		기수
	趙伯顯		기사	수원고농 교수		星野徹		기수
	吉田彦八	서무과 주임	속(屬)		북선(北鮮)	小野寺二郎		기사
	勝木淸		속			中馬正義		속
	市山員衛		속			田村嘉機		기수
	河田弘		속			雨森恒雄		기수
	園田宗介		기수			津谷宇米三		기수
	內田幸夫		기수		목포(木浦)	增淵次助	면작지장장	기사
	靑山哲四郎		기수	총독부 세관 기수		井野辰二		속
	大前巖		기수			神邊利重		기수
	中島三郎		기수			石井辰美		기수
	藤田四郎		기수		김제(金堤)	和田滋穗	출장소장	기사
	村田七兵衛		기수			一木寬		기수
	船越秀雄		기수		용강(龍岡)	增淵次助	출장소장	기사
	中川泰雄		기수			都築秀男		기수
	村松茂		기수		차련관 (車輦館)	田中明	출장소장	기사
	坪內俊三		기수			藤田四郎		기수
	松永信義		기수			松永信義		기수

8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이십오주년기념지』, 1931, 20~24쪽.



항미정에서 우가키 총독의 방문을 맞이하는 농사시험장 직원들(수원박물관 소장) 앞줄 오른쪽부터 다나카(田中明) 기사, 야다 요시히라(八田吉平) 교수, 임학서무장, 우가키 총독, 나가이(永井威三郎) 기사, 뒷줄 오른쪽부터 비서관, 유가와(湯川又夫) 장장, 마쓰모토 마코도(松本誠) 경기도 지사이다.

림학교와 간이농업학교가 있었지만 이들 농림학교에서는 단순한 농사기능만을 습득시켰을 뿐 농업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 농업기술은 교육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일보』 1924년 9월 29일자 신문기사를 보면, "조선이 농국(農國)임을 불구하고 외국 유학은 많으나 농학박사는 뵈지 아니하고, 농림학생은 많지만은 임야와 전답은 황무곤충국(荒蕪昆蟲國)이 되어 있고 새 농구(農具)는 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인에게는 농업기술을 시험 ·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주지 않고, 단순히 농사의 기능만을 주입하였던 것이다.

〈표 3〉에 나타나듯이 1931년 당시 농사시험장 직원을 보면 장장으로 가토 시게토모(加藤茂苞)가 재임하였고, 미츠다 류이치(滿田隆一)와 나카다 가쿠고로(中田覺五郎)가 규슈대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수원고농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자는 야다 요시히라(八田吉平), 가와구치 기요토시(川口清利), 쿠즈노(葛野淺太郎), 나카지마 유로스케(中嶋友輔), 조백현 등이다. 총독부 기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들은 쓰즈키 다케마로(鈴木竹麿), 다나카 메이(田中明), 오자키 시로(尾崎史郎) 등 3명이 있었다.

권업모범장의 농학박사로는 혼다(本田幸介),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 다이쿠바



유가와 장장



조백현 교수

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 가토 시게토모(加藤茂苞), 유가와 마타오(湯川又夫) 장장들을 제외하고도 권업모범장 초기 기사였던 도요나가 마리(豐永眞里)와 〈표 3〉에 나와 있는 나가이(永井威三郎), 나카다 가쿠고로(中田覺五郎), 니시카와 히사시(西川久)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농사시험장의 기사들 중에는 농학박사학위 취득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1932년 도쿄대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한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가 있었으며, 사와무라 도우헤이(澤村東平)는 교토(京都)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대부분의 기사들이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권업모범장에 있던 농업 기술자들은 한국 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제가 한국 농업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권업모범장이 한국 농업에 끼친 영향

일제강점기 권업모범장의 주요 연구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로는 일제는 식민지 지배 초기부터 이른바 '우량품종' 혹은 '개량품종' 이라는 미명하에 일본품종을 한국 농업에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제가 강요한 '개량품종' 은 더 이상 생산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권업모범장을 비롯한 농업기

술기구에서는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벼품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식량작물의 육종목표는 대체로 다수성(多收性)과 양질성(良質性)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제하에서 크게 역점을 둔 것은 다수성이었고, 농업기술기구에서도 벼품종 육종의 제일 목표를 다수성에 두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30년 호남 지방에 남선지장(南鮮支場)을 창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중부 지방에서는 수원본장에서, 남부 지방에서는 남선지장에서 벼품종을 육성하여 이것을 장려품종으로 보급하였다.

수원 권업모범장에서 벼품종 개량사업이 행해진 것은 1915년부터였다. 그 당시는 일본에서 들어온 개량품종인 조신력(早神力)·다마금(多摩錦) 등의 품종 중에서 수량이 많고 품질이 양호한 순계(純系)를 선출하는 소위 '순계도태법(純系淘汰法)'이 주로 행해졌다. 이 외에 기존 품종 중에서 비교고사(比較考査)에 의하여 순계선발하는 수준이었다. '인공교잡육종법(人工交雜育種法)'도 1915년부터 순계도태법과 병행하여 시행되었지만, 초기에는 규모도 작고 조직도 보잘것없었다. 본격적으로 교잡육종법이 행해진 것은 1932~1933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농사시험장에서 1939년 말까지 육성된 품종은 277종에 달하였으며, 이렇게 육종된 품종은 도농사시험장과 행정기구 및 농회·금융조합 등의 농업단체를 통하여 한국의 농민들에게 계통적으로 보급되어 한국의 벼 품종은 일본종으로 통일되어 갔다. 이로써 한국농업은 더욱 일제의 농업기술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착되어 갔으며, 이른바 '개량품종'이 보급되면 될수록 기술적 종속이 심화되어 갔다.

둘째로 권업모범장에서 행해진 주된 연구사업은 경종관계이다. 일제가 한국 농업에 이식한 농업기술은 비료와 개량품종만으로 이루어지는 농업기술체계였다. 일제는 한국의 전통농업을 '약탈적 농법'이라고 하면서 비료의 다투화(多投化)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농업의 다비화(多肥化)를 추진하는 주체는 역시 권업모범장이었고, 창립 초기 농업기술자들은 한국 농업에 다량의 시비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쌀 증산을 실시할 때마다 시비의 증투를 강조하였고, 식민지시기 한국 농업은 "금비(金肥) 없이 농업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비화되어 갔다. 1910년대 일제는 '미작 개량 장려'라는 방침에 따라 비료의 생산 증가를 도모하면서 재래비료의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퇴비·녹비 등 자급비료의 생산 증가도 적극 꾀하였다. 1910년대 초반 일제의 비료정책은 소비억제책이었으나 1916년 이후 제한적 사용정책으로, 1918년부터는 판매비료의 소극적 지도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대규모 쌀증산책인 제1차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면서 일제는 저리자금을 알선하

였으며, 자급비료의 증가와 판매비료의 소극적 장려를 추진하였다. 1924년을 경계로 자급비료 · 판매비료 모두 소비가 급증하면서 다비적 농업기술체계가 정착되어 갔다. 특히 녹비(綠肥)작물의 재배 장려와 판매비료 중 유기질비료의 장려가 주축이었다. 하지만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토지 개량지구에서 시비량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다시 제2차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었다. 제2차 산미증식계획에서 일제는 시비량 증가를 위해 '비료개량증시장려계획' 을 수립하여 자급비료의 생산을 증가시켰고, '농사개량저리자금' 으로 비료자금을 공급하여 판매비료의 소비를 증가시켰다. 또한 「조선비료취체령(朝鮮肥料取締令)」을 발포하여 비료에 대한 법제적 장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자급비료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판매비료의 대량소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료의 대량소비체제가 확립된 제2차 산미증식기에 들어와 「조선비료취체령」이 실시되면서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비료 또는 제조원료분석 및 감정규칙」이 발포되었고, 권업모범장은 부정비료의 유통을 근절하여 제2차 산미증식계획의 성공을 보장하여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되었다. 그 후 문제는 유산암모니아[硫安] 주축으로 일제의 비료소비정책이 실시되면서 비종(肥種)과 시비량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된다는 점이었다.

또 경종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병충해 관계의 시험과 조사이다. 특히 도열병에 대한 시험과 연구이다. 1930년대에 들어와 도열병의 피해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내병성(耐病性)이 강한 품종을 육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농사시험장에서는 다수(多收)이면서 내비성(耐肥性)과 내병성이 강한 품종에 육종목표를 두게 되었다.

농사시험장의 경종관계 시험과 연구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일제 말기에 서선지장장(西鮮支場長)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가 개발한 휴립재배법(畦立栽培法)이다. 휴립재배란 논에 밭과 같이 두둑을 쌓아 묘(苗)를 두둑 위에 심는 것으로 밭농사에서 일종의 농종법(壟種法)을 원용한 것이다. 그리고 비료는 두둑의 가운데 시용하고, 두둑 사이에 관개하는 것이다. 휴립재배를 하면 벼의 호흡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외에 비료성분의 보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미의 증수가 적어도 2~3할, 크게는 2배 이상에 달하였다. 즉 1943년 서선지장의 시험성적에 의하면 직파 재배할 경우 48%, 이식재배를 할 경우 60%의 증수를 보였고, 1944년 각 도 농사시험장의 연구에서도 16% 이상의 증수를 올렸다고 한다.

세 번째로 일제의 농업기술기구에서는 벼농사 중심의 시험과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을 식량공급지로 전제한 이후 밭농사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시험과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대 미곡 반출을 조절하기 위해 전작개량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밭농사의 시험과 연구를 농업기술기구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시체제하 식량문제가 대두되면



권업모범장 밭농사 시험장(수원박물관 소장)

서 농산물 전반에 걸친 생산력 확충을 위해 벼농사 · 밭농사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시험과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1920년에 권업모범장에서는 밭농사만을 시험조사하기 위해 서선지장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한국 농업에 대해 처음부터 쌀 증산에만 몰두하여 밭작물에 대한 시험과 연구가 경시되었다. 일제 초기인 1910년 당시 밭농사 면적은 290만 정보, 수전이작(水田裏作) 15만 정보로 모두 합쳐 305만 정보였다. 특히 농사시험장에서의 밭작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 · 시험이 실시될 필요가 증대되면서 1934년에 지방별로 그것의 연락 · 분담 시험을 실시하자는 '농사시험장 개선안' 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제 말기에는 식량수급 문제가 더욱 긴급하게 되자, 앞서 실시해 온 전작개량증식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1941년 이후 5개년간의 식량전작물증산계획(食糧畑作物增産計劃)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941년 이후 5개년간 증산작물을 주로 맥류인 보리 · 밀 · 쌀보리 · 조로 정하였다.

밭농사의 개량을 위해 설치된 서선지장에서는 다케다 소시치로(武田總七郎) 지장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행 밭농사법에 대하여 조사와 시험을 하는 한편 일본과 기타 외국에서 새로운 종자를 도입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 권업모범장에서는 한국의 맥품종(麥品種) 개량, 한국의 기후와 밭작물과의 관계 및 추파대맥(秋播大麥)의 풍흉(豊凶)과 기후와

의 관계 등이 조사 · 시험되었다. 이 외에 1926년에 호밀(Rye, 라이麥)과 소맥의 잡종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1928년에는 일대잡종(一代雜種)의 강세(强勢)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서선지장에는 1925년부터 사탕무우[甜菜]에 관한 시험을 증설하였다.

일제하 권업모범장 농업기술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은 역시 한국의 벼농사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기술기구에서는 한국의 쌀 증산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벼품종 · 재배법 등에 연구와 시험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벼농사에만 연구와 시험을 집중함으로써 일제하 한국의 농업구조는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업기술의 발전도 편파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일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일제의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연구는 한국의 농업적 요구보다도 일본의 요구에 의해 연구의 종류와 대상 · 방법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1910년대 권업모범장을 비롯한 농업기술기구에서는 일본품종 · 기술을 이식하여 농업 수탈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후 일제는 쌀의 대량 반출을 목표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농업기술기구에서는 시비법의 개량과 벼품종 개량에 연구와 시험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쌀의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반출을 위해 일제의 농업기술기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연구가 한국의 전통적 관행기술을 경시하고,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제의 농업기술자들은 식민지 농업기술의 생태학적 합리성과 일본식 시험연구방법을 하나로 융합하여 한국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일본의 농업기술과 맞는 공통부분만을 발전시켰다. 권업모범장 시기에는 '모범장'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한국 농업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우수한 일본 농업기술체계만을 선택적으로 보급하였다. 한국의 농업에 직접 관여했던 일본인도 "권업모범장 등의 기술기관은 그 본질상 시험이라든지, 조사라든지를 경시하였다." 고 말한 바와 같이 권업모범장 시기까지 일본식 농업기술을 이식하는 수준이었다.

셋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연구가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대량의 쌀을 생산하여 대량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농업정책의 기조에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일본의 밭농사 기술에 대한 개발능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한국 밭작물의 발전도 부진하였다고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제는 1931년부터 이른바 '전작개량증식계획' 을 추진하면서, 농사시험장에 새로이 기사 1명, 기수 2명, 고원 4명만을 배치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벼농사에 심히 편중된 연구경향 때문에 충실한 연구성과를 보여 주지는 못하였다.

넷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조사는 한국의 농업 발달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는 일제의 농업 발달과 식량 증산에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의 농업기술기구는 시험과 연구를 통해 한국 농업의 쌀 증산만을 지향하였을 뿐,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농업 발달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시험과 연구는 한국의 농업조건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분히 학술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일본 내에서 시험연구가 불가능한 부분이 한국의 농업기술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벼의 신품종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품종시험 · 재배시험 · 비료시험 · 병충해시험 등 숱한 시험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품종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일제는 한국에 있는 농업기술기구를 통해 한국의 전토(全土)를 무상의 시험답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며, 한국의 광활한 토지를 하나의 시험지로 상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품종을 임상 시험하였던 것이다.



이송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1. 수원의 농업환경
2. 수원의 농업 생산력과 식민농정
3. 수원의 농가경제와 농민생활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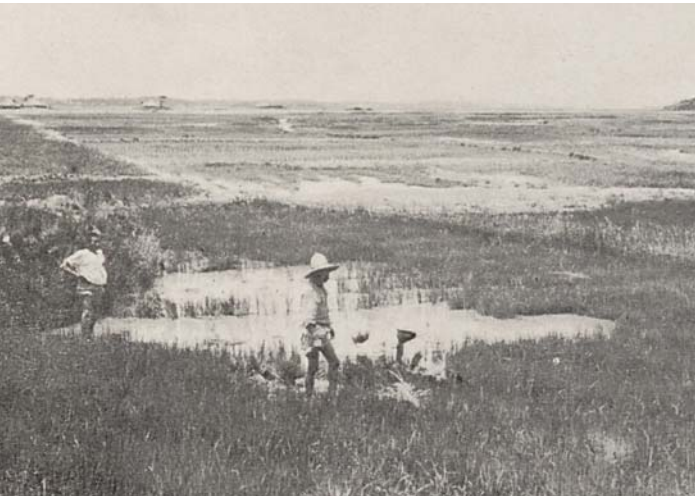
일제하 수원의 농업 생산과 농가경제

1. 수원의 농업환경

일제시기 수원군은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며 경성[1]에서 남쪽으로 약 28㎞(70리), 인천에서 동쪽으로 약 40㎞(100리) 떨어져 있고, 군 안에는 큰 강은 없으나 아담한 작은 내가 여러 곳으로 통하고 물이 넘치고 있어 가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수해의 염려도 적은 곳이었다. 지질은 화강암의 자갈질 양토가 주인 까닭에 땅심이 좋아 모든 농작물에 적합하고, 기후는 수리산, 관악산, 광교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북풍을 막아 주기 때문에 대체로 온화하였다.[2]

수원의 자연환경은 농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1910년 조선에 이주하여 수원에 정착한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3]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수도(한성)로서 기능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 게이죠)이라 불리며 역시 식민통치의 중심부였다. 이 글은 일제시기 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의 서울을 '경성' 이라 표기한다.
2 酒井政之助, 『水原』, 1923, 3~4쪽.



마도면 석교리의 논(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형면 동리 밭(수원박물관 소장)

> 수원은 땅과 기후가 순화한데다 지질까지 매우 좋고, 조선 특유의 큰 강의 범람과 재해도 없으며 발길 닿는 데마다 작은 하천이 있어서 관개가 편하고 오곡이 풍성한 반도 중앙부의 대보고(大寶庫)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같은 하늘이 내려준 이로움을 가진 농민은 권업모범장 설치로 인해 얻은 새로운 지식을 응용하게 되면서 농사가 놀랄 만큼 발달한 것은 모름지기 전도(全道)에서 으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척식박람회, 기타의 유수한 공진회 품평회 등에서 수상자의 과반수를 수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4]

수원은 농업에 적절한 자연환경과 일제의 농업기술기구이자 식민농정의 '참모부'인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어 식민농정의 전개와 그 성과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 대자본의 농사회사(동산농사회사, 국무농장 등)가 설치되었고, 한국인들도 농업 발달과 농민생활 향상을 내걸고 농업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농정의 본질이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공급 기지화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 시기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한 생산력 향상의 결실은 땀 흘린 농민들의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원의 농민들도 여전히 지주소

3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는 일본 니가타현 태생으로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1910년 수원에 정착한 조선 이주 1세로, 수원에서는 법률사무소 소장과 실업인협회 고문 및 조선신문 수원지국장을 지냈다. 수원에 거주하는 동안 『發展せる水原』(1914년), 『華城之影』(1915년), 『水原』(1923년) 등의 수원 관련 저서를 남겼다(사카이 마사노스케 저, 이창식 역, 『발전하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1).

4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24쪽;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3쪽.

작관계의 불평등성과 일방적인 식민농정의 폐해를 고스란히 전가받으며 어렵고 힘든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먼저 수원의 농업환경을 살펴보자. 일제시기 수원군의 경지면적을 논과 밭의 구성 및 자소작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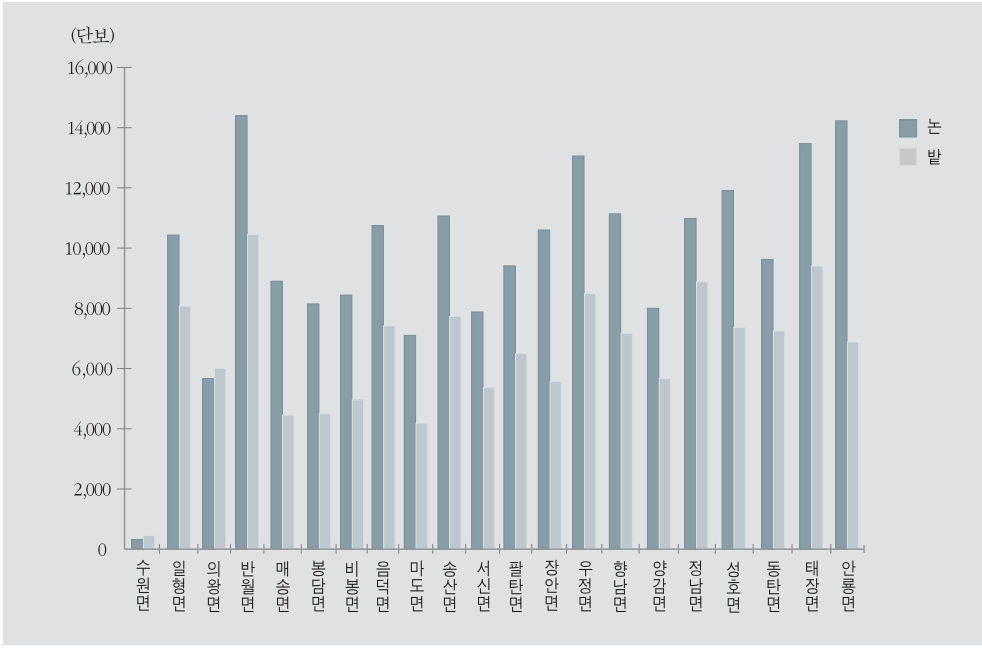
1922년 논과 밭의 비율은 60 대 40으로 논이 많았고, 1930년대도 이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경지의 절대면적은 1922년과 1933년 간에 약 2,000정보(논 1,100정보, 밭 900정보)가 증가했지만, 논밭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수원군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많았던 곳은 반월면이며, 태장면, 우정면, 안룡면이 모두 2,000정보를 넘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1922년 수원군 면별 경지면적[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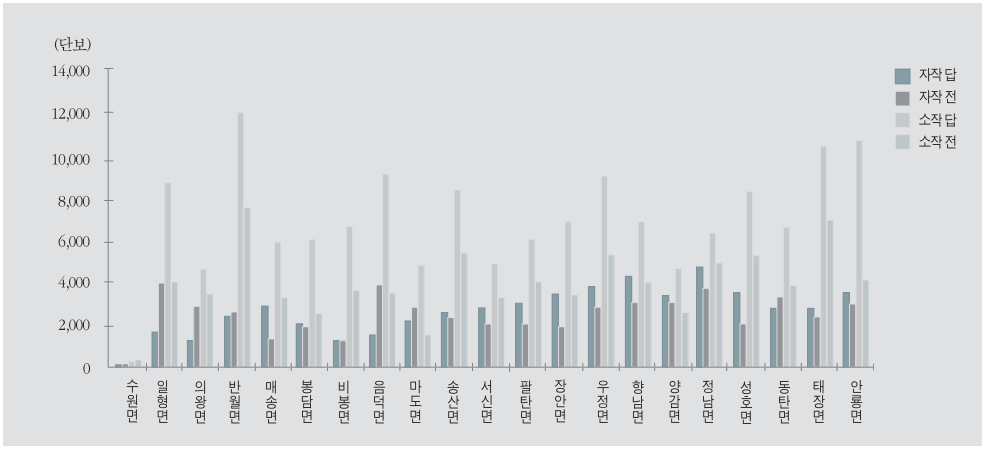
(단위 : 단보 = 300평)

면명	논			밭	합계	자작 · 소작별			
						자작		소작	
	1모작	2모작	계			논	밭	논	답
수원면	336		336	410	746	132	156	204	254
일형면	10,378	147	10,525	8,019	18,544	1,707	3,991	8,818	4,028
의왕면	5,824		5,824	6,179	12,003	1,321	2,757	4,503	3,422
반월면	14,678		14,678	10,437	25,115	2,622	2,686	12,056	7,751
매송면	8,939		8,939	4,585	13,524	2,950	1,505	5,989	3,080
봉담면	8,274		8,274	4,683	12,957	2,158	2,092	6,116	2,591
비봉면	8,382		8,382	5,142	13,524	1,585	1,554	6,797	3,588
음덕면	10,976		10,976	7,389	18,365	1,690	3,931	9,286	3,458
마도면	6,893		6,893	4,456	11,349	2,280	2,782	4,613	1,674
송산면	11,214		11,214	7,815	19,029	2,855	2,480	8,359	5,335
서신면	7,963		7,963	5,794	13,757	3,055	2,350	4,908	3,444
팔탄면	9,319		9,319	6,405	15,724	3,130	2,296	6,189	4,109
장안면	10,559		10,559	5,471	16,030	3,509	2,028	7,050	3,443
우정면	13,041		13,041	8,447	21,488	3,720	3,073	9,321	5,374
향남면	11,135		11,135	7,019	18,154	4,261	3,022	6,874	3,997
양감면	8,134		8,134	5,682	13,816	3,422	3,080	4,712	2,602
정남면	11,051		11,051	8,849	19,900	4,731	3,663	6,320	5,186
성호면	12,025		12,025	7,443	19,468	3,708	2,002	8,317	5,441
동탄면	9,496		9,496	7,328	16,824	2,790	3,380	6,706	3,948
태장면	13,474		13,474	9,278	22,752	2,934	2,455	10,540	6,823
안룡면	14,159	150	14,309	6,923	21,232	3,632	2,755	10,677	4,168
합 계	206,250	297	206,547	137,754	344,301	58,192	54,038	148,355	83,716

5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4~25쪽.



1922년 수원군 면별 전답 경지면적



1922년 수원군 자작 및 소작별 전답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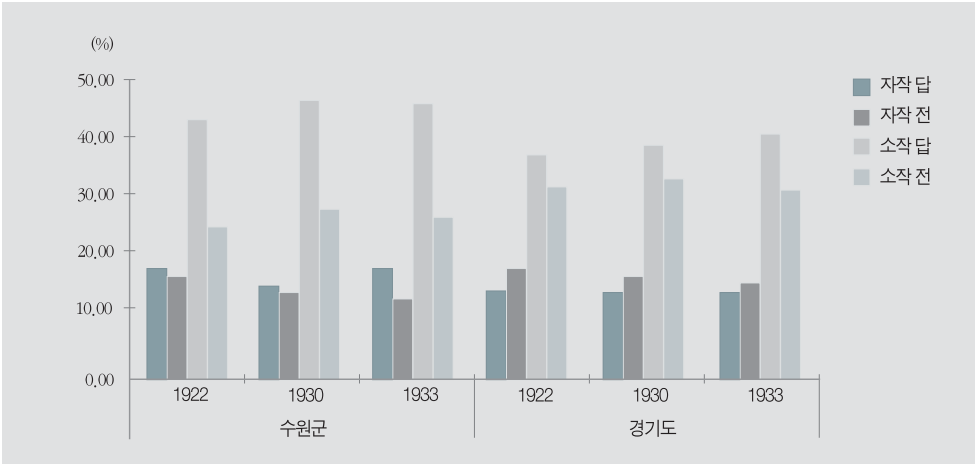
수원군의 상황을 경기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논 비율은 52~53% 정도로 수원군이 논이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원군은 1922년과 1933년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 경기도는 논 비율이 1.5% 정도 증가하였다. 1920년대까지 농사개량사업 및 산미증식계획 등 총독부 식민농정이 미곡 생산량 증가와 상품화에 초점이 있었던

만큼 논 면적의 증가는 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수원의 농업환경은 식민지화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발된 상황이었다 할 수 있다.

다음은 경지의 소유별 면적을 살펴보자. 수원군의 자작지 비율은 32.6%(1922년) → 27%(1930년) → 28%(1933년)로 10년간 4.6%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 중 논의 자작지 비율

〈표 2〉 1922년 · 1930년 · 1933년 경기도와 수원군 경지면적[6]

연도	지역	논			밭	합계	자작 · 소작별			
							자작		소작	
		1모작	2모작	계			논	밭	논	밭
1922	수원군	206,250	297	206,547 (60%)	137,754 (40%)	344,301 (100%)	58,192 (16.9%)	54,038 (15.7%)	148,355 (43.1%)	83,716 (24.3%)
	경기도	1,945,654	19,436	1,962,090 (51.6%)	1,840,945 (48.4%)	3,803,035 (100%)	522,724 (13.7%)	641,858 (16.9%)	1,439,366 (37.9%)	1,199,087 (31.5%)
1930	수원군	210,811	2,785	213,596 (59.4%)	146,007 (40.6%)	359,603 (100%)	51,164 (14%)	46,602 (13%)	162,432 (45%)	99,405 (28%)
	경기도	1,997,446	25,930	2,023,376 (52.3%)	1,842,945 (47.7%)	3,866,321 (100%)	524,306 (13%)	610,279 (16%)	1,499,070 (39%)	1,232,666 (32%)
1933	수원군	214,028	3,450	217,478 (59.8%)	146,287 (40.2%)	363,765 (100%)	57,477 (16%)	45,364 (12%)	160,002 (45%)	100,922 (27%)
	경기도	2,033,961	39,779	2,073,740 (53.0%)	1,838,755 (47.0%)	3,912,495 (100%)	533,423 (13%)	576,899 (15%)	1,540,317 (41%)	1,251,856 (31%)



1922년 · 1930년 · 1933년 수원군과 경기도의 자작 및 소작별 전답 면적

6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4~25쪽;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5년)』, 1930, 18 · 21쪽;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 8년)』, 1933, 18 · 21쪽.

은 약 1%(70정보) 정도 감소했으나, 밭은 3.7%(870정보)가 감소하였다. 반면 소작지 비율은 67.4%(1922년) → 73%(1930년) → 72%(1933년) 증가했고, 그중 논은 약 2%(1,160정보), 밭은 2.7%(1,700정보) 증가하였다. 절대 면적상으로 자작지의 감소량보다 소작지 증가량이 많은 것은 절대 면적 증가분이 대부분 소작지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수리시설과 경지면적 증가가 모두 지주층의 소작지 증가로 이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 구성을 가진 수원의 특성을 농업 작물 및 작부별 특성에 따라 농업지대로 구분해 보면 수원은 경기도 내 벼농사 면에서 '남부지대'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된 개량품종은 일본에서 도입된 개량종인 곡량도(穀良都), 다마금(多摩錦), 은방주(銀坊主)와 농사시험장 남선지장에서 육성한 개량종 풍옥(豊玉)이었다. 농사 일정은 4월 25일경부터 5월 초까지 10일간 모판에 씨를 뿌리고, 6월 상순에서 중순 기간에 모내기를 하였다. 이렇게 심은 모가 벼를 패고 난 지 40~45일 이후에 벼베기가 이루어졌다. 북부와 중부지대에 비해 벼농사는 10일 정도 늦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수원 지역에서는 일형면, 안룡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2모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3〉 1930년대 후반 경기도 지대별 벼농사 경종 기준[7]

구분	① 북부지대	② 중부지대	③ 남부지대
우량장려품종	곡량(穀良), 중은(中銀), 육우(陸羽) 132호	풍옥(豊玉), 중은, 곡량	풍옥, 중은, 곡량, 다마(多摩)
묘대(苗垈) 파상면적	15평	15~20평	15~20평
하종기(씨뿌리기)	4월 15일~25일	4월 15일~25일	4월 25일~5월 5일
평당 하종량	3홉	2.5홉	2.5홉
모내기 적기	5월 하순~6월 상순	6월 상순~중순	6월 상순~중순
평당 주수(株數)	72~90주	72~80주	72~80주
벼베기 적기 : 조생종	출수(出穗) 후 38일	출수 후 38일	출수 후 40일
벼베기 적기 : 만생종	출수 후 43일	출수 후 43일	출수 후 45일

보리농사[麥作]에서도 '남부지대'에 해당한다. 보리(쌀보리 포함), 밀 역시 1920년대까지는 재래종과 일본 품종이 재배되다가 1930년대 이후 새로운 개량종 수원4호 및 6호(보

7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林省農業總合硏究所, 1950, 191쪽.
① 북부지대 :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장단군(산간부), 개풍군(산간부).
② 중부지대 : 고양군, 광주군, 양주군, 여주군, 이천군, 파주군, 장단군(평단부), 개풍군(평단부), 양평군.
③ 남부지대 : 용인군, 안성군, 평택군, 수원군, 시흥군,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리), 육성3호와 수원85호(밀)가 보급 재배되었다. 한국의 보리농사는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논에서의 2모작보다는 밭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하는 겨울보리가 대부분이다. 수원 지역에서도 보리는 밭농사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10월 상순경 씨를 뿌리고 결빙기 전후에 비료를 뿌리고 토입(土入)[8]과 보리밟기가 진행되었다. 이런 일정은 경기도 북부지대에 비해 약 10일 정도 늦는 것이었다.

〈표 4〉 1930년대 후반 경기도 지대별 보리농사 경종 기준[9]

구분		① 북부지대	② 중부지대	③ 남부지대
적응우량품종	보리	승맥(僧麥)	수원4호 및 6호	수원4호 및 6호
	밀	육성3호	육성3호, 수원85호	육성3호, 수원85호
	쌀보리	장단재래	장단재래	장단재래
하종(下種 : 씨뿌리기)	적기	10월 1일	10월 5일	10월 10일
	한계기	10월 10일	10월 15일	10월 20일
하종량(반당)		6승	5.5승	5승
휴건(畦巾 : 밭두둑 넓이)	간작(間作)	3.5척	3.0척	3.0척
	적작(跡作)		2.5척	2.0척
파건(播巾 : 파종 간격)		7촌	6촌	6촌
파구(播溝)의 깊이		7촌 이상	5촌 이상	5촌 이상
반당 추비(追肥) 시용량		300관	250관	200관
추비 시기	1회	11월 중순	11월 중순	11월 중순
	2회	3월 상중순	3월 상순	3월 상순
	3회	4월 상순	3월 하순	3월 하순
춘기 추비 한계기		4월 상순	3월 하순~4월 상순	3월 하순~4월 상순
토입(土入) 시기	1회	11월 상순	11월 중순	11월 중순
	2회	4월 상순	3월 하순	3월 하순
	3회	4월 중순	4월 중순	4월 중순
답장(踏庄 : 보리밟기) 시기	1회	11월 상순	11월 중순	11월 중순
	2회	4월 상순	3월 하순	3월 하순

수원 지역의 논은 1모작이 대부분이었지만 밭작물 재배에서는 '1년 2작지대'에 해당한

8 토입(土入)은 맥류 재배에서 생육 초기 또는 중기에 이랑 사이의 흙을 중경하여 부드럽게 하여 작물의 포기 사이에 뿌려 넣어 주는 작업이다.

9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林省農業總合硏究所, 1950, 192쪽.
① 북부지대 : 개성부,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파주군, 장단군, 개풍군, 고양군, 양주군(북부), 양평군.
② 중부지대 : 경성부, 인천부,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광주군(북부), 시흥군(동북부), 고양군, 양주군(동남부), 양평군(일부 제외).
③ 남부지대 :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평택군, 수원군, 광주군(남부), 시흥군(서남부).

다.[10] 1년 2작의 작부방식은 보리-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밀-콩, 밀-면화, 보리-고구마 등으로 이루어졌다. 보리나 밀은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하고, 여름에 콩이나 면화, 고구마 등을 재배했던 것이다.

수원 지역은 경지 구성상 논이 60% 정도로, 경기도 내에서도 벼농사[稻作]가 중심인 '벼농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 벼농사 지역의 기후는 대체로 연평균기온 10.9도, 강수량은 약 1,177㎜, 무상(無霜)기간은 182일이었다. 경기 벼농사 지역의 경영과 수입 구성을 보면, 벼농사가 전체 농가 경영과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부업을 제외하면 밭작물, 양잠, 양축, 기타 수입에서 모두 밭농사 지역보다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는 벼농사 지역의 영농은 '미곡 단작화' 되어 갔고, 다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업은 벼농사에서 나오는 볏짚을 원료로 하는 '새끼와 가마니[繩叭] 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수입 비중이 컸다.

〈표 5〉 경기도 벼농사 · 밭농사 지역의 수입 구성[12]

(단위 : %)

구분	경기도 벼농사 지역	경기도 밭농사 지역
벼농사	45.3	24.7
기타 경종(밭농사)	10.3	15.9
양잠	2.4	8.3
양축	6.8	10.9
부업	8.6	5.9
기타	26.6	34.3
합계	100.0	100.0

이러한 벼농사 지역의 영농구조 특징은 1930년 조선농회에서 조사한 수원 지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급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벼농사와 밭농사의 경종 수입이 90%에 달하고, 이 중 벼농사는 60%에 이르며, 자작 및 소작 계층에서 경종수입 의존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수원 지역은 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수원 지역 농민들의 삶은 일제의 식민농정과 시장 상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0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林省農業總合硏究所, 1950, 190~193쪽.
11 해당지역은 개풍군, 파주군, 강화군, 김포군, 고양군, 부천군, 광주군, 시흥군, 수원군,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林省農業總合硏究所, 1950, 381~386쪽).
12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林省農業總合硏究所, 1950, 381쪽.

〈표 6〉 1930년 수원군의 농가 수입 구성[1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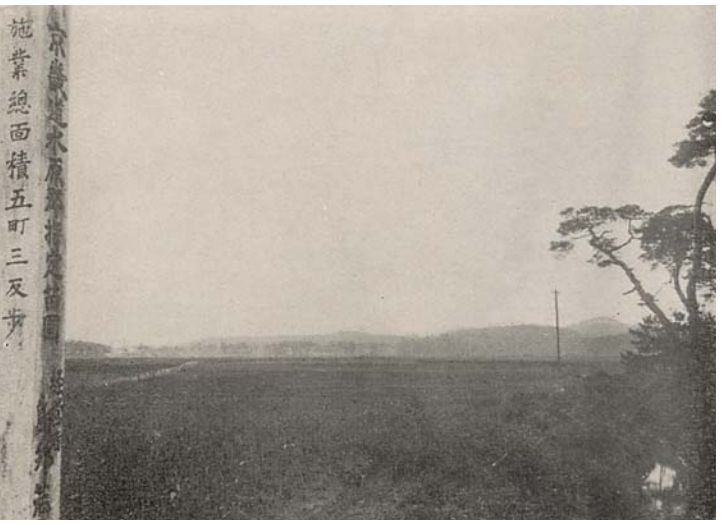
구분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평균
경종 수입	합계	89.7	87.9	91.8	89.6
	벼농사	60.3	55.6	63.8	59.6
	맥류	7.0	7.7	5.0	6.8
	조(속)	0.4	1.5	0.7	0.8
	잡곡	1.9	0.9	1.5	1.5
	두류	3.5	5.3	4.1	4.2
	소채	4.5	5.8	3.8	4.7
	기타	12.1	11.1	12.9	12.0
양잠 수입		0.4	0.8	0.4	0.6
양축 수입		1.5	0.8	1.0	1.1
가공 수입		1.9	2.1	2.3	2.1
임야 수입		3.3	3.3	2.0	3.0
기타 수입		3.2	3.3	2.0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2. 수원의 농업 생산력과 식민농정

일제는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달에 필요한 식량 · 원료의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농업 정책의 초점을 생산물의 개량 증식을 통해 일본으로의 이출을 증가시키는 데 두었다. 이것은 1912년 3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 '미작(米作) · 면작(棉作) · 양잠(養蠶) · 축우(畜牛)의 개량 · 증식에 관한 중대 훈시' 에서 제시한 쌀, 면화, 누에고치, 소의 개량증식 방침으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 중에서 중심은 쌀 증산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품종 개량, 비료(多肥), 물(灌漑) 등 세 요소를 개선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이는 이른바 '개량농법' 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개량품종의 보급률은 1912년 약 5%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하여 1920년 65%, 1936년에는 86%에 달하였다.[14]

1910년대 식민 통치의 토대를 구축한 총독부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쌀 증산에 돌입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대규모 관개시설을 통한 토지 개량을 중심으로 증산을 꾀하려는 농정이었다. 그 결과 관개시설을 갖춘 논이 증가하였다. 1920년 관개논

13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農林省農業總合硏究所, 1950, 382쪽. 조사지는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상수리 및 입북리이다.
14 강만길 엮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107쪽.



수원군 지정묘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이 전체 논 면적의 22%였으나 1935년에는 68%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은방주 같은 새로운 개량품종의 보급, 화학비료의 사용량 증가 등 농사 개량도 함께 이루어져 단보당 수확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는 원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쌀 이출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 계획기간에 생산량 증가는 1.4배 정도였지만 이출량은 5배 정도 늘어났다.[15] 즉,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조선인들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또한 총독부는 지주층을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주체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일본인 및 조선인 대지주의 성장, 일부 조선인 지주의 기업가적 지주로의 변화와 함께 조선인 중소지주들이 몰락하였고, 자작농층의 감소와 소작조건의 악화로 농촌 사회는 파탄 지경으로 내몰렸다. 수탈적 식민농정과 식민지 지주제에서도 수원 지역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수한 농업환경과 권업모범장과 같은 식민농정의 세례를 직접 받아야 했던 상황은 농업 생산력 향상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작물인 쌀(미곡)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1922년 기준 쌀 재배면적이 많은 면은 반월면, 안룡면, 태장면, 우정면으로 1,300정보(약 400만 평) 이상으로 경지가 많은 지역이었고, 그에 따라 수확량도 많았다. 그러나 생산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단보당 수확고를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단보당 수확고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반월면의 경우 단보당 수확고는 수원군 내에서 가장 낮은 650홉 수준이었다.

반면 수원면과 그 주변인 일형면 · 의왕면 지역은 단보당 수확고가 높았는데, 수원면은 1단보당 891홉으로 최고였다. 특히 수원면의 생산력이 높았던 이유는 일본인 대규모 농

15 강만길 엮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110쪽.



안룡면 황계리 일본인 이민부락(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사회사인 동산농사주식회사의 동산농장[16]과 국무합명회사의 국무농장[17]의 소유지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들 일본인 대규모 농장은 총독부의 정책적, 기술적 지원과 자금력으로 높은 생산력을 낼 수 있었다. 이 외에 일본인 지주나 동척 이민자들이 거주했던 곳은 수원면, 태장면, 안룡면, 성호면 정도였는데, 이 지역은 군내 평균 이상의 생산력을 가진 곳이었다. 일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력이 생산력을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생산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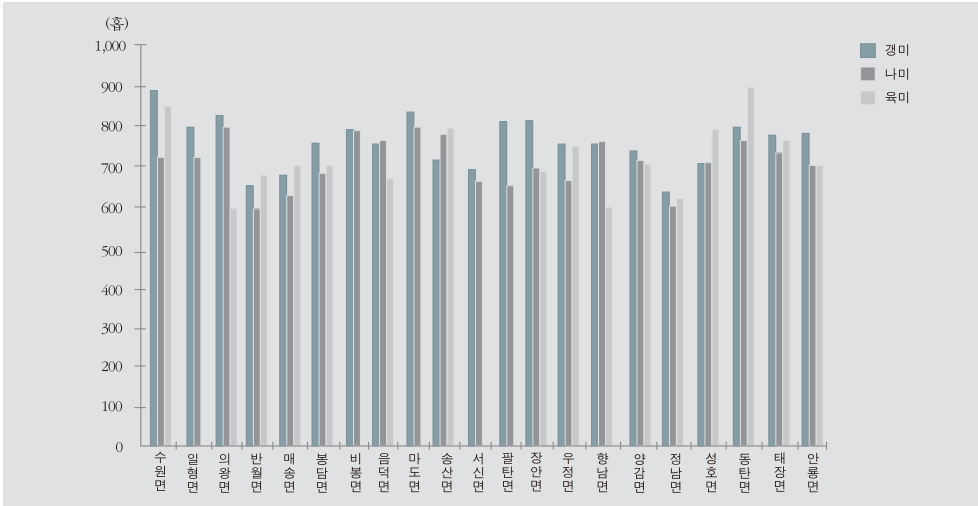
한편 1922년 수원군의 단보당 수확고(멥쌀)가 752홉에서 1930년은 956홉, 1933년은 1,040홉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수원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으

16 동산농장은 1907년 수원군 북부면(북수리 일대)에 본부를 설치하고 수원면 내 남창리, 남수리, 산루리, 매산리, 북수리, 신풍리 전역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에는 수원군 남부면, 북부면이었다). 1912년 4월부터는 태장면 지동에서 식민지 모범경영을 하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실험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경기도청의 자금 지원과 권업모범장의 기술 지도가 뒷받침되었다. 1914년 기준 수원군 내에 1,120여 정보의 토지를 소유했고, 1919년 이후 수원면 매산리에 사무실을 두고 농장을 운영하였다.

17 국무농장은 1906년 12월 수원군 남부면에 본부를 설치하고 수원면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여 수원군 내에 1914년 499정보, 1922년에는 597정보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표 7〉 1922년 수원군 면별 미 작부면적과 수확고[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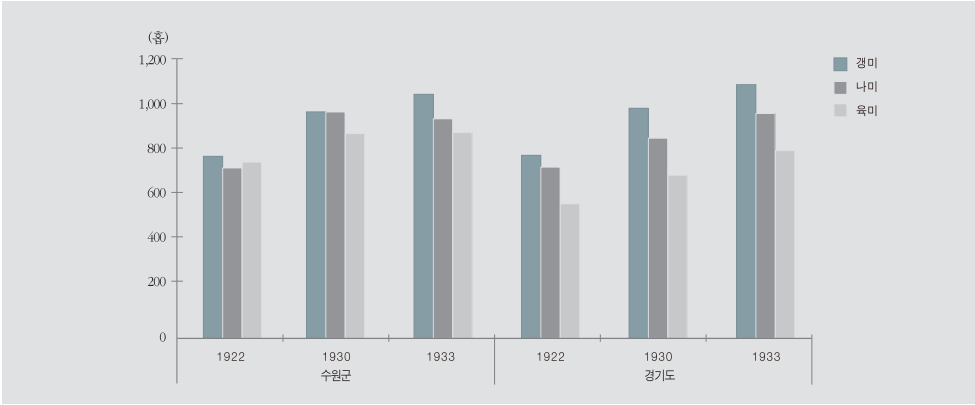
면명	작부면적(단보=300평)				수확고(석)				단보당 수확고(홉)		
	갱미(粳米 : 멥쌀)	나미(糯米 : 찹쌀)	육미(陸米 : 밭벼)	계	갱미	나미	육미	계	갱미	나미	육미
수원면	329	15		344	293	11	184	304	891	733	852
일형면	10,123	564	216	10,906	7,698	412		8,294	800	730	
의왕면	5,559	241		5,800	4,683	193	63	4,876	842	801	600
반월면	13,745	800	105	14,650	8,934	480	66	9,477	650	600	680
매송면	8,570	572	97	9,239	5,742	360	210	6,168	670	629	700
봉담면	8,007	500	300	8,807	6,005	342	210	6,557	750	684	700
비봉면	8,560	357		8,917	6,848	285		7,133	800	798	
음덕면	10,470	600	27	11,097	7,852	456	18	8,326	750	760	667
마도면	6,582	239		6,821	5,596	191		5,787	854	799	
송산면	10,870	315	55	11,240	7,830	246	44	8,120	720	781	800
서신면	7,206	648		7,854	5,000	421		5,421	694	650	
팔탄면	9,362	385		9,747	7,611	250		7,861	813	649	
장안면	9,153	485	84	9,722	7,460	337	58	7,855	815	695	690
우정면	12,346	651	12	13,009	9,469	431	9	9,909	767	662	750
향남면	10,844	591	97	11,532	8,340	450	59	8,849	769	761	608
양감면	7,592	599	95	8,286	5,694	432	67	6,193	750	721	705
정남면	10,895	611	300	11,806	7,082	379	189	7,650	650	620	630
성호면	11,664	630	69	12,363	8,298	447	55	8,800	712	710	797
동탄면	9,919	431	155	10,505	7,994	328	140	8,462	806	761	903
태장면	13,013	617	100	13,730	10,177	463	77	10,717	782	750	769
안룡면	13,813	600	175	14,588	10,804	420	123	11,347	782	700	703
합 계	198,622	10,451	1,887	210,960	149,410	7,334	1,362	158,106	752	709	722



1922년 수원군 면별 미 단보당 수확고

〈표 8〉 1922년 · 1930년 · 1933년 수원군과 경기도 미 작부면적과 수확고[19]

연도	지역	작부면적(단보=300평)				수확고(석)				단보당 수확고(홉)		
		갱미(멥쌀)	나미(찹쌀)	육미(밭벼)	계	갱미	나미	육미	계	갱미	나미	육미
1922	수원군	198,622	10,451	1,887	210,960	149,410	7,334	1,362	158,106	752	709	722
	경기도	1,874,782	127,292	25,762	2,027,836	1,445,151	89,548	14,799	1,549,498	771	703	574
1930	수원군	212,246	7,417	5,784	225,447	221,991	7,109	5,056	234,156	956	958	874
	경기도	1,965,843	69,877	34,863	2,070,583	1,929,449	59,703	24,014	2,013,166	981	854	689
1933	수원군	211,466	7,073	5,721	224,260	219,879	6,610	4,960	231,449	1,040	935	867
	경기도	1,988,850	62,263	32,748	2,083,861	2,158,713	60,179	25,848	2,244,740	1,085	967	789



1922년 · 1930년 · 1933년 수원군과 경기도 미 단보당 수확고

로 미곡 생산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원군의 생산력 수준을 전체 경기도 내에서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22개 군 중 1930년은 13위, 1935년은 15위로 중하위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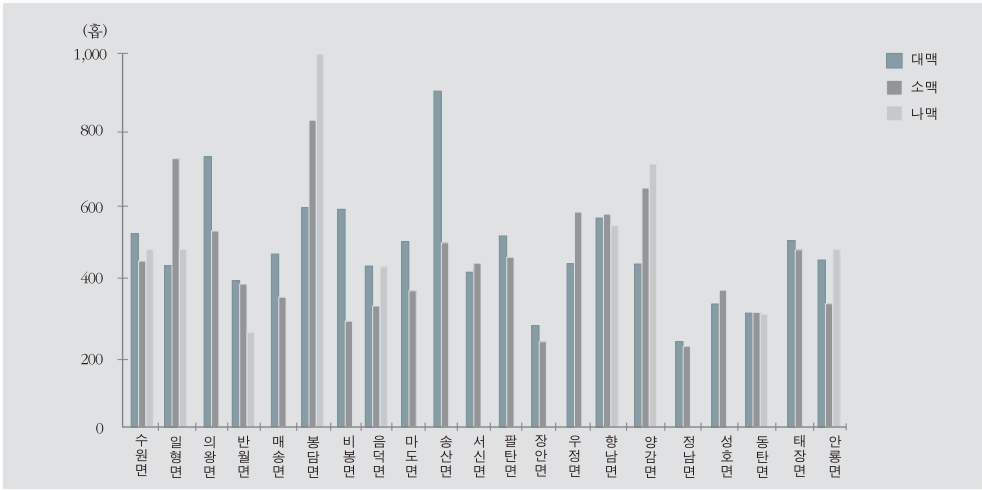
쌀과 함께 한국인의 주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소비되었던 보리와 밀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 지역에서 보리와 밀은 대부분 밭의 2모작으로 재배되었다. 보리의 경우 1922년 기준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태장면이었고, 반월면, 음덕면, 우정면, 안룡면이 6,000단보 이상의 재배면적을 갖는 곳이었다. 역시 단보당 수확고는 재배면적의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송산면이 900홉으로 가장 많았고, 의왕면, 봉담면, 비봉면이 높았다.

18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9~31쪽.

19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9~31쪽;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 5년)』, 1930, 24~25쪽;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 8년)』, 1933, 24~25쪽. 1930년 갱미(멥쌀)의 단보당 수량 순위는 경기도 22개 군 중에서 수원군이 13위이고, 1933년 갱미(멥쌀)의 단보당 수량 순위는 수원군이 15위이다.

〈표 9〉 1922년 수원군 면별 맥류 작부면적과 수확고[20]

면명	작부면적(단보=300평)				수확고(석)				단보당 수확고(홉)		
	대맥(보리)	소맥(밀)	나맥(쌀보리)	계	대맥	소맥	나맥	계	대맥	소맥	나맥
수원면	125	22	3	150	69	10	2	81	550	460	500
일형면	5,494	762	103	6,359	2,472	572	56	3,100	450	730	500
의왕면	3,830	577		4,407	2,791	308		3,099	728	534	
반월면	6,512	643	26	7,181	2,604	257	7	2,868	400	398	269
매송면	3,982	325		4,307	1,792	113		1,905	450	348	
봉담면	3,557	268	9	3,834	2,135	228	9	1,372	600	850	1,000
비봉면	3,895	1,300		5,195	2,335	390		2,725	600	300	
음덕면	6,255	1,600	82	7,937	2,689	517	35	3,241	430	323	428
마도면	3,084	280		3,364	1,566	103		1,669	507	368	
송산면	5,678	380		6,058	5,110	190		5,300	900	500	
서신면	4,085	1,050		5,135	1,732	465		2,197	423	443	
팔탄면	2,205	551		2,756	1,103	248		1,351	500	450	
장안면	3,730	520		4,250	1,078	122		1,199	289	233	
우정면	6,361	771		7,132	2,831	457		3,288	445	593	
향남면	2,511	650	211	3,372	1,419	377	112	1,908	565	580	530
양감면	4,820	285	8	5,113	2,111	194	6	2,311	438	680	750
정남면	5,450	1,800		7,250	1,400	440		1,840	257	244	
성호면	4,945	1,346		6,291	1,681	511		2,192	346	380	
동탄면	5,414	1,539	108	7,061	1,625	461	32	2,118	300	300	296
태장면	8,230	794		9,024	4,187	391		4,578	508	492	
안룡면	6,381	874	172	7,427	2,800	300	80	3,180	439	343	465
합 계	96,544	16,337	722	113,603	45,530	6,653	339	52,522	472	410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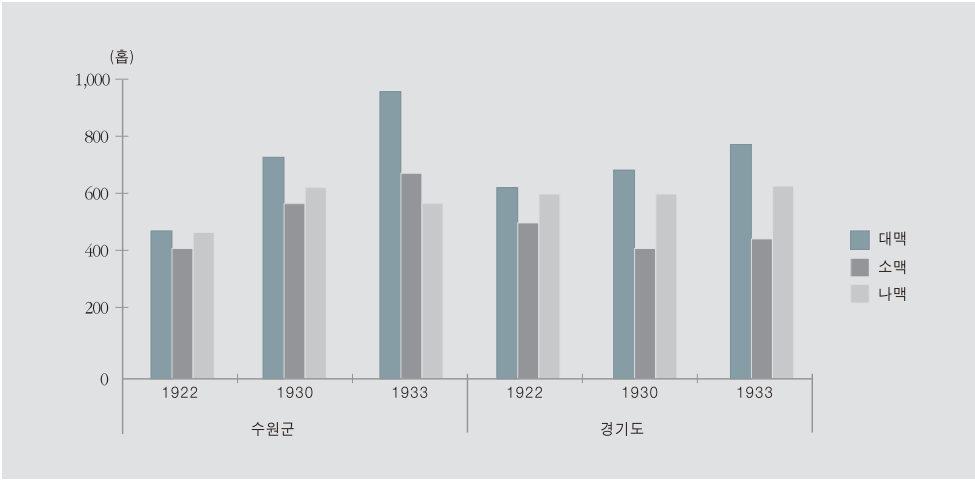
1922년 수원군 면별 맥류 단보당 수확고

밀은 보리 다음으로 밭 2모작으로 재배되는 작물인데, 재배면적은 정남면, 음덕면, 동탄면, 성호면, 비봉면이 넓고, 단보당 수확고는 봉담면이 850홉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형면, 양감면이 높았다. 대체로 쌀은 수원면을 중심으로 그 인근인 태장면, 안룡면이 높은 생산력을 보인 반면, 보리와 밀 등의 맥류는 수원면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서남부 지역이 높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

1910~1920년대 총독부의 식민농정이 주로 미곡 생산력 향상과 이출 증가에 초점을 맞

〈표 10〉 1922년 · 1930년 · 1933년 수원군과 경기도 맥류 작부면적과 수확고[21]

연도	지역	작부면적(단보=300평)				수확고(석)				단보당 수확고(홉)		
		대맥(보리)	소맥(밀)	나맥(쌀보리)	계	대맥	소맥	나맥	계	대맥	소맥	나맥
1922	수원군	96,544	16,337	722	113,603	45,530	6,653	339	52,522	472	410	470
	경기도	789,633	265,427	13,501	1,068,561	509,875	137,622	8,322	655,819	646	517	616
1930	수원군	114,000	891.5	810	123,725	87,352	5,196	531	93,079	766	582	655
	경기도	876,610	243,874	11,037	1,131,521	622,663	99,787	6,845	729,295	710	409	620
1933	수원군	116,440	7,872	718	124,412	114,441	5,532	422	121,385	983	703	588
	경기도	917,891	241,986	11,785	1,171,662	737,175	113,044	7,653	857,872	803	467	649



1922년 · 1930년 · 1933년 수원군과 경기도 맥류 단보당 수확고

20 酒井政之助, 『水原』, 1923, 31~32쪽.

21 酒井政之助, 『水原』, 1923, 31~32쪽;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 5년)』, 29쪽;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 8년)』, 29쪽. 1930년 대맥(보리)의 단보당 수량 순위는 경기도 22개 군 중에서 수원군이 10위이고, 1933년 대맥(보리)의 단보당 수량 순위는 수원군이 5위이다.



성 안의 보리타작(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산미개량 전단지(수원박물관 소장) 식량증산을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적어 놓았다.

추었으므로 미곡 생산력의 증가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맥류의 생산력 증가도 있었다. 보리는 수원군의 1922년 단보당 수확고가 472홉이었는데, 766홉(1930년), 983홉(1933년)으로 증가하였다. 밀 역시 1922년 410홉에서 582홉(1930년), 703홉(1933년)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쌀의 경우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있었으므로 수원 지역이 눈에 띌 만한 생산력 증가를 보인 것은 아니었는데, 맥류의 경우는 달랐다. 1922년에는 보리와 밀 모두 단보당 수확고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지만, 1930년과 1933년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보리의 경우 수원군은 경기도 21군(경성부 제외) 중 10위였고, 1933년에는 5위로 올랐다.

수원은 벼농사 중심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미곡 생산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이지만, 수원의 미곡 생산력은 좋은 자연환경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강점 이후 식민농정으로 생산력 증가가 급격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곡 생산과 유통의 수탈적 구조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결국 농민들은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맥류나 잡곡 생산에 더 노력을 기울였고, 농업기술의 개선은 맥류에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원 지역의 농업 생산력 증가를 이끌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장려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품평회' 개최 등의 활동이었다. 총독부는 각 도나 군 단위로 농업작물에 대한 품평회나 기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생산기술을 홍보하고 이에 앞장선 농민들에 대해 포상 · 격려하여 농업 생산력 증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작물에 대한 품평회는 1910~1920년대에 걸쳐 거의 매년 실시되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4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도 수원군, 남양군, 용인군, 진위군 연합 농산물품평회가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열렸다. 이 품평회에 출품한 물품은 총 1,622점에 달했고, 심사원들의 엄정한 심사로 1등 8점, 2등 20점, 3등 40점, 4등 140점 합계 208점이 선발되었다. 11월 28일 포상수여식에는 히가키(檜垣) 경기도장관, 혼다(本田) 권업모범장장을 비롯하여 연합 각 군 군수, 군서기, 기타 각 관공리원, 독농가 등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 중 관람자수는 매우 많아 1일 평균 1,000명 이상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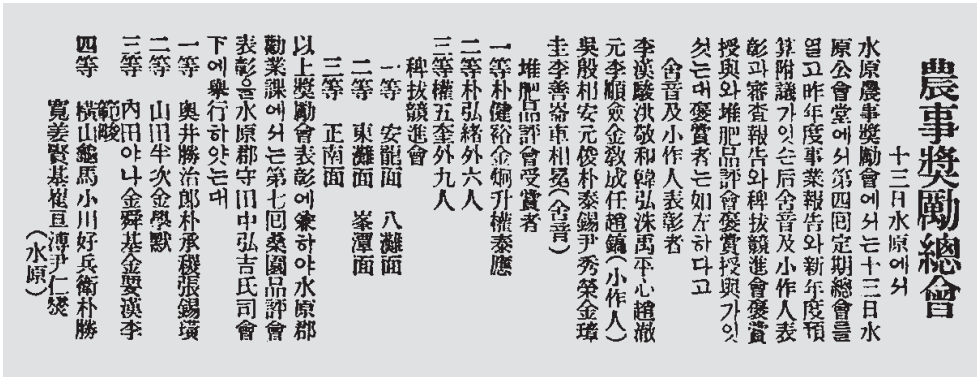
이러한 품평회의 효과에 대해 "관람자들은 출품물의 우량함에 놀라 이것이 종자 및 농구 농법 개량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개량은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개선할 것을 기약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고 하였다. 수원지방금융조합을 시작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동산농장, 기타 연합군의 대지주 등은 이 품평회의 유익함을 인정하여 앞으로 경기도 및 각 부군은 물론 적어도 경성 이남 각 군의 연합 농산물품평회를 수원 지역에서 개최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하였다.[22]



1923년 11월 개최된 수원군 외 7군 연합 물산품평회 상장(과천문화원 소장)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대규모 미곡증산정책이 실시되면서 품평회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22 「수원군 외 3군 연합 농산물품평회」, 『조선농회보』 9권 1호, 1914년 1월, 114쪽.



農事奬勵總會

十三日水原에서

水原農事奬勵會에서는十三日水原公會堂에서第四回定期總會를열고昨年度事業報告와新年度豫算附議가잇슨后舍音及小作人表彰과審査報告와稗拔競進會褒賞授與와堆肥品評會褒賞授與가잇섯는데褒賞者는如左하다고

舍音及小作人表彰者

李漢駿洪敬和韓弘洙禹平心趙澈元李順奭金敎成任趙鎬(小作人)

吳殷相安元俊朴泰錫尹秀榮金璋圭李善榮車相昊(舍音)

堆肥品評會受賞者

一等朴健裕金炯升權泰應

二等朴弘緖外六人

三等權五奎外九人

稗拔競進會

一等　安龍面　八灘面

二等　東灘面　峯潭面

三等　正南面

以上奬勵會表彰에參하야水原郡勸業課에서는第七回桑園品評會表彰을水原郡守田中弘吉氏司會下에擧行하얏는데

一等　奥井勝治郎朴承穆張錫璣

二等　山田半次金學默

三等　內田아나金舜基金斐漢李範峻

四等　橫山龜馬小川好兵衛朴勝寬姜賢基權亘溥尹仁燮(水原)

농사장려총회 신문기사(『동아일보』, 1924년 4월 14일)

만큼 다양한 품평회가 개최되었다. 1923년 10월 경기도 수원, 진위, 안성, 용인, 이천의 5군 연합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미곡의 증수를 목적으로 벼[稻] 다수확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각 군의 대표적 출품답 100점에 대해 도 및 군직원이 엄밀한 심사를 시행하여 우량한 61점에 대해서는 각 등수별로 상금을 수여하였다.[23] 미곡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큰 규모의 품평회도 개최되었다. 1923년 11월 15~19일 5일간 수원군 외 7군 연합 물산품평회가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열렸다. 15일 개회일에 입장자수는 3,500여 명에 달했고, 18일 수원공회당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특등 9명, 1등 60명, 2등 114명, 3등 232명, 4등 341명으로 총 756명이 수상하였다. 이 중 특등상을 받은 수원 출신은 박제태(朴濟泰 : 현미, 수원군 정남면), 기무라 다비(木村タビ : 춘견, 수원군 수원면), 윤병협(소, 수원군 일형면), 코마츠(小松源一 : 돼지, 수원군 문학면)이었다.[24]

1924년 12월 6일에는 수원, 진위, 안성, 용인, 이천의 5군 연합 표미(俵米)품평회가 개최되었다. 이 품평회는 미곡의 단순한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상품화에 적합한 형태로 생산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표미 부문의 특등상은 2명이었는데, 그중 수원군 향남면 송곡리 이ㅁ우(李ㅁ雨)였다.[25] 1926년에도 10월 15~18일 4일간 수원, 진위, 안성, 용인, 이천의 5군 연합 다수확품평회가 열렸다.[26] 1928년에는 11월 8~9일 양일간 수원군 내 팔탄면

23 「稻 다수확 품평회」, 『조선일보』, 1923년 10월 17일. 각 등수별 상금은 다음과 같다. 특등(상금 40원) 3점, 1등(25원) 8점, 2등(15원) 20점, 3등(5원) 30점.

24 「수원군 외 7군 연합 물산품평회」, 『조선일보』, 1923년 11월 10일; 「수원물산품평회」, 『동아일보』, 1923년 11월 17일; 「수원물산품평, 수상자 칠백오십」, 『동아일보』, 1923년 11월 21일.

25 「5군이 연합한 표미품평회」, 『시대일보』, 1924년 12월 14일.

에서 팔탄공립보통학교 주최로 농산품평회가 열렸다. 면에서 주최하는 것이었지만 출품 점수가 800점에 이르렀다.[27]

미곡 중심의 농산물품평회 외에도 집에서 기르는 축산물에 대한 가금품평회,[28] 야채품평회[29] 등도 개최되었다. 최종 생산된 물품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개량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 1920년대는 미곡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시비, 제초 등의 농사 개량도 장려되었는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초, 특히 피 뽑기를 매우 강조하였다. 1923년 10월 2일 수원군 피 뽑기 경진대회가 개최되었고, 1924년에는 수원농사장려회 총회를 개최하여 사음과 소작인 표창과 함께 퇴비품평회, 피 뽑기 경진회 수상자에 대한 포상 수여가 있었다.[30] 1925년에는 음덕면에서 피 뽑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31]

1920년대까지 총독부는 미곡을 중심으로 증산을 통한 수탈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주제는 확대 발전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과 농업공황으로 일본 자본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농산물가격도 폭락하였다. 이에 미곡 중심의 증산정책이라는 식민농정은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30년대 조선 농촌사회는 계급모순 심화와 경제적 피폐로 식민 지배체제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총독부는 식민지 지주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농가경제 안정을 슬로건으로 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여 식민 지배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다.

1932년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되었고, 1933년에는 '농가경제갱생계획'이 실시되었다. '농가경제갱생계획'은 파탄 위기에 있는 개별 농가의 경제안정을 위해 '식량 충실, 현금수지 균형, 부채 근절'을 농가갱생 3목표로 설정하였다. 농촌진흥운동 제1기 계획(1932년부터 5개년)에서는 총농가호수 290여 만 호 중 소작, 자소작농에 속하는 소세농(小細農) 230만 호를 갱생대상농가로 설정하고, 1933년과 1934년에 시험적으로 매년 1면 1읍 1부락을 표준으로 실행에 착수했는데, 그 수는 전체 농가의 3% 수준이었다.

수원군에서도 농촌진흥운동을 위한 농촌진흥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32년 10월 9~10일 양일간 면장 및 각 관계당국자를 불러 농촌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10월 말까지 수원군 600여 개소에 농촌진흥회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수원군 일형면 파장리 진흥회가 제1착으로 10월 15일 설립되었다.[32] 이어서 전 군내에 면별 창설 일정을 결정하였다.[33] 일

26 「5군연합 다수확품평」, 『동아일보』, 1926년 10월 15일.
27 「팔탄 농산품평」, 『동아일보』, 1928년 11월 14일.
28 「수원군 가금품평회」, 『조선일보』, 1924년 11월 7일.
29 「야채품평회 수원군농회 주최」, 『매일신보』, 1933년 11월 2일.
30 「농사장려총회, 13일 수원에서」, 『동아일보』, 1924년 4월 14일.
31 「稗拔경진회 표창식」, 『시대일보』, 1925년 12월 27일.

례로 비봉면에는 10월 23일까지 총 27개소가 설립되었는데 회원은 1,100여 명으로 양노리 3개소, 남전리 2개소, 삼화리 5개소, 구포리 3개소, 쌍학리 4개소, 상기리 2개소, 청료리 3개소, 자안리 2개소 등이다. 의왕면도 27일까지 40여 개소의 농촌진흥회 조직을 완료하였다.[34]

총독부는 1932년부터 시작된 농촌진흥운동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1935년 '갱생지도부락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갱생지도부락을 1935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총 6만 9,754부락, 1읍면당 30부락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개별농가 단위로 수행되었던 농촌진흥운동을 부락(마을) 단위의 집단 지도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35]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증산과 동원체제 구축에 나섰다. 1939년 대한해로 전시 식량 수급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으로 군수동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본 본국과 함께 총독부는 행정조직과 국민운동조직을 통합하고 여기에 각 부문의 민간운동까지 총망라하여 1941년 국민총력운동을 시작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기존 농촌진흥운동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합하여 '농산촌생산보국운동'을 전개했고, 그 실행계획으로 '부락생산확충계획'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농산촌 민중생활의 안정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인 본위를 버리고 "국방국가체제 완성을 위한 생산력 확충을 계획"한다는 국가 본위를 지도 목표로 하고, 지도 방법으로 농가경제갱생계획을 부락생산확충계획으로, 집보다는 마을을 중점에 두고 새로운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36]

이러한 부락생산확충계획은 수원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여러 마을(부락)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실행을 위한 강제적 노력이 진행되었다. 부락생산확충계획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곳은 1942년 1월 현재 전체 부락의 97%(7만 611개), 계획수립 농가는 전체 농가의 92.4%에 달하였다.[37] 이처럼 정책 수행 대상의 폭을 확대시킨 것은 정책 실행이 현실적 조건을 감안할 여유도 없이 전쟁 수행을 위한 목표 달성에 급급한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군 성호면 외삼미리의 한 마

32 「월말까지 전부 창설할 수원농촌진흥회」, 『매일신보』, 1932년 10월 17일.
33 수원군 내 농촌진흥회 창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32년 10월 16일 : 일형면, 음덕면, 동탄면, 17일 : 의왕면, 송산면, 양감면, 18일 : 매송면, 마도면, 19일 : 반월면, 봉담면, 서신면, 20일 : 비봉면, 장안면, 안룡면, 21일 : 양정면, 정남면, 성호면, 22일 : 수원읍, 팔탄면, 향남면, 태장면(「수원군농촌진흥회 각 면에 일제 창설」, 『매일신보』, 1932년 10월 18일).
34 「수원군 관내의 농촌진흥회 창설」, 『매일신보』, 1932년 11월 1일.
35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도서출판 선인, 2008, 67~68쪽.
36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도서출판 선인, 2008, 87쪽.
37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정과, 『朝鮮に於ける部落生産擴充計劃 實施概要』, 1942, 1~2쪽.

을' 에 대해 마을 현황을 조사하고, 그를 기반으로 3개년에 걸쳐 마을 단위의 생산확충계획을 세운 사례를 살펴보고자 다.[38]

조사는 1941년 1월 20일 실시되었고, 계획은 1941년 4월 1일부터 실행되었다. 외삼미리 마을의 개황은 〈표 11〉과 같다. 이 마을은 59호 규 로 든 가구가 농업에 종사했고, 남

〈표 11〉 수원군 성호면 외삼미리 모(某) 마을 개황[39]

대항목	소항목		내용
호수 및 인원	호수		59호
	인구	남	166인
		여	169인
	기타		없음
자소작별 호수	지주		없음
	자작		3호
	자소작		20호
	소작		35호
	농업노동		1호
경작지	총계		153정 2반 5무
	답	자작	7정 5반 5무
		자작	9정 1반
		소작	70정 7반 5무
	상전(桑田)		35무
	기타 田		180무
	임야		27정 8반 5무
공동시설	공동경작	답	30반
		전	5반
	공동 유지(溜池)		6,300평
	농용(農用) 임야		10정
	공동이용 기구기계	혼상구	1절(切)
		천막	1장(張)
	비황저축	곡류	210석
		현금	1,100원
금비 시용량	배합비료		63가마니(叭)
	유안		67가마니(叭)
	과인		2가마니(叭)

38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정과, 『朝鮮に於ける部落生産擴充計劃 實施概要』, 1942, 23쪽.
39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정과, 『朝鮮に於ける部落生産擴充計劃 實施概要』, 1942, 23쪽.

성과 여성의 비율은 166 대 169로 거의 비슷하였다. 마을에 거주하는 지주는 한 가구도 없고 자작농이 3호가 있을 뿐이었다. 반면 소작농이 35호로 60%에 달했고, 자소작농도 20호였다. 부재지주의 땅을 마을 주민의 93%가 경작하는 매우 빈한한 마을이었다. 마을의 경작지 중 논은 28%에 불과했고, 밭이 52%이고 나머지는 임야, 뽕밭 등이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작은 저수지와 임야 정도였고, 혼장례에 사용하는 기구가 있었다.

이러한 마을 상황을 바탕으로 3개년에 걸쳐 마을 전체의 생산력을 확충시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 내용은 〈표 12〉와 같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식량작물은 쌀, 보리, 밀, 콩, 고구마이고, 원료작물로 면화와 양잠(고치), 축산물은 소, 돼지, 면양이었다.

먼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쌀은 더 이상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 단보당 수확량을 현재 352승에서 3년 후에는 420승으로 약 20%를 증가시키는데, 방법은 종자를 잘 선별하고 시비 증가와 논갈이로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밭작물에서는 밀은 쌀과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은 그대로 두고 단보당 수확량만 65승에서 91승으로 40% 증가시키고, 보리는 재배면적을 현재보다 2배 정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단보당 수확량도 약 30% 증가시켜 절대량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계획하였다. 반면 콩은 재배면적을 현재의 57% 수준으로 줄이고, 단보당 수확량은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밭작물에서 주식작물인 보리와 밀의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콩은 줄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식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였다.

면화와 양잠은 자급자족을 하는 정도로 재배한 현재 상황을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식량 생산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축산물에서 소는 주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현재 수량은 유지토록 하고, 의류 원료 증산을 위한 '남면북양' 정책의 연장선에서 가축에서는 면양은 현재 39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3년 후에는 215두로 5배가 넘는 증가를 계획하였다. 가마니와 퇴비는 현재 자급자족용으로 생산하는 것 외에 별도로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식량 공출과 수송에 필요한 가마니와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퇴비를 적극 생산하도록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외삼미리 마을의 부락생산확충계획은 식량작물의 증산과 군수물자에 필요한 원료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1941년에 들어오면 노동력 동원이 본격화되면서 농촌 내에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화학비료[金肥]에 적응력이 있는 품종을 보급해 온 상황에서 군수무기 생산으로 화학비료 생산 감소에 따른 시비량 부족은 퇴비만으로는 보충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조건의 악화 속에서 정책적 강제만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물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곡이나 주요 군수물자에 대

〈표 12〉 수원군 성호면 외삼미리 모(某) 마을의 현재 생산량과 생산계획[40]

종목	구분	현재 생산량	계획			실행사항
			제1년	제2년	제3년	
미 (쌀)	작부면적(무)	4,340	4,340	4,340	4,340	– 종자는 파종답 생산벼를 사용하여 염수선(鹽水選)을 행할 것 – 퇴비 및 반당 200관을 시용할 것 – 추경 및 심경을 행하고 배합비료 5관을 시용할 것
	총수량(인 : 升)	172,768	173,600	177,940	182,280	
	반당수량(승)	352	400	410	420	
대맥 (보리)	작부면적(무)	1,225	2,450	2,450	2,450	– 과인산석회는 3관을 시용할 것 – 종자는 냉수촌탕침법을 행할 것 – 퇴비는 반당 150관을 시용할 것 – 적기 파종 및 예취를 힘써 행할 것
	총수량(승)	12,617	269,50	289,10	31,850	
	반당수량(승)	103	110	118	130	
소맥 (밀)	작부면적(무)	370	370	370	370	– 작부면적 증가를 도모할 것 – 착산동분말(錯酸銅粉末)을 사용하여 흑수병 예방을 행할 것
	총수량(승)	2,405	2,849	2,960	3,367	
	반당수량(승)	65	77	80	91	
대두 (콩)	작부면적(무)	2,830	2,830	1,220	1,220	– 종자의 입선(粒選)을 힘써 행할 것
	총수량(홉)	22,130	22,074	10,614	11,685	
	반당수량(홉)	782	780	870	950	
면	작부면적(무)	457	594	594	594	– 맥간작을 실시하여 작부면적을 증가할 것 – 적심제췌아(摘心除贅芽)를 힘써 행할 것 – 개서면(開絮棉)은 비에 젖지 않은 채로 채취할 것
	총수량(근)	6,489	8,910	8,910	8,910	
	반당수량(근)	142	150	150	150	
양잠	상전(무)	35	35	85	85	– 자급자족을 주로 하여 뽕나무의 비배(肥培)에 노력할 것 – 뽕의 눈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비배관리를 힘써 행할 것
	소립매수	춘10, 추9	춘10, 추9	춘12, 추10	춘12, 추10	
	수견량	춘60, 추45	춘60, 추45	춘72, 추50	춘72, 추50	
소		44	44	44	44	– 생사(生飼)를 힘써 행할 것 – 사료의 증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겨울철 저장에 힘쓸 것 – 암소를 사육하여 송아지 생산을 도모할 것
돼지		6	10	17	28	– 잔재(殘滓)를 이용함과 동시에 사료의 증산을 도모할 것 – 구비(廐肥)의 증산을 도모할 것
면양		39	165	177	215	
가마니			곡 4두입 5,119 곡 3두입 5,119 비료용 1,229			– 원료 고(藁)의 건조저장에 힘쓸 것 – 겨울철, 기타 농한기를 이용하여 증산에 노력할 것
퇴비 (관)			106,603	120,183	132,902	– 원료를 절약하여 원료 증산을 도모할 것 – 체반(切返) 및 관수(灌水)에 힘쓸 것 – 퇴비사를 설치하여 사내 퇴비 증산에 노력할 것
고구마		133	300 8,100 270	300 7,890 263	300 8,010 267	– 묘상(苗床)을 만들어 육묘할 것 – 종저(種藷)의 저장을 실시할 것 – 만반(蔓返 : 고구마줄기 거두기)에 힘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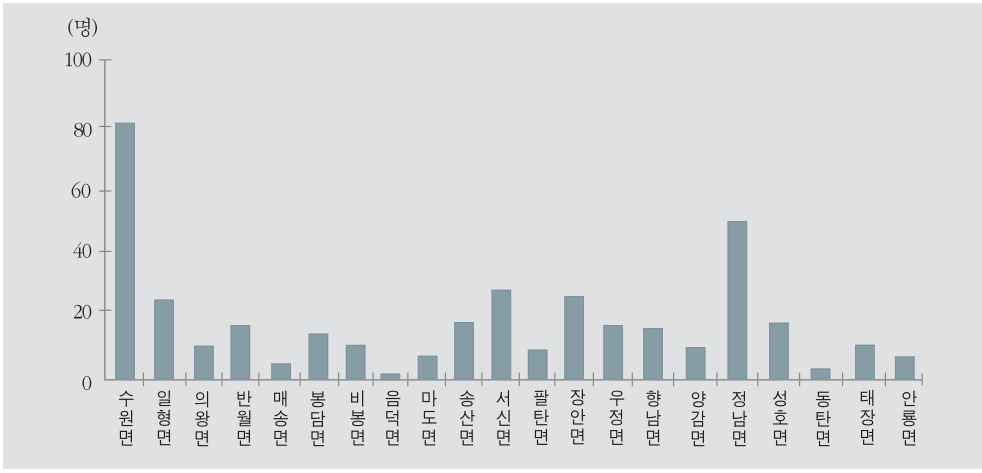
40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정과, 『朝鮮に於ける部落生産擴充計劃 實施概要』, 1942, 23쪽.

한 강제 공출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의욕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이 부락생산확충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당국 및 경찰력을 총동원한 강제 집행이 농민들을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이 식민지 조선의 농민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고 수원 지역의 농민들도 그러한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3. 수원의 농가경제와 농민생활

수원군은 총독부 식민농정의 중심지였던 만큼 1910년대부터 미곡증산정책, 각종 농업개량정책의 세례를 많이 받았던 곳이다. 그럼 수원 지역 농민들의 삶은 보다 윤택해졌을까? 수원군 내 모든 가정의 생계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총독부에서는 1926년 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를 통해 각 지역의 생활 상태를 조사했는데 그중 수원군도 조사 지역이었다.[41]

1926년경 각 면별로 재산 1만 원 이상을 소유한 부자(富者)수와 빈자(貧者)수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재산 중 주요한 것은 토지로서 경제력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즉 10만 원 이상의 자산가는 극히 적었다. 수원면에 거주하는 대지주와 자본가는 6명으로 최대 30만 원



1926년 수원군 면별 부자수

41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표 13〉 1926년 수원군 면별 부자수[42]

(단위 : 명)

면명	1만원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6만원 미만	7만원 미만	8만원 미만	9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5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계
수원면		18	23	14	8	3	1		2	8	4				2	83
일형면		3	8	6	5	2	1				1					26
의왕면		5	3	1	2											11
반월면	4	6	5	1												16
매송면	2	4		1												7
봉담면	7	6								1						14
비봉면		3	5	1	1	1										11
음덕면										1						1
마도면			6	2	1											9
송산면		10	12	3	2											17
서신면	14	4	3	2	2		2		3							30
팔탄면	1	7	1													9
장안면		16	9													25
우정면			11	1		3	1									16
향남면	4	5	1	2		1										15
양감면	2	4	5	1												12
정남면	40	8	1	2												51
성호면		8	7	1												16
동탄면			2	1												5
태장면																11
안룡면																8
계	74	107	102	37	21	10	5	0	5	10	5	0	0	0	2	393

이상을 소유하였지만, 수원군 전체로 일형면의 1명을 추가하여 총 7명에 불과하였다.[43] 1만 원 이상의 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수원면이었고(83명), 그다음은 정남면(51명), 서신면(30명), 일형면(26명), 장안면(25명)이었다.

반면 빈자수는 매우 많아 일제치하 조선인의 경제력이 얼마나 저열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4〉의 세농과 궁농의 기준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토지 농민 중 매우 영세한 규모의 경작지를 소작하는 경우 '세농', 그러한 소작지마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일용노동이나 날품으로 살아가는 경우 '궁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농과 궁농이 가장 많은 면은 안룡면(1,500명)이며, 1,200명 이상인 면도 반월면, 향남면,

42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86쪽.
43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85~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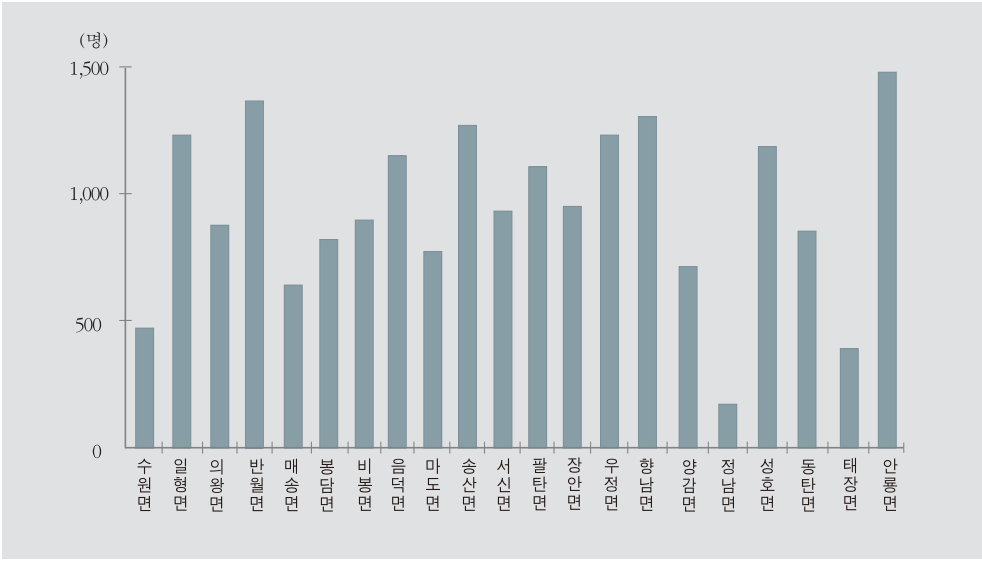
송산면, 일형면, 성호면에 이른다. 그러나 면별 총인구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역시 안룡면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 향남면이 17%, 반월면, 팔탄면, 장안면이 16% 이상, 일형면, 봉담면, 비봉면, 서신면이 15%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정남면은 1.8%로 매우 낮았고, 수원면 4.1%, 태장면 5.4%로 낮았다.

이처럼 수원 군민의 전반적 생활 상태는 낮은 수준이었다. 재산가는 일부에 불과했고, 빈부 차가 심한 만큼 토지의 소유 정도도 매우 불공평하였다. 토지소유자는 매년 토지를 구입 확장하였고, 소작인 중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신용 또는 설비를 가진 자는 매년 소작지가 증가하여 많은 경우는 5~6정보까지 소작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영세한 소작농은 더욱 신용을 잃어 소작지도 점차 감소하였고, 농사개량에 필요한 자본력(비료, 농구 등)이 없기 때문에 2~3단보의 소작도 할 수 없어 곤란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겸병 경향은 매년 현저해지고 그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었던 것이다.[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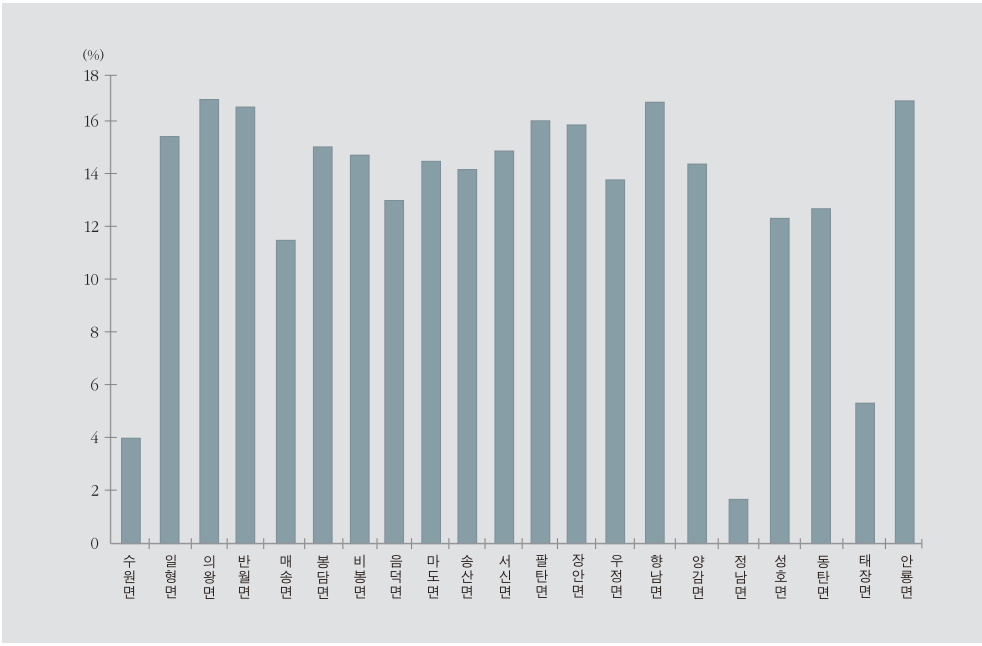
〈표 14〉 1926년 수원군 면별 빈자수[45]

(단위 : 명)

면명	세민	궁민	걸식	계	1925년 총인구
수원면	360	120	2	482(4.1%)	11,699
일형면	516	704	8	1,228(15.7%)	7,819
의왕면	650	150	20	820(17.0%)	4,819
반월면	363	964	81	1,408(16.8%)	8,383
매송면	415	198		613(11.7%)	5,230
봉담면	300	500		800(15.4%)	5,192
비봉면	185	741		926(15.2%)	6,084
음덕면	269	874		1,143(13.0%)	8,798
마도면	338	457		795(14.8%)	5,364
송산면	565	641	37	1,243(14.4%)	8,606
서신면	450	516		966(15.3%)	6,312
팔탄면	243	850		1,093(16.2%)	6,747
장안면	421	546		967(16.0%)	6,057
우정면	382	811		1,193(13.8%)	8,653
향남면	366	959	7	1,332(17.0%)	7,824
양감면	204	509		713(14.6%)	4,881
정남면	120	24	2	146(1.8%)	7,916
성호면	450	752		1,202(12.5%)	9,645
동탄면	559	312	2	873(13.1%)	6,652
태장면	400	23		423(5.4%)	7,792
안룡면	700	800		1,500(17.1%)	8,754
총 계	8,256	11,451	159	19,866(13.0%)	153,227



1926년 수원군 내 면별 빈민수



1925년 인구대비 빈민 비율

44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89쪽.
45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87~88쪽; 朝鮮總督府,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 第1卷 京畿道)』, 1930.

이러한 수원 지역 농가경제 상태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1926년 화성, 발안, 오산, 남양의 4개 금융조합에서 각각 지방에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에 대해 그 경작 단별, 가족 원수 및 동거 고인, 수입액, 지출액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을 살펴보자.[46]

먼저 세 지역의 전체 수지 상태를 보면, 일형면 송죽리 농민은 자작농과 소작 대농은 흑자, 그 외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팔탄면 덕우리 농민은 자작농과 자소작, 소작 대농층은 흑자를 보이지만, 영농 규모가 작은 자소작, 소작 중농 이하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음덕면 송림리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였다.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 대규모 경작을 하는 대농층도 모두 적자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절대적인 경작면적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일형면 송죽리의 자작 중농층은 논 2정 7반, 밭 2정 2반을 소유, 총 5정보(1만 5,000평)의 토지를 소유 경작하여 140원의 잉여를 보고 있다. 팔탄면 덕우리의 소작 대농은 논 1정 5반, 밭 4반, 총 2정보(6,000평)의 경지를 소작하고 있다. 자신의 토지는 전혀 없지만 소작 규모가 2정보에 이르니 소작인 중 유일하게 13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음덕면 송림리는 자작 중농층도 소유면적 논 1반 5무, 밭 1무 정도로 총 1반 6무(500평)의 적은 규모를 소유하고 있다. 자소작, 소작농층은 모두 1반보(단보)의 경지도 경작하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한다 해도 일가족의 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작면적은 있어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군의 빈자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빈농층(세농, 궁농)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작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도 2정보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1928년 수원군의 1호당 경지면적은 논 9반 5무, 밭 6반 2무, 합계 1정 5반 7무인데,[47] 실제로는 평균 1호당 경지면적도 경작하지 못하는 농가가 절반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48] 그에 따라 수원군 절반 이상의 농가는 항상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농가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에 거주했던 계층별, 민족별 생활 상태를 살펴보자. 이 역시 1926년 조사한 자료인데, 총 28가정에 대해 호주 성명, 연령, 본관, 직업, 가족, 고

46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243쪽. 이 조사는 수원군 일형면 송죽리, 수원군 팔탄면 덕우리, 수원군 동탄면 반송리, 수원군 음덕면 송림리 4지역이 조사되었으나 '동탄면 반송리'는 조사수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47 경기도, 『경기도농사통계(소화 3년)』, 1928, 20쪽.

48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평균 경지면적을 경작하지 못하는 농가가 적어도 50% 이상이었음은 확실하다. 1928년 수원군 계급별 농가호수는 지주(갑, 을) 1,010호(4.4%), 자작 1,846호(8.1%), 자소작 6,281호(27.4%), 소작 1만 3,707호(60%)로 토지의 집중화 경향이 심해 실제 1호당 경작하는 면적은 대부분 1정보 미만의 영세농이 절반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룡면 평리 지주층 독농가의 집(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안룡면의 중류 농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수원 지역의 하층 민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수원 북문 밖 노동자의 집(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표 15〉 1926년 수원군 일형면 송죽리 농가 생계수지 상태[49]

구분		경작반별						가족원수 및 동거고인(명)		수입액(원)	지출액(원)	차인 수지(△부족)	성명
		답			전								
		자작(반, 무)	법정지가(원)	소작(반, 무)	자작(반, 무)	법정지가(원)	소작(반, 무)	경작종사	경작종사 X				
자작농	중농	27.3	948		22.1	246		5	4	940	800	140	용영목
	소농	12.2	514		0.082	114		2		270	230	40	용직문
자소작	중농			0.070	0.089	106		4	3	420	420		용환문
	소농	0.028	0.058	0.100	0.025	34		2	2	340	340		용기순
소작농	대농			0.100			0.020	2	1	305	245	60	용덕실
	중농			0.100			0.015	6	3	400	400		용성운
	소농			0.040			0.010	5	3	365	365		이춘회
	세농			0.010			0.010	3	1	250	250		용재건

〈표 16〉 1926년 수원군 팔탄면 덕우리 농가 생계수지 상태[50]

구분		경작반별						가족원수 및 동거고인(명)		수입액(원)	지출액(원)	차인 수지(△부족)	성명
		답			전								
		자작(반, 무)	법정지가(원)	소작(반, 무)	자작(반, 무)	법정지가(원)	소작(반, 무)	경작종사	경작종사 X				
자작농	중농	10.0	350		4.0	52		2	5	552	538	14	남철우
	소농	7.0	170		4.0	50		1	3	351	344	7	남태희
자소작	중농	3.0	60	4.0	3.0	26	2.0	2	4	244	226	18	남상철
	소농	2.0	40	3.0	2.0	20	2.0	2	3	160	188	△28	이종설
소작농	대농			15.0			4.0	3	4	413	400	13	김흥렬
	중농			8.0			3.0	2	3	243	255	△13	허 훈
	소농			4.0			2.0	1	3	133	165	△32	김상봉
	세농												

인, 지위, 친족, 부조, 자산, 노동, 교육정도, 복장, 식물(食物), 주택, 시계(時計), 도량형의 유무, 등화의 종류 수량, 위생, 신앙, 취미오락 상태 등 전반적인 생활 상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위에 대해 조선인은 편의상 구래의 관습을 따라 양반 · 중인 · 상민 등 호칭을

49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243~244쪽. 수입액은 본업수입액(소작농은 소작료를 납부한 잔액) 및 부업수입의 합계액이다. 지출액은 본업, 부업에 관한 각종 재료비, 식비, 피복비, 공과, 학자, 관혼장제비, 기타 생활비의 합계액이다.

50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247쪽.

〈표 17〉 1926년 수원군 음덕면 송림리 농가 생계수지 상태[51]

구분		경작반별						가족원수 및 동거고인(명)		수입액(원)	지출액(원)	차인수지(△부족)	성명
		답			전			경작종사	경작종사 X				
		자작(반, 무)	법정지가(원)	소작(반, 무)	자작(반, 무)	법정지가(원)	소작(반, 무)						
자작농	중농	1.54	468		0.099	47		2	4	635	735	△100	윤종필
	소농	0.096	284		0.085	36		3	4	389	419	△30	이경선
자소작	중농	0.081	243	0.003	0.089	53	0.20	4	4	461	581	△120	이승렬
	소농	0.060	216	0.002	0.040	24		2	3	347	347		이승희
소작농	대농			0.300			0.120	7	8	618	658	△40	이양선
	중농			0.070			0.060	3	5	120	150	△30	이승배
	소농			0.060			0.020	2	2	87	107	△20	이장선
	세농			0.010			0.008	2	2	30	40	△10	구연식

사용했고, 일본인 및 중국인은 상 · 중 · 하의 3계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52]

그중 신분과 직업, 가족과 고인의 수, 재산, 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먼저 조선인 가정에 대해 보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1번(허모), 5번(박모), 10번(배모), 11번(박모), 12번(김모), 19번(김모)의 여섯 가정이었다. 이 중 10번은 지주, 1번, 11번, 12번, 19번은 자작농, 5번은 소작농이었다. 10번(배모)의 경우 소작료가 연간 4,500원으로 전체 수입의 90%가 소작료 수입이었다. 5번(박모)은 토지가 전혀 없는 소작농인데, 실제 소작지는 매우 적었고(소작료 지출 10원), 노임 수입이 160원으로 임노동에 의존해 살았다고 할 수 있다. 1번(허모), 11번(박모), 12번(김모), 19번(김모)은 자작농인데 완전히 자가 경작을 하는 경우는 1번과 11번이었고 12번과 19번은 대부분 자가 경작하지만 일부 소작을 주기도 하였다. 자작농들의 수지 상황을 보면 1번(허모)은 소유한 토지에 비해 가족 수가 많아 300원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비슷한 가족 규모로 결국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수지 상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소유면적이 큰 11번(박모)이 255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업농가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 소유 규모가 경제수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농업 외에 어업 · 상업을 겸업하는 경우나 자유업 · 노동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업농가에 비해 경제 상태가 나은 편이라 할 수 있고, 8번(안모)의 경우 상업을 하면서도 상

51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253~254쪽.
52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129쪽.

〈표 18〉 1926년 수원군 생계 상태 조사결과[53]

민족	번호	호주	연령	계층	직업	가족수	고인수	재산(부동산)	부채(원)	수입(원)	지출(원)	수지(원)
한국인	1	허모	50	중인	농업	8	1	전 2,814평 답 1,811평 가옥 13칸	500 (금융조합)	1,150	1,448.13	−298.13
	2	백모	55	중인	어업, 농업	7		답 200평 산림 4,000평 선박 1척	100 (개인, 월 5%)	510	580.50	−70.50
	3	김모	33	상민	어업, 상업	3		가옥 5칸		150	134.26	15.74
	4	이모	62	중인	농업, 상업	5		산림 3,000평 대지 88평 가옥 8칸	100 (개인, 월 5%)	650	590	60
	5	박모	47	하민	농업	4		대지 60평 가옥 5칸	5 (상계, 월 3%)	218	202	16
	6	이모	47	하민	자유업	7				522	522	0
	7	김모	42	중인	상업	8	2	전 7,000평 답 8,000평 산림10,000평 대지 500 가옥 20칸	500 (개인, 일보 4전)	2,000	1,690	310
	8	안모	42	중인	상업	6	2	전 5,000평 답 20,000평 산림 7,000평 대지 60평 가옥 19칸	6,000	(개인, 월 1.5%)	8,000	8,035
	9	심모	56	양반	자유업 (변호사)	9	1	전 3,000평 답 6,000평 대지 120평 가옥 20칸	500	(개인, 월 1.5%)	1,500	1,402
	10	배모	26	양반	농업	9	1	전 5,050평 답 30,000평 산림 20,000평 대지 550평		4,988	980	4,008
	11	박모	31	중인	농업	5	1	전 3,200평 답 4,500평 산림 6,000평 대지 300평		690	435	255
	12	김모	51	상민	농업	5	1	전 3,000평 답 2,000평 산림 9,000평 가옥 15칸		527	585	−58
	13	이모	38	백정	도부 (屠夫), 음식점	6		가옥 8칸		382	362	20
	14	홍모	28	양반	제염	2		가옥 4칸		280	206.60	73.40
	15	김모	40	천민	상업, 농업	5		가옥 7칸	70 (개인, 월 4%)	390	390	0
	16	이모	35	천민	노동자	3		가옥 5칸		220	63	142

민족	번호	호주	연령	계층	직업	가족수	고인수	재산(부동산)	부채(원)	수입(원)	지출(원)	수지(원)
한국인	17	김모	29	중인	노동자				50 (개인, 월 5%)	60	96	−36
	18	홍모	55	양반	노동자	3		가옥 5칸		155	155	0
	19	김모	53	천민	농업	5		전 1,500평 답 600평 대지 50평 가옥 7칸		435	435	0
	20	하모	45	양반	순사, 농업	2		가옥 8칸		670	650	20
	21	이모	45	상민	노동자	2		가옥 5칸		185	130	55
일본인	22	오니시 (大西)	48	상	상업	4		답 7,938평 가옥 20칸		100,130	99,440.6	859.94
	23	태고시 (太鼓矢)	53	중	농업	3		전 1,978평 대지 900평 가옥 8칸	2,000 (식은, 연10%)	1,100	1,050	50
	24	에비 하라 (海老原)	44	중	공무원	4				1,000	1,009	−9
	25	리쓰린 (栗林)	53	하	자전거 옥고인	2				300	321	−21
중국인	26	마모	31	중	상업 (요리점)		4		700(개인)	3,400	2,766.50	633.50
	27	유모	40	하	농업 (채소 재배)		1	가옥 2칸		400	306	94
	28	장모	33	하	상업 (빵제조)					360	170	190

당한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여 소작료 수입이 2,000원에 달했으나 빚 6,000원을 변제하여 수지 상태는 적자를 보였지만 실제 수입 규모나 생활 상태는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9번(심모)은 변호사로 그 수입이 연 1,000원으로 가족수가 많음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번(김모)은 홀홀단신으로 오랫동안 머슴 생활을 했는데 음주와 도박으로 빚을 지고 개전의 전망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인 가정의 전업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자작하거나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을 제외하면 수지 상태가 열악하였다. 반면 겸업농가나 상업, 자유업, 노동자 계층은 개인적 타락이나 채무 청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흑자 상태였다. 일제시기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삶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결

53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130~241쪽.

코 여유롭지 않았다.

또한 수원 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과 중국인의 삶을 살펴보자. 일본인 상층이었던 22번(大西)은 상업에 종사했는데 1년 수입 규모가 10만 원에 달하였다. 조선인 중 가장 많은 수입을 가졌던 8번(안모)도 상업에 종사했고 연수입이 8,000원이었지만, 일본인 상인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인 하층인 25번(栗林)은 자전거상점의 점원이었는데, 연수입은 300원으로 조선인 수입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인들의 생활 규모가 조선인에 비해 여유로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의 경우는 조사대상 모두 독신으로 요리점이나 채소 농사를 하며 수입을 얻었는데, 독신이었기에 수입에 비해 지출이 적어 모두 흑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수원 지역민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에 따라 빈부 격차도 컸다. 또한 대다수 농민들의 경작 규모가 영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이들은 적자 상태를 면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만성적으로 부채를 지고 살아야 하였다. 반면 수원 지역에 이주해 온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상업이나 기타 자유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한국인에 비해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식생활을 통해 수원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자. 수원 주민들의 주식물은 쌀, 보리, 콩, 팥 등으로, 쌀 혹은 조, 쌀 혹은 보리, 조, 팥 혹은 콩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내내 쌀만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쌀, 보리, 조를 혼합하여 먹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식량 부족으로 보리 수확기에는 보리만을 먹고, 쌀 수확기에는 쌀만을 먹는데, 이렇게 식량이 떨어지는 춘궁기에는 식량을 지주 등에게 빌려 다음 작물 수확기까지 근근이 삶을 이어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54]

부식물은 무, 배추, 고추, 마늘, 파 등이 보통이고, 쑥과 미나리 등의 봄철 야생식물 등도 먹었다. 1년 내내 배추, 무로 만든 김치가 3식 모두 반찬에 오른다. 식용육으로는 소를 주로 하고 돼지, 닭을 사용하며 개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은 고기를 먹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만 먹을 수 있었다. 어류는 생식은 거의 하지 않고, 자반, 명태어, 간설(干鱈 : 절인 대구), 조개, 게 등을 먹고 있지만,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나 먹을 수 있었다.[55]

농가의 절반 이상이 빈농 상태를 면치 못한 만큼 일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보

54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93쪽.
55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94쪽.

리와 쌀 수확기에나 가능하였다. 특히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심한 경우는 물론 매년 5월 전후는 일반적으로 곡물이 없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은 때(보릿고개)에는 하층 농민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야생 초목의 어린 잎 및 뿌리를 채취하여 그대로 혹은 약간의 콩가루, 잡곡류와 섞어 익혀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는 보릿겨[麥糠]를 정선한 것을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뭄과 홍수로 일반 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해는 대개 메밀을 심어 그 수확물에 의지해 근근이 명을 보전하고 다음 해 수확기를 기다리거나 타지방으로 출가 또는 유랑하기도 하였다.[56]

이러한 참상은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다. 수원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많다는 수원면 내 북수리와 신풍리에서 4~5일씩 아침저녁 한 끼도 먹지 못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사람이 신풍리에 30여 호, 북수리에 40여 호에 달한다는 것이다. 설을 앞두고 노인들은 배고픔을 부르짖고 아이들은 남의 집 아이들이 부러워 설 차리기를 조르는 풍경에 사회를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57] 수원군 일형면 정자리에 사는 부인이 웅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는데, 그 사연은 가세가 극빈하여 조석을 끓이지 못한 지 이미 오래 되었음에 그의 14세 아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 잡화상에서 왜떡 10여 개를 훔쳐다가 모친 앞에 놓고 먹기를 권함에 그 아들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굶어 죽을지언정 철모르는 자식 도적질을 시킬 수 없다고 비관하더니 그날 밤 자살하였다는 것이다.[58]

이러한 배고픔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가뭄으로 모내기도 못하고 금전 융통마저 막혀 인심이 흉흉하던 중 그대로 살 수 없어 가정과 전답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데, 수원 지역은 보리농사마저도 흉년이 들어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였다. 1936년 6월 수원 남문 광장에는 농촌 농민 20~30명이 떼를 지어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뭄으로 모를 내지 못하여 먹고살 수가 없어 차라리 도시로 들어와 품팔이라도 해 볼까 하고 가정과 농장을 버리고 왔으나 역시 일거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59]

총독부의 식민농정은 조선 농촌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 공급기지화하는 것으로 '증산을 통한 수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식민지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들의 몰락이었다. 보다 근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개량농법을 강제하고 그로 인한 증산과 농가 수입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그 결실은 농민들의 몫이 아니었다. 이에 1930년대

56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一) 수원군』, 조사자료 제28집, 1929, 94쪽.
57 「네닷새식 굴머서 퉁퉁히 부은이」, 『동아일보』, 1925년 1월 19일.
58 「수원 일형면에서 투정 자살한 여자, 어린아들이 배가 몹시 곱하 훔쳐 온 떡을 보고 비관하여」, 『조선일보』, 1926년 2월 7일.
59 「가옥, 농장 등지고 농민들이 도시로 집중」, 『동아일보』, 1936년 6월 16일.

농촌진흥운동과 같은 사회개량적 농정을 실시하여 농촌 내부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농가경제의 갱생을 도모했으나 그 결과는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곧 일제의 침략전쟁 도발로 농촌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은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되고 말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제시기 수원 지역 농민들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가수지 적자와 굶주림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송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1. 일제의 토지개량사업
2. 팔탄면 일대의 토지개량사업
3. 장안면 석포리와 우정면 주곡리의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개량사업
4. 우정면 이화리 일대의 간석지 개량사업
5. 우정면 호곡리 토지개량사업과 방응모의 토지개량사업
6. 안룡면 천수답 개량사업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개량사업 추진

1. 일제의 토지개량사업

일본은 19세기 말 산업혁명 단계를 거치면서 미곡 수요가 증가하여 식량 부족사태에 직면했고 미곡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은 일본인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재배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조선산 미곡은 인기가 높았다. 이에 개항 이후 조선 미곡의 대일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후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일본의 식량 수요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식량공급기지화로서,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미곡 증산을 위한 식민 농정을 실시하였다. 1918년 일본에서 발생한 '쌀폭동'과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미곡증산정책인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고, 대규모 미곡 증산을 위해 토지개량을 사업의 주요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30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계획이었는데, 그 1기 계획으로 1920년부터 15년 동안 총공사비 1만 6,800만 원을 투입하여 42만 7,500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고 경종법을 개선하여 약 920만 석의 미곡을 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개량 기본조사,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보조, 토지개량 전담부

서의 신설, 품종 개량 등 경종법 개선 방책이 강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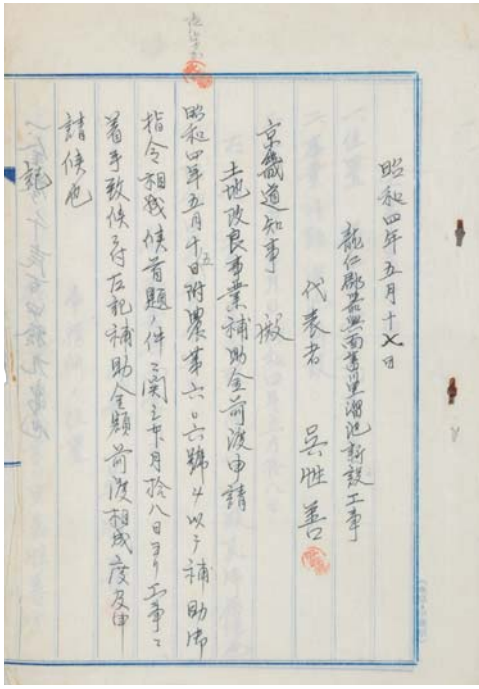
토지개량 기본조사는 1920년 시작되어 1929년 완료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토지개량 가능지를 조사하여 그 정보를 공표하였는데, 공표된 개량 가능지의 정보는 1지구당 200정보 이상의 면적을 갖는 대규모 사업에 국한되었다. 이 조사사업 시행 결과 조선에서 토지개량을 시행할 수 있는 지구는 1집단지 200정보 이상의 것(갑호 지구)이 534개소 49만 8,892정보, 200정보 미만의 것(을호 지구)이 1,624개소 15만 1,666정보, 합계 지구 총수 2,158개소 65만 558정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그러나 실제 상당수의 토지개량사업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이 많았다. 따라서 토지개량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였다. 토지개량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에는 국고보조와 저리자금 알선의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1926년 시작된 산미증식갱신계획 이후 주어졌고 그 이전에는 총독부의 국고 보조뿐이었다.[2]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총독부의 국고 보조는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총독부령 제197호, 1920년 12월 27일)에 의해 주어졌다. 이 규칙은 "토지개량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제1조)하는 것인데,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논의 관개 배수의 개선을 위한 사업(50% 이내), ② 해면 또는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논으로 만드는 사업(50% 이내), ③ 밭·임야와 기타 토지를 논으로 만드는 사업(50% 이내), ④ 경지정리, 암거배수, 기타 논의 구획형질을 변경하는 사업(30% 이내)"(제2조)이었다. 그러나 "① 시행면적이 10정보 미만, ② 공사비예산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다."(제3조)[3]

이러한 총독부의 토지개량사업에 수원 지역의 지주와 자본가들이 참여하였다. 수원군 내 장안면, 팔탄면, 음덕면, 우정면은 남양만 인접 지역으로 간척을 통한 토지개량사업이 이루어졌다. 간척사업에는 50% 이내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일제시기 총독부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특히 토지개량 및 수리조합 관계 문서가 상당수 남아 있다. 이 중 수원군 지역 토지개량사업 관련 문서도 보존되어 있다.[4] 이에

1 허수열, 「총설-토지개량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전개과정」,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지개량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 25~26쪽.
2 허수열, 「총설-토지개량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전개과정」,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지개량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 28쪽.
3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총독부령 제197호, 1920년 12월 27일), 『조선토지개량관계예규』, 조선총독부 농림국, 1941, 577~578쪽.
4 이에 대해서는 「토지개량사업보조-경기도 수원군」,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지개량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에 일제시기 수원군 지역 토지개량문서 일부에 대한 해제가 있다.



「토지개량사업보조금전도신청」(오국환 제공)



토지개량사업보조의 건(국가기록원 소장)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군 지역 토지개량사업 관련 문서에 나타난 토지개량사업의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팔탄면 일대의 토지개량사업

일본인 고우에이 교이치(高榮京一)[5]는 수원군 팔탄면 노하리, 음덕면 온석리, 무송리, 하저리 일대 간석지 150정 7반 5무를 간척하여 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간척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 마와타리 미이치(馬渡三市), 나카무라

5 고우에이 교이치(高榮京一)는 1927년 경성에 자본금 30만 엔인 합자회사 고우에이구미(高榮組)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토목건축, 토지 개척, 수리 설계 감독, 공사 청부, 농사경영, 토공 용구 및 건축재료 매매, 이에 부수하는 업무 일체 및 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1928년 설립된 자본금 22만 엔의 후등(後藤)공업합자회사에 1만 엔을 출자하여 사원이 되었다. 이후에도 그의 사업은 계속 확장하여 1942년까지도 토건사업에 종사하였다. 고우에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토지개량사업보조-경기도 수원군」,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지개량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 53~56쪽 참고.

(中村俊松) 2명이 1919년 5월 5일 국유미간지 대부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대부기간은 1928년 12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 간석지 150정 7반 5무를 간척하여 논으로 전환할 것이며 대부료는 매년 75원 50전이었다. 대부기간에 간척사업에 성공하면 그 땅을 불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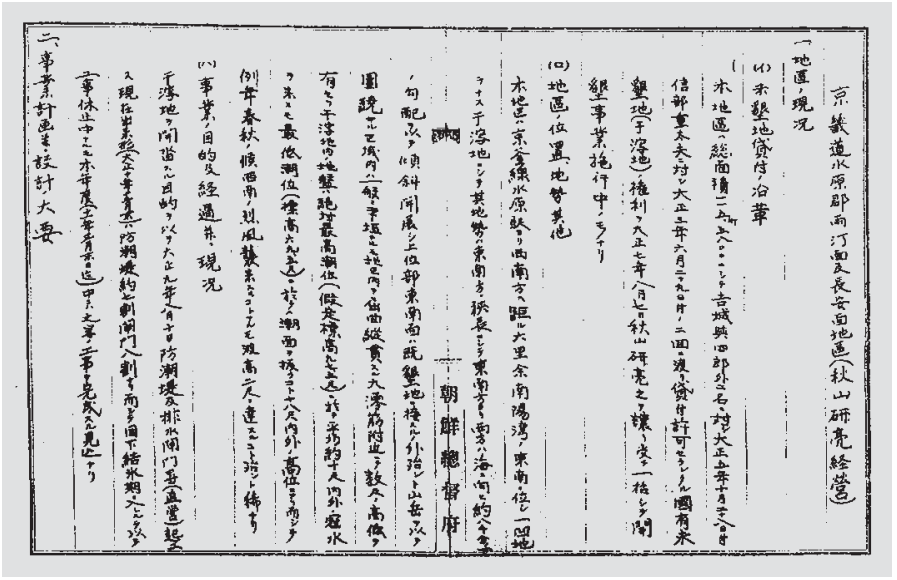
이렇게 국유미간지의 간척사업 허가를 받은 마와타리 미이치(馬渡三市), 나카무라(中村俊松)는 이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토목업자를 찾았는데, 그가 고우에이 교이치였다. 고우에이 교이치는 이 사업의 대리인이 되어 1922년 7월 26일부터 1926년 3월 31일까지 약 4개년간 총사업비 15만 8,000원을 들여 관개공사, 배수공사, 방조제 공사를 거쳐 간석지를 논으로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1922년 10월 13일에 1922년도 보조금 5,627원을 신청하였다.[7] 이후 사업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여 1924년에는 총공사비 5만 2,821원에 대해 보조금 2만 365원이 지급되었다.[8]

3. 장안면 석포리와 우정면 주곡리의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개량사업

수원군 장안면 석포리와 우정면 주곡리 일대에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개량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 소재 간석지 115정 5반 8무보를 일본인 요시키(吉城興四郎) 외 2명에게 1916년 10월 28일부로 「국유미간지이용법」에 의해 대부허가를 하였고, 1918년 8월 7일부로 일본인 아키야마(秋山研亮)에게 이용권 양도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아키야마는 간척을 통한 토지개량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21년, 1922년도에 검정(檢定) 공사비 3만 4,792원에 대해 보조금 1만 437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또한 1921년 3월 1일 저수지 부지 매수 곤란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이용 목적을 논 및 천일제염의 염전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1926년 10월 28일 준공기간 만료 때까지 토지개량의 성과를 내지 못해 그 허가권이 실효되었다.[9]

아키야마는 자작 이창훈(李昌薰)[10]을 공동사업자로 해서 자금을 확보해 다시 토지개량

6 「허가서」, 1919년 5월 5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18).
7 「공사개량사업보조신청서」, 1922년 10월 13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18).
8 「土地改良事業補助ノ件」, 1924년 9월 9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18).
9 「土地改良事業補助ノ件」, 1929년 7월 27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193).



우정면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국가기록원 소장)

사업을 계획하여 1927년 12월 22일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 토지개량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상지역은 수원군 장안면 석포리와 우정면 주곡리 일대 34만 6,740평(115정 5반 8무)의 간석지로, 총공사비 4만 4,000원으로 이곳을 매립하여 논과 염전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1927년 인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1930년 12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매립면허 인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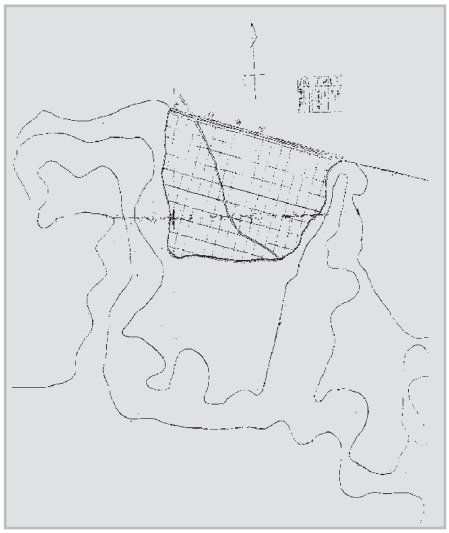
첫째, 생산염은 화학공업용 및 수이출 어류 염장용으로 공급하는 외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천일제염전의 축조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염전의 부대설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염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천일제염전 및 천일제염에 필요한 기계 · 기구를 상당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다. 다만 본항 가격에는 사업 손실에 대한 하등의 보상도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정부는 염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당 가격으로 그 생산한 천일제염을 사들일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매년 천일제염전의 수지계산 보고, 기타 임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1928년 3월 말일까지 상세한 실제 설계를 인가받아야 한다.[11]

10 이창훈(李昌薰)은 '을사오적'인 이근택(을사조약 체결 당시 군부대신)의 장남으로 이근택이 일제에게 받은 자작 작위를 습작하였다.

11 「公有水面埋立免許ノ件」, 1927년 9월 22일, 『공유수면매립면허관계서류』(CJA0005029).

이 사업은 결국 1928년 6월 21일부로 이창훈에게 양도 허가되었고, 이창훈은 실시설계인가 신청과 동시에 토지개량사업 보조 신청을 하였다. 보조금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 방조제 보강 및 배수갑문의 단면을 확장하는 것 외에 이전 인가 설계를 답습하는 것으로 인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공사비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사정하였다. 방조제비 및 배수문비에서는 염전계획에 의해 염전 15정보에 대한 공사비를 공제하여 1929년도 공사비는 5만 7,074원으로 사정되어 8,537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었다.[12]

4. 우정면 이화리 일대의 간석지 개량사업



우정면 토지개량사업 관련 도면(국가기록원 소장)

수원군 우정면 이화리의 국유미간지(간석지)를 논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1918년 2월 25일 일본인 모리타 기요죠(森田喜代至)가 간석지 24정 5반보와 그와 접속된 염전 총 77정 5반보를 매수하여 논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 사업 지역은 확실한 수원(水源)이 없어 용수(用水)를 충분히 구할 수 없는 결함이 있지만, 저수지 또는 저수답에 의해 유역수를 충분히 모아 이용한다면 심한 가뭄을 만나지 않는 한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업 개시 시점에 이미 북측에 접한 논은 저수답으로 성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논을 만들어 성숙해지면 연 소작료 8,010원의 수익[13]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위해 방조제, 배수 갑문,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14]

그러나 모리타의 토지개량사업은 사업자금 문제로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이에 그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1927년 11월 20일부로 송순섭(宋順燮) 외 1명에게 양도하였

12 「土地改良事業補助ノ件」, 1929년 7월 27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193).
13 반보당 벼 3석을 수확하여 소작료로 절반(1.5석)을 부과한다(벼 1석=10원으로 계산).
14 「大正十年度 土地改良事業補助ノ件」,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

다. 송순섭은 면허 양도와 함께 이 사업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고 지구 면적에도 오류가 발견되어 근본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신청하였다.[15]

이후 1928년부터 송순섭은 관개 및 개간사업 공사비 보조를 매년 신청하였다. 1928년에는 8,930원을 신청하였고, 1930년에는 4,266원을 신청하였다. 1930년에 보조금 신청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본 연도(1930)는 용배수로 정지, 양수기 설치 및 조건에 의한 저수지 장지 등 내부에 속한 전(全) 공사를 8,743원 31전으로 사정하고 4,371원의 보조금 지령을 받아 이번에 준공하여 출래형검사를 시행한바 모두 설계대로 시행하였다. 제출한 바와 같이 청구 정산액은 1만 8,660원이지만 사정 표준의 변경에 따라 정지, 절토, 성토, 유용토, 혼응토, 율석, 갱목, 기타 공사재료 및 공사감독비 등에서 상당한 액수의 삭감이 있어 총액을 8,533원 7전으로 검정하여 보조금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16]

5. 우정면 호곡리 토지개량사업과 방응모의 토지개량사업

1931년 3월 송영찬(宋榮讚) 외 4명이 수원군 우정면 호곡리 지역 8만 1,953평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1931년 1개년도에 완성할 계획으로 보조금 2만 5,813원이 교부되었다. 1931년에는 방조제 및 배수갑문 완성, 저수지 제방 85% 및 저수지 부지 전부를 매수하였으나 완공을 하진 못하였다. 이에 다시 1932년 9월 15일 송영만(宋榮晩)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개량사업 보조 신청을 하여 1933년 1월 26일부로 허가가 났고 사업보조금으로 9,023원이 교부되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17]


대지주로 토지개량사업에 앞장섰던 송영만(송기항 제공)

또 다른 사업으로는 1931년부터 방응모(方應謨)가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 · 팔탄면 일대의 간석지 96만 6,000평을 매립하여 논을 만드는

15 「事業年度及工事年度割變更認可申請ノ件」, 1927년 9월 19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
16 「土地改良事業補助ノ件」, 1930년 10월 10일,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
17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338).



2008년 방농장 일대(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사업이었다. 총사업비는 53만 8,000원이 책정되어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공하여 4개년 이후 준공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1932년 처음 계획보다는 예산이 조금 감소하여 49만 2,000원으로 235정보(약 70만 평)의 논을 확보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1932년도에는 방조제 배수갑문 공사 일부를 시행하였고, 4,000여 원의 보조를 받았다. 1933년에는 방조제 나머지 공사와 저수지용지 매수 등을 시행해야 했는데, 보조비 예산의 경리 및 공사 진도 등을 고려하여 방조제(배수갑문 포함) 78%를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8만 4,700원의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출래형 검사 결과 예정에 비하여 공사가 많이 진척(방조제 약 90% 시행)되었고, 이에 인가된 설계 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증가하여 약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증액하여 16만 2,579원을 신청, 교부받았다.[18]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보조금도 매년 신청하였다. 193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1935년 현재 방조제공사 98%가 시행되었고 보조금도 총 19만 8,178원을 교부받았다. 1935년도 공사비는 8만 97원으로 사정받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저수지 용지 매수 곤란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저수지 59.7%, 용수간선 4.3%, 방조제 0.5%만을 시행하게 되어 공사비 검정액은 5만 4,282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보조금도 2만 7,141원으로 변경 신청

18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338).

하였다.[19] 이 사업은 1932년 착공하여 1936년에 완공하는 계획이었으나 공정의 지연 등으로 1936년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사업을 연장하였다. 그에 따라 1937년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도 신청하였다.[20]

6. 안룡면 천수답 개량사업

한편 간척사업이 아닌 기존 천수답을 관개시설을 통해 관개답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진행되었다. 사업 주체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으로 1927년 3월 25일 사업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그 내용은 수원군 안룡면 안녕리, 송산리 일대의 34정 6반보 면적의 논을 개량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1926년 시작되었는데, 사업 계획지구는 경부선 병점역에서 서쪽으로 약 20정(町)[21] 떨어진 수원군 안룡면 안녕리 및 송산리에 걸쳐 있고 병점에서 화산릉으로 통하는 2등도로에 연한 길고 좁다란 형태의 경지였다. 동 · 서 · 북의 3방은 낮은 구릉을 뒤로 지고 있는 지세로 북에서 남으로 향해 점점 급경사이고, 땅질은 좋은 편이다. 경사지이기 때문에 수해는 거의 입지 않지만 가뭄에는 약하다. 비가 오지 않는 한발기에는 용수 부족으로 수확이 비교적 적고, 누년 평균 수확고는 일본인 이민 경작지는 반당 벼 2석, 소작지는 벼 1석 5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반당 1석 4두의 증수를 예상할 수 있는 땅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업 목적은 계획지구 내의 높은 지역인 송산리에 존재하는 개인 소유 논 및 이왕직 소유산림 일부를 사들여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다. 저수지 크기는 모내기철에 물을 댈 수 있는 정도와 모내기 이후 20일간 사용할 관개수를 저수할 정도로 관개 개량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의 이익은 평균 반당 1석 4두의 증수를 전망하는데, 총사업비는 2만 400원으로 책정했고, 이 중 총독부 보조금 4,080원을 받아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주 출자액 1만 6,320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이율은 연 15.4% 정도로 전망되는 유리한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였고 1927년 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약간 적은 3,846원을 신청하였다.[22]

19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679).
20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680).
21 정(町)이 거리 단위로 쓰일 때는 60칸(間), 곧 곡척(曲尺)으로 360척(尺), 약 109.1m에 해당한다.
22 『토지개량사업보조관계서류』(CJA0005044).

총독부는 일본 제국주의 발달에 필요한 식량 확보를 위해 조선에서 미곡증산정책을 실시하였다. 1920년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토지개량사업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지주, 자본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총독부는 이에 대해 국고보조와 저리자금 알선이라는 당근책을 내놓고 이들이 토지개량사업을 통해 미곡 증산에 앞장서기를 바랐다. 그러나 실제 총독부의 국고보조는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였다. 일본에서는 경지정리의 경우 10~50%, 일반 조성의 개간과 시국광구(時局匡救)사업의 경우 5정보 이상의 개간은 40%, 그 밖의 용배수 간선 개량과 암거배수 등의 공사는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10~30%를 받기 때문에 총 70~80%의 보조를 받는 셈이었다.[23]

일본에서는 토지개량사업이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치수사업으로 취급되어 국가 부담 비율이 높았던 반면, 조선의 경우는 공공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치수사업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지주가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주 부담 증가는 결국 소작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작농민에게 전가되었다. 수원 지역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간척사업이 남양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에 의거해 50% 정도의 국고 보조를 받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의 취약한 경제력을 감안하면 대규모 간척사업을 조성할 만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토지개량사업은 일제의 식량 수탈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한국인의 자본, 노동력, 기술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토지개량사업으로 조성된 경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인의 것으로 한국인을 위해 활용되어야 했다.

23 허수열, 「총설-토지개량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전개과정」,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지개량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 28쪽.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1. 수리조합정책과 제도의 변화
2.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실태

제4장

일제하 수원의 수리조합 설립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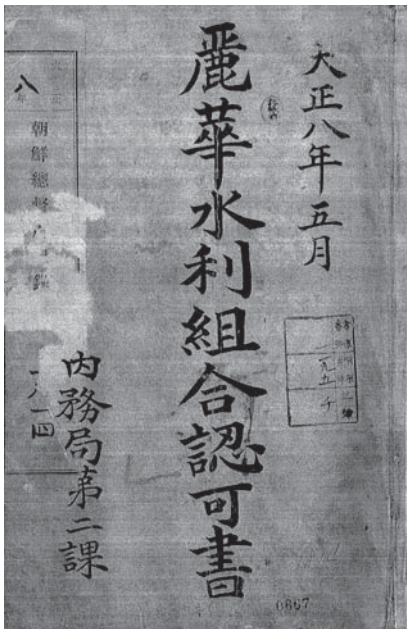
1. 수리조합정책과 제도의 변화

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을 목적으로 한 수리조직으로서, 식민지 농업개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1906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제도 수정과 정책 변화를 거치면서 일제시기 내내 존속하였다. 변화의 양상은 크게 4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초창기로서 제도 미비와 조성자금 부족, 수리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리조합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의 단계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일본인 지주 주도로 전개되었다. 제2기는 산미증식계획과 함께 수리조합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로서 대규모 수리조합은 대부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제3기는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된 이후 수리조합사업이 퇴조하는 시기로서 공려수리조합의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는 단계다. 마지막 제4기는 전시체제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가 다시 강압적으로 수리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로서 물자와 자금의 부족으로 소규모 수리조합이 양산되는 시기다. 시기별 구체적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1910년대 수리조합정책

수리조합제도의 시행은 1906년 「수리조합조례」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리조합조례」는 전문 13조의 간략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리조합의 구성원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그 사업비는 기채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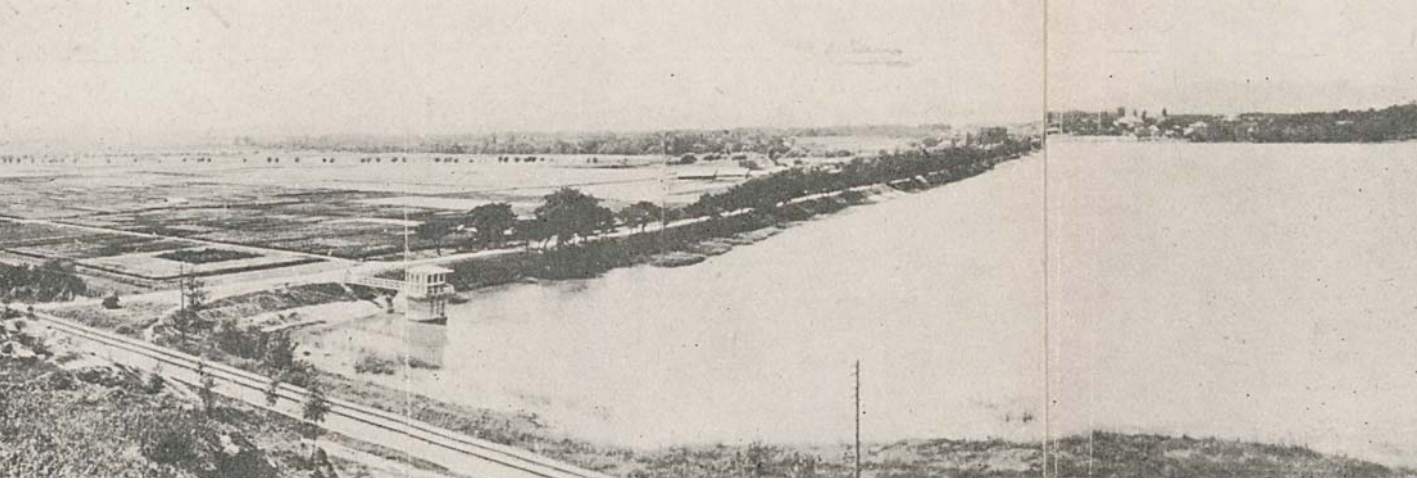
그러나 1910년대까지 수리조합사업은 극히 부진하였다. 제도 자체도 미비할뿐더러 일제가 재정 부족으로 적극적인 조성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초기에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사업(철도 · 도로 ·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1] 농업방면에 투자할 재정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은 적은 자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본 품종의 보급을 통한 미작(米作) 개량, 시비량(施肥量) 증가 등의 농사개량사업에 치중하였다. 수원 권업모범장이 일제 초기 식민지농정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제는 강점 직후부터 총독 훈시나 관계법령의 제정 등을 통해 농사개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중심 기구가 권업모범장이었다. 반면 토지개량사업은 자금이 적게 드는 제언 · 보 수축에만 집중되었을 뿐이고, 기술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리조합사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그쳤다.



1919년 『여화수리조합인가서』(국가기록원 소장)

일제가 수리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꾀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후반이었다. 수리조합제도의 보완은 당시 조선의 논농사가 대부분 강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토지개량사업이 수반되지 않고는 일제가 의도하는 일본품종의 보급과 쌀 증산이 어려웠고, 또한 소규모의 제언 · 보 수축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도적 보완은 1917년 「조선수리조합령」과 1919년 「수리조합보조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수리조합령」은 대지주들의 수리조합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관의 영향력을 대폭

1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未來社, 1983, 92쪽.



1919년 설립된 여화수리조합에서 근대적 저수시설로 개축한 서호저수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 41조의 법령으로서, 이후 수리조합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법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수리조합보조규정」은 수리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독부의 보조 방안을 명시한 규정이다. 하지만 수리조합사업이 당장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수리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정비 이후 구체적 조성 방안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1910년대까지 전국에 설치된 수리조합은 18개소에 불과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전북이 6개소, 경남이 4개소, 평북 · 경기가 각 2개소, 경북 · 충남 · 충북 · 강원이 각 1개소였다. 대부분 일본인 지주가 밀집한 지역에 수리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전북과 경남 지역에 수리조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일찍부터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집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2] 수원 지역에서도 1919년 2월 수원군 일형면(日荊面) · 안룡면(安龍面) 일대에 최초로 여화(麗華)수리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조합 창립을 주도한 자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대지주들이었다.[3]

〈표 1〉 일제 초기(1908~1919년) 수리조합 설립 현황[4]

설립연도	조합명	위치	면적(町)	설립연도	조합명	위치	면적(町)
1908	옥구서부	전북 옥구군	490	1916	영일	경북 영일군	1,400
1909	임익	전북 익산군	3,343		고부	전북 고창군	4,285
	밀양	경남 밀양군	737		상남	경남 김해군	261
	마구평	충남 논산군	321		대도	경남 김해군	1,807
1910	전익	전북 전주군	1,445	1917	삼교천	평북 용천군	800
	임익남부	전북 옥구군	3,446	1919	여화	경기 수원군	245
1911	임옥	전북 옥구군	3,555		심곡	경기 포천군	79
1912	김해	경남 김해군	1,977		문막	강원 원주군	530
1914	대정	평북 용천군	7,634		의림지	충북 제천군	277

2) 제2기 1920~1934년(산미증식계획기) 수리조합정책

수리조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산미증식계획기인 1920~1934년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일제가 역점을 둔 것이 토지개량사업이었고, 이 토지개량사업의 중심이 바로 수리조합사업이었다. 곧 수리조합사업은 산미증식계획의 핵심으로서 1920~1930년대 초에 크게 발흥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주지하다시피 일본 국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쌀 생산이 정체되었고, 이에 따른 쌀 수급관계의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일제는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답 80만 정보의 개량 · 확장을 30년에 걸쳐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먼저 제1기 계획으로서 15년을 기해 42만 7,500정보의 토지개량사업을 완성하고 경종법을 개선하여 약 920만 석의 산미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5] 토지개량사업 중에서도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수리조합사업의 확충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1926년부터 종래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의 수정은 종래의 계획이 금리 인상, 물가 등귀, 예산 부족 등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일본 국내의 개간조성법을 중심으로 하는 산미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조선에서의 산미계획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6]

이 중 핵심이 되는 토지개량사업은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리조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사업비 조성은 국고보조 6,500여 만 원, 기업자 조달금 3,900여 만 원, 나머지는 일본정부의 저리 알선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저리 알선자금의 융통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이 반액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대부받아 대출하고, 나머지 반액은 사채로 조달하여 대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산하에 토지개량부를 설치하여 공사의 설계, 공사의 시행, 사업의 유지 · 관리 등 토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것을 대행하도록 하였다.[7] 토지개량사업에

2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67~71쪽.
3 조선총독부, 『여화수리조합인가서』(국가기록원 소장), 1919.
4 조선농회, 『조선농회보』 제20권 11호, 1925.
5 조선총독부, 『朝鮮の農業』, 1941, 28쪽.
6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 未來社, 1983, 76~79쪽.
7 菱本長次, 『朝鮮米の硏究』, 1938, 54~55쪽.



일제시기 수룡수리조합 여천저수지(수원박물관 소장)

필요한 자금을 크게 조성한 것과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행기관을 설치한 것이 갱신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금의 조성과 대행기관의 설치는 종래 자금난과 사업의 중심인물 및 기술자의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수리조합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알선자금은 대부분 수리조합에 집중되었고, 또한 이 두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수리조합은 토지개량부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대행하였다. 종래 수리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금문제와 수리공사의 기술문제가 해결되면서 큰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결국 산미증식계획의 수정은 대규모 토지개량사업의 추진, 곧 수리조합사업의 확충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적극적인 수리조합 육성책으로 수리조합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표 2〉와 같이 산미증식계획기에 총 187개의 수리조합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1926~1934년 갱신계획기간에는 무려 133개소가 설립되었다. 1910년대에 비하면 실로 비약적인 증가세였다. 경기도 지역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모두 12개의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수원 지역에는 수원군 동탄면 일대의 장지제수리조합과 태장면 일대의 수룡수리조합 두

〈표 2〉 1920~1934년 수리조합 설립 현황[8]

연도	조합수	몽리면적(町)	연도	조합수	몽리면적(町)
1920	9	14,514	1928	20	12,270
1921	8	3,944	1929	24	38,720
1922	12	14,515	1930	26	14,178
1923	10	15,939	1931	26	9,521
1924	3	3,195	1932	5	1,229
1925	12	30,192	1933	2	1,309
1926	14	17,467	1934	1	38
1927	15	7,899	계	187	184,940

〈표 3〉 1920~1934년 경기도 내 수리조합 설립 현황[9]

조합명	지역	설립연도	몽리면적(町)	조합장
장지제	수원군	1920	64	오니시(大西平次)
양동	김포군	1921	693	아라이(荒井初太郎)
임진면	파주군	1921	343	김윤배(金允培)
영북	포천군	1922	677	박승열(朴勝烈)
양천	김포군	1923	595	이대영(李大泳)
부평	부천군	1923	4,120	야마오카(山丘太兵衛)
이천	이천군	1926	122	이시하라(石原磯次郎)
광주	광주군	1927	686	이의균(李宜均)
수룡	수원 · 용인군	1927	747	홍사훈(洪思勛)
풍덕	개풍군	1929	1,729	공성학(孔聖學)
소래	부천군	1929	186	이도영(李道榮)
김포	김포군	1930	3,977	예종석(芮宗錫)
계	12개		13,939	

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또한 1926~1934년 산미증식계획기 토지개량 시행면적 중에 착수면적의 85%, 준공면적의 약 90%가 수리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토지개량 시행지역의 수확량 191만 1,187석 중의 약 95%인 185만 4,813석이 수리조합 지역에서 산출되었다.[10] 산미증식계획의 핵심사

8 조선총독부,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 각 연도판. 몽리면적은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9 조선총독부,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 1934년도판.
10 農林省米穀局, 『조선미관계자료』, 1937, 242~247쪽.



「장지제수리조합 관할구역인 수원군 동탄면과 성호면의 제언과 관개지 약도」(『장지제수리조합설치인가관계철』, 1920, 국가기록원 소장) '장지리' 지명 아래 제언이 표시되어 있다.

업인 토지개량사업이 거의 수리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산미증식계획은 수리조합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3) 제3기 1930년대 중 · 후반기 수리조합정책

그러나 세계공황의 여파로 1930년대 들어 산미증식계획이 큰 위기를 맞게 되자 수리조합사업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쌀값 폭락으로 부실 조합이 속출하면서 수리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강제적 설치와 파행적 조합 운영 등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수리조합에 대한 폐해가 크게 사회문제화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표 2〉와 같이 1926~1931년에 한 해 평균 20.8개의 조합이 설치되던 것이 1932~1934년 3년 동안에는 모두 합쳐 불과 8개의 조합만이 설치되었을 뿐이다.

결국 산미증식계획의 중단과 함께 신규 수리조합사업은 전면 중지되고 창설 중에 있던 소화 · 낙동 · 어지둔 등의 대규모 수리조합사업 계획도 백지화되었다.[11] 기존 수리조합에

11 『조선일보』, 1933년 5월 4일.

대해서도 조합채 상환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그중 문제가 많은 68개 조합을 갑 · 을 · 병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12] 수리조합사업의 파탄과 불량수리조합 양산에 대해 총독부는 미가 폭락을 그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수리조합사업의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중단되었던 수리조합사업은 1937년부터 공려수리조합(共勵水利組合)의 형태로 다시 재개되었다. 공려수리조합은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200정보 미만의 조합으로서, 일제가 산미증식계획 중단 이후 대규모 토지개량사업 대신 소규모 · 소지구 토지개량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수리조합이었다. 새로운 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원(水源)을 개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비도 가급적 기채를 피하고 조합원 자력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반 수리조합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려'라는 것도 농촌진흥운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조합원들이 서로 협력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을 유지 · 보수한다는 의미였다. 공려수리조합은 1937~1940년에만 나타났는데, 전국적으로 56개의 조합이 설립되었고 몽리면적은 6,057정보였다. 경기도에는 〈표 4〉와 같이 모두 6개의 공려수리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130정보 규모의 일월(日月)수리조합은 수원 지역에 설립된 유일한 공려수리조합이었다.

그러나 1939년 미증유의 대한발이 일어나고 여기에 전쟁의 장기화로 미곡 증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공려수리조합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공려수리조합을 통해 기대했던 한해 대책 등 토지개량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증산의 효과도 일반 수리조합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공려수리조합은 사업비를 조합원 자력

〈표 4〉 1937~1940년 경기도 내 공려수리조합 설립 현황[13]

조합명	지역	설립연도	몽리면적(町)
안양	시흥군	1937	53
호계	시흥군	1939	20
칠리제	부천군	1939	35
일월	수원군	1939	130
장호원	이천군	1939	182
매화	시흥군	1939	150
계	6개	–	570

12 조선총독부농림국, 『經營困難ナル水利組合ノ各組合別整理計劃票』, 1936, 1~6쪽.
13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으로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실상은 사업비의 약 50%는 기채와 보조금으로 조달되는 실정이었다.[14] 따라서 공려수리조합 제도는 1940년 조선증미계획(朝鮮增米計劃)의 추진과 함께 중단되었다.

4) 제4기 1940년대(조선증미계획기) 수리조합정책

일제가 1940년부터 조선증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미곡증산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곡 수급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이 많이 드는 토지개량사업 대신 경종법 개선을 통해 미곡 증산을 도모하려는 조선증미계획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경종법 개선은 종자 개선과 금비(金肥)의 장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종자개선을 통한 증산은 당시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또한 금비도 전시 체제하에서 그 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15]

이에 일제는 1942년에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토지개량사업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다. 즉 경종법 개선을 통한 증산 목표량은 종전의 계획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증산 목표량은 169만 석에서 619만 6,000석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6] 또한 일제는 1943년 300정보 이상의 관개개선사업과 간척사업을 대행하는 조선농지개발영단(朝鮮農地開發營團)을 설립하였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은 토지개량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그동안 부진했던 토지개량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미곡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선농지개발영단령」과 「조선농지개발영단령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농지개발영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사업 강행과 함께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었고 사업 시행에 대한 이의(異義)는 인정되지 않았다.[17]

이에 따라 침체되었던 수리조합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신설된 조합수는 무려 377개에 달했으며 몽리면적도 11만여 정보나 되었다.[18] 조합수만 보면 산미증산계획기에 설치된 조합수의 2배나 되는 비약적인 증가세였다. 조합수의 급증은

14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수리조합편〉』, 2009.
15 최유리, 「日帝末期 朝鮮增米計劃에 對한 연구」, 『한국사연구』 61 · 62합집, 1988, 387쪽.
16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16쪽.
17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19~21쪽.
18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3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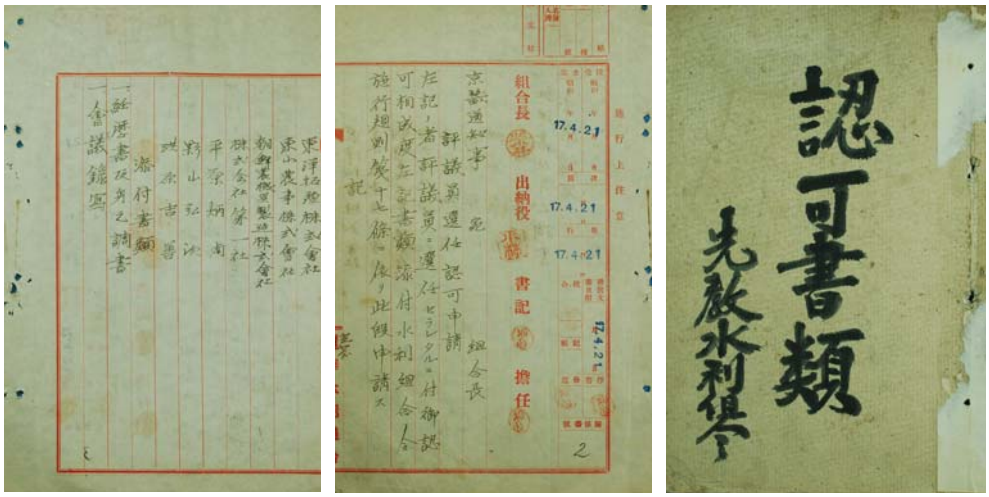
수리조합사업이 그만큼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 · 인적 자원이 크게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에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미곡 증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 막바지에 더욱 심화되어 패망 직전인 1944년 한 해 동안에 114개의 수리조합이 설치되었는데 대부분이 300정보 이하 소규모 조합이었다. 〈표 5〉는 1940~1945년 경기도에 설립된 수리조합 현황이다. 모두 21개의 수리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수원 지역에 설립된 조합은 방교 · 광교 · 우정 · 일왕 등 4개의 수리조합이다.

하지만 1940년대 수리조합사업의 실적은 저조하였다. 1940~1945년에 300정보 이상 대지구 토지개량사업은 착공면적의 9.2%만이 완료되었고, 300정보 이하의 소지구사업은

〈표 5〉 1940~1945년 경기도 내 수리조합 설립 현황[19]

조합명	지역	설립연도	몽리면적(町)
삼합(三合)	여주군	1940	49
영풍(永豊)	개풍군	1940	199
원부(元富)	여주군	1941	194
용두(龍頭)	안성군	1941	88
개군(介軍)	여주군	1941	109
지제(砥堤)	양평군	1942	78
방교(防橋)	수원군	1942	157
광교(光敎)	수원군	1942	297
금당천(金塘川)	여주군	1942	113
연천(漣川)	연천군	1942	200
흥부(興富)	시흥군	1942	
만수(萬壽)	안성군	1943	134
용풍(龍豊)	이천군	1943	195
우정(雨汀)	수원군	1943	250
백학(白鶴)	연천군	1944	213
일왕(日旺)	수원군	1944	129
공릉(恭陵)	파주군	1944	270
화진(禾津)	연천군	1945	295
고양(高陽)	고양군	1945	298
인안(仁安)	부천군	1945	648
옥산(玉山)	개풍군	1945	122
계	21개		

19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우정수리조합은 해방 후(1949년) 화성군으로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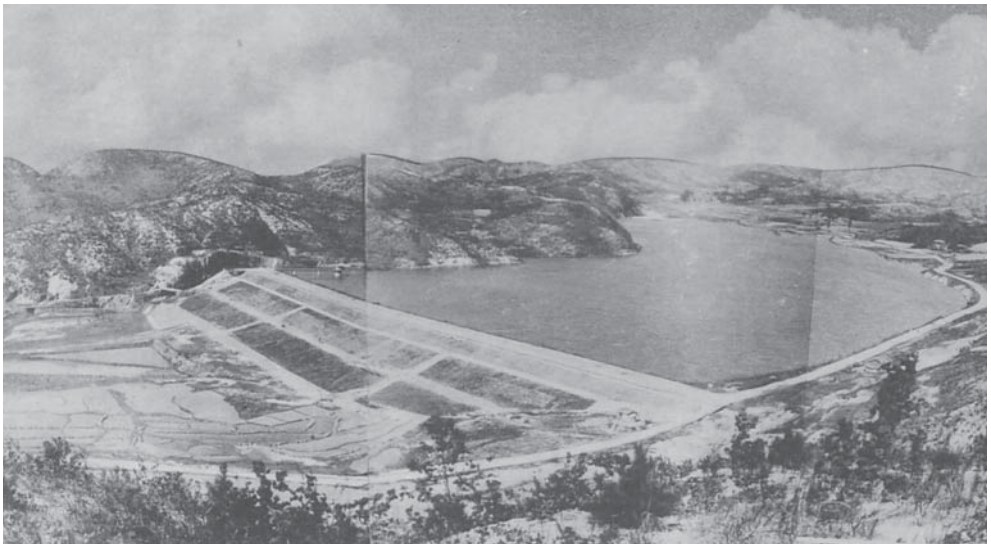


1942년 『광교수리조합 인가서류』(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소장)

착공면적의 69%가 완료되었다.[20] 전체적으로 공사가 착수된 12만 9,021정보 가운데 2만 9,002정보만이 공사가 완성되어 그 실적은 22.5%에 불과하였다.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전시체제에서 자재 · 노동력 · 기술자 등 물적 ·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미곡 증산만을 목표로 너무 급속하게 추진한 결과였다. 그나마 300정보 이하 소규모 사업의 진척률이 높았던 것은 재래의 수리조직과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다.[21] 결국 전시체제에서 급속도로 추진된 수리조합사업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되었다. 비록 이 시기에 설치된 조합이 식민지시기 전체 수리조합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조합으로서 급하게 설치된 전시형(戰時型) 조합들이었고 해방 이후 보수 개축이 시급할 정도로 급조된 조합들에 불과하였다.[22] 또한 전시체제에서 철저한 감독과 통제로 추진됨으로써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23]

이상과 같이 1906년 처음 도입된 수리조합제도는 일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부침을 거듭했으며,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체로 제1기는 전북 · 경남, 제2기는 전북 · 황해 · 평북, 제3기는 전남 · 충남, 제4기는 전남 지역에서 수리조합사업이 활발하

20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22~23쪽.
21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1991, 177쪽.
22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30쪽.
23 이영훈 외,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289~2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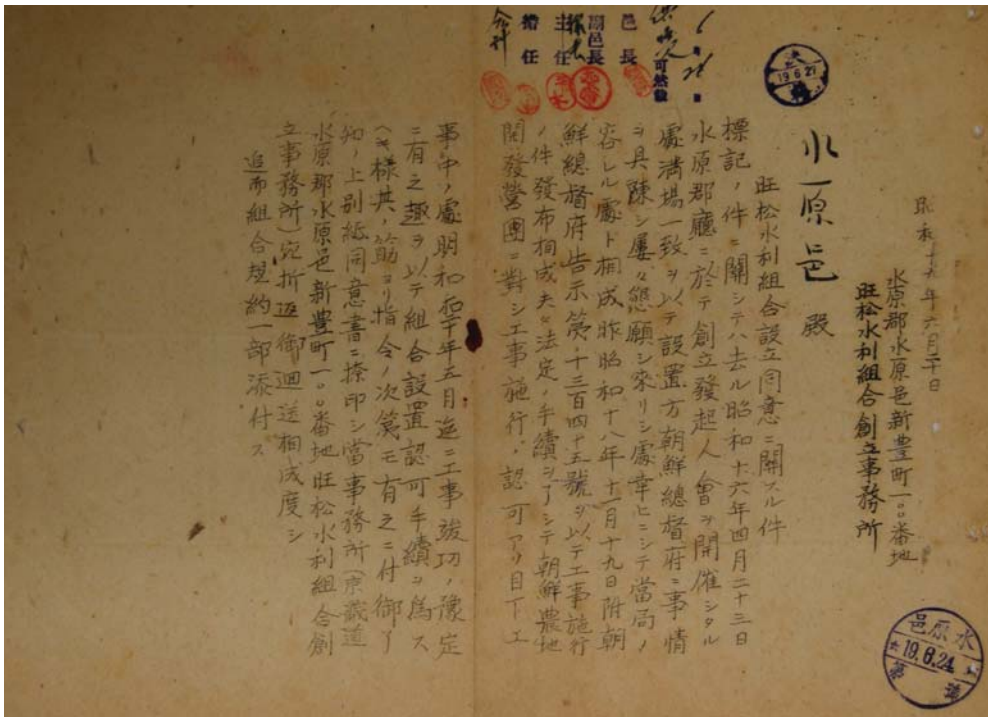


1942년 인가된 광교수리조합의 광교저수지(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게 전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수리조합사업은 전북 · 황해 · 평북에서, 소규모는 전남에서, 공려수리조합은 전남 · 충남에서 활발하였다.

경기도는 전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수리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 당시 경기도 전체의 수리조합 몽리구역만 보더라도 1만 4,841정보로서 전국 13개 도 중 10번째에 불과하였다.[24] 수원 지역 역시 각 시기마다 수리조합이 들어섰지만,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기 1910년대에는 여화수리조합(1919년), 제2기 산미증식계획기에는 장지제수리조합(1920년), 수룡수리조합(1927년), 제3기 1930년대 후반에는 일월수리조합(1939년), 제4기 1940년대에는 방교수리조합(1942년), 광교수리조합(1942년), 우정수리조합(1943년), 일왕수리조합(1944년)이 설립되었다.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총 8개 조합에 몽리면적은 2,019정보였다. 조합수로 보나 규모로 보나 수리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전국 군 단위로 보면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지역이었다. 특히 전국에 걸쳐 1,000정보 이상의 대규모 수립조합은 50여 개에 달했는데, 수원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합은 수룡수리조합으로서 설립 당시 747정보였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300정보 이하의 소규모 조합이었고, 그나마 대부분 일제 말기에 설립된 조합들이었다.

24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한국토지개량사업십년사』, 1956.



1944년 수원읍에 보낸 「왕송수리조합 창립 동의에 관한 건」(『수원읍 재산관계참고서류철』, 수원박물관 소장)

〈표 6〉 일제시기 수원 지역 수리조합 설립 현황[25]

시기	수리조합명	설립연도	몽리면적(町)
제1기(1910년대)	여화(麗華)	1919	245
제2기(1920~1934)	장지제(長芝堤)	1920	64
	수룡(水龍)	1927	747
제3기(1930년대 중 · 후반)	일월(日月)	1939	130
제4기(1940년대)	방교(防橋)	1942	157
	광교(光敎)	1942	297
	우정(雨汀)	1943	250
	일왕(日旺)	1944	129
계	8개		2,019

한편 수리조합은 해방 이후에도 통폐합과 명칭 변경 등의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존속하였다. 수원 지역에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기존의 여화 · 장지제 · 수룡 · 일월 · 방교 ·

25 우정수리조합은 해방 후 화성군으로 편입되었고, 몽리면적은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원수리조합(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1945년 해방 직후 수원 지역 수리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된 수원수리조합은 신풍동 10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 업무를 관장하였다.

광교 · 일왕 등 7개 수리조합과 창립 중에 있던 왕송(旺松)수리조합을 통합해 몽리면적 2,186정보의 수원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후 1961년에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정남 · 어천 · 반월수리조합이 수원수리조합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는 우정 · 발안 · 동방수리조합을 통합한 화성수리조합, 시흥 · 안양 · 군암 · 과천수리조합을 통합한 홍안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수리조합이란 명칭도 변경되어 1962년에는 토지개량조합으로, 1970년에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뀌었다.

1981년에 수원 · 화성농지개량조합이 수화농지개량조합으로 통합 · 재편되었으며, 인안농지개량조합은 홍안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었다. 이후 2000년에 수화농지개량조합과 홍안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한국농업기반공사 화성수원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로 개칭되었다.

2.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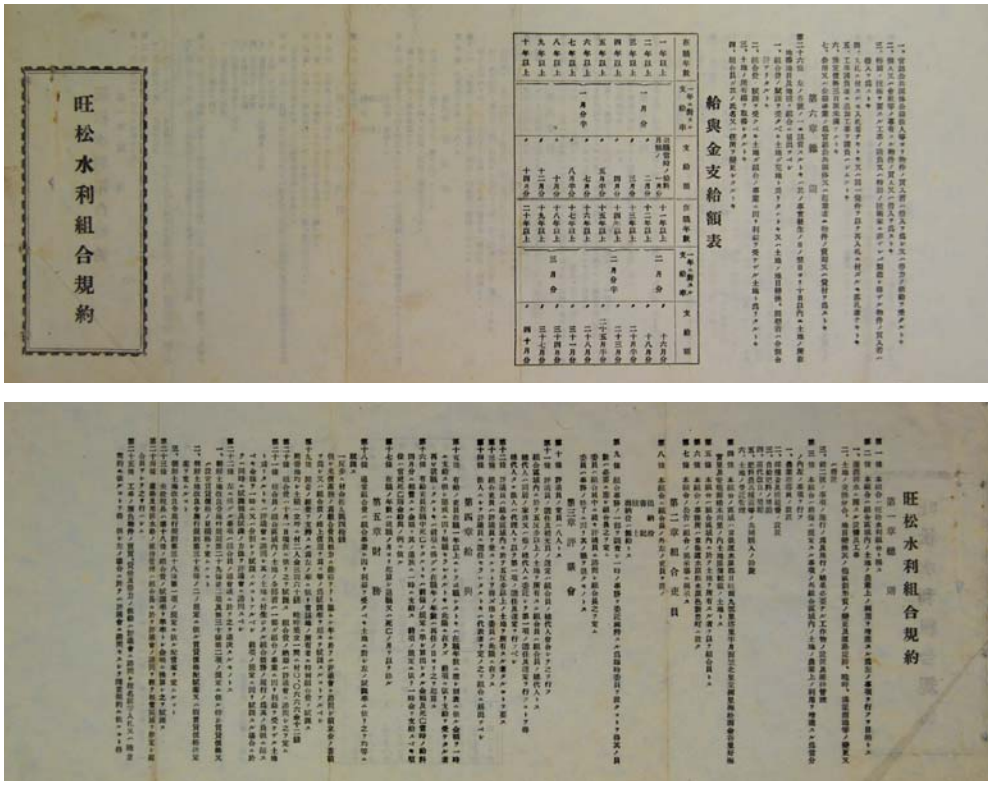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시기 대다수 수리조합은 산미증식계획기(1920~1934년)와 조선증미계획기(1940년대)에 설립된 것이었다. 즉 대다수 수리조합은 일제가 제국주의 팽창과정에서 발생한 식량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인 식민지 농정의 산물이었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좌우한 것은 대부분 총독부 · 지방관청 · 대지주 · 자본가 · 공사대행 회사 등이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강제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계획과 일방적 설립, 과도한 수세 부담, 관청의 과도한 개입, 독점적 조합운영 등 각종 폐단이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1920~1930년대 신문에는 수리조합사업의 문제점과 반대운동에 대한 기사가 넘쳐났으며, 심지어 "반대 없이 설치된 조합은 한 곳도 없는 실정"[26]이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수리조합 문제가 광범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문제화되었던 것은 수리조합사업이 지닌 식민성 · 강제성 · 일방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적 · 제도적인 문제로서 어느 수리조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가 심한 수리조합의 특성상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표출되는 폐단은 지역에 따라 그 강도가 달랐다. 일부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리조합사업이 보편적으로는 수탈성을 띤 식민지 농업개발의 전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하에서는 수원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수리조합사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원의 농업환경과 수리조합

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 즉 관개개선 · 개간 · 지목변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몽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공동 참여와 부담으로 추진된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만큼 설립 요건이 까다로웠다. 수리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창설자가 조합규약을 작성하여 조합원이 될 자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합구역이 될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26 『동아일보』, 1928년 3월 30일.


旺松水利組合規約

給與金支給額表

旺松水利組合規約

1944년 「왕송수리조합규약」(『수원읍 재산관계참고서류철』, 수원박물관 소장)

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총독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리조합의 성립 여부는 바로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에 달려 있었다. 조합규약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조합의 명칭, 조합의 목적, 조합구역, 조합사무소의 소재지, 조합 직원에 관한 규정, 평의회 또는 조합원의 총회 및 평의원에 관한 규정, 조합비 · 부역현품 · 가입금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이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구역의 현황, 조합구역 및 인접지의 현형도(現形圖), 사업의 설명, 사업 예정도, 공사의 설계, 공사 전 및 공사 완료 후의 토지 지목별 면적,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시기,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계산, 조합비 기타 공과부담 정도, 사업 준공 후의 조합의 수지계산, 사업비의 기채 및 상환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했다.[27]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산미증식계획기에 전국적으로 수리조합사업이 크게 일어났

27 「조선수리조합령시행규칙」 제1조 · 제2조.

던 것은 일제의 적극적인 조성책 때문이며, 또한 일제의 정책에 편승하거나 일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 창립세력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설립 조건으로 볼 때 관이나 전문기관의 지원 내지 협력 없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설립 조건 중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의 농업환경이었다. 먼저 수리조합이 필요한 지역은 수리시설이 불완전한 논농사 지역이다. 당시 조선에는 천수답(天水畓)이 많았고 재래의 수리시설인 제언(堤堰)과 보(洑)가 상당수 존재했지만, 규모가 작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많았다. 일제가 수리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이러한 농업환경에서는 쌀 증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10년대까지 재정 부족으로 재래 수리시설의 복구와 개축에만 중점을 두다가, 1920년대부터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수리조합사업을 통한 대대적인 수리시설의 확충에 나선 것이다.

즉 수리조합이 들어서는 지역은 논농사 지역이면서 대대적인 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곳이었다. 천수답 지역과 재래의 수리시설이 존재하지만 수리가 불완전한 지역이다. 특히 재래의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설립된 수리조합도 상당수에 달하며, 조합에 따라서는 재래의 수리시설을 활용(개·보수, 확장, 병합 등)하기도 했다. 예컨대 1925년에 설립된 조선 최대 규모(1만 8,000여 정보)인 전북 지역 동진수리조합의 몽리구역 김제와 정읍 일대에는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제언과 보가 존재하고 있었다.[28]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리조합에 편입된 제언과 보는 낙후되었거나 그 기능이 떨어져야 하는데, 수리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리조합반대운동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한 것도 이러한 강제적 편입이었다.

또한 수리조합이 설립되는 지역은 간척과 개간의 여지가 있는 미간지·간석지·밭농사 지역 등이다. 주로 해안지대, 강안지대, 북부 산간지대 등이 그 대상 지역이며,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조성책을 펴기도 했다. 즉 일제는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을 제정해, 5,000원 이상의 공사비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① 30정보 이상 답(畓)의 관개개선사업은 2할 이내, ② 30정보 이상 밭을 논으로 바꾸는 지목변환사업은 2할 5푼 이내, ③ 10정보 이상 밭 이외의 토지를 논으로 하는 지목변환사업은 3할 이내, ④ 10정보 이상 해면·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논을 만드는 사업은 3할(1928년부터 5할로 개정) 이내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규정하였다.[29] 관개개선보다는 지목변환사업과 간척사업이 국고

28 동진농지개량조합, 『동진농지개량조합오십년사』, 1975, 29~36쪽.
29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 제2조·제3조.

보조율이 높았으며, 이 때문에 1920년대 이후 개간 · 간척을 위한 대규모 수리조합이 각지에 설립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은 황해도 지역으로 연해(1925년 설립, 9,508정보), 안령(1926년, 9,775정보), 황해(1929년, 1만 3,000정보) 등 1만 정보 내외의 초대형 수리조합 3곳이 개간 · 간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수리조합 중에는 개간 · 간척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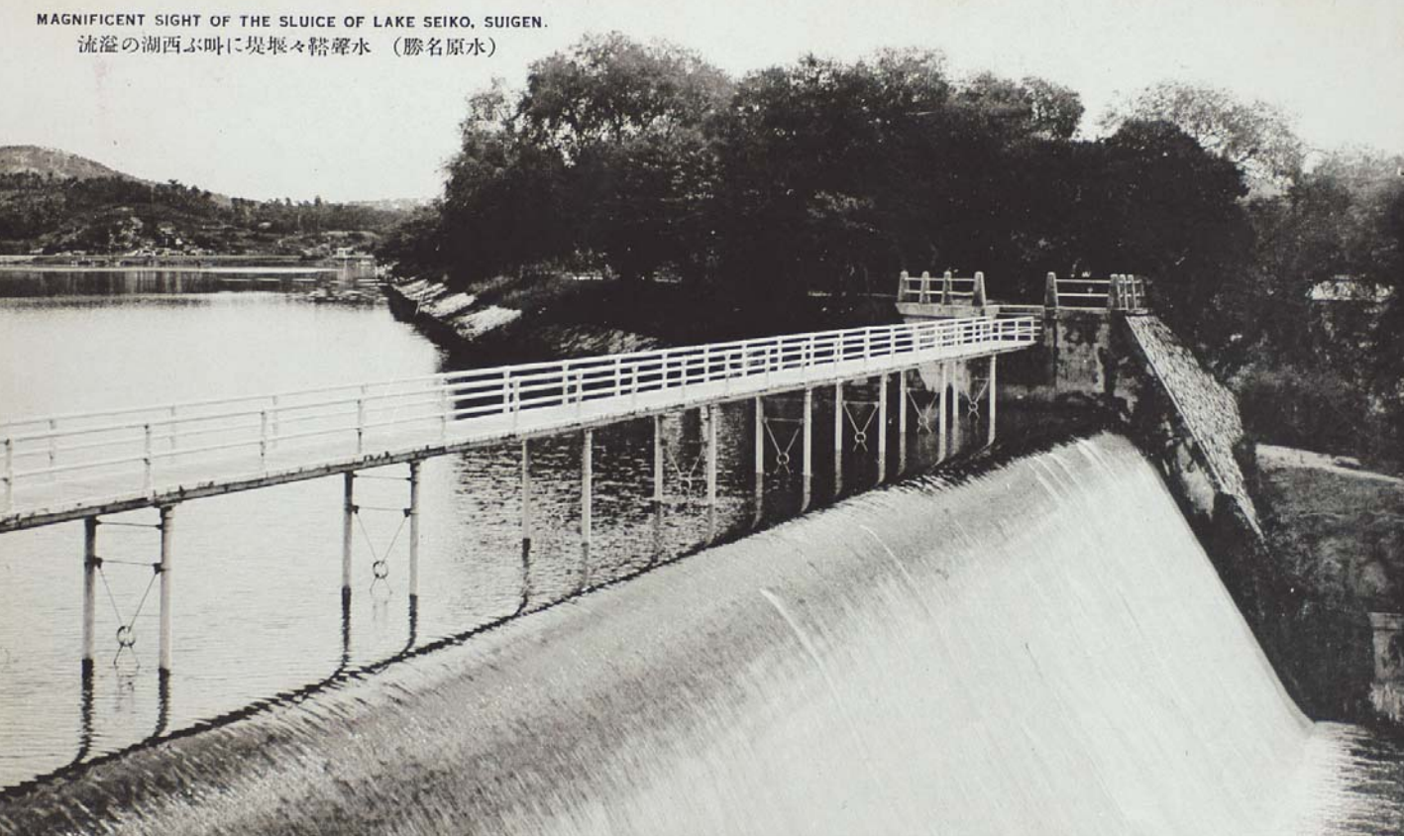
이렇게 수리조합이 들어서는 지역은 주로 관개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개간 · 간척지 등이었다. 그렇다면 수원 지역의 농업환경은 수리조합사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수원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로서 양질의 토지가 많고 수리시설 또한 비교적 잘 발달된 곳이다. 특히 조선 후기 정조 때 화성신도시 건설 추진과 함께 농업진흥책으로서 만석거(萬石渠) · 만년제(萬年堤) · 축만제(祝萬堤) 등의 수리시설이 축조되고 그 인근에 대유둔(大有屯)과 만년제둔(萬年堤屯)이 설치되었다. 이후 수원은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사시설과 농업기술의 가장 선진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조선 후기 농업개혁의 발상지인 셈이다.

일제가 1906년 식민지 농업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한 것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일제는 1903년부터 '한국토지농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선 농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 1904~1905년에 조선 농업에 대한 광범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30] 이 '한국토지농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일제가 식민지 농업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역점을 둔 것이 농업 지도기관인 농사시험장 설치였으며, 장소물색을 위해 여러 지역을 실사한 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이 수원이었다. 권업모범장은 식민지 농업기술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구였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규모도 처음 73.7정보에서 1908년 121.8정보, 1909년 149.8정보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기능도 수도품종(水稻品種) · 잠업 · 면화 · 원예작물 등의 시험 · 조사, 품종의 육성과 배부, 농사 지도와 장려 등 농사 개량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었다. 물론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쌀 품종개량과 보급이었다. 식민지 농업기술체계의 확립이야말로 일제가 농업수탈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 전개 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31]

이렇게 일제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농업시설을 수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미 수리시설 등 농사시험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권업

30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론』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8, 426쪽.
31 박수현,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 『수원학연구』 1, 2005, 241쪽.



근대적 수리시설로 개축된 서호(수원박물관 소장)

모범장의 제반 시설은 기존 시설을 토대로 한 것이며, 대표적으로 관개수리시설은 축만제, 즉 서호(西湖)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일제는 권업모범장의 유지 ·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치 직후부터 농업기반시설 보수와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수원 지역은 농업의 중심지로서 조선 후기 이래 선진 농업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일제 침략 이후에도 권업모범장이 설치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수원군(1914년 남양군 통합) 내의 지역적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환경은 우수한 편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리조합사업이 대규모 관개개선이나 개간 · 간척 등이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면, 수원 지역에 수리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1919년에 최초로 여화수리조합이 들어선 이래 전국적으로 수리조합사업 붐이 일었던 산미증식계획기(1920~1934년)에도 장지제 · 수룡수리조합 2곳만 설립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5개 수리조합은 지역적 특성과 상관없이 전시체제기 일제의 필요에 따라 급조된 조합들이었다. 더욱이 일형면(日荊面) · 안룡면(安龍面) 일대의 여화수리조합(245정보)은 관개개선이나 개간 · 간척보다는 수세(水稅) 경감이 주된 설립목적이었다. 여화수리조합 몽리구역은 설립 이전 대부분 권업모범장 인근에 위치해, 권업모범장이 관리하는 축만제

(서호)를 관개수로 이용하면서 수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축만제를 이용하는 수세의 부담이 커지자 몽리구역 지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리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반당(反當) 수리조합비가 권업모범장에 내는 수세보다 저렴하였다.[32] 또한 동탄면(東灘面)의 장지제수리조합은 64정보의 소규모 조합으로서 전시체제기 이전 경기도 내에 설립된 조합 중에서 규모가 작았다. 원래 수리조합까지 필요 없는 소규모 관개개선 지역으로서 지주들이 수리계를 조직해 저수지를 운영하다가, 계비의 징수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수리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33] 결국 수원 지역에서 수리조합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많지 않았고, 그나마 안룡면 · 태장면 일대의 747정보의 수룡수리조합이 수리조합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수원의 수리조합 설립 과정과 운영

수리조합제도는 처음 시행될 때부터 대지주를 겨냥한 것이었고, 일제의 적극적인 육성책 또한 대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조합을 설립하는 데 소수의 대지주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1917년 「조선수리조합령」의 설립 규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5인 이상의 창립자가 사업규약 작성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점이다. 이러한 창립자에 대한 규정은 일본의 「경지정리법」(1899년 제정)이나 「수리조합법」(1908년 제정)에는 없는 독특한 규정으로서,[34] 소수의 창설자들이 수리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또한 설치 이후 사업 운영 전반을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창립자들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사업계획이나 조합규약 등을 배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으로써 사업 전개방향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창설주체들은 수리조합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 물론 조합규약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수리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공동개발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이지만 실상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이들 소수의 창설세력이었다.

창설세력은 대부분 대지주들이었다. 수리조합사업의 대지주 참여도를 보면, 1931년 말

32 『어화수리조합인가서』, 1919.
33 『장지제수리조합개량공사계획서』, 1939.
34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1991, 96쪽.

현재 152개 수리조합 중에서 50정보 이상의 대지주가 참여한 곳이 66개소였고 나머지 수리조합도 거의 10~50정보의 대지주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소유면적은 압도적인 수치를 점하고 있었다. 전체 조합원수의 0.3%에 지나지 않는 50정보 이상 지주들이 수리조합 면적의 약 35%를 소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10~50정보의 지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의 2.1%에 불과한 10정보 이상의 지주들이 수리조합지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53%나 되었다. 특히 대지주 중에서도 일본인 대지주가 압도적인 숫자를 점하고 있었는데, 1931년 말 현재 전 수리조합지역의 50정보 이상 대지주 266명 중에서 일본인 대지주(기업형 지주 포함)가 190명이나 되었다.[35]

이렇게 대지주들이 수리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일제의 수리조합육성책이 대지주 중심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조선수리조합령」의 "조합원이 될 자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합구역이 될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관계지역 토지 소유자의 수보다 소유면적을 중시한 것으로서 대지주들에게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 설치규정은 대지주들이 수리조합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조합 창설 당시 많은 중소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신문사설 등에서 수리조합 설치의 부당성을 논할 때 이 설치조항이 자주 거론되었다.[36]

또한 일제는 자금과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지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 수립 이후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갔고 1926년 갱신계획의 수립과 함께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핵심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거액의 저리자금 알선과 대행기관의 설치였다. 저리자금의 알선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대행기관의 설치는 수리공사 기술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자금에 대한 지원책은 종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것이었다. 즉 알선자금이 31.8%에서 67.9%로 늘어난 반면에 사업자 부담금은 41.6%에서 11.2%로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도 20%대를 계속 유지하였다.[37] 또한 지원 대상 사업규모는 조선총

35 조선총독부,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 1932, 100~133쪽.

36 "…… 수리조합은 공법인의 일종이다. 그 설립 및 가입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강제적 성질을 가진 것이니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면 조합원이 될 사람 5인 이상이 창립자가 되어 창립규약을 작성하야 조합원이 될 사람 2분의 1 이상이요 조합구역이 될 토지 총면적 3분의 2 이상의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으면 수리조합이 설립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는 수리조합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수리조합 구역 내에 토지가옥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한 자이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다. 그러므로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의 필요에 의하여 수리조합이 설치되는 경우에 전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방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으로 보아서 설립될 당초부터 개인의 불평이 있을 것은 면치 못할 것은 사실이겠다. ……"(「수리조합문제」, 『조선일보』, 1926년 12월 10일).

37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 未來社, 1983, 113~114쪽.





「수룡수리조합비」 상단부에 '水龍水利組合之碑'라 쓰여 있다.

독이 규정한 토지개량사업의 요건에 따라 10정보 이상으로 하되, 대규모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200정보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직접 나서 설계와 감독을 하고 대행기관이 공사를 대행케 하였다.

일제의 적극적인 조성책은 대지주들이 수리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큰 계기가 되었다.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혜택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지주들은 대부분 수리조합 몽리구역 내에 수리불완전답, 미간지, 간석지 등 열등지(劣等地)를 소유 또는 대부받은 자들로서 일제의 수리조합육성책에 적극 편승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들이었다.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수룡수리조합도 대지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창설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산농사주식회사, 국무합명회사 등 기업형 일본인 대지주와 홍민섭(洪敏燮), 오덕영(吳悳泳), 오성선(吳性善), 용주사 주지 강대련(姜大蓮) 등 조선인 대지주였다. 이 중에서도 핵심세력은 3개의 일본인 회사였다. 대개 조합 설립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고 조선인 대지주들이 호응하는 양상인데, 수룡수리조합 역시 같은 양상이었다. 이 세 일본인 회사는 기존의 역둔토(驛屯土)와 궁장토(宮庄土)였던 토지들을 총독부로부터 불하받아 일찍부터 수원 지역에 진출한 대지주들이었다. 국무합명회사와 동산농사주식회사는 각각 1906년과 1907년 남부면과 북부면에 본부를,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0년 수원 읍내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농장을 운영한 수원 지역 최대의 지주들이었다. 이들이 수원 지역에 소유한 토지는 국무합명회사가 1922년 말 현재 600여 정보, 동산농사주식회사가 1922년 말 현재 5,400여 정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10년대 말 현재 1만 8,000여 정보였다. 이들은 또한 수원 각지에 농장을 설치해 수많은 소작농을 거느리고 있었다. 1920년대 이 세 회사에 소속된 소작농수는 국무합명회사 500여 명, 동산농사주식회사 900여 명, 동양척식주식회사 1,700여 명이었다.[38] 특히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국책회사

38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지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사림』 24호, 2005, 183~188쪽.

로서 수원 지역에 산재한 역둔토와 궁장토를 대량으로 불하받아 수원 지역 최대의 지주로 군림했으며, 소유지에 일본 농업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수룡수리조합은 바로 이들 거대 지주들이 자신들 소유지의 관개개선을 위해 인근 토지의 지주들을 끌어들여 조합을 만든 것이다. 사업지역은 수원군 태장면 · 안룡면 일대와 용인군 수지면 · 기흥면 일대로서, 수원군과 용인군 양 군에 걸쳐 있다 하여 이름도 수룡수리조합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합의 몽리구역은 주로 수원군에 치우쳐 있고 용인군은 대부분 저수지 부지였다. 즉 조합의 중심지역은 일본인 대지주들의 소유지인 수원군 태장면과 안룡면 일대였다. 「수룡수리조합비」에 따르면 몽리면적 중 580여 정보가 논이고 나머지가 잡종지였으며 논 지역 또한 4분의 3이 천수답으로, 관개수 확보를 위해 수리조합을 설립하고 두 개의 큰 저수지와 수로를 설치한 것이다.[39] 1920년에 설립 신청을 했으나 사업비 문제와 저수지 부지 문제로 지연되다가 1927년 8월에야 인가를 받았다. 1년여의 공사 끝에 1928년 11월에 준공했고 총공사비는 48만여 원이었다. 인가를 받기까지 수원군청 등 식민지 권력과 조선식산은행의 협조가 있었다.

1919년에 설립된 여화수리조합 역시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 국무합명회사 · 동산농사주식회사가 조합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호리우치 준이치(堀內順一), 이다 유키나리(飯田幸成),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 등의 일본인 대지주와 박건유(朴建裕) · 이종익(李鍾翊) · 강대련 등의 조선인 대지주들이 창설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40] 1920년 장지제수리조합의 설립도 동양척식주식회사, 국무합명회사,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41] 또한 1942년 설립된 광교수리조합의 사례로[42] 보아 전시체제기 소규모 수리조합 설립까지도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원 지역 수리조합은 대부분 일본인 대지주, 그것도 동양척식주식회사 · 국무합명회사 · 동산농사주식회사 등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 회사들이 주도해 설립하였다. 조합수나 몽리면적으로 볼 때는 수리조합사업의 후진 지역이지만, 설립 과정은 수리조합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즉 일본인 대지주들이 식민지권력 · 금융자본과의 유착을 통해 사업을 주도하는 수리조합사업의 전형이 수원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합 운영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합 조직과 운영은 감독관청의

39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금석문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 『수원문화연구』 7호, 2006, 217~218쪽.
40 『여화수리조합인가서』, 1919.
41 『장지제수리조합평의회회의록』, 1938.
42 광교수리조합 설립에는 동양척식회사,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농기구주식회사, 주식회사제일사, 히라하라(平原炳周), 가게야마(影山弘次)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光教水利組合認可書類」, 1942).

大地主가中心

陳情, 交涉의數多도不可數

八年만에겨우許可

이제此組合의 『設置經過報告書』에依하야其沿革의大綱을말하건대 明治四十二年에 이地方一帶가 모다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所有地가 되엿스며 移轉部落에 對한 交涉에 關한 事項은 모다 東洋拓殖株式會社가 當하야 오든 것이다 그런데 同地住民은 移轉費 및 慰藉料에 對하야 不滿을 품고 여러 번 陳情 交涉하얏스나 그 聲援이 업슴으로 目的을 達치 못하고 말엇다 그러다가 大正九年에 이르러 東洋拓殖株式會社가 解散하게 됨에 及하야 同社의 所有地 一切를 朝鮮農事株式會社에 讓渡하게 되엿슴으로 移轉部落民은 다시 朝鮮農事株式會社에 對하야 移轉費 및 慰藉料의 增額을 陳情하얏스나 이 또한 聽許되지 아니하얏다 그리하야 移轉部落民은 大正九年 十月 七日 京畿道 知事에게 對하야 『大正九年 四月 七日 京畿道 告示 第百十八號 農事株式會社 移轉部落 整理에 關한 件』에 依하야 移轉部落民은 移轉費 및 慰藉料에 對하야 異議가 업슴을 確認하얏다 그러나 이 確認書에 對하야 移轉部落民은 다시

全朝鮮水利組合實査

京畿道

無河地帶임으로
灌漑設備에置重

明年春에起工、年內에竣成豫定

水龍水利組合

第二隊 第三班 徐 椿

此組合은其區域이水原 龍仁 兩郡에跨在하다하야 其名을水龍水利組合이라한다 朝鮮總督에屬하는故로其主要한目的은漑設備에잇다 故로滿水面積約 八十町步의貯水池를 擴築하고 (一)工事設計의一部分의變更의 (二)工事施行의 條件을附하야 今年八月二十七日附로 左記認可가 나온것이다 此에 附隨하는用水의幹枝線을 決定하야 認可하게되 엇다 故로其結果로面積으로는 設計書보다八十六町步餘가減少 하게되고 事業費總額으로는 設計書에比하야 工事變更에 依한 金額中에는 邊算이 잇스나 此를 收正하야 二千四百餘圓을 增加시 킴하야 區域整理를 大行해야 될것이라한다

此組合의區域及面積을 말하면 水原郡台章面梅灘里 幸里 細浦里 遠川里 勸善里 機山里 陣罹里 牟月里 安龍面 洋亭 著手로부터 開墾完了 水利의 谷淨亭里 龍仁郡水枝面下 四個年度에 걸하는 經費總額은 五十九萬八千八十二圓이라한다 里 器興面靈德里의內七百四十 八町步餘의土地다 此面積은最 初의設計案보다는 約八十六町步 餘나減少된것이라는데其原因은 總督府가認可할때에 此를漑設不 能케라하야除斥한外달이라고한다

同組合規約第二條를보면(一) 瀋漑(二)排水가其目的이라하엿 스나 此亦河川沿岸의水利組合 兩郡에跨在하다하야 其名을水 아니요 無河地帶의水利組合 龍水利組合이라한다 朝鮮總督 에屬하는故로其主要한目的은瀋 府로부터 (一)組合規約의改正 (二)工事設計의一部分의變更의 八十町步의貯水池를 擴築하고 條件을附하야 今年八月二十七 日附로 左記認可가 나온것이다 此에 附隨하는用水의幹枝線을 決定하야 認可하게되 엇다 故로其結果로面積으로는 設計書보다八十六町步餘가減少 하게되고 事業費總額으로는設 計書에比하야 工事變更에 依한 金額中에는 邊算이 잇스나 此를 收正하야 二千四百餘圓을 增加시 킴하야 區域整理를 大行해야 될것이라한다

此組合의區域及面積을 말하면 水原郡台章面梅灘里 幸里 細浦里 遠川里 勸善里 機山里 陣罹里 牟月里 安龍面 洋亭 著手로부터 開墾完了 水利의 谷淨亭里 龍仁郡水枝面下 四個年度에 걸하는 經費總額은 五十九萬八千八十二圓이라한다 里 器興面靈德里의內七百四十 八町步餘의土地다 此面積은最 初의設計案보다는 約八十六町步 餘나減少된것이라는데其原因은 總督府가認可할때에 此를漑設不 能케라하야除斥한外달이라고한다

同組合規約第二條를보면(一) 瀋漑(二)排水가其目的이라하엿 스나 此亦河川沿岸의水利組合 兩郡에跨在하다하야 其名을水 아니요 無河地帶의水利組合 龍水利組合이라한다 朝鮮總督 에屬하는故로其主要한目的은瀋 府로부터 (一)組合規約의改正 (二)工事設計의一部分의變更의 八十町步의貯水池를 擴築하고 條件을附하야 今年八月二十七 日附로 左記認可가 나온것이다 此에 附隨하는用水의幹枝線을 決定하야 認可하게되 엇다 故로其結果로面積으로는 設計書보다八十六町步餘가減少 하게되고 事業費總額으로는設 計書에比하야 工事變更에 依한 金額中에는 邊算이 잇스나 此를 收正하야 二千四百餘圓을 增加시 킴하야 區域整理를 大行해야 될것이라한다

故로其結果로面積으로는 設計書보다八十六町步餘가減少 하게되고 事業費總額으로는設 計書에比하야 工事變更에 依한 金額中에는 邊算이 잇스나 此를 收正하야 二千四百餘圓을 增加시 킴하야 區域整理를 大行해야 될것이라한다

此組合의區域及面積을 말하면 水原郡台章面梅灘里 幸里 細浦里 遠川里 勸善里 機山里 陣罹里 牟月里 安龍面 洋亭 著手로부터 開墾完了 水利의 谷淨亭里 龍仁郡水枝面下 四個年度에 걸하는 經費總額은 五十九萬八千八十二圓이라한다 里 器興面靈德里의內七百四十 八町步餘의土地다 此面積은最 初의設計案보다는 約八十六町步 餘나減少된것이라는데其原因은 總督府가認可할때에 此를漑設不 能케라하야除斥한外달이라고한다

同組合規約第二條를보면(一) 瀋漑(二)排水가其目的이라하엿

東山、東拓等

十九萬五千五百九十二圓으로增額되엇다고한다

그러면八十六町步餘의面積을 減少시킨理由는무엇이냐? 總督 府는調査해본結果荒蕪地及瀋漑 不能地와水路敷地가蒙利區域內 로編入되엇다는것이다 玆에各 處水利組合을通路한經驗을綜合 해보면近來에와서總督府方面에 서도水組를認可하기前에際하야 먼저 設計書에씨운面積中에瀋 漑、排水不能地域은防水無用地 外有無를多少에對하야相當한注意 를하고잇는氣色이보인다 그러 나當局은本設水組의許可에際하 야는此點에對하야更一層注意해 야될것이라하야 또는旣設水利 組合에對해서도此點을矯正하기 爲하야區域整理를大行해야될것 이라한다

理由의其二인組合規約補 正問題에對한組合側의聲을듯건 대認可申請書에添附되엇든 組 合規約中에『水利組合規約準則』 에依한三千二百餘圓 設計金額邊算 (大正六年七月總訓二十九號)에 依한三千四百餘圓 合計五萬 八千圓을增加하게되여其結果로 前記한바와가리工事費總額이四 萬四千二百餘圓 合計五萬 邊算되는것이잇슬기때문이라한 다그러나 其補正된個所가何處 인지는仔細히모르겟다

四十八戶의
村落을移轉

貯水池豫定地로編入되어

當時의第一難關

遲延理由의其三인村落移轉問方) 에對하야四十圓式또는點雜 料로는滿足치 一圓에對하야 式주기로하야 겨우該村落民의 承認을얻게되엇다고한다 그러 다음水路敷地用地約三町步의 買收價格은이미確定되엇다고하 는데其內容을들어보면、反當價 格으로畓은大概二百圓內外 田 은七十圓內外 雜種地는九圓內 外라고한다

大部分은水原郡에잇고 貯水池 用地는龍仁郡에잇는關係로 貯 水池用地買收問題에對하야 利 害關係를가진者는龍仁郡住民이 如左하다

(一)적어도過去及現在外지에 의外서는 歷來增殖이라는것만 不拘을업도록하기爲하야 組合 令等이 다村落移轉及用地買收 에適任한者幾人과組合役員中으 로編入되엇다는것이다 玆에各 處水利組合을通路한經驗을綜合 해보면近來에와서總督府方面에 서도水組를認可하기前에際하야 먼저 設計書에씨운面積中에瀋 漑、排水不能地域은防水無用地 外有無를多少에對하야相當한注意 를하고잇는氣色이보인다 그러 나當局은本設水組의許可에際하 야는此點에對하야更一層注意해 야될것이라하야 또는旣設水利 組合에對해서도此點을矯正하기 爲하야區域整理를大行해야될것 이라한다

理由의其二인組合規約補 正問題에對한組合側의聲을듯건 대認可申請書에添附되엇든 組 合規約中에『水利組合規約準則』 에依한三千二百餘圓 設計金額邊算 (大正六年七月總訓二十九號)에 依한三千四百餘圓 合計五萬 八千圓을增加하게되여其結果로 前記한바와가리工事費總額이四 萬四千二百餘圓 合計五萬 邊算되는것이잇슬기때문이라한 다그러나 其補正된個所가何處 인지는仔細히모르겟다

理由의其三인村落移轉問方) 에對하야四十圓式또는點雜 料로는滿足치 一圓에對하야 式주기로하야 겨우該村落民의 承認을얻게되엇다고한다 그러 다음水路敷地用地約三町步의 買收價格은이미確定되엇다고하 는데其內容을들어보면、反當價 格으로畓은大概二百圓內外 田 은七十圓內外 雜種地는九圓內 外라고한다

大部分은水原郡에잇고 貯水池 用地는龍仁郡에잇는關係로 貯 水池用地買收問題에對하야 利 害關係를가진者는龍仁郡住民이 如左하다

(一)적어도過去及現在外지에 의外서는 歷來增殖이라는것만 不拘을업도록하기爲하야 組合 令等이 다村落移轉及用地買收 에適任한者幾人과組合役員中으 로編入되엇다는것이다 玆에各 處水利組合을通路한經驗을綜合 해보면近來에와서總督府方面에 서도水組를認可하기前에際하야 먼저 設計書에씨운面積中에瀋 漑、排水不能地域은防水無用地 外有無를多少에對하야相當한注意 를하고잇는氣色이보인다 그러 나當局은本設水組의許可에際하 야는此點에對하야更一層注意해 야될것이라하야 또는旣設水利 組合에對해서도此點을矯正하기 爲하야區域整理를大行해야될것 이라한다

理由의其二인組合規約補 正問題에對한組合側의聲을듯건 대認可申請書에添附되엇든 組 合規約中에『水利組合規約準則』 에依한三千二百餘圓 設計金額邊算 (大正六年七月總訓二十九號)에 依한三千四百餘圓 合計五萬 八千圓을增加하게되여其結果로 前記한바와가리工事費總額이四 萬四千二百餘圓 合計五萬 邊算되는것이잇슬기때문이라한 다그러나 其補正된個所가何處 인지는仔細히모르겟다

理由의其三인村落移轉問方) 에對하야四十圓式또는點雜 料로는滿足치 一圓에對하야 式주기로하야 겨우該村落民의 承認을얻게되엇다고한다 그러

◇古物商이自殺

시내 사간동 김백헌(金伯憲)씨는 동대문 밖 경성 고물상조합(古物商組合)에 가입하고 고물을 매입(古物仲買人)하여 오던 중 지난 십일일 오후 두시경에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여 죽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통지하였다더라

頻頻한列車投石

사일 오후 오시십분 경원선(京元線)원산역발차 오백사십팔 열차가 용산과 경성역 사이를 통과할 때에 돌연 차창에 돌이 날아와 부딪쳐 깨어지는 동시에 차내에 있던 승객 일인이 부상하였다더라

통제를 받지만 사실상 창설주체인 대지주들이 감독관청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며 실권을 장악하기 마련이었다. 수리조합 조직은 조합장 밑에 서기 · 기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부조합장 · 이사 · 출납역 · 기사장을 둘 수 있었다. 조합의 운영기구로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평의원들로 구성되는 평의회가 있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지사는 대개 조합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 임명되지만 조합장의 자격요건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제한이 없었고 또한 임명제였기 때문에 창설자가 아닌 인물이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조합장이 조선인인 경우에는 이사는 일본인을 두어 이사가 조합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 400~500정보 이상의 중 · 대규모 조합에는 이사를 두었는데, 임면권이 도지사에 있어 조합장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43]

수룡수리조합의 조직은 조합장–이사–서기로 구성되었다. 조합장은 조선인 대지주 홍사훈이고 이사는 일본인 고바야시 고로(小林五郎)였다. 서기 또한 일본인이다. 그런데 홍사훈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유지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수룡수리조합 창설세력은 아니었다. 조선인에 창설세력도 아니라는 점에서 홍사훈이 조합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지역의 예로 보아 일본인 이사 고바야시가 일본인 대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합 운영의 실권을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가공사나 조합예산 등과 조합의 주요 업무에 대한 평의회 회의록 내용을[44] 보면, 조합장은 평의회 의장으로서 회의에 참석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간 것은 이사였다. 고바야시는 1910년대 초부터 경기도 양성 · 개성 · 파주 · 용인 · 이천 · 수원군을 돌며 군서기와 속(屬)을 지내다 이사에 임명된 인물로서, 경력으로 보면 행정실무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창설주체, 특히 일본인 대지주들은 지역에서 이름 있는 조선인 유지를 명분상 대표로 내세우고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일본인을 이사로 앞세워 조합 운영을 좌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원 대표로 운영되는 평의회도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였다. 수룡수리조합 평의원은 다니(谷義治 : 국무합명회사), 나카야 교순(中屋堯駿 : 동산농사주식회사), 가토 슌페이(加藤俊平 : 동양척식주식회사), 다카기 도쿠지(高木德治), 고광업(高光業), 김현묵(金顯默), 오덕영(吳悳泳), 오성선(吳性善), 차유순(車裕舜), 양성관(梁聖寬) 등의 대지주들이었는데,[45] 평의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세력은 동양척식회사, 동산농사주식회사, 국무

43 박수현, 「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 중앙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5~37쪽.
44 『수룡수리조합추가공사시행인가서』, 1929; 경기도토지개량과, 『수리조합예산철』, 1931.

합명회사 등 일본인 대지주들이었다. 여화수리조합과 장지제수리조합의 평의회 또한 이 세 대지주가 주도하였다.[46]

특징적인 것은 수원 지역 수리조합사업이 일본인 대지주 위주로 전개되었으면서도,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의 각종 폐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리조합사업은 대지주들이 식민지권력 · 금융자본과 결탁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사업구역의 강제 편입과 무리한 사업계획에 따른 과중한 조합비 부담, 독단적 운영과 부실공사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증가 등 각종 폐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반대운동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수리조합사업의 가장 큰 피해계층이자 반대운동의 주축세력은 중소지주와 자작농층이었다.[47]

수원 지역 수리조합에서 그 폐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조합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원 지역의 토지 소유구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수원 지역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선 후기 이래 농업이 크게 발전함으로써 지주들의 토지겸병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고, 더욱이 일제 초기부터 일본인 대지주들의 진출로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어느 지역보다도 심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그리하여 1910년대에 이미 소작농가 호수가 전체 농가 호수의 90%를 넘어서고 있었다.[48] 이러한 소유구조의 양극화로 수원 지역에는 중소지주와 자작농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

45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금석문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 『수원문화연구』 7호, 2006, 215~216쪽.
46 『여화수리조합평의회회의록』, 1938; 『장지제수리조합평의회회의록』, 1938.
47 박수현, 「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 중앙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53~164쪽.
48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지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사림』 24호, 2005, 200~204쪽.





제4부

일제하 지주제와 농업 경영

제1장 일제하 수원 들목 조씨가의 경제생활과 사회활동

제2장 일제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활동

제3장 일제하 재수원 일본인 회사지주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최원규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양반지주경제와 들목 조씨가
2. 들목 조씨가의 사회적 관계망
3. 농업 경영과 수리시설
4. 조세 부담
5. 들목 조씨가 지주경제의 성격

제1장

일제하 수원 들목 조씨가의 경제생활과 사회활동

1. 양반지주경제와 들목 조씨가

들목 조씨가는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터를 잡고 사는 풍양 조씨가를 일컫는다.[1] 이 집안의 연원은 조선 중기 포저(浦渚) 조익(趙翼 : 1579~165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익 이래 이 집안의 주요 세거지는 경기도의 화성 일대(원리와 야목리), 안산시 반월, 충청남도의 아산, 예산, 논산 등지였다.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백석마을은 조익의 종손이 세거해 온 터이며, 현종이 사패지를 하사한 곳이었다. 논산에는 조지겸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이는 조지겸이 소론의 영수 윤증과 정치적 동지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2]

들목 조씨가는 18세기 후반 16세 조상존(1739-1806)이 한성부 남부 명례방 명례동에 거주하다가[3] 야목리에 내려와 터를 잡고 거주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때부터 17세 조만원

1 들목 조씨가의 가계는 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과 화성시, 「야목리를 살다 간 사람들」,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을 참고하였다.
2 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15쪽. 조익의 묘비는 소론의 영수인 윤증의 부윤선거가 썼다. 자세한 사정은 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22~23쪽 참조.
3 조상존의 준호구 1789년(정조 13).



들목 조씨가의 세거지 들목마을이 속해 있는 야목2리 입구의 표지석(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1762~1822) → 18세 조학년(1786~1854) → 19세 조희필(1812~1874)에 이르는 시기는 들목 조씨가 최고의 전성기였다. 조만원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순조 연간에도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당시 세거지는 화성부 송동면이었다. 준호구에는 이들 부부와 아들 부부, 노비 10여 구가 기록되어 있으며, 강화유수 등을 지냈다.[4] 조만원이 1822년에 사망하자, 온양현 서면 희안리(후에 방축리)에 선영을 마련하였다. 19세 조희필의 부인 연안 이씨는 신창 행목리에, 20세 조종재의 부인 해평 윤씨, 조영도(1855~1938)의 배창녕 성씨도 온양 방축리에 묘역을 조성하였다.[5] 추수기에서 보는 바처럼 여기에 적지 않은 토지를 마련하였다.

정치 사회적으로 들목 조씨가의 지위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징표는 서원 건립과 시호를 받은 점이다. 조씨가의 선조들을 배향한 서원은 그 후손이 거주하던 두 곳에 설립되었다. 하나는 1661년(현종 2) 수원부 매송면 원리에 설립한 명고서원이었다. 이곳은 광주부 송

4 조만원의 준호구 1807년(순조 7).
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쪽.

동면이었지만 1789년(정조 13) 화성 성역사업과 관련하여 수원부에 편입되었다. 1669년(현종 10)에 사액되었으며, 1712년(숙종 38) 송곡 조복양, 손자 오재 조지겸이 추배되었다. 들목 조씨가가 원리 주변에 소유한 토지는 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6] 다른 하나는 조익이 은거하여 후학을 가르치던 아산군 신창면에 혈족과 후학이 세운 도산서원이었다. 두 서원은 1871년 대원군의 서원정책에 따라 훼철되었다. 훼철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씨 집안의 정치적 지위는 이때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이듬 해 조희필의 조부인 조만원과 조학년이 나란히 조선정부로부터 시호를 받았다. 조만원은 정2품의 형조판서를 지내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후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문정공이 되었다.[7] 하지만 들목 조씨가는 이를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걸었다.

조씨가는 19세기 후반 이래 관리 진출 등에서 별다른 활약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씨가의 가전 문서에서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 준 것은 혼맥이었다. 인근 유력 가문들과 통혼관계를 유지하였다. 20세 조종재의 배는 아산 지방의 유력가문인 해평 윤씨 집안출신이었다. 당시 활동하던 해평 윤씨로는 윤치호, 윤치소 등이 있다. 조영도는 창녕 성씨와 결혼하였다. 22세 조홍묵(1876~1910)은 전주 이씨 이교하의 딸과 혼인했는데,[8] 부인이 1899년 사망하자 남양 홍씨 홍진도의 딸 홍사열(1883~1964)을 후처로 맞이하였다.[9] 남양 홍씨 세거지인 남양군은 수원군에 접한 군이었다. 들목 조씨가의 근대를 이끌어 온 인물은 22세 조홍묵과 부인 남양 홍씨 사열이다. 조홍묵의 장남 조병화는 1911년 이름을 병두로 개명하였다.[10] 그의 처 박성숙은 박세당의 후예인 박제빈의 손녀로 숙명의숙을 나온 재원이었다. 조씨가의 포천 소유 토지는 처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 이 집안을 부르는 택호는 19세 조희필(1812~1874)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1867년 대구도호부 판관을 지낸 이후 조씨가에서 이렇다 할 중앙관직에 진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그 이후 통상 '조대구댁'으로 불렸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조씨가의 근대사 인물은 22세 조홍묵(1876~1910)과 23세 조병두(1902~1964)이지만, 자료

6 『조선지지자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수원군 송동면은 야목 · 당곡 · 당산 · 효대 · 아산곡 · 소곡 · 원촌 · 만촌 · 병실 · 현천 · 유곡 · 빈정포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매곡면에는 서원촌(書院村)이 있었다.

7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64~67쪽.

8 이교하(李敎夏)는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치성(稚聲)이었다. 1872년(고종 9) 경무대(景武臺)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73년 주천(注薦)을 지냈다. 1876년 본관록(本館錄) · 도당록(都堂錄)에 오르고, 1878년 홍문관부응교가 되었다. 이어 홍문관응교, 사헌부장령, 선교관(宣敎官)에 임명되었다. 1887년 대사간이 되었다가 이듬해 함경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병조참의에 올랐다.

9 화성시, 「야목리를 살다 간 사람들」,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쪽.

10 화성시, 「야목리를 살다 간 사람들」,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8쪽. 조병두의 초명은 용경 · 병화인데, 1911년 7월 30일 병두로 개명하였다.

관계상 주로 후자의 시기를 다루었다. 조흥묵이 1910년 사망하자 처 홍사열(1883~1964)은 나이 어린 조병두의 친권자로 1910년대 집안을 이끌어 갔으며, 조병두의 활동은 192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11]

들목 조씨가의 소유지는 경기도 수원군 매송면과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면이었다. 전자에서는 일부 자경하면서 소작지를 직영하는 체제였고, 후자는 원격지로 마름 경영체제였다. 이곳의 지리적 환경은 농업 경영에 매우 적합하였다. 수원군 매송면은 지주의 거주지이면서 서울과 지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 개통 이후에는 수원역을 통해 개항장인 부산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었다.[12] 수원은 조선경동철도회사에서 1931년 수여선을 전 구간 개통하여 여주와, 1937년 수인선을 개통하여 인천과 연결되었다. 특히 매송면은 수인선 매송역이 세워져 교통이 사통팔달한 지역이었다.[13] 배편으로는 면내 빈정포(濱汀浦)가 서해안으로 연결되어 인천 또는 선산이 있는 아산군과 인적 · 물적 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곳은 평야지대일 뿐만 아니라 일제가 수원고등농림학교와 권업모범장을 설립한 지역으로, 일본의 개량농법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었다.[14] 경제 지리적 환경이 지주 경영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15] 1922년 매송면의 경작실태를 보면, 경작지 가운데 답이 66%를 점했으며, 소작지는 67%가량 되었다. 답작 위주의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었다.[16]

그리고 아산군은 충청남도 북부 지역의 일반적 특성이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김정희 · 윤치호 · 윤치소 등과 같은 양반들이 대거 세거하면서 지주 경영을 하던 지역이었다. 이들도 조씨가처럼 일반적으로 마름제를 지주 경영방식으로 채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멀지 않아 육상교통도 편리했지만, 배편으로 수원 · 인천은 물론 서울로 오가는 것도 용이하였다. 일제시기 1920년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가 충남선을 건설하여 천안–온양온천 간 철도가 개설되면서, 조씨가의 온양 지역 농장은 철도편으로도 연결되어 지주 경영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조씨가는 이처럼 지주 경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

11 들목 조씨가의 유래와 가족사에 대하여는 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 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과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자료의 기증과 그 의미」,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 2008의 글이 참고가 된다.
12 일제의 철도정책은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 출판부, 1999가 참고된다.
13 酒井政之助, 『발전하는 수원』, 1914; 酒井政之助, 『수원』, 1923, 5쪽.
14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 9-1, 2010.
15 수원 지역의 농업환경과 지주제에 대하여는 임대식, 「1930년대말 경기지역의 조선인 대지주의 농외투자와 지방의회 참여」, 『한국사론』 34, 1995;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사림』 24, 2005 등이 참고된다.
16 酒井政之助, 『수원』, 1923, 24쪽.

하면서, 인천 개항 이후 전개된 미곡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제 변동,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격동기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처해 갔을까. 이 글의 주된 분석 주제는 이 시기 조씨가의 농업 경영 분석이다. 이제까지 지주제 사례연구는 주로 경기도 강화 지역과 호남 지역에 집중되었다.[17] 농업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한말~일제 초기에 높은 미곡 수출가를 토대로 지주가 대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농업공황 이후에는 양상이 달랐다. 후자 지역의 일부 조선인 지주는 일본인 지주와 함께 기업가적 지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성장을 지속해 갔지만,[18] 전자 지역에서는 정체 또는 후퇴 경향을 보였다.[19] 이러한 측면을 검토하여 지역별로 유형을 나누어 경기형 지주와 전북형 지주로 분류하기도 했다.[20] 일제하 소작관이었던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는 전자를 양반적 지주 경영으로 정태적 지주, 후자를 동태적 지주라고 분류하기도 했다.[21]

이 글에서 다룰 조씨가의 지주 경영을 종전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형적인 양반지주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미곡무역과 미곡단작적 식민지 농정에 대응해 간 방식이었다. 결론적으로 조씨가의 대응은 성장해 가는 모습보다는 시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씨가의 토지 소유규모 변동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조씨가는 1938년 100정보 지주였다.[22] 이 규모는 종전 사례연구에서 성장해 가는 지주가가 보여 준 것처럼 개항 이후 경영 확대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려웠다. 조씨가가 일제시기 내내 토지 소유의 지역과 규모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론해 보면, 구래로부터 소유규모는 별 변동 없는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목도 사례연구의 지주들이 대부분 미곡 생산과 관련하여 답을 압도적으로 소유한 것과 달리 조씨가는 전과 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23] 미곡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지주 경영이라기보다 들목리라는 향촌사회에서 양반의 정치 · 경제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자급적 경제구조를 목적으로 한 양반지주경제의 한 단면이라고 보인다.

조씨가는 양반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 속에서 한말에는 종가로서의 기반 유지, 일제

17 ①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 ② 홍성찬,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1992, ③ 박천우,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④ 최원규, 「한말일제하 농업 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50 · 51, 1985, ⑤ 홍성찬, 「일제하 기업가적 농장형 지주제의 역사적 성격」, 『동방학지』 63, 1989 등의 연구가 이 지역을 주 대상으로 했다. 최근 김현숙, 「식민지시대 합덕리의 토지 소유관계와 구합덕본당의 농업 경영」, 『역사와 현실』 67 등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지주가 사례연구가 있다.

18 주 17)의 사례연구에서 고부 김씨가, 동복 오씨가, 해남 윤씨가, 목포 문씨가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19 주 17)의 강화 김씨가와 홍씨가, 그리고 성당 지주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20 宮嶋博史, 「植民地 朝鮮人 大地主의 存在形態에 關한 試論」, 『朝鮮史叢』 5 · 6, 1982년 1월.

21 久間健一, 『朝鮮農政의 課題』, 成美堂書店, 1943.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농지개혁사 편찬자료 X), 1985, 98쪽.

23 조씨가의 토지 소유와 관련한 분석은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초기에는 지주로서 토지 소유권 확보에는 적극적이었지만, 농업 경영은 확대 재생산보다 현실 추수적 자세였다. 일제시기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다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지주 경영이 전면적으로 해체되어 몰락해 간 양반지주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조씨가의 지주 경영 분석에는 이 집에서 화성시에 자료를 기증하여 발간한 두 책에 실린 자료를 주로 동원하였다.[24] 이 가운데 추수기와 납세 관계 자료 등 경제자료가 주요 분석대상이었다. 자료의 시기별 분포에서 아쉬운 점은 1920년대 이전의 경영 자료가 전무하여 한말~일제 초기의 지주 경영을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자료의 전반적 기조나 집안 사정으로 추론하면 앞의 시기 지주 경영도 별 특이점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에서 동원할 자료는 토지증명자료, 추수기, 조세 부담과 관련된 영수증 그리고 지주회와 종중 등 각종 관련 단체 문서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들목 조씨가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주 경영문제, 지세 부담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2. 들목 조씨가의 사회적 관계망

1) 한말 격변기 들목 조씨가의 대응

들목 조씨가의 사회적 관계는 19세기 후반을 전기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대별된다.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매송면 야목리에 200년 이상 거주한 오랜 토호였을 뿐만 아니라, 조복양 · 조상존 · 조희필에 이르는 시기에는 학문뿐만 아니라 정계의 실력자로 가문의 위세를 드날린 조선의 상류 양반가문이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이래 관료로의 진출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치적 지위를 상실해 갔다. 당시 들목 조씨의 장남 조홍묵은 내부주사 판임관 6등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송동면의 도집강에 임명되는 정도였다.[25]

이 시기 조씨가는 조선의 양반 중심적 중세체제에 균열이 생기자 여러 방면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개항과 더불어 서구 물결이 들어오는 길목에 집안이 위치했으나 새로운 조류에 적극 적응해 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씨가는 전통적 양반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근대화 · 식민지화의 새로운 위기에 처하였다. 내부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되

24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과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의 책 가운데 「야목리를 살다 간 사람들」(23~42쪽)에 소개된 자료와 해설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25 「사령」, 『구한국관보』, 광무 5년 10월 8일.

면서 도망 노비의 증가 등 솔거노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노비 의존적 집안질서가 무너져 가는 동시에, 문중 내에서 집안끼리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첫째 서원 터에서 산송, 즉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1871년 대원군의 서원정책에 따라 명고서원이 훼철되자, 조씨가는 이 터의 후록에 위패를 묻고 자손이 수호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동리의 양반 이병호가 10보 안에 투장하면서 산송문제가 제기되었다. 명고서원의 훼철로 후록이 무주공산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투장하여 점유하려 한 것이다. 이에 조씨 문중에서 35명이 연서하여 군수 순찰사에게 해결해 달라는 단자를 올렸다. 모두 조씨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씨가는 산송 와중에 이병호와 집사(執事)인 노(奴)가 죽자 조씨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양가가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다시 조씨가가 불복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조씨가의 점유로 판결났다. 당시 산림의 점유권은 현실의 점유 여부에 있었으며, 점유를 포기하면 점유권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 점은 1841년의 온양현 서면 희안리와 방축리의 선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곳은 조 승지가 선산을 묘직에게 보호하도록 했지만, 주변 환경으로 여의치 못하자 주위의 산을 사들이고 그 경계에 대해 이후 이의가 없도록 완문을 작성하고 온양현감의 제사를 받았다.[26] 같은 날 조씨가는 완문을 온양현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선산수호를 위해 묘촌을 건설하기 위한 완문이다. 전에도 면역민을 들어와 살게 하였는데 이들에게 역을 부과하여 마을이 탕패하게 되자, 선산 금양을 위해 역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완문을 관으로부터 받았다. 이 완문에는 수령은 물론, 좌수 별감 그리고 호장 이하 이 · 호 · 예 · 병 · 형 · 공방과 어영색 · 속오색 등이 부서하였다. 완문은 조씨가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금양도 가능하도록 묘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이 인정한 공문이다.[27] 산림의 경우 점유를 허락한 완문과 금양이라는 조건으로 점유권을 부여한 것이다. 조씨가의 중앙정계 진출은 더 이상 없었지만 산림에 대한 권리 확보에는 자못 철저하였다.

둘째, 1899년 집안의 재종이 종산의 나무를 일본인에 팔아넘긴 사건이었다. 이 시기는 대한제국이 마지막 근대화 개혁을 시도한 때이지만, 사회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구래의 유교적 종법 질서가 근대적 권리의식의 발전에 따라 도전을 받던 때였다. 수원군 송동면 송라동(松蘿洞)에 있는 선산을 둘러싸고 집안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선산을 수호하기 위해 수백 년 금양해 온 송추(松楸)를 재종숙 조돈선(趙敦善)이 일본인 사토(佐藤

26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55~57쪽.
27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57~58쪽.

誓雅)와 협잡하여 방매하고 베어 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조흥묵이 이를 금지하니 돈선과 일본인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행하자 이에 군에 정소한 것이다.[28] 즉 재종숙 조돈선이 일본인 사토에 금양한 송추를 1만 냥에 매매했다고 작벌하자, 조흥묵이 "설혹 매매했다고 하나 이미 종손이 있는데 돈선이 감히 지손으로 종중 논의도 없이 어찌 팔 수 있"으며, 문서도 없이 한 일이니 군에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군수는 조흥묵의 손을 들어주고 재선과 주사 김학구는 승복했으나, 일본인은 승복하지 않고 무뢰배를 끌고 와 마구 베어 냈지만 이를 막지 못하였다.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라 직접 처결하지 못하고, 다시 한성부와 외부에 호소하였다. 1899년 9월 19일 외부에서는 한성부에 공문을 내려 처리하였다. 일본영사에게 소환하도록 조처하여 공의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29] 조씨가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황성신문』에 재종숙 조돈선이 방매하려고 하니 절대로 속지 말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일반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권리 확보 차원의 방안이었다. 광무정권이 외세에 대해 무력하고, 제도도 미비했지만, 들목 조씨가는 적극 대응하였다. 조흥묵이 주장하듯 구래의 '종중 논의'에 따른 재산권 처리방식이 일본의 재산권 처리방식과 충돌한 것이다. 일본인이 조재선으로부터 돈을 주고 송추를 샀을 경우, 유교적 의례에 따라 형성된 종전 문중의 재산권만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인은 문중의 일원인 조돈선도 재산권이 있다고 예단하고 여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30] 이 사건은 단순한 송추의 처리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산림의 소유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들목 조씨가는 이 산판을 자기 소유로 확정해 가는 작업을 착착 추진해 갔다.

조씨가의 사회적 참여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신학문이나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한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수원 유지 서상천이 수북면 백봉(栢峰)에 수성학교(須成學校)를 설립하면서 1907년 5월 도집강인 조흥묵에게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낸 정도였다. 그 학교의 설립목적은 "금일 우리 인민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일반 인민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지식이 있으면 타인에게 어찌 업신여김을 당할 이치가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이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자제를 교육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정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학교의 자본금은 5,000원인데, 전 참봉 서상천(徐相天)·서상긍(徐相兢), 수원군 참서관(參書官) 김한목(金

28 「골육쟁목(骨肉爭木)」, 『황성신문』, 1907년 5월 13일.
29 『한성부래거안(漢城府來去案)』 2, 광무 3년 9월 19일, 수훙 조흥묵의 호소에 대한 처리 지령.
30 당시 공유지의 성격을 갖는 토지에서 이러한 분쟁이 쉽게 발생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원규,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 『한국학연구』 24, 2011이 참고가 된다.

漢睦) 등이 주로 출연하였다.[31] 교장은 서상천, 찬성장(贊成長)은 수원군수 이완용(李完鎔), 교감 전주사 서상긍, 일어교사 변영헌(卞榮獻), 한문교사 서상춘(徐相春)이고, 학생수는 53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32] 일어교사를 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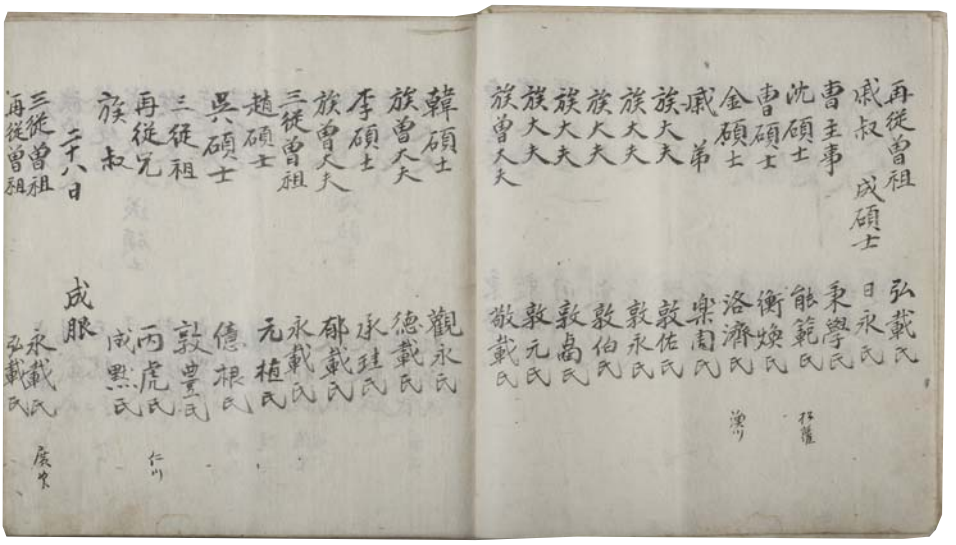
공함(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수북면 수성학교 교장 서상천 등이 송동면 도집강인 조홍묵에게 보낸 것으로, 인재 육성을 위해 갹출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들목 조씨가의 활동은 1910년 조홍묵이 사망하자 더 위축되었다. 장남 조병두(1902~1965)가 집안을 이끌어 가야 했다. 호주 조병두는 들목 조씨가의 재산권자이며 종손이었지만 나이가 어려, 모친 홍사열이 집안 대소사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곳곳에 그녀가 참여한 흔적이 보였다. 대표적으로 1915년 금전채무관계로 법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녀가 소송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것을 재판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씨가가 조병두 명의로 수원군 비봉면 구포리 거주 권덕규에게 빌린 원금 600원에 대한 이자율 문제로 권덕규가 경성재판소 수원지청에 소송한 사건이었다. 이때 홍사열이 조병두의 모(母)로서 친권(親權)을 행사하며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33] 소송은 원고 측의 계약이자 3할 요구와 피고 측의 「이자제한령」에 따른 2할 5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었는데, 후자의 입장인 홍사열이 승소하였다. 일제 초기 그녀의 동생 홍사형이 조씨 집안일을 처리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34]

이상과 같이 사회적으로나 집안 내에서도 들목 조씨가의 위치가 불안하였는데, 이 집이 그나마 체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주적 기반과 일제 초기 식민지 지주적 농정 덕이었다. 조씨가의 정치 · 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들목 조씨가의 체모

31 『황성신문』, 1907년 1월 28일.
32 「須校日盛」, 『황성신문』, 1907년 2월 4일.
3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50~54쪽.
34 「조병두가의 문서에는 홍사열의 동생 홍사형이 참여하여 계약한 문서들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징표라 생각된다. 홍사형은 1912년 남양군 신리면 홍법동의 답 9두락과 2두락 3두락을, 1915년 3월 11일 야목리 1통 10호의 초가 7칸 집을 매득할 때 계약 당사자였다. 1913년에는 소에 대한 전집계약서로 36엔을 빌려주고, 매년 정조 30두를 5년간 지불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소를 허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직접 관여하였다(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185~187쪽).



조객록(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는 종손이라는 지위가 갖는 혈연적 연계망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들목 조씨가의 종손으로서의 위치는 조부 조영도의 처인 창녕 성씨의 상을 당했을 때 조문한 사람들의 실상에 잘 드러나 있다. 1931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조객 명단과 이듬해 1월 1일부터 6일까지 문상 온 조객명단을 기록한 『조객록(吊客錄)』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전자는 들목 조씨가와의 관계 · 성명 · 거주지역을, 후자는 직업 · 성명 · 거주지역 및 조상(弔狀) 여부를 기록하였다.[35]

조객은 총 302명이고, 이 가운데 조장(弔狀)을 보낸 이는 19명, 전조(電弔)는 4명이었다. 『조객록』은 날짜와 그날의 장례절차를 쓴 다음 조문명단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장례는 12월 25일 유시고부(酉時皐復), 27일 습렴(襲殮), 28일 성복(成服), 1월 1일 언문(唁問), 5일 발인(發靷), 8일 언문(唁問)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문객은 족증대부(族曾大夫), 족고대부(族高大夫), 족대부(族大父), 석사(碩士), 족숙(族叔), 척숙(戚叔)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일가친척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관직이 표기된 자는 보령 군수 조풍호, 매송면 주재소 순사 장용남, 경기도청 토목과 주사 홍학유 참봉(경학원) 참사 정도였는데, 이들도 친인척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월면장과 온양면장 등으로, 들목 조씨가 세거지의 면장들이 조문을 왔다. 관료군의 범위가 좁고 직위도 낮은

3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34~341쪽.

편이었다.

조문객의 거주지역은 매송면의 송라리 · 어천리 · 숙곡리 · 원리, 반월면 건건리, 비봉면 현천리 · 천천리 등 수원군과 인근 지역, 그리고 경성, 포천, 평택, 김포, 분천, 인천, 유곡, 병실(丙室), 양지(陽智), 양주, 남양, 광교, 죽산, 소사 등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외에 예산, 논산, 노성, 온양, 신창, 목천, 당진, 보령, 천안 신당리, 공주 무릉리 등 충남 지역과 보은 · 제천 등 충북 일대였다. 대부분 조씨가의 세거지였다. 강원도 양구, 강릉, 경북 상주에서도 조문을 왔다. 대단히 넓은 지역을 포괄했지만, 경기와 충남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대부분이었다. 성씨가 다른 조문객인 성씨 · 권씨 · 박씨 등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돈집안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 또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 등 새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된 조문객은 찾기 어려웠다. 그만큼 조씨가의 활동범위가 혈연적 범위 내로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자 이강국이 조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관계였을 것이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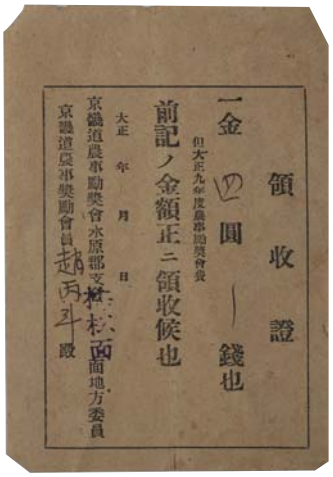
문중의 질서는 현재도 혈연성을 고리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위력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37] 조씨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에 적합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이에 비례하여 가세도 쇠퇴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2) 지주회와 농회 참여

들목 조씨가는 19세기 후반 이후 중앙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향촌에서 토호 유지로서, 명문가문의 종가로서 품위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일제시기에도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향촌에 칩거한 채 일제가 지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에 가입하여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하는 정도였다. 부가 도집강을, 숙부인 조인묵이 매송면장을 지냈을 뿐이었다. 당시 조씨가가 가입한 단체는 경기도농사장려회와 아산군지주회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이들 단체를 해산하고 「조선농회령」을 공포하면서 설립한 조선농회 등이었다. 조씨가는 대지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관련 관변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단체활동은 부과된 회비를 내는 정도였으며, 직접적인 활동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8]

3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44쪽.

37 1964년 조택기의 조모상과 부친상의 부의록 기록은 조객명단이 전에 비해 대단히 소략하였다(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68~370쪽).


領收證
一金 四圓 一錢也
但大正九年度農事助奬會費
前記ノ金額正ニ領收候也
大正 年 月 日
京畿道農事勸奬會水原郡支會 村松函
京畿道農事奬勵會員 趙丙斗 殿

대정 9년 농사장려회비 영수증(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경기도농사장려회는 1920년 7월 20일 오후 1시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통상총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39] 이 단체는 '산업단체 남설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각지에 각종 단체가 매우 활발하게 설립되던 시기에 이완용, 송병준이 주도하여 1912년에 설립한 경기도농사장려회를 도 차원에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40] 이러한 지역 유지들의 모임은 지주회, 권농회, 농회, 농사장려회, ○○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농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완비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관권을 동원하여 과도적으로 설립한 준관적 지주친목단체였다.

경기도농사장려회는 도장관의 지도에 따라 본부를 도청에 두고, 소작인 보호와 농사 개량 장려를 표면적 목표로 내걸었다. 각 군에 지회를 두고, 각 면의 인물이 포함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41] 회장은 군수 또는 회원 중에서 상당한 중심인물을 선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선정하도록 했다.[42] 평의원은 발기인 또는 지방 유력자 등을 선임하되 반드시 면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기는 농사담임 군서기를 촉탁하였다. 회원은 2정보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하되,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단체의 취지에 찬동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43] 자작상농층까지 포괄할 것을 의도한 조직이었다. 1925년 이를 개정하여 5정보 이상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지세 20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제한하여 지주적 성격을 강화하였다.[44] 회비는 회원의 소유면적을 표준으로 1정보 20전 이내에서 등급을 나누어 징수하도록 했다.[45] 조병두는 수원군지부 매송면 지방위원에 임명되었다.[46]

---

38 문정창, 『조선농촌단체사』, 1961; 堀和生,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농업정책」, 『일본사연구』 171, 1976; 최지영, 「1910년대 지주회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기훈, 「1910-1920년대 일제의 농정 수행과 지주회」, 『한국사론』 33 등이 참고된다.

39 「경기도농사장려회 준칙 발표」, 『동아일보』, 1920년 7월 24일.

40 조선농회, 『조선농회보』 7-9, 60쪽. 경기도에서는 1912년 이완용을 회장으로, 부회장 송병준, 이사 민대식 · 조진태 · 김한규 등 친일명망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농사장려회를 조직하였다.

41 「경기도농사장려회 준칙 발표」, 『동아일보』, 1920년 7월 24일.

42 경기도훈령 제19호, 「농사장려회 준칙」, 『조선총독부관보』 제2393호, 1920년 8월 2일; 「농사장려회준칙 중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제3765호, 1925년 3월 6일.

43 경기도훈령 제19호, 「농사장려회준칙」, 『조선총독부관보』 제2393호, 1920년 8월 2일.

44 경기도훈령 제19호, 「농사장려회준칙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제3765호, 1925년 3월 6일.

45 조씨가는 4원을 납부했는데, 대략 20정보가량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4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6쪽. 1920년 장려회비영수증을 보면 4원이었다.

조씨가는 1917년 아산군지주회가 설립되면서 여기에 가입하였다. 이 단체는 아산군수가 발기하여 2월 21일 발회식을 거쳐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은 참석자 130명으로 구성했으며, 미출석자는 후일 입회하도록 했다. 회원자격은 군내 거주자는 전답 10정보 이상 소유한 자, 군외 거주자는 군내에 15정보 이상을 소유한 자로 정하였다. 회장은 이주상(李胄相)이었다. 그는 1912년 온양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을, 1913년 학교에 수선과 비품비 20원을 제공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패인 목배를 받았다. 아산군 온양면장과 충청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臨時委員)을 지냈으며,[47] 1910년대 아산군 지역사회의 핵심인물로 활약하였다.

〈표 1〉 회원의 등급과 회비

(단위 : 엔)

구분	인원	1인당 회비액	회비총액	소유단별	인원	1인당 회비액	회비총액
10정보 이상	87	800	69.600	40정보 이상	14	1.600	22.400
20정보 이상	47	1.000	47.000	50정보 이상	28	2.000	56.000
30정보 이상	21	1.400	29.400	계	197		224.400

〈표 2〉 소작인에 지급할 상품내역[48]

(단위 :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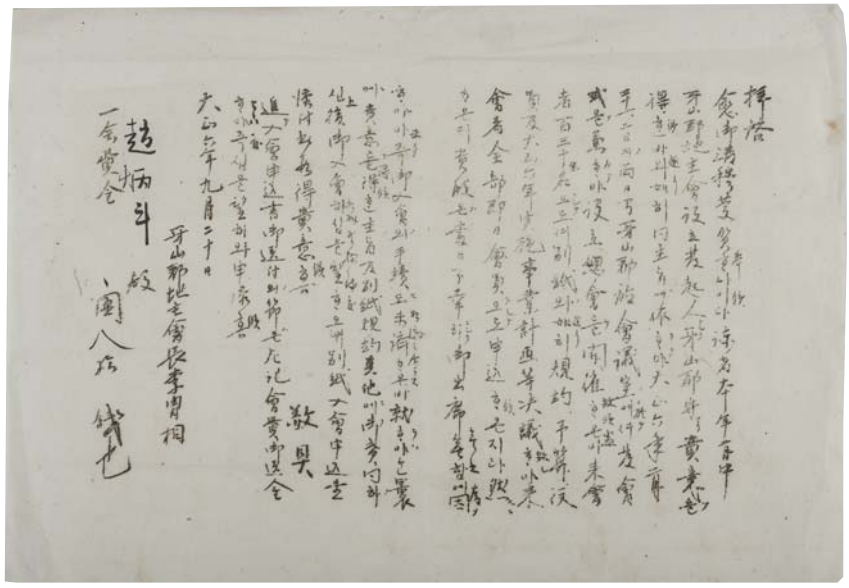
종별	인원	1인당 상품대금	총금액	종별	인원	1인당 상품대금	총금액
1등	1	8.000	8.000	4등	15	0.700	10.500
2등	2	4.000	8.000	5등	174	0.300	52.200
3등	5	1.500	7.500	계	197		86.200

아산군지주회 회원은 〈표 1〉에서 보듯 총 197명으로 30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63명이었다. 회비는 소유면적에 비례하여 5등급으로 나누었고, 총 224.4엔이었다. 평의원의 구성은 임원 13명, 고문 2명이었다. 부회장은 일본인 하마오카(濱岡郎卽兵衛)이고, 평의원은 이리마지리(入交貞吉), 이덕영, 강두수, 카와카미(河上兼三), 유기영, 윤경선, 심상욱, 박석규, 조종섭, 남정일, 히다카(日高利一), 장재기 등이었다.[49] 각종 사업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

47 『조선총독부관보』 제450호, 1912년 2월 29일; 『조선총독부관보』 제367호, 1913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관보』 제917호, 1915년 8월 23일.

48 1등은 빈우(牝牛), 이하는 농구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했다(「1917년 지주회 예산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3쪽).

49 「아산군지주회 역원 선정 명부」,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3쪽.



아산군지주회 개최 회원 가입 안내(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고, 군수에게 보고하였다. 중요사항은 고문을 거치도록 했다.

지주회는 농사 개량과 소작방법 개선을 기도하여 지주와 소작인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규약에 정하였다. 사업은 지주회가 실행할 사업과 회원인 지주 개인이 실행할 사업으로 나누어 정하였다.[50] 전자는 묘대(苗垈)·입모(立毛)·소작미·퇴비·녹비의 품평회를 개최하는 일, 우량소작인과 그 가족의 표창을 하는 일,[51] 농사 개량 발달에 관한 강습 강화를 개최하는 일, 종묘(種苗)·농구·비료 또는 도량형기의 공동 구입을 알선하는 일, 소작인에게 부업과 근검저축을 장려하는 일 등의 농사 개량 사업이다(규약 제4조). 후자로는 지주가 주도하는 농사 개량과 소작방법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규약 제5조). 후자는 소작계약은 문서로 하고, 소작기간은 5년 이상, 소작료는 정조법(定租法)으로 현미로 수납하도록 했다. 전자로는 품종 개량과 농법 보급을 강조하였다. 채종 전답을 설치하여 우량종을 재배할 것, 경작방법의 모범을 보이고 생산 종자는 소작인에게 무이자로 대부하거나 교환하도록 할 것 등이다.[52]

50 「아산군지주회 규약」 제4조,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88쪽.
51 표에서 보는 것처럼 등수에 따라 소작인 전원에게 상품을 지급했으며, 상품은 소와 농구였다.
52 「대정 6년 실시사업 결의」,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4쪽. 품종보급방식은 회원 각자 1단보의 채종전을 설치하도록 할 목적으로 먼저 지주회에서 원종전 5단보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 재배하여 추수한 것을 매수하여 회원에게 종벼를 배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농사 개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작인을 지원하도록 했다. ① 종묘, 농구, 비료, 가축을 급여하거나 대부하고,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부할 것, ② 퇴비사(堆肥舍) 설치 장려와 보조, ③ 우량종 재배와 경작과 조제방법을 개량하고, 성적이 현저한 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것, ④ 해조충(害鳥蟲)의 구제 예방, ⑤ 답이작(畓裏作) 장려와 소작료 징수금지, ⑥ 제언보(堤堰洑) 또는 관개 배수로의 수축, 관개용 정호(井戶)를 신설할 경우는 공사 재료나 기타 필요비용을 부담할 일, ⑦ 재해 구제책 강구, ⑧ 소작인이 종자가 없을 때 이를 급여하거나 대부할 것 등이다. 그리고 소작분쟁을 조정하는 일도 담당하도록 정하였다(규약 제7조).

다음은 이 가운데 아산군지주회에서 1917년에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항이다.[53] 첫째 아산군 권업계획의 실시, 둘째 우량소작인 표창,[54] 셋째 수도채종전을 설치 재배하여 회원에게 배부하는 일,[55] 넷째 종견(種繭)·농구·비료 또는 도량형기의 공동 구입을 알선하는 일 등이었다.

지주회의 예산은 회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회비는 소유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표 1〉. 주요 지출항목은 원종전·종벼·매상비, 소작인 표창비 등이었다〈표 2〉.[56] 규약과 결의사항에서 소작인의 지위와 경제적 이익 향상에 주목한 점이 눈에 띄지만, 지주회는 이를 시행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나 강제력은 없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수지결산 등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정했지만, 예산 지원이 없는 한 관의 간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씨가는 이러한 단체에 피동적으로 가입했으며, 규약을 실행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주들은 지주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지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결속력을 다지면서 일제의 농정에서 자기 이익을 확보해 갔다.

이러한 느슨한 비법적·반관적인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6년 1월 25일 제령 제1호로 「조선농회령」을 공포하고 조선농회를 설립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단순히 행정적 후원에 그친 지주회 차원을 넘어, 전 조선 농촌사회를 조직적으로 장악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57] 회원자격은 3단보 미만의 소작농민과 1년간 1매 미만의 양

5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4쪽.
54 우량소작인은 회원이 각자 소작인 1인을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심사하여 등수를 결정하였다. 추천된 소작인 197명에게 모두 상품을 지급하였다.
5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3~394쪽. 회원이 채종전을 각 1단보 설치하도록 하고, 지주회는 5단보의 수도원종전을 설치하였다. 이를 의탁 재배하여 추수 후 수확벼를 매수하여 각 회원에게 1단보에 필요한 종벼를 배부하였다. 1917년 예산에서 원종전 수확 벼 11석 8두 2승을 매상할 비용으로 석당 6원씩 70.92원을 배정하였다.
5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3쪽.
57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혜안, 2003.

잠농, 그리고 이를 병행하는 농민은 제외하였다.[58] 영세농민층을 제외한 것은 농회 구성원의 안정적 확보와 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산미증식계획을 실천하는 지주적 농정의 매개조직인 농회에 이들을 포섭할 여력은 없었다. 농회의 임원은 지주 · 자본가로 구성되었으며, 행정관청이 이를 지도하였다. 조선농회는 소작농민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단체가 아니라 '원부(怨府)'로 원성을 사기도 했다.[59]

경기도 군농회는 1926년 3월에 20개가 설립되었다. 기존의 농회 · 농사장려회 · 지주회 · 양잠조합 · 면작조합 등은 해체되고, 군농회로 인계되었다. 회장 · 부회장은 행정관청이 임명했으며, 평의원은 총회에서 통상의원 · 특별의원 중에서 선출하였다.[60] 총회는 회장 부회장 · 통상의원 ·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통상의원(通常議員)은 회원 중에서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고, 특별회원은 행정관청이 임명하였다.[61] 수원군농회는 1926년 3월 17일 설립이 인가되었다.[62] 수원군수는 조병두를 수원군농회 통상의원으로 임명하였다.[63] 농회는 관 주도 아래 지주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간 단체이며, 조씨가가 그 일원으로 편입된 것이다.



조병두의 수원군농회 통상의원 임명장(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농회는 도(道)농회-부 · 군 · 도(島)농회로 구성되었고, 면에는 분구를 두었다. 면장은 ○○군농회 제○분구 분구장이 되었다.[64] 회비는 30전 이내의 회원할과 지세 납부액의 100분의 7인 지세할로 구성되었다.[65] 수원군농회 회원의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세할은 수원군농회 매송면 분구장이 발급했으며, 농회비는 수원군농회장이 회원할이라는 명목으로 발부하였다.[66] 아산군농회 제1분

58 「조선농회령 시행규칙」(1926년 1월 25일 공포), 『조선농무제요』, 조선농회, 1933, 400~411쪽.
59 『개벽』, 1926년 3월, 73쪽.
60 「조선농회령」 제8조.
61 「조선농회령」 제6조.
62 『조선총독부관보』 제4078호, 1926년 3월 26일.
6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55쪽.
64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9 · 230 · 232쪽. 수원군 농회장은 1937년 12월 1일 조병두에게 5원 5전을 부과하고, 아산군농회 제1분구장인 온양면장은 1941년도 회원할(會員割) 30전과 지세할(地稅割) 14원 93전을 부과하였다. 수원군농회 분구장명의로 1949년에도 부과하였다.
65 「조선농회령 시행규칙」 제24조. 회원할은 평균 1인당 30전 이내이고, 지세할은 지세납부액의 100분의 7 이내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에도 회원할이 부과되었다.

구장인 온양면장은 1941년도 회원할 30전, 지세할 14원 93전을 동시에 수납하였다. 농회의 회비는 뒤의 〈표 12〉에서 보듯, 토지가 소재한 면에서 개인별로 징수하였다. 조씨가는 아산군 온양면, 수원군 매송면, 포천군 가산면, 포천군 군내면 등 지역별로 회원이 되어 회비를 각각 납부하였다. 모친인 홍사열도 별도로 부담하였다. 농회는 해방 후에도 존속했으며, 회원도 회비를 계속 납부하였다.

3) 일제의 체제 편입작업과 조씨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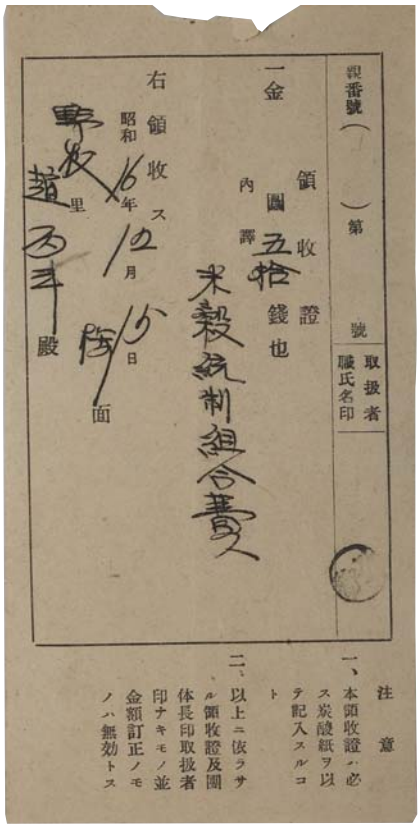
일제시기 조씨가의 사람들이 관직에 나간 흔적은 집안 문서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식민지 체제화 작업을 수행할 때, 대지주인 조씨가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었다. 조씨가는 일제가 조선 지배를 위해 조직한 관변단체에 가입하여 회비 납부 등을 하거나, 도로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병두를 일본적십자사 정사원으로 임명하는 수여장(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씨가가 가입한 첫 단체는 일본적십자사였다. 대한적십자사는 1904년 10월 27일 칙령 제47호로 규칙이 공포되고 창립되었지만,[67] 1909년 7월 23일 일본적십자사에 합병되었다.[68] 조씨가는 1915년 8월 21일 일본적십자사의 정사원이 되었다. 일본적십자사 총재 대훈위공(大勲位功) 2급 재인친왕(載仁親王), 일본적십자사사장 종2위 훈1등 자작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본사의 충애(忠愛)한 주지(主旨)에 협동하여 정관에 따라" 정사원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이후 조씨가는 일본적십자사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였다.[69]

6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9쪽. 수원군농회장은 1937년 12월 1일 조병두에게 5원 5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
67 『관보(대한제국)』 제3284호, 광무 9년 10월 31일.
68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Ⅷ, 1972, 373쪽.
69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48쪽. 1926년 회비 10원을 납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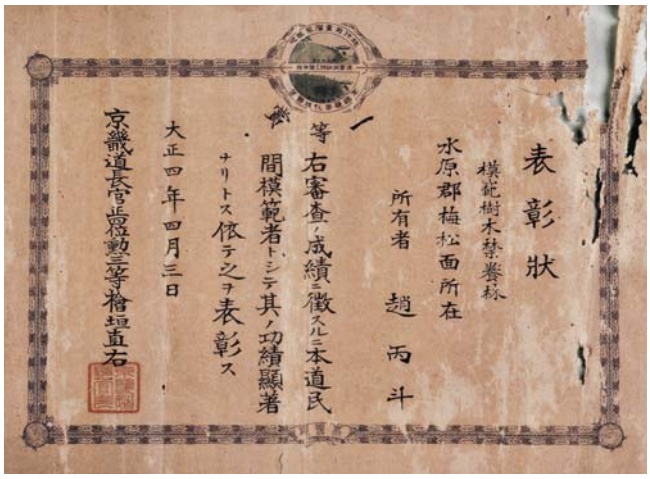
미곡통제조합비 영수증(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씨가는 여러 단체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존 자료에 보이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국부인회와 미곡통제조합에 가입한 것이다. 1935년 애국부인회의 연약금(年醵金)을 납부했으며,[70] 미곡통제조합에도 가입하였다. 이 조합은 1936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2호 「미곡자치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 법은 농업공황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미가 폭락사태가 발생하자 「미곡통제법」과 더불어 제정된 것이다.[71] 미곡통제조합은 미곡의 자치관리를 행할 목적으로 미곡 생산자, 미곡을 소작료로 받는 자, 명령으로 이에 준한다고 지정한 자 등이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72] 조합의 설립은 「미곡자치관리법 시행규칙」에 도장관의 인가사항으로 정하였다.[73] 조선에서는 1936년 하반기 이래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경성부에서는 1937년 1월 21일 경성 외 16개소에 미곡통제조합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씨가는 여기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였다.[74] 이외에도 법이나 행정적 강제력으로 여러 전시통제단체에 가입되어 회비를 납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지주인 조씨가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각종 단체뿐만 아니라 체제화 작업에 피동적으로 흡수되어 갔다. 가입은 강제적 의무였다.

둘째, 조씨가는 대산림지주로서 일제의 산림정책에 흡수 · 편승해 갔다. 특히 조림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 일은 임야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있었다. 일제가 임야 소유권 인정의 주요한 근거로 삼은 기준은 금양(禁養) 여부였으며, 그 연

70 고원섭 편, 『반민자죄상기(反民者罪狀記)』, 1949. 애국부인회 조선본부는 부인층을 전시체제에 동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동(洞) · 정(町)마다 세포를 구성하여 전쟁 수행을 위해 금품헌납, 출병 추장 등의 활동을 하였다.
71 일제하 전시농업 입법에 대하여는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경제』, 2008이 참고된다.
72 조선총독부, 「제1장 농업 제1관 미곡」, 『조선법령집람(하-1)』 제17집, 1940, 24~26쪽 참조.
73 조선총독부, 「미곡자치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1936년 9월 19일 공포), 『조선법령집람(하-1)』, 1940, 26~29쪽.
74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8쪽. 1941년 12월 15일 회비는 50전이었다.

장선에서 조림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조씨가가 여기에 적극 동참하여 모범수목금양림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75] 경기도장관은 1915년 4월 3일 조병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도민 가운데 조병두가 모범자로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한다고 했다.[76] 그의 공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금양은 선산 수호와 관련하여 조씨가가 구래로부터 실시해 온 오랜 전통이기도 했다. 종전 조씨의 묘촌 건설과 유지작업, 서원후록을 둘러싼 산송 등이 그것이다.[77]


表彰狀
模範樹木禁養林
水原郡梅松面所在
所有者 趙丙斗
一 等
右審査ノ成績ニ徴スルニ本道民間模範者トシテ其ノ功績顯著ナリトス依テ之ヲ表彰ス
大正四年四月三日
京畿道長官 男爵 三等 稻垣重右

모범수목금양림사업 모범자 표창장(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씨가는 일제의 산림정책에 호응하여 조림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집안 문서의 묘목대금 지출 영수증을 통해 실상을 엿볼 수 있다. 1920년 지세계산서에 1919년 묘목대금 4원 50전, 1920년 묘목대금 9엔 25전이 기록되어 있다.[78] 추수기에도 묘목대금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는 조림사업을 개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었다. 산림 소유주가 조림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조직을 마련하였다. 일제 초기에는 삼림(보호)조합을 설립하여 사유림 소유자와 불요존 국유림 대부자를 강제로 가입시켜 조림사업과 금벌(禁伐)사업을 추진하였다.[79] 조합 가입은 명목상 자유였지만, 군수가 조합장이 되어 가입을 강제하였다. 이는 지주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일본과 대비되었다.

회원에게는 조합비를 부과하였다. 1926년 4월 1일 모리카와(森川源八) 수원군삼림보호조합장은 조씨가에 1926년도 조합비 9원 60전을 면사무소에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영수증은 면장이 면지부장 명의로 발행하였다.[80] 면이 조합비 징수책임을 맡은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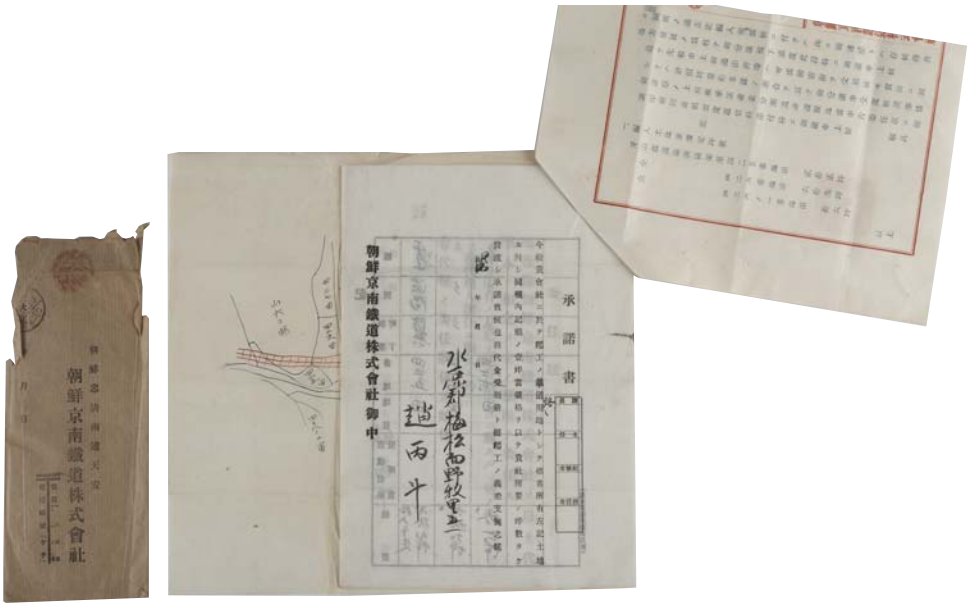
75 강정원, 「한말 일제초기 산림정책과 소유권정리」, 『지역과 역사』 16, 2005.
7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47쪽.
77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화성시의 고문헌 1), 2006, 67~70쪽.
78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7쪽.
79 최병택,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정책』, 2009, 92쪽. 일본에서는 1911년 「삼림조합 설치장려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조합은 자치조직인데,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80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2쪽.

같이 삼림조합은 관제조합의 성격을 지녔으며, 조합비는 일종의 조세적 성격을 지녔다.[81] 1930년대 초 온양군 방축면의 산림에도 조합비 4.39엔을 부과하였다. 이곳 산림 13정 4반 4무에 심을 올리나무 1,000주의 묘목대금 9.30엔도 부과하였다.[82] 조림사업은 묘목과 식목의 강제성을 기반으로 조합에서 주관하였다. 면에서도 공동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1924년 매송면장 정인달은 공동구입 묘목대금 7원 50전을 면사무소에 납부하라는 납입 고지서와 영수증을 조병두에게 보냈다.[83]

일제는 1924년 임야조사사업을 끝내면서 조합 단위로 추진된 산림정책을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더 강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과실 없는' 조합비 부담이 증가하자 지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산림조합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때로는 폭력화되기도 했다. 일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림조합령」을 제정하여 조합을 법제화하는 방안과 조합비를 임야세로 전환하여 세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후자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1932년 11월 조선총독부령 제15호 「도제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조합을 폐지하고 모든 업무를 도(道)로 이관하고 임야세를 부과하도록 했다.[84] 임야세는 조합비 부과에서 나타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임야에 대한 사업 능력을 가진 삼림 자본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조치였다.[85]

경기도에서는 이 부령에 근거하여 1933년 4월 21일 「임야세부과규칙」을 제정하였다.[86] 임야세는 임야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시 등급마다 상 · 중 · 하 세 단계로 나누어 세율을 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에 세를 부과하였다. 조씨가는 1937년에는 6원 73전을 납부하였다. 해방 후에도 1946년에 63원, 1950년에 433원이 부과되었다. 1952년도 임야세는 경기도에 4,400원, 면에 4,400원 도합 8,800원을 납부하였다. 명목상 세액이 계속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액을 인상했지만, 조씨가는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세를 부담하면서 금양을 계속하였다.[87] 소유에 따른 실수익이 세부담을 넘을 만큼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가로서의 체모 유지, 땔나무 등을 통한 농민 지배만으로도 소유가치는 충분했을 것이다. 실질적인 임야의 가치도 갈수록 증대하였다. 해방 후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씨가는 안정적으로 대산림을 소유

81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3쪽. 수원군삼림보호조합장은 조병두에게 임길대(林吉代) 1원 10전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다.
82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8쪽.
8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7쪽.
84 정태헌, 「도세입-도정의 구성추이를 통해 본 식민지 도재정의 성격」, 『한국사학보』 15, 2003.
85 최병택,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 푸른역사, 2009, 125쪽.
86 『조선총독부관보』 제1896호, 1933년 5월 9일.
87 「1946년 4월 22일 수묘대금 영수증」,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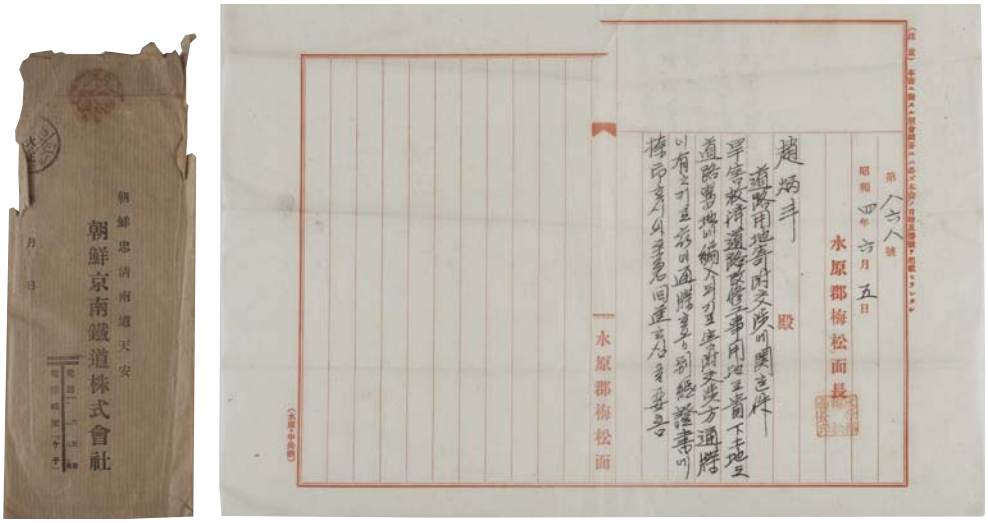
승낙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가 기공하는 철도용지에 포함된 토지를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승낙하는 문서이다.

하게 되었다. 이후 근대화 ·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이 전진됨에 따라 산림을 통해 부를 확대 재생산시킬 가능성은 더 커져 갔다.

또한 조씨가는 대지주로 소유한 토지 때문에 일제의 도로확충정책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법으로 정한 '공공성'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무상 또는 헐값으로 기부받을 수 있도록 강점하자마자 「조선토지수용령」을 제정한 바 있다.[88] 토지를 수용할 경우 관에서 정한 보상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무상기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에 토지 기부를 요구한 곳은 조선총독부와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였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로용지로 기부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자료에 보이는 첫 사례는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가 1928년 2월에 아산군 온양면 방축리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수용을 강제한 경우였다. 이 회사가 방축리의 "수중 누각 부근에 시행되는 회유도로용지(回遊道路用地)로 토지를 편입할 예정이니 지방 발전을 위해 수용을 승낙해 달라."는 공문을 승낙서, 위임장과 함께 조씨가에 보냈다. 수용내용을 보면 산야(山野)는 가능한 기부를 받고, 전(田)은 평당 15전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했

88 조선총독부, 『조선법령집람(상-2)』 제11집, 1940, 1쪽.



도로용지기부교섭에 관한 공문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병두의 토지가 한해구제(旱害救濟)를 위한 도로 개수공사용지로 편입되었으니 기부하라는 내용이다.

다.[89]

두 번째 사례는 파주군 탄현면장이 1929년 3월 16일 조씨가에 도로 범입지로 기부를 승낙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경우였다. 3월 20일 도로공사를 기공할 예정인데, 사업 진행상 "그날까지 기부승낙서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90] 반강제적 조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수원군 매송면에서 1929년 6월 5일 조씨가에 보낸 공문이다. 그집의 토지가 한해구제(旱害救濟)를 위한 도로 개수공사용지로 편입되었으니 기부하라는 「도로용지기부(道路用地寄附)」 공문을 보냈다. 동봉한 증서에 날인하여 회송해 달라는 내용이었다.[91]

이렇듯 토지 수용은 반강제로 시행되었다. 위의 경우는 어쨌든 공식적 절차를 거쳤으나 집안소장문서에 공식문서는 없는데 추수기에 도로로 편입된 기록이 있었다. 1940년대 추수기에는 신작로에 편입되어 면적 감소로 추수할 때 소작료를 감해 준 필지가 있었다. 신작로 편입으로 토지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이 같은 경우 헐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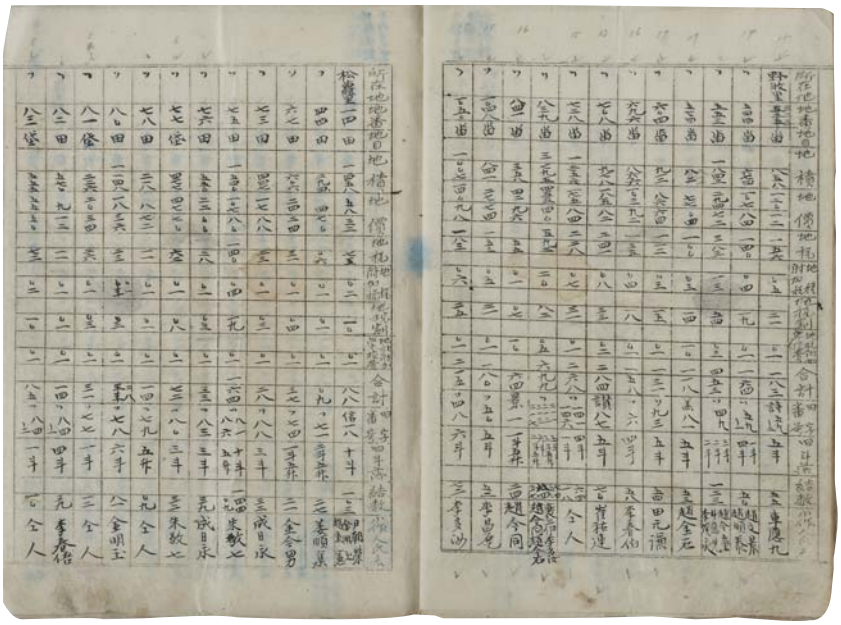
89 「승낙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19~320쪽. 분할과 비과세지성 신고를 위한 위임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용토지는 방축리 425번지 전 22평, 26번지 전 69평, 26-1번지 전 16평 합 107평이었다. 조병두는 위의 서류를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에 1928년 2월 26일 제출하였다.
90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97쪽.
91 「도로용지기부교섭」,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17쪽.

나 무상기증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도로 확장으로 조씨가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여 가치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로 편입이 소유토지의 축소는 물론 지대 감소에 따른 지주수입 감소로 나타났다. 조씨가는 일제의 토지 수용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3. 농업 경영과 수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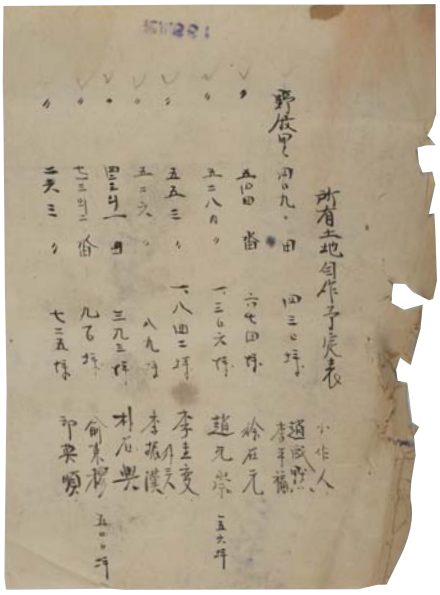
1) 농업 경영과 회계 처리

조씨가의 농업 경영은 전통적으로 지주 경영을 위주로 하면서 자작을 겸하는 방식이었으며, 자작지는 주로 집 주변의 밭이었다. 일부 자작지는 고정 경작하기도 했지만, 자작지와 소작지는 지주 경영의 여건에 따라 교체 경작하기도 했다. 자작지는 야목리의 집 주변 토지였으며, 집사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92] 자작지를 필지별로 일일이 표기한 장부는



『대정 8년 1월 지세수납부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92 야목리 송라리 추수기에는 마름이 표기되지 않았고, 결산도 없다.



소유토지자작예정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대정 8년 1월 지세수납부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였다. 여기에 표기된 자작지는 모두 전이며, 7필지 12.1두락이었다. 소작지를 자작지로 변경할 때는 '자작예정표'를 작성하였다. 작성일이 표기되지 않은 이 집의 자작예정표는 8필지 12명이 경작하던 소작지를 자작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하였다.[93] 추수기의 '소작인' 란에 자작이라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1931~1933년 야목리 추수기에 374번지 답 5두락 1,073평이 자작으로 표기되었으며, 수확량은 12~15석가량이었다. 1934년 다시 소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 7석 남짓 소작료를 거두었고 반타작제였다.[94] 1933년 추수기에도 야목리 전 3필지가 자작으로 표기되었는데, 추수기에 표기된 자작지는 이 정도였다. 조씨가의 추수기에 일반적으로 자작지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의 지주 경영은 전통적으로 마름제 방식의 경영을 해 왔으며, 일제시기에도 이를 유지하였다. 구래의 양반지주들은 부재지주일 경우 자기 소유지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통·통신 등의 문제도 있지만, 지적도 없이 결부제와 사표를 근간으로 작성된 양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전근대의 토지관리시스템에서 토지관리는 그곳을 잘 아는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마름제 경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을 마름으로 선정하여 전적으로 경영을 맡긴 것이다. 지주가 순조롭게 부재지주로서 토지를 경영하려면 마름 관리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때로는 관권의 도움도 필요하였다.

조씨가의 입장에서 온양 소재의 토지는 부재지주적 관계에 있었으며, 마름제적 경영방식으로 계속 지주 경영을 해 왔다.[95] 조씨가에서 마름은 지주 경영에서 필수조건이었다. 이를 위해 마름의 지위 유지에 애쓰는 모습을 다음 예에서 잘 볼 수 있었다. 온양읍에 거

9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7쪽.
94 〈표 3〉의 야목리 추수기 참조.
95 일제는 사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주는 실수납보다 소액인 것을 알아도 마름을 질책하는 것은 대인의 풍이 아니라고 묵과하는 풍습이 있다고 조사 보고하였다(酒井政之助, 『水原』, 1923, 40쪽).

주하는 남철원가의 수노(首奴) 순건이란 자가 조씨가의 마름이었다. 그가 집안문제로 구금되어 사회활동이 어렵게 되자, 그 여파로 조씨가의 농장 경영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조씨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에 탄원하여 구속을 풀어 주고 순건을 계속 마름으로 삼아 지주 경영을 했다. 지주 경영에서 마름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관권을 동원하면서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 것이 그 징표이다.[96]

양반적 · 정태적 경영을 하는 조씨가는 영농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마름에게 경영 일체를 위임하였다. 지주(소유)-마름(관리)-소작인(경작)의 구조였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인과 지대 관리가 주요 임무였지만, 소작인의 영농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제의 농정, 즉 농사 개량정책에 반대하여 저항한 것도 아니었다. 추수기는 수동적이지만 점차 참여 수준을 높여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추수기는 마름이 농사 경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리하며 결산한 내용을 기록하여 지주에 제출한 장부이다. 지주 경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마름은 추수기에 조씨가를 '조대구댁'으로 표기하였다. 1893년 이후 문서는 대부분 그렇게 표기되었다. 그 이전에는 조승지댁이라는 명칭 뒤에 석준, 장룡, 성채 등 노명을 부쳤다. 호명은 택호+노명이었다. 여기에 기록된 노는 집안일을 돌보던 수노(首奴)였다. 1894년 신분제가 법적으로 해체된 지 10년이 지난 1904년에도 노명을 호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적법」 시행 이후에는 호명을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1920년대 말 이후의 추수기에도 노명은 없고 '조대구댁'이라고만 표기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조판서댁'으로 표기한 행목리 추수기도 있다. 조씨가의 추수기는 대부분 '추수기'라 명명했지만 '도조기'라고 쓴 경우도 있었는데〈표 3〉, 밭의 경우 지대가 도조였기 때문에 도조기라 불렀다. 일반적으로는 추수기라는 제목에 답과 전의 추수 상황을 함께 기록하였다.

조씨가의 추수기 표지의 제목은 "○○년 수원군 매송면 야목리 추수기, 조대구댁 ○○음 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고일은 추수가 끝난 후였지만, 약간의 편차는 있었다. 대부분 음력 9월이고, 8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 작성하기도 했다.[97] 추수기 작성의 지역 단위는 야목리 · 송라리 · 행목리 · 방축리 등 리 단위였다. 매송면의 야목리와 송라리의 추수기는 한 책에 리별로 작성하였다. 같은 해 동일지역의 추수기를 한 벌 더 작성하여 2책인 경우도 있었다. 1937년 제3종 소득세제에 따라 추수 상황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한 벌 더 작성한 것이다. 작성방식은 논과 밭을 따로 작성했으며, 대지는 밭과 함께 작성

96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55쪽.
97 『포천 갑술년 추수기』는 11월에 작성하여 조씨가에 보고한 것이다.

〈표 3〉 조씨가의 현존 추수기 일람

지역		작성 연월일		제목	해당 지목
아산군 온양읍	방축리	1930	9월 20일	추수기	전답
	방축리	1931	9월 20일	추수기	답
	방축리	1938	8월	추수기	답
	방축리	1943		추수기	답
	행목리	1928	추(秋)	추수기	전답
	행목리	1930	9월 10일	추수기	전답
수원군 매송면	야목리	1933	10월 4일	도조기	전(야목, 송라리)
	야목리	1933	8월 20일	추수기	답(야목리)
	야목리	1934	8월 25일	추수기	답전
	야목리	1935	9월	추수기	답전
	야목리	1937	9월	추수기	답전(2권)
	야목리	1938	8월 30일	추수기	답전
	야목리	1938	9월 20일	추수기	답전
	야목리	1941	10월 6일	추수기	답전
	야목리	1942	9월 9일	추수기	답전
	야목리	1944	9월 20일	추수기	답
	송라리	1929	양 1월	추수기	답
	송라리	1929		도조기	전
	야목, 송라리	1931	8월	추수기	답
	야목리	1932			전(야목, 송라리)
	야목리	1932	9월	추수기	답(야목, 송라리)
	야목리	1940	9월 29일	추수기	답전(야목, 송라리)
포천군		갑술		추수기	전답

하였다. 논은 소작인이 같은 필지를 한군데로 모아 작성하고, 밭과 대지는 소작인별로 합쳐 작성하고 끝에 합계를 기록하였다.

추수기의 작성은 필지별로 하고, 그 내용은 지번 · 지목 · 지적 · 소작료 · 소작인 등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각 필지의 맨 위에 리명을 기록하고, 다음에 지번을 기록하였다. 지번상의 필지와 경작상의 필지가 동일할 경우는 지번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방식이 달랐다. 『토지대장』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경작할 경우에는 경작 필지별로 등록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 지목과 소유자가 같을 때 여러 경작필지를 한 필지로 하여 지번을 부쳤기 때문에 한 필지의 면적이 대단히 넓었다. 하지만 실제 경작에서는 본래대로 경작한 관계로 그대로 등록한 것이다. 이 필지는 행정적으로는 분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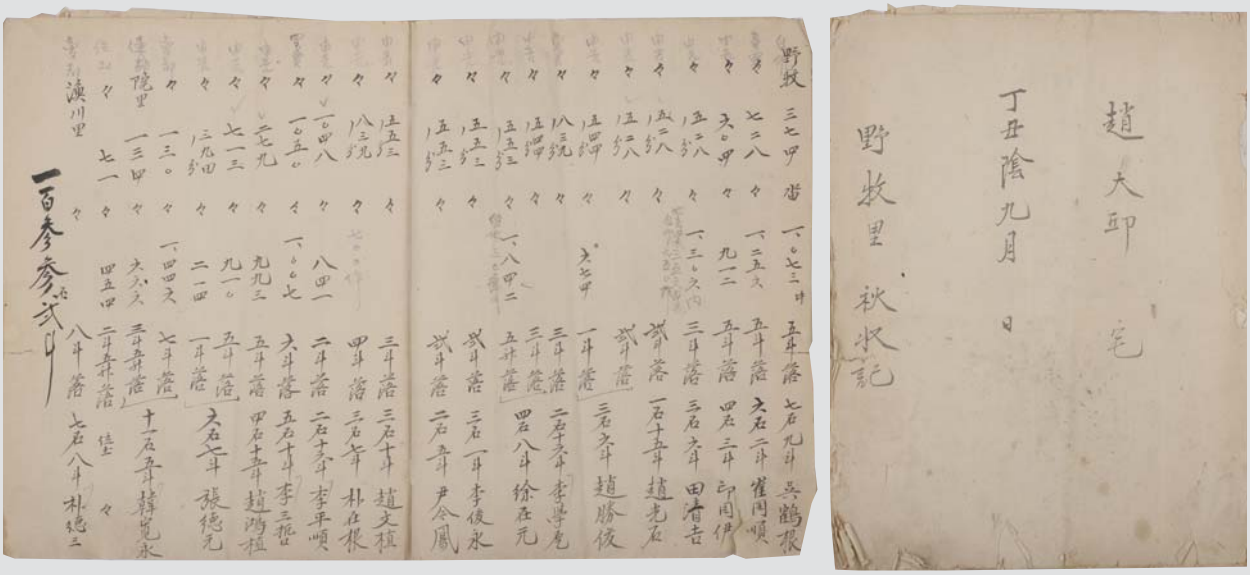
'○○(지번)의 분(分)' 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개간지는 지번 없이 '신기' 라 기록하거나 이웃 토지의 지번을 기록하고 그 옆에 신기라 표기하였다. '○○(지번)전접속신기(田接續新起)의 형식이었다.[98] 송라리 추수기는 다른 리와 기록방식이 달랐다. 지번 대신 후곡(後谷), 거음평(巨音坪), 천변답(川邊畓), 석답(石畓), 은곡(銀谷), 내외린치(內外鱗峙), 오리곡(梧里谷), 공세답(貢稅畓), 적비후곡(的比後谷) 등과 같은 평명(坪名)을 기록하였다.[99] 구래의 관습대로 기록한 것이다.

다음 칸에는 지적을 기록하였다. 단위는 평과 두락이었다. 임의 분할하여 경작한 필지는 분할 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수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 아래에는 답 · 전 · 대 · 대전(垈田) 등 지목을 기록하였다. 다른 집 추수기와 달리 대전, 즉 텃밭을 별도의 지목으로 표기하고 소작료를 받았다. 간혹 열수(裂數 : 배미)를 기록하기도 했다.[100] 다음은 소작료를 기록하였다. 징수방법에 따라 도조와 타조로 분류하였다. 타조는 속수(束數)와 석두승(石斗升)을 기록하고, 도조는 석두승만 기록하였다. 그리고 야목리 · 송라리의 밭 가운데 지세를 담당한 밭의 필지에는 '지세(地稅)' 또는 '단(但) 지세(地稅)' 등을 표기하였다. 맨 아래에는 소작인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추수기의 기본형이다. 이 외에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추수기의 상 · 하단이나 해당 항목 옆에 부기하였다. 예를 들면, 리명 위에 종급, 반종 등 종자 지급방식이나 소득세 신고 여부를 표기한 '신고' 등을, 소작료 항목 옆에 지급품종이나 미수 소작료액 등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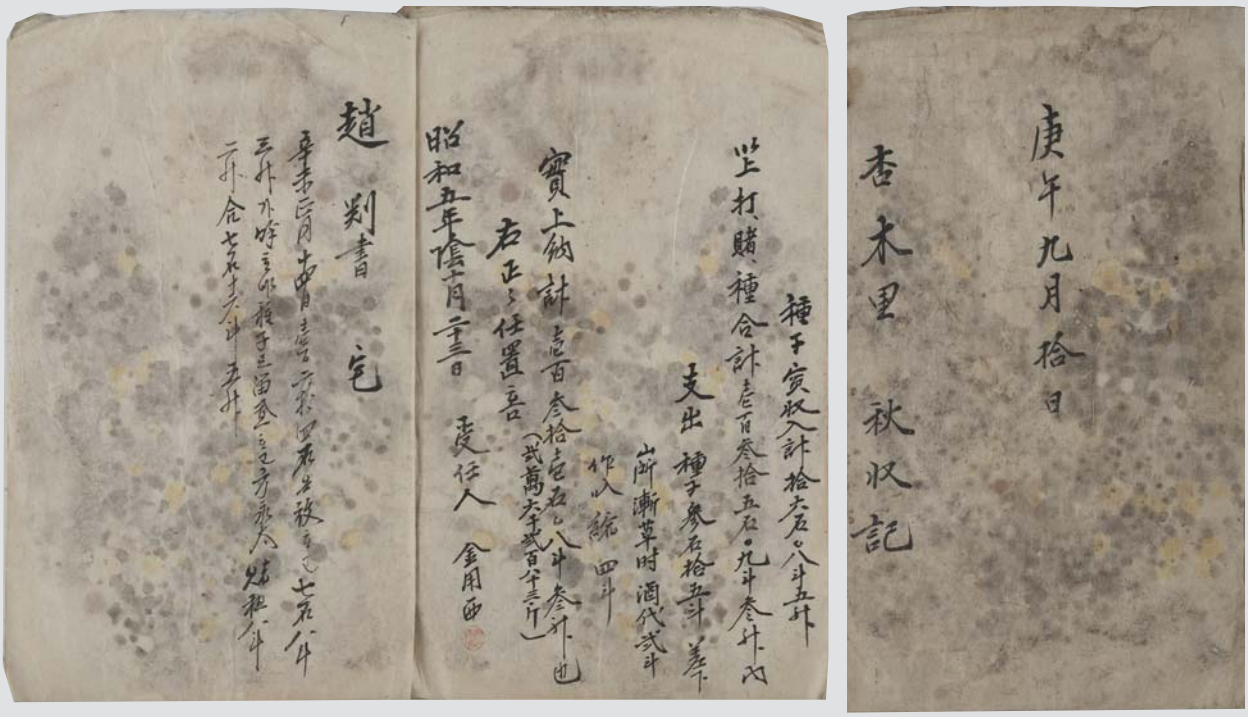
다음은 추수기에 나타난 지주 경영 내용을 보자. 먼저 추수기 맨 앞장에 기록한 지대 이외의 수입이다. 『임신(壬申 : 1932년) 9월 일 야목리 추수기』에는 우도(牛賭), 장리(長利), 대조(貸條), 전도조(前賭租)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우도는 소를 빌려 주고 받은 수입이며, 대조는 장리 이외에 빌려 준 곡식으로 보인다. 전도조는 전년도 미납분을 기록한 것이다. 『갑술(甲戌 : 1934년) 음8월 25일 야목리 추수기』에는 맨 앞에 영조기(零條記) · 대조기(貸條記)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추수기 맨 뒤에는 마름이 지주에게 보고한 결산내용을 기록하였다. 추수기 기록으로 본 마름의 임무는 장리와 종자의 수급관리, 지대의 수납 · 보관 · 방매, 결산보고 등이었다. 영농 과정은 소작인에 맡기고, 지주나 마름은 간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주 경영의 관리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첫째, 야목리와 송라리 등 거주지 인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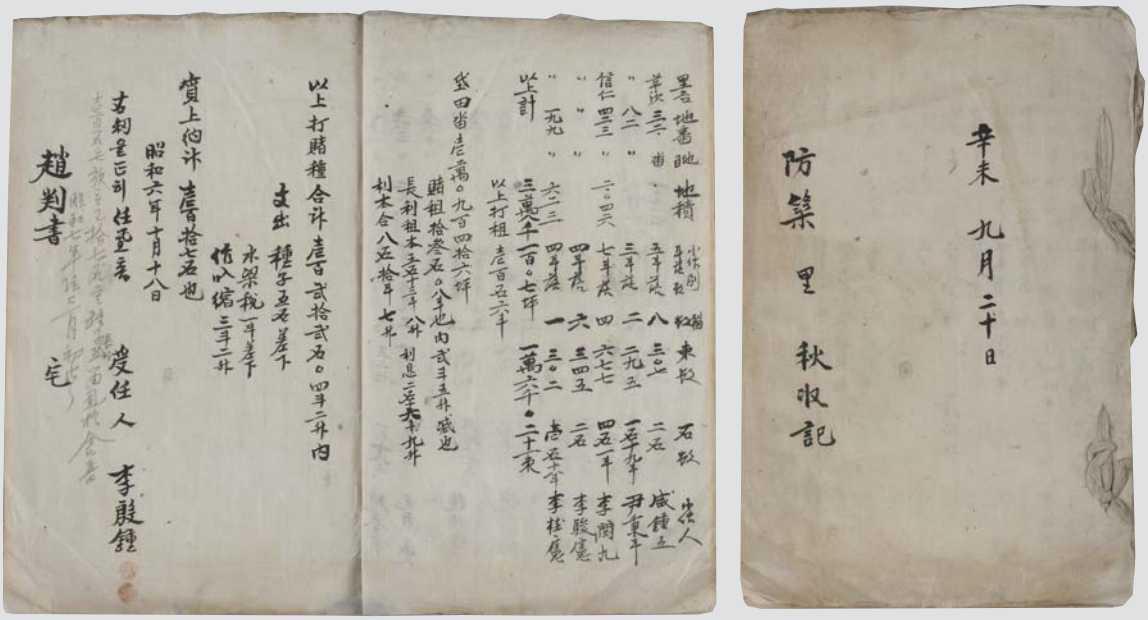
98 『무인 8월 30일 서(書) 조대구댁 수원군 매송면 야목리 추수기』.
99 『기사년 양 월1일 송라리 추수기』.
100 『경오 9월 20일 방축리 추수기』.



『정축 음9월 야목리 추수기』(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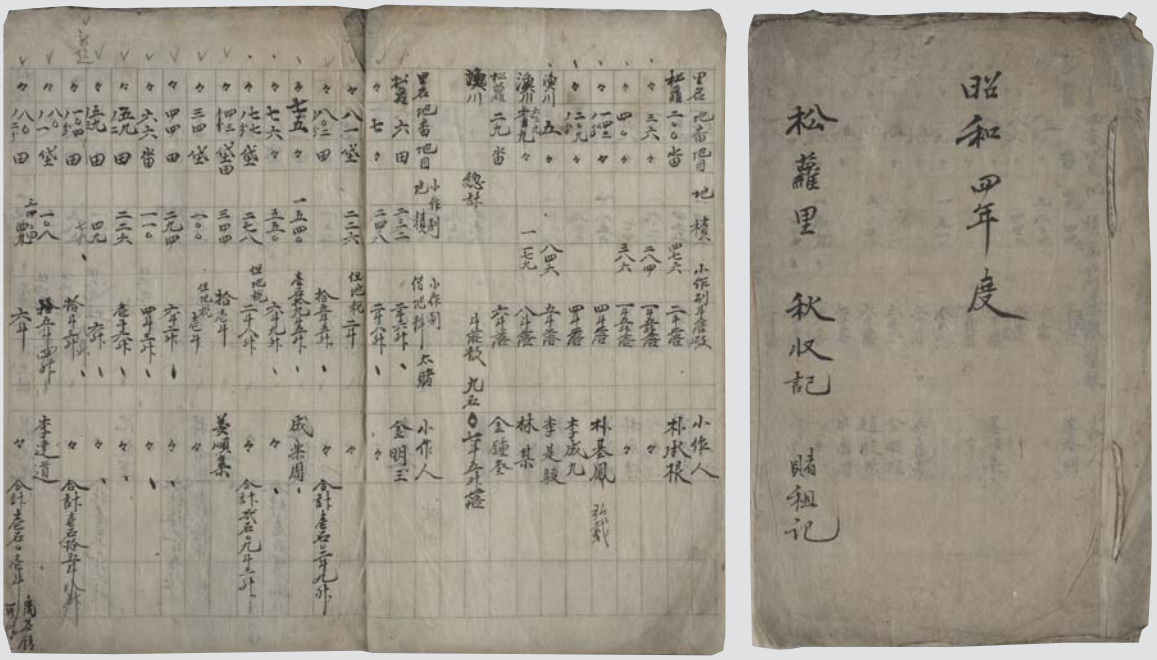
『경오 9월 행목리 추수기』(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辛未 九月二十日

防築 里 秋收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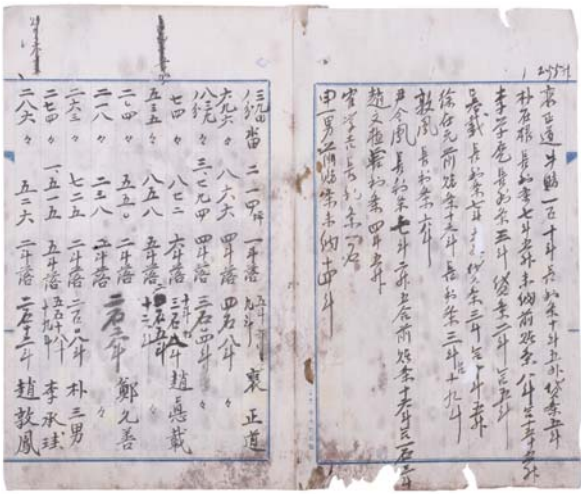
『신미 9월 방축리 추수기』(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昭和四年度

松蘿里 秋收記 賭租記

『소화 4년도 송라리 추수기 도조기』(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임신년 야목리 추수기』의 지대 이외 수입 내용(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우조, 장리, 대조 등의 용어가 보인다.

지는 수노(首奴)나 집사(執事)를 두고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101] 이곳 추수기에는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인의 기록은 보이지 않았으며, 결산 내역도 없었다. 집사를 두고 직할 관리하였기 때문에 추수 상황을 따로 결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씨가는 포천군의 군내면 직두리 · 하성북리 · 상성북리, 그리고 가산면 마전리 · 우금리 등지에도 경지를 소유하였다.[102] 산지가 많은 포천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듯 전이 압도적이었다. 이곳 토지는 조병두의 처가와 관련된 재산으로 결혼과 함께 조씨가에 편입된 토지로 보인다.[103] 이곳은 관리인을 두고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셋째, 온양의 방축리와 행목리에 소재한 농장은 마름에게 농업 경영을 맡겼다. 마름은 지주 경영지는 물론 위토(位土)와 위전(位田)도 관리하였다.[104] 이 토지는 조상숭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추수기에는 마름의 관리비로 지급한 사경(私耕)이 있었다. 이것은 지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마름에게 사경 이외의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소작지 분배에서 특혜를 주었다. 방축리의 마름 이은종은 26두락 9,000평가량 소작했으며, 위답 3두락을 경작하고, 사경 2두락을 보수로 받았다.[105] 1943년에는 이해룡으로 바뀌었는데 대를 이어 마름을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답에서 25석 18두를 소작료로 납부했으며, 4,000평가량의 전을 소작하였다. 위답은 7두락, 사경답은 2두락이었다.[106] 마름에 밭 300평, 대지 265평을 대여하여 산

101 야목리 추수기에는 마름의 전, 대, 답 등이 없었다. 즉 야목리와 송라리에는 마름이 없었다. 예전에는 수노(首奴)가 담당했다가 이때 집사(執事)가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야목리 추수기의 맨 앞에 기록된 배정도가 이 일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02 『포천 갑술년 추수기 조대구댁』 자료가 한 해분만 남아 있어 그 변동은 알 수가 없다.

10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9쪽.

104 여러 대의 묘가 위치한 선산이 소재한 지역적 위치에 비해 추수기의 위토 비중이 적은 편이다. 별도 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5 『무인(1938) 음8월 일 추수기(방축리)』.

106 『소화 18년도 계미세(癸未歲) 추수기』.

소 수호자인 송평국에게 소작시키기도 했다. 행목리의 마름 김용서는 사경 2두락 이외에 이은종처럼 많은 소작지를 대여받았다. 사음대(舍音垈)와 사음전(舍音田)은 별도로 지급받았으며,[107] 위답은 3두락(2필지)이었다.

이에 반하여 소작인의 경작규모는 대단히 적었다〈표 4〉. 특히 수원군 야목리의 소작규모가 가장 적었다. 소작인은 줄곧 50명 남짓을 유지하였는데,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자가 75% 내외이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500평 미만을 경작하였다. 이웃의 송라리는 소작인이 28명 정도였는데, 절반이 1,000평 미만이었다. 야목리보다 소유규모는 적지만, 1정보 이상 차경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산군 행목리와 방축리의 소작인수는 각리 30여 명씩 70명가량 된다. 이 중 1,000평 미만이 50% 미만으로 야목리에 비해 비중이 적다. 그 이상의 규모를 차경하는 자의 비중이 높았다. 조씨가 거주지 부근에 사는 소작인의 차경규모가 적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작인의 차경규모가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조

〈표 4〉 매송면 소작인 경작규모별 인원수[108]

리명	연도	경작규모별 인원수(명)						비율(%)	
		500평 미만	500~1,000평	1,000~1,500평	1,500~3,000평	3,000평 이상	계	500평 미만	500~1,000평
수원군 야목리	1919	23	14	4	4	2	47	49	30
	1932	29	13	5	6	3	56	52	23
	1933	27	13	6	7	1	54	50	24
	1934	24	12	7	8	1	52	46	23
	1935	26	11	5	9	1	52	50	21
	1937	28	16	4	8	2	58	48	28
	1938	29	13	6	8	2	58	50	22
	1940	27	12	5	7	3	54	50	22
	1941	27	12	5	7	3	54	50	22
	1942	27	13	5	9	1	55	49	24
수원군 송라리	1919	7	6	3	8	4	28	25	21
	1929	9	3	1	6	5	24	38	13
	1934	10	6	2	6	4	28	36	21
아산군 행목리·방축리	1929	11	10	4	6	4	35	31	29
	1930	16	21	17	19	3	76	21	28
	1931	5	13	16	2	1	37	14	35
	1943	5	6	12	6	2	31	16	19

107 『무술년(1928) 추(秋) 행목리 추수기』.

108 1정보 이상 경작자는 송라리에 이춘명 · 한동수 · 강순칠 외 2명과 강순겸 · 강홍선 · 주경칠 · 김명옥 · 이성오 · 조동헌 · 성낙주 · 조은묵, 야목리에 배정도 · 회학길 · 조동식 · 조적제, 행목리 방축리에 김용서 · 강명서 · 김만이다.

씨가의 거주지 부근 농민들이 직영지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요인도 야목리는 차경규모 축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천의 지주 경영방식도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토지규모는 답 23필지 전 42필지 총 79필지였다. 1934년 17필지 12명이 교체되었다. 비교적 많은 토지를 빌린 자는 조경천과 유기남이다. 조경천은 전 5필지, 답 2필지 총 2,840평, 유기남은 답 4필지, 전대는 각각 1필지로 1,898평이었다. 소작규모는 적은 편이었다. 포천군 추수기에 지주명은 조대구댁으로 기록되었다. 종자는 지주가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포천 지역도 다른 지모에 비해 대지가 총 14필지로 많은 편이었다. 7명은 대지만 대여해 주고, 5명에게는 전 1필지와 함께, 1명에게는 대 2필지를, 다른 1명에게는 답 1필지와 함께 빌려 주었다. 대지는 조씨가의 지주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하였다.

조씨가 차경지의 특징은 다른 지주가에 비해 소작인별 차경규모가 적은 반면, 마름의 몫이 많았다. 지목에서는 답보다 전과 대의 비중이 높으나, 다른 지주가에 비해 답의 비중이 낮아, 그만큼 미곡상품화의 비중이 적다. 이는 자급자족적 경제, 그리고 정착성이 높다는 반증이며, 양반지주 경영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인다.

다음은 소작료(지대)를 살펴보자. 추수기에는 각 필지마다 수납액(소작료)이 기록되었다. 지대로 논은 타조로 조(租)=벼로 받았으며, 밭은 도조로 태도(太賭)=태(太), 백태(白太) 또는 수임(水荏), 임자(荏子) 등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09] 때로는 도조를 정조(正租)로 받기도 했다. 아산군 방축리와 행목리의 도조 수입액은 13석 8두와 20석 남짓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조는 풍흉에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확이 감소하여 미납한 필지가 늘 존재하였다. 미수는 다음 해 이자를 포함해 받기도 했지만, 완전히 감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지대를 납부하기 전에 소작료 한도 안에서 베어 먹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110] 때로는 작인이 도망가서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111] 하지만 도조는 이러한 손실분을 감안하여 책정했는지 매년 수입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타조는 병작반수제 방식이기 때문에 미납액은 없었지만, 지대수입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야목리의 수입은 110석 내외였는데 1940년은 수해로 반감하여 51석 12두, 전은 27석 6두 9승이었다. 전시체제기인 1940년과 1942년에는 이곳 토지가 신작로

109 『무진년(1928) 행목리 추수기』.
110 '선식(先食)' 이 그것인데, 선식은 매송면 타조의 경우에 가끔 보였다.
111 『경오(1930년) 행목리 추수기』에는 도망 2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作人이 逃亡 永爲未捧"와 "半部作人이 永爲逃走"라고 표기되었다. 이곳은 마름이 관리하던 경작지였다.

로 편입되어 지대 감소를 보였다〈표 8〉.

다음은 농사 개량과 관련한 종자 지급과 품종 개량 문제를 살펴보자. 추수기에는 소작농민에게 지급한 벼품종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제는 미곡 생산량의 증대와 상품화를 겨냥한 품종 개량을 위해 권업모범장과 농사시험장을 설치하고 품종 개량에 나섰으며, 그 효과가 조씨가에도 미치고 있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보급을 시도한 품종은 조신력(早神力), 곡량도, 다마금(多摩錦) 등 3품종이었다.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수확 품종으로 선정한 것이다.[112] 조선총독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각지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농회 · 지주회 등 각종 단체도 자체 채종답을 설치하였다. 일본인 대지주는 농장에 시험장을, 종자회사는 채종답을 만들어 개량품종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수원군에서도 여러 곳에 793단(段)가량의 채종답을 설치하였다. 수원의 동산농장에서는 주로 조신력을 재배하였다. 이어 1913년 다마금, 1914년 석백과 애국(愛國) 등을 재배하였다. 64정 84무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신력 다음으로 애국의 비중이 높았다.[113] 은방주는 1920년대 재배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주요 품종이 되었다.[114]

조씨가가 품종 개량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였는지를 알려 주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1930년대 초반에는 그 흔적이 일부 보였다. 품종 개량은 조선총독부가 정책적으로 시도한 것이지만, 미곡의 상품화는 지주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씨가도 개량품종 재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1932년 야목리 추수기에는 조도(早稻), 점도(粘稻) 등만 기록하고 품종 표기는 없었다. 개량품종명은 1934년 야목리 도조기에 애국종, 신력(神力), 은방조, 다마금 등이 보였는데, 이때는 종자별 합계만 적었다. 하지만 1938년 이후에는 필지별로 종자 지급 여부와 액수를 기록하고, 수확기에는 품종도 기록하였다. 방축리에서 수확한 벼는 다마금 70가마, 곡량도 70가마, 은방주 167가마였다. 은방주가 56%, 나머지는 각각 22%였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추수기에는 각 필지마다 품종명을 기록하여 개량품종의 재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1940년대 이후의 추수기에는 품종기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기 토지에 알맞은 품종으로 개량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품종 개량은 종자 지급과 연계된 일이었다. 조씨가가 언제부터 작인에게 종자

112 飯沼二郎, 『朝鮮總督府の米穀檢查制度』, 1993, 82~137쪽.
113 大橋淸三郎 외, 『朝鮮産業指針(上)』, 1915, 11쪽.
114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기1)-수원군』, 1929, 66쪽; 飯沼二郎, 『朝鮮總督府の米穀檢查制度』, 1993, 96~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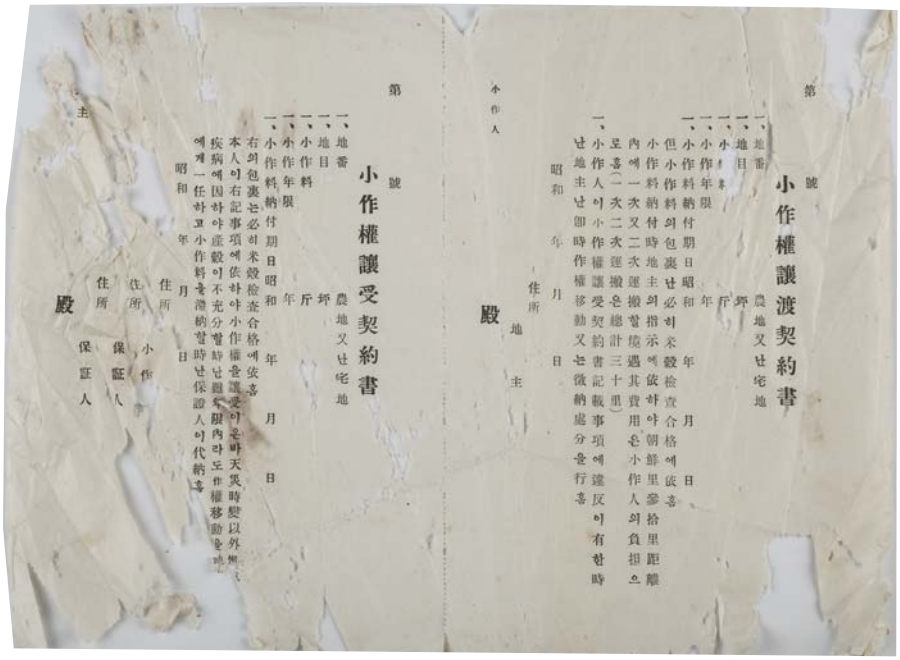
를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추수기에는 지대 수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다(〈표 5〉 〈표 6〉). 조씨가는 봄에 『야목리 종자 분급기』를 작성하여 작인에게 종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115] 연대미상의 이 자료에는 총 113두락 20명의 소작인에게 62두 5승의 종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씨가는 종자의 작인 부담원칙에 따라 다음 세 방식을 적용하였다. 작인이 마련하는 경우와 지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만 지급하는 반종과 전부 지급하는 외종의 두 방식이 있었다. 지급방식은 작인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종자는 무상이 아니라 추수할 때 50%의 이식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했다. 1938년 추수기에는 총 6석 5두락을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 5석 9두 5승락은 반종, 18두 5승락은 외종으로 도합 3석 13두 5승이었다. 어천리 같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종자는 벼농사의 경우에만 지급하고, 밭농사에서는 작인이 자유의사로 종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밭에서는 소작인이 무엇을 경작하든 정액도조제로 계약한 작물을 지대로 납부하였다. 송라리 추수기에는 소작인별로 장리와 종자를 표기하였다. 종자는 "반종 ○두"라는 표현에서 보듯, 반씩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116] 지급시기는 3월 10일 부터 23일 사이였다. 장리도 함께 기록했는데, 총 6명에게 지급하였다.

조씨가에서는 농사 개량의 일환으로 시비를 위한 비료를 소작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비료대분급기(肥料代分給記)』를 작성하였다. 현존 분급기의 작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김대현 외 33명에게 1,847근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17] 비료 자급 시절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1930년대 화학비료가 보급되면서 지주가 일괄 구입하여 소작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비료대적 지주로 전화해 가는 성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118]

포천군 지역도 지대는 전은 도조, 논은 타조로 수납하였다. 초가(草價)도 반분 환산하여 받았다.[119] 수납 비용으로 관리보수비(4석), 두량(斗量) 비용(1석), 두량 시 소모량(8두) 등을 제하였다.[120] 관리인 이직열은 관리대가로는 4석의 보수를 받았다.[121] 관리인은 조씨가에 두 번 결산 보고를 했다. 수확기인 11월 12일에 수납 상황과 보관수량을 보고하고, 다

11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7쪽.
116 『기사년(1929) 송라리 추수기』.
117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7쪽.
118 山田龍雄, 「全羅北道 農業經營の諸相」, 『農業と經濟』 8-8, 1941.
119 포천의 지대수납의 특징은 초가를 받았으며, 석(石)을 200근(斤)으로 환산하여 두량(斗量)하였다.
120 두량 시에 임금 1승은 인부에게 지급하였다. 1두에 차지 않는 단수는 마름의 이득으로 한다.
121 『포천 갑술년 추수기 조대구댁』. 이직열은 관리비 이외에 1필지의 전 769평을 소작하였다.



「소작권 양도계약서」 양식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음 해 춘궁기로 곡가가 높은 시기인 4월 22일 보관한 벼를 방매하고, 결산내용을 보고하였다. 종자 2석을 제외하고 모두 방매하였다. 가격은 근=7전(錢) 1리(里)로 방매하여, 수입은 1,055원 70전이었다.

조씨가의 지주 경영에서 소작계약은 구두계약처럼 보이나, 그의 집안 문서에서 나온 「소작권 양도계약서(소작권 양수계약서)」가 주목된다. 기재내용이 없어 조씨가에서 실제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영향은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1930년대 사용된 양식으로 추정되는 이 계약서 양식은 특이하였다. 양식 종이의 오른쪽에는 「소작권 양도계약서」, 왼쪽에는 「소작권 양수계약서」를 반씩 나누어 인쇄하였다. 전자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후자는 소작인이 지주에게 제출하는 형식이었다. 계약이 완료되면 중앙을 반분하여 나누어 보관하도록 구성되었다.

내용은 토지의 지번, 지목, 소작료, 소작연한, 소작료 납부기일 등을 기재하고, 소작료는 미곡검사에 합격한 것, 조선리 30리(12㎞) 내의 운반에 소용되는 비용은 소작인 부담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양수계약서에는 천재지변 이외의 나태 · 질병 등으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작권 연한 이내라도 소작권의 이동을 지주에게 일임할 것, 소작료 체납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대납하도록 하되 보증인은 2명을 세우도록 했다. 이 시기 다른 지

주가의 문서 소작계약서를 보면, 지주가 농업 경영의 구체적 과정까지 일일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농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마름제 경영의 특질을 반영한 계약서로 보인다.[122] 납부액을 정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도조제를 전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지조사부』 분석결과 조씨가의 소작인은 자작 겸 소작인은 드물었고 대부분 토지 없는 순소작인이었다.

조씨가의 지주 경영 수입은 크게 지대수입과 기타수입으로 나뉜다. 지대는 소작료이고, 기타수입은 종자와 장리의 이식을 비롯하여 우도(牛賭), 대조(貸條), 영조(零條) 등이었다. 장리는 춘궁기에 소작인의 요구에 따라 벼를 빌려 주고, 추수기에 원곡에 이식 5할을 포함하여 받았다. 방축리는 종자를, 행목리는 종자와 장리를 지급하였다. 소작인이 종자

〈표 5〉 방축리 지대수입과 지출

연도	면적(평)		수납액	미납조	종자장리 작년미수	실입계	종자 기타	총계
1930	타조	38,107	128석 12두		20석 5두	163석 4두 8승	5석 1두	158석 3두 8승
	도조	10,946	13석 8두	8두 4승	1석 8두 2승			
1931	타조	10,946	13석 8두	2두 5승	8석 10두 7승	122석 4두 2승	5석 4 두 2승	117석
	도조	31,107	100석 6두					
1938	타조	38,107	144석 12두			158석 15두 5승	5석	153석 15두 5승
	도조		13석 5두 5승					
1943	타조	38,107	127석 1두		11석 1두	151석 2두 1승	5석	146석 2두 1승 8석 17두
	도조		13석 2두 6승	2두 5승				

〈표 6〉 온양읍 지역 토지의 지대 외 수입과 지출

지역	연도	종자	이식	합계	미수	종자	수량세	가마니축
방축리	1930	13석 10두	6석 15두	20석 5두	1석 8두 2승	5석	1두	
	1931	5석 13두 8승	2석 16두 9승	8석 10두 7승		5석	1두	3두 2승
	1943	17석	5석 1두	22석 1두		5석		
행목리	1928	6석	3석	9석		3두 5승	2두 주대	
	1930	8석 17두	4석 8두 5승	13석 5두 5승		3석 5두	2두 주대	4두
		2석 4두 7승	1석 2두 3승	3석 7두(-4두)				

122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2쪽.

를 지급받을 경우 50%의 이자를 냈다.[123] 방축리의 경우 〈표 5〉와 〈표 6〉에서 보듯이 종자와 장리 수입이 전체의 10%가량 되었다. 그리고 지주가의 수입에는 종자와 장리의 이식(利殖)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수입액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때에 따라 편차가 컸지만 100석이 넘는 정도로 추수기로는 대략 500석 정도 되었다. 수납한 벼는 마름이 지주와 상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벼는 마름가에서 보관했는데, 벼가 마르거나 서축(鼠縮) 등의 이유로 늘 감소분을 계산하였다. 방축리의 경우도 마름이 1931년 결산에서 무게가 줄면서 4두가량 감소되었다고 했다. 마름은 늘 부피와 아울러 무게(斤)를 확인하였다.[124] 수납벼를 처리할 때까지 지역에 따라 항목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다. 행목리 추수기에는 작인축(作籾縮) 이외에 종자, 산소의 풀을 벨 때 술값, 수량세(水梁稅),[125] 서축 등이 기록되어 있다.

〈표 7〉 행목리 지대수입과 지출

행목리	평		수입	미수, 축	합계	장리미수 종자미수	계	종자기타	총계
1928	타조	30,584	52석 8두		52석 8두	9석	82석 5두	3석 17두	78석 8두
	도조	20,730	21석 7두 1승	15두 1승	20석 12두				
1930	타조	30,584	98석 10두		98석 10두	13석 5두 5승	135석 9두 3승	−4석 1두	131석 8두 3승
	도조	20,851	21석 3두 1승	12두 3승	20석 10두 8승	3석 7두(−4두)			

지주는 방축리 추수기의 결산서에서 보듯, 지주수입 가운데 소작인에게 지급할 종자와 장리조를 남기고 모두 방매하도록 마름에 명하였다.[126] 방매시기는 행목리 1931년 정월 14일에 124석,[127] 방축리는 1932년 음 3월 7일 100석,[128] 포천은 1935년 4월 22일에 방매하였다.

조씨가는 수납벼를 겨우내 보관했다가 정월부터 방매하기 시작하였다. 곡물 거래처는 토지 소재지역의 상회사였다. 첫 번째 등장한 회사는 1914년 10월 경성부 남대문통에 설립된 자본금 20만 엔의 공익사(주)였다. 이 회사는 ① 물품 매매업, 대리업, 위탁업, 운송

123 『경오(1930년) 9월 20일 방축리 추수기』.
124 1석을 100근이나 90근으로 건조하여 보관했는데, 이 때문에 벼의 석두가 축소되기도 했다.
125 『경오(1930년) 9월 20일 방축리 추수기』.
126 『경오(1930년) 9월 20일 방축리 추수기』.
127 『경오(1930년) 9월 10일 행목리 추수기』.
128 『신미(1931년) 9월 20일 방축리 추수기』.

〈표 8〉 야목리 지대수입

연도	수납액	연도	수납액	비고
1931	134석 9두	1934	132석 16두	119석 16두
1933	138석 12두	1940	51석 12두	27석 6두 9승
1937	133석 2두	1941	114석 15두	27석 8두 2승
–	134석 2두	1942	116석 15두	
1938	114석 6두			

업, ② 주식 및 사채의 인수, ③ 부대업무 등을 취급하였다. 조씨가는 이 회사에 매송면 지역의 미곡을 위탁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129]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이토추(伊藤忠)합명회사이고, 사장은 박승직상점의 박승직이었다.[130]

조씨가와 관계한 또 하나의 미곡상은 1918년에 설립된 충남상업(주)이었다.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509-2번지에 두고, 인천에 지점을 설립하였다. 주요 업무는 물품 판매업과 위탁업이었다. 내포평야 등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의 미곡을 수집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했다. 사장은 최규석(崔圭錫), 전무이사는 다나카(田中常松), 상무이사는 이종덕(李鍾悳), 유치긍(兪致兢), 이사는 장석구(張錫九)였다. 영업주임은 성관영(成觀永)이고, 인천지점장은 정태환(鄭泰桓)이다. 주주는 22명인데,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특히 성씨 가문이 지배지주였다.[131] 이 회사는 1922년 9월 10일 조병두의 대리인 조세재에게 26석(4,836근)의 대금 435.24원(근당 9전) 가운데 수수료, 중개료, 운임, 공동창고료 등을 제하고 324.67원을 지급하였다.[132]

조씨가에는 1924년 10월 29일 인천부 내리의 계주(計主) 박창희가 조씨 집안의 조문식에게 정조 판매대금을 회계해 준 계산서가 남아 있었다. 정조 10석(1,950근)을 방매한 대금 138원 85전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매매대금에서 하육임(下陸賃), 두량임(斗量賃), 관구조(關口條), 구조(口條), 영가조(永價條) 등을 제외한 것이다.[133]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씨가는 매송리 빈정에서 배로 벼를 인천에 실어 와 방매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씨가가 수

129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5, 238~239쪽. 사장은 박승직(朴承稷 : 1,090주)이고, 전무이사는 일본인 다카이(高井兵三郎 : 548주)였다. 조선인 임원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최대주주는 이토추합명회사(伊藤忠合名會社 : 7,500주)이고, 다른 대주주도 대부분 일본인이다.

130 박승직에 대해서는 김동운, 『박승직 상점(1882-1951)』, 혜안, 2001 참고.

131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요록』, 1925, 242~243쪽. 충남상업은 조선인 회사로 성낙헌 등 성씨가가 주도하였다. 성씨가의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김성보, 「일제하 조선인 지주의 자본전환 사례-예산 성씨가」, 『한국사연구』 76, 1992 참조.

132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189쪽.

13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6쪽.



매상계산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충남상업주식회사 인천출장소에 벼 26석을 판매하고 받은 돈과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과 온양에서 생산한 미곡은 모두 미곡상이 인천에 가져와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의 지주 경영은 농사 경영방식, 수확미 수납과 처분, 장리 운영 등에서 기업가적 경영방식은 볼 수 없었다. 겉모습은 일제의 농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래의 양반적 경영방식의 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수리시설과 금융 거래

(1) 수리시설의 증가와 부담

일제는 한국 강점과 더불어 미곡생산 확충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핵심은 수리조합 건설사업이었다. 생산력 확충을 위한 다로다비(多勞多肥)의 메이지(明治)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관건이 물 문제의 해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수리조합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사업은 지리적 환경과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방식이나 사업시기에서 편차가 대단히 컸다.[134]

134 산미증식계획의 평가에 대하여는 허수열,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2011이 참고된다.

조씨가는 강점 초기에는 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양반 지주가는 비교적 물 수급이 안정적인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긴급한 과제였다. 일제의 농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주제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없는 한, 수리사업에 주체적으로 적극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135] 기존의 소유규모를 유지한다면 구래의 수리시설만으로도 무리는 없었다. 조씨가의 토지가 소재한 수원 매송면이나 아산 온양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수리조합 건설이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일제 초기에는 구래의 수리시설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온양수리조합과 어천수리조합이 건설되었다. 조씨가의 토지도 몽리구역에 포함되어 수세를 납부하였지만, 초기에는 구래의 수리시설을 보완 확충하는 사업에 더 힘을 기울였다.[136]

일제 초기 조씨가의 비용 부담과 관련된 구래의 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양면 방축리에 소재한 희안제언(希安堤堰)을 수축할 때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 제언은 온양면이 주도하여 1914년 가을에 조성하고, 이에 대한 부과금을 해당 지주에게 등급에 따라 분배하고 납부를 요구하였다. 부담은 1등답 47두 103원 400전, 2등답 20두 34원, 3등답 11두 13원 200전, 계 150원 60전이었다.[137] 둘째, 수원 매송면 야목리 전평의 수문(水門) 개조작업이다. 1916년 5월 31일 사업 관계자가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분배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내용은 "지난번 통고서와 같이 경비금을 자금을 빌려 공사비와 재목 대금으로 지출하고, 12개월에 걸쳐 신청인과 귀하의 소작인 등이 진력하여 일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부담분을 요구하였다. 사업 책임자는 수원군 매송면 야목리 구장인 조민재였다. 간사는 박홍래이고, 관계자는 김익순 · 조원교 · 박성칠 · 조문경 등이었다. 이 작업은 1913년 6월 21일 농상공부장관의 통첩 「제언과 보의 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138] 일제 초기 조선총독부는 비용이나 현실적 조건 때문에 거대한 수리사업보다는 제언과 보 등 기존 수리시설을 유지하는 데 더 힘을 기울였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수리조합 설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씨가의 소유지가 몽리구역으로 포섭된 수리조합은 온양수리조합과 어천수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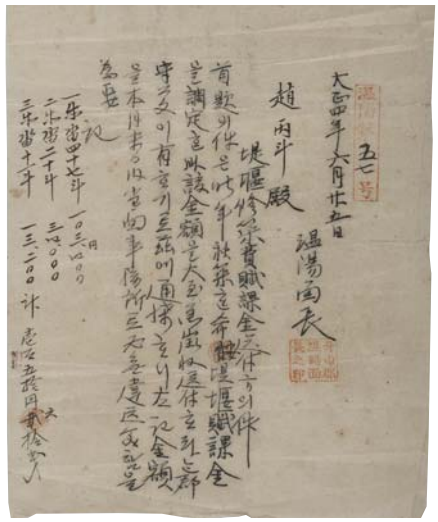
135 구래의 전통적인 양반 지주가의 경영지는 수리 안정성을 보여 수리조합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규모 수리시설은 일부 간척지나 신간지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대체로 구래의 수리시설을 보완 확충하는 정도였다.

136 수리조합연구는 이경란, 「일제하 수리조합과 농장지주제」, 『학림』 12 · 13, 1991; 이영훈 외,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우대형, 「일제하 만경강유역의 수리조합연구」,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2006; 허수열,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2011이 참고된다.

137 「제언수축비 부과금 송부방의 건」(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3쪽).

138 조선농회, 『조선농무제요』, 1933, 621~622쪽.

합이다. 온양수리조합은 1926년 1월 26일 설립이 인가되었다.[139] 사무소는 충남 아산군 온양면 온천리에 두었다. 몽리구역은 아산군 온양면 · 신창면 · 선장면 등지였다.[140] 조합장은 이기준 · 이성우,[141] 이사는 일본인 사와다(澤田宗三郎)였다. 온양수리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된 것은 아니었다. 조합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작지에 차별 급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 차별을 두면서 조선인 지주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지주회의를 개최하고 대표 3인을 도청과 조선총독부에 파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142] 조합장은 조선인이지만, 조합은 일본인 지주 주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수리조합은 조선인 지주들보다 일본인 지주들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더 심했으므로 반발은 필연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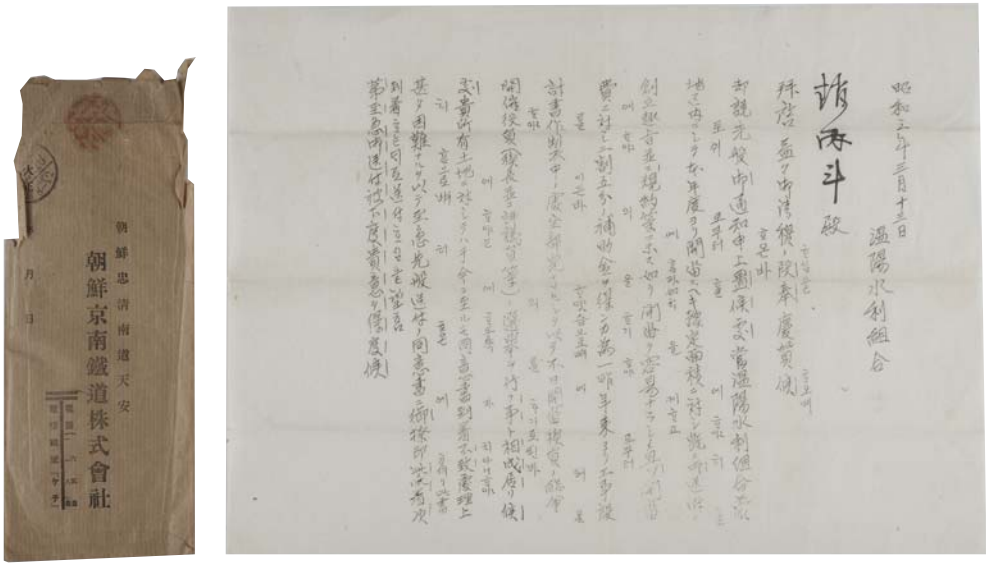


제언 수축비 부과금 송부방의 건(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희안 제언 수축에 소요된 비용을 조정하여 부과하였으니 해당 금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다.

온양수리조합 개설 이후 지구 내에 개답(開畓)사업도 시행되었으며, 이 일에 2할 5분의 보조금이 주어졌다.[143] 이 지구 개답사업은 1928년 3월 13일부터 시작했으며, 조씨가의 토지도 포함되어 시행되었다. 주최 측에서는 예정지구 내 계원들에게 사업 관계 공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은 계원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거를 하려고 하니,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씨가는 개답사업으로 답이 확대되는 이익을 본 것이다.[144]

수리조합 몽리구역 내 지주들은 통상조합비를 납부해야 했다. 조씨가의 온양면 방축리 토지가 여기에 해당되었다.[145] 조합비 수납용지 양식은 청구서와 영수증이 한 장에 인쇄되었다. 그 내용은 토지 소재지, 지번, 반분할 평수, 단가, 가격, 비고 등이었다. 1941년도 제1기분 수리조합비 통상조합비는 139원 19전이고, 1942년도 1월 7일에는 288원 10전의 지

139 김경일, 『일제하 사회운동사 자료집』 3, 2005, 352쪽; 『동아일보』, 1927년 10월 1일.
140 『조선총독부관보』 제4030호, 1926년 1월 28일.
141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9; 中村資良 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31.
142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336쪽; 『동아일보』, 1928년 2월 24일.
143 조선농회, 『조선농무제요』, 1933, 682~694쪽.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 제2조 2항에 전을 변환하여 답으로 하는 것, 2할 5분의 보조금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44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1쪽.
145 『조선총독부관보』 제4030호, 1926년 1월 28일.



통고문(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온양수리조합에서 개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예정지구 내 계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계원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거를 하려고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세 장려금을 거두었다. 조씨가의 마름 이해룡이 출급하였다.[146] 1944년도 부담금은 다음 해 1월 1일 고지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1945년 1월 말일까지 1944년도 토지 개량사업 특별세 수리할 232원 64전을 온양읍사무소에 납입할 것을 지시하였다.[147] 매송면의 조씨가의 토지와 관련된 어천수리조합에도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이 집안에는 1952~1953년도 지주 부담금 영수증이 있었다.[148] 이같이 수리시설을 설립하고 확충함에 따라 수리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품종 개량이 진척되고 수확은 증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확 증대가 농촌경제의 수익 증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닥친 곡가 하락사태가 이를 어렵게 했는데, 그만큼 금납의 수세 부담도 증가하였다. 식민지 지주들은 이 부담을 소작농민에 전가시키기도 했지만, 조씨가에서는 수세를 소작농민에게 부담시킨 흔적은 볼 수 없었다. 생산력 증대가 조씨가에서는 지주경제와 소작농민경제 두 부분 모두 수입 증대로 직결된 것 같지는 않다.

14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9~251쪽. 1948년도 수리조합비 통상조합비는 1만 1,789원인데,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보인다.
147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9쪽. 온양읍 회계원 김천경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
148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0쪽. 1952년도 지주부담금 510원, 1953년 지주부담금 360원, 합 870원. 1957년 수리조합비 통상조합비 백미 1석 6두 1승(곡가환산액 석당 3만 환) 일금 1만 8,300환, 결락 백미 12두 2승.



납입고지서와 영수증(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어천수리조합에서 발송한 지주부담금 납입고지서와 영수증이다.

(2) 금융 거래와 그 유형

조씨가의 금융기관 활용도는 기존 사례연구의 지주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 개량이나 농업 경영, 농외투자 등과 관련된 거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씨가는 장리(長利)라는 전통적인 농촌고리대 활동을 일제하에도 소작인을 대상으로 계속하였다. 이것은 소작농민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지주의 주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조씨가는 이러한 농촌고리대 활동을 하면서도 부동산담보제도를 기반으로 본인 스스로 타인과 금융 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표 9〉.

부동산담보제도가 도입되자 조씨가는 이를 활용한 금융 거래를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는 「조선증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친족인 조덕재가 경성의 일본인 오케시모다 센조(樋下田仙藏)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수원군수 김관현이 증명관리로 저당문서를 확인하고 설정과 변제절차를 진행하였다.[149] 1913년 10월 23일 야목리와 빈정리의 산 5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원을 월 2부 5리의 이자로 빌렸다가 1915년 6월 8일 갚았다. 저당

149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91쪽. 이때 첨부한 서류는 변제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 물건표시, 임야실측도, 저당권설정확인서, 증명제 증서 등이다.

권자인 오케시모다 센조(樋下田仙藏)는 경성에서 고리대금업을 주업으로 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매송면에 많은 토지를 확보하였다.[150]

조씨가의 금융활동은 많지 않지만 차금보다는 대부해 주고 이자수입을 챙기는 편이었다. 대부방식은 부동산 담보대부와 차용증 대부를 활용하였다. 전자는 조민재 · 정인규 등에게 600~800원을 빌려 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다. 이자는 2부 5리였다. 반면 소액대부는 차용증을 받는 신용대부방식을 활용하였다. 담보가 없기 때문인지 부동산 담보대부보다 이자율이 높은 3부였다. 1910년대 적은 건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금융활동이 조씨가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씨가는 호서은행, 한성은행(조흥은행), 화성금융조합,[151] 우체국 등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해 왔다.[152] 1910년대에는 호서은행과 금융거래를 했다. 250원 정도의 약속어음인데 기일 내 갚지 않아 독촉장을 받기도 했다. 조씨가는 은행 임

〈표 9〉 들목 조씨가의 채권 · 채무관계[153]

순번	설정일	변제일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자	설정물
1	1913.10.23.	1915.6.8.	조덕재	토이시타(樋下田仙藏)	300원	2부 5리	야목리 · 빈정리 산 5필
2	1916.1.11.		조덕재	조병두	600원	3/100	
3	1916.6.7.		조민재	조병두	65원 40전	3/100	
4	1916.7.24.	10.21.	조병두	호서은행	250원		약속수형
5	1917.12.		임호천	조병두	60환		백미 21두
6	1919.12.		임호순		20환	4푼	
7	1920.	1929.3.20.	정인규	홍사열	800원	2할 5분	어천리 답 1,179평
8	1924.2.2.		조병두		미상		
9	1933.3.27.	1938.	조병두	한성은행 (조흥은행)	최고 저축금액 9,000여 원		특별당좌예금
10	1933.8.4.	1936.3.	조병두	화성금융조합	1원 남짓		저축예금통장
11	1938.2.12.		조병두	경성혜화우편국	1기분 소득세		진체저금수령증(振替貯金受領證) 매송면 구좌번호 경15950
12	1933.1.15.			조선총독부	20엔		통상위체금수령증서
13	1941.12.8.			경성혜화우편국	20엔		소위체금(小爲替金)수령증서
14				우체국			우편저금

150 『수원군 매송면 토지조사부』.

151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05쪽. 화성금융조합은 1907년 12월 15일 설립되었다. 조씨가의 예금통장은 1933년 8월 4일부터 1936년 3월까지 사용되었다.

152 윤석범 외, 『한국근대 금융사연구』, 세경사, 1996.

153 조선식산은행은 저당권과 관계된 빈 양식만 남아 있다.



화성금융조합 저축예금통장(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원진과는 친분관계에 있었으며, 미곡거래를 맡았던 충남상회와의 거래도 이러한 인적관계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154]

조씨가의 금융 거래는 1930년대에 더 활발하였다. 1933년 한성은행과 최고 저축금액 9,000여 원의 특별당좌예금 계약을 맺었다. 이 시점은 조씨가가 송라리의 토지를 대거 방매하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시점과 일치한다. 농업 외 투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라는 예상도 해 보지만 현존 자료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조씨가는 화성금융조합과도 거래하였다. 금융조합과의 거래는 저축예금통장에 기록이 남아 있다. 대단히 소액이지만, 거래기간은 3년이나 되었다. 조씨가와 금융조합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155] 금융조합은 자소작 농민층 이상 계층에게 소액대부를 해 주고 이들을 장악하여 목적한 농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관제조합이었다. 조씨가는 조선식산은행과도 거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집안에 남아 있는 인쇄된 식산은행의 저당 관계 양식에 기록은 없었지만 거래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같이 조씨가는 여러 금융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거래액수가 적었으며 이용빈

154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00쪽. 호서은행에 1916년 7월 24일 발행한 약속수형 250원의 지불기일은 10월 21일인데 1916년 11월 24일 호서은행에서 납부독촉장을 받기도 했다. 호서은행(주)은 본사를 예산에 두고 천안과 안성 등에 지점을 설치한 조선인은행이다. 임원은 사장 금진섭(金鎭燮), 전무이사 성낙헌(成樂憲)·유진상(兪鎭相)·성낙규(成樂奎)·정두화(鄭斗和)·장석구(張錫九)·민유식(閔裕植), 감사 최규석(崔圭錫)·이경세(李慶世) 등이었다. 설립은 1913년 5월 21일이었다(『조선은행회사요록』, 1921).

155 이경란,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혜안, 2002.

도도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산미증식 등 일제의 정책적 목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은 경우도 보이지 않았다. 금융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편국 활용도는 높은 편이었다. 조씨가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모든 소유토지로부터 부재지주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첫째, 세금을 납부할 때 진체(振替)저금제도를 활용하였다. 경성 혜화정우편국이나 광화문우편국에서 수원군 매송면이 계약한 구좌인 경(京)15950구좌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즉 수원군 매송면에서 경성부 명륜동으로 이사하면서 조씨가가 매송면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용하였다.[156] 둘째, 돈을 송금하거나 저축할 때 우편국을 이용하였다. 우편저금이나 통상위체금(通常爲替金), 소위체금(小爲替金) 등이 그것이다.[157] 셋째, 우편제도를 활용하였다. 조병두가 명륜정에 거주하면서 온양의 이은종에게 소포를 보낸 예에서 보듯, 지주가가 마름과 연락할 때 우편제도를 활용하였다.[158] 우편국은 전국을 포섭한 기구이기 때문에 조씨가가 세금 납부나 현금 거래를 할 때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부재지주인 조씨가가 원격지에서 지주 경영에 대한 지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씨가가 갈수록 농업 경영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세 부담

1) 주세와 지세 부담

조씨가의 가전(家傳) 문서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조세 관련 영수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주로 지세 · 소득세 부분이었지만, 이 외에 임야세 · 농회비 · 가옥세 · 호세 · 호별세 · 주세(酒稅) 등 여러 세금영수증이 다양하게 남아 있었다.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주세영수증이었다. 1916년 9월 1일에 공포된 「주세령」에 따라 납부한 것이다.[159] 「주세법」은 1908년 대한제국 때 공포되었는데,[160] 당시는 주류 제조의 면허 및

15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07쪽. 진체(振替)저금수령증은 수령인이 1937년 8월 21일(26원 4전), 12월 11일(97원 10전), 1938년 2월 12일(91원 78전) 등 3매가 남아 있다. 첫 번째 26원 4전의 용지에 수기로 제1기분 소득세라 기록하고 있다.
157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08~309쪽. 요금표가 뒷면에 인쇄되어 있다.
158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4쪽.
159 荒井賢太郎, 「주세령의 요지」, 『조선휘보』, 1916년 9월.
160 「주세법」,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Ⅷ』,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26쪽.

신고제도를 정한 것이었다. 이 법을 근거로 조선의 주조 현황을 파악한 다음, 일제는 「주세령」을 공포하였다. 「주세령」은 자가용주 제조를 통제하여 주류의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켜 주세를 거두어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영세주조업을 축출하여 대자본의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었다. 전자를 위해 자가용주 제조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 여기에는 영업용 주세보다 높은 고율로 과세를 했다.[161]

조씨가에서는 이 법에 의해 허가 없이 제조한 자가용주가 밀주로 취급되자, 자가용주 제조허가를 받고 주세를 납부하였다. 1918년도 주세 영수증(자가용)이 그 징표였다. 종전에는 조씨가와 같은 지주가에서 술을 제조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다. 일제는 「주세령」을 제정하면서 구래의 관습과 법에서 정한 자가용주 제조허용방침을 폐기할 때 뒤따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가제와 세금 징수라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자가용주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자가 소비에 필요한 술은 몰래 제조하기도 했지만 제양조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조씨가도 여기에 동참하였다.[162]

조씨가가 지출한 조세 가운데 지세 부담이 가장 컸다. 일제는 통감부시기 지주 납세제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결수연명부』의 작성 작업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한 바 있었다.[163] 지주 납세제는 토지 소유권과 지가를 조사·확정한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되면서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164] 조씨가도 이러한 정책에 조응하여 자기 소유토지에 대한 지세 관련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여 장부를 만들었다.[165] 『대정 8년 1월 지세수납부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 장부가 그것이다.[166] 『토지대장』의 지번과 필지에 따라 리명, 지번, 지목, 지적, 지가 등을 필지별로 기록하고, 각종 세액을 그 아래에 기록하였다.

일제는 1914년 「지세령」을 제정하여 결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율은 4할 인상하였다. 그리고 국유지의 면세와 지주의 지세 납부제를 확정하였다.[167] 1915년 이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종전대로 『결수연명부』, 완결된 곳은 『지세명기장』을 작성하여 이에 기초하여 지세를 부과하였다.[168] 두 장부는 이름만 다를 뿐 여전히 지가가 아니라

161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1996, 역사비평사, 68~88쪽.
162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42쪽, 358~367쪽. 상이 났을 때는 시급하기도 했지만, 탁주가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63 宮嶋博史, 『조선토지조사사업사의 연구』, 도쿄대학동양문화연구소, 1990;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64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165 조씨가의 문서 가운데 지세관계 문서가 다양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166 『대정 8년 1월 지세수납부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
167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4년 3월 16일.
168 『조선총독부관보』 제830호, 1915년 5월 12일.

결가에 기초하여 지세를 부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169] 지가에 기초한 지세 납부는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뒤, 1918년 6월 18일 「지세령」을 개정하여 본격 시행되었다.[170] 이때 지세 부과 장부인 『지세명기장』의 양식에서 결수 결가 항목을 없애고, 지세를 지가의 1,000분의 13으로 정하고 각종 부가세와 세율을 정한 것이다. 조씨가는 이에 근거하여 위의 장부를 작성했는데,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지세, 지세부가세, 지세할, 지세부가 학교비 등이었다.[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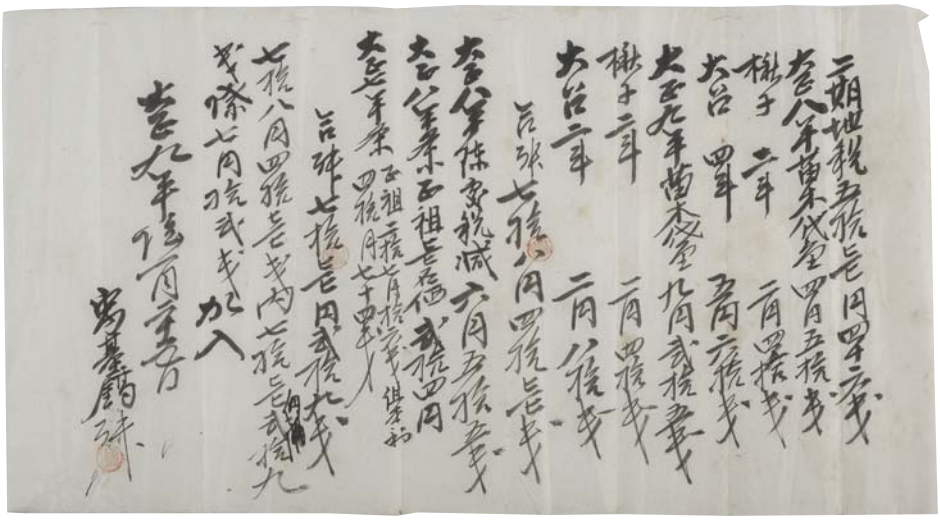
〈표 10〉 1919년도 들목 조씨가의 매송면 소재 토지 지세 부담액[172]

소재	지목	지적	지가	지세	지세 부가세	지세할	지세부가 학교비	합계	구두락	결수
송라리	답	37,108	3,190.6	40.84	1.29	5.45	0.48	48.06	120.7	2,127
	대	1,742	1,69.14	2.17	0.06	0.19	0.05	2.47	5.4	58
야목리	답	23,414	3,165.9	42.23	1.36	5.79	0.45	49.83	98.2	1,329
	대	2,705	324.6	4.18	0.11	0.55	0.06	4.9	10.8	102
	대전	1,288	146.8	1.89	0.07	0.26	0.04	2.26	4.1	39
	전	13,550	394.0	7.86	0.38	1.03	0.36	9.63	94	972
어천리	답	846	38.07	0.49	0.01	0.06	0.01	0.57	4	50
총계	계	91,317	7,888.2	105.54	3.51	14.09	1.64	124.78	420.1	5,603

〈표 10〉은 조씨가에서 개정 「지세령」에 근거하여 야목리와 송라리에 소유한 각 필지에 대한 지세 부담액을 기록한 것을 통계 처리한 것이다. 〈표 10〉의 장부의 특징은 『토지대장』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 내부의 실제 경작필지까지 조사하고 구래의 두락과 결수를 기록하여 경작 필지별 세액도 확정했다는 점, 그리고 추수기에는 지주 경영지로 등록되었지만 『토지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신간지는 제외했다는 점에 있다.

일제는 1922년 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로 다시 인상하였다.[173] 조선총독부는 세율을 높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갔지만, 지주 납세제의 원칙에 따라 지주 부담도 증가되었다. 산업자본 위주의 조세체계를 지향하는 가운데 지주는 부담이 증가하자 지세 부담을 작인에

169 「지세령」 제2조 토지의 결수에 그 결가를 승한 것을 1년 세액으로 한다. 제3조 결가는 7종으로 정하면서 지세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170 『조선총독부관보』 제179호, 1918년 6월 18일.
171 「지세령」에 따른 부담을 보는 시각은 부담 증가와 감소 등 두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경우 당시 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지만 지세부담으로 차압자수가 증가한 것이 당시 실정이었다(김한주, 「조선지세령연구」, 『학술(해방기념논문집 1)』, 1946, 20~21쪽).
172 『대정 8년 1월 지세수납부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
173 김한주, 「조선지세령연구」, 『학술(해방기념논문집 1)』, 1946.



지세계산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1919년 2기분 지세계산서로 지세가 51엔 46전이다.

게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74] 자료로 볼 때 조씨가에서 전가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씨가에 부과된 지세의 세부내역을 보면〈표 11〉, 국세인 지세, 도세와 면세로서의 지세부가세, 그리고 지세할이 부과되었다. 지세 이외에 각종 부가세가 부과되었다. 조씨가에서 1921년 12월 9일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보면, 제1기분 지세 54원 7전, 지세부가세(도세) 16원 22전, 지세부가세(면세) 16원 22전, 지세할 30원 81전, 합계 117원 32전이었다.[175] 고지서는 면장 명의로 발급하고, 회계원이 수납하였다.[176]

1927년 이래 토지의 부담은 지세(지가의 1,000분의 17), 지세부가세(지가의 1,000분의 10~1,000분의 12), 지세할(지가의 1,000분의 8), 농회비(지가의 1,000분의 1) 등으로 산정한 총합은 지가의 1,000분의 36에서 1,000분의 38이었다. 대체로 1931년에는 생산량의 10% 정도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도세에 호세와 지세부가세, 임야세, 면세에 지세할과 호별할 등이 있이 토지 부담으로 작용한 세였다.[177]

1937년 조씨가가 경성으로 이사한 뒤에는 수원군 시절과 납부액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

174 주 17)의 지주가 사례 연구 참조.

17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7쪽. 당시 이를 영수한 매송면 회계원은 이용복이었다.

17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8~234쪽. 1938년 회계원은 홍철유가 영수하고, 1937년 제2기분 납세고지서는 매송면장 정인달이 발송하였다. 해방 후에는 영수인의 명칭이 다양하였다. 1948년 12월 31일 매송면은 회계원이고, 1952년에는 수입원이었다. 1948년 온양읍은 부주계(副主計)였다.

177 김한주, 「조선지세령연구」, 『학술(해방기념논문집 1)』, 1946, 30~31쪽.

〈표 11〉 조씨가의 지세 납부실태[178]

연도	농회비	지세	지세부가세		지세할	계	비고
		국세	도세	부세, 면세	시가지계획 특별세		
1921		54.7	16.22	16.22	30.81	117.32	조병두
1937(1분기)		37.44	25.45	19.84		82.73	조병두
1938(2분기)		1.06	0.72	0.56		2.34	홍사열, 매송면
1938(1분기)		1.51	1.2	1.2	0.15	3.7	경성부금고
1941(1분기)		1.22	0.92	0.91	0.08	3.13	경성부금고
1945(1분기)		4.95	3	2.95		10.09	홍사열
1938	*				*	5.5	조병두
1941	0.3				14.93	15.23	아산군
1945	*				*	35.29	조병두
1945	1.23				*	1.23	홍사열
1948					회원할	300원	조병두
1949					회원할	250원	조병두
1948(정기)		*	*	*			수원
1948(1분기)						20,800	아산군 온양읍, 조병두
1951		10,249				10,249	조병두
1950							1952년 영수

세인 지세, 부가세로 도세, 면세 대신 부세(府稅), 지세할 이외에 농촌에 없는 시가지계획 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납부방식도 달랐는데 각종 세의 수납을 경성부금고에, 수원은 우체국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이었다.

이때의 지세는 1934년 소득세제가 시행되면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된 세율이었다.[179] 이에 따라 1940년 매송면 추수기에는 면소의 지세 계산방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보면, 지세=지가×15/1,000, 지세부가세(도세)=지세×69/100, 지세부가세(면세)=지세×72/100, 회비(지세할)=지세 1원당 8전식 계산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지세 6원 99전, 지세부가세 4원 82전(도세), 지세부가세 5원 3전(면세), 지세할(회비) 55전, 지세 합계 17원 39전으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1940년 12월 11일 매송면사무소에서 계산한 것이었다.[180]

지세는 12월과 다음 해 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표 12〉에서 보듯 지세는 호별 부과가 아니라 개인별 부과였다. 모자(母子) 사이지만 조병두와 홍사열은 각자 지세를 납부하였다. 세는 면 단위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조씨가는 지세 이외에 토지 소유에 따른

178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27~229쪽. * 지세 납부 영수증이 남아 있어, 납부 사실은 확인되지만 영수증에 글씨가 마모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179 제령 제7호, 『조선총독부관보』 제2188호, 1934년 4월 30일.
180 『1940년도 매송면 야목리 추수기』.

〈표 12〉 들목 조씨가의 조세 납부액[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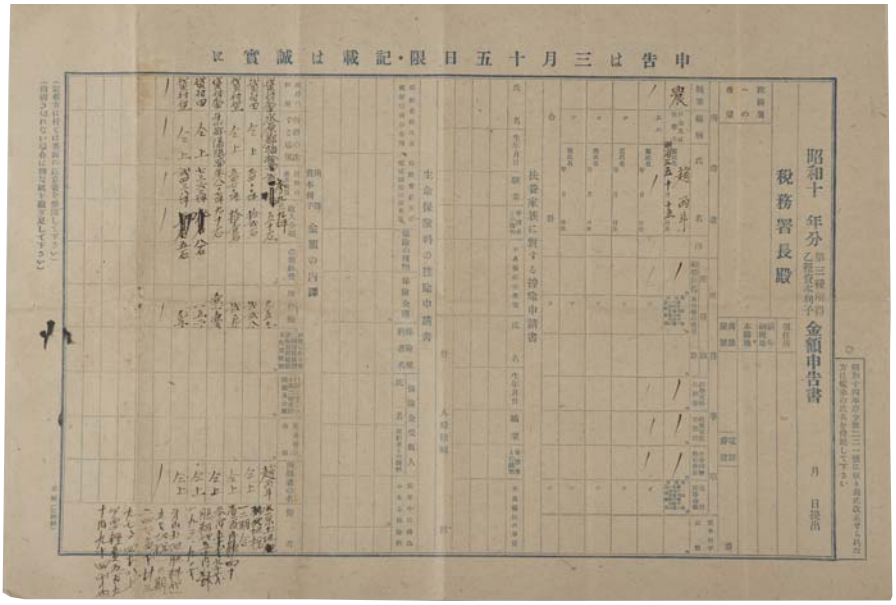
구분	조병두				홍사열			비고
	지세	비중(%)	수세	농회비	임야세	지세	농회비	
아산군 온양면	233.38	35.4	56.41	9.9	3.5	4.94	0.16	
수원군 매송면	292.52	44.3		9.1	13.46	−0.80%		
포천군 가산면	68.34	10.4		2.1				
포천군 군내면	59.75	9.1		1.98				
합계	653.99	99.1	56.41	23.08	16.96	4.94	0.16	755.8

부가세로 임야세, 수세, 농회비 등을 납부하였다. 일제 말기에 일제는 전시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지세증징정책을 강행하였다. 1942년 지세를 1,000분의 17로 원래대로 환원되었다가,[182] 1943년에는 새로 「조선지세령」을 공포한 것이다. 개정의 요점은 지세를 지가가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한 임대가격으로 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로 정하였다. 이러한 지세제도는 지주 부담을 가중시켰다.[183] 이 지세제도는 미군정 법령 제21호에 근거하여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목표로 미군정은 계속 증징하였다. 1946년과 1948년에 임대가격을 20~50배로 인상하였다. 지세는 1951년 9월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통합되었다.[184]

2) 개인소득세제의 실시와 기타 공과금

조선총독부는 산업화의 진전과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개인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1927년에 입안되었지만, 시행시점은 7년 뒤인 1934년이었다. 제2차 세제 정리에서 기왕의 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한 「소득세령」을 공포한 것이다.[185] 이 법에 따라 조씨가는 개인(제3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세금을 부과한 소득의 종류로는 전(田) 대부, 답(畓) 자작, 대(垈) 택지, 대가(貸家), 산림, 수산업, 공채이자, 사채(社債)이자, 예금이자합동운용신탁의 이익, 일시은급, 퇴직급여, 비영업자금, 봉급, 세비, 비용변상, 상여, 은급, 연금, 배당, 의사, 변호사, 오복판매, 토목청부 등이었다. 그리고 수입 금액은 토지의 경우 전답(田畓), 대택지(垈宅地), 대가(貸家) 등은 전년에 수입한 소작료, 수확물의 가액, 지대(地代), 가임(家賃) 등을 기록하였다. 필요경비는 토지에 대한 공

181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182 제령 제13호, 『조선총독부관보』 제4544호, 1942년 3월 24일.
183 제령 제6호, 「조선지세령」,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43년 3월 31일.
184 농림부, 『한국농정50년사 제1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1999, 919~921쪽.
185 제령 제6호, 「조선소득세령」, 『조선총독부관보』 제2188호, 1934년 4월 30일.



「제3종 소득 을종자본 이자금액 신고서」(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조병두 개인 신상과 소득 종류, 소득 장소, 수입, 조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公課), 종묘(種苗) 또는 비료의 매입대, 가축의 사양료, 기구(器具)의 수선비, 용인(庸人)의 급료, 식비 등이었다.[186] 개인소득세는 면세점을 정한 일종의 누진세이며, 이를 도입하여 유산층에 더 과세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187]

개인소득세제의 도입으로 지주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지주층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일제는 그 대책으로 지세율을 지가의 1,000분의 15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88] 소득세는 국세로 연간 3기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제1기는 8월 1~31일, 제2기는 11월 1~30일, 제3기는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였다. 세무서장은 개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기초하여 「제3종 소득 을종자본 이자금액 결정통지서」에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보냈다. 이의가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189]

조병두는 「제3종 소득 을종자본 이자금액 신고서」의 직업란에 농업, 생년월일란에 1902년 10월 15일이라고 신상을 기록하고 소득란을 작성하였다. 기재된 소득의 종류는

18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8쪽.
187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1996, 역사비평사, 173~179쪽.
188 「지세령 개정」 제3조 제1항, 『조선총독부관보』 제2188호, 1934년 4월 30일.
189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5쪽. 1937년 7월21일 제3종 소득금액 을종자본이자금액 결정통지서.

전 · 답 · 대의 대부이고, 소득장소는 매송면과 온양면이었다. 소득의 기본원수(면적)는 8만 6,717평, 수입은 176석, 조세 3,344원이었다. 소득세는 여기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경비는 지세, 비료대 등 590원 94전이었다.[190] 이에 기초하여 수원세무서장은 「제3종 소득금액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조병두에게 보냈다〈표 13〉. 1937년도 세액은 84원 90전을 부과하였다. 소득은 토지 4,020원, 산림 60원, 계 4,080원인데, 세율은 5,000원 미만이라 100분의 3.5를 적용하였다.[191] 1937년 제1기분 제3종 소득세는 26원 4전이었다. 1941년도 제1기 국세 제3종 소득세는 255원 83전이었고, 경성부금고에 납부하였다. 소득세는 소득의 전 분야를 기입하여 산출했는데, 조씨가의 신고서에는 토지 소득 이외의 농외소득은 없었다. 1939년도 조씨가의 토지소득에는 송라리가 제외되었다. 매송면과 온양면을 포함하면 29정보로 대폭 축소되었다.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층 가운데 일부는 회사 경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인 지주들이 여기에 적극 대응했지만 조선인 대지주도 법인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192] 하지만 수원 조씨가의 대응은 수세적으로 편입되어 갈 뿐이어서 지주 경영은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었다.

「소득세법」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폭 개정되었다. 1951년 1월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소득에서 전답소득은 갑종 부동산소득으로, 대지료 소득은 을종 부동산소득으로 구분하고 누진세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양곡 확보가 필요해지자 그해 9월 25일 법률 제220호 「임시토지수득세법」으로 개편하였다. 이 세법에서 전답은 제1

〈표 13〉 1939년 신고자와 소득/자본이자금액 내역[193]

지역	구분	소득의 기본원수(평)	수입금액(석)	소득액	필요경비	비고
수원군 매송면	대부답	23,939	50	950	143.90	지세(1, 2기)
	대부전	9,400	12	228	50	비료대
	대부대	5,470	11	209		
아산군 온양면	대부답	38,107	90	1,710	247.04	지세(1, 2기)
	대부전	7,363	8	152	150	비료대
	대부대	2,438	5	95		
계		86,717	176	3,344	590.94	

190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7쪽.
191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5쪽. 통지서 주의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성세무감독국장이 작성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세무서로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192 주 17)의 대지주들이 그들이다.
193 수원 지세 1~2기 합 143원 90전, 비료대 50원여 합 193원 90전, 아산 지세 1~2기 247원 4전, 비료대 150원이었으며, 필요경비 590원 94전이었다.

종 토지수득세, 대지 잡종지 등은 제2종 토지수득세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제1종은 갑류(미맥)와 을류(특수작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토지 수익에 대한 조세, 직접세, 소득세, 호별세, 교육세 등을 현물세로 통합 일원화시킨 누진세제였다. 1960년 「토지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194]

조씨가는 1951년도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로 정조 3석 6두 7승을, 1954년 7월 1일에는 제1기분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로 대맥 6두 3승을 금융조합에 납부하였다. 1956년 8월 20일 납부할 양곡의 일부인 대맥 3등품 1가마를 면에 납부하고 수납한 양곡에 대한 가(假)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의 하단의 주에는 토지수득세는 세(稅), 분배농지 상환곡은 분(分), 귀속농지 상환곡은 귀(歸), 회수양곡은 회(回) 등으로 수납곡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조씨가의 영수증에는 토지수득세라는 표시로 세(稅)라 표기되었다. 1953년도에는 제2종 토지수득세(야목리 송라리 대지세)로 617원을 현금 납부했지만, 1950년대 전답과 관련된 세는 현물세라는 점에서 종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195] 농지개혁 이후 조씨가의 지세 부담은 이제 지주가 아니라 자영농적 입장이고, 토지는 집안 유지적 차원 이외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領收證書
町 通 丁目 番地 納稅義務者 趙炳年 納
振替貯金口座等 京城公費 等級 42 番
道府縣稅 戶別稅 壹參九貳貳九 圓 拾錢
第二種特別稅 戶別割附加稅 五參四 圓 錢
府稅 戶別割附加稅 圓 錢
合計金 七九六七 圓 錢
昭和拾六年度 第壹期
右領收 京城府金庫
納期經過後ハ郵便局ニテ受取リマセン
受領票
納稅は銃後の務め

호별세 영수증(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들목 조씨가가 서울에서 생활하던 1941년 경성부금고에 납부한 호별세 영수증이다. 호별세는 기존의 호세와 가옥세를 폐지하고 도입한 세제이다.

조씨가는 지세 이외에도 여러 세금을 납부하였다. 첫째, 호세와 가옥세이다. 호별세의 전신인데, 조씨가의 자료에는 가옥세 납부영수증만 일부 남아 있었다. 「가옥세법」은 1909년에 마련되었다. 조씨가에는 매송면 회계원에게 납부한 1937년과 1938년도의 제2기분 가옥세 부가세 영수증이 남아 있다. 1937년 가옥세는 제2기분 3.93원, 부가세가 1.57원으로 합계 5.50원이었다. 1938년 제2기분 도세 가옥세, 부세 가옥세 부가세, 제2부 특별경제 가옥세부가세, 시가지계획특별세 가옥세할 등을 경성부에 납부하였다. 이 세는 「소득세

194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50년사(제1권)』, 1999, 916~924쪽.

19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6~257쪽. 사료 2-3-50의 영수증의 상단에 '공출 한 가마 서른두 근 표' 라는 기록으로 보아 일반인은 공출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때는 시읍면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조씨가에서 납부한 가옥세

연도	가옥세	가옥세부가세			가옥세할	합계	비고
	도세	부세	제2부 특별경제	시가지계획특별세			
1937(2분기)	3.93	1.57				5.50	조병두(매송)
1937(2분기)	1.19	1.19	0.47	0.11	*	2.96	경성부금고
1945(2분기)	*	*				24.80	수원군 매송면
1951(2분기)	8,906	8,906				17,812	화성군 매송면

〈표 15〉 조씨가에서 납부한 호별세

연도	호별세	호별세부가세			호별세할	합계	비고
	도세	부세	제2부 특별경제	학교비			
1941	12.19	13.98	53.40			79.57	경성부
1945	*				*	1.23	홍사열
1948	*				*	300	조병두
1949(1분기)	1,708	1,705		4,650		8,063	홍사열
1949(2분기)	1,708	1,705		4,650		8,063	홍사열
1951	4,670	4,670		9,340		18,680	조병두

법」 도입과 더불어 폐지되어야 했지만, 가옥세는 존속시키고 호세는 폐지하였다. 호세 대신 제3종 소득세부가세의 성격을 가미하여 호별세(戶別稅)를 시행하였다. 1941년도 전시체제하 조씨가의 호별세 부담은 다음과 같다. 제1기 도세 호별세 12원 19전, 부세 호별세부가세 13원 98전, 제2부 특별경제 호별세부가세 53원 40전, 합계 79원 67전이었다. 경성에서 호별세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세제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변함없이 징수되었다. 1945년 12월 매송면 1945년분 가옥세 도세부가세(면세),[196] 1949년도에는 9월 20일에 제1기분 호별세(도세) 1,708원, 여기에 따른 부가세로 호별세부가세(면세) 1,705원, 호별세부가세 학교비 4,650원, 합 8,063원이었다.[197] 호별세부가세 특별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해방 후 호별세의 특징은 호별세부가세로 학교비를 부과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시체제기에 실시한 법제로 주목되는 것은 1942년 10월 15일에 공포된 「기류령(寄留令)」이 있다. 이 법은 징병제 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었다. 1943년 2~3월 징병예상자에 대한 호적 및 기류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기류제도는 호(戶)의 매개 없이 국가권력이 직접 대면하여 개인에 대한 제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라 정리하고 있었

19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36쪽.
197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2~243쪽.

다.[198] 일제시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씨가가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방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어 비용을 지출한 바 있었다. 호적기류협조회(戶籍寄留協助會)가 매송면에도 조직되어 조씨가는 회원으로 통상회비를 냈었다.[199] 이 회비는 병무협회비와 짝을 이루어 징수하였다.[200] 조씨가는 1966년에도 매송면 호적사무 협조회비는 물론 송라초등학교 증축 기성회비도 납부하는 고지서를 받았다.[201]

한국전쟁 이후 조씨가에서 정기적으로 지불한 회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한군경원호회비였다. 이 단체는 군경가족, 부상장병, 전몰장병 유가족의 원호사업을 강화하여 설립한 단체로 1952년 전국 각지에 162개 군지부가 설치되었다. 사업은 생활부조, 직업보도, 수산(授産)연금급여 등이었다. 조씨가에는 1953년과 1954년 200원, 1956년 8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이 남아 있다. 회비는 정기적으로 행정 계통, 즉 매송면장이 분회장되고, 면수입원이 이를 수납하였다.[202]

셋째, 조씨가의 비용 부담은 서울살이를 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 우선 1937년 경성에 집을 마련하면서 경성부금고에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때문에 납부한 세액은 부동산취득세(도세) 28원, 부동산취득세부가세(부세) 7원, 시가지계획특별세 부동산취득세할 합계 35원이었다.[203] 그리고 서울생활은 농촌에서 살 때와 달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경비를 지출해야 했다. 오물수거료,[204] 수도,[205] 전기[206] 등과 같은 유형의 지출이 그것이다.[207]

일제의 토지세제는 재정적 산업자본 위주의 방향이었다. 지세와 각종 부가세, 소득세제의 도입, 각종 목적세 등 세원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세액도 증대되었다. 조씨가의 대응은 수세적일 뿐이고, 지주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져 갔다. 이러한 세제정책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198 이명종, 「조선인 징병을 위한 기류제도의 시행 및 호적조사」, 『사회와 역사』 74, 2007.
199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44 · 271쪽. 1948년에는 100원, 1957년에는 400원을 거두었다. 호적기류협조회 수입원 정무섭이 수납하였다.
200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74쪽.
201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77쪽.
202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8~259쪽.
203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5쪽. 1937년도 수시 시가지계획 특별세부동산취득세 2원 24전 납부, 10월 30일.
204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5쪽. 1941년 6월 30일 정액 수수료 7원 20전 납부.
205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67쪽. 수전번호(水栓番號) 17042번 1941년도 3개월 전용 제2종 급수료 5원 21전.
206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3쪽. 1938년 11월 1일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성북구 미아리 593번지 민(조)병두에게 준 전기세 영수증이다. 정액제로 13W 정수(灯數) 4개에 1원이었다.
207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255쪽. 1941년도 오물수거수수료 7원 20전 제1기분 6월 30일. 수수료는 법인, 학교, 공장, 조합과 일반호로 나누어 정액 징수하였다. 호는 5등급으로 분류하여, 1등급은 호별세 102등 이상으로 7원 20전으로 정하였는데 조씨가는 여기에 해당되었다.

5. 들목 조씨가 지주경제의 성격

들목 조씨가는 조선 후기 이래 전형적인 소론계 명문 양반가문으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말 조씨가의 경영주인 조흥묵은 중앙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향리인 야목리에서 도집강을 지내며 칩거하였다. 일제시기를 살았던 조병두는 일부 관변단체에 가입하여 주어진 활동 이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1937년 서울로 이사가 명륜정 돈암동에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다 1964년 사망하였다. 이름 없이 칩거하며 일상생활을 한 양반의 후예였다.

조씨가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립하기보다는 순응하면서 피동적으로 지배체제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향촌사회에서 양반 유지이며 지주로서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무관하게 지낼 수는 없었다. 일본적십자사, 지주회, 농사장려회, 농회, 산림조합, 수리조합, 애국부인회, 미곡통제조합, 기류협회 등 각종 관변단체에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었다. 단체활동은 회비를 납부하면서 동원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정도였다. 이들 단체는 겉으로는 자치조직처럼 보였지만, 일제가 조선의 향촌사회를 체제화하기 위해 조직한 관변단체였다. 여기에 더하여 조씨가는 도로건설사업이 있을 때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 토지가 수용되었다. 이러한 사업에 조씨가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 흔적은 공식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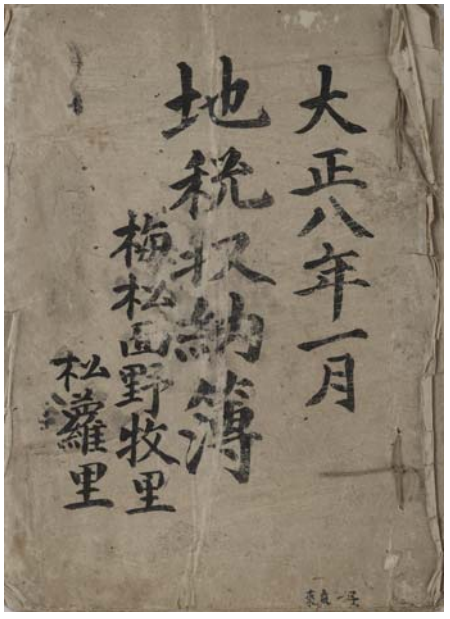
조씨가의 농업 경영은 거주지역에서는 일부 자경을 하는 동시에 대여지를 직접 관리 경영했고, 원격지인 충남 아산군 토지는 구래의 마름 경영체제를 유지 답습하는 것이었다. 조씨가의 세거지인 수원군 들목리는 평야지대이면서 교통의 중심지였다. 서울 인근 지역으로 권업모범장이 설치되는 등 일제의 농정에 가장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곳이었다. 아산군과 더불어 식민지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조씨가는 이러한 식민지 지주제가 추구한 배타적 소유권 확보와 경영권 강화라는 두 측면 가운데, 후자에는 소극적으로 전자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일제 초기 토지 소유권 증명 실시, 조림제도 등 모든 방안을 이용하여 토지조사사업에 대비하였다. 구래부터 소유하던 경작지와 임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확보하여 대지주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구래의 마름제를 근간으로 한 양반 지주적 경영을 그대로 준수하였는데, 지주–마름–작인의 구조였다. 작인의 경영책임제, 종자 지급과 장리(長利)제도의 실시, 우도(牛賭)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작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조씨가의 자작 경영은 거주지 부근의 전에서만 시행되었으며, 그 외에는 지주 경영을 했다. 지주 경영은 논은 타조제, 밭은 도조제로 운영하였다. 소작료는 벼나 태(太)로 받았

다. 마름은 지주의 지시를 받아 비용을 제외한 수확물을 보관했다가 이른 봄에 방매하였다. 방매는 인천에서 미곡무역을 하는 미곡상에 위탁하였다. 마름의 임무는 작인의 관리, 지대 수납, 종자와 장리 지급 등이었다. 소작인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작인에게 장리나 종자를 지급했지만 가을에 1.5배를 수납하였다. 조씨가는 1930년대 중반 우량품종 지급과 비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작인의 농업 경영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비료대적 성격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었다. 지주-마름-소작인 체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일제의 농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에 따라 조씨가의 지주 경영은 확대 발전할 수 없었다.

금융활동에도 일정한 변화 모습을 보였다. 장리라는 농촌고리대를 여전히 유지했지만, 금융기관이나 증명제도나 등기제도에 기초한 부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한 대부나 차금 등 금융활동을 하기도 했다. 금융조합, 조흥은행, 식산은행 등이 대상이었다. 특히 빈번한 활용을 보인 것은 우편국이었다. 돈의 송금, 우편이나 소포제도를 활용한 지주 경영, 세금 납부 등에 활용도가 높았다.

조씨가의 입장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은 세금제도였다. 조씨가의 지주 경영이 체제 내로 흡수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세령」 공포로 술을 자가제조에서 양조주 구입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지세 부분의 변화에서 체제 내로 흡수되어 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가에 기초한 지주 납세제가 시행되자 지세 납세자로 지주인 조씨가는 필지별 지세액과 부가세액을 철저히 기록하여 장부로 만들어 보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세는 1,000분의 13에서 1,000분의 17로 인상되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지세를 1,000분의 15로 낮추었지만, 소득세를 더 부담하도록 세재를 개편하였다. 전시체제기에는 다시 1,000분의 17로 상향했다가, 1943년에는 임대가격으로 지세를 부과하였다. 전비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작업의 결과였다. 그리고 가옥세, 호별세, 임야세는 물론 서울에서 거주할 때는 시가지세도 부담하도록 했다. 일제는 자본주의적 세제를 도입하면서 지주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대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주제의 압박요소



1919년 1월에 작성한 매송면 아목리와 송라리의 지세수납부(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가에 기초한 지주납세제가 시행되자 필지별 지세액과 부가세액을 기록하여 장부로 만들어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

로 작용하였다. 일제시기 지세제도는 해방 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가 농지개혁과 한국전쟁기의 물자 조달,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임시토지수득세, 농지세 등으로 변화해 갔다. 일제의 지세제도는 조씨가와 같은 정태적 지주 경영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지가증권(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정부가 농지개혁으로 매수한 농지의 보상금 대신 지주(地主)에게 발행한 지가증권이다.

1930년대 이후는 전반적으로 지주 경영이 쉽지 않은 시기로 조씨가와 같은 정태적 지주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씨가는 1930년대 후반 송라리 일대의 답을 거의 방매했으며, 아산의 땅도 일부 방매하였다. 서울살이를 하면서 주택 구입, 전기, 수도료 등 각종 생활비 증가 등도 이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에서는 농지개혁의 분위기에서 1948년 아산군 일대의 토지를 마름에게 방매했으며, 나머지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유상몰수되었다. 지주제는 해체되었고, 남은 것은 위토와 산림뿐이었다.

한말 이래 조씨가의 위세는 식민지 근대화의 물결 속에 하강곡선을 그렸으며, 해방 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였다.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화시도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말에 계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잠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지주 경영도 정태적 경영을 하다가 해체의 수순을 밟아 간 전형적인 양반지주의 모습이었다.

1964년 조병두와 홍사열이 사망하면서 양자인 조택기(1934년생)는 1965년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매송리로 돌아왔다. 한때 삼륜차주로 수원에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자본가로의 전환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1985년 안산의 사사리로 이사하여 송복농원을 경영하고 있다.[208] 조씨가는 해방 후 정치활동에 관계하지 않았다. 일제시기와 마찬가지로 각종 관변단체의 회원이 되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 간 일반인의 모습이었다.[209]

208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쪽.

209 화성시, 『들목조씨 기증 근현대 문서』(화성시 역사자료총서 5), 2008, 32~34쪽. 이 집안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조홍묵의 동생으로 매송면 면장을 지낸 조인묵의 손자 조문기이다. 들목 조씨가의 조병두는 5촌 당숙이고, 그의 자 조택기가 존경하며 가깝게 지냈다던 6촌형이었다. 조문기(1926~2008)는 해방 전에 반일활동으로 부민관 폭발사건을 일으켰다. 해방 후에는 단선반대 남북협상 활동의 일환으로 인민청년사건을 일으켰으며(『동아일보』, 1948년 5월 25일; 『서울신문』, 1948년 5월 25일),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59년 대통령암살 정부전복 음모사건에 연루되었고, 198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1983년 광복회 독립정신홍보위원회 홍보위원,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이송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1. 한국인 지주의 존재양태와 역할
2. 용수농계의 설립과 운영
3.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4. 용수농계와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활동

제2장

일제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활동

1. 한국인 지주의 존재양태와 역할

강점 이후 총독부의 식민농정은 '무단적'으로 진행되었다. 농민의 자발성보다는 농사시험기관 → 각종 관변단체 → 지주 → 농민의 일방적인 하향식 전개방식을 취했고, 그 주도세력은 지주층이었다.[1]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과 지세 책정문제 등에서 지주층, 나아가 식민농정에 협력하는 토지 소유자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 지주층, 자작농 상층을 농사 개량사업 또는 상업적 농업의 중심축으로 하여 미곡과 원료 농산물의 생산을 강화하려 하였다.[2] 식민농정과 상업적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 지주층을 '독농가(篤農家)', '비교적 지식이 진보한 지주', '독지지주(篤志地主)', '종래의 양반적(비경제적) 토지 관리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토

1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론』 20, 1988; 이기훈, 「1910~1920년대 일제의 농정 수행과 지주회」, 『한국사론』 33, 1995.
2 이경란, 「1910년대 농가부업과 농가경제」, 『역사문제연구』 제2호, 1997.

지 관리로 전향한 지주' 로 불렸다.[3] 총독부는 농업정책에 호응하여 스스로 근검과 개량농법을 실천하고 동리 단위에서 농사 개량이나 근검저축을 주도하거나 자기 소작인을 조직하여 그것을 장려한 재촌 경작지주를 당시 '독농가' 의 전형으로 지정하였다.[4]

수원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제의 식민농정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경제력을 확보하고 소작인과 지역 농민들의 계몽에 앞장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해 갔던 한국인 '독농가' 형 지주, 유지들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일본인 대지주와 더불어 수원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지로서 명망을 얻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당시 3대 지주로 불렸던 홍사훈(洪思勛), 양성관(梁聖寬), 차유순(車裕舜) 등이 있다. 이들은 농업 경영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금융 등의 활동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갔다.[5]

대표적으로 홍사훈(1891~1965)은 경성의 보성중학교를 중퇴하고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하였다.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회원, 삼일학교 학무위원, 수원청년회장을 역임하였고 수원상업강습소를 인수하여 화성학원을 설립하고 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세류포목점을 경영하고 용수흥농주식회사 이사, 수원극장 이사, 만종원 대표, 수원척식종묘주식회사 이사, 화성흥산주식회사 이사, 수룡수리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 외에 학교 유지가 어려워진 삼일학교를 위해 매년 100원을 기부하고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을 경영하였다. 그는 1933년 소작쟁의가 발생하자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소유토지에 대해 마름제도를 폐지하고, 약 51정보 소재의 소작인 32호에 대해 작인조합을 설치해 주었으며, 저리의 농사자금을 대부해 주는 등 1930년대 조선 농촌이 지주-소작관계의 심화로 파탄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사회개량적 농정을 통해 모순을 완화하려 했던 식민농정에 호응하며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망, 영향력을 확보해 갔다.[6]

홍사훈, 양성관, 차유순 등과 같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자산가는 아니지만, 피폐한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도 있었다. 경기도 수원군 팔탄면 가재리(佳才里) 신기촌(新基村)의 윤수영(尹秀榮)은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근처 동리에 사는 무산아동을 모아 놓고 이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펼쳤다. 1920년경 팔탄면 가재리 자신의 동리에 사는 극빈자 수십 명을 모아 신기촌이라는 마을을 만들고 소농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빈농들의 협동체적인 생산소비기관으

3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론』 20, 1988, 471쪽.
4 松本武祝, 「1910年代における農事改良政策と在村地主層」,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社會評論社, 1998, 40쪽.
5 이동근, 「1910~19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림』 24호, 2005, 193쪽.
6 이동근, 「1910~19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림』 24호, 2005, 194쪽.

로 이를 중심으로 악덕지주와 여러 차례 항쟁을 거듭하면서 승리하여 사음제 철폐, 소작권 확정 등을 쟁취하였다. 또한 농사 개량, 부업 장려, 미신 타파, 허례허식 폐지 등도 지도, 실행하며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처럼 무산(無産) 농민들을 위해 전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의 가산은 물론 많은 부채를 지어 가며 농업자금으로 내놓은 총액이 2만 3,070여 원에 달하였다.[7]

또한 1924년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안영태(安永台)는 장안면 사곡리에 400여 석의 소작료를 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소작료에 대해 도지든 타작이든 소작인이 원하는 바대로 변경해 주고 소작인의 처지를 잘 살펴 주어 소작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8] 1925년 수원군 팔탄면 구장리의 윤원영(尹元榮)은 근처의 미간지 89정보를 개간하여 빈민들에게 분급해 주었다.[9] 1935년 수원군 일형면 파장리 이봉래(李鳳來)는 파장리, 율전리, 정자리, 천천리 등에 사는 빈궁민 중 보릿고개를 맞아 고통에 시달리는 211호에 매호당 4두씩 백미를 배급하였다.[10] 이처럼 일제의 식민농정으로 궁핍해 가는 농촌사회와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국인 지주, 자산가, 지식인 계층 중에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으로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적으로 명망과 존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식민농정으로 승승장구하던 지주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소작인에 대해 가혹한 수탈을 멈추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수원군 태장면 상권선리에서는 35호 200여 명의 인구가 박모라는 사음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소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모가 1936년 별안간 소작료를 종전보다 약 3배나 인상할 것이며, 이에 불응하는 소작인은 전부 이동시키겠다고 일방 통보하여 30여 호의 농가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소작인들은 군소작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저항하였다.[11] 이곳뿐만 아니라 1936년에 수원군 일대의 악덕지주들은 「조선농지령」을 무시하고 자의대로 소작권 박탈 내지 소작료 인상을 강행하여 소작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1936년 4월 한 달 동안 소작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건만 36건에 이르렀다.[12]

7 「수원 독농가」, 『중외일보』, 1929년 4월 10일; 「농사 개량 부업장려 사음제도도 철폐, 농민지도에 일생을 바친 수원 윤수영씨 독지」, 『동아일보』, 1930년 9월 30일.
8 「안지주의 후의」, 『시대일보』, 1924년 12월 8일.
9 「89정보를 개간하여 빈민에게 분급」, 『동아일보』, 1925년 4월 12일.
10 「백미 80석을 빈민에게 분급」, 『동아일보』, 1935년 7월 4일.
11 「파종기 앞두고 작료 3배 인상, 불응하면 소작권 떼어」, 『동아일보』, 1936년 4월 13일.
12 「악덕지주배 발호, 작권 이동을 자행」,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3일.

2. 용수농계의 설립과 운영

1) 용수농계

수원 지역은 식민농정의 참모부인 권업모범장이 있는 곳이고, 일본인 대자본에 의한 동척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농사회사가 존재했던 곳이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지주, 자산가들도 농업 개량을 도모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물론 지역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인 지주, 자산가층의 활동은 총독부 식민농정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강점 이후 총독부는 헌병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인 무단 농정을 실시했지만, 실제 실행상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총독부는 그 대책으로 각종 농사단체를 결성하여 식민농정 수행의 별동대로 삼거나 지역의 유지, 명망가를 통해 농사 개량을 선도하도록 했다. 당시 한국의 대다수 지식인층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계보를 이으면서 1910년대에는 '산업진흥'과 '구사상 · 구관습의 개혁'을 통해 한국인의 실력 양성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곡 상품화와 일본으로의 이출을 목표로 하는 일본식 '개량농법체계'는 일본인 지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 지주, 부농층의 이해관계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말 이래 지주계급은 농업기술의 개량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본질적인 토지개혁 문제보다는 농업의 황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농사 개량과 '농회'의 결성으로 농업의 '근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식산흥업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13]

수원 지역에서 한국인 지주, 자산가, 지식인층이 힘을 합쳐 농사 개량과 생활 개선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대표적 사례가 1909년 설립된 용수농계 → 용수흥농조합 → 용수흥농주식회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이었다. 이 글에서는 용수흥농주식회사로 확대 개편하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활동을 정리하여 1929년에 발간한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14]를 중심으로 그 활동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용수농계가 설립되어 활동한 지역은 현재 용인군 기흥면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수원군 태장면, 동탄면, 수원면 일대였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은 오성선(吳性善)이었다.

---

13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론』 20, 1988, 441쪽.
14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龍水興農株式會社) 20년지(二十年誌)』, 1929.



용수농계 설립을 주도한 오성선(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용수농계 설립에 참여한 이승명(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오성선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출생으로 1907년까지 경성에서 사환 등 말단 관리를 하다가 1908년 가을 일본의 모범농촌을 시찰하게 되었다. 그는 이 시찰에서 '발전된' 일본의 농촌 상황을 한국의 현상과 비교하며 느낀 바가 많아 고향으로 돌아와 낙후된 지방 개발과 산업 개량에 뜻을 가졌다고 한다.[15]

그는 "조선 농촌의 진흥은 농업 개량과 금곡(金穀) 저리융통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하기로 하였다. 당시 그가 돌아온 고향은 용인과 수원 양군 사이에 낀 빈약한 촌락으로 주민 중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재래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노력은 많이 들여도 수입은 적었으며 농자(農資)가 궁핍할 때에 금곡(金穀)을 빌리는 것은 고리(高利)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고리는 대부분 월수(月收), 체계(遞計), 시변(市邊)[16]으로 이자가 저렴하다 해도 연이율 약 5할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미곡은 대개 5할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환기인 가을 수확기가 되면 1년간 지은 수확물 전부를 제공해도 오히려 부족할 뿐이었다. 그리고 채주(債主)의 독촉이 매우 급하고 대단하여 빈농 중에 파산

15 「1, 2전 축적하여 20만원 회사까지 당초에는 농업연구회 조직, 파란 많은 그 경과」, 『동아일보』, 1929년 11월 23일.
16 3종의 이자 모두 1년을 계산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

자가 속출하였다.[17]

이러한 고향의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성선은 1909년 2월 자신의 뜻을 지지하는 이승명, 오혁선, 이재덕, 황식동 등과 합의하여 농회를 창설하였다. 농회의 목적은 "본 지방 농사를 개량하고 농자를 저리로 융통하여 농업을 진흥시킨다."는 것으로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사무실을 두고 명칭은 '용수흥농연구회'라 하였다. 그러나 창립 초기 농회는 이러한 조직과 사업이 이 지방에서 초유의 일로 낯설고 의구심이 많아 회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회장으로 선임된 오성선은 "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미 입회한 회원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며, 자기와 동역원의 소유 토지를 한성은행 수원지점에 저당하고 700원을 차입하여 회원들에게 저리로 농자를 대여해 주었다.

또한 회원의 농사 개량에도 힘써 각 리(里)의 유력자를 권유하여 사무원으로 선정하고, 회원 중 농사 개량에 관해 저수, 파종, 시비, 제초, 모내기, 피 뽑기, 벼 훑기, 발동기 사용, 현미 제조 등을 협의 결정한 후 사무를 분담하여 선전 활동과 지도 실행에 종사하게 하였다. 회장은 각 리를 돌아보며 그 성적을 조사한 후 우량자는 포상하고 불량자에게는 징계와 교육을 하고 해당 지주와도 교섭하여 징책케 함으로써 가을 추수기에는 불량자 대부분의 성적이 향상되어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었다. 1년 안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자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1909년 말에는 250명에 달했고 1910년에는 600여 명에 달했다.[18]

이처럼 용수흥농연구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자 1909년 11월 총회를 열어 '용수농계'로 회명을 변경하고, 계장으로 오성선을 추천하였으며 역원을 증치하였다. 1년여의 짧은 활동으로 용수농계는 용인군과 수원군 일대의 중요한 농업단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용수농계'의 조직 구성과 성격을 다음의 정관을 통해 살펴보면, 용인군과 수원군 일대를 대상으로 농사 개량과 농가경제 완화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계장 외에 부계장, 평의원, 감사역까지 둔 체계적 조직체였다. 계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함께 20전의 가입비를 내야 했다.[19]

그럼 용수농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어떠했을까. 정관에 제시된 업무 내용을 통해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곡 개량사업이다. 수원 지역은 벼농사 중심 지역으로 생산량 증가와 상품성 확보를 통해 농가경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종자 선택, 묘대

17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7쪽.
18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8~9쪽.
19 제14조 새로운 계원이 되려는 자는 신고서에 가입금 20전을 첨부하여 계장에 차출할 것을 요한다.

제1장 총칙[20]

제1조 본계는 농사의 개량 발달을 도모함과 아울러 농가경제의 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계는 용수농계라 칭하고 본계 지역 내에서 농사를 영위하는 자 또는 토지를 가진 자로 조직한다.

단, 지역 외 사람일지라도 본계의 취지를 찬성하는 자는 준계원으로 한다.

제3조 본계의 사무소는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둔다.

제4조 본계의 지역은 용인군 일원, 수원군 일원으로 한다.

제5조 본계 존립기간은 만 30개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신축할 수 있다.

제2장 역원의 자격 권한 및 그 임면

제6조 본계에 다음의 역원을 두고 총회에서 선거한다.

一. 계장 1인

二. 부계장 1인

三. 평의원 3인

四. 감사역 2인

제7조 역원은 명예직으로 그 임기는 계장 · 부계장은 만 3개년, 평의원 · 감사역은 만 2개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해 보수를 줄 수 있다.

제8조 계장은 계 제반의 업무를 총할하고 계를 대표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평의원은 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 감사역은 계의 업무 및 결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본계에 다음의 직원을 두고 계장이 그를 임면한다.

一. 서기 2명

二. 위원 약간명

개량, 병충해 구제, 비료 및 개량농구 사용 등 생산 과정의 개량을 도모하였고, 수확 후에도 건조, 제조 과정에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산된 벼는 유통 과정에서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공동판매를 도모하였다. 미곡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 개

20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10~11쪽.

제4장 업무[21]

제18조 본계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행한다.

一. 농작물 종자의 개량, 선택(撰擇) 및 보급에 관한 사항

二. 묘대 개량에 관한 사항

三. 농작물의 병, 조(鳥), 충해 구제예방 발패 및 제초에 관한 사항

四. 비료의 제조 개량 및 시비 보급에 관한 사항

五. 개량농구의 사용 보급에 관한 사항

六. 곡류 제조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七. 미곡의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八. 고구마, 감자의 재배 보급에 관한 사항

九. 산야의 식부 보호에 관한 사항

十. 가축, 가금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十一. 양잠의 개량 및 상수(桑樹) 재배에 관한 사항

十二. 저곡 및 저금에 관한 사항

十三. 농사자금 및 식량대부에 관한 사항

十四. 농사에 관한 품평회, 강화회, 환등회 개최에 관한 사항

十五. 지주 대 소작인 분의 조정에 관한 사항

十六. 부업의 보급 장려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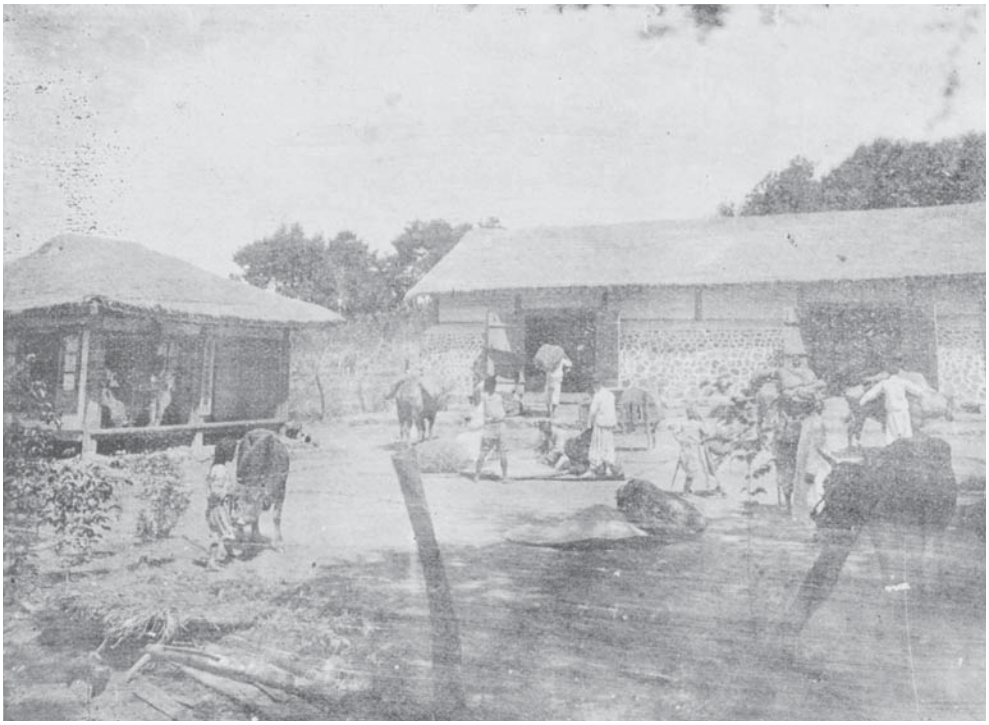
十七. 농가의 풍기 개선에 관한 사항

十八. 전 각 항 이외 관공서의 장려에 관한 사항

입하여 '개량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일제가 한국 농촌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미곡이었지만, 농민들의 생활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농의 다각화와 부업이 필요하였다. 용수농계는 계원들에게 가축, 양잠, 임산물 가공, 기타 부업 등을 장려하여 농가경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지주-소작관계의 분쟁 조정, 생활 개선도 도모하는 등 계원들의 사회적 관계나 생활적인 면까지 관여하였다. 용수농계는 지역민들의

21 용수홍농주식회사, 『용수홍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13~14쪽.



용수농계조합 저곡창고(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자치적 조직이었지만, '관공서의 장려사항'을 대신 지도 실행하는 역할도 맡았다. 용수농계가 '계'라는 전통적 자치조직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총독부 식민농정의 실행단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용수농계의 실질적 운영과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농사자금 및 식량 대부였다. 그 운영방식은 다음의 「농사자금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농사자금은 1주당 5원의 주식 출자방법으로 자본금 5만 원을 확보하여 이것을 농업자금이 필요한 계원들에게 저리로 대부해 주고, 그 운영으로 얻은 순익금은 주식으로 출자한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것이었다. 자금을 대부할 때는 대부기간을 6개월을 1기로 하여 원리 상환토록 하였다.

용수농계의 자본금은 5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목표액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1913년 자본금은 2,500원이었으나 다음 해 5,000원으로 증가했고, 계속 증자가 이루어져 1920년대 자본금은 2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부금도 증가하였고 그 이익에 따른 주주 배당금도 증가하였다.

「농사자금 규정」[22]

제1조 본계 정관 제17조에 의해 계원의 농사자금 공급 및 출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보급해야 할 농사자금은 5만 원으로 계원 및 준계원에서 모집한다.

제3조 출자금은 주식방법에 준하여 기명식으로 하여 1주에 대해 금 5원 일시출금으로 주 총수를 1만 주로 한다.

제4조 출자금 불입을 완료한 때는 그 증서로서 주권을 배부한다.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의 4종으로 한다.

제5조 출자금의 불입을 게을리할 때는 불입 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불입완료 동일까지 100원에 대해 금 10전의 이율로 지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주권을 손상 혹은 망실할 때는 그 사유를 상기하여 증인 2명 이상 연서로 재교부를 계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정한 재교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7조 주권은 계장의 승인을 거쳐 매매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결산기는 매년 1회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손익결산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빼고 잔액을 순익금으로 다음 각 항에 분배한다.

一. 기본적립금 5/100

一. 역원상여금 10/100

一. 준비적립금 5/100

一. 주주배당금

제10조 농사자금의 대부는 6개월을 1기로 원리를 상환한다.

제11조 대부는 부동산을 저당하여 당해 관서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거치는 것 혹은 계원 3인 이상 연대로서 거주지 구장 및 본계 계원의 증인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12조 출자자 총회는 매년 1월로 하여 필요한 사건을 결의하거나 결산 승인사업정적을 보고한다.

총회의 소집 및 의사 등 수속은 본계 정관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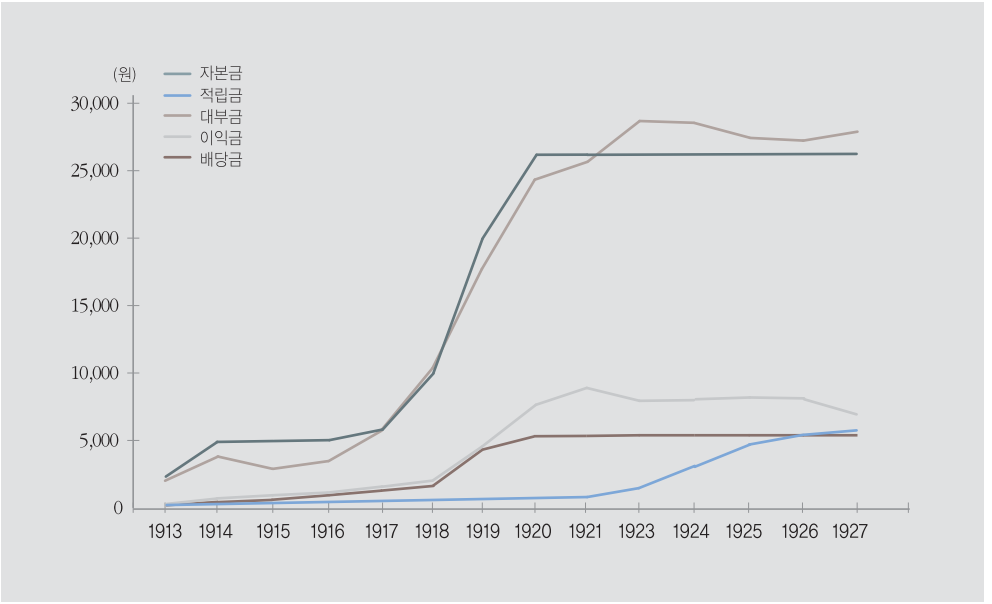
제13조 본 규정은 출자자 총회의 동의를 얻어 개폐한다.

현금 출자와 대부뿐만 아니라 실제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춘궁기에 바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식 대부였다. 이에 용수농계는 백미로 저곡(貯穀)을 마련하여 이것을 계원들에게 대부해 주었다. 이러한 저곡주 방식은 계장 오성선이 제의한 것으로 "저리자금은 이전의 고리에 비교하여 농촌에 이익이 적지 않지만, 봄과 여름에 고가로서 식량을 매입

22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15~17쪽.

〈표 1〉 용수농계의 자본금과 운영 실태[23]

연도	기순	자본금(원)	제적립금(원)	대부금(원/전)	이익금(원/전)	배당금(원/전)
1913	1	2,500	50	2,518/160	500/280	423/000
1914	2	5,000	150	3,527/210	655/275	601/400
1915	3	5,000	150	2,816/385	744/650	644/000
1916	4	5,000	220	3,103/280	893/075	723/000
1917	5	6,350	220	5,944/500	1,583/890	1,270/000
1918	6	10,000	220	10,266/000	2,431/360	1,827/500
1919	7	20,000	500	17,526/500	4,578/405	4,000/000
1920	8	26,000	500	24,382/100	7,007/540	5,200/000
1921	9	26,000	1,000	26,933/500	8,202/535	5,200/000
1923	10	26,000	2,000	28,549/190	7,814/305	5,200/000
1924	11	26,000	3,000	28,398/860	8,105/650	5,200/000
1925	12	26,000	4,600	27,462/700	8,601/735	5,200/000
1926	13	26,000	5,600	27,091/830	8,603/245	5,200/000
1927	14	26,000	5,800	28,032/070	7,114/460	5,200/000



용수농계의 자본금과 운영 실태

23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23~24쪽.

저곡 및 대부방법[24]

一. 농계의 저곡은 백미 1석을 1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9개년에 분납케 한다.

제1기 미 1두를 계에 변납한다.(원액 1두)

제2기 미 7승 5합 및 기납액의 이자 미 2승 5합을 변납한다.(원액 2두)

제3기 미 5승 및 기납액의 이자 미 5승을 변납한다.(원액 3두)

제4기 미 2승 5합 및 기납액의 이자 미 7승 5합을 변납한다.(원액 4두)

제5기 미 기납액의 이자 미 1두를 변납한다.(원액 5두)

제6기 미 기납액의 이자 미 1두 2승 5합을 변납한다.(원액 6두 2승 5합)

제7기 미 기납액의 이자 미 1두 2승 6합 2작을 변납한다.(원액 7두 8승 1합 2작)

제8기 미 기납액의 이자 미 1두 9승 5합 3작을 변납한다.(원액 9두 7승 6합 2작)

제9기 미 기납액의 이자 미 2두 4승 4합 1작 2모를 변납한다.(원액 1석, 이익배당 2두 2승 6작 7모)

二. 저곡 변납기일에 저미(貯米) 변납케 할 때는 그 당납 미액(米額)에 대해 매년 3승의 이자를 징수한다.

三. 저미를 2회 미납할 때는 납부를 독촉하여 10일 이내에 변납하지 못할 때는 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四. 저곡은 통장을 교부하여 주미(株米) 필납 후 주권을 급부한다.

하고 가을 수확 후 저가로 곡류를 매도하여 이것으로 빚을 갚는 것은 농가의 손해가 적지 않다. 여력이 있는 계원이 백미를 갹출하여 주식의 형식으로 1석을 1주로 정해 이율을 가볍게 하여 농사철에 빌려 주고 가을에 그것을 변제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여 계원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용수농계 출범(1910년)과 함께 바로 저곡으로 백미 45석을 모집하였다.[25] 이렇게 모인 저곡의 대부는 원미 1두당 이자 3승(연 3할)으로 연말에 원리 상환토록 하였다.

연 3할의 이율이었지만 저곡 대부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가을에 원리곡을 회수하여 3할의 이자 중 2할 5분은 주주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5분은 계비로 충당하였으며, 원미는 다시 모아 두었다가 다음 해 봄 농량으로 대부해 주었다. 이러한 저곡 대부가 양호한 성적을 보이자 1912년에는 저곡이 백미 130석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저곡 출자자는 모두 중농 이상으로 "백미 이자는 전부 요호(饒戶)에게 돌아가고 소농인 계원은 단지 이자를 내

24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17~18쪽.
25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20쪽.

는 데 불과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26]

이에 백미 1석을 1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출자 방식은 9개년 분납으로 하였다. 그 방법은 첫해에 1두를 낸 후 4년차까지 백미 2두 5승(이자 포함 4두)을 내면 이후에는 이미 낸 백미에 대해 이자가 출자곡으로 전환되어 9년차가 되면 결국 1석(1주)을 출자한 것으로 완결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백미 130석을 시작으로 이후 9개년 계획을 세워 계원 1인당 1석을 출자케 하여 1920년에는 520석에 달했고 이에 80석을 더 증자하여 600석의 저곡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흉년과 농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계원들의 탈퇴와 주주의 주권 매도가 이어져 1927년 1월에는 269석만 남았고 그 대부분은 단체와 지주, 부농의 소유였다. 1927년 풍년이 들자 소농가 계원들에게 다시 저곡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5개년 계획으로 연말까지 추가 모집한 구수(석수)는 973석으로 이미 있는 269석을 합해 1,242석에 달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 경제 상황은 '전후공황'을 시작으로 계속 불황이 이어졌고, 그에 따라 농가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용수농계 역시 운영이 원활할 수는 없었고,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농계를 운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용수농계의 운영과 활동은 이어졌고, 1920년대 후반 다시 회복하는 추세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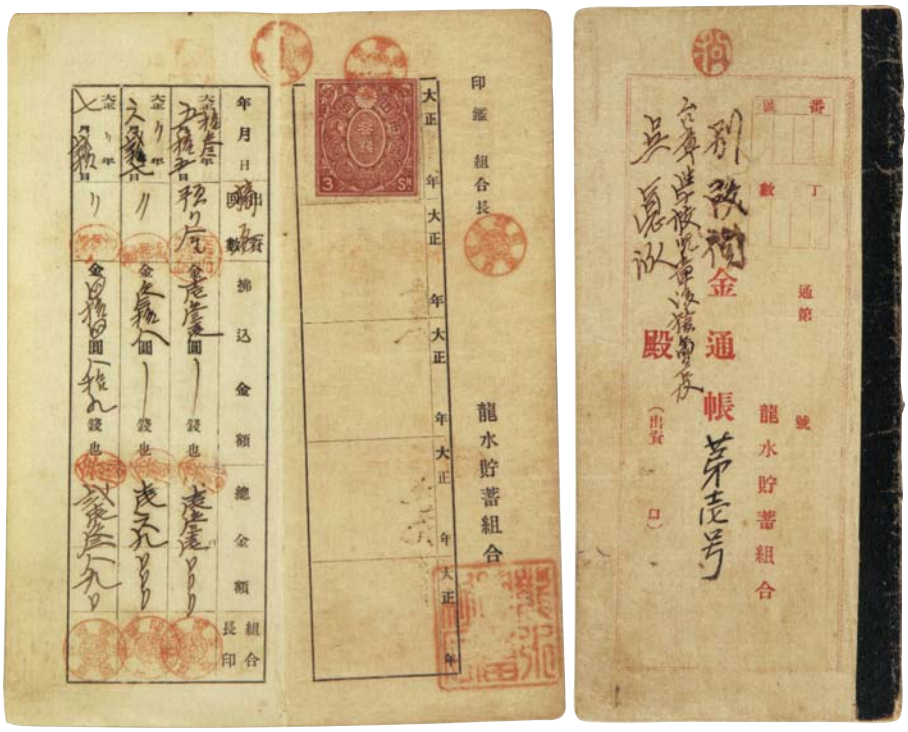
2) 용수저축조합

개항 이후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상업적 유통, 조세 및 소작료 납부에도 화폐의 사용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화폐가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이처럼 실제 농민들의 생활에서 화폐(현금) 지출의 필요성은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1정보 이하의 토지를 경영하는 소경영 상태를 면하지 못하여 자가분의 식량을 제외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생산물은 극히 적었고 그에 따라 현금 수입도 매우 한정되었다. 이처럼 농가경제에서 현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리대의 빚을 얻는 악순환이 발생해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용수농계를 설립하여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던 오성선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은 용수농계와 함께 농민들의 현금 수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저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했다.

---

26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21쪽.



용수저축조합 통장(수원박물관 소장) 불입예정일, 불입금액, 총금액 등 대출금 분할 상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1920년 '전후공황' 에 따른 금융 경색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에 1921년 용수농계 운영자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저축하는 것은 우리 인민은 물론 국가로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善)이라 칭해지는 것도 오히려 규모와 기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뜻은 있어도 실행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다. 나의 생활이 금융 경색의 영향을 받아 비할 바 없는 곤란에 당했을 때 평소의 저축 여하에서 안전한 생활 여부를 알 수 있다."[27]는 설립 취지를 밝히고 '용수저축조합' 을 설립하였다.

용수저축조합의 운영은 다음의 「용수저축조합 규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용수저축조합은 용수농계와 같이 용인군, 수원군 일원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조합원 출자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역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농업, 공업자금을 대부해 주었다. 이 조합의 총자본금은 10만 원을 목표로 50원을 1구로 하여 총 2,000구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출자

27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24쪽.

「용수저축조합 규약」[28]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합은 근검저축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방경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조합은 용수저축조합이라 칭하고, 본 조합지역 내에 거주한 자로 조직한다.

제3조 본 조합의 사무소는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의해 추요지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본 조합의 지역은 용인군 일원, 수원군 일원으로 한다.

제5조 본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경영한다.

一. 근검저축의 방법으로 조합원이 출자할 것

一. 농업, 공업 자금 대부할 것

제6조 본 조합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부터 만 5개년으로 한다.

단,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신축 또는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본 조합의 공고는 본 조합의 서면으로 공고한다.

제2장 출자

제8조 본 조합 자본금 총액은 금 10만 원으로, 이것을 2천 구로 나누어 1구 금 50원으로 한다.

제9조 자금 불입방법은 1구에 대해 설립일부터 매월 1회 금 1원씩 24개월을 계속 불입하고(불입액 24원) 매년 이익배당금은 출자금으로 진체(振替)하여 50원에 달해야 한다.

단, 일시금으로 1개년분, 2개년분을 선불한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선금의 이자를 즉시 지불할 것(1개년분에는 금 40전, 2개년분에는 금 2원)

제10조 조합원이 매월 불입기일에 자금을 불입하지 않을 때는 그 불입해야 할 금액에 대해 금 1원에 대해 1일 금 1전의 비례로서 연체이자를 징수할 것

제11조 매월 불입을 끝낸 자금에 대해 5회 이상 체납할 때는 평의원회를 거쳐 이를 제명하고 불입제자금(拂込濟資金)에 대해서는 이를 반부(返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자라고 인정될 때는 불입을 완료한 자금의 원액(元額)만 반부하는 것으로 하여 출자금의 불입 최종연도를 경과한 후 지불할 것

제12조 조합원에 통장을 교부하여 매월 불입한 금액을 기입한 위에 조합장이 날인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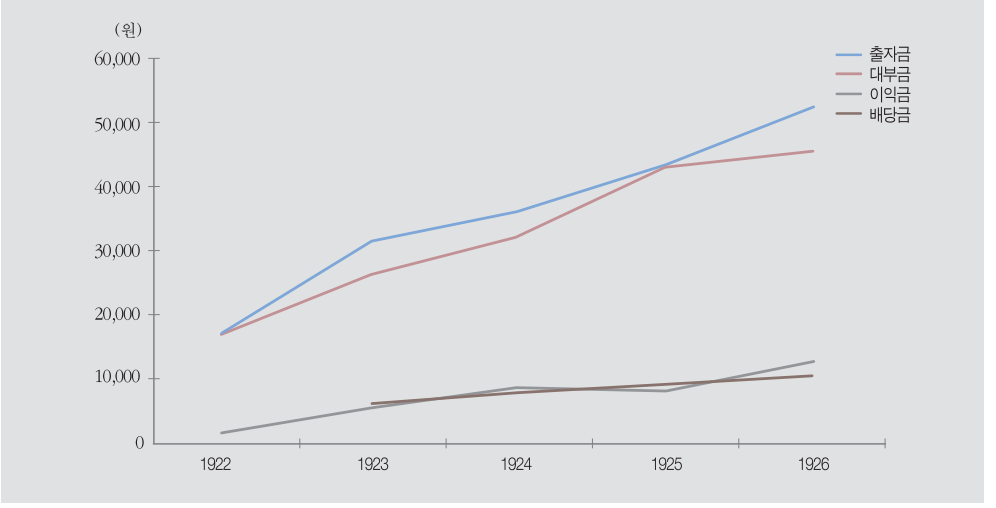
제13조 출자증권은 불입한 자금이 50원에 달할 때는 이를 발행하는 것으로 모두 기명식으로 1주권, 5주권, 10주권 3종으로 한다. 단 통장과 교환한다.

28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26~27쪽.

금은 여유가 있는 경우 일시에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 조합원은 소농으로 그러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월 납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불입방법은 1구(50원)에 대해 매월 1회 1원씩 24개월을 계속 불입하고(불입액 24원) 매년 이익배당금은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50원을 채우도록 했다. 1년분, 2년분을 선납할 경우 선금 이자를 지급하고, 반대로 불입기일에 자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징수하였다. 많은 농민들이 지속적인 현금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1원씩의 자금을 불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임이나 부업 등의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을 매월 푼돈으로 저축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저리의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경제의 파탄을 억제하고자 했다.

〈표 2〉 용수저축조합의 출자금 현황과 운영 실적[29]

연도	기순	출자금(원/전)	대부금(원/전)	이익금(원/전)	배당금(원/전)
1922	제1기	17,938/500	17,529/000	1,375/510	
1923	제2기	30,505/500	25,607/130	5,949/965	6,024/000
1924	제3기	36,111/200	31,413/995	8,971/150	7,223/040
1925	제4기	43,338/240	43,653/275	7,918/240	8,665/140
1926	제5기	52,003/380	45,713/425	12,640/100	10,696/620



용수저축조합의 출자금 현황과 운영 실적

29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32쪽.

1921년 설립된 용수저축조합의 운영 실적을 보면 1922년부터 19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운영되었는데, 자본금 10만 원을 목표로 했으나 1926년 최종 출자금은 그 절반인 5만 2,000원에 머물렀다. 매년 출자금 대비 대부금을 보면 거의 100% 대부가 되었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자 수익에 의한 이익금도 매년 증가하였다. 1922년을 제외하면 출자금 대비 이익금 비율이 20~2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출자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도 그에 준하였다.

3.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1) 용수흥농조합

1909년 일제의 한국에 대한 강제 합방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개량을 통해 한국 농촌의 낙후된 실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 지역 유지 오성선은 용인군, 수원군 일원을 대상으로 용수흥농연구회를 조직하였고, 곧 용수농계로 전환하여 지역의 농업 발달과 농민 생활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21년에는 농민들의 근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농촌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농민들이 고리대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수저축조합도 설립하였다.

한편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공황'의 여파로 식민지 조선을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권 전체적으로 물가 앙등과 금융경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저미가, 저임금 정책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식량공급기지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곡의 상품화와 일본으로의 이출이라는 수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조선 농촌은 소수의 지주층을 제외하고는 중농 이하 대부분의 농민들의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 수원 지역 용수농계의 활동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20년 자본금 2만 6,000원과 백미 저곡 600석을 최고로 더 이상 증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백미 저곡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1920년대 전반기 농촌경제의 파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1927년부터 시작되었다.

1927년 3월 5일 용수농계와 용수저축조합을 해산한 후, 합병하여 용수흥농조합을 설립하였다. 용수흥농조합은 용수농계 자본금 2만 6,000원과 저축조합의 자본금 7만 4,000원을 인수하여 총자본금 10만 원으로 농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지방경제의 완화를 목

「용수흥농조합 정관」[30]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합은 농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지방경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조합의 명칭은 용수흥농조합이라 한다.

제3조 본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0만 원으로 한다.

제4조 본 조합의 사무소는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에 둔다.

단, 사업의 상황에 의해 출자주총회의 의결로 요지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본 조합의 존립기한은 설립일부터 만 20개년으로 한다.

단, 출자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신축할 수 있다.

제6조 본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장 출자금

제7조 본 조합의 출자는 2천 구로 나누어 1구에 금 50원으로 한다.

제8조 본 조합 출자증권은 기명식으로 하여 1구권, 5구권, 10구권의 3종으로 한다.

제9조 출자증권은 양도 혹은 매매할 때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증권 이면에 당사자 쌍방기명 날인하여 명의서환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한다.

제10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출자증권을 취득하게 될 때는 조합장의 승인을 얻은 후 증권 이면의 상당란에 기명조인하고 호적등본 및 본 조합이 인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의서환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한다.

제4장 역원 및 직원

제26조 본 조합은 다음의 역원 및 직원을 둔다.

一. 조합장 1명

二. 부조합장 1명

三. 평의원 8명

四. 감사역 2명

五. 서기 약간명

제27조 조합장은 20구 이상, 부조합장 · 감사역은 10구 이상, 평의원은 5구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 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거한다.

단, 득표 동수일 때는 연장자로서, 동년일 때는 추첨으로 이를 정한다.

제28조 역원은 각 그 피선에 해당한 출자증권을 감사원에 공탁할 것을 요한다.

30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33~39쪽.

제29조 역원의 임기는 조합장 · 부조합장은 3개년, 감사 · 평의원은 2개년으로 재선할 수 있다.

제5장 영업

제42조 본 조합의 영업은 다음과 같다.

一. 농업개량 부업진흥에 대한 자금을 대부한다.

제6장 계산

제43조 본 조합의 결의는 매년 12월 말일에 행한다.

제44조 전조 계산은 매년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고 그 잔금을 순익금으로 계산하여 다음 비례에 의해 총회의 의결로 이를 분배한다.

一. 적립금 10/100 이상

一. 역원 이하 상여금 10/100 이상

一. 주주배당금

적으로 하였다. 용수농계와 저축조합의 업무는 겹치는 것이 많았고, 두 조직의 회원들도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경비 등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다. 용수흥농조합의 운영 방식은 「용수흥농조합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수흥농조합은 1928년 11월 용수흥농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2) 용수흥농주식회사

1928년 5월 10일 용인군과 수원군 유지들의 열성으로 용수흥농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용수흥농주식회사는 오성선 주도로 1909년 용수농계로 출발하여 1921년 용수저축조합을 병설하였고, 1927년에는 용수흥농조합으로 합병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주식회사 체제로 발전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경기 불황과 식민농정의 폐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1928년 자본금 20만 원(주식 4,000주, 1주당 5원)으로 용수흥농주식회사를 창립한 것이다. 5월 10일 창립총회에서는 오전 12시부터 오성선의 개회를 시작으로 과거 상황 보고와 결산 승인 건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이어 회사 창립 상황 보고와 정관 승인, 역원 선거 건 등이 통과된 후 역원 선거까지 마치고 오후 6시 폐회하였다.[31] 용수흥

「용수흥농주식회사 정관」[32]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사는 용수흥농주식회사로 칭한다.
제2조 본 회사는 농업자금을 융통하여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사의 자본금은 금 20만 원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에 둔다.
단, 필요에 응해 추요의 지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둔다.
제5조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30개년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신축할 수 있다.
제6조 본 회사의 공고는 본점의 소할 등기소의 공고한 신문지에 게재한다.
제7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기타 관례에 의한다.

제2장 주식 및 주주

제9조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1주 금 50원 총수 4,000주로 한다.
단,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금 제1회 불입은 1주에 대해 금 25원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그 금액 및 기일을 정한다.
제11조 주금의 불입을 게을리하는 주주는 연체일수에 따라 금 100원에 대해 1일 금 5전의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주권을 양도할 때는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권의 이면에 당사자 쌍방기명조인하고 본 회사의 소정의 서식에 의해 명의서환서를 청구해야 한다.
제13조 상속 유증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주권을 첨부하여 명의서환을 청구해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20조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시 및 임시 2종으로 한다.
정시총회는 매년 1월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취체역 또는 감사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주수 1/10 이상의 주주로부터 회의 목적 및 이유를 명시한 청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은 2주 전에 그 회의 목적 및 사항을 게시하고 그것을 각 주주에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주주의 결의권은 1주에 대해 1개로 한다. 단 10주 이상은 5주마다 1개로 한다.

제4장

제29조 본 회사의 역원은 취체역 5명, 감사역 2명으로 한다.
제30조 취체역은 40주 이상, 감사역은 20주 이상의 주주 중에서 정시총회에서 선거한다.
단, 득표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뽑고, 동년일 때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31조 역원의 임기는 취체역 3개년, 감사역 2개년으로 한다.
단, 만기 후 그를 재선할 수 있다.

31 「1, 2전 1, 2승 축적 18년간 20만원 회사 실현」, 『동아일보』, 1928년 5월 13일.
32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40~43쪽.

제32조 취체역의 호선으로 사장 및 상무취체역 각 1명을 정한다.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리한다. 상무취체역은 사장을 보좌하여 오로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사장 사고 시에는 상무취체역이 그를 대신한다.
단, 상무취체역은 사장이 그것을 겸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5장 계산
제40조 본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년 12월 말을 계산기로 한다.
제41조 본 회사의 손익계산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순익금으로 한다. 순익금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해 총회 의결로 처분한다.
一. 적립금 5/100 이상
一. 역원상여금
一. 주주배당금

농주식회사의 운영 상황은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용수흥농주식회사의 발기인과 1928년 5월 10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역원 명단은 〈표 3〉과 같다. 발기인은 수원과 용인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용수농계 시절부터 함께해 오거나 지역에서 상당한 자산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표 3〉 용수흥농주식회사 발기인과 창립 당시 역원 명단[33]

발기인 성명	주소	창립시 역원
오성선(吳性善)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304번지	취체역(이사) 사장
한상봉(韓相鳳)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 73번지	감사역
홍민섭(洪敏燮)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215번지	
유하영(柳夏永)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 412번지	
양성관(梁聖寬)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115번지	취체역(이사)
이환영(李桓永)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96번지	취체역(이사)
오덕영(吳悳泳)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134번지	취체역(이사)
오득영(吳得泳)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168번지	
이행직(李行稙)	용인군 기흥면 하갈리 31번지	
이병욱(李丙旭)	용인군 이동면 천리 748번지	감사역
이승명(李承明)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318번지	
오항선(吳恒善)	용인군 원삼면 죽릉리 379번지	
이병순(李丙順)	용인군 이동면 천리 577번지	
홍사찬(洪思贊)	수원군 동탄면 석우리 136번지	
다나카(田中義峰)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96번지	

33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47 · 50쪽.



용수흥농주식회사 역원들(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4. 용수농계와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활동

1928년 용수흥농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했지만, 이것은 1909년 용수농계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다. 1927년 용수흥농조합으로 합병하면서 자본금이 1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1928년 용수흥농주식회사로 재창립하면서 자본금은 2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이렇게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성선을 비롯한 역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수농계와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리부채 청산과 농사개량을 통한 농가경제 향상이었다. 먼저 오성선은 이 지역 농가경제의 암적인 존재였던 고리부채를 청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경성에 있는 은행과 회사에 이 지역 빈농의 상황을 설명하며 저리(低利) 대차(貸借)를 요청했지만 먼 지방에 대부하는 것을 곤란하다 하여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수원군에 신설된 금융조합을 찾아가 빈민의 구채 청산 자금을 간곡히 청구하자 대금을 허가해 주었다. 또한 빈농 채무인을 소집하여 구채를 청산할 방법을 채주에게 간곡히 부탁하자 채주 중에도 오성선의 뜻에 감격하



용수흥농주식회사 전경(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여 다년의 고리(高利)를 탕감하여 원금만을 받는 자가 있었고, 다른 고리대금업자도 이자를 감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빈농들은 구채를 하나하나 모두 갚아 나갈 수 있었다. 금융조합의 대금은 5개년으로 나누어 갚는 것으로 하였는데, 1개년을 2기로 정하고 빈농에 매 10원에 50전씩 잉여이자로 저금하는 것으로 1년간 수입을 정산하여 쌀 1되, 돈 1전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채무 상환기에는 반드시 모두 납부케 하였다. 이렇게 4년을 거친 후에 나머지 1년의 채무 상환액은 그동안 저금한 것으로 갚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채무에서 탈출한 사람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용수농계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34]

다음으로 농사 개량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발품을 팔았다. 농민들은 그간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 왔던 관행과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오성선을 비롯한 역원들은 새로운 개량농법이 농가경제에 유익하다는 믿음으로 이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종자선택, 묘대, 시비, 제초 등에 대해 한 번은 물론이고 두 번 세 번

34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2쪽.

에도 듣지 않으면 열 번, 스무 번 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할 때까지 깨우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오성선과 역원들이 직접 순회지도하거나 강연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갔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하여 포상하거나 책임을 물어 일반인들이 농사 개량의 전모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35]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역 농민들은 상당 부분 농사 개량에 동참했고, 그로 인한 농가경제 향상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핵심 사업 외에 농민들이 일상생활의 필요에 따라 상부상조 전통을 따라 운영해 온 '계'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도 실시하였다. 먼저 1924년 12월 '양위조합(養慰組合)' 을 설립하였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남녀를 결혼시키며 사자(死者)를 예로서 보내고 산자의 업을 정하는 것은 노년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지만, 마음뿐 보통 때 준비하지 못해 막상 일을 당하면 유감이 없을 수 없다. 구시대에 환갑계 · 혼계 · 상계 · 학계 · 취리계 등의 명목으로 곳곳에서 있었지만 환갑 · 혼상(婚喪) 등의 계는 임시로 출금하거나 음식 낭비와 보증의 후폐가 있어 손해가 있고, 학계 · 취리계는 이자가 높고 방법이 부족하여 종종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있다. 그것에 비추어 구례(舊例)의 장점을 참고하고 신식 방법을 모방하여 양위조합을 발기한 것으로 낭비의 해와 보증의 폐로 실패 없이 어른과 어린이를 봉양하고 기르며, 남녀 결혼, 장례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36]이라고 하였다.

양위조합은 정조합원의 출자금을 지불보증금 5만 원으로 하였는데, 불입금은 1만 2,500원이었다. 출자한 정조합원은 무한책임으로 하였고, 준조합원은 출자한 후에 조합규약에 의해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하였다. 1928년 현재 준조합원은 300명으로 출자금액은 2만 500원에 달하며, 필요 시에 돌려받은 금액은 5,300원에 이르렀다.[37]

이와 함께 학계(學契)를 설립하였다. 오성선은 이 지역에 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아동교육기관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1909년 동지들을 규합하여 24명이 1원씩을 갹출하고 합계 24원을 매년 식리하여 1916년 2월 교사 1동을 건축한 후 '장흥의숙(章興義塾)' 이라 하였다. 부근 각 리의 유지에게 권유하여 100여 명을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는 1원 이상에서 10원까지로 하였고, 특히 오성선은 100원을 출자했고 오혁선은 30원을 출자하는 등 출자금은 총 600원에 달하였다. 이에 교사를 고빙하고 아동을 모집하여 70여 명에 달했고, 교육 성적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1922년 부근에 공립보통학교가 건설되자

35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2쪽.
36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3쪽.
37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4쪽.

의숙을 해산하고 기존 출자금은 오성선에 위임, 식리(殖利)하여 1927년에 3,500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 내에서 1,300원은 경성에 학생기숙사를 두고 계원 중 유학하는 자제가 기숙할 수 있도록 했고, 800원은 기업조합(機業組合)에 출자하였고, 나머지 잔금으로는 유치원을 경영하였다.[38]

이상과 같은 상부상조형의 계(조합)뿐만 아니라 농가경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였다. 그것은 양잠조합, 연입(筵叺)조합, 공동구우계(共同購牛契), 기업(機業)조합이었다. 각 조합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잠조합

농가부업 중 많이 장려되는 것이 양잠이었는데, 잠종과 사육방법이 낙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24년 봄 치잠 공동사육시설을 용수농계 사무소 내에 설립하고, 부근의 무직 청년을 모집하여 잠종을 권업모범장에서 무상 배부받거나 공동구입하여 소립(掃立) 후 돌아가며 사육하도록 했다. 창립 초기에는 사육자가 일을 게을리하거나 적상(摘桑 : 뽕잎 따기)의 때를 놓쳐 커다란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성과를 보이며 양잠이 확장되자 잠실 1동을 건축하고 양잠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은 교사를 초빙하고 공동사육도 하며 조합원 집에 순회지도하고 고치(繭)는 공동 판매하여 소득의 100분의 1씩 우편저금을 하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보이자 집집마다 뽕나무를 심고 마을마다 양잠이 행해져 성적이 양호하고 저금이 수백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원군에 관제 양잠조합이 설립되면서 이를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해 폐지되었다.[39]

② 연입조합(筵叺組合)

농가경제를 위해서는 농작물 경작뿐만 아니라 부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그중 곡물 경작 이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짚을 가공하는 것은 농민들의 오래된 부업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자가용으로 필요한 가마니, 새끼줄, 짚신 등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상품화하여 농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장려하였다. 용수농계에서도 연입(돗자리, 가마니) 제조를 장려하였는데, 1916년 2월 경기도청에 신청하여 농민들에게 1주간 전습을 받게 하고 기대(機臺) 50좌(坐)를 도청에서 무상 배부받아 세를

38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4쪽.
39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5쪽.



연입조합의 연입 전습회(용수홍농주식회사, 『용수홍농주식회사연혁』, 1935)

받고 부근 각 리의 100명을 선발, 전습하여 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원의 생산품을 공동 판매하고 전습할 때 만든 제품 대금은 조합자금으로 적립하여 매년 식리하고 조합원에게 짚 값 및 기구대(機具代)로 융통해 주었다. 이를 통해 조합은 현금 자본금이 수백 원에 달하였고, 조합에서 생산한 가마니[叺]는 부업공진회에서 1등상을 수령한 실례도 있다.[40]

③ 공동구우계(共同購牛契)

농업에서 소는 중요한 생산도구이다. 그러나 빈농들은 자본 부족으로 소를 키우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이에 용수농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1913년 9월부터 축우의 개량 증식을 계획하여 공동구우계를 조직하였다. 계원 600명에 대해 집집마다 소 1두씩을 사양케 할 예정으로 매인 매월 20전씩 갹출하여 매월 송아지를 구입하여 계원에 예탁 사양케 하였다. 1914년에는 경기도에서 종우 1두를 빌려 계원 축우의 번식을 도모하여 1916년 3월에는 경우(耕牛)와 송아지가 134두에 이르렀다. 이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분배하고 해산하였다. 이러한 3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1916년 제2회 구우계를 다시 조직했는

40 용수홍농주식회사, 『용수홍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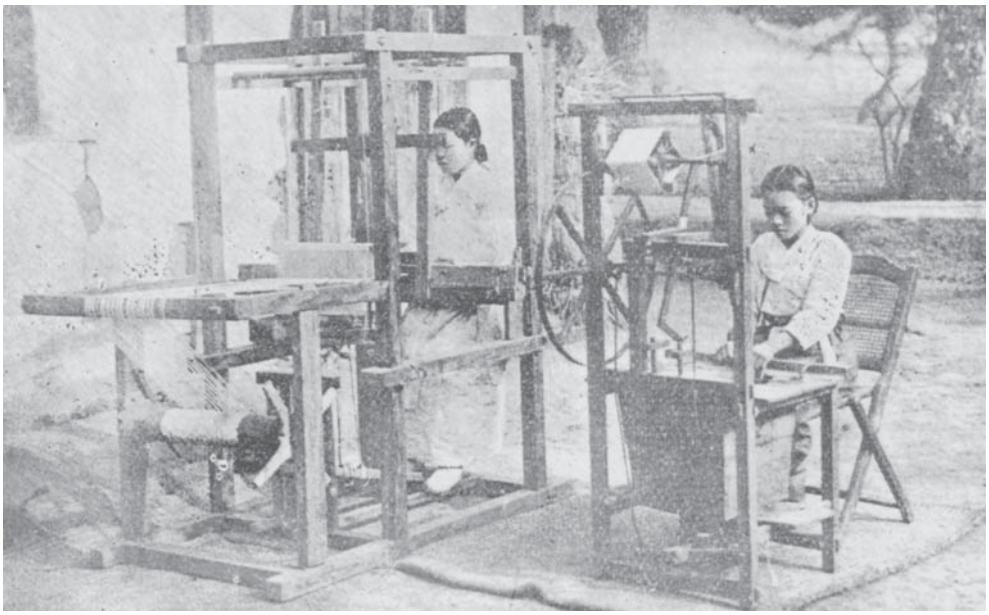
공동구우계 축우(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데, 가입자가 많아 5개년간 성적이 우량하여 소 100두에 이르러 1920년 겨울에 각 계원에 분배하고 해산하였다. 1차와 2차 총 7년간에 걸친 구우계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무자의 심려와 노력은 소털보다도 몇 배 많았다고 한다.[41]

④ 용수기업조합(機業組合)

전통적으로 농가의 여성들은 방직을 자신의 한 가지 업으로 삼아 왔다. 자가용 면방직이 주류이고 일부 상품화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항 이후 일본산 면포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성선은 농촌의 여성 노동력을 이용한 방직 또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925년 7월 자택에 직조교사 1명을 고빙하고 기구를 제조하여 부근 각 리의 무직 부녀를 모집하여 견습케 하였다. 이러한 일은 당시 농촌에서 거의 없던 일로 생소하고 의심스러워하여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변 지방 유지를 권유하여 찬동을 얻어 용수기업조합을 조직하여 출자를

41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6쪽.



기업조합 직조(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1935)

모집하였고, 도와 군에서도 보조금과 기구를 빌려 주어 다년간 전습을 시행하며 크게 장려하였다.[42]

이상은 용수농계가 용수흥농주식회사로 발전, 전환하기 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들이다. 1909년부터 20여 년간 수원, 용인 지역을 대상으로 오성선이 중심이 되어 농촌의 발전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해 꾸준히 전개해 온 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1928년 용수흥농주식회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용수농계 시절부터 각종 조직을 담당하면서 오성선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역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표 4〉와 같다.

용수흥농주식회사는 지역민의 많은 관심 속에 출범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사자금 대부를 주요 업무로 그 성과를 이루어 나갔다. 1929년 이후 세계대공황과 그에 따른 농업공황으로 용수흥농주식회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1932년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이래 재계(財界) 변동과 곡가 저락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매년 부채만 증가됨으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침체되어 오던 중, 금년(1932) 연말에

42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57쪽.

〈표 4〉 용수흥농주식회사 창립 당시 역원과 직원 명단(10년 이상 근속자)[43]

성명	주소	약력
이승명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농업연구회 역원, 용수농계 부계장, 용수공동구우계 부계장, 용수저축조합 평의원, 장흥학계 역원, 용수흥농조합 부조합장, 용수농계 저곡부 감사역
오혁선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농업연구회 역원, 용수농계 감독, 용수공동구우계 역원, 용수저축조합 평의원, 장흥학계 역원, 용수농계 평의원
김지봉	용인군 기흥면 하갈리	용수농계 설립 초부터 1926년 8월까지 주임서기로 재직
이재덕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농업연구회 역원, 용수농계 사무원 평의원, 공동구우계 역원
홍민섭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용수농계 감사역, 용수저축조합 평의원, 용수흥농조합 평의원, 용수흥농주식회사 감사역
한상리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용수농계 평의원 사무원, 저곡부 영통리 사무원
박민수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농업연구회 역원, 용수농계 사무원 평의원, 공동구우계 역원
황노철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농업연구회 역원, 용수농계 사무원, 공동구우계 역원, 저곡부 내 서천리 사무원
이관우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농업연구회 역원, 용수농계 사무원, 공동구우계 역원, 저곡부 내 서천리 사무원

이르러 곡가가 다소 향상하였으나 지난해의 채무로 추수 초에 모두 팔아 버려 별로 곡가 향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환 거래차로 인해 곡물 이외의 일반 물가는 폭등하여 더욱 생활에 대타격을 받게 된 까닭에 전도가 묘연한 중 본사의 영업 방침은 예년과 같이 일반대출을 경계하고 수납에 주력하였으나 유입물의 수입관계와 전술한 농촌경제의 영향을 받아 양호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다대한 손실은 없고 전도가 예년보다 안심될 듯하다."[44]고 하였다.

1932년의 영업실적은 공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곡가가 상승하며 호전의 여지가 있었으나, 지난해의 채무로 그 영향을 얻지 못해 여전히 소극적인 방어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1932년의 주주배당금은 8%로 이후 시기보다 높았다.

1934년에는 "다행히 천후(天候)가 순조로웠고, 의외로 곡가가 폭등하여 일반경제가 완화되어 인심이 안정됨으로 이때를 이용하여 수납에 배전 주력하였고 유입물에 대해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적당히 매각하여 이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 대출 이율이 저하하여 다소 영향이 있으나 예년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45]고 하였다. 흉년 없이 곡가도 상승하여 경영조건이 호전되었으나 정책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회사 수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곡가 상승과 금리 저하라는 농가경제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43 용수흥농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47 · 58쪽.
44 『용수흥농주식회사 영업보고서 〈소화 7년도(1932) 제5기〉』.
45 『용수흥농주식회사 영업보고서 〈소화 9년도(1934) 제7기〉』.



「용수흥농회 사장 오공성선 기념비」와 오성선(수원박물관 소장)

있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는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걷히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특수가 발생하며 농촌경제도 일시 회복 국면을 맞이했던 것이다.

일제의 1937년 중일전쟁 도발로 전시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1939년 대한해는 이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1년 용수흥농주식회사도 이러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배당률이 6%로 떨어졌고 순익금도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금년에는 다행히 풍작으로 농촌경제는 약간 완화되었으나 전년의 흉작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 농촌 재정은 극히 활기를 띠지 못하여 일반 대금 회수 성적이 점점 불량할뿐더러 세율이 증가되고 일반 물가가 크게 올라 경비도 다소 증가되어 업적이 떨어졌다."[46]고 하였다. 대한해로 농가경제의 파탄이 점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생산한 미곡에 대해서는 공출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반면 세율 증가, 일반 물가 상승은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 와중에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영업 실적도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1909년 용수농계로 출발하여 1928년 설립된 용수흥농주식회사는 이후 일반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계속 회사를 운영하였고 전시체제기에도 회사는 존속되었다.[47] 오성선이

46 『용수흥농주식회사 영업보고서〈소화 16년도(1941) 제14기〉』.

47 용수흥농주식회사의 폐쇄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업보고서는 1941년도까지 확인할 수 있고, 中村資郎,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도 1942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다.

〈표 5〉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영업 실적[48]

내용	1932(5기)	1934(7기)	1941(14기)
총자본금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불입자본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총익금	16,380원 43전	15,358원 36전	14,177원 77전
총손금	7,082원 83전	5,348원 23전	6,795원 31전
순익금	8,633원 35전	9,897원 24전	7,242원 50전
기본적립금	500원	500원	400원
주주배당금	8,000원(연 8%)	7,500원(연 7.5%)	6,000원(연 6%)

라는 인물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 유지들의 협조, 식민 당국과의 적절한 협력 등이 어우러지면서 용수흥농주식회사는 지역의 대표적 경제기구로 수원과 용인 지역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였다.

48 『용수흥농주식회사 영업보고서〈소화 7년도(1932) 제5기〉』; 『용수흥농주식회사 영업보고서〈소화 9년도(1934) 제7기〉』; 『용수흥농주식회사 영업보고서〈소화 16년도(1941) 제14기〉』.



하지연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1. 일본인 지주의 진출 배경
2. 일본인 지주의 토지 소유 현황
3.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
4. 식민지 소작제 경영의 실태

제3장

일제하 재(在)수원 일본인 회사지주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지주들은 특히 대자본가들을 필두로 하여 한국에서 이미 식민지 권력체로 군림하던 주한일본공사관과 통감부 권력을 앞세워 대규모 토지 점탈과 반봉건적 식민지 농업 경영에 착수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정상급 재벌 오쿠라(大倉) 재벌의 오쿠라농장(大倉農場 : 1903년),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자본의 조선흥업주식회사(朝鮮興業株式會社 : 이하 '조선흥업'으로 약칭, 1904년), 미쓰비시(三菱) 재벌의 히가시야마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 이하 '동산농장', 1907년), 그리고 구마모토(熊本)농장, 후지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 : 이하 '불이흥업'), 조선실업주식회사(朝鮮實業株式會社) 등을 들 수 있다.[1]

지금까지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2]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학계에서도 사회·경제학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3]

1 한말 일본 대자본의 지주화 과정과 대표적 일본인 대지주의 사례에 관해서는 桐島傷一, 「대한제국기 일본 대자본의 지주화 과정 연구」, 『이화사학연구』 33, 이화사학연구소, 2006 참조.

2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未來社, 1973;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存在形態 － 石川縣農業株式會社」, 『朝鮮歷史論集 － 旗田巍先生古稀記念』 下卷,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 龍溪書舍, 1979.



국무합명회사 조선본부(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일본 후쿠오카현에 본사를 둔 국무합명회사는 1906년 수원군 남부면에 '국무농장'을 설립하고 소작제 농업 경영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일본인 대지주들의 밀집 지역인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 다룰 수원 지역의 경우도 일본인 대지주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지역에 해당되고,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충실한 실험 장소의 역할을 담당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역의 일본인 지주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4]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회사지주의 수원 지역 농업 침탈과 식민지 지주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메이지(明治)시기 일본의 최정상급 재벌 미쓰비시(三菱)의 동산농장의 사례를 택하였다.

수원 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과 가까운 행정 도시였고, 또한 철도 이용이 편리하였으며, 1906년 식민지 농업정책기구인 권업모범장이 설치된 농업 입지적 조건이 뛰어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일찌감치 이 지역에 일본인 지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구니다케합명회사(國武合名會社 : 이하 '국무농장')와 동산농사주식회사(東

3 蘇淳烈, 「戰時體制期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存在形態 – 熊本農場の事例分析」, 『農業史硏究』 第25號, 1992; 소순열 · 주봉규 공저, 『근대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홍성찬, 「일제하 전북 지역의 일본인농장연구 – 1930, 40년대 熊本농장 地境支場의 경영사례」,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006; 황명수, 「불이흥업회사와 농민수탈」, 『산업연구』 4집, 단국대 부설 산업연구소, 1982; 김용달, 「불이서선농장 소작쟁의조사보고」,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3; 이정인, 「일제하 일인대지주의 농장경영에 관한 연구 – 불이흥업주식회사의 사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李圭洙,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信山출판사, 1996; 윤수종,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경영 분석 – 조선흥업주식회사의 사례」,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12집, 한국사회사연구회, 1988; 하지연, 「한말 · 일제 강점기 일본인 회사지주의 농업경영 연구 – 澁澤榮一 자본의 조선흥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하지연, 「일본인 회사지주의 식민지 농업경영 – 三菱재벌의 동산농사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4 수원 지역의 일본인 지주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림』 24, 수선사학회, 2005; 이동근, 「1920년대 수원 지역을 통해 본 식민지 농업 진흥책」, 『수원학연구』 제2호, 수원학연구소, 2005; 이동근, 「일제 강점기 수원 지역 금석문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 『수원문화사연구』 제7호, 수원문화사연구회, 2005.

山農事株式會社),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다. 이러한 회사지주 이외에도 개별 일본인 지주들 또한 수원 지역의 각 면에 대규모 농장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쌀농사에 착수하였다.[5] 이들 일본인 지주들은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이라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수탈정책이 진행되면서 각종 지주회, 농사장려회, 농회 등을 조직하여 토지 개량사업과 농사 개량사업 등 식민지 농정의 충실한 수행자로서 식민지 권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갔다.

1. 일본인 지주의 진출 배경

일본인 지주의 진출이 현저한 지대는 1904년까지는 전라도 · 경상도 · 충청도 지역이었고,[6] 1907년경까지는 경기도 · 황해도로 확대되었다.[7] 대지주의 진출이 현저한 지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였는데, 경기도에서는 광덕강(廣德江) 지류(軍勿川, 黃口河) 유역의 수원과 진위(振威) 일대가 일본인 지주의 밀집지역이었다.[8] 이들 지역은 당시 평지로서 비교적 토질이 우수한 양질의 경지 밀집지대였고, 교통도 매우 편리한 곳이었다.[9] 이렇게 지역적, 경제적으로 조건이 좋은 지대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은 지주화해 갔다.[10]

「토지건물증명규칙(土地建物證明規則)」(1906년 10월), 「토지건물전당집행규칙(土地建物典當執行規則)」(1906년 12월) 공포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는 1906년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을 받게 되었다.[11] 수원 지역에서도 일본인들은 국무합명회사를 필두로 하여 1906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소작제 농업 경영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수원 지역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고, 지질이 매우 좋아 농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각지에서 늘 빈발했던 큰 강의 범람과 재해가 없었다. 작은 하천의 관개도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다. 또 삼남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도 서울과 가까운 행정도시로서 기능해 왔다. 더구나 조선 후기 정조가 화성 성역과 신도시 건설을

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34~35쪽.
6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1904, 249쪽.
7 농상무성 농무국, 『조선농업개설』, 1910, 24~25쪽.
8 농상무성,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1905, 113~114쪽 참조.
9 농상무성,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1905, 549쪽.
10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68~69쪽.
11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15, 한국사연구회, 1977;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토지권법 제정과정과 그 지향」, 『동방학지』 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정연태, 「일제의 한국농지정책(1905~194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추진했던 곳으로 그 과정에서 농업진흥책으로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이 조성되었다. 만석거(萬石渠)의 관개시설이 만들어졌고, 인근에 국영농장인 둔전(屯田 : 大有屯)이 설치되었다. 또 만년제(萬年堤)와 축만제(祝萬堤)가 설치되고 축만제둔(祝萬堤屯)도 경영되었다. 이렇게 농업에 매우 유리한 수원의 역사 · 지리적 조건 위에 1906년 수원군 북부면 서둔촌에 권업모범장까지 설치되었고, 여기서 새로 얻은 농업 지식의 성과를 응용하게 되면서 수원은 농업 경영에서 매우 전도가 유망한 지역이 되었다. 척식박람회(拓植博覽會)와 유수한 공진회품평회(共進會品評會) 등에서 수상자의 과반을 수원 지역 지주들이 차지한 것이 그 증거이다.[12]

한편 수원에는 넓은 둔전과 궁장토(宮庄土)가 있었고, 경부철도가 통과하여 철도부지가 많았다. 이러한 토지들이 일본인 지주들에게 불하되면서 양질의 수원 지역 토지들이 상당 부분 일본인 지주들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수원 지역 일본인 지주(회사지주)의 농장 경영에서 일제 식민지 권력의 전폭적 지지와 식민지 농정의 충실한 이행자이며 그 보호 대상이었던 일본인 지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인 지주들이 수원 지역에 진출하게 된 또 다른 유리한 조건은 일본지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토지의 가격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조건이었는데,[13] 1914년 당시 수원 지역의 토지가격은 교통의 편리성이나 토지 등급의 상하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표 1〉과 같았다.

〈표 1〉 1914년 수원 지역 토지가격[14]

(단위 : 원)

토지별	구분	논 1반	밭 1반	택지 100평
상등지	지세	0.360	0.320	0.190
	매매가격	80.000	40.000	20.000
중등지	지세	0.280	0.240	0.130
	매매가격	50.000	25.000	15.000
하등지	지세	0.200	0.160	0.100
	매매가격	30.000	15.000	10.000
표준지명	상등지	남부면 지동	청호 오산	청호 오산
	중등지	매곡면 일동	안녕면 간촌	초평면 일동
	하등지	장주면 매탄리	형석면 구운동	형석면 반정리

12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24쪽.
13 이에 대해서는 하지연, 『일제하 식민지 지주제 연구』, 혜안, 2010, 82~83쪽.
14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33쪽.

2. 일본인 지주의 토지 소유 현황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에 따르면 1914년 무렵 수원 지역에서 영농투자액으로 보통 5,000원(圓) 이상의 일본인 지주의 경영 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는 1914년 당시 수원 지역의 대표적 일본인 지주들의 농장 경영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그 기준을 투자액이 보통 5,000원 이상인 경우로 잡고 있다. 그러나 농장 규모에서 당시 1,120정보의 거대 농지를 소유한 동산농장과 약 500정보 규모에 달하는 또 다른 거대지주인 국무합명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대지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 다만 기타자와 쇼하치로(北澤小八郎)의 수원군 북부면 소재 기타자와(北澤)농장과 오케

〈표 2〉 1914년 일본인 지주의 수원 지역 농장 경영[15]

경영자 주소 및 씨명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창립 연월	투자액(圓)	소유 규모(町)						영업 종별	1년 생산품 가격(圓)
				논	밭	산림	원야	기타	계		
東京市 本鄕區 湯島 切通坂町 岩崎久彌	수원군 북부면 東山農場	1907년 1월	334,166,000	733.7000	208.4000	85.3000	81.0000	12.0000	1,120.4000	보통농사	39,559,635
福岡縣 久留米市 通町 國武合名會社	수원군 남부면 國武農場 수원본부	1906년 12월	134,000,000	315.0000	94.7000	64.3000	14.2000	1.1000	499.3000	보통농사	13,000,000
수원군 북부면 北澤小八郎	수원군 북부면 北澤農場	1906년 4월	2,500,000	12.0000	6.8000	2.0000	35.6000	2000	56.6000	보통농사, 과수, 소채, 상포(桑圃), 목축	1,500,000
경성 櫻井町 樋下田 仙藏	수원군 송동면 樋下田農場	1908년 11월	13,438,000	30.1000	0.4000	–	–	0.3000	30.8000	보통농사	12,574,000
수원군 북부면 山內藤吉郎		1908년 4월	5,000,000	0.6310	3.4400	4.5600	–	–	8.6310	보통농사, 과수, 소채, 목축, 조림	1,600,000
수원군 남부면 寺澤捨三郎		1908년 5월	9,000,000	2.0000	3.7000	–	–	–	5.7000	보통농사, 과수, 소채	1,600,000
수원군 남부면 松山源太郎		1909년 2월	14,800,000	53.9600	1.0000	–	–	2.2114	57.1714	보통농사	1,400,000

1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34~35쪽.

시모다 센조(樋下田仙藏)의 수원군 송동면 소재 오케시모다(樋下田)농장이 각각 약 57정보, 30정보 수준으로 조선총독부의 대지주 분류 기준인 30정보 이상에 미치고 있어 이들까지를 대지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1938년 경기도의 조선인과 일본인 지주 현황[16]

(단위 : 명, 정)

사항별		개인지주				특수지주				합계
		경성지주	도내지주	도외지주	계	회사	학교	사원	기타	
조선인	지주	305	386	12	703	7	6	7	4	727
	소작인	54,202	56,635	1,285	112,122	2,062	3,309	783	1,033	119,309
	논	18,146	19,885	745	38,776	927	852	271	337	41,163
	밭	7,234	9,796	279	17,309	262	241	185	179	18,176
	논밭 계	25,380	29,681	1,014	56,085	1,189	1,093	456	516	59,339
일본인	지주	7	19	7	33	19				52
	소작인	1,771	2,114	585	4,470	15,025				19,495
	논	933	1,194	758	2,885	7,062				9,947
	밭	416	544	407	1,367	3,152				4,519
	논밭 계	1,349	1,738	1,165	4,252	10,214				14,466
계	지주	312	405	19	736	26	6	7	4	779
	소작인	55,973	58,749	1,870	116,592	17,087	3,309	783	1,033	138,804
	논	19,079	21,079	1,503	41,661	7,989	852	271	337	51,110
	밭	7,650	10,340	686	18,676	3,414	241	185	179	22,695
	논밭 계	26,729	31,419	2,189	60,337	11,403	1,093	456	516	73,805

〈표 3〉은 일제하 1938년 당시 경기도의 조선인과 일본인 지주의 토지 소유 현황이다. 경기도 내 일본인 지주는 1938년 현재 52명으로 전체 경기도 지주 779명의 약 7% 선이다. 그러나 소유 경지면적을 보면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1914년경과 마찬가지로 이들 일본인 지주 가운데 수원 지역의 대표적 지주는 국무합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지점, 그리고 동산농장이다.

〈표 4〉는 1938년 당시 수원 지역의 대표적 일본인 지주(회사 포함)이다. 〈표 4〉에 따르면 수원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커 대지주로 분류화될 수 있는 30정보 이상의 일본인 개별 지주로서는 가토 헤타로(加藤平太郎), 호리우치 준이치(堀內順一), 야기 긴조(八木金藏), 에가시라 후사타로(江頭房太郎), 카사마츠 이치조(笠松一藏), 사가테 요시오(坂手芳

16 경기도농회, 『지주명부』, 1938.

〈표 4〉 1938년 일본인 지주(회사)의 수원 토지 소유 현황[17]

씨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지의 주소 및 면적				소작인 수(명)	조법별(租法別) 비율(할)						비고
		군명	논(町)	밭(町)	계(町)		논			밭			
							정조	타조	집조	정조	타조	집조	
加藤平太郎	인천부 궁정 38	진위군	79	7	86	105		10		10			정미업
堀內順一	수원군 수원읍	수원군	97	41	138	199	3		7	10			
八木金藏		수원군	57.2	0.1	57.3								매송면(1929)
江頭房太郎		수원군	75.0	1.5	76.5								매송면(1929)
笠松一藏	수원군 매송면 아목리	수원군	78		78	60		10					
		부천군	139	5	144	210		10		10			
		계	217	5	222	270							
坂手芳夫	수원군 수원읍 매향리		201	110	311	95	10			10			
국무합명회사	福岡縣 久留米市 通町 169	진위군	23	4	27	40			10	10			
		수원군	302	68	370	518			10	10			
		계	325	72	397	558							
동산농사 주식회사	東京市 麴町區 丸の內 2정목 94	진위군	86	16	102	153			10	10			
		수원군	857	268	1,125	1,512			10	10			
		계	943	284	1,227	1,665							
조선신탁 주식회사	경성부 남대문통 1정목 19	고양군	280	4	284	256		10		10			
		경주군	68	27	95	234		10		10			
		포천군	40	28	68	160		10		10			
		양평군	28	3	31	90		10		10			
		이천군	203	30	233	639			10	10			
		용인군	134	68	202	292			10	10			
		안성군	179	31	210	550		10		10			
		진위군	25	17	42	50		10		10			
		수원군	154	45	199	233		10		10			
		시흥군	14	6	20	42		10		10			
		부천군	10	2	12	32		10		10			
		김포군	80	3	83	150		10			10		
		파주군	57	18	75	140		10		10			
		계	1,272	282	1,554	2,868							
동양척식 주식회사	東京市 麴町區 山下町	경성부	60	87	147	210	8		2	10			
		고양군	335	474	809	862	10			10			
		광주군	228	185	413	1084	3		7	10			
		용인군	31	12	43	31		10		10			
		안성군	108	74	182	423	10			10			
		진위군	170	76	246	180	3		7	10			
		수원군	809	381	1,190	2,117			10	10			
		개풍군	224	197	421	565	10			10			
		계	1,965	1,486	3,451	5,472							

夫)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야기(八木金藏), 에가시라(江頭房太郎)의 토지 소유 현황은 1929년 수치로, 1938년 통계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회사지주로서는 1906년 구니다케(國武喜次郎)가 설립한 국무합명회사,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수원 지역의 대규모 일본인 회사지주로 소작제 농업을 경영하였다. 이 가운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수원에만 2,117정보를 경영하여 가장 대규모 회사지주였고, 그 뒤를 이어 미쓰비시 재벌의 동산농장이 1,125정보로 역시 1,000정보를 넘는 거대지주로 군림하였다. 국무합명회사도 수원군에만 370정보를 경영하였던 거대 회사지주였다. 시기별 수원 지역 주요 일본인 회사지주의 전국 토지 소유를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시기별 수원 지역 주요 일본인 회사지주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18]

회사명	지목별	1908	1915	1922	1925	1929	1931	1935	1938
국무합명회사 (1906년 3월 창업)	논	500	937	1,369.40	1,194.50	1,419.00	862	350	325
	밭		374	493.70	330.50	398	188	350	72
	기타	400	257	184.60	136.10	93.70	45		
	계	900	1,568.00	2,047.70	1,661.10	1,911.30	1,095	700	397
	소재지	경기도 수원, 남양, 안산군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경기도 수원군, 충남 논산군, 전남 목포부	경기도 수원, 진위, 용인군, 충남 논산, 부여, 전남 무안, 해남, 함평군	경기도 수원, 충남 논산, 부여, 청양군, 전남 무안, 해남, 함평군	충남 논산, 부여, 청양군, 전남 무안, 해남, 함평군	전남 무안, 해남, 함평군, 진도, 나주군, 목포부 (시가지경영)	
동산농사주식회사 (1907년 1월 창업)	논	2,912	3,400	6,186.90	3,821.20	4,131.30	4,272		
	밭	775	675	5,102.40	959.40	918.90	955		
	기타	605	755	1,019.10	426.70	381.30	201		
	계	4,292	4,830	12,319.40	5,207.30	5,431.50	5,428	5,500	
	소재지	경기도 수원, 진위, 안산, 광주, 과천군, 전북 전주, 김제, 익산, 전남 영암, 나주, 광주군	경기, 전북, 전남	경기 수원, 전북 전주, 김제, 익산, 전남 나주, 황해도 옹진군	경기 수원, 용인, 시흥, 진위, 전북 전주, 김제, 익산, 전남 광주, 영암, 나주, 황해 옹진	경기 수원, 용인, 시흥, 안성, 진위, 전북 전주, 전남 나주, 광주, 영암, 황해 옹진	경기 수원, 진위, 전북 전주, 김제, 익산, 전남 나주, 광주, 영암	경기 수원, 진위, 용인, 전북 전주, 전남 영산포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년 12월 창업)	논	8,643.80	49,080.40	51,644.10	49,647.10	46,682.50	46,284.50		39,753.70
	밭	2,300.60	19,594.40	19,478.60	18,245.30	16,944.40	16,804.60		16,173.80
	기타	91.10	4,689.20	14,287.60	16,415.40	41,709.10	90,085.90		89,308.70
	계	11,035.50	73,364.00	85,410.30	84,307.80	105,336.00	153,175.00		145,236.20
	소재지	전국 각지							

17 경기도농회, 『지주명부』, 1938. ① 경기도 내의 전답 30정보 이상 소유지주이다. ② 조사는 1937년 6월 말 현재이다. ③ 야기(八木金藏)와 에가시라(江頭房太郎)는 조선총독부, 『朝鮮の農業』, 1929, 168쪽을 참조하였다.

3.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

동산농사주식회사는 미쓰비시 재벌 총수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가 아버지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의 사후 1895년 남작의 작위와 기업을 계승한 후 1919년 11월 이와사키(岩崎) 가정사무소(家庭事務所) 소속 동산농장, 척북(拓北)농장, 북해도(北海道 : 本場), 미쓰비시합자회사(合資會社) 신석사무소(新潟事務所) 소속의 업무를 계승하여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19] 이 회사의 모태가 한국에 창설한 동산농장이다. 이 회사는 본점을 도쿄에, 지점을 경기도 수원군에 두었는데, 사업경영 목적은 농업, 임업 및 목축, 부동산 임대차 등이었다.[20]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전 세계 사업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이자 이 회사의 모태가 된 한국의 동산농장은 히사야의 개인 소유농장으로 경기도 수원군 북부면에 1907년 1월 창시되어,[21] 1909년 말 대체적으로 토지 확보를 완료하고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설립 당초에는 경기도 수원, 인천, 남양, 과천, 안산, 전라북도 전주, 전라남도 영산포와 영암, 광주(光州), 나주 등에 지부를 설치하였고,[22] 1910년 12월 말 현재로 경기도의 인천, 수원, 남양, 과천, 안산, 전남의 영암, 광주, 남평, 나주 등에 걸쳐서 4,057정보의 농토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리고 히사야는 미쓰비시합자회사에 농장 경영을 위탁시켰다. 그 뒤 1919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자본금 500만 원의 동산농사주식회사가 창설되면서 경영권이 이관되었고, 동산농장이란 명칭 대신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이라고 개명하였으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동산농장' 이라고 하였다. '동산' 이란 명칭은 미쓰비시 재벌 창설자인 이와사키 야타로의 아명에서 나왔다.[23]

동산농사주식회사는 이후 계속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점과 농장을 넓혀 나갔고,[24] 1920년에는 자본금을 배액 증가시켜 공칭 자본금이 1,000만 원이 되었다.[25] 이 회사는 농업 경영 이외에도 수원-여주과 수원-인천 간 철도를 부설하고 경영하는 조선경동철도주식회

18 농상무성, 『조선농업요람』, 1910(1908년 조사); 德永勳美, 『韓國總覽』, 1907, 15쪽; 牛山敬二, 「明治・大正期における三菱の土地投資」, 『農業總合硏究』 第20卷 第2號, 1966, 51쪽, 제17표; 조선총독부, 『朝鮮の農業』, 각 연도; 전라북도 편, 『내선인지주소유지조』, 1928(1926년 8월 조사); 농림성경성미곡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전라남도 地主調」(프린트판), 19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1985.

19 동산농사주식회사, 『동산농사주식회사영업보고서(이하 『영업보고서』)』 제1회(1919년 10월 24일~1920년 3월 31일), 1쪽.

20 『영업보고서』; 全羅北道 農務課 編, 「東山農事株式會社 定款」, 『全羅北道農事會社 定款 및 小作契約書 - 全羅北道內各農地會社의 定款 및 小作 契約證書』(『全羅文化論叢』 제1집에 수록), 1938.

21 尾西要太郎 編, 『鮮南發展史』, 1913, 200쪽.

22 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1쪽; 尾西要太郎 編, 『鮮南發展史』, 朝鮮新聞社, 1925, 200쪽.

23 동산농사주식회사, 『동산사업』, 1940, 1~3쪽.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국 내 농장에 대해서는 '동산농장' 이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24 이에 관해서는 하지연, 「일본인 회사지주의 식민지 농업경영 - 三菱재벌의 동산농사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864~865쪽 〈표 1〉 참조.



동산농사주식회사 수원지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사와 농업, 조림업, 목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산(城山)농업주식회사도 거느리고 있었다.[26]

미쓰비시 재벌이 한국에서의 농업 경영에 진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통감부의 산업개발 책임자인 농상공무총장(農商工務總長) 기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郎)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27] 기우치(木內重四郎)는 이와사키 야타로의 낭서(娘婿)였다. 한국의 저렴한 지가, 대한제국의 궁핍한 재정과 봉건적 수탈에 따른 관리들의 토지 불법 거래의 묵인, 농가 몰락, 곡가 등귀, 비옥한 토양, 고율의 소작제 관행 등의 상황도 일본 대자본이 한국에서 대지주가 될 수 있었던 복합적 배경이었다.[28] 동산농장도 진출 초창기인 1910년 토지 수익률이 논의 경우 35.31%, 밭은 10%에 달하였다.[29]

일본인 지주들은 주로 삼남 지방과 황해, 경기도에 집중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유출하기 좋은 철도 주변과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인 대농장이 형성되어 갔다.[30] 동산농장도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설립자 이와사키 히사야는 동산농장 초대 농장장 도모노(伴野雄七郎)를 미리 1906년 5월 실지 답사차원에서 파견하였다. 도모노는 경성, 평양, 겸이포(兼二浦), 개성, 용산, 수원, 군산, 목포, 영산포 등지를 시찰하여 사업지를 물색하였다.[31] 1907년 1월 도모노는 수원, 전주, 영산포의 3개소에 농지를 매수하고, 미작사업을 개시하였다. 히사야도 그해 5월

25 『영업보고서』 제2회(1920년 4월 1일~1921년 3월 21일), 1쪽; 『영업보고서』 제1회(1919년 10월 24일~1920년 3월 31일), 1~3쪽. 기존부터 있었던 한국 소재 동산농장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수원지점 설립 허가를 얻어 1919년 11월 17일자로 조선지점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듬해 3월 25일 제2회 불입금 200만 원을 추가 불입함으로써 자본금의 전액 불입을 완료하게 되었다.

26 中村資郎,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 529쪽.

27 岩崎久彌傳編纂委員會, 『岩崎久彌傳』, 東京大學校出版會, 1980, 483쪽.

28 이에 대해서는 하지연, 『한말 · 일제 강점기 일본인 회사지주의 농업경영 연구 – 澁澤榮一 자본의 조선흥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 174쪽, 주) 26 참조.

2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 제100~102표; 牛山敬二, 「明治 · 大正期における三菱の土地投資」, 『農業總合研究』 第20卷 第2號, 1966, 35쪽 제12표.

30 김도형, 「일본인 농장 · 농업회사의 농업기술 보급체계」, 『국사관논총』 77, 국사편찬위원회, 1997, 172쪽.

31 군산일보편집국, 『全北忠南之地主腦地附活動人』, 1913, 350쪽.

직접 한국에 건너와서 농장을 시찰하였다.[32]

동산농장은 1919년 동경에 본점을 두게 되고, 경기도 수원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군 조촌면 동산리와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대정정(大正町)에 출장소를 두었다. 그 소유경지는 1908년에 4,292정보, 1922년에는 1만 2,319정보로 급증하여 이후 약 5,400정보 규모를 유지하였다.[33]

동산농장의 한국 내 주요 지점 상황을 보면 먼저 전북지부는 1907년부터 시작하여 전북 전주군 조촌면 반월리에 1,622정보의 농토를 약 3,000원에 매수하여 행정명이 반월리에서 동산리로 바뀌기까지 하였다. 이후 1914년 10월에 개통된 이리-전주 간 경편철도(輕便鐵道)의 동산촌역(東山村譯)까지 신설되었다.[34] 1925년 무렵에는 만경강 상류를 끼고

〈표 6〉 동산농장(동산농사 조선지점)의 각 지점별 토지 소유 현황[35]

(단위 : 町)

지역	구분	1908	1913	1915	1922	1925	1929	1931	1935	1938
경기도 수원, 용인, 시흥, 진위, 안성	논				4,061.20	1,192.30	1,199.80	1,340		943
	밭				870.4	329.6	335.8	354		284
	그 외				480.1	273.5	264.6	5		
	계				5,411.70	1,795.40	1,800.20	1,709		1,227
전라북도 (전북출장소) 전주, 군산, 김제, 익산	논				1,255.70	1,255.20	1,313.30	1,328		
	밭				171	191	217	242		
	그 외				27	153.2	91.8	65		
	계				1,455.70	1,599.40	1,622.10	1,635		
전라남도 (전남출장소) 나주, 광주, 영암	논				870	1,373.70	1,618.20	1,634.00		
	밭				4,061.00	438.8	366.1	352.4		
	그 외				512		24.9	131.2		
	계				5,453.00	1,812.50	2,009.2	2,119.60		
합계	논	2,912	4,051.90	3,400	6,186.90	3,821.20	4,131.30	4,272		
	밭	775		675	5,102.40	959.4	918.9	955		
	그 외	605		755	1,019.10	426.7	381.3	201		
	계	4,292		4,830	12,319.40	5,207.30	5,431.50	5,428	5,500	

32 岩崎久彌傳編纂委員會, 『岩崎久彌傳』, 東京大學校出版會, 1980, 483~487쪽.

33 牛山敬二, 「明治・大正期における三菱の土地投資」, 51쪽, 제17표; 동산농사주식회사, 『동산사업』, 3쪽.

34 군산일보편집국 편, 『全北忠南之地主腦地附活動人』, 344~347쪽. 이 경편철도의 정차역을 정할 당시 대창(大倉)농장 측과 동산농장 측의 알력이 심하여 결국은 양대 농장의 중간지점으로 정차역이 정해진 사실은 유명하다.

35 조선총독부, 「內地人農事經營者調(1922년 말 30정보 이상의 경영자)」, 『朝鮮の農業』, 1922에서 동산농장의 소유면적은 전국 각지에 걸쳐 갑자기 그 면적이 이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925년 조사에서 다시 급감하였다. 따라서 1922년의 통계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農商務省, 『朝鮮農業要覽』, 1910(1908년 조사); 德永勳美, 『韓國總覽』, 1907, 15쪽; 牛山敬二, 「明治・大正期における三菱の土地投資」, 51쪽, 제17표; 조선총독부, 『朝鮮の農業』, 각 연도; 전라북도 편, 『內鮮人地主所有地調』,

있던 전주 부근의 동산농장은 소작인이 1,700명에 달하였고, 면사무소는 물론 우편국, 전신, 전화 개통, 학교, 경찰서까지 농장에 설치되어 그 모두가 '이와사키(岩崎) 왕국의 신첩(臣妾)'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와사키 왕국의 영지(領地)'였던 것이다.[36]

다음으로 전남지부인 나주(榮山浦), 함평, 광주, 영암 일대 상황이다. 곡창지대인 호남에서의 일본인 침탈은 1897년 목포 개항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그 침투 경로는 개항장 목포를 근거지로 하여 영산강으로 이어졌다.[37] 영산포 지역 일본인 농장들은 대부분 1905년에서 1907년 무렵 창설되었다.[38] 영산포를 둘러싼 평야는 호남의 곡창지대인 나주평야 중에서도 핵심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산포 방면에 개간이 가능한 미경지면적은 1905년 무렵 오히려 경지면적을 능가할 정도였다.[39] 영산포 최대의 일본인 농업회사인 동산농장은 속칭 새끼네(상습 수해지)를 개간하여 2~3년 사이에 수백 정보의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다.[40] 동산농장의 전남 지역 본부는 나주군 나주읍 영산포의 천동(泉洞), 석해(石海)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41]

한편 경기 지역 사업은 수원, 진위, 안산, 인천출장소 사업으로 대별된다. 동산농장의 한국 사업은 수원군 수원면 매산리 148번지 오산출장소에서 총괄하였다.[42] 경기도 지역의 농장 규모는 1929년 현재 수원과 진위, 안산 일대에 걸쳐 1,800정보가량이었다. 1938년경에는 수원군에 논 857정보, 밭 268정보, 합 1,125정보를 경영하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논 943정보, 밭 284정보, 합 1,227정보의 농지를 소유하였다. 이것은 수원군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1,190정보)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고, 경기도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개성의 한명석에 이어 네 번째 규모였다.[43]

그 외 동산농장은 과수재배로도 사업을 확장하였다. 주요 재배품목은 포도 · 사과 · 배

1928(1926년 8월 조사);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 群山出張所, 「전라북도, 전라남도 地主調」(프린트판), 19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1985 .

36 『동아일보』, 1922년 3월 12일; 전북 익산군 편, 「裡里, 春浦面」, 『益山郡事情』, 1928, 1쪽; 菊池謙讓, 『朝鮮諸國記』, 大陸通信社, 1925, 141~142쪽.

37 이하 영산포 지역의 개관에 대해서는 장석홍, 「일제하 영산포 식민기지의 형성」, 『한국학보』 58, 일지사, 1990; 김용섭, 「나주 이씨가의 지주경영의 성장과 변동」,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증보판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에 재수록); 김민영, 「1920 · 1930년대 나주 · 영산포 지역 일본인 자본가의 양상과 동향」, 『한국동서경제사학』 제12집 제1권, 한국동서경제사학회, 2000; 김경수, 「1910년대 영산포 시가지 형성과정」, 『문화역사지리』 제12권 제1호, 2000 참조.

38 『조선농회보』 제7권 제1호, 1912년 1월, 22~28쪽;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存在形態 － 石川縣農業株式會社－」, 334쪽.

39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 전라도 · 경상도, 157 · 215쪽; 「韓國全羅南北道農業情況」, 『통상휘찬』 68호, 1904, 24쪽; 吉川祐輝, 『韓國農業經營論』, 1904, 145~147쪽.

40 『신한국보』, 1919년 3월 1일.

41 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1쪽;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대왕사, 1982, 147~148쪽.

42 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1쪽; 『조선은행회사요록』, 각 연도.

43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0쪽.

등이었고,[44] 특히 1908년 7월 창시된 인천 외용정리(外龍亭里)의 인천출장소는 과수원만 경영하였다.

한편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주요 경영진 및 경영 구조를 살펴보면, 동산농사주식회사가 처음 발족한 1919년 당시의 최초의 정관은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영업보고서』에 있는 1942년 3월 1일자 개정 정관(定款)이나 전라북도 농무과에서 편찬한 『전라북도농사회사

〈표 7〉 1919~1944년 동산농사주식회사 주요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45]

연도	취체역 회장	전무 취체역	상무 취체역	상무 취체역	취체역	취체역	취체역	취체역	취체역	취체역	감사역	감사역	총사원수
1919	–	桐島傷一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	–	境豐吉	–	58
1920	–	–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	–	境豐吉	–	54
1921	–	桐島傷一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	–	境豐吉	–	48
1922	–	桐島傷一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	–	境豐吉	–	61
1923	–	桐島傷一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	–	境豐吉	–	62
1924	–	桐島傷一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坂本正治	–	境豐吉	–	67
1926	–	桐島傷一	–	–	–	–	中屋堯駿	間崎道知	坂本正治	–	境豐吉	–	70
1927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坂本正治	–	境豐吉	岩崎隆彌	71
1929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間崎道知	坂本正治	–	境豐吉	岩崎隆彌	65
1930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中屋堯駿	齋藤延	坂本正治	–	–	岩崎隆彌	61
1931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	齋藤延	坂本正治	–	–	岩崎隆彌	70
1932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岩崎隆彌	72
1933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岩崎隆彌	72
1934	–	坂本正治	–	–	–	桐島傷一	–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岩崎隆彌	69
1935	–	坂本正治	–	齋藤延	–	桐島傷一	–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岩崎隆彌	73
1936	–	坂本正治	–	齋藤延	–	桐島傷一	岩崎隆彌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77
1937	坂本正治	坂本正治	–	齋藤延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80
1938	坂本正治	坂本正治	–	齋藤延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齋藤延	坂本正治	–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81
1939	坂本正治	坂本正治	–	相川貞吉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	坂本正治	–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85
1940	坂本正治	坂本正治	君塚愼	相川貞吉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德弘國太郎	坂本正治	–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96
1941	坂本正治	坂本正治	君塚愼	相川貞吉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德弘國太郎	坂本正治	–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126
1942	坂本正治	–	君塚愼	相川貞吉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德弘國太郎	坂本正治	鹿島良信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128
1943	坂本正治	–	君塚愼	相川貞吉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德弘國太郎	坂本正治	鹿島良信	深井三男	前田幸太郎	128
1944	坂本正治	–	君塚愼	相川貞吉	君塚愼	相川貞吉	岩崎隆彌	德弘國太郎	坂本正治	鹿島良信	–	前田幸太郎	111

44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2~3쪽 · 10~11쪽; 『개벽』 제48호, 1924년 6월 1일.

45 『영업보고서』 각 연도. ① 제7기(1925년도 영업보고서)와 제10기(1928년도 영업보고서)는 누락되어 있고, 제27기에 해당되는 1945년의 영업보고서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작성되지 못하여 해당연도의 영업 성적은 파악이 곤란하다. ② 취체역 회장은 전무취체역을 겸하였다. 또 전무취체역과 상무취체역일 경우에도 취체역란에 이름을 명기하였다. ③ 1942년의 경우 판본정치(坂本正治)의 직함은 취체역 회장 겸 취체역 사장이다.

정관 및 소작계약서-전라북도 내 각 농지회사의 정관 및 소작 계약증서』에 의하면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임원은 취체역을 대략 3~6명까지 두었다. 또한 취체역 및 감사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중 취체역 3명 이상, 감사역 1명 이상을 선임하였는데, 취체역이 보유하여야 할 주식은 800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46] 〈표 7〉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임원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특히 1927년부터는 회사 설립자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의 아들 류야(隆彌)가 감사역, 1936년 이후로는 취체역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임원들은 당사의 대주주였으므로, 매년 주주배당금으로써 거액의 이득을 챙겼고, 또한 역원 상여금 및 특별 배당금, 퇴직기금 등을 챙겼다. 한편 앞에서 제시된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중역 가운데 1931년 당시 이와사키(岩崎隆彌)는 조선지점장, 나카야 교순(中屋堯駿)는 조선지점 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47] 그리고 이후 1933년과 1935년까지는 후카이 미쓰오(深井三男)가 조선지점장이었고,[48] 이후 사이토 엔(齋藤延), 1937년부터는 도쿠히로 쿠니타로(德弘國太郎)가 역임하였다. 또 수원출장소 주임으로 윤태중(尹泰重),[49] 동산출장소 지점장으로 모리타 마코토(守田亶), 나주출장소 지점장에 오쿠란 노부오(奧蘭信雄)가 역임하였다.[50] 이 가운데 윤태중은 『조선은행회사요록』의 동산농장 임원 명단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한국인이고 수원 지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1896년 정동(貞洞)관립소학교를 졸업, 1899년 경성(京城)학당에서 일본어를 익힌 후 1902년 일본 구마모토(熊本)농업학교로 유학하였다. 1905년 졸업 직후 대한제국 농림학교 교수보조를 거쳤다. 그는 이후 도쿄제국대학 농과를 졸업한 후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를 거쳐 수원 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해방 이후 1954년에는 자유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그의 이력을 보면 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농업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관료학자였다.[51]

동산농사주식회사는 1919년 설립 당시 자본금 500만 원에서 1년 만에 1,000만 원으로 증자되었고, 주식수는 10만 주, 1주당 100원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주주수는 30명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의 30% 가까이를 이와사키(岩崎) 가(家) 직계들이 집중적으로 보유하

46 1937년 3월 5일까지의 정관(定款)과 달리 1942년 개정된 『영업보고서』에 수록된 정관 제11조에서는 취체역 보유주수 800주 이상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47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要錄』, 1931.
48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要錄』, 1933;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要錄』, 1935.
49 윤태중이 동산농장 수원출장소 주임직을 맡은 바에 대해서는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要錄』, 1937 · 1939년판 이외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50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要錄』, 1937 · 1939 · 1942.
51 『대한제국관원이력서』 8책, 232쪽;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4책, 632쪽; 『대한민국건국십년지』, 10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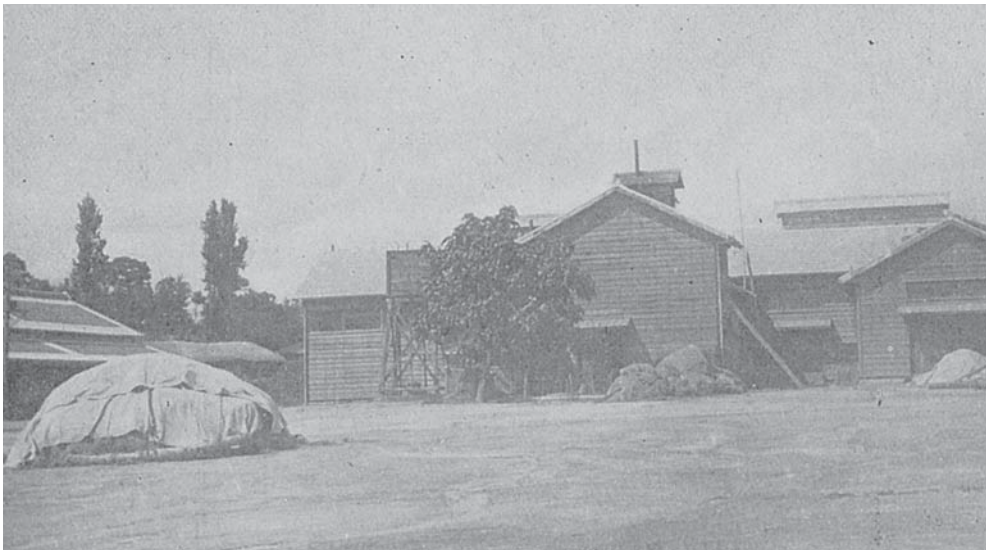
고 있어 회사 경영과 배당이익 등에서 단연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설립자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는 설립 초기 거의 9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1927년 아들 및 이와사키 가문 직계들에게 주식을 분할한 이후에도 여전히 50%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동산농사주식회사는 영업 1기에 해당되는 1919년에도 8%에 달하는 주식 배당률과 10만 원에 육박하는 후기이월금을 남겼다. 주식 배당률을 보면 초기 5%대에서 점차 7~8%대로 올라섰다. 그리고 이와사키 가문 직계 등 대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이 할당되었다.[52] 즉 이러한 거액의 배당금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동산농장이 고율의 소작료 징수와 곡가 폭등 등의 상황에서 식민지 농업 경영의 초과이윤으로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1930년대 초기를 벗어나면서 경제공황기를 빠져 나왔고,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곡가폭등의 기회를 타고 동산농장의 영업 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도 그 경영이나 주주 가운데 한국인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태중이 수원출장소 주임을 맡았고, 그 외 정인섭(丁仁燮)이 1907년 수원 동산농장의 통역 겸 사무원으로 채용된 바가 있다.[53]

4. 식민지 소작제 경영의 실태

동산농장 수원지점은 일본 종자로의 개량 및 강제 보급, 화학 비료의 강제 시용, 개량농기구의 보급, 모범촌 및 소작인조합의 운영을 통한 소작인 통제 및 생산 관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조선총독부의 시정 5주년 기념 표창식에서 농업의 방법 및 성적 부분 명예 금패(金牌)를 수상하였다.[54]

동산농장 수원지점은 1914년부터 선수(選穗)를 장려하고, 개량종자의 원종답, 채종답을 만들어 종자개량을 실시하였다.[55] 여기서 장려된 품종은 조신력(早神力), 다마금(多摩錦), 웅정(雄町), 고천수(高千穗), 석백(石白)이었다.[56] 그것은 농업 자체의 근대화가 아닌 단지 농장 자체의 수익 확대가 목적이었으므로 수반되는 노동비의 과다지출은 결국 고스

52 이에 대해서는 하지연, 「일본인 회사지주의 식민지 농업경영 – 三菱재벌의 동산농사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참조.
53 정인섭(丁仁燮)은 부산에 있는 사립일본어학(私立日本語學) 5년 과정을 다녔고, 1907년 2월 26일자로 수원 동산농장의 통역 겸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대한제국관원이력서』 41책, 867쪽).
54 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1쪽.
55 「東山農事株式會社支店經營方法及成績」, 『조선농회보』 제17권 4호, 1922년 4월, 37~39쪽.
56 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5・142쪽.



탈곡과 정백(精白) 등을 하던 동산제곡소(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란히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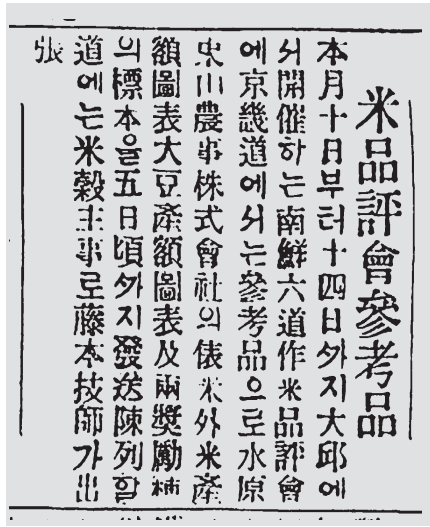
동산 측이 말하는 우량종은 물론 일본인의 미각에 맞는 일본 개량종으로써 한국의 재래종을 구축하고 자리 잡아 갔다. 동산농장을 비롯한 당시 일본인 대농업회사들은 개량종이 아닐 경우 소작료 수납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일본종자를 단시간 내에 확산시켰다.[58] 동산농장의 1919년경 장려품종의 보급률은 전 농장 수전 면적의 98%에 달하였다.[59]

다음으로 동산농장은 개량농구의 사용을 강제하였다. 그런데 고리로 운영되었던 개량농기구의 구입자금 대여를 농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60] 그런데도 동산농장 수원지점은 1912년 경기도청의 후원으로 도급기(稻扱器) 50정, 인절(籾節) 50개, 당기(唐箕) 10대, 제연기(製筵機) 20대 등의 농구를 강제 지급하였다.[61] 특히 동산농장은 농업과 임업, 목축 이외에 1920년대부터 부동산의 임대차, 곡류의 탈곡 및 정백(精白) 등의 정미업, 곡류의 정백 기계 및 농구의 제조 판매에까지 사업을 확대하여[62] 농업에 부속되는 각종의 제반 제조사업 및 판매까지 장악하여 한국 농민을 대상으로 한 개량농기구 판매에

57 이에 대해서는 蘇淳烈, 「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研究-全羅北道を中心に-」, 京都대학교 농학연구과 박사학위논문, 1994, 31~77쪽 참조.
58 김도형, 「일본인 농장 · 농업회사의 농업기술 보급체계」,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93쪽.
59 岩崎久彌傳編纂委員會, 『岩崎久彌傳』, 東京大學校出版會, 1980, 490~491쪽.
60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294쪽.
61 「동산농장사업성적개요」, 『조선농회보』 제8권 제8호, 1913년 8월, 16~20쪽.

따른 이윤까지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었다.

농사의 개량과 부업의 장려 등 제반 농사 경영상 생산성 향상과 수익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모범촌 경영이라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동산농장은 1912년 4월 경기도 수원군 태장면 지동에 논 88정보, 밭 40정보의 모범촌 경영을 개시하였는데, 경기도청으로부터 1912년과 1913년에 각각 200원씩, 1914년에는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경기도청은 수시로 기술관(技術官)을 이 모범촌에 파견하여 농사의 개량과 부업의 장려 등 제반 시설에 편의를 제공하였다.[63] 이는 일본 재벌의 한국 농촌 수탈에서 일제의 적극적 후원이 뒷받침되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米品評會參考品
本月十日부터十四日外지大邱에
서開催하는南鮮六道作米品評會
에京畿道에서는參考品으로水原
東山農事株式會社의俵米外米產
額圖表大豆產額圖表及兩獎勵楠
의標本을五日頃外지發送陳列할
道에는米穀主事로藤本技師가出
張

경기도 참고품으로 선정된 동산농장 수원지점 쌀(『동아일보』, 1921년 11월 3일)

또 농사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동산농장은 1912년 2월 수원지점에서는 우수 소작인을 선발하여 포상수여식을 거행하여,[64] 소작인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생산 증대를 꾀하였다.[65] 또한 1921년 대구에서 개최된 미품평회(米品評會)에 경기도의 참고품은 수원지점 것이 선정될 정도로 일제의 식민지 농정에 동산농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66]

오쿠라(大倉)나 기타 일본인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동산농장도 수리조합사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1922년 전주 조촌면(助村面) 동산리(東山里) 동산농장과 후지(不二)농장 등 대지주들의 발기로 소성리에 약 8,000평의 저수지를 설치하고, 반월리(半月里) 등의 지역에 약 220정보를 관개할 계획으로 공사비용 800만 원(반당 약 35원 지주 부담)의 공사를 하였다.[67] 또한 1927년에 실시된 '전조선수리조합실사(全朝鮮水利組合實査)'에 의하면 동산농장은 동척 등의 일본인 대지주들과 함께 수원과 용인에 걸쳐 수룡수리조합(水龍水利組合)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고, 총 748정보의 저수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촌락 48호를 강제 철거시켰다.[68]

62「東山農事 會社 〈定款〉」 第1章 第3條, 『全羅北道 農事會社小作契約書』.
63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11 · 223쪽.
64「水原東山農場の小作人奬勵」, 『조선농회보』 제7권 3호, 1912년 3월, 59쪽.
65「동산농장 경기지장 소작인 표창식」, 『조선농회보』 제13권 6호, 1918년 6월, 71쪽.
66 『동아일보』, 1921년 11월 3일;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0쪽.
67 『시대일보』, 1924년 10월 2일.

수리조합 내 포함된 농지의 경우 소작료 비율은 60%가 일반적 관행이었다. 즉, 수리조합의 조합원인 지주가 부담해야 할 수리조합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는 관례화되어 있었다.[69] 동산농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율의 소작료 강제에 대한 소작민의 항의와 쟁의가 수시로 일어났다.

동산농장은 1930년대 중반 회사직원 약 70명, 소작인은 3,600호 정도였는데, 1호를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1만 4,400명가량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소작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수전농업에 주력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70]

수원군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소속 소작인의 수는 1938년 무렵 수원군에 1,512명, 경기도 전체에 1,665명을 두었는데, 소작인 1명당 논과 밭을 합한 평균 경지면적이 1.36정보이다.[71] 그런데 1925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에 관한 조사' 에 근거하면 동산농장 소속 소작인의 평균 경작면적 1.36정보는 소농 수준에 해당된다.[72] 따라서 동산농장 소속 소작인의 생활수준은 세농(細農 : 3반보 미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농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래 한국에서의 소작계약은 대개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본인 대농장이나 농업회사의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의 형식을 취하였다.[73] 그러나 구체적 소작계약서의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 하는 농업회사들은 소작계약서 공개를 하지 않아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문데, 동산농장이 그러한 경우이다. 동산농장은 중추원 조사 자료에서조차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74]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에 의하면 동척과 동산의 경우 그 소작계약 형식이 같아 소작계약서에 소작인의 인인(認印)을 받아 일방적으로 지주 측에서만 홀로 단독 보존하며, 하나는 소작인 대장(名寄帳 같은 것)의 재료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소작인에게 아무런 증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소작인의 불안은 매우 컸던 것이다.[75]

동산농장의 소작료 수취방법은 정조(定租 : 賭租), 타조(打租), 집조(執粗) 가운데 논의

68 『동아일보』, 1927년 12월 8일.
69 조선총독부, 『조선총람』, 1933, 188쪽.
70 岩崎久彌傳編纂委員會, 『岩崎久彌傳』, 東京大學校出版會, 1980, 490~491쪽.
71 정병욱, 「아랫새우대 조한구씨가 문헌」, 『의왕시사』 6, 2007, 7쪽.
72 善生永助, 『朝鮮の小作慣習』, 조선총독부, 1929, 31~33쪽; 조선총독부 식산국, 『朝鮮の農業事情』, 1930, 25~29쪽.
73 善生永助, 『朝鮮の小作慣習』, 조선총독부, 1929, 93~99쪽.
74 배영순, 「한말 · 일제초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경영 – 수전농장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3, 208~209쪽.
75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1편 제4장 소작계약의 체결방법」, 『중추원조사자료 – 소작제도조사(경상남북도, 전라남도)』, 19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地改革時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1985, 138쪽.

경우는 집조법이었고, 밭의 경우는 정조법이었다.[76] 집조법은 농작물이 수확되기 전에 미리 지주와 소작인이 현장에 나가 입도(立稻) 상태를 점검하고, 수확고를 추정하여 해당 연도의 소작료액 혹은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종종 세력이 있는 지주 측에 유리하게 소작료가 책정되었다.[77] 일제하 일본인 지주들의 소작료는 기존 조선왕조의 지대(地代)를 그 대부분의 구성요소로 하고, 그 밖의 토지 개량비용의 자본이자, 공조공과금(公租公課金)의 전가, 농업자재(農業資材) 비용까지 포함함으로써 결국 소작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착취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78] 동산농장의 경우도 토지 개량비, 농업자재비용, 각종의 공과금 등을 전가하면서 일제시기 대부분의 일본인 지주회사의 관행적 소작료 수취율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79] 또한 이렇게 지주에 의하여 유리하게 책정된 고율의 소작료를 소작인이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로 납입하지 못할 경우 동산농장은 동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작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하기도 하였다.[80]

한편 동산농장의 소작료 수납에 관해서는 동산농장 경기출장소 부초(富草)조합 소속의 소작인 박경준(朴慶雋)의 소작료 납입영수증 및 소작료 납입통지표 자료,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통지서, 농업자금 회수 미제금 및 가계정리 대부금 현재액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81]

〈표 8〉, 〈표 9〉에 의하면 동산농장은 관할 농장 관리를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소작인조합을 조직하여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박경준의 경우 부초조합 소속이었고,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의 관리를 받았다. 또한 소작료로는 주로 다마금(多摩錦)을 징수했는데, 이는 일제가 수원 권업모범장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 보급한 일본품종이었다. 문서 양식이 1935년과 1936년의 것이 다른데, 1935년은 농경지 지목별로 소작료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1936년에 가서는 소작인별로 통합되어 통지표 · 영수표가 발급되었다. 그런데 1935년과 1936년 사이에 박경준의 소작료와 조합인(籾)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소작지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1935년도 지목별로 부과된 소

76 大橋清三郎, 『朝鮮産業指針』, 1915, 4쪽;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1편 제2장 소작료 결정방법」, 『중추원조사자료 – 소작제도조사(경상남북도, 전라남도)』, 1913. 소작료 징수방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조된다. 善生永助, 『朝鮮の小作慣習』, 66~83쪽; 신용하, 「일제하의 지주제도와 농민계층의 분화」, 『한국근대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260~262쪽, 269~270쪽; 신용하, 「조선왕조 말기의 지주제도와 소작농민층」, 『한국근대사회사연구』, 1987 참조.

77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1편 제2장 제2절 소작료 결정방법의 이해득실」, 『중추원조사자료 – 소작제도조사(경상남북도, 전라남도)』, 1913.

78 이에 대하여서는 신용하, 「일제하의 지주제도와 농민계층의 분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9집, 1988, 273쪽의 〈표 5〉와 298~305쪽 참조.

79 善生永助, 『朝鮮の小作慣習』, 조선총독부, 1929, 214 · 220 · 230쪽 참조.

80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1편 제4장 소작계약의 체결방법」, 『중추원조사자료 – 소작제도조사(경상남북도, 전라남도)』, 1913.

81 이에 관해서는 정병욱, 「아랫새우대 조한구씨가 문헌」, 『의왕시사』 6, 2007에 자료 해제가 되어 있어 이를 참조한다.

〈표 8〉 1935년 동산농사주식회사 소속 소작인 박경준의 소작료 자료

기록물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내용
소화 10년도 소작료 영수증 No.1039	1935.11.11. 제조(製造)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초평리 537번지 소작인 박경준 부초조합	다마금(籾) 660근
소화 10년도 소작료 영수증 No.1041	1935.11.12. 진체(振替)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초평리 278번지 소작인 박경준 부초조합	다마금(籾) 180근
소화 10년도 소작료 영수증 No.1044	1935.11.12. 진체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초평리 278번지 소작인 박경준 부초조합	다마금(籾) 32근 (1두 8승)
소화 10년도 소작료 영수증 No.1045	1935.11.12. 진체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초평리 278번지 부초조합 소작인 박경준	다마금(籾) 81근 (4두 5승)
소화 10년도 소작료 영수증 No.1046	1935.11.12. 진체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초평리 313번지 부초조합 소작인 박경준	다마금(籾) 101근 (5두 6승)
소화 10년도분 조합인(組合籾) 영수증 No.122	1935.11.12. 진체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소작인조합사무 담당자	소작인 박경준 부초조합	다마금(籾) 144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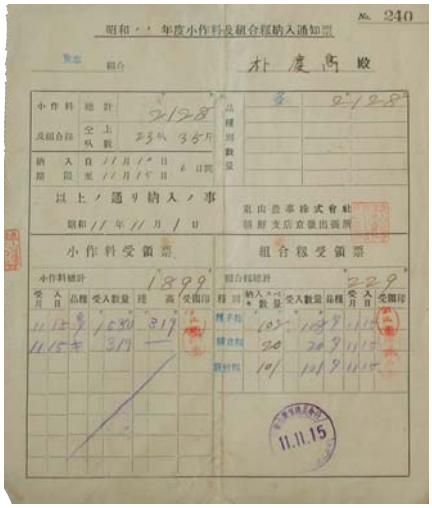
〈표 9〉 1936~1937년 동산농사주식회사 소속 소작인 박경준의 소작료 자료

자료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내용
소화 11년도 소작료 급조합인 납입통지표 No.240	1936.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부초조합 박경준	1. 小作料及組合籾 총계 : 2,128斤, 叭數 : 23叭 35斤, 품종 : 多 2,128斤
				2. 납입기한 :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3. 소작료수령표 총계 : 1,899斤, 多 1,580斤 11월 15일 受入(尹爾重 印), キ319斤 11월 15일 受入(尹爾重 印)
				4. 組合籾수령표 총계 : 229斤(품종タ), 種子籾 : 108斤, 積立籾 : 20斤, 貸付籾 : 101斤 11월 15일 受入(尹爾重 印)
소화 12년도 소작료 급조합인 납입통지표 No.782	1937.10.16.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부초조합 박경준	1. 小作料及組合籾 총계 : 2,603斤, 叭數 : 28叭 55斤, 품종 : 多 1,903斤, 銀 700斤
				2. 납입기한 :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3. 소작료수령표 총계 : 2,269斤, タ 2,269斤 11월 2일 受入(尹爾重 印) 優
				4. 組合籾수령표 총계 : 334斤(품종タ), 種子籾 : 73斤, 積立籾 : 60斤, 貸付籾 : 201斤 11월 2일 受入(尹爾重 印)

작료 영수증이 분실로 다 갖추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82] 다만 1936년과 1937년의 소작료에는 큰 변화가 없어 아무래도 1935년도 소작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영수증이 다 갖추어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박경준의 자료 이

82 정병욱, 「아랫새우대 조한구씨가 문헌」, 『의왕시사』 6, 2007, 8~9쪽 참조.

외에는 거의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대략 남아 있는 사료에 의하면 1919년경 소작료 연 수입은 벼 5만 석에 달하였고, 이를 현미(玄米)로 조제하여 일본으로 이송, 판매하였다.[83]



소화 11년도 소작료 급 조합인 납입통지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2007)

한편 소작료의 효율적인 징수와 넓은 농장에 분포한 다수의 소작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산농장은 기존 한국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던 사음(舍音), 즉 중간관리인 제도를 충실하게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일본인 농장 측에서 사음의 폐해를 없앴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84] 동산농장의 경우 사음에 대한 보수규정까지 설치하여 적극 운영하였다. 즉, 당시 일본인 대농장의 경우 보통 사음의 보수를 논 1두락의 토지에 대하여 나락 약 1두 혹은 거두어들인 나락에 비한 일정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산농장은 거두어들인 나락 1석에 대하여 20전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지 못했고, 종종 사적인 착취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동산농장은 5엔 내지 15엔의 정액 보수로 할 것을 예정하기도 하였다.[85]

또한 소작인 통제방법으로는 소작인조합의 창설을 장려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이때 소작인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 내지 농업회사 측의 소작인 관리를 위한 어용조합이었다.[86] 1916년에 동산농장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조합규약을 만들어 농장 소속 조합 총수는 185개, 인원은 4,631명에 이르렀다.[87] 전라남도 나주군 영산포출장소에서만 1921년 현재 조합수 116개에 조합원 총수는 2,091명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동척의 광주, 나주, 화순 일대 전남 목포 지역 관할 농지에서 소작인조합의 수가 15개, 조합원 총수가 1,024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볼 때 동산농장이 회사 차원에서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여 강도 높게 소작인을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88]

또한 동산농장은 소작인의 생활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신용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였

83 岩崎久彌傳編纂委員會, 『岩崎久彌傳』, 東京大學校出版會, 1980, 490~491쪽.
84 하지연, 「한말 · 일제 강점기 일본인 회사지주의 농업경영 연구 – 澁澤榮一 자본의 조선흥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75쪽.
85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1편 제5장 중간 개재인」, 『중추원조사자료 - 소작제도조사(경상남북도, 전라남도)』, 1913.
86 배영순, 「한말 · 일제초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경영 – 수전농장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4쪽.
87 「東山農事株式會社朝鮮支店經營方法及成績」, 『조선농회보』 제17권 4호, 1922년 4월, 37쪽. 대략 당시 소작인의 50% 이상이 조합에 가입된 상황이었다.
88 전라남도 내무부, 『소작관행조사서』, 1923, 121쪽.

다.[89] 고율의 소작료 수탈에 따른 소작농민의 경제적 몰락과 그로 인한 회사와의 채무관계는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었다. 즉, 종자 및 농기구, 비료, 식량 등 생산수단을 회사가 독점하여 생계위협의 선상에 놓인 소작인들은 동산농장 측으로부터 이 모든 영농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식민지시기 동산농장을 비롯한 일본인 회사지주들은 선대한 농업자재를 구입할 때는 도매가격으로 대량 구입하고, 이를 소작인에게 선대할 때는 소매가격으로 선대하여 상업이윤까지 착복하였으며, 선대한 영농자금과 농업자재의 이자는 고리대이자까지 가산되어 징수되었다. 소속 회사(지주) 이외의 상업자본가로부터의 채무는 소작계약 해제의 조건이었으므로 소작인으로서는 회사에서 대여하는 농업자재와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동산농장의 소작료에 포함된 각종 농업자재의 원리금은 식민지성이 강한 것이었고, 고율 소작료 지대 부분의 반봉건적 성격과 서로 상응하여 유착되어 있었던 것이다.[90]

〈표 10〉과 〈표 11〉은 소작인 박경준의 동산농사주식회사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 농업자금 회수미제액 및 가계정리 대부금 내역으로, 동산농장이 소작인에게 농사자금 또는 가계자금을 대부해 주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표 10〉에 의하면 동산 측은 소작인 박경준에게 농업자금 대부금을 연 7%에, 가계정리자금은 연 10%에 대출하고 있다. 1936년 제18회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영업보고서를 보면 총수익금 149만 7,961원 가운데 곡물매각대금이 69만 3,719.05원으로 전체 이익금의 46.3%를 차지하여 가장 큰 수익처였고, '수입이식 및 신탁예금수익' 이 13만 8,344.91원으로 전체 이익금의 9.2%에 해당된다. 이해 재산목록의 대금 4만 7,307.67원을 소작인에 대한 대부금이라고 간주하고, 이자를 농업자금 대부금 연 7%와 가계정리자금 연 10%의 평균인 8.5%로 계산하면 동산 측은 소작인에 대한 대부금만으로 4,021원의 이자 소득을 올린 셈이다.[91] 그러나 대출을 받은 소작인 박경준의 경우는 그 생활 처지가 곤궁해짐을 볼 수 있다. 박경준은 〈표 10〉에 의하면 매년 동산농장으로부터 농사대금으로 20원 정도를 대출받아 농사를 짓고, 추수 이후 소작료와 농사대금 및 이자를 지불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경준이 회사에 소작료와 대금 및 이자를 치르고, 얼마의 소득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가계정리자금으로 동산에서 대출한 것이 1935년 112원 84전, 1936년에 83원 48전, 1937년에 53원 38전, 1938년에 56원 5전이다. 대출금이 줄어든 상황을 그의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

89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1편 제7장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중추원조사자료 – 소작제도조사(경상남북도, 전라남도)』, 1913.
90 신용하, 「일제하의 지주제도와 농민계층의 분화」, 『한국근대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310~317쪽.
91 『영업보고서』 제18회(1936년 1월 1일~ 1936년 12월 31일), 5~6쪽; 정병욱, 「아랫새우대 조한구씨가 문헌」, 『의왕시사』 6, 2007,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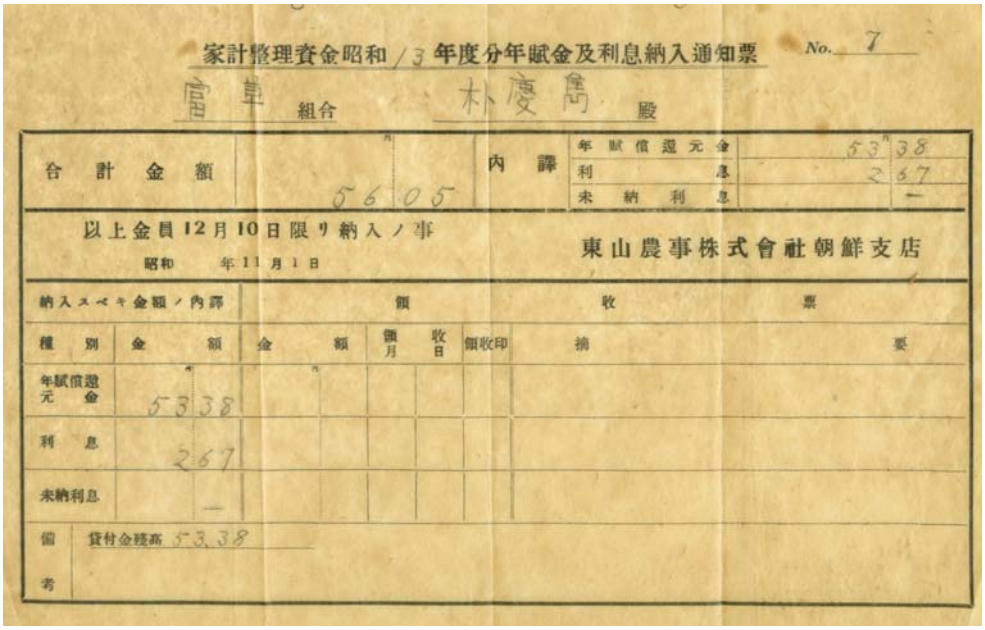
〈표 10〉 동산농사주식회사 소속 소작인 박경준의 농업자금 대부금 자료

기록물명	연도	발급자	수급자	내용
통지서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 No. 1200	1935.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소작인조합 사무담당자(尹爾重 印)	부초조합 박경준	20원 59전(농업자금 대부금 19원 24전, 이자 1원 35전), 12월 10일까지 납입
통지서(粟代金)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 No. 1201	1935.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소작인조합 사무담당자(尹爾重 印)	부초조합 박경준	6원 35전(농업자금 대부금) 12월 10일까지 납입
통지서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 No. 319	1936.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소작인조합 사무담당자(尹爾重 印)	부초조합 박경준	20원 27전(농업자금 대부금 18원 94전, 이자 1원 33전), 12월 1일까지 납입
통지서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 No. 320	1936.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소작인조합 사무담당자(尹爾重 印)	부초조합 박경준	6원 35전(농업자금 대부금) 12월 1일까지 납입
통지서 「가계정리대금 소화 11년도분 연부금 및 이자 납입」 No. 46	1936.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尹爾重 印)	부초조합 박경준	55원 64전(연부상환원금 50원, 이자 5원 64전) 12월 1일까지 납입
「가계정리자금 소화 13년도분 연부금 급(及) 이식 납입통지표」 No.7	1938.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부초조합 박경준	1. 합계 : 56.05엔 – 연부상환원금 53.38엔 – 이식 2.67엔 2. 대부금 잔고 53.38엔 12월 10일까지 납입
「소화 13년도 농업자금 납입통지서」 No.9	1938.11.1.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소작인조합 사무담당자	부초조합 박경준	1. 합계 : 22.34엔 – 원금 : 21.28엔 – 이자 : 1.06엔 2. 이외 가계정리자금 56.05엔

〈표 11〉 동산농사주식회사 소속 소작인 박경준의 농업자금 회수미제금 및 가계정리 대부금 자료

자료명	시기	발급자	수급자	내용
통지표 「농업자금 회수미제액 및 가계정리 대부금 현재액」	1936. 12.31.	동산농사주식회사조선지점 경기출장소	부초조합 박경준	1. 농업자금 회수미제액 1) 원금 : 18원 94전 이자 : 1원 33전 계 : 20원 27전 2) 원금 : 6원 35전 이자 : – 계 : 6원 35전 3) 계 : 원금 25원 29전 이자 : 1원 33전 계 : 26원 62전 2. 가계정리 대부금 현재액 1) 전년도 조월대금 112원 84전 본년도 납입금 29원 36전 잔고 83원 48전 2) 본년도 이자 5원 64전 본년도 납입고 5원 64전 잔고 – 3) 계 대금 및 이자 118원 48전 본년도 납입고 35원 00원 잔고 83원 48전
통지표 「농업자금 회수미제액 및 가계정리 대부금 현재액」	1937. 12.31.	동산농사주식회사조선지점 경기출장소	부초조합 박경준	1. 농업자금 회수미제액 1) 원금 : 21원 28전 이자 : – 계 : 21원 28전 2. 가계정리 대부금 현재액 1) 전년도 조월대금 64원 본년도 납입금 10원 62전 잔고 53원 38전 2) 본년도 이자 4원 17전 본년도 납입고 4원 17전 잔고 – 3) 계 잔고 53원 38전

면 그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박경준은 농사대금 대출보다도 2~6배 가까이 되는 가계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을 이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산농장 소



家計整理資金昭和13年度分年賦金及利息納入通知票 No. 7

富草 組合 朴慶鳥 殿

合計金額	5605	内譯	年賦償還元金	5338
			利息	267
			未納利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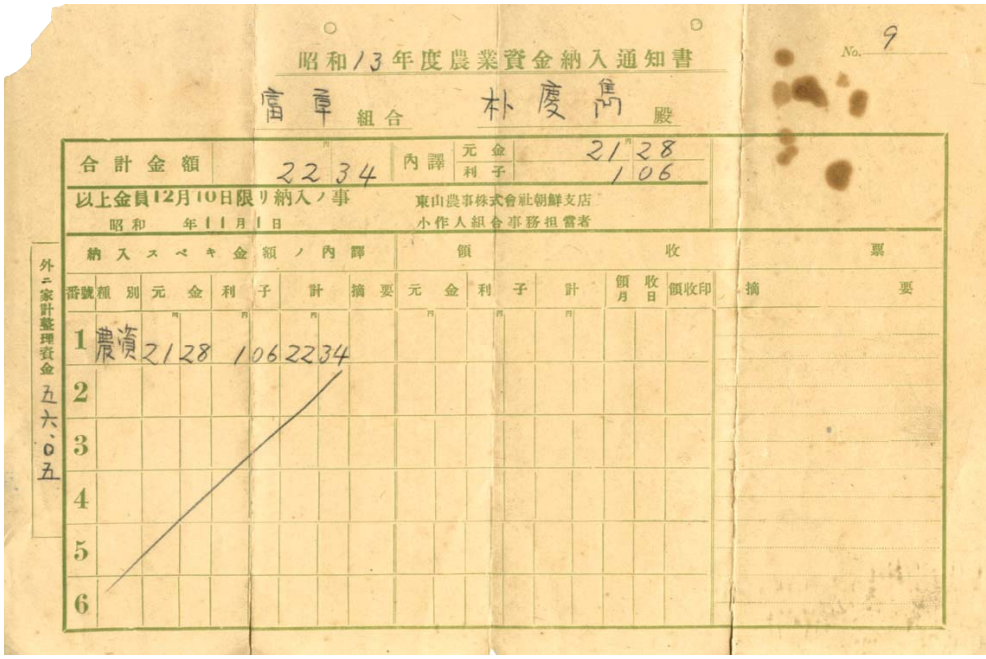
以上金員12月10日限リ納入ノ事

昭和 年11月1日

東山農事株式會社朝鮮支店

納入スベキ金額ノ内譯		領収票				
種別	金額	金額	領収月日	領収印	摘要	
年賦償還元金	5338					
利息	267					
未納利息	—					
備考	貸付金殘高 5338					

가계정리자금 소화 13년도분 연부금 급 이식 납입통지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6, 2007)



昭和13年度農業資金納入通知書 No. 9

富草 組合 朴慶鳥 殿

合計金額	2234	内譯	元金	2128
			利子	106

以上金員12月10日限リ納入ノ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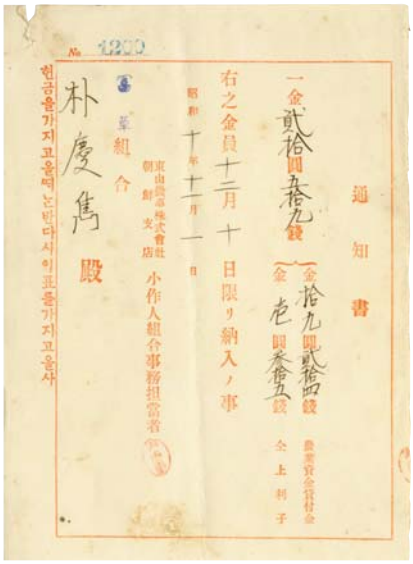
昭和 年11月1日

東山農事株式會社朝鮮支店
小作人組合事務担當者

外ニ家計整理資金 九六、〇五

番號	種別	納入スベキ金額ノ内譯 元金	利子	計	摘要	領収票 元金	利子	計	領収月日	領収印	摘要
1	農資	2128	106	2234							
2											
3											
4											
5											
6											

소화 13년도 농업자금 납입통지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6, 2007)


通知書

一金 貳拾圓參拾九錢 (金拾九圓貳拾錢 農業資金貸付金)
(金 壱圓參拾五錢 金上利子)

右之金員十二月十日限リ納入ノ事

昭和十年十一月一日

東山農事株式會社 朝鮮支店 小作人組合事務担當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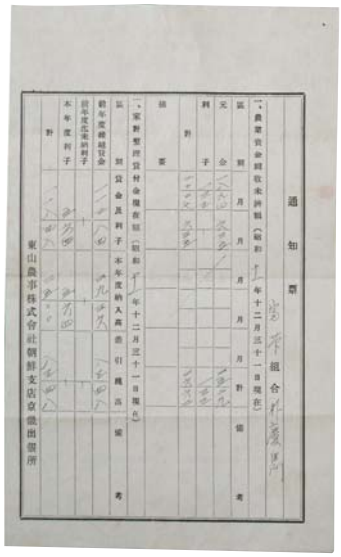
組合

朴慶鳥 殿

No. 1220

헌금을기지고올때 논틴다시이표을기지고올사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농업자금 대부금 및 이자 납입 통지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6, 2007)


通知書

東山農事株式會社朝鮮支店京畿出張所

소화 11년 12월 30일 현재 농업자금 회수미제액 및 가계정리 대부금 현재액 통지표(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6, 2007)

속 소작인들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부채의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작인은 회사지주에게 반봉건적 예농으로 강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조선 농가의 수지 상황을 보면 1930년과 1931년 현재, 경기도 지역 소작인의 농가 총소득은 연간 298엔, 가계비 지출은 327.60엔으로 29.61엔의 부채가 평균적으로 산출되고 있었다.[92] 이러한 식민지 소작제 농장의 경영은 당연히 소작쟁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인 대농장의 소작쟁의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고율의 소작료 징수와 무리한 증징, 일본품종의 강요와 화학비료의 강제 등이 주된 원인이었고, 그 외 소작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도 원인이었다.[93]

92 조선농회, 『농가경제조사』, 1930~1931.
93 『동아일보』, 1922년 3월 7일.

참고자료

제1부 조선시대 농업과 토지 소유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토지 소유관계와 거래관행의 변화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대전속록(大典續錄)』; 『당률소의(唐律疏議)』; 『이아주소(爾雅注疏)』; 『정자통(正字通)』; 『진람(震覽)』.
조선총독관방토목국 편, 『조선부동산융어약해』, 조선총독부, 1920.
조선총독부 중추원, 『민사관습회답휘집(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內藤吉之助 編, 『朝鮮民政資料-牧民篇』, 朝鮮印刷株式會社, 1942.
수원시, 『수원의 옛 지도』, 2000.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수원 관련 토지문서 등
박병호, 『한국법제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도서출판 진원, 1996.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김남두 편, 『재산권 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1993.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일조각, 1989.
정긍식 역,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연구보고 92-10, 한국법제연구원, 1992.
이종길, 「한국사회의 소유권 형성과정에 대한 일연구」, 『법사학연구』 제19호, 한국법사학회, 1998.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제30호., 2007.
손승철, 「명 · 청교체기 대일본외교문서의 연호와 간지」, 『대동문화연구』 제32집, 1997.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 지역의 장시연구」, 『경기사학』 6, 2002.
채현경, 「조선후기 토지 매매명문 배면의 기재유형」, 『고문화』 73집, 2009.
鬼頭兵一, 『李朝の財産相續法』,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5.
仁井田 陞, 『唐令拾遺』,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1933.
仁井田 陞, 『中國法制史研究 -土地法 · 取引法』, 東京大學出版會, 1960.
和田一郎, 「朝鮮の土地賣買の證書たる文記の沿革」, 『朝鮮及滿洲』 155號, 朝鮮及滿洲社, 1920.

제2부 근대적 토지제도와 토지 소유

제3장 일제하 수원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 소유구조

『수원부병술조연분성책』(규 16599).
『경기각군각둔도조급각양세전납미납구별성책』(규 19177).
『경기각군역둔전답일경두락결부정도실수도안』(규 19178).
『수원부무인조연분성책』(규 19525).
『선희궁각읍상납정간책』(규 19583).
『수원부갑오조연분성책』(규 19604).
『경기각군목장양안초록』(규 19615).
『경상남북도역둔토사검성책』 중 「내장원소관수원군소재수성고둔전답임인조진폐사검성책」(규 21025-22).
『추수기』 중 「수원총훈양둔수세성책」(규 22036-18).
『각사등록』 2~3권.
수원군, 『토지조사부』.
김홍식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지주제」, 『한국사』 13, 한길사, 1994.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조석곤, 「토지조사사업 국유지 분쟁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 『대동문화연구』 50, 2005.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7.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 2011.

제5장 해방 후 수원의 농지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 자료집』(『자료집』이라 함) 1 · 2 · 3 · 5, 1984.
수원시, 『토지대장』.
일왕면, 『분배농지 수배대장』; 일왕면, 『상환대장』; 일왕면, 『분배농지부』; 일왕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처리대장』.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김성호 외, 『한국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김일영,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1, 2000.
김준보, 『한국자본주의사연구(II)』, 일조각, 1970.
류기천, 「농지개혁과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충남 연기군 남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4, 1990.
박석두, 「농지개혁과 식민지지주제의 해체-경주 이씨가(李氏家)의 토지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1, 1987.
박현채, 『한국경제와 농업』, 까치, 1983.
박희진, 「농지개혁을 통한 50년대 한국자본축적-농가수지를 중심으로 경북 월성군 서면 사라리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유인호, 「해방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I , 한길사, 1980.
이종범, 「20세기 중반 농지개혁과 농촌사회변동-전라남도 구례군 사례-」, 『역사학연구』 19, 2002.
이지수, 「해방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 『경제사학』 8, 1984.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 『경제사학』 9, 1985.
장상환,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6-1, 2000.
장시원,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성립의 역사적 의의」,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3. 경제』, 1995.
정승진,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 - 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8, 2004.
정승진 · 松本武祝,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한국경제연구』 17, 2006.
조석곤, 「원주의 농지개혁과 식민지지주제의 해체」, 『원주사회연구 I』, 한울, 1998.
조석곤,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조석곤,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농촌경제』 28-2, 2005.
조석곤, 「 '토지대장' 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 김제시 죽산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5, 2005.
조석곤, 「농지개혁당시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46, 2009.
조석곤,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 지주 농민의 입장 -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2011.
조석곤, 「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 - 시흥군 수암면 사례」, 『대동문화연구』 81, 2013.
하유식, 「농지개혁 후 울산군 상북면의 정치지배층과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지역과 역사』 27, 2010.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Cho,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 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The Case of Namjong-myeon, Gwangju City",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013.

찾아보기

ㄱ

가계자금 492
가계정리 대부금 493
가곶방 74, 75, 76
가곶방둔 110, 116
가관방둔 105
가방평둔 112
가사곶 43
가사곶면 47, 65
가사면 47, 48, 51, 52, 60, 65, 76, 104, 145, 151, 155, 164
가사하면 38
가사협 28
가산면 408
가옥세 424, 432, 433, 436
가와구치 기요토시(川口清利) 291
가재리 440
가토 슌페이(加藤俊平) 374
가토 시게토모(加藤茂苞) 285, 291, 292
가토 헤타로(加藤平太郎) 476
각면제언 198
각면제언답 188
각양잠탈결 144
간석지 341
간석지 개량사업 342
간종법 29, 30
간지 39, 40
간척사업 339, 340, 357
간촌 175
갈담면 48, 145, 150, 165
감암 87
감암면 47, 52, 60
감옥서 156, 167
갑오개혁 131
갑오승총 97, 114, 115, 118, 119, 122, 130, 190, 192
갓등면 48
강대련 370, 371
강두수 391
강무당 167
강봉엽 156
강봉헌 127
강성경 156
강화부 92
강희세 153
갖은자 40
개량농법 307
개인소득세 430, 431
갱생지도부락확충계획 318
거래가액 52
거래 관행 33, 35, 39
거래문서 33, 34
거민호 155
건릉 75, 76, 108, 175, 176
건종법 24
결복기 37
결부 50
결부수 49
결성둔 77, 116
결성현 77, 105, 116
『결수연명부』 202
결총 144
『경국대전(經國大典)』 36
경기관찰부 125, 167
경기도농사장려회 389, 390
경기도삼림조합연합회 231
경기우도 24
경기좌도 24
경둔 128
경리둔 189, 198
경리원 133, 135, 136, 201, 212, 277
경부 76, 77
경부선 382
경부철도 474
경성 287
경성부 424
경성부금고 431, 434
경성영림서 232
경성재판소 수원지청 387
경자양전 142
경작농민 171
경작법 26, 28
계두리 48
고경삼 205
고광업 374
고등 110
고등리 231, 232
고등촌동 196
고등토지조사위원회 207
고리대금업 422
고마 124, 129
고마고 77, 104, 107, 110, 113, 116
고마고둔 117
고마고둔토 112
고마둔 128, 167
고마둔토 131
고목덕치 208
고바야시 고로(小林五郎) 374
고색리 196
고성삼 176
고시 마사쓰나(古志正綱) 228
「고시소좌의사기념비(古志少佐義死記念碑)」 228
고양 159
고영희 141
고우에이 교이치(高榮京一) 339, 340
고윤오 176
고자이요 시나오(古在吉直) 273
고정남 205
곡반정동 175
공동구우계 464
공려수리조합 356
공수위전답 120
공유수면 매립 340, 343
공익사(주) 415
공진회품평회 474
공토 103, 119, 131, 135
공향면 145, 152, 165, 194, 195
과세지 185, 186
과천 74, 82, 135
과천수리조합 362

찾아보기

과천안양둔 77
과천현 77, 81, 95, 105
곽주경 174
관노청 156
관동 48
관둔 134, 136, 167, 188, 191, 198, 200
관둔전 72
관둔전답 120
『관수만록(觀水漫錄)』 24
관습 34
관악산 299
관찰부 124
관천고 76, 105, 108, 110, 112, 116, 174
관천고둔 112, 117, 134, 136, 187, 189, 198
광교 358
광교산 229, 231, 234, 299
광교수리조합 360
광덕면 48, 145, 152, 164, 194
광덕제언 198
광덕제언답 188
광둔 189, 198
광무사검 114, 127, 128, 129, 130, 131, 132, 137, 187, 189, 190
광무양안 155
광무양전 139, 162, 216
광무양전사업 139, 182
광암둔 105, 110, 116
광암방 76
광작 18
광주 74, 82, 287
광주군 183
광주부 380
광화문우편국 424
괴태곶 122
괴태곶목장 98, 122, 128
교위 167
교종법 23
교토(京都)제국대학 292
구니다케(國武喜次郎) 478
구니다케합명회사 472
구마모토(熊本)농업학교 484
구마모토(熊本)농장 471
구문기 53
구연식 330
구우계 464
구장리 441
구천 156, 158
구포리 387
국무농장 300, 308, 472
국무합명회사 308, 370, 371, 476, 478
국민정신총동원운동 318
국민총력운동 318
국세 427
국유 183
국유림 227, 232
국유지 114, 190, 209, 212, 225, 229
국유지 분쟁 183, 184, 206
국화도 207
군국기무처 97, 114
군근전 131
군기고 76, 105, 108, 110, 116
군기고둔 117
군기동 146, 159
군내면 408
군부 124, 127
궁내부 75, 76, 77, 97, 98, 99, 120, 124, 125, 127, 195
궁방 167
궁방전 121
궁유지 114
궁장토 114
권덕규 387
권선리 229
권업모범장 232, 269, 270, 271,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8, 289, 292, 293, 295, 296, 300, 308, 350, 366, 367, 382, 411, 442, 463, 472, 474, 489
권업모범장 수원본장 288
권원 44, 45, 54, 60
권중현 275, 276
귀속농지 242, 245, 250
귀속농지 상환곡 432
규슈대 291
규슈제국대학 284, 285
균등과세방식 183
균역청전답 120
근경법 29, 30
근대적 소유권 182
금물촌면 84
금양권 192
『금양잡록(衿陽雜錄)』 25
금융 417
금융기관 421, 423
금융조합 432, 436
금융활동 422, 436
급주위전답 120
기류제도 433
기류협회 435
기무라 다비(木村タビ) 316
기안리 233
기와집 소유 현황 156
기우치 주시로(木内重四郎) 276, 480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73
『기전영지(畿甸營誌)』 73, 116
기타자와(北澤)농장 475
기타자와 쇼하치로(北澤小八郎) 475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440
기흥면 371, 440, 442, 443, 444
김경락 176
김관현 421
김광문 205
김광옥 65
김기덕 159
김기종 153, 159, 161
김낙근 56
김낙무 56
김낙현 171
김덕문 176
김덕재 176
김동준 153
김명기 252, 253
김민호 159
김번성 159
김병준 154
김봉모 208
김봉필 205
김상봉 329
김상준 156
김선경 174
김성규 143
김성옥 158
김송강 205
김수영 208
김순서 176
김순오 158
김순칠 208
김용서 409
김용하 118
김원삼 176
김윤서 171, 174, 175
김익순 418
김인보 174
김자선 143
김재명 159
김재홍 205
김점득 171
김점쇠 159
김정희 382
김종생 156
김중덕 159
김중오 176
김중환 160
김지봉 467
김충길 38
김택수 171, 174, 175
김학구 386
김한명 148
김한목 386
김현묵 374
김현오 156

김형기 158
김홍렬 329
김희용 156
깃득 45

ㄴ
나가이(永井威三郎) 292
나기택 156, 158
나복남 156, 158
나선필 174, 175
나순필 176
나주군 481, 482, 491
나주읍 481, 482
나주평야 482
나진규 156, 158
나카다 가쿠고로(中田覺五郎) 291, 292
나카무라(中村俊松) 339
나카야 교순(中屋堯駿) 374, 484
나카지마 유로스케(中嶋友輔) 291
남곡 110
남곡둔 135, 187, 189, 198
남곡면 47, 60, 145, 150, 164, 195
남둔 112
남만리 143
남면 48, 60, 145, 150, 164
남부 110
남부면 104, 145, 150, 154, 155, 156, 158, 163, 164, 168, 170, 171, 172, 173, 196, 197
남부면 남창동 158
남부면 양안 154
남상철 329
남수동 158
남양군 183, 315, 381
남양만 338
남양반도 23
남양부 85, 86
남정일 391
남창동 110, 156, 158
남창리 226, 227
남철우 329
남태희 329
남토면 91
내수사 85, 86, 87, 91
내장원 97, 127, 128, 129, 131, 132, 133, 137, 187,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200, 201, 202, 210, 212
내포평야 416
녹명소 111
녹명소둔 113
농가경제 322
농가경제갱생계획 317, 318
『농가집성』 19, 20, 21, 26
농가실태조사 244
「농가총람」 19, 20, 23, 25, 26, 28
농림부 243, 244
농무목축시험장 276
농민생활 322
농민항쟁 143
농법 23, 25
농사 개량 411, 412, 444, 461
농사모범장 272, 273, 275
농사모범장 설립계획 277
농사시험장 270, 271, 272, 273, 274, 276, 277, 286, 287, 291, 292, 293, 294, 296, 411
농사시험장 남선지장 304
농사시험장 직원 290
농사시험장 직원수 289
농사장려회 435, 473
『농사직설』 19, 20, 21, 25, 26, 27, 29
농산물품평회 315
농산촌생산보국운동 318
농상공부 97, 121, 124, 127
농상공학교 276
농상무성 275, 285
농서 19
농업 경영 401, 408
농업 생산 299
농업시험장 270, 287
농업자금 492
농업자금 대부금 493
농업자금 회수미제금 493
농업정책 269, 283
농업환경 299, 301, 363
농지개혁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7, 250, 261, 264, 384, 432, 437
「농지개혁법」 240, 241, 243
농지세 437
농촌고리대 421, 436
농촌진흥운동 317, 318, 334, 356
농촌진흥협의회 317
농촌진흥회 317
농회 389, 435, 444, 473
농회비 424, 427
누동궁 167, 174
누진세제 431, 432
니시카와 히사시(西川久) 292

ㄷ
다나카(田中常松) 416
다나카(田中義峰) 459
다나카 메이(田中明) 291
다니(谷義治) 374
다이쿠바라 285
다이쿠바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 284, 291
다짐 37
다카기 도쿠지(高木德治) 374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 287, 292, 294
다케다 소시치로(武田總七郎) 295
답주 148
대구 275, 280, 287
대구도호부 381
대구지장 281
대소청둔 105
대우법 29, 30
대우치기 30
대유둔 72, 73, 74, 76, 104, 107, 108, 109, 110, 117, 122
대유둔전 93
대정정 481
대청둔 116
대토지 소유자 174
대한적십자사 395
덕수궁 233
덕우리 농가 생계수지 상태 329
덕원원예지장 283
덕원지장 281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234, 281, 307
도농사시험장 286, 293
도대리 48
도모노(伴野雄七郎) 480
도문기 60
도산서원 381
도세 119, 136
도세부가세 433
도요나가 마리 292
도전 119
도조 108, 127, 132, 194, 196, 200, 210, 410
도조기 403
도조액 194, 201
도종묘장 286
도집강 384, 389
도창 167
도촌둔 82, 93, 96, 104, 111, 116, 122, 125, 132
도촌둔전 99
도촌면 77, 104
도쿄대 292
도쿄제국대학 273, 484
도쿠히로 쿠니타로(德弘國太郎) 484
독농가 440
돈암동 435
동리 231, 232
동면 48
동방수리조합 362
동북면 145, 150, 153, 155, 164
동산농사 조선지점 481
동산농사주식회사 260, 308, 370, 371,

374, 472, 478, 479, 483, 484, 485, 490, 492, 493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479
동산농사주식회사 조선지점 경기출장소 489
동산농사회사 300
동산농장 308, 315, 411, 471, 472, 476, 478, 479, 480, 481, 482, 484, 485, 487, 488, 489, 491
동산농장 수원지점 485, 486
동산리 481, 487
동산촌역 481
동수촌동 196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440
동양척식주식회사 260, 300, 315, 346, 351, 352, 370, 473, 478, 482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지점 476
동양척식회사 353, 374
동척 208, 309, 487
동척농장 442
동탄면 301, 311, 353, 368, 442
동태적 지주 383
동화리 195
두락 50
두락지 49
둔세 108, 109
둔소 94, 110
둔전 69, 72, 73, 74, 78, 103, 108
둔전답 85
둔촌동 196
둔토 104, 108, 109, 110, 113, 114, 125, 132, 210
들목리 383, 435
들목 조씨 379, 384, 387, 388, 389
땔감채취권 195
뚝섬 280

ㄹ
러일전쟁 272, 273
류벽 152, 153
류포목점 440

ㅁ
마도면 301
마름 408
마름 경영체제 382, 435
마름제 경영 402, 414
마와타리 미이치(馬渡三市) 339
마정둔 105, 110
마정방 76
마지기 49
만년제 72, 366, 474
만석거 72, 73, 117, 366, 474
매곡 111
매곡면 145, 151, 165
매득 45, 60
매득인 39, 41, 42, 53
매산동 196
매산리 226, 227, 482
매송리 416, 437
매송면 23, 209, 301, 379, 380, 382, 384, 389, 400, 403, 409, 418, 424, 431, 432, 434
매송면사무소 428
매송면장 398
매송면 추수기 428
매송역 382
매수분배농지 249, 250
매양법 28
매탄리 229
매향동 110
맥류 작부면적 312, 313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273
며지곶면 85, 89
면별 국유지 분포 208
면세 427
면세승총 전답 120
면세전 114
면세지 119, 137
면유재산 234
면화재배협회 278
명고서원 380, 385
명례궁 91, 167
명례방 명례동 379
명륜동 424
명륜정 435
명문 35, 39, 41, 50, 56, 60
명선공주방 86
명안공주방 121
명안공주방답 120
모리카와(森川源八) 397
모리타 기요조(森田喜代至) 342
모리타 마코토(守田亶) 484
모범촌 487
모지면 83
모현둔 93, 95, 104, 111, 116, 122, 125, 132
모현둔전 98
모현면 77, 95, 104
목장 129
목장공산 134, 188, 198, 200
목장둔 132
목장토 123, 195
목포 280
목포 일본인상업회의소 272
목포지장 283
목포지장용강면작출장소 283
무상몰수 · 무상분배 241
무세전 186
무세지 186
무토 114, 121, 137
무합명회사 475
문기 33
문시 110
문시면 145, 150, 164
물산품평회 316
미곡 개량사업 444
미곡 생산력 309, 313
미곡무역 383, 436
미곡상 417
미곡생산 확충정책 417
미곡수출조합 271
미곡통제조합 396, 435
미군정 242
미쓰비시 471, 472, 478, 479
미쓰비시합자회사 479
미이케탄광 234
미 작부면적 310, 311
미츠다 류이치(滿田隆一) 291
민대식 208
민만길 156
민영기 141, 274
민유 183
민유지 136, 184, 228
민치순 143
민호 155

ㅂ
박건유 371
박경준 489, 490, 492, 493
박기수 104
박대련 156
박동이 159
박래춘 152
박례금 176
박문회 171, 174, 196, 197
박민수 467
박복남 176
박복례 176
박복생 174, 175
박복이 176
박상훈 195
박석규 391
박성숙 381
박성칠 418
박세당 381
박순남 176
박순매 176
박순복 176
박순점 176
박승직 416
박승직상점 416
박씨돌 176

박언례 176
박영선 174
박정양 140, 141
박제빈 381
박제순 274
박제태 316
박조이 156
박준발 38
박준성 143
박창희 416
박필례 176
박회구 152, 153
박홍래 418
박홍태 176
반곡등면 76
반월리 481
반월면 301, 308, 311
발괄 37, 63
방교 358
방교동 146
방교수리조합 360
방동둔 110
방동면 75
방매 43, 44, 45
방매인 44, 53, 55
방응모 343
방축리 380, 385, 399, 403, 408, 409, 410, 414, 418, 419
방축리 지대수입과 지출 414
방축리 추수기 415
방축면 398
배면 57
배미 49
배양리 233
배자 37
백낙홍 152, 153
백령대소청둔 76
백령진 76, 105, 116
백문매매 59
백봉 386
벌리 196
변영헌 387
변태순 156
별급 45
별급문기 37
별비둔 124, 129, 134, 188, 198
병영 167
병점리 225
보시동 146, 156
보적사 205
복선군 86
복창군 86
본문기 53, 60, 61
본영이속둔전답 120
봉담면 209, 301, 311
봉둔 128, 129, 130
봉산군 284
봉상시 75
부가세 433
부곡둔 93, 94, 104, 111, 116, 122, 125
부곡둔전 98
부곡면 77, 104
부농정 15
부동산담보제도 421
부락생산확충계획 318, 320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 272
부초조합 489
북둔면 86, 87
북방면 84, 85
북부 110
북부면 145, 146, 152, 153, 154, 155, 156, 158, 163, 164, 168, 170, 171, 172, 173, 196, 474, 475, 479
북부면 양전 148
북부면 장안동 158
분배농지 243, 245, 255, 257
분배농지 면적 246
『분배농지부』 248
분배농지 상환곡 432
분배농지 전매율 253
분봉상시 110, 116
분봉상시둔 112, 117
분쟁지 184
분쟁지심사위원회 205
분쟁지조사 205, 206
분종법 29
불당 159
불복신청지 207, 208
불이흥업 471
불평등도 261, 263
비과세지 186
비변사 92
비봉면 301, 311, 387
『비료대분급기(肥料代分給記)』 412
빈정 416
빈정리 421
빈정포 382

ㅅ

사가테 요시오(坂手芳夫) 476
사곡리 441
사도세자 69
사리원 287
사명리 48
사복둔 134, 136, 198, 200, 201
사복목장 188
사복시둔 121
사복시둔전답 120
사와다(澤田宗三郎) 419
사와무라 도우헤이(澤村東平) 287, 292
사유지 114, 230
사이토 엔(齋藤延) 484
사적 소유권 182
사정면 48
사지 49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299, 475
사코우 273
사토(佐藤誓雅) 385
사판위원 120
사표 49, 50, 51, 146
산루동 156, 158
산루리 226, 227, 441
『산림경제』 21
「삼림령」 223
「삼림법」 222, 223
산림정책 397, 398
산림조합 435
산림조합반대운동 398
산미증식계획 284, 293, 294, 307, 308, 309, 315, 337, 347, 349, 352, 355, 394, 417, 418, 455, 473
산송 385
산포출장소 491
삼겨린 65
삼도둔 76, 93, 94, 104, 107, 110, 112, 116, 122, 124, 126, 127, 129, 132, 135, 136, 187, 189, 198, 201
삼림조합 230, 231, 398
삼봉 110, 111
삼봉면 145, 150, 165, 195
삼봉역 133, 136, 188, 191, 195, 198, 200
삼봉역토 196, 209
3·1운동 337
상광교 159, 245, 246, 255
상광교리 231, 232, 239
상권선리 441
상속 45
상홀면 145, 150, 164, 195
상환 253
서둔 72, 73, 136, 196
서둔 동촌 159
서둔 서촌 159
서둔리 231, 232
서둔촌 474
서둔평 277
서명 56
서명응 82
서병덕 153
서상긍 386
서상천 386
서상춘 387
서선지장 284, 295

찾아보기

서신면 207, 301
서원둔 198
서원토 134, 188, 192
서유구 92
서천리 443, 444
서호 367
석장둔 77, 105, 108, 116, 117, 122, 125, 126
석장둔답 98
석장둔토 111
선회궁 75, 76, 77, 87, 89, 90, 167, 174, 187, 191, 196, 197, 202
성곶둔 82
성관영 416
성교당 156
성기운 279
성두리 76
성산(城山)농업주식회사 480
성호면 209, 301, 309, 311
성호면 외삼미리 319, 321
세계대공황 468
세동 196
세무청 167
소농조합 440
소득세 424, 436
소득세제 436
소유권 33, 62
소유권 이전등기 261, 262
소유의식 45
소작계약 413
소작계약서 488
소작권 413, 441
소작농민경제 420
소작료 410, 413, 441, 490, 491
소작료 수취방법 488
소작인 409, 421, 441, 488, 492, 495
소작인조합 491
소작인 통제방법 491
소작쟁의 440
소지 37, 63
손승조 174
송동둔 75, 104, 108, 111, 116, 121, 122
송동면 75, 146, 150, 165, 380, 384, 385, 476
송라동 385
송라리 403, 405, 409, 426, 437
송라리 추수기 412
송라초등학교 434
송병준 390
송산리 233, 346
송산면 207, 301, 311
송순섭 342, 343
송영만 343
송영찬 343
송죽리 231, 232
송평국 409
수룡수리조합 353, 360, 367, 368, 370, 371, 374, 440, 487
「수룡수리조합비」 371
수리산 299
수리소 76, 104, 105, 108, 111, 116
수리소둔 117
수리시설 401, 417, 418
수리조합 349, 351, 353, 354, 358, 360, 361, 363, 365, 368, 417, 435
수리조합비 419
수리조합사업 350, 352, 355, 356, 357
수리조합정책 349, 352
수문청 167
수배농가 250, 252, 254, 257
수북면 145, 151, 155, 164, 386
수성고 76, 104, 107, 124, 174
수성고둔 134, 136, 187, 188, 198
수성고둔전 136
수성둔 167, 174, 196, 197, 206, 209, 210
수성학교 386
수어둔 134, 188
수어청 77, 81, 82, 90, 104, 108, 113
수원 142
수원고농 291
수원고등농림학교 289, 382, 484
수원공립보통학교 315, 316
수원공회당 316
수원괴태곶목장 98
수원군 118, 121, 122, 127, 136, 148, 153, 155, 160, 161, 163, 168, 183, 213, 301, 302, 303, 309, 315, 382, 444, 455
수원군 관아 167
수원군농회 394
수원군 면별 부자수 323
수원군 면별 빈자수 324
『수원군 북부면 양안』 146
수원군 분쟁지 206
수원군 불복신청지 207
수원군삼림보호조합 397
수원군삼림조합 230, 231
수원군 생계 상태 331
수원군수 387, 421
수원군 양전 145, 149, 160
수원군 양전관리 152
수원군 역둔토 129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73
수원군 향남면 송곡리 316
수원군의 분쟁지 현황 205
수원극장 440
수원 농과대학 484
수원농림전문학교 282
수원농림학교 280, 282
수원농사장려회 317
수원둔 91
수원면 184, 207, 210, 212, 225, 226, 227, 234, 235, 301, 308, 309, 313, 441, 442, 482
수원면 국유지 209
수원면 소유 임야 235
수원목장 98
수원부 65, 69, 81, 86, 103, 104, 108, 115, 118, 119, 121
수원부 둔전 116
수원부 둔전답 99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73
수원상업강습소 440
수원수리조합 362
수원신사 227
수원역 176, 382
수원유수부 135
수원읍 228, 229
수원정거장 277
수원지방 124
수원지방금융조합 315
수원지방대 126
수원척식종묘주식회사 440
수원학교조합 228
수원향교 228
수원 화성 146
수원 · 화성농지개량조합 362
수유리 122
수유리목장 123, 128
수장 56
수전 26, 27
수전농법 28
수조권 187
수조기관 191
수지면 371
수진궁 91, 121
수진궁전답 120
수촌 56
수촌리 76
수화농지개량조합 362
숙명의숙 381
숙선옹주방 92
숙성둔 109, 111, 116, 117, 122, 124, 126, 189, 198
숙성면 77, 84, 85, 86, 87, 104, 145, 150, 155, 164
숙성수둔 104, 107
숙성수포둔 77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471
시비 27, 28
시비법 28
시작 148, 163

시장경제 60
시주 148, 163
시흥 74
시흥군 126, 135
시흥둔 75, 91, 105, 108, 111, 116, 121, 122
시흥현 75, 105, 116
식량전작물증산계획 295
식민농정 307, 322, 334, 441
식민지 지주제 259, 435
식산은행 423, 436
신갈리 440
신기촌 440
신문기 42, 53
신속 21
신수보 174
신양면 379
신영조 156, 158
신윤삼 158
신인수 176
신창면 381
신천 74, 110
신천가곶방둔 76
신천군 75, 76, 105, 116
신천둔 75, 91, 105, 116
신천마정둔 76
신태희 174, 175
신풍동 146
심상욱 391
심상훈 141
심원직 152, 153
심팔쇠 174
쌀 재배면적 308
쌀폭동 337
쌍수리면 85
쓰즈키 다케마로(鈴木竹麿) 291

ㅇ

아록위전답 120
아산 81
아산군 142, 381, 382, 409, 435
아산군농회 394
아산군수 391
아산군지주회 389, 391, 393
아키야마(秋山研亮) 340
안녕리 233, 346
안녕면 145, 151, 164, 176, 177, 178, 179, 195
안룡면 209, 233, 301, 304, 308, 309, 311, 346, 351, 367, 371
안산 74, 135
안산군 76, 105, 116, 183
안산둔 76, 91, 105, 108, 111, 116, 122
안성군 75, 105, 116
안성둔 75, 105, 108, 111, 116, 121, 122
안시주 43, 44
안양둔 82, 93, 95, 105, 108, 111, 113, 116, 122
안양면 77, 95
안영태 441
안종덕 160
안중리 48
안중면 48
안택기 65
압정면 145, 150, 165, 195
앙기 27
애국계몽운동 442
애국부인회 396, 435
야기 긴조(八木金藏) 476
야다 요시히라(八田吉平) 291
야마다 나오야(山田直矢) 233, 234
아목리 379, 384, 401, 403, 405, 409, 410, 418, 421, 426, 435
아목리 지대수입 416
아목리 추수기 402, 411
야초 148
양간면 145, 152, 164, 195
양감면 301, 313
양근환 260
양무감리 142, 161
양무관리 149
양무위원 146, 149, 153
양반경제 383
양반지주경제 383
양반지주제 384
양성관 374, 440, 459
양성군 105, 127
양성둔 76, 105, 108, 111, 116, 121, 122
양성현 76, 116
양안 144
양위조합 462
양잠조합 463
양전 144, 165
양전관리 143, 146, 150
양전사업 48, 65, 141, 153, 187
양주원 205
양지아문 141, 142, 144, 148, 155, 160, 161, 162, 163, 165, 167, 168
양춘오 159
양향둔 77, 116, 117, 124, 134, 167, 187, 188, 198, 206, 209, 210
양향청 77, 91, 121
양향청전답 120
어도 207
어랑천동 192
어랑천면 23
어천리 23, 412
어천수리조합 418, 420
어탄면 145, 150, 164
엄주필 159
에가시라 후사타로(江頭房太郎) 476
여자잠업강습소 281, 285, 287
여화수리조합 351, 367, 371, 375
역둔토 103, 114, 125, 127, 131, 133, 135, 136, 137, 184, 185, 187, 188, 190, 191, 200
역둔토 도액 200
역둔토 도조 201
역둔토 도조 납부 현황 198
역둔토 수조방식 192
역둔토 수조액 191
역마위전답 120
역촌 156, 159
역토 114, 175, 195
역토조사 118
연산둔 76, 91, 105, 108, 110, 116
연산현 76, 105, 116
연입조합 463
연호 39, 40
염전 341
염정세 189, 198
염정호 146
영고 77, 105, 108, 116, 117
영둔 111
영림서 231
영림창 231
영빈 이씨 90
영빈방 86
영산포 482
영통리 229
영화관둔 133, 188, 198, 209, 210
영화관둔역전 136
영화관둔전 136
영화마위 167, 174
영화역 174
영화역관둔 128, 129
영화역관둔답 132
예동 192
예산군 379
오근성 159
오덕영 370, 374, 459
오둔 81, 82, 90, 93, 94, 95, 96, 111, 113, 126
오득영 191, 192, 459
오명근 152, 153
오목천 233
오목천리 233, 234
오산출장소 482
오성선 370, 374, 442, 443, 444, 448, 451, 455, 457, 459, 460, 462, 463, 465, 466, 468
오영국 152, 153
오영조 152, 153

찾아보기

오자키 시로(尾崎史郎) 291
오정면 86, 145, 151, 164
오케시모다 센조(樋下田仙藏) 421, 422, 475
오케시모다(樋下田)농장 476
오쿠란 노부오(奥蘭信雄) 484
오쿠라농장 471
오타둔 76, 104, 111, 116, 122, 124, 134, 136, 187, 188, 198
오타면 76, 84, 85, 104, 107, 145, 151, 153, 155, 164
오항선 459
오혁선 444, 462, 467
오횡묵 143
오홍서 159
온양군 398
온양면 382, 399, 418, 419, 431
온양면장 391
온양수리조합 418, 419
온양읍 414
온양읍사무소 420
온양현 380, 385
온양현감 385
왕송(旺松)수리조합 362
왕토사상 62
외별고 74, 91
외부 386
외용정리 483
외촌 23
용강면 284
용강면작출장소 283, 284
용기순 329
용덕실 329
용동궁 83, 86, 87, 92
용둔 198
용복 110
용복둔 134, 187, 188, 198
용복면 145, 151, 165, 196, 197
용산 280
용산지장 281
용성운 329
용수기업조합 465
용수농계 442, 444, 446, 447, 448, 450, 451, 452, 455, 457, 460, 466, 468
용수저축조합 452, 454, 455, 457
「용수저축조합 규약」 452
용수홍농연구회 444, 455
용수홍농조합 442, 455, 457, 460
용수홍농주식회사 439, 440, 442, 455, 457, 459, 460, 466, 468, 469
용영목 329
용인 74, 82, 135, 142
용인군 94, 143, 160, 161, 315, 371, 442, 443, 444, 455
용인도촌둔 77
용인둔 76, 91, 104, 108, 111, 116, 122
용인모현둔 77
용인부곡둔 77
용인험천둔 77
용인현 76, 77, 81, 116
용재건 329
용주사 121, 122, 174, 208
용주사전답 120
용직문 329
용체둔 188
용호둔 134
용호영 124
용호영둔 129
용환문 329
우경 25, 29
우음도 207
우정 358
우정면 145, 151, 153, 165, 194, 195, 207, 209, 301, 308, 311, 338
우정면 이화리 342
우정면 주곡리 340, 341
우정면 호곡리 343
우정사복둔 188, 198
우정수리조합 360
우정제언 198
우정제언답 188
우체사 156, 167
우편제도 424
우하영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긍석 152, 153
원리 380
원산출장소 281
원예모범장 276
원잠종제조소 281
원장부 결총 144, 155
원장부 전답 186
원직상 153, 161
원천리 229
원총액 187, 188, 190
월경지 38
유가와 마타오(湯川又夫) 292
유기영 391
유기환 141
유남수 159, 171
유상몰수 · 유상분배 242
『유서필지(儒胥必知)』 34
유성수 159
유승옥 159
유원삼 159
유진억 140
유천 91
유천둔 75, 104, 105, 107, 110, 112, 116, 122, 124, 134, 136, 187, 188, 198
유치긍 416
유토 114, 121
유토면세지 83
유하영 459
육상궁 91, 121
육상궁답 120
윤경선 391
윤교범 205
윤구성 158, 160
윤병협 316
윤성서 208
윤수영 156, 440
윤용선 141
윤용섭 176
윤우선 205
윤원영 441
윤일성 156
윤재용 159
윤정구 141
윤종필 330
윤증 379
윤치소 381, 382
윤치호 381, 382
윤태범 146
윤태정 152, 153
윤태중 484, 485
율전리 231, 232, 441
융건릉 112, 233
융릉 175, 176
은율 110
은율광암둔 76
은율현 76, 105, 116
을미사판 97, 114, 115, 119, 121, 122, 130, 131
음덕면 209, 301, 311, 317, 338, 339
음덕면 송림리 326
음덕면 송림리 농가 생계수지 상태 330
의열궁 87
의열묘 90
의왕면 301, 308, 311
이강국 389
이경선 330
이경실 176
이계필 143
이관우 467
이교하 381
이규상 152, 153
이규화 152, 153
이규환 277
이기 140
이기준 419
이다 유키나리(飯田幸成) 371

이덕영 391
이덕하 143
이도재 140, 141
이리 287
이리마지리(入交貞吉) 391
이모작 29
이목 245, 246, 255
이목리 231, 232, 239
이병선 208
이병순 459
이병욱 459
이병호 385
이봉래 260, 441
이상호 153, 161
이생처 84
이성선 156
이성실 156
이성우 419
이순명 159
이순원 194
이승렬 330
이승명 444, 459, 467
이승배 330
이승연 143
이승우 143
이승희 330
이시화 158, 160
이아 77
이양선 330
이영선 159
이오득 159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 479, 480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 371, 479, 480, 484, 485
이완용 387, 390
이용설 146
이우규 143
이은종 409, 424
이응우 152, 153
이인돌 159
이일매 159
이장선 330
이재덕 444, 467
이정생 159
이조이 158, 160
이종대 142, 143, 161, 162
이종덕 416
이종면 152, 153
이종설 329
이종익 371
이종칠 156
이종필 156
이종화 152
이중선 156, 174
이직열 412
이창훈 340, 342
이채연 141
이철쇠 171, 174, 175
이춘쇠 159
이춘회 329
이치덕 174
이치영 158
이태래 118, 121, 122
이태정 143
이태하 127, 128
이토추(伊藤忠)합명회사 416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274, 275, 279
이필영 143
이항구 205
이해룡 408, 420
이행직 459
이호년 171
이화선 171
이환영 459
이훈구 243
이휘래 260
이희인 159
인계리 229
인소득세제 429
인안농지개량조합 362
인천출장소 482
일본식 농업기술체계 283, 285
일본인 지주 474, 475, 477
일본인 회사지주 471, 478
일본적십자사 395, 435
일본품종 283
일왕 358
일왕면 245, 246, 249, 252, 255, 256
일왕수리조합 360
일용면 76, 104, 146, 151, 155, 165
일월수리조합 356, 360
일필지조사 206
일형면 209, 232, 301, 304, 308, 313, 351, 367, 441
일형면 송죽리 326
일형면 송죽리 농가 생계수지 상태 329
일형면 파장리 진흥회 317
임면호 159
임병팔 191
임병한 146, 153
임복업 156
임시재산정리국 135
임시토지수득세 437
임시토지조사국 202, 207, 209
임야 소유권 215, 396
임야 소유자 230
임야세 398, 424, 427, 436
임야조사사업 215, 222, 224, 225, 226, 229, 231, 233, 234, 398
『임야조사부』 222, 225
임원칠 159
임화실 156
입법의원 242
입안 36, 59, 61, 63
입지 63

ㅈ

자작농체제 259
자작예정표 402
자호 48, 49, 51
작인 148
작인조합 440
잡종법 29
장규환 152
장둔 125
장석구 416
장수사 91
장안동 146, 156, 159
장안면 145, 152, 165, 301, 338, 343, 441
장안면 석포리 340, 341
장용남 388
장용내영 69, 84
장용영 71, 74, 75, 76, 85, 86, 87, 90, 91, 104
장용영 외영 74
장용외사 71
장용외영 69, 81, 84, 103, 107, 118, 135
장원 98
장재기 391
장주 110
장주면 145, 151, 164
장주역 133, 188, 195, 198
장주역토 196
장주위전답 120
장지제 367
장지제수리조합 353, 360, 368, 371, 375
장헌세자 69
장흥 80
장흥부 78, 79, 90, 92
재배면적 308
재조선일본인상업회의소연합회 271
재한일본인상업회의소연합회 273
전매매농가 257
전매매농지 256
전병훈 143
전영기 152
전자운 176
전작개량증식계획 294
전주 38, 148
전주군 481
정고양 176
정광헌 208
정기준 205

찾아보기

정낙현 159
정남면 209, 301
정도영 143
정두영 191
정림면 145, 150, 155, 164
정명랑 176
정봉구 208
정송면 83
정순문 208
정인규 422
정인달 398
정인섭 485
정자리 441
정조 15, 16
정조이 205
정주 287
정태적 경영 437
정태적 지주 383
정태환 416
제2종 유토 109, 115, 137
제1종 유토 115
제부도 207
제사 65
제실재산정리국 135
제언 수축비 194
제언답 191, 194
제초 28, 30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322
『조객록(吊客錄)』 388
조대구댁 381, 403
조덕재 421
조돈선 385
조동오 146
조림대부 225, 227, 229
조림대부제도 223
조림사업 397
조만원 379, 380, 381
조무술 174
조문객 389
조문경 418
조문식 416
조민재 418, 422
조백현 289, 291
조병두 381, 382, 387, 390, 394, 397, 398, 416, 424, 428, 430, 431, 435, 437
조병화 381
조복양 381, 384
조봉암 243
조상존 379, 384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382, 399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479
조선경동철도회사 382
조선농지개발영단 357
조선농회 389, 393, 394
조선식산은행 352, 353, 423
조선신탁주식회사 478, 482
조선실업주식회사 471
조선임야조사사업 216, 222, 224, 230
조선증미계획 357
조선총독부 228, 232, 270, 279, 426, 435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285
조선총독부 산림과출장소 231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352, 353
조선흥업주식회사 471
조세법정주의 183
조세재 416
조영도 380, 381, 388
조운철 159
조원교 418
조원리 231, 232
조익 379
조인묵 389
조종섭 391
조종재 380, 381
조지겸 379, 381
조촌면 481, 487
조택기 437
조판서댁 403
조풍호 388
조학년 380
조학원 154
조한복 205
조흥묵 381, 382, 384, 386, 435
조흥은행 436
조희필 380, 381, 384
종각 167
종덕면 145, 152, 164
종모양육성소 287
종양장 287
주거형태 155
주세 424, 425
중보동 196
중일전쟁 318, 468
중초책 153, 154, 163
중추원 142, 160
증여 45
『제민요술(齊民要術)』 28
지계 215
지계아문 160, 161, 163, 164, 165, 167, 168, 172, 175, 215
지계양안 160, 163, 165, 167, 168
지계양안의 관유지 166
지계양전 165
지고 110, 124, 129
지고고마둔 134, 136, 188, 198
지고둔 128, 167
지고둔답 132
지내등면 76
지내면 104
지니계수 261, 262
지대 410, 412
지대수입 410, 414
지동 487
지리 229
지목 48, 50
지번 48, 49, 51
지불수단 52
지세 114, 424, 425, 426, 427
지세 납부실태 428
지세부가세 426, 427
지세부가 학교비 426
지세제도 437
지세할 426, 427
지소리 231, 232
지심인 146, 149
지장동 196
지적 48
지종법 25, 26
지주 경영 383, 402, 403, 405, 413, 414, 417, 435
지주 경영방식 410
지주경제 420
지주 납세제 425, 436
지주수입 415
지주회 389, 392, 435, 473
지지대고개 231
지천경 174
지홍갑 205
직산 52
직산군 46
직산지 46
진위 81, 135
진위군 126, 315
진위둔 75, 116
진위현 75, 116
진휼청 77, 105, 108
질지 36
집조법 489

ㅊ

차시민 156, 158
차원린 156
차유순 374, 440
차중인 192
차형린 156
차회균 159
착명 56
찰방진역 167
창덕궁 233
창흥의숙 462
책응고 76, 104, 107, 112, 116
책응고둔 117

척북(拓北)농장 479
척식박람회 474
천수답 개량사업 346
『천일록』 13, 14, 15, 16, 17, 18, 21, 23, 25, 28
천천리 441
청룡면 145, 150, 164
청원서 65
청일전쟁 228
청호면 77, 145, 152, 164, 197
청호역 133, 136, 188, 195, 198
초가집 158
초가집 소유 현황 158
초장면 145, 150, 165, 195
초평면 145, 151, 164
총독부 313
총액제 185
총융둔 133, 188, 195, 198, 209
총융청 81, 124
총융청둔 127, 129
최광준 156
최규석 416
최동필 208
최두문 143
최명래 205, 207
최범일 176
최성집 205
최수환 252
최승대 156, 158
최신묵 65
최여도 174
최여장 159
최재신 159
최재현 158
최정희 205
최종환 252
최창문 252, 253
최홍도 158
최희선 159
추기 57
추수기 402, 403, 404, 405, 408, 410, 411
추탈담보문언 54, 62, 63
축만제 72, 73, 93, 94, 110, 117, 366, 367, 474
축만제둔 73, 74, 76, 104, 107, 108, 109, 111, 117, 122, 474
충남상업 416
충남상회 423
충남선 382
충청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391
충훈둔 133, 188
충훈부 87, 124
충훈부둔 129
친군영 124
친군영둔 129, 130
친둔 134, 188, 198, 209
칠보산 금양권 192
「취석실주인옹자서(醉石室主人翁自敍)」 16

ㅋ
카사마츠 이치조(笠松一藏) 476
카와카미(河上兼三) 391
코마츠(小松源一) 316
쿠즈노(葛野淺太郎) 291

ㅌ
탁지부 97, 114, 127, 130, 135, 143, 195
태장면 209, 225, 229, 230, 301, 308, 309, 311, 353, 371, 441, 442, 487
태촌 110
태촌면 145, 150, 164
택호 42, 381, 403
토지가격 474
토지개량부 352, 353
토지개량사업 337, 338, 339, 340, 343, 349, 352, 355, 357, 363
토지개혁 237, 239
토지 경영자 170
토지 매매명문 34, 35, 37, 38, 39, 41, 43, 44, 46, 49, 53, 57
토지 소유 33
토지 소유관계 59, 183
토지 소유구조 208, 211
토지 소유권 63, 183, 207, 215, 384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263
토지 소유자 168, 172, 173, 175, 176, 178, 181, 211, 212
토지 소유자수 261, 262
토지 소유제도 182
토지수득세 432
「토지신고서」 203, 204
『토지조사부』 183, 203, 211
토지조사사업 181, 196, 202, 212, 213, 404, 425, 426, 435, 439, 473
토지주택박물관 35, 37, 67
토진면 145, 151, 164
토호 384
통감부 270, 274, 275, 277

ㅍ
파장 245, 246, 255
파장동 239
파장리 231, 232, 239, 441
파종 28
파종량 49
파주군 400
팔달산 69, 225, 227, 229, 231, 232, 234
팔색고 77, 105, 116
팔색고둔 117
팔탄공립보통학교 316
팔탄면 145, 151, 165, 209, 301, 316, 338, 339, 343, 440, 441
팔탄면 덕우리 326
팽한주 143
편여삼 159
평산 91, 110
평산둔 75, 105, 116
평산부 75, 105, 116
평신둔 91, 116, 117
평신진 77, 105, 116
평신진둔 77, 105, 107
평신진둔토 108, 111, 113
평양 280
평양지장 281
평촌 159
포곡면 94
포내 110
포내둔 77, 104, 105, 109, 116, 122, 124, 134, 187, 188, 198
포내면 48, 60, 104, 145, 151, 165, 195
포둔 128, 129, 130
포천군 408, 412
품종 개량 411
품평회 315, 316

ㅎ
하광교 245, 246, 255
하광교리 231, 232, 239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395
하마오카(濱岡郎卽兵衛) 391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279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 283, 291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271, 272
학원 149, 153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362
한국농업기반공사 화성수원지사 362
한국농촌공사 화성수원지사 362
한국토지농사조사 366
한도원 205
한명석 482
한민당 242, 243
한복흥 65
한상리 467
한상봉 459
한상학 205, 207, 208
한성부 160, 386
한성은행 422, 423
한성은행 수원지점 444
한용원 143
한원회 205
한전 경작법 28
한전작물 28

찾아보기

한전 작부체계 29
함흥 287
행궁정리사 71
행목리 380, 403, 408, 409, 410, 414
향교 110
향남면 301
향탄둔 75, 76, 104, 105, 108, 111, 113, 116, 117, 124, 125, 126, 127, 129, 132, 133, 188, 194, 198, 209
향탄둔답 121
허훈 329
험천둔 82, 93, 95, 104, 111, 116, 122, 125
험천둔전 99
험천면 77, 104
현륭원 69, 108, 121
현물세 432
현암면 38, 48, 145, 152, 165, 195
협수군(協守軍)체제 81
형석면 146, 150, 165
혜산 287
혜화정우편국 424
호리우치 준이치(堀內順一) 371, 476
호방 104, 105, 116
호방둔 117
호별세 424, 433, 436
호별세부가세 433
호별할 427
호서은행 422
호세 424, 432
호적기류협조회 434
혼다(本田) 291, 315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277, 279
홍남순 159
홍대윤 156
홍덕래 158
홍만선 21
홍민섭 370, 459, 467
홍사열 381, 382, 387, 428, 437
홍사찬 459
홍사형 387
홍사훈 374, 440
홍억 81
홍원곶 122
홍원곶목장 122, 128
홍원목장 195
홍재동 148
홍종억 162, 205
홍진도 381
홍학봉 159
홍학유 388
홍형순 156, 158
홍화섭 159
화령전 77, 167
화산동 159, 176
화성 13, 103, 117
화성금융조합 422, 423
화성부 69, 70, 71, 72, 73, 74, 78, 79, 80, 81, 90
화성부 둔전 90
화성 성역 70
화성수리조합 362
화성유수 104
화성유수부 93
『화성지(華城誌)』 104
화성학원 440
화성흥산주식회사 440
화소 110
화수리조합 360
『화영사례(華營事例)』 73
『화영중기』 92, 93, 109, 110, 111
화척지면 85
화폐경제 60
화회 45
환포 84
황계동 175
황계리 233
황노철 467
황만유 146
황식동 444
황실재산 190, 212
황실재정 212
황장보 205
후지(不二)농장 487
후지흥업주식회사 471
후치법 23, 24
후카이 미쓰오(深井三男) 484
후쿠오카 234
훈둔 128, 198
훈련도감 121, 197
훈련도감둔 202
훈련도감전답 120
훈련둔 134, 136, 137, 187, 188, 197, 198, 200, 209
흥안농지개량조합 362
흥안수리조합 362
희안리 380, 385
희안제언 418
히가시야마농사주식회사 471
히가키(檜垣) 315
히다카(日高利一) 391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도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성갑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진태 대진대학교 사학과 교수
염정섭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승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조석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최원규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하지연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수원시사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65-9
ISBN 978-89-87738-60-4(세트)